

가 10-13-5

가

윤석진·조용준·조영기



가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연구자 : 윤석진(부연구위원)

Yoon, Seok-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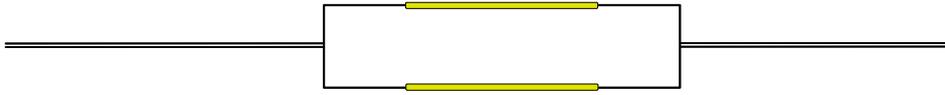
조용준(초청연구원)

Cho, Yong-Jun

조영기(초청연구원)

Cho, Young-Ki

2010. 10. 31.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은 있지만, 그간의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탈빈곤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와 이를 통한 최적의 입법대안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II. 주요 내용

- 포괄성평가결과, 현행 빈곤층지원법제는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수급자, 비수급자, 공무원), 현행법상 수급요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만족도평가의 경우 수급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무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은 만족의견이 많

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동수로 나타남.

- 담당공무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목적과 운영원칙을 기준으로 체계성 평가를 한 결과 탈(奪)빈곤정책으로서 한계, 연계성과 보충성원칙에 따른 입법체계적 모순점, 최저생계비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최소화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정비방안 제시

▶ 주제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양의무자기준, 최저생계비, 근로소득보전제도

Abstract

I . Background & Purpose

- In Korea is relief law for poverty(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But in spite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existing law is evaluated dead zone of a livelihood's guarantee and rate of the poverty's evasion is low.
-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o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in Korea. And it will come up optimal alternative legislation.

II . Main Contents

- On diversity Assessment, Relief law for poverty is dead zone of a livelihood's guarantee. Therefore isn't it in accord with the universality principle.
- On a survey the Cause Evaluation of dead zone of a livelihood's guarantee(those questioned:eligibility for the benefits, uneligibility for the benefits and public official), the biggest problem of existing law were analysed in eligibility for the benefits.

- On a satisfactive Evaluation, the eligibility for the benefits are many opinion “satisfaction” for the present system. But in the public official, they are many opinion “satisfaction”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tha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opinion of “satisfaction” and “unsatisfaction” is tied.

- On a Evaluation Effectiveness of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poverty’s(a target: eligibility for the benefits and public official), the present Supporting System has effect on positive and negative.

- On a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system by Legislation’s purpose and operated principle for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there are analysed on limitation of the Policy of the poverty’s evasion, the systematic contradiction according to connective and residual Principle, necessity of modific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 To solve a problem of existing law come up alternative legislation, there is solution’s method of dead zone of a livelihood’s guarantee, systematic Improvement of eligibility for the benefits, systematic Improvement for provide of desire to work.

III. Expect Action

- Suggest an Minimize the dead zone of a livehood's guarantee and legislativ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of social safty net for poverty's relief
- Suggest an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 **Key Words** :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a basis of breadwinner's obligati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입법평가 요약서

<

가>

【목 차】

제 1 장 입법평가 개요	제 3 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 4 절 체계성 평가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 5 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 여부 측정
제 2 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절 대안별 검토
제 2 절 긴급복지지원법	제 2 절 대안별 비교분석
제 3 장 입법평가	제 3 절 한 계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제 2 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제 1 장 입법평가 개요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법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중 1차적으로 빈곤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제는 공공부조법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지원복지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지원법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방치된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탈빈곤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이의 입법적 개선방안까지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2. 입법평가의 목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의의와 현황을 고려해 보건데, 현행 빈곤층지원을 위한 법제에 대하여 객관적·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행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평가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실제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당위성의 문제이다. 즉,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명목적으로 흐른다면 외면받기 십상이고 오히려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 대상자들이 제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건강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동기를 제고하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1. 규범적 평가

본 보고서에서 규범적 평가는 이용가치분석과 체계성 평가에 의거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이용가

치분석은 평가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급여의 유형과 내용에서는 상이하지만, 빈곤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입법목적을 공유한다. 따라서 양 법제는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규범체계간의 정합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2. 경제성 평가

본고는 해마다 정부지원금의 추이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수급자들의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중에서 어떤 부분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지니계수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어떤 사회에 n 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의 소득이 (y_1, y_2, \dots, y_n) 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G = \frac{\Delta}{2\mu} \dots\dots\dots(1)$$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y_i - y_j| \dots\dots\dots(2)$$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는 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더 나아가 수급자들을 절대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효용에 관한 부분이다. 이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개인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빈곤율’의 변화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알아보았다.

$$P_i = \alpha_1 GDP_i + \alpha_2 \sum_{t=1}^k SE_i + \alpha_3 \sum_{t=1}^k TS_i + \alpha_4 EGR_i + \varepsilon_i \dots \dots \dots (3)$$

식(1)에서 P : ‘Poverty Rate(빈곤률)’, GDP : ‘Gross Domestic Productivity(국내총생산)’, SE : ‘Social Expenditure(사회지출)’, TS : ‘Tax System(조세제도)’, EGR : ‘Economic Growth Rate(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3. 사회적 평가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긴급복지지원급여의 수급 전과 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탈락자) 사이를 비교함으로써 규범의 목표달성도, 비용-효과, 효과모델의 긍정성·부정성, 유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급대상자와 수급탈락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실제 조사여건과 분석 시 적절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응답 비율이 3~4 : 1 정도에 달하도록 조사를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실제 조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24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복지법제 담당공무원 159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528명(수급자 405명 + 탈락자 123명),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급여 관련 405명(수급 311명+탈락자 94명)의 1,092명이었다. 또한 현장 조사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전문기관인 디씨알폴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각 지역의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과 복지기관 직원들의 가구 방문 면접조사와 민원기관 방문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참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서 설

현행 공공부조법제 중 진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기본법이자 기초법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은 빈곤극복을 위해 규율하고 있는 타 법령의 급여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대부분 준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의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관련 법 영역 전반에 걸친 빈곤극복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근거와 한계를 동시에 제공한다. 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의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상의 급여기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위 법제에 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 빈곤구제를 위한 각종 법령상의 체계내·외적 정당성의 확보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운영원칙

(1)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 1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편성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사회공동체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함과 더불어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수해하기에 부적합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명문화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첫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제3조제2항).

(3) 개별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상황, 보호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의제는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결정 역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4) 기타 제반 운영원칙

1) 자립지원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행하여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급여의 유형 및 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 2010년을 기준으로 현금급여의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22,180원, 2인 가구 718,846원 3인 가구 929,936원, 4인 가구 1,141,026원, 5인 가구 1,352,116원, 6인 가구 1,563,206원이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한다. 생계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9조 제5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근로능력에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7조). 이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상황이 열거되어 있다(시행령 제8조).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갑작스런 빈곤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2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및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④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⑤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긴급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1조).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시행규칙 제8조 이하)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걱정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법상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재학하는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급여가 이루어진다(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에 지급되며, 1인당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의사자를 포함함)에는 장제급여로서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장례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급여액은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0,000원이 지급되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6)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같다. 1종 의료급여대상자는 통원 및 입원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본인부담분은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그리고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1차 및 2차 진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의 종류에 따라 소액의 정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비해서 1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일부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이 보상된다.

또한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이 규정들은 지급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3조). 이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

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전부가 면제된다(시행령 별표).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수급자가 근로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혹은 독립적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급자가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급자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을 알선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이 포함된다. 수급자에게는 자활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가 직접 제공되기도 한다.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자활급여수급자들의 공동사업이 지원된다. 자활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특히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법제15조 이하). 실제 자활급여는 취업가능한 수급자에게는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위한 지원이, 그리고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취로사업 등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4. 수급자의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다만, 현행법은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한다.

②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한다.

③ ①~②에 해당한 수급가구로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보호가 가능하다.

④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기준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의 자격기준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조에서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최저생계비기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기준 보장 기본선은 통상 최저생계비로 일컬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선(Poverty Line)으로 불리는 최저생계비란 인간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품, 주거, 피복 등 기본적인 용도에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는데 공고의 정책개입으로 보호하여야할 정책대상 즉 빈곤 인구를 상정하는 기준은 시대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생활의 수준은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며,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0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09(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2,172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제 2 절 긴급복지지원법

1. 서 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현행법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①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예정하고 있다(제3조).

2. 운영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 지원의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일 발병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보충성의 원칙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실시한다. 하지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한다.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은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3.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계지원은 현금지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를 포함함)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여기에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기에는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이 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자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그 내용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이다.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청 차상위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 특수시혜사업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6)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여기에는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한다.

제 3 장 입법평가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차적 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다. 현행법상 생계급여가 소득보장을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계비기준에 따른 최저생활유지에 그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지만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한부모가정지원 등과 같이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진 소득보장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형식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특성별 복지 욕구에 다른 추가 지출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제도 간에 대부분의 대상이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고용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활급여를 통해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이 근로생

활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연계형 복지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본래 고용보장정책이란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교육·훈련, 고용알선,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일련을 정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활지원사업은 근로 가능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의료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기능을 담당한다. 의료보장이란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필수적 혹은 부가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 저소득층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제도 간의 경계영역에 위치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걱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4) 주거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보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에 의한 주거보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기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한시적 사업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의의를 반영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상위목표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을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위목표로 위기상황에서의 탈출, 그리고 그 수단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보건대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평가(포괄성 평가)

포괄성 평가는 어느 정도의 빈곤 수급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흡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 법제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

거나, 적어도 비수급 빈곤층보다 수급빈곤층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급빈곤층보다 비수급빈곤층의 비율이 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행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10년째 전체 국민 대비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사실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인구수는 수급자 수보다 훨씬 많다. 2009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약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도 2009년 추경예산 편성당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약 340만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의 준비자료에 의하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까지도 고려한다면 약 600만 여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추계는 그 결과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57만

여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적게는 수급자의 약 2배, 많게는 약 4배 가까이 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가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있음”을 판정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30%(2009년 기준 243만원)는 2009년 전국가구 평균소득(344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비해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이 더 높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자료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월소득은 65만3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54.3%(월 14만5600원)에 불과했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86.2%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지출에 비해 소득이 10만2000원가량 많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매달 4만4200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2) 사각지대의 존재 원인

1) 소득인정액 기준의 비 현실성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소득인정액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의 이원화된 기준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존 수급권자 중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기존 수급권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넘지 않아 간신히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가구들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아예 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수급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다. 소득환산은 수급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공제액의 경우 지역별 차이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으며,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비현실적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 협소성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잔여적(殘餘的),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던 방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와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 부양의무자라고 하지만 현실

을 봤을 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노인·이혼녀·장애인·미혼의 자녀들은 부양의무관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개별가정을 구성하여야지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병에 있는 노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의무자는 이들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개인단위의 급여범위를 넓혀 부양의무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1.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 본 결과,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32.4%,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24.5%로 응답되었다.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들은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자격이 기준에 부합되기에 자격 기준 완화보다는 지원 수준과 내용 면에서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반면, 비수급자들은

현 지원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다.

수급자들의 의견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현행 복지 지원법의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응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29.6%(매우 1.3%+대체로 28.3%)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1.5%(별로 37.7%+전혀 3.8%)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더 우세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질문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적이다’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기준(금융자산 등) 모호’ 6.9%, ‘소득과악이 어려움’ 3.1%, ‘비자격 수급자가 많음’ 2.5%, ‘가구/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1.9% 등이 응답되었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N=716명)에게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72.1%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평가는 2.9%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3.83점)에 비해 긴급수급자(4.25점)에서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는 ‘신청자의 하소연이나 탈락자의 항의 등 정서적 문제가 심하다’는 응답이 50.3%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담당인력에 비해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8%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9.4%, ‘인증 및 결제 등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6.9%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2. 종합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만족’ 25.2%, ‘불만족’ 25.2%로 대등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나며, 5점 기준의 평점은 2.96점이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만족’ 39.0%, ‘불만족’ 22.0%로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보통’은 28.3%였다. 5점 기준의 평점은 3.16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제 3 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급인원은 2002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단위로 보면 2005년에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1,568,533명(882,925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요건이 현존하는 빈곤층의 포섭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절함을 나타낸다.

2. 개별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과 지원기간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의 차이가 없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 평가에서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의 평가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자활급여

자활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기타급여

기타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 평가에서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3.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4% + 대체로 40.9%),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2%(별로 10.1% + 전혀 2.1%)로 응답되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 ‘무응답’은 2.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7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만족’ 25.2%, ‘불만족’ 25.2%로 대등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나며, 5점 기준의 평점은 2.96점이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만족’ 39.0%, ‘불만족’ 22.0%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보통’은 28.3%였다. 5점 기준의 평점은 3.16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빈곤층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 평가

현재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N=654명)에게 현재 받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형태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법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84.9%로 가장 높았고,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가 82.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재 다루고 있는 지원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가 평균 3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생계급여’ 29.9%, ‘주거급여’ 22.5%, ‘교육급여’ 12.7%, ‘자활급여’ 12.6%, ‘해산급여’ 6.1%, ‘장제급여’ 6.1% 등의 순이었다.

5. 빈곤층 지원에 따른 효과성 검토

(1) 긍정적 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담당 공무원과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급여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22.8%, 31.1%)와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20.3%, 20.2%)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긴급복지지원법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개별급여를 통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수급자 모두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20.4%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부정적 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담당 공무원에게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자활의지 부족)’라는 응답이 33.5%로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수급자들의 경우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물가/교육비등)가 많이 올라서’ 등의 응답이 상위를 차지하여 대비되었다.

2) 긴급복지지원법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공무원과 수급자 모두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 지원의 한계를 주목하고 있었다.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라는 응답이 19.7%로 가장 높았고,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라는 응답이 14.0%로 나타나, 두 응답을 합할 경우 33.7%에 달했다.

한편 수급자들의 경우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2.2%,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라는 응답이 8.4% 등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체계성 평가

1. 평가기준

본 보고서에서 규범체계간의 정합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법목적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일반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2. 입법목적과 원칙에 따른 분석

빈곤구제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과의 관계에서 상호연계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이들 법제 상호간에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빈곤가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의 입법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상호연계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체계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탈(奪)빈곤정책으로서 한계

1) 보충급여원칙에 의한 근로동기 결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선을 급여상한선으로 설정해 두고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급여상한선 간의 차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급여방식에서는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액만큼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노동의 금전적 대가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그

렇지 않는 것보다는 교통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을 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어 근로동기를 없애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자활지원제도(자활급여)의 비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빈곤완화정책인 데 비하여 그 내부에 위치한 자활지원사업은 개인단위의 빈곤탈출정책으로서 개인이 빈곤탈출에 성공하는 경우 가구단위의 소득보장이 단절된다는 점에서 두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빈곤탈출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또한 자활사업이 실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참여가 제한되고 수급자 중 불안전 취업자도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통합급여체제로 말미암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박탈되도록 되어 있어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자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보다 낮아 차상위 계층의 참여확대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2) 최저생계비기준의 조정 필요성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각종 빈곤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형성의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빈곤심화와 이에 따른 광범위한 빈곤구제의 사각지대의 존재 등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현행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산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반감시키는 결과도 야기하고 있다.

수급조건으로 최저생계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는 빈곤정책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특별한 수요를 가진

자에게는 이에 상응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즉, 절대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광범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 둘째, 일단 수급자가 된 후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자활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연계성원칙에 따른 상호체계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내용의 연계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사후조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하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규정은 중복급여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한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에 국한되는 부분적 상호연계성 입법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입법적 불비상태가 보인다.

(4)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상호관계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보충성의 원칙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중복급여 간의 상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개별 법령단위로 본다면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구제라는 동일목적을 추구하는 입법체계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입법태도는 상호모순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내용대로 한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조, 제9조에 의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면, 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빈곤층이 양 법제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합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급여의 제공에 그치지 말고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제도에서 이탈되는 수급자의 양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상대빈곤선에 의한 최저생계비기준은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자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간의 부분적 상호연계성의 원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서 선언하여 수범자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4조제2항의 내용을 이관하고,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장제급여 및 재활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입법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상호연계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보충성의 원칙을 개별 입법에서 선언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 법제 간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정당성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빈곤층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조화로운 입법상태이기 때문이다.

제 5 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여부 측정

1. 빈곤실태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9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6만 명(85만 8천 여 가구)으로 전체인구 대비 수급률(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3.1%에 달한다. 종류별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5%)이며, 시설수급자는 5.5%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로 선정된 일반수급가구의 소득규모를 살펴보면 ‘0원 초과~2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0.2%로 가장 많고, 다음 ‘20만 원 초과~40만 원 이하’가구가 18.3%, ‘40만 원 초과~60만 원 이하’가구가 9.5%로 수급자가구의 약 50%가 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약 81%가 40만 원 이하의 소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의 세부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한다. 아래의 표는 긴급복

지지원제도의 현황을 나타낸다. 2006년 3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신청 건수는 2008년 기준으로 29,369건이었으며, 지원건수는 27,205건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신청건수는 22.3%p, 지원건수는 39.6%p 증가한 수치이다. 긴급복지 예산은 제도 도입 당시 6조 1,532억 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5조 1,532억 원으로 16.3%p 감소하였다.

2. 빈곤율 추이 및 소득분배 현황

(1)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지원의 증가가 절대빈곤율에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빈곤갭, 빈곤심도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이론적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향후 복지 및 분배정책의 기본방향은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脫)빈곤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도 필요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 빈곤 및 분배 지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16% (도시가구 전체 기준)까지 상승한 후, 2002년에 8.5%까지 하락하였지만 이후 9%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

우에는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무직자의 경우에는 정체되고 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2009)이 발표한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빈곤가구율은 전체가구중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가구율은 외환위기 때에는 약 9.2%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5.5%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상대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도시 근로자가구의 빈곤층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빈곤율은 상대적인 빈곤의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도시가구의 빈곤층 비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임금의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0%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주로 근로임금의 양극화에 기인하여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소득갭 비율은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갭 비율의 변화 추이는 빈곤양상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 빈곤층지원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분석모형

빈곤층지원 법제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빈곤해소 및 분배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을 도입하였다.

$$P_t = \alpha_0 + \alpha_1 \left(\frac{SE}{GDP} \right)_t + \alpha_2 EMP_t + \varepsilon_t \dots\dots\dots (1)$$

(단: P 는 빈곤/분배 지표, SE 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GDP 는 실질 경제성장률, EMP 는 고용률)

2) 변수요약

우선 사회보장 지출 관련 변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GDP 대비 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GDP는 빈곤·분배 지표들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분배 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편이(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GDP는 기초생활보장 지출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을 변수에 함께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3) 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는 빈곤 지표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분배 지표에 해당하는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절대빈곤율에 대한 분석결과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의 계수 값이 모두 음의 값으로 매우 유의하게

분석이었다. 이는 소득수준대비 기초생활 보장지출을 늘릴수록 절대빈곤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지원 법제에 의한 사회보장 지출이 빈곤해소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률의 증가가 빈곤율 해소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지출 측면에서의 빈곤율은 기초생활보장지출에 의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의 빈곤층 소득비율에 대한 효과 역시 양의 값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빈곤층지원 법제에 의한 예산지출의 증가가 빈곤 계층의 소득보전으로 잘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대비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발생하는 분배 악화의 원인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지출에 의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서 마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분배를 악화시키는 듯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완화를 기초생활보장지출의 1차적 목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소 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출은 빈곤 계층의 소득 보전을 통한 절대 빈곤의 감소라는 1차적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에 의한 분배 악화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긴급지원복지제도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① 긴급지원제도의 사업성과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중간보고서에서 제도의 방향성 검토 등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긴급지원제도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위기극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②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필요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득계층별로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수급가구가 44.0%로 가장 높았고, 수급경험 또한 22.8%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인식이나 당장의 필요성 정도 또한 수급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100% 미만인 비수급 빈곤층에서는 긴급의료지원 사업의 인지도가 특히 낮았으며, 이용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긴급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도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2)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만족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개선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진행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와 2010년 9월에 진행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아래 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만족함’ 이상을 나타낸 응답자가 83.5%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만족함’ 이상을 나타낸 응답자가 71.4%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2009년에 3.5%에서 2010년에 5.1%로 늘어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제 1 절 대안별 검토

1.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현행 “부양능력 없음”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2) 최저생계비 기준의 개선

1)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최저생계비 산정

현행 제도는 절대적 빈곤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물가와 평균소득 상승분에 연동하도록 하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하여 계측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최저생계비는 예컨대 현행법상 “전년도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50% 이상” 등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립적 방식에 따른 최저생계비 산정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의 변화, 소비행태,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하위소득계층의 지출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생계급여의 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위 고려요소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계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매 3년 마다 계측 되도록 하고 있고, 3년 기간 중간에 매년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갱신의 기준은 주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일반가구의 소득 혹은 지출증가율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조정이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발전에 연계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계측은 매년 계측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급여체계의 개선

(1) 급여체계의 다원화

현행 급여체계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체계를 다원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유형은 기본급여, 부가급여, 특별급여의 형태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급여는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비, 연료비, 교통통신비, 가구사용품비, 기타 소비지출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생계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산정시 반영한다.

부가급여는 가구구성 및 가구특성에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부가급여의 범주에는 현재 현물급여로 제공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급한다), 주거급여(주거별 임대료와 주택보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를 비롯하여 장애, 노령 등에 다른 추가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급여들을 포함한다. 다만, 의료급여는 현재와 같이 의료보호의 형태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과의 입법체계적 조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 통합급여체계의 개편

1) 완전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주거, 의료, 자활 등의 욕구에 상응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2)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용방식에서의 전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통합급여와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통합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이

외의 급여는 개인별 욕구에 상응하여 개별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요건을 충족시키면 두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 중복급여금지 또는 급여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법률상의 급여는 중복급여금지 또는 급여의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보장원칙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통합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가구별로 대상 가구의 욕구에 따라 일부 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1) 생계급여의 개편과 근로소득보전제도 등의 도입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계급여제도의 수급집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이른바 “근로소득보전제도(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로 불리우는 일종의 근로장려세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2) 생계급여의 분리운영

생계급여의 분리·운영 방안은 앞서 제시한 생계급여재편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갖는다. 이 방안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제도를 분리·운영하는 것이다.

4. 기타 민원처리 복잡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대안

지난 200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과 2009년 4월 기반구축 1차사업분석을 완료하였고, 2009년 6월부터 기반구축 2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개인별·가구별 복지급

여를 관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적 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수급자의 자격변공파악이 용이해진다. 또한 소득·재산의 표준화와 공적 자료의 확대 및 공동활동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을 간소화·자동화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경감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2 절 대안별 비교분석

1.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1) 기준완화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제한된 국가재정 범위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생활의 사각지대와 국가재정부담의 가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국회 예산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 중 단지 1.8%정도만 보호할 수 있어 여전히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2) 기준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층을 대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급자범위의 확대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의 개선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산정은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반면에, 수급자의 범위 확대는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중립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산정은 임금의 변화, 소비행태 및 생활비용을 최저생계비 계측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하위소득계층의 지출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직 하다. 다만 이 경우 통계청 등 통계전문기관과 연계되어 개별 고려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급여체계의 개선

(1) 긍정적 효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별급여방식은 통합급여방식의 단점, 즉 개별 급여별 수급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급여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계급여 분리운영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은 첫째,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근로소득보전제도는 근로유인효과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부정적 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가급여를 신설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공공부조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게 되는 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예상된다.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은 기존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흡수되지 못하던 빈곤층을 추가로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제 3 절 한 계

1.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공공재정의 부담능력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계비산정기준의 조정은 결국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복지예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히 빈곤층구제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사이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연계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소득공제제도의 포커스 설정, 근로능력판정기준의 재설계, 정확한 소득과약 등이 충분히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판단기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그 절차의 복잡성이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을 위해 생계급여를 분리·운영하는 방안은 자칫 근로 가능한 수급층 보다 근로무능력 수급층에 대한 소득보전분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입법평가 개요	61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61
1. 입법평가의 필요성	61
2. 입법평가의 목적	62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63
1. 규범적 평가	63
2. 경제성 평가	65
3. 사회적 평가	70
제 2 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75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5
1. 서 설	75
2. 운영원칙	76
3. 급여의 유형 및 내용	80
4. 수급자의 선정기준	87
제 2 절 긴급복지지원법	107
1. 서 설	107
2. 운영원칙	108
3.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109

제 3 장 입법평가	115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115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기능	119
3. 평가(포괄성 평가)	123
제 2 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130
1.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	130
2. 종합평가	142
제 3 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146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146
2. 개별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147
3.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153
4. 빈곤층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 평가	156
5. 빈곤층 지원에 따른 효과성 검토	160
제 4 절 체계성 평가	165
1. 평가기준	165
2. 입법목적과 원칙에 따른 분석	166
3. 종합평가	176
제 5 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여부 측정	178
1. 빈곤실태분석	178
2. 빈곤율 추이 및 소득분배 현황	182
3. 빈곤층지원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187
제 4 장 대안 및 권고	201

제 1 절 대안별 검토	201
1.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
2. 급여체계의 개선	204
3.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208
4. 기타 민원처리 복잡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대안	210
제 2 절 대안별 비교분석	211
1.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211
2.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의 개선	212
3. 급여체계의 개선	213
제 3 절 한 계	214
1. 최저생계비 기준	214
2. 근로연계형 기초생활보장	214
참 고 문 헌	217

<부 록 1> 설문조사서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2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23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 설문지(공무원)	253

<부 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65
---------------------------------------	-----

제 1 장 입법평가 개요

제 1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법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들 중 1차적으로 빈곤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제는 공공부조법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지원복지법」이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빈곤층 지원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등이 있으며, 이들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도 빈곤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로 2006년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으며, 이 법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이 주요 지원수단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지원법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방치된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정책은 국가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제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2010년 정부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전제로 해서만 실질적 의미를 갖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탈빈곤 효과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바, 이의 입법적 개선방안까지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2. 입법평가의 목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의의와 현황을 고려해 보건데, 현행 빈곤층지원을 위한 법제에 대하여 객관적·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행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빈곤률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평가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실제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당위성의 문제이다. 즉,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명목적으로 흐른다면 외면받기 십상이고 오히려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 대상자들이 제도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건강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동기를 제고하고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

1) 남기철,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2007, 41면 이하; 이현주 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61면 이하 참조

이를 위하여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개별 급여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급여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개별 급여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기여도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위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입법적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본 평가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

1. 규범적 평가

본 보고서에서 규범적 평가는 이용가치분석과 체계성 평가에 의거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이용가치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전 국민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일시적이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을 기준하여 이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이다.²⁾ 전자는 얼마나 많은 빈곤층을 이들 법제에서 흡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급여가 빈곤층에게 어느 정도 유효하게 반응하는가의 문제, 즉 만족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포괄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통계 및 그간의 선행 연구자료에서 많은 결과치를

2)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 및 정책과제(1)”, 「보건복지포럼」 통권 16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9, 8면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한결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원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이른바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은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빈곤구제의 최후보루라 여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입법목적달성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행법의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포괄성의 경우 선행 연구자료를 기초로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의 사각지대의 규모를 살펴보고 이 원인을 현행법상의 수급요건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급여의 충분성은 본 보고서의 집필을 위해 공무원, 수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입증한다. 특히 급여의 수급 후 나아진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규범평가부분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체계내·외적 정당성의 문제이다. 이는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동일법제 내에서의 입법체계와 관련 법제 간의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급여의 유형과 내용에서는 상이하지만, 빈곤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입법목적은 공유한다. 따라서 양 법제는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법제에 적용되는 이념, 일반원칙, 운용원리,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한 총체적 규율을 하고 있는 사회보장분야에서의 기본법이다. 그리고 제24조에서는 사회보장법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계성 및 전문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 원칙 중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연계성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규범체계간의 정합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4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연계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각각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되는 개념이다. 먼저, 보충성의 원칙이란 유사목적의 법률간에 타법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은 유사한 내용을 갖는 둘 이상의 급여가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그 중 하나의 수급권만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이 관련 법제 간의 체계정합성을 상실할 경우, 어느 법에 의해서도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구제라는 동일목적에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입법모순의 상태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성 평가

(1)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선 아래의 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규범이다. 이렇게 빈곤층에 대해서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후 지원하는 목적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사용한 지원금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지원금이 수급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해마다 정부지원금의 추이와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수급자들의 빈곤탈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도움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중에서 어떤 부분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지니계수를 통해서 사회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은 여러 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요소가 빈곤층을 개선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고는 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빈곤층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지표분석에 따른 모형 설정 및 자료

1) 복지지표의 다양성

경제학 교과서에서 빈곤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빈곤을 분배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선성장론자(先成長論者)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주장이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경제성장과 빈곤율은 반비례해야 하며 경제성장을 통해서 지니계수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빈곤률이 어떤 변화의 추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여러 가지 복지연관지표

	GDP대비복지 지출비율(%)	실질성장률 (%)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지니계수
2000	4.74	8.80		0.272
2001	5.18	4.00	698,075	0.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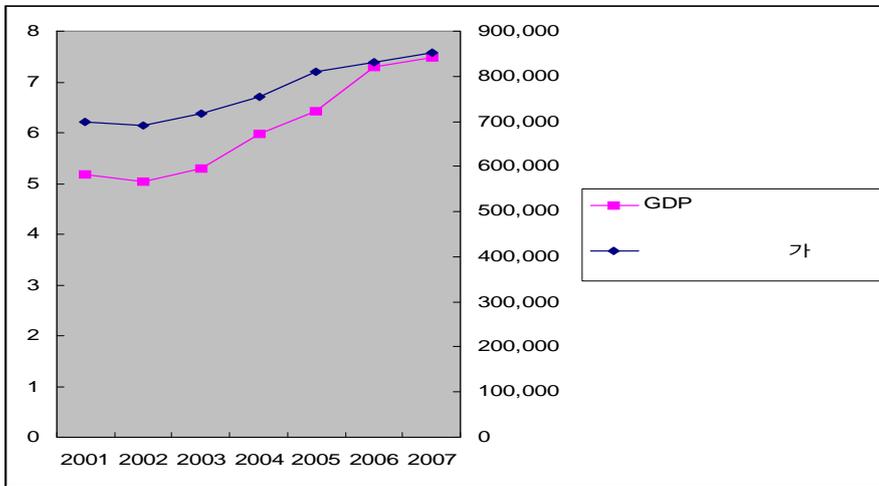
	GDP대비복지 지출비율(%)	실질성장률 (%)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지니계수
2002	5.04	7.20	691,018	0.284
2003	5.29	2.80	717,861	0.282
2004	5.97	4.60	753,681	0.285
2005	6.42	4.00	809,745	0.286
2006	7.30	5.20	831,692	0.292
2007	7.48	5.10	852,420	0.300
2008		2.20		0.298
2009		0.20		

(자료: 통계청)

위 <표 1>은 2000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실질성장률,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지니계수 등을 나타낸 지표이다. 이는 빈곤율의 변화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빈곤은 줄어들어야 하므로 정부의 복지 지출과 빈곤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그림 1】 복지 지출과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자료: 통계청 자료 재구성)

위의 【그림1】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의 비율과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성장률과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를 비교해보면 실질성장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선성장론자(先成長論者)들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결과이다.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어떤 사회에 n 명의 사람이 있고 이들의 소득이 (y_1, y_2, \dots, y_n) 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G = \frac{\Delta}{2\mu} \dots\dots\dots(1)$$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y_i - y_j| \dots\dots\dots(2)$$

이렇게 구한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2000년부터 지니계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지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복지지출의 요소 중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 사회지출비용과 빈곤율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곤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을 설

계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영향력 판단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는 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더 나아가 수급자들을 절대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효용에 관한 부분이다. 이를 계량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개인의 효용을 측정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빈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가능하다.

$$P_i = \alpha_1 GDP_i + \alpha_2 \sum_{t=1}^k SE_i + \alpha_3 \sum_{t=1}^k TS_i + \alpha_4 EGR_i + \varepsilon_i \dots \dots \dots (3)$$

식(1)에서 P : ‘Poverty Rate(빈곤률)’, GDP : ‘Gross Domestic Productivity(국내총생산)’, SE : ‘Social Expenditure(사회지출)’, TS : ‘Tax System(조세제도)’, EGR : ‘Economic Growth Rate(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위의 식(3)을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각종 사회지출(지원금들), 조세제도들, 경제성장률 중에 어떤 변수가 빈곤율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위의 식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 지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빈곤율 탈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빈곤율은 몇 %P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비단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위에 열거된 여러 변수들의 % 변화가 빈곤율 탈출에 몇 %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도 알아 볼 수 있다.

3. 사회적 평가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긴급복지지원급여의 수급 전과 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탈락자)사이를 비교함으로써 규범의 목표달성도, 비용-효과, 효과모델의 긍정성·부정성, 유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급대상자와 수급탈락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설계

조사 설계에서는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비수급자 포함) 대상 설문 조사의 조사 대상 설정과 조사 절차, 조사에 사용된 문항 구성, 조사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에서 응답자를 구성하기 위한 표본 추출은 실제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지역/응답자 특성별 할당 후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복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신청 탈락자 및 중도 탈락자와 같은 비수급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수급자와 비수급자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실제 조사여건과 분석 시 적절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응답 비율이 3~4 : 1 정도에 달하도록 조사를 디자인하였다.

실제 조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24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복지법제 담당공무원 159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528명(수급자 405명 + 탈락자 123명),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급여 관련 405명 (수급 311명+탈락자 94명)의 1,092명이었다.

실제 현장조사는 선행연구 및 연구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조사전문기관인 디씨알폴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각 지역의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과 복지기관 직원들의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민원기관 방문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참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각각 대상자별로 진행방식을 보면, 공무원들은 자기기입식으로, 수급자 및 탈락자들은 담당업무 공무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하는 수급자들에게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케 한 후 수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지원기관 직원들이 수급자 및 탈락자들의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 후 작성토록 유도한 후 수거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문항구성 및 설계

설문지를 이용한 본 조사의 설문 구성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아래 <표 2>에 요약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복지 법제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비수급자) 설문은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외에 담당 공무원의 집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수급 선정과 관련한 문항, 수급에 따른 효과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들의 사이의 논의를 거쳐 실제 응답자들이 크게 해당되지 않다고 느끼는 점이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 설문은 각 대상자별로 제외하였다. 각 집단별로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구성하여 집단 사이에 의견을 비교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자세한 설문 구성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담당 공무원 설문문항

구 분	세 부 항 목
일반사항 (공통)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성별, 연령, 근속년수 직렬 해당업무 담당기간 업무비중(전담시 100%)
담당공무원의 집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건의 의견 청취	업무 처리시 가장 부담되는 점 비효율적이거나 간소화 가능 절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적정성 및 판단이유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 배제안 및 시행될 경우 예상 문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관련기관들로부터 자산 파악 주로 다루는 지원 종류(비율) 가장 많은 탈락사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종류 및 구체적 추가 지원사항 지원의 수급방법, 금액, 기간에 대한 적정성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지원 전후로 가장 나아진 점(개방형)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점(개방형) 차상위계층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개방형) 지원법제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점(개방형) 긴급복지지원 현장에서의 나타나는 주된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 생계기준 상향안에 대한 의견 긴급복지지원의 실제 처리에 필요한 시간 긴급복지지원의 횟수에 대한 의견

<표 3> 수급자(비수급자) 설문문항

구 분	세 부 항 목
일반사항 (공통)	성별, 연령, 거주지 가구일반사항(가족수, 성별, 연령, 취업상태, 동거여부,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 가구내 주소득 발생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 유무 만성질환 유무 및 종류 의료급여 수급형태
가구 경제상황 (비수급가구)	생활비(식료품, 주거, 보건의료, 교육, 기타 등 포함). 월 평균 가구소득(근로소득, 사회보험, 기타 정부보조금 등 포함), 가구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 포함), 부채, 주택상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
수급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대상자만), 지원 정도(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지원 기간과 횟수의 적정성, 집행의 신속성, 지원받는 종류, 자활참여 실태 및 의식(참여의사 등), 전반적 만족도, 지원 전후로 가장 나아진 점(개방형),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점(개방형), 지원법제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점.
비수급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어떤 기준(미달)에 의해 수급자 탈락되었는지,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신청자만), 지원받고자 하는 종류, 지원 정도(방법과 금액) 및 적정성 인식, 탈락에 대한 인식, 지원법제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개선점.

(2) 분석방법

분석은 조사 완료된 문항들의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문항별로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 및 2검정 (Chi-Square Test) 등의 추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평가대상 법제의 개관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서 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빈곤극복을 목적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법은 단일법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상 개별조항을 비롯하여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공공부조법제라 통칭한다. 현행 실정법 중에서 공공부조법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있다. 「의료급여법」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빈곤층에 대한 요양관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활전반에 걸친 규율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법제 중 진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기본법이자 기초법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은 빈곤극복을 위해 규율하고 있는 타 법령의 급여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대부분 준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사회보험법제(각종 연금법제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공공부조법제·기타 사회복지서비스법제(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는 실로 빈곤구제를 위한 기본법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의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관련 법 영역 전반에 걸친 빈곤극복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근거와 한계를 동시에 제공한다. 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의 급여 및 최저생계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아동복지법상의 급여기준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적 정당성과 타당성은 위 법제에 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 빈곤구제를 위한 각종 법령상의 체계내·외적 정당성의 확보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빈곤구제를 위한 법제 및 급여의 검토는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전제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각종 급여기준 및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운영원칙

(1)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구되는 보편성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들 빈곤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생활상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항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편성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 다만, 이와 같은 근로능력이 있는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은 우선 급여의 법적 성격을 단순히 국가에 의한 시혜정도로 의제하고 있던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의

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적극적인 근로유인을 하는 과제에 중요한 정책적 비중을 두게 되었다.⁴⁾

(2)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근거하는 원리로서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의지와 생활을 큰 사회공동체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여 그들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함과 더불어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수해하기에 부적합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법적 성격을 국민의 권리(기본권적 성격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아울러 「생활보호법」이 수급대상자를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여 거택보호자(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던 것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대상자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 본격적인 보편주의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8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100면 이하;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여름호, 1999, 19면 이하; 손근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10, 19면 이하; 조홍식, “빈곤과 사회보장: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6집, 한국사회정책학회, 1999, 160면 이하; 전광석, “생활보호법의 개선방향”, 『한국사회정책』 제3집, 한국사회정책학회, 1996, 122면;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정착방안”, 『보건과 복지』 제2집, 한국보건복지학회, 1999.12, 297면 이하 참조.

4)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512면; 문진영, “사회보장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143면; 방하남/황덕순,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71면;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요인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227면 이하 참조.

5) 이에 따라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간섭이 가능한 한 자제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활동의 제한 원리’라는 소극적 의미와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과제를 이행할 능력과 창의력이 없을 경우에 국가가 보조와 간섭을 통해 그 기능발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봉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

따라서 공공부조법제에서의 보충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빈곤은 우선 시장경제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또는 사회보상과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모두 투입하여 극복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빈곤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공공부조체계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명문화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첫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 둘째,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제3조제2항).

(3) 개별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상황, 보호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구체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요의 측정은 현재의 구체적인 수요상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면 단지 추상적으로 수요가 의제되고 이에 법적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요심사와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를 행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의 수요를 보호하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면 과거와 관련된 상황이 보호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성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안정적 빈곤정책의 집행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자체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 빈곤의 원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2면 이하 참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형화의 결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조항을 통하여 보호하는 구상이 필요하다.⁶⁾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5조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반조항의 전형을 명문화한 입법례이다.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의제는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결정 역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⁷⁾

또한 현물 혹은 현금 급여만으로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노인요양과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조의 틀 안에서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와 함께 서비스 급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4) 기타 제반 운영원칙

1) 자립지원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28조

6) 전광석/윤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09-16-11, 한국법제연구원, 2009, 69면.

7) 전광석, 전게서, 69면.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9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행하여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제1항에서는 신청권자의 신청에 대한 조사를 행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제2항),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제23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46조제1항에서는 이미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 후,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급여의 유형 및 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의 종류로서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생계급여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의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또는 자활급여가 함께 지급된다(제7조).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제7조)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그 밖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적 수요에 대한 보호가 직접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법 제8조).

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⁸⁾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를 포함한 구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현물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지급기준은 현금급여기준이다. 현금급여기준은 가구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하되, 주거급여액을 제외하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4> 주거급여액 산정기준

가구별 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79.4%)		(20.6%)				(100%)

8) 급여는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직접 입금조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현금급여의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22,180원, 2인 가구 718,846원 3인 가구 929,936원, 4인 가구 1,141,026원, 5인 가구 1,352,116원, 6인 가구 1,563,206원이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한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물 및 서비스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 비해서 낮다. 생계급여의 지급에는 이른바 보충급여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생계급여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9조 제5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7조). 이 밖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상황이 열거되어 있다(시행령 제8조).

그리고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갑작스런 빈곤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긴급생계급여란 일반적인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및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④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⑤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긴급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다음의 금액이 지급된다.

<표 5> 긴급생계급여 지급액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u>189,518</u>	<u>322,692</u>	<u>417,451</u>	<u>512,210</u>	<u>606,969</u>	<u>701,728</u>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1조).⁹⁾ 일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시행규칙 제8조 이하) 그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표 6>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u>504,344</u>	<u>858,747</u>	<u>1,110,919</u>	<u>1,363,091</u>	<u>1,615,263</u>	<u>1,867,435</u>
주거급여 한도액	<u>86,982</u>	<u>148,104</u>	<u>191,595</u>	<u>235,085</u>	<u>278,576</u>	<u>322,067</u>

아울러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 현물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주거 현물급여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

9)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즉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및 에이즈 쉼터’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이지만 수선 및 점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거 현물급여는 대상 가구당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법상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재학하는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급여가 이루어진다(법 제12조, 시행령 제16조).

교육급여의 내용을 보면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가 지급된다. 전자의 경우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연간 1인당 1,123,000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중학생(의무교육대상자)을 대상으로 부교재비가 연간 1인당 34,000원 지급되며 중·고등학생 공통으로 연간 1인당 466,000원이 지급된다.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해산급여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해진다(법 제13조).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000원씩 추가 지급된다.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의사자를 포함함)에는 장제급여로서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장제급여는 장례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따라서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된다(법 제14조). 급여액은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0,000원이 지급되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제급여는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단독가구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6)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된다.¹⁰⁾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급여의 종류와 같다. 1종 의료급여대상자는 통원 및 입원치료가 모두 무

10)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 중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료로 제공된다.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 본인부담분은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그리고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1차 및 2차 진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의 종류에 따라 소액의 정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비해서 1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이 보상된다.

또한 본인부담금에서 본인부담보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이 규정들은 지급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3조). 이들이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전부가 면제된다(시행령 별표).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가 지불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불제도를 두고 있다. 즉 본인부담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법 제20조 및 제21조, 시행규칙 제27조).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수급자가 근로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혹은 독립적인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급자가 근로능력을 향상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급자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 수당, 식비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을

알선하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직업상담 및 직업적 성검사 등이 포함된다. 수급자에게는 자활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가 직접 제공되기도 한다.

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특히 자활급여수급자들의 공동사업이 지원된다. 자활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특히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법 제15조 이하).

실제 자활급여는 취업가능한 수급자에게는 1차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위한 지원이, 그리고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수급자에게는 취로사업 등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4. 수급자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아울러 위 기준, 즉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만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1) 소득인정액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평가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실제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때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 등이 반영된다(법 제2조제9호).

소득평가액산정의 기초는 실제소득이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장소득, 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등도 재산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이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조제2항).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과 부칙 제4조에 의한 생계보조비의 경우에도 재산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평가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실제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금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먼저 현재의 구체적 수요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그리고 아동양육비, 의

료비 등이 제외된다.

3)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11)}$
--

-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¹²⁾-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4)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①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 환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¹³⁾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한다.

②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경우¹⁴⁾에 해당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
- 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재산의 경우 지역별 전세가격 등 재산 수준, 신규 수급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2년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는 경우를 산정하여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둘째,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인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셋째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12)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대도시(5,400만원0,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의 금액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본재산액의 공제방식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은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 13)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14) 여기에는 첫째,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둘째,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셋째,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한다.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한다.

③ ①~②에 해당하는 수급가구로 소득과 재산형태·구성에 변화는 전혀 없으나,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특례자로 3년간 계속보호가 가능하다.

④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¹⁵⁾

(2) 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기준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의 자격기준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5조에서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와 1촌의 직계혈적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5)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하여, 만약 부과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없이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한다.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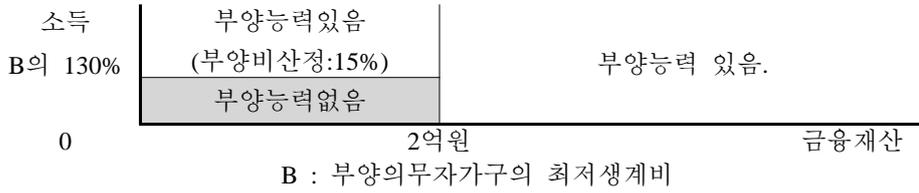
①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는 첫째,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 둘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호). 다만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이어야 하며, 부양을 받고 있는 직계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속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경우
- 금융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산정 시는 생활준비금 300만원과 담보·신용·약관대출 등 금융부채를 공제함).

【그림 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출가한 딸 등)



③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¹⁶⁾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소득원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함)¹⁷⁾

④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조제1항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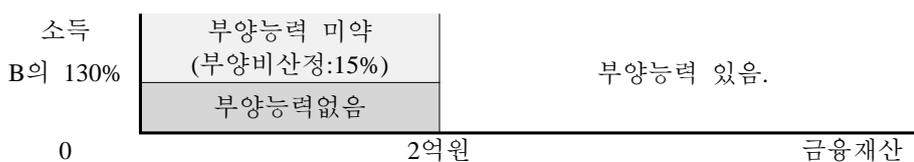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6)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7) 단, 일용근로자 등이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하고,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액의 42% 미만인 자¹⁸⁾
- 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가구원이 모두 근로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가구의 취업자녀.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군복무,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제외)에 한한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액의 42% 미만인 경우¹⁹⁾

【그림 3】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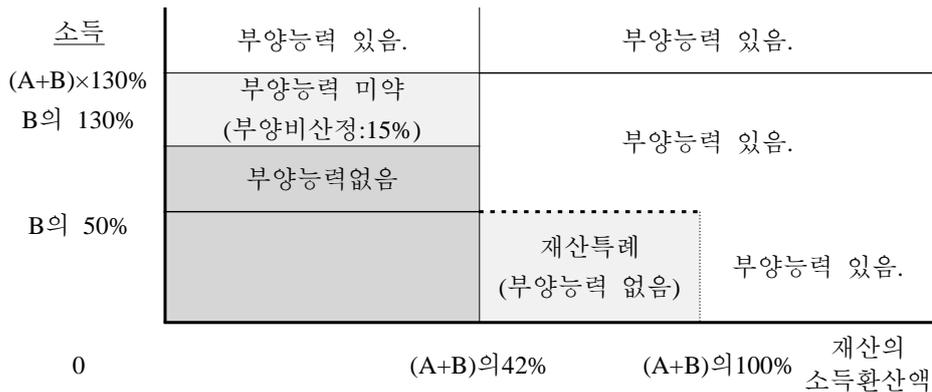
- ⑥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18)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19)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개별가구원 포함)

【그림 4】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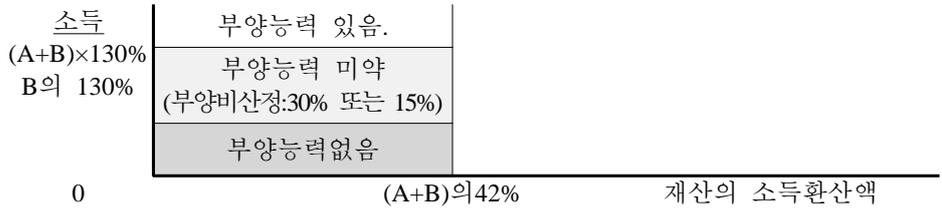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림 5】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①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부양비로 부과한다.

【부양비=(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30%】
--

- 대상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단,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계의 130% 미만인 경우²⁰⁾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계의 42% 미만인 경우²¹⁾

②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한다.

20) $B \times 130\% \leq \text{부양의무자의 소득} < (A+B) \times 130\%$

21)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A+B) \times 42\%$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 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가구인 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 300만원과 담보·신용·약관대출 등의 금융부채를 공제함)
- 취업자녀인 경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계 42% 미만²²⁾

③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부양사실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22)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 부양의무자가 이혼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자(군복무), 「해외이주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해외이주자,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행방불명자(실종전소 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중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표 7>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표(부양능력없음, 부양비)

구 분		부양능력 없음		
		소 득	(부양비지원율 전체)	재 산 (소득환산액)
원 칙		B×130%미만	(A+B)×130% 미만→ B×130% 초과금액의 30% 부양비 부과	(A+B)×42% 미만
예외①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 자신의 주거에서 직계존속, 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 부가급여 대상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	×
예외②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가한 딸 ▪ 친정부모 	B×130%미만	B×130% 초과 → B×130% 초과금액의15% 부양비 부과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예외③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 행상 - 주소득원 - 이외 근로자 없음 	×	×	(A+B)×42% 미만 (원칙과동일)
예외④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가구중 취업자녀 (18세부터 3년간)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B×130%미만	B×130% 초과 → B×130% 초과금액의15% 부양비 부과	(A+B)×42% 미만 (원칙과동일)
⑤ (재산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이 주택에 한정 	B×50%미만	×	(A+B)×100% 미만
⑥ (부양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부양 ▪ 둘 이상의 수급권자 부양의무→한쪽만 부과 ▪ 중증장애인 ▪ 이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비속 양육 	-	-	-

<표 8> 201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만원)

수급권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소득환산액	소득	소득환산액								
1인	없음	66	42	112	57	144	68	177	78	210	89	243	100	
	미약	66-131		112-177		144-210		177-243		210-276		243-308		
	있음	131		177		210		243		276		308		
2인	없음	66	57	112	72	144	83	177	93	210	104	243	114	
	미약	66-177		112-223		144-256		177-289		210-322		243-354		
	있음	177		223		256		289		322		354		
3인	없음	66	68	112	83	144	93	177	104	210	114	243	125	
	미약	66-210		112-256		144-289		177-322		210-354		243-387		
	있음	210		256		289		322		354		387		
4인	없음	66	78	112	93	144	104	177	114	210	125	243	136	
	미약	66-243		112-289		144-322		177-354		210-387		243-420		
	있음	243		289		322		354		387		420		
5인	없음	66	89	112	104	144	114	177	125	210	136	243	146	
	미약	66-276		112-322		144-354		177-387		210-420		243-453		
	있음	276		322		354		387		420		453		
6인	없음	66	100	112	114	144	125	177	136	210	146	243	157	
	미약	66-308		112-354		144-387		177-420		210-453		243-486		
	있음	308		354		3987		420		453		486		

※ 부양능력판단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2010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기준)>

<표 9>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 의무자 가구	부양능 력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31	14,316	112-177	14,673	144-210	14,927	177-243	15,181	210-276	15,435	243-308	15,689
	있음	131		177		210		243		276		308	
2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77	14,673	112-223	15,030	144-256	15,284	177-289	15,538	210-322	15,792	243-354	16,046
	있음	177		223		256		289		322		354	
3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10	14,927	112-256	15,284	144-289	15,538	177-322	15,792	210-354	16,046	243-387	16,300
	있음	210		256		289		322		354		387	
4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43	15,181	112-289	15,538	144-322	15,792	177-354	16,046	210-387	16,300	243-420	116,554
	있음	243		289		322		354		387		420	
5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76	15,435	112-322	15,792	144-354	16,046	177-387	16,300	210-420	16,554	243-453	16,808
	있음	276		322		354		387		420		453	
6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308	15,689	112-354	16,046	144-387	16,300	177-420	16,554	210-453	16,808	243-486	17,062
	있음	308		354		3987		420		453		486	

<표 10>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31	11,866	112~177	12,223	144~210	12,477	177~243	12,731	210~276	12,985	243~308	13,239
	있음	131		177		210		243		276		308	
2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77	12,223	112~223	12,580	144~256	12,834	177~289	13,088	210~322	13,342	243~354	13,596
	있음	177		223		256		289		322		354	
3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10	12,477	112~256	12,834	144~289	13,088	177~322	13,342	210~354	13,596	243~387	13,850
	있음	210		256		289		322		354		387	
4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43	12,731	112~289	13,088	144~322	13,342	177~354	13,596	210~387	13,850	243~420	14,104
	있음	243		289		322		354		387		420	
5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76	12,985	112~322	13,342	144~354	13,596	177~387	13,850	210~420	14,104	243~453	14,358
	있음	276		322		354		387		420		453	
6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308	13,239	112~354	13,596	144~387	13,850	177~420	14,104	210~453	14,358	243~486	14,612
	있음	308		354		387		420		453		486	

<표 11>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31	11,166	112-177	11,523	144-210	11,777	177-243	12,031	210-276	12,285	243-308	15,539
	있음	131		177		210		243		276		308	
2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177	11,523	112-223	11,880	144-256	12,134	177-289	12,388	210-322	12,642	243-354	12,896
	있음	177		223		256		289		322		354	
3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10	11,777	112-256	12,134	144-289	12,388	177-322	12,642	210-354	12,896	243-387	13,150
	있음	210		256		289		322		354		387	
4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243	12,031	112-289	12,388	144-322	12,642	177-354	12,896	210-387	13,150	243-420	13,404
	있음	243		289		322		354		387		420	
5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342	
	미약	66-276	12,285	112-322	12,642	144-354	12,896	177-387	13,150	210-420	13,404	243-453	13,658
	있음	276		322		354		387		420		453	
6인	없음	66		112		144		177		210		243	
	미약	66-308	12,539	112-354	12,896	144-387	13,150	177-420	13,034	210-453	13,658	243-486	13,912
	있음	308		354		387		420		453		486	

<표 12> 2010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기준표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

(단위: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없음	25	42~101	43	57~136	56	68~162	68	78~187	81	89~212	93	100~237
2인	(소 득 은 해당 금액	25	57~136	43	72~172	56	83~197	68	93~222	81	104~247	93	114~273
3인	이하 재산 의 소득환	25	68~162	43	83~197	56	93~222	68	104~247	81	114~273	93	125~298
4인	산액은 해	25	78~187	43	93~222	56	104~247	68	114~273	81	125~296	93	136~323
5인	당 금액이 상~ 미만	25	89~212	43	104~247	56	114~273	68	125~298	81	136~323	93	146~348
6인	일 때)	25	100~237	43	114~273	56	125~298	68	136~323	81	146~348	93	157~373

<2010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표 13>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1인	없음 (소 득 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 은 금액이 상일 때)	25	14,316~ 15,719	43	14,673~ 16,569	56	14,927~ 17,174	68	15,181~ 17,778	81	15,435~ 18,383	93	15,689~ 18,988
2인		25	14,673~ 16,539	43	15,030~ 17,419	56	15,284~ 18,023	68	15,538~ 18,628	81	15,792~ 19,233	93	16,046~ 19,838
3인		25	14,927~ 17,174	43	15,284~ 18,023	56	15,538~ 18,628	68	15,792~ 19,233	81	16,046~ 19,838	93	16,300~ 20,442
4인		25	15,181~ 17,778	43	15,538~ 18,628	56	15,792~ 19,233	68	16,046~ 19,838	81	16,300~ 20,442	93	16,554~ 21,047
5인		25	15,435~ 18,383	43	15,792~ 19,233	56	16,046~ 19,838	68	16,300~ 20,442	81	16,554~ 21,047	93	16,808~ 21,652
6인		25	15,689~ 18,988	43	16,046~ 19,838	56	16,300~ 20,442	68	16,554~ 21,047	81	16,808~ 21,652	93	17,062~ 22,257

<표 14> 부양의무자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1인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 때)	25	11,866~13,269	43	12,223~14,119	56	12,477~14,724	68	12,731~15,328	81	12,985~15,933	93	13,239~16,538
2인		25	12,223~14,119	43	12,580~14,989	56	12,834~15,573	68	13,077~16,178	81	13,342~16,783	93	13,596~17,388
3인		25	12,477~14,724	43	12,834~15,573	56	13,088~16,178	68	13,342~16,783	81	13,596~17,388	93	13,850~17,992
4인		25	12,731~15,328	43	13,088~16,178	56	13,342~16,783	68	13,596~17,388	81	13,850~17,992	93	14,104~18,597
5인		25	12,985~15,933	43	13,342~16,783	56	13,596~17,388	68	13,850~17,992	81	14,104~18,597	93	14,358~19,202
6인		25	13,239~16,538	43	13,596~17,388	56	13,850~17,992	68	14,104~18,597	81	14,358~19,202	93	14,621~19,807

<표 15> 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단위:만원)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부양능력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1인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미만일 때)	25	11,166~12,569	43	11,523~13,419	56	11,777~14,024	68	12,031~14,628	81	12,285~15,233	93	12,539~15,838
2인		25	11,523~13,419	43	11,880~14,269	56	12,134~14,873	68	12,388~15,478	81	12,642~16,083	93	12,896~16,688
3인		25	11,777~14,024	43	12,134~14,873	56	12,388~15,478	68	12,642~16,083	81	12,896~16,688	93	13,150~17,292
4인		25	12,031~14,628	43	12,388~15,478	56	12,642~16,083	68	12,896~16,688	81	13,150~17,292	93	13,404~17,897
5인		25	12,285~15,233	43	12,642~16,083	56	12,896~16,688	68	13,150~17,292	81	13,404~17,897	93	13,658~18,502
6인		25	12,539~15,838	43	12,896~16,688	56	13,150~17,292	68	13,404~17,897	81	13,658~18,502	93	13,912~19,107

(3) 최저생계비기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기준 보장 기본선은 통상 최저생계비로 일컬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선(Poverty Line)으로 불리는 최저생계비란 인간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품, 주거, 피복 등 기본적인 용도에 필요한 자원을 의미하는데 공고의 정책개입으로 보호하여야할 정책대상 즉 빈곤 인구를 상징하는 기준은 시대 및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²³⁾

최저생활수준은 최저생존수준, 최저생계수준, 표준생계수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최저생존수준은 생존만은 가능하되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하며, 최저생계수준은 생존이 가능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생활 유지와 노동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고, 표준생계수준은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선택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수준으로서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법제에서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이르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활수준의 보장과 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에 의무지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

23) 이정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글로벌, 2009, 100면

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제10조제2항에서는 최저생계비의 공표의무를 제3항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규정을 보건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생활의 수준은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며,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해석하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고 한바 있다.²⁵⁾

이렇게 보건대, 헌법을 비롯한 사회보장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생활의 수준은 생존이 가능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생활 유지와 노동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생계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바로 이러한 개념과 해석에 충실한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 아니라 각종 빈곤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형성의 기준이다.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의 기준일 뿐 아니라 급여산정의 기준이며, 또 부양의무의 판정기준 및 차상위계층

2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640면 이하;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516면 이하; 김문현,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법학논집』 제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16면;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구체적 권리로서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59면 이하 참조

25) 헌재결 1997.5.29 94헌마33; 헌재결 2004.10.28 2002헌마 328 참조

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최저생계비는 해당 사회의 빈곤선에 해당한다. 최저생계비의 결정기준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법 제6조).

<표 16> 2010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09(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2,172씩 증가(7인 가구 2,119,607원)

제 2 절 긴급복지지원법

1. 서 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여기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한 구호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①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

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예정하고 있다(제3조).

2. 운영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 지원의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동일 발병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가정폭력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보충성의 원칙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실시한다. 하지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한다.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복지지원은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3.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

긴급지원급여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등이 있다. 이들 중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

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지원급여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계지원은 현금지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2개월 지원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장이 가능하다.

(2)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를 포함함)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여기에는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확인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범위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의료지원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여기에는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이 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거지원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자에 대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5)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그 내용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이다.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즉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청 차상위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 특수시혜사업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학생관리소홀시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한다. 지원기간은 분기단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6)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여기에는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표 17> 긴급지원의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기 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90만원 (09.5 이후 기준)	1개월 (최장 6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회 (최장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 중소도시 4인 기준 32만원	1개월 (최장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4인가구 기준 110만원	1개월 (최장 6개월)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 17만원 - 중 27만원 - 고 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최장 2회)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 68만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해산비 : 50만원(1회지원) • 장제비 : 50만원(1회지원) • 전기요금 : 50만원이내(1회지원) • 전기요금 : 50만원이내(1회지원) - 단전되어 1개월이상 경과된 때	1개월 (최장 6개월)
타제도 연계	• 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차상위의료급여 등과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

<표 18> 2009년 긴급복지지원현황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건수(건)	94,683	45,229	40,095	438	61	3,758	5,102
지원금액(백만원)	79,450	25,675	52,056	114	20	1,088	497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

제 3 장 입법평가

제 1 절 이용가치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기능

(1)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의 지향점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적 합의하에 실업·빈곤·질병·장애·노령·사망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재를 제공하여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National Minimum 개념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은 각국의 경제 및 사회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복지정책의 목표가 제한적으로 절대빈곤을 구제하는 차원의 최저수준의 복지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최적수준의 복지로 확장되어야 한다.²⁶⁾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생계보호차원을 벗어나 소득, 건강, 고용, 주거 등 인간다운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한 각 영역별 최소한의 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하나의 제도에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내용, 즉 소득, 건강, 고용, 주거 등으로 포괄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이 제도의 온전한 시행만으로도 저소득층의 각종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26) 이정관, 전게서, 87-88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조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수급조건은 해당 사회의 빈곤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²⁷⁾ 이러한 특징들은 함께 작용하여 수급요건에 있어서 자의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내재해 있으며, 따라서 객관화의 필요성이 어떠한 사회보장영역에 비해서도 크다는 것을 알려 준다.²⁸⁾ 둘째, 빈곤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갖는다. 따라서 수급조건 역시 종합적인 기준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다양한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부에서, 그리고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평가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셋째, 수급조건은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여야 하며, 따라서 급여는 최저생활을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야 한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가변적이다. 즉 이미 수급요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수준이 결정되며, 따라서 양자가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구조는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수급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심사의 충실성 여부, 즉 집행의 문제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사의 충실성 여부는 급여의 여부 뿐 아니라 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7)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 “재산권과 사회보장청구권”, 고시연구(1991.5), 75면 이하 참조.

28)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예컨대 남찬섭,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255면 이하 참조.

(2) 빈곤구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

빈곤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난 사회문제이다.²⁹⁾ 빈곤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며, 또 개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여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른 개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³⁰⁾ 또 오늘날 개인의 경제생활이 공적 급부체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빈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즉 빈곤은 개인의 현재의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결과 소득에 기초하여 각종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온다. 현재의 빈곤에는 미래의 빈곤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곤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수단은 아니다. 빈곤은 정형화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원인들은 다양한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빈곤의 모든 원인과 그것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빈곤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말을 바꾸어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정책에 관련된, 다른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들과 기능분담과 협력관계 속에서 빈곤을 보호하는 과제를 갖는다.

29) 빈곤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준현,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 집문당, 2008, 223면 이하; 김태성/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7, 15면 이하 참조.

30) 빈곤의 역사 일반에 대해서는 예컨대 Wolfram Fischer, *Armut in der Geschichte* (Vandenhoeck und Rupert, 1982) 참조.

31) 오늘날 모든 사회적 위험에 수반되는 이른바 제2차적 위험의 문제이다. 질병의 경우에 나타나는 2차적 위험의 구조에 대해서는 예컨대 전광석, 전계서, 237면 이하 참조.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차적 기능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다. 현행법상 생계급여가 소득보장을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생계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계비기준에 따른 최저생활유지에 그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어 온 탓에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기능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지만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등과 같이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진 소득보장제도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형식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특성별 복지 욕구에 다른 추가 지출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적용범위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제도 간에 대부분의 대상이 겹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고용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활급여를 통해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이 근로생활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연계형 복지체제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본래 고용보장정책이란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교육·훈련, 고용알선,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활지원사업은 근로가

능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의료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기능을 담당한다. 의료보장이란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필수적 혹은 부가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 저소득층의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제도간의 경계 영역에 위치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4) 주거보장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안정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보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주거보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과 기능

(1) 입법목적 및 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기

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한시적 사업이다.³²⁾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의의를 반영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상위목표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을 최상위 목표로 하고 있고, 하위목표로 위기상황에서의 탈출, 그리고 그 수단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보건대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계는 2005년 정부가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안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³³⁾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점을 들고, 기존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동 법안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김한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사회복지실천』 제7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8, 41면

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정부) 검토보고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5, 5면 이하 참조.

입법제안 당시였던 200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기초생활급여 1조9,880억4,500만원과 의료급여 2조1,325억 300만원을 합친 4조1,205억4,800만원으로서 149만5,400여명(76만5천여 가구)을 수급대상으로 통합 및 보충급여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빈곤층의 규모 및 실태에 대한 각종 조사에 의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간지대에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³⁴⁾가 존재하며 빈곤층 중에도 재산 및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따라서,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양극화의 심화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아동유기나 생계형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역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대처를 위한 포괄적 긴급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99년 제정 당시부터 제5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7조제2항의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별도의 조사 없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다.

34) 재산 및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빈곤층이 180만 여명에 이르고,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대적 빈곤층이 230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광범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04년 지원실적을 보면, 458가구(806명)에 대하여 1억원만이 집행되었고, 모든 급여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과는 달리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기대처에 대한 현행 긴급지원체계의 문제점은 그 원인이 법령체계의 불비 또는 예산의 미확보에 있다기보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상 긴급급여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건대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법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그 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체계를 충분히 고려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⁵⁾

35) 2005년 국회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면서도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검토의견서에서는 첫째,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은 현행 법체계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모순·저촉을 피하고 사회적 수요, 행정적 여건,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특히 사회복지 확대하는 관련 법률의 경우 일단 한 번 제정되면 그 자체로서 사실상 불가역성(不可逆性)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한 점, 둘째, 이 법률 안에서 신설하려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수급권자·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전적인 재산·소득조사 없이 선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나,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신청자 또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 셋째,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법령상의 실제적인 요건운영의 경직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법령상 부양의무 규정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동 법률안 제정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3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9> 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급여와 법률안의 긴급지원제도와 비교

구 분	긴급급여제도	긴급지원제도
근 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보 장신청자의 급여실시여부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경우 급여할 수 있음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법안
목 적	· 최저생활보장	· 위기해소 지원
지 원 대 상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 서민층 이하 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 원 내 용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 지원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 설이용·기타 지원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지 원 기 간	· 1월 원칙(1월 연장 가능)	· 1월 원칙(최장 4월까지 지원)
지 원 절 차	· 수급자 신청을 전제로 긴급한 필 요시 지원	· 지원요청이나 주변 신고에 담당 자가 의해 현장 확인 후 지체없이 지원
실적 및 유사사례	· 458가구 1억원 집행('04)	· 위기가정지원사업('04.10~12) ³⁶⁾ - 27천가구 154억원 집행

3. 평가(포괄성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이용가치분석은 앞
서 서론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야 한다. 그리고 입법목적의 달성도는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

36)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권기금(국무총리실 소관기금)
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으로서, 이혼·가정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상당소에 도움
을 요청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2개월) 및 의료비(200만원이내/인)를 지원하는 것임.
3개월간 실적은 2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154억 원이 집행되었다.

성을 지표로 분석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빈곤층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당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일시성·긴급성을 요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 포괄성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정하며, 급여의 충분성 평가와 체계성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제반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각 절을 달리하여 분석한다.

포괄성 평가는 어느 정도의 빈곤 수급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흡수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빈곤층 구제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 법제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비수급 빈곤층보다 수급빈곤층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급빈곤층보다 비수급빈곤층의 비율이 보다 더 광범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행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원인을 분설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10년째 전체 국민 대비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목적은 고려해 볼 때, 현행법의 효과성에 의심을 가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밝힌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수가 수급빈곤층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표 20>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와 포괄비율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월 이전	10월 이후				
실제수급인원(A)	1,285	1,483	1,520	1,489	1,442	1,351	1,374	1,424
총인구수(B)	46,287	46,617	47,008		47,357	47,622	47,859	48,039
포괄비율(A/B)%	2.8	3.2	3.2	3.2	3.0	2.8	2.9	3.0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제수급인원(A)	1,513	1,534	1,550	1,530	1,578	1,573		
총인구수(B)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포괄비율(A/B)%	3.1	3.2	3.2	3.1	3.2	3.2		

자료: 1) 1998~2001년 수급자 자료: 박봉후 외 『사회복지시스템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2.
 2) 2002~2009년 수급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3) 2010년 수급자 자료: 2010년 6월말 현재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4) 인구자료: 각년도 연앙추계인구,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추계인구.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빈곤층의 파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조사주체마다 각각 상이한 기준에 따라 비수급빈곤층을 측정한 탓에 그 수치와 비율이 저마다 달라지고 있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테면, 2009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³⁷⁾에 의하면,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약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³⁸⁾

37)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자료집, 2009. 3.12.,

38) 강명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대안 방향-비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입법화를 위한 기초연구-”, 빈곤퇴치연구포럼, 2010, 23면 이하; 어기구/전영호,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평가 및 대안연구”, 『연구총서』 2009-09,

아울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³⁹⁾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추경예산 편성당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약 340만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의 준비자료에 의하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까지도 고려한다면 약 600만 여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⁴⁰⁾

이러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추계는 그 결과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57만 여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적게는 수급자의 약 2배, 많게는 약 4배 가까이 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가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비록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바 있다.⁴¹⁾ 그리고 2009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비수급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였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80면 이하;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31면 이하 참조

39)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2010, 48면 이하 참조

40) 강명순, “강명순 의원 2010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0. 10. 26 참조

41) 2005년 7월에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합 의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있음”을 판정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30%(2009년 기준 243만원)는 2009년 전국가구 평균소득(344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로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비해 노인, 아동,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의 비율이 더 높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⁴²⁾에 따르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의 월소득은 65만3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54.3%(월 14만5600원)에 불과했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86.2%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지출에 비해 소득이 10만2000원가량 많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매달 4만4200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42) 김미숙 외 11인, “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 『정책 2009-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참조

<표 21>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가구소득 및 지출 비교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구소득 및 지출(단위:만원)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수급자	소득 100% 미만 중 비수급자	소득 100% 이상 ~120% 미만	소득 120% 이상
총소득	80.67	65.35	134.28	229.28
평균지출	70.47	69.77	118.08	156.80
총소득-평균지출	10.20	-4.42	16.20	72.39

*총소득=(근로·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사회보험+민간보험+정부보조금+민간보조+기타소득)/12

*소득 100%는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

따라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광범위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빈곤층을 최대한 포섭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비수급빈곤층 공존문제의 중심에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적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사각지대의 존재 원인

위 선행 연구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의 존재 원인은 크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 무자 기준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인정액 기준의 비 현실성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소득인정액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득인정액 제도는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소득인정액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을 당시의 이원화된 기준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⁴³⁾

첫째, 기존 수급권자 중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기존 수급권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을 넘지 않아 간신히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가구들이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해 아예 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수급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초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지나치게 높다. 소득환산은 수급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기초공제액의 경우 지역별 차이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으며,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비현실적이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 협소성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잔여적(殘餘的),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던 방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와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출가한 아들과 딸(사위), 조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배우자, 다른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배우자, 별

43)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김상균 외11인,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565-566면 참조

거상태에 있는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와 그의 부모는 자녀의 부양의무자, 전남편과 부인의 자녀, 어렸을 때 가난하여 남의 집에 맡기고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된 자녀, 이혼하여 더부살이로 살고 있는 형제·자매 등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다양한 부양의무자의 유형이 있다.

이들은 사실 부양의무자라고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피부양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한 부양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부양비 또한 명절이나 생일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노인·이혼녀·장애인·미혼의 자녀들은 부양의무관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개별가정을 구성하여야지만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병에 있는 노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부양의무자는 이들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개인단위의 급여범위를 넓혀 부양의무관계로부터 보다 더 자유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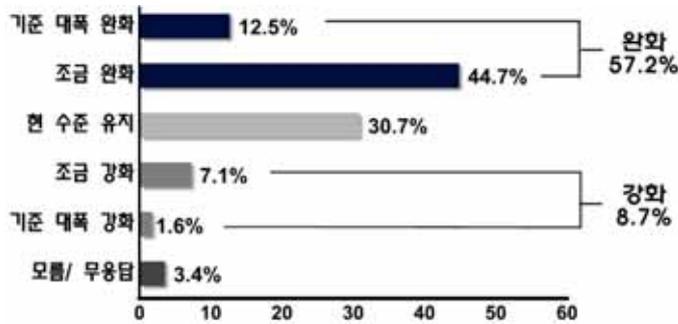
제 2 절 수급요건에 대한 평가

1.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

(1) 전체 응답자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로 높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한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로 나타났다.

【그림 6】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수범자)



(Base: 전체 응답자 933명)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6.5%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머물렀다.

한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기초 탈락자 77.2%, 긴급 탈락자 75.5%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5점 기준 평균(mean값)도 3.97과 3.9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22>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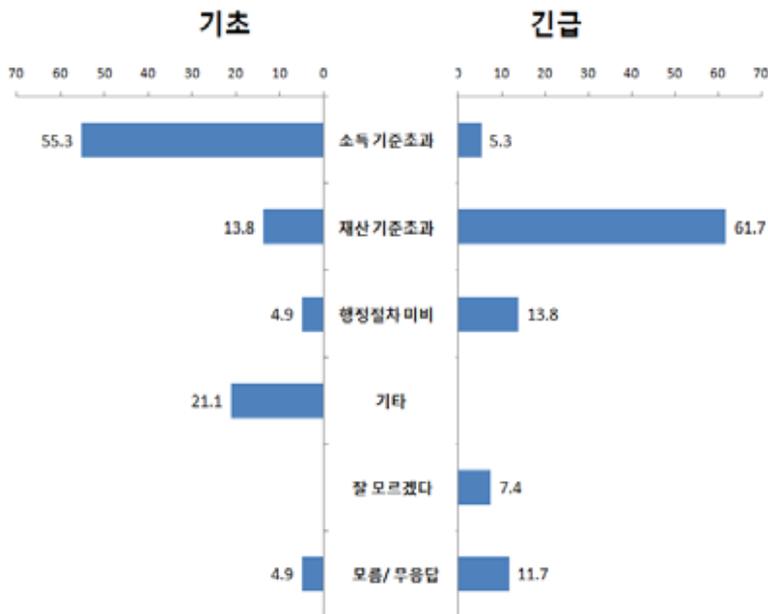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완화	유지	강화	평균
계(933)		57.2	30.7	8.7	3.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	52.3	33.6	12.3	3.50
	탈락자 (123)	77.2	8.9	7.3	3.97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	50.2	40.8	5.5	3.53
	탈락자 (94)	75.5	12.8	5.3	3.98

(2) 비수급자(수급탈락자) 분석

수급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N=217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N=123)들은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수준초과’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N=94)들은 ‘본인 및 가족의 재산 기준 초과’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신청자는 소득이, 긴급복지 신청자는 재산이 각각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응답자들은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등 기타 이유’(기초), ‘관련 서류 등 행정절차 미비’(긴급) 등이 신청 탈락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림 7】 수급신청 탈락 이유



(Base: 전체 비수급(탈락)자 217명)

<표 23> 수급신청 탈락 이유

구 분(%)	본인/가족 의 소득 기준초과	본인/가족 의 재산 기준초과	관련서류 등 행정절차 미비	기타(공무원 주관적 판단)	잘 모르 겠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17명)	33.6	34.6	8.8	12.0	3.2	7.8
기초탈락자 (123명)	55.3	13.8	4.9	21.1		4.9
긴급탈락자 (94명)	5.3	61.7	13.8		7.4	11.7

(Base: 전체 탈락자 2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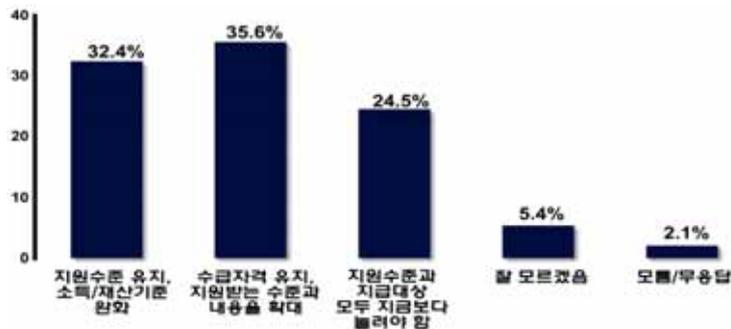
통계적 검정(χ^2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

1) 전체 응답자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 본 결과,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32.4%,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24.5%로 응답되었다.

【그림 8】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Base: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368명)

2) 수급자-비수급자 간 응답 비교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들은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자격이 기준에 부합되기에 자격 기준 완화보다는 지원 수준과 내용 면에서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반면, 비수급자들은 현 지원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다. 이 결과는 두 집단 사이에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결과로서 통계적 검정(χ^2 -Test)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 선정기준 개선의견 비교(수급자 vs. 비수급자)

구 분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수급자 (368명)	25.3 %	45.7 %	21.5 %	5.7%	1.9%
비수급자 (166명)	48.2 %	13.3 %	31.3 %	4.8%	2.4%
전체 (534명)	32.4 %	35.6 %	24.5 %	5.4%	2.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간 응답 비교

각각의 법에 적용받는 수급자들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은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의 수준과 내용면에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들은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를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수급자 이면서도 비수급자들의 의견 중 가장 많았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완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긴급복지지원법 상 수급자가 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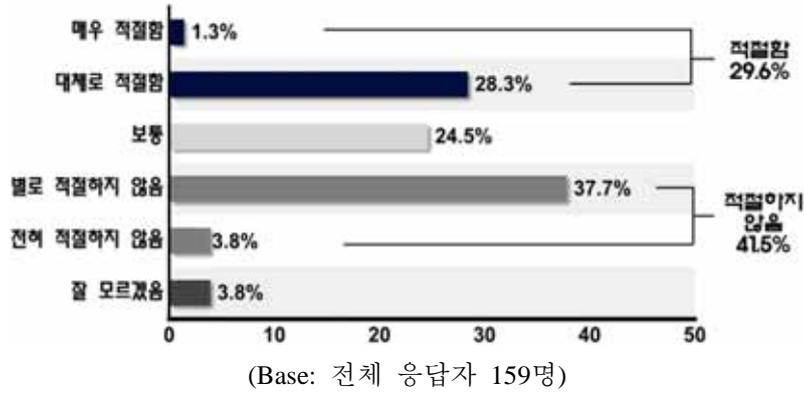
<표 25> 선정기준 개선의견 비교(기초 vs. 긴급)

구 분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기초생활보장법 (212명)	31	111	49	15	6
	14.6%	52.4%	23.1%	7.1%	2.8%
긴급복지지원법 (156명)	62	57	30	6	1
	39.7%	36.5%	19.2%	3.8%	0.6%
전체(368명)	93	168	79	21	7
	25.3%	45.7%	21.5%	5.7%	1.9%

4) 담당 공무원의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수급자들의 의견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현행 복지 지원법의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응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29.6%(매우 1.3%+대체로 28.3%)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1.5%(별로 37.7%+전혀 3.8%)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더 우세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4.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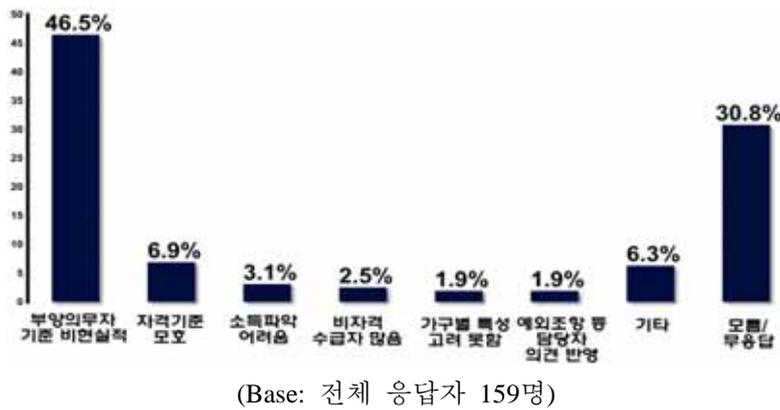
【그림 9】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공무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그 이유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다양한 응답을 얻었다.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적이다’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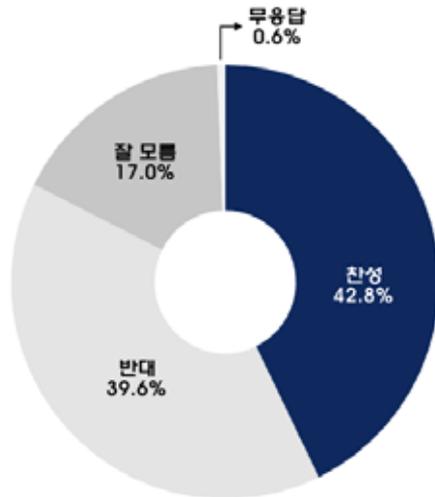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자격기준(금융자산 등) 모호’ 6.9%, ‘소득과약이 어려움’ 3.1%, ‘비자격 수급자가 많음’ 2.5%, ‘가구/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1.9% 등이 응답되었다.

【그림 10】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평가에 대한 근거(공무원)



①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 선정기준 배제방안

수급자 선정 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를 선정기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여부를 살펴보았다. ‘찬성’의견은 42.8%, ‘반대’의견은 39.6%로 나타나 찬성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보류의견은 1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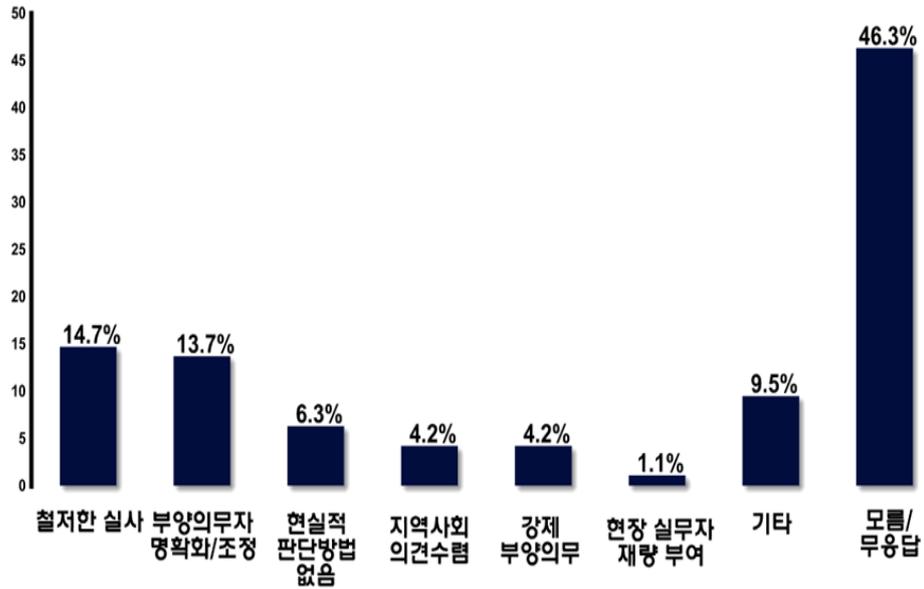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②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배제방안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를 선정기준에서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통화이력 확인이나 주변 보증서 등 철저한 실사’ 14.7%,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조정’ 13.7%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음’ 6.3%, ‘지인 보증 등 지역사회 의견수렴’ 4.2%, ‘강제 부양의무 부여’ 4.2%, ‘현장 실무자 재량 부여’ 1.1% 등이 나타나며, 기타 응답이 9.5%였다.

【그림 11】 배제방안에 대한 비율



(Base: 전체 응답자 중 배제방안 찬성 및 중립응답자 95명_반대자 69명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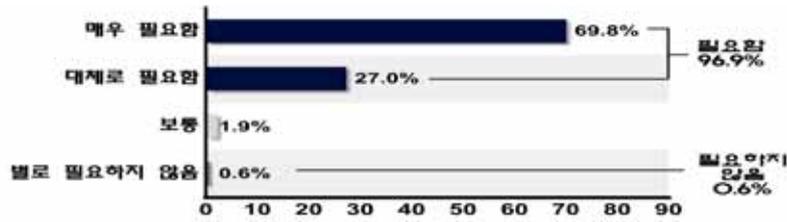
③ 관련기관에서의 상시적 자산과약 방안 필요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과약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자 자산을 과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찬성이견이 69.8%로 높았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0%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림 12】 상시적 자산조사의 필요성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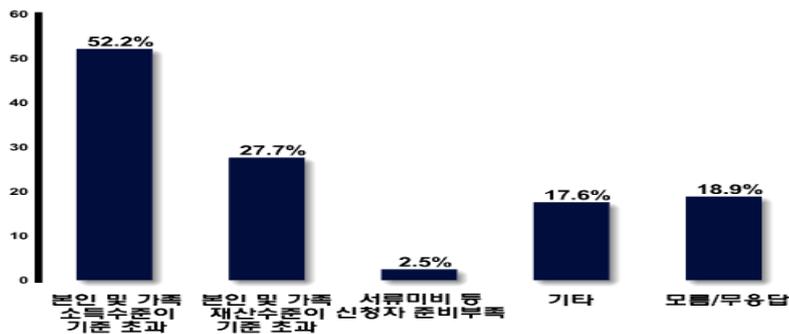
④ 수급탈락 사유

현장에서 느끼는 심사 탈락자들의 탈락사유를 질문한 결과,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재산기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가 27.7%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라는 응답의 합이 80%에 달해 전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신청자의 준비부족’이 2.5%로 나타나며, 그 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가족구성 변화(자녀 성장 등)로 지위 상실’ 등이 기타 응답으로 답변되었다.

【그림 13】 수급탈락사유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4)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현재 기초생활 보장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N=716명)에게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72.1%로 높게 나타나며, 부정평가는 2.9%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3.83점)에 비해 긴급수급자(4.25점)에서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검정(χ^2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공무원의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구 분	긍정평가 (잘 진행)	보 통	부정평가 (잘못 진행)	평 균	잘 모르 겠다	모름/ 무응답
전 체 (716)	72.1%	18.7%	2.9%	4.01	3.9%	2.4%
기초수급자 (405)	64.9%	24.2%	4.7%	3.83	4.9%	1.2%
긴급수급자 (311)	81.4%	11.6%	0.6%	4.25	2.6%	3.9%

(Base: 전체 수급자 716명)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는 ‘신청자의 하소연이나 탈락자의 항의 등 정서적 문제가 심하다’는 응답이 50.3%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담당인력에 비해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8%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9.4%, ‘인증 및 결재 등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6.9%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그림 13-1】 복지 관련 업무 처리시 가장 부담되는 것(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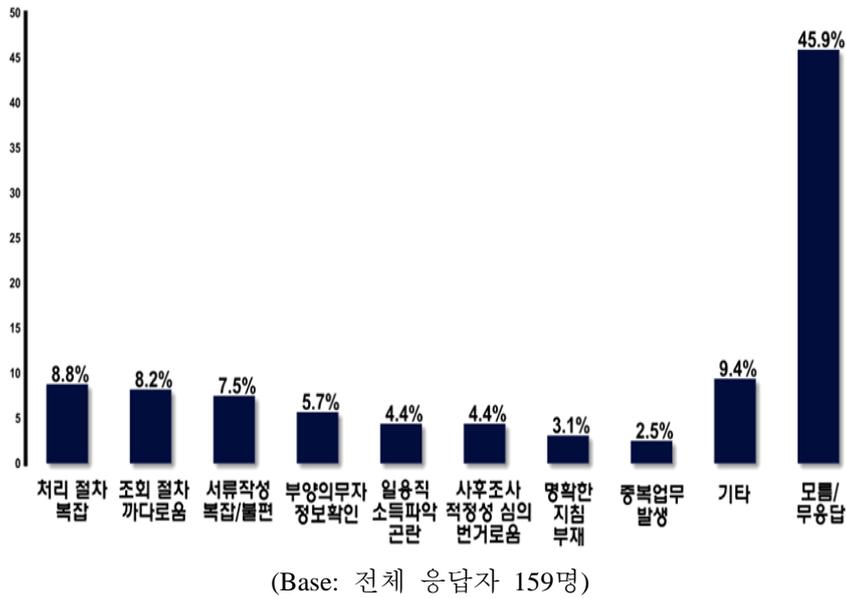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위 【그림 13-1】에서 응답한 부담되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간소화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질문한 결과, ‘심의/결재 등 처리절차 복잡’ 8.8%, ‘조회 절차 까다롭고 비효율적 (본인 동의절차 등)’ 8.2%, ‘서류작성(신청서 등) 복잡/불편’ 7.5%, ‘부양 의무자 정보확인 어려움(타 지역 거주, 금융정보 등)’ 5.7%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과약 곤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의 번거로움’, ‘명확한 지침 부재로 혼란’, ‘중복업무(전산 및 수기 자료 2중 입력 등) 발생’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4】 간소화 시켜야 할 부분(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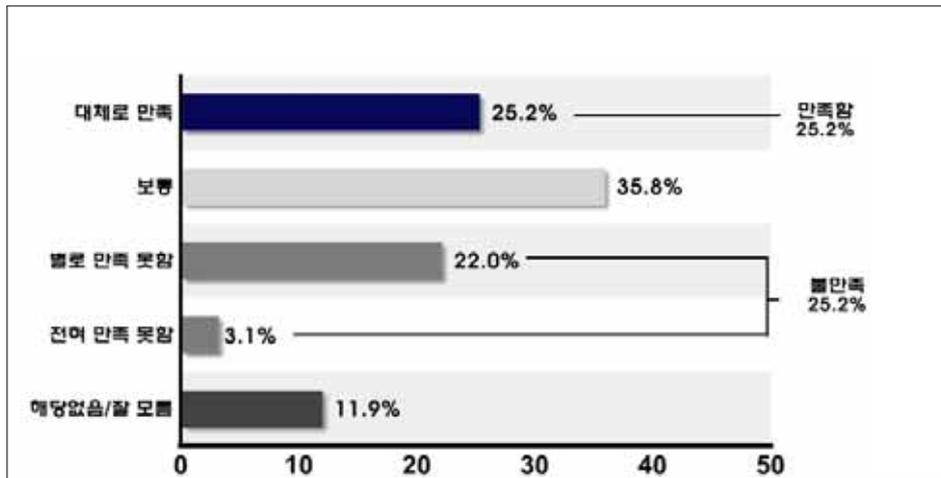
2. 종합평가

일선 공무원(Base: 전체 응답자 159명)들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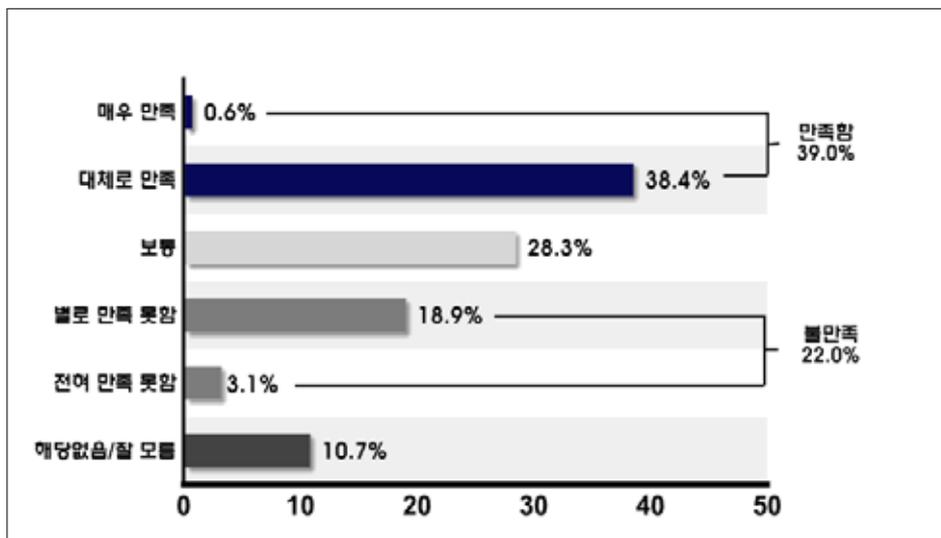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만족’ 25.2%, ‘불만족’ 25.2%로 대등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나며, 5점 기준의 평점은 2.96점이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만족’ 39.0%, ‘불만족’ 22.0%로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보통’은 28.3%였다. 5점 기준의 평점은 3.16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그림 15-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평가



<표 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 평가

단위:%	사례수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해당 없음/잘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 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25.2	35.8	22.0	3.1	1.9	25.2	35.8	25.2	11.9	2.9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6.7	41.7	20.8	6.3		16.7	41.7	27.1	14.6	2.80
	6대 광역시	(38)	13.2	31.6	34.2	2.6	2.6	13.2	31.6	36.8	15.8	2.68
	중소도시	(44)	36.4	34.1	18.2	2.3	4.5	36.4	34.1	20.5	4.5	3.15
	기타 농어촌	(29)	37.9	34.5	13.8			37.9	34.5	13.8	13.8	3.28
지역	서울	(33)	15.2	42.4	18.2	9.1		15.2	42.4	27.3	15.2	2.75
	부산	(5)		60.0					60.0		40.0	3.00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2.25
	인천	(3)		66.7					66.7		33.3	3.00
	광주	(27)	29.6	33.3	29.6			29.6	33.3	29.6	7.4	3.00
	대전	(1)				100.0				100.0		1.00
	울산	(4)		25.0	75.0				25.0	75.0		2.25
	경기	(15)	20.0	40.0	26.7			20.0	40.0	26.7	13.3	2.92
	강원	(5)		60.0					60.0		40.0	3.00
	충북	(2)	50.0	50.0				50.0	50.0			3.50
	충남	(6)	33.3	33.3			16.7	33.3	33.3		16.7	3.50
	전북	(4)	25.0		25.0			25.0		25.0	50.0	3.00
	전남	(7)	42.9	14.3	28.6			42.9	14.3	28.6	14.3	3.17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50
경남	(38)	42.1	34.2	21.1	2.6		42.1	34.2	23.7		3.16	
성별	남성	(33)	45.5	21.2	18.2	3.0	6.1	45.5	21.2	21.2	6.1	3.24
	여성	(126)	19.8	39.7	23.0	3.2	0.8	19.8	39.7	26.2	13.5	2.89
연령별	30대	(31)	29.0	35.5	16.1	6.5		29.0	35.5	22.6	12.9	3.00
	40대	(75)	17.3	34.7	29.3		4.0	17.3	34.7	29.3	14.7	2.85
	50대	(43)	34.9	37.2	18.6	2.3		34.9	37.2	20.9	7.0	3.13
	60대	(8)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14
직급	6급	(12)	16.7	58.3	8.3	8.3		16.7	58.3	16.7	8.3	2.91
	7급	(63)	34.9	30.2	22.2	1.6	4.8	34.9	30.2	23.8	6.3	3.11
	8급	(55)	20.0	38.2	25.5			20.0	38.2	25.5	16.4	2.93
	9급	(18)	16.7	38.9	16.7	5.6		16.7	38.9	22.2	22.2	2.86
직렬	행정	(18)	33.3	22.2	5.6	5.6	11.1	33.3	22.2	11.1	22.2	3.25
	사회복지	(135)	23.7	37.8	25.2	3.0	0.7	23.7	37.8	28.1	9.6	2.92
	보건	(6)	33.3	33.3				33.3	33.3		33.3	3.5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33.3	50.0			16.7	33.3	50.0		2.67
	1년~3년 이하	(14)	35.7	21.4	21.4			35.7	21.4	21.4	21.4	3.18
	3년~5년 이하	(28)	17.9	46.4	21.4	3.6		17.9	46.4	25.0	10.7	2.88
	5년~7년 이하	(32)	25.0	25.0	28.1		3.1	25.0	25.0	28.1	18.8	2.96
	7년 이상	(26)	23.1	38.5	19.2	3.8	3.8	23.1	38.5	23.1	11.5	2.95
	무응답 (응답거부)	(44)	31.8	40.9	15.9	2.3	2.3	31.8	40.9	18.2	6.8	3.1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43.8	37.5	6.3		6.3	43.8	37.5	6.3	6.3	3.43
	3~6개월 미만	(6)			50.0					50.0	50.0	2.00
	6~12개월 미만	(22)	22.7	27.3	31.8		4.5	22.7	27.3	31.8	13.6	2.89
	1년~2년 미만	(27)	33.3	25.9	7.4		3.7	33.3	25.9	7.4	29.6	3.39
	2년 이상	(87)	21.8	43.7	25.3	5.7		21.8	43.7	31.0	3.4	2.85

<표 28> 긴급복지지원법 전반적 평가

단위:%	사례수	매우 만족하다	대체로 만족	보통이다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해당없음/잘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0.6	38.4	28.3	18.9	3.1	2.5	39.0	28.3	22.0	8.2	3.1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7.1	31.3	16.7	6.3	4.2	27.1	31.3	22.9	14.6	2.97
	6대 광역시	(38)	2.6	36.8	18.4	34.2		5.3	39.5	18.4	34.2	2.6	3.09
	중소도시	(44)		50.0	34.1	9.1			50.0	34.1	9.1	6.8	3.44
	기타 농어촌	(29)		41.4	27.6	17.2	6.9		41.4	27.6	24.1	6.9	3.11
지역	서울	(33)		21.2	33.3	18.2	6.1	6.1	21.2	33.3	24.2	15.2	2.88
	부산	(5)		40.0	40.0	20.0			40.0	40.0	20.0		3.20
	대구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인천	(3)		66.7		33.3			66.7		33.3		3.33
	광주	(27)		44.4	14.8	25.9		3.7	44.4	14.8	25.9	11.1	3.22
	대전	(1)				100.0					100.0		2.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33
	경기	(15)		40.0	26.7	13.3	6.7		40.0	26.7	20.0	13.3	3.15
	강원	(5)		60.0	40.0				60.0	40.0			3.6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16.7	16.7		66.7		33.3		3.17
	전북	(4)		50.0	50.0				50.0	50.0			3.50
	전남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경북	(3)		66.7					66.7			33.3	4.00
경남	(38)		36.8	36.8	18.4	2.6		36.8	36.8	21.1	5.3	3.14	
성별	남성	(33)	3.0	42.4	33.3	9.1	3.0		45.5	33.3	12.1	9.1	3.37
	여성	(126)		37.3	27.0	21.4	3.2	3.2	37.3	27.0	24.6	7.9	3.11
연령별	30대	(31)		32.3	25.8	22.6		3.2	32.3	25.8	22.6	16.1	3.12
	40대	(75)		33.3	33.3	17.3	4.0	2.7	33.3	33.3	21.3	9.3	3.09
	50대	(43)	2.3	41.9	25.6	23.3	2.3	2.3	44.2	25.6	25.6	2.3	3.20
	60대	(8)		100.0					100.0				4.00
직급	6급	(12)	8.3	58.3		25.0	8.3		66.7		33.3		3.33
	7급	(63)		42.9	30.2	17.5	1.6	1.6	42.9	30.2	19.0	6.3	3.24
	8급	(55)		34.5	32.7	18.2	3.6	3.6	34.5	32.7	21.8	7.3	3.10
	9급	(18)		33.3	27.8	22.2			33.3	27.8	22.2	16.7	3.13
직렬	행정	(18)		44.4	22.2	11.1		11.1	44.4	22.2	11.1	11.1	3.43
	사회복지	(135)	0.7	36.3	28.9	20.7	3.7	1.5	37.0	28.9	24.4	8.1	3.11
	보건	(6)		66.7	33.3				66.7	33.3			3.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1년~3년 이하	(14)		42.9	21.4	14.3			42.9	21.4	14.3	21.4	3.36
	3년~5년 이하	(28)		25.0	35.7	21.4	3.6	7.1	25.0	35.7	25.0	7.1	2.96
	5년~7년 이하	(32)		43.8	28.1	12.5	6.3		43.8	28.1	18.8	9.4	3.21
	7년 이상	(26)		38.5	26.9	26.9		3.8	38.5	26.9	26.9	3.8	3.13
	무응답(응답거부)	(44)	2.3	47.7	25.0	18.2	2.3	2.3	50.0	25.0	20.5	2.3	3.31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29
	3~6개월 미만	(6)		50.0	16.7	16.7			50.0	16.7	16.7	16.7	3.40
	6~12개월 미만	(22)		36.4	22.7	27.3		4.5	36.4	22.7	27.3	9.1	3.11
	1년~2년 미만	(27)		51.9	25.9	14.8		3.7	51.9	25.9	14.8	3.7	3.40
	2년 이상	(87)	1.1	34.5	29.9	18.4	5.7	2.3	35.6	29.9	24.1	8.0	3.08

제 3 절 급여별 충분성 평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빈곤층 구제를 위한 개별급여는 앞서 제시한 입법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와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이하에서는 개별 급여에 대한 만족도, 효과성 및 효용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급여의 충분성을 평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수급인원은 2002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단위로 보면 2005년에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1,568,533명(882,925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이 현존하는 빈곤층의 포섭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절함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포괄성평가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미진하지만 나름대로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기능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29>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변동추이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인 원
2000. 10	688,354	1,488,874	688,354	1,412,473	76,401
2002. 12	691,018	1,352,858	691,018	1,277,298	75,560
2003. 12	717,861	1,376,524	717,861	1,294,809	81,715
2004. 12	753,681	1,425,371	753,681	1,338,997	86,374
2005. 12	809,745	1,515,281	809,745	1,427,613	87,668
2006. 12	831,692	1,535,352	831,692	1,450,234	85,118
2007. 12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8. 12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2009. 12	882,925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

2. 개별급여에 대한 분석결과

(1)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과 지원기간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16】 생계급여에 대한 생각



(Base: 생계급여 수급자 548명, 기초수급자 중 361 + 긴급수급자 중 187)

한편, 통계적 검정(2 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0> 수급자들의 생계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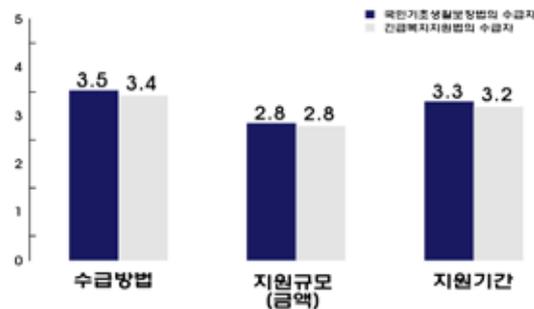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수급 방법	전 체	50.7	29.4	12.8	6.4	3.55
	기초수급자	52.1	27.7	11.9	7.8	3.57
	긴급수급자	48.1	32.6	14.4	3.7	3.51
지원 규모	전 체	22.4	34.9	39.1	2.2	2.81
	기초수급자	22.4	34.6	38.8	2.8	2.81
	긴급수급자	22.5	35.3	39.6	1.1	2.81
지원 기간	전 체	37.2	35.9	15.7	8.6	3.27
	기초수급자	39.3	34.6	14.1	9.7	3.31
	긴급수급자	33.2	38.5	18.7	6.4	3.19

Base: 생계급여 수급자 548명

(2)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17】 주거급여에 대한 생각



(Base: 주거급여 수급자 493명, 기초수급자 중 335 + 긴급수급자 중 158)

한편, 통계적 검정(² 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수급자들의 주거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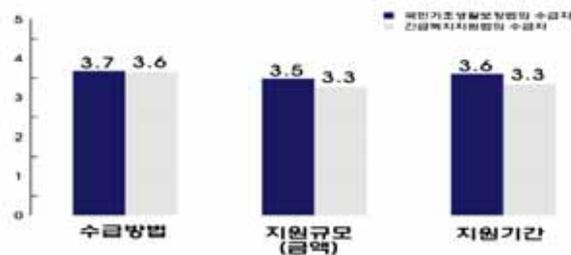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5점)
수급 방법	전 체	47.3	32.9	11.8	6.7	3.50
	기초수급자	48.7	31.6	10.4	8.1	3.53
	긴급수급자	44.3	35.4	14.6	3.8	3.42
지원 규모	전 체	22.3	36.7	35.9	2.8	2.83
	기초수급자	24.5	34.3	35.5	3.6	2.85
	긴급수급자	17.7	41.8	36.7	1.3	2.79
지원 기간	전 체	34.5	39.6	13.0	9.9	3.27
	기초수급자	37.0	37.0	12.5	10.4	3.30
	긴급수급자	29.1	44.9	13.9	8.9	3.19

Base: 주거급여 수급자 493명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 평가에서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림 18】 의료급여에 대한 생각



(Base: 의료급여 수급자 552명, 기초수급자 중 343 + 긴급수급자 중 209)

한편, 통계적 검정(² 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에서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2> 수급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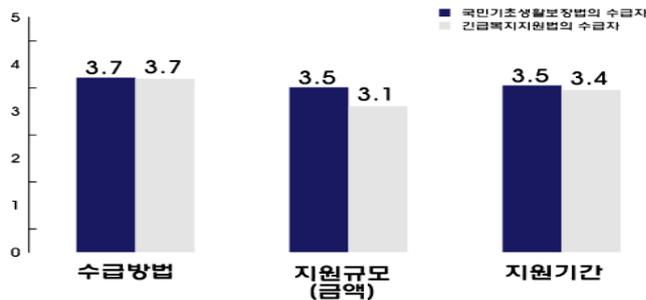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수급 방법	전 체	56.7	28.6	8.2	5.6	3.67
	기초수급자	56.0	28.9	6.1	8.2	3.68
	긴급수급자	57.9	28.2	11.5	1.4	3.65
지원 규모	전 체	49.6	29.3	18.7	1.4	3.40
	기초수급자	53.4	29.4	14.3	2.0	3.48
	긴급수급자	43.5	29.2	25.8	0.5	3.26
지원 기간	전 체	46.7	33.2	10.5	7.6	3.49
	기초수급자	50.1	32.1	6.4	9.6	3.60
	긴급수급자	41.1	34.9	17.2	4.3	3.33

Base: 의료급여 수급자 552명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 기간에 대해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의 평가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교육급여에 대한 생각



(Base: 교육급여 수급자 195명, 기초수급자 중 146 + 긴급수급자 중 49)

한편, 통계적 검정(² 제곱검정: Chi=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3> 수급자들의 교육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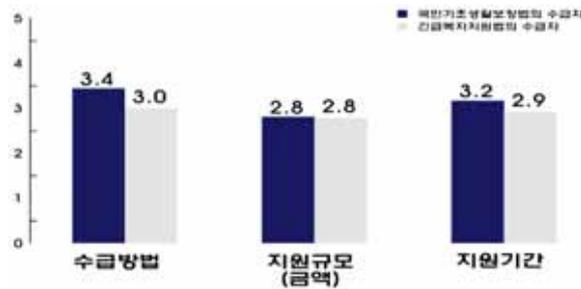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수급 방법	전 체	55.9	20.0	8.2	9.7	3.71
	기초수급자	52.7	19.2	7.5	13.0	3.72
	긴급수급자	65.3	22.4	10.2		3.69
지원 규모	전 체	46.7	25.1	16.4	4.6	3.41
	기초수급자	49.3	25.3	12.3	4.1	3.51
	긴급수급자	38.8	24.5	28.6	6.1	3.11
지원 기간	전 체	45.1	25.6	11.3	10.8	3.52
	기초수급자	42.5	24.7	10.3	13.7	3.55
	긴급수급자	53.1	28.6	14.3	2.0	3.45

Base: 교육급여 수급자 195명

(5) 자활급여

자활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들의 평가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0】 자활급여에 대한 생각



(Base: 자활급여 수급자 146명, 기초수급자 중 128 + 긴급수급자 중 18)

한편, 통계적 검정(2 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 수급자들의 자활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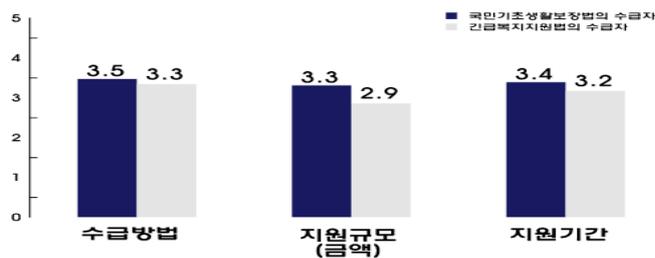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5점)
수급 방법	전 체	37.7	26.0	13.7	10.3	3.39
	기초수급자	39.8	25.8	13.3	9.4	3.44
	긴급수급자	22.2	27.8	16.7	16.7	3.00
지원 규모	전 체	19.2	32.2	32.2	2.7	2.80
	기초수급자	20.3	30.5	33.6	2.3	2.81
	긴급수급자	11.1	44.4	22.2	5.6	2.79
지원 기간	전 체	26.7	29.5	17.1	13.0	3.14
	기초수급자	28.1	28.9	17.2	12.5	3.17
	긴급수급자	16.7	33.3	16.7	16.7	2.92

Base: 자활급여 수급자 146명

(6) 기타급여

기타급여의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한 수급자 평가에서 수급방법과 지원규모, 지원기간 모두 기초 수급자가 긴급지원자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21】 기타 급여에 대한 생각



(Base: 기타급여 수급자 96명, 기초 58 + 긴급 38)

한편, 통계적 검정(χ^2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95% 수준에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수급자들의 기타급여에 대한 평가 비교

구 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평균 (5점)
수급 방법	전 체	34.4	28.1	9.4	8.3	3.41
	기초수급자	34.5	15.5	8.6	10.3	3.47
	긴급수급자	34.2	47.4	10.5	5.3	3.34
지원 규모	전 체	22.9	33.3	16.7	4.2	3.09
	기초수급자	25.9	25.9	8.6	3.4	3.31
	긴급수급자	18.4	44.7	28.9	5.3	2.86
지원 기간	전 체	25.0	34.4	9.4	11.5	3.27
	기초수급자	24.1	24.1	5.2	15.5	3.39
	긴급수급자	26.3	50.0	15.8	5.3	3.17

Base: 기타급여 수급자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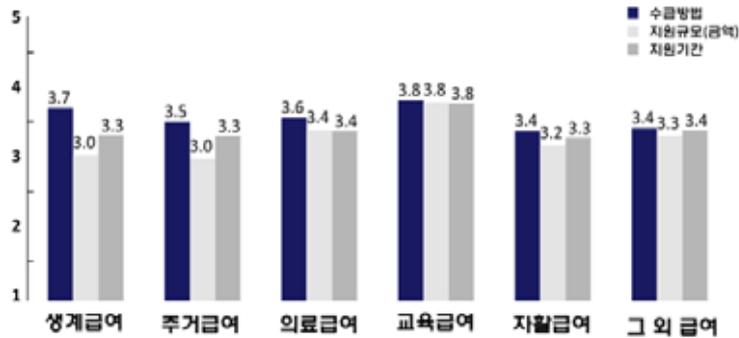
3. 빈곤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가

(1) 급여별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 평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종류별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교육급여가 3가지 평가항목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 큰 차이없이 3점대 초중반(5점 기준)의 평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규모(금액)측면에서 3.0점으로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22】 급여별 평가(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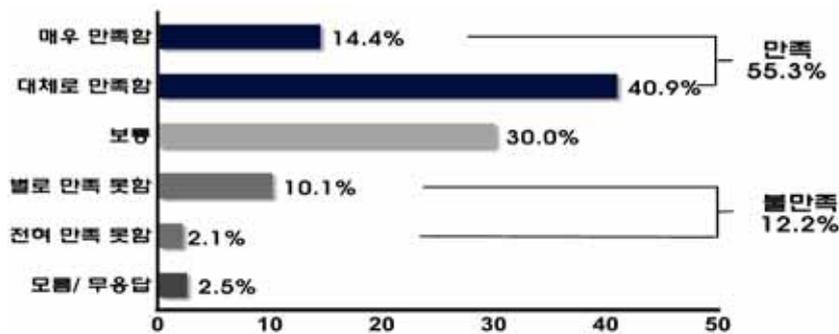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2) 종합평가

빈곤층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14.4% + 대체로 40.9%),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2%(별로 10.1% + 전혀 2.1%)로 응답되었으며,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 ‘무응답’은 2.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7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수급자)



(Base: 전체 수급자 716명)

<표 36>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수급자)

구 분	긍정평가 (잘 진행)	보통	부정평가 (잘못 진행)	평균	잘 모르겠다
전 체 (716)	55.3%	30.0%	12.2%	3.57	2.5%
기초수급자 (405)	43.0%	37.8%	17.5%	3.29	1.7%
긴급수급자 (311)	71.4%	19.9%	5.1%	3.94	3.5%

Base: 전체 수급자 7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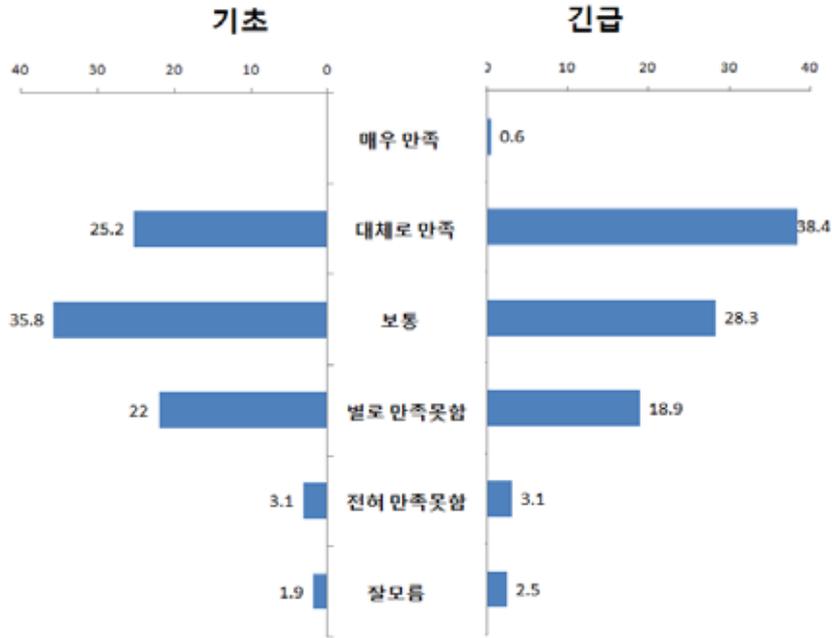
통계적 검정(² 제곱검정: Chi=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만족’ 25.2%, ‘불만족’ 25.2%로 대등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나며, 5점 기준의 평점은 2.96점이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만족’ 39.0%, ‘불만족’ 22.0%으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보통’은 28.3%였다. 5점 기준의 평점은 3.16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24】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 비교(공무원)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4. 빈곤층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 평가

(1) 응답자 특성 비교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교할 경우, 학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	수급자(%)	비수급자(%)
		(933)	716명	217명
성별	남 성	(380)	41.6	37.8
	여 성	(553)	58.4	62.2
연령별	10 대	(23)	2.7	1.8
	20 대	(48)	4.1	8.8
	30 대	(103)	10.9	11.5
	40 대	(253)	28.2	23.5
	50 대	(203)	21.5	22.6
	60 대	(129)	14.7	11.1
	70 대	(129)	12.7	17.5
	80대 이상	(40)	4.9	2.3
장애 여부	무응답	(5)	0.4	0.9
	장애가 있다	(317)	36.9	24.4
	장애가 없다	(515)	62.0	32.7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101)	1.1	42.9
	기혼	(269)	27.2	34.1
	이혼 또는 별거	(258)	29.7	20.7
	사별 후 독신	(230)	24.0	26.7
	미혼(19세 이상)	(131)	14.5	12.4
	그 외 기타	(30)	3.4	2.8
학력	무학	(131)	14.7	12.0
	중졸 이하	(375)	41.2	36.9
	고졸 이하	(301)	31.7	34.1
	대졸 이하	(97)	10.1	11.5
	대학원 이상	(5)	0.7	
	모름/무응답	(24)	1.7	5.5

2)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 비교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할 경우, 자택종류 분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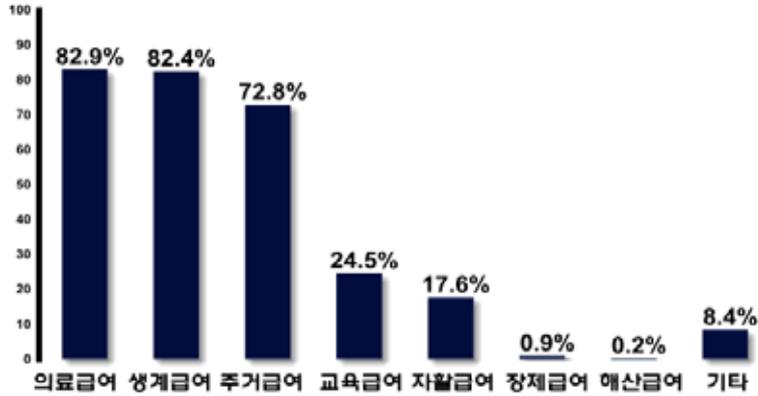
<표 38> 사회적 특성

구 분		사례수	수급자(%)	비수급자(%)
		(933)	716명	217명
고용 형태	상시고용	(58)	4.7	11.1
	임시고용	(42)	3.5	7.8
	일용직	(56)	5.2	8.8
	자영업	(24)	2.9	1.4
	자활근로	(111)	13.4	6.9
	실업	(47)	5.7	2.8
	비경제활동	(464)	52.4	41.0
	기타	(76)	6.3	14.3
	모름/무응답	(55)	5.9	6.0
질환 여부	만성질환이 있다	(454)	50.0	44.2
	크고 작은 잔병	(145)	15.1	17.1
	잔병없음 거동불편	(64)	6.8	6.9
	건강한 편	(262)	27.1	31.3
주택 종류	단독주택	(422)	44.6	47.5
	아파트	(212)	24.2	18.0
	다가구(연립)주택	(192)	20.0	22.6
	무허가 주택	(24)	2.8	1.8
	구호 시설	(3)	0.3	0.5
	기타	(63)	7.1	5.5
	모름/무응답	(17)	1.1	4.1
주거 형태	자가	(241)	23.6	33.2
	전세(1억이상)	(1)	0.1	
	전세(1억미만)	(83)	7.7	12.9
	월세	(269)	30.3	24.0
	장기(영구)임대	(159)	19.0	10.6
	기타	(157)	17.5	14.7
	모름/무응답	(23)	1.8	4.6

(2) 현재 받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형태(복수응답)

현재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N=654명)에게 현재 받고 있는 기초보장 수급형태를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25】 현 수급형태 종류(중복응답)



전반적으로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법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가 84.9%로 가장 높았고,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가 82.3%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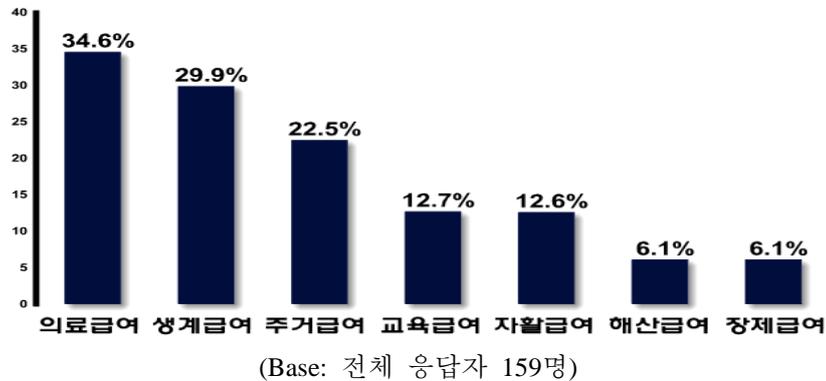
<표 39> 수급형태 비교

(N=654, 중복응답)

구 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	기 타
전 체 (654명)	82.4	72.8	82.9	24.5	0.2	0.9	17.6	8.4
기초수급자 (405명)	84.9	77.8	83.2	26.9	0.2	1.2	25.2	4.4
긴급수급자 (249명)	78.3	64.7	82.3	20.5	-	0.4	5.2	14.9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재 다루고 있는 지원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가 평균 3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생계급여’ 29.9%, ‘주거급여’ 22.5%, ‘교육급여’ 12.7%, ‘자활급여’ 12.6%, ‘해산급여’ 6.1%, 장제급여 6.1% 등의 순이었다.

【그림 26】 지원 업무 중 주로 다루는 급여 종류(공무원)



5. 빈곤층 지원에 따른 효과성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이세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법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는 이를 수급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하여야 적실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개별 급여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수급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1) 긍정적 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담당 공무원과 수급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개별급여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22.8%, 31.1%)와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20.3%, 20.2%)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0> 기초 지원 후 나아진 점 비교(공무원 vs. 수급자)

(단위: %)

No.	담당 공무원 (158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05명)	
1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22.8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	31.1
2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3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2
3	기초 생존권 보장	15.8	자녀 교육 지원 가능	9.4
4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5.1	고정적 수입 발생	3.5
5	고정적 수입 발생	3.8	기초 생존권 보장	3.2
6	주거의 안정 획득	3.2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5
7	자녀 교육지원 가능	1.3	주거의 안정 획득	2.0
8	가족 해체 방지	0.6	-	-
-	기타	2.5	기타	1.0
-	모름/ 무응답	24.7	모름/ 무응답	27.2

2) 긴급복지지원법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개별급여를 통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수급자 모두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20.4%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긴급 지원 후 나아진 점 비교(공무원 vs. 수급자)

(단위: %)

No.	담당 공무원 (157명)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311명)	
1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4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41.5
2	위기상황 극복 가능	18.5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19.9
3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8.3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9
4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3.8	위기상황 극복 가능	2.3
5	가족 해체 방지	2.5	기초 생존권 보장	0.6
6	기초 생존권 보장	1.9	가족 해체 방지	0.6
-	기타	3.8	기타	0.6
-	모름/ 무응답	40.8	모름/ 무응답	31.5

3) 소 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는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 31.1% > ‘의료비지원으로 부담 경감’ 20.2%의 순으로 높았던 데 비해, 긴급지원 수급자에서는 ‘의료비지원으로 부담 경감’ 41.5% >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 19.9%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2> 지원 후 나아진 점 비교(수급자)

응답 내용(%)	전체수급자 (716명)	기초수급자 (405명)	긴급수급자 (311명)
의료비지원으로 부담 경감	29.5	20.2	41.5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	26.3	31.1	19.9
자녀교육 지원가능	5.3	9.4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7	2.5	2.9
기초 생존권 보장	2.1	3.2	0.6
고정적 수입 발생	2.0	3.5	
주거의 안정획득	1.1	2.0	
위기상황 극복가능	1.0		2.3
가족 해체방지	0.3		0.6
기 타	0.8	1.0	0.6
없음/모름/무응답	29.1	27.2	31.5

Base: 전체 수급자 716명

통계적 검정(² 제곱검정: Chi=Square Test) 결과, 기초 수급자와 긴급 수급자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정적 효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담당 공무원에게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자활의지 부족)’라는 응답이 33.5%로 다른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수급자들의

경우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활비(물가/교육비등)가 많이 올라서’ 등의 응답이 상위를 차지하여 대비되었다.

<표 43> 기초 지원에도 나아지지 못한 이유(공무원 vs. 수급자)

(단위: %)

No.	담당 공무원 (158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05명)	
1	본인의 자활의지 부족	33.5	급여(지원 금액)가 너무 적어서	21.2
2	급여(지원 금액)가 너무 적어서	12.0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	12.8
3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8.2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4	대부분 근로무능력자로 별 다른 소득이 없기에	7.0	약값부족 등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2.5
5	생활비(월 세/물가/교육비 등)많이들어 저축불가능	6.3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2.2
6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3	기존에 빚이 많아서	0.2
7	기존에 빚이 많아서	0.6	-	-
8	지원기간이 짧아서	0.6	-	-
-	기타	5.7	기타	4.2
-	모름/ 무응답	24.7	모름/ 무응답	53.8

2) 긴급복지지원법 담당 공무원 및 수급자

공무원과 수급자 모두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 지원의 한계를 주목하고 있었다.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라는 응답이 19.7%로 가장 높았고,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라는 응답이 14.0%로 나타나, 두 응답을 합할 경우 33.7%에 달했다.

한편 수급자들의 경우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2.2%,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라는 응답이 8.4%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 긴급 지원에도 나아지지 못한 이유(공무원 vs. 수급자)

(단위: %)

No.	담당 공무원 (157명)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311명)	
1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19.7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22.2
2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14.0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8.4
3	수급자의 의지부족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5.1	지원수준이 낮아서	8.0
4	지원수준이 낮아서	5.1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6.4
5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3.2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6.1
6	자활방법을 잘 몰라서	3.2	-	-
7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2.5	-	-
8	가정 해체 등은 지원을 통해 되돌리기 어려움	0.6	-	-
-	기타	5.1	기타	0.6
-	모름/ 무응답	41.4	모름/ 무응답	48.2

3) 소 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21.2% > ‘생활비(물가/교육비등)가 많이 올라서’ 12.8%의 순으로 높게 응답된 반면, 긴급지원 수급자에서는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22.2% >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8.4% 등으로 응답되고 있었다. 특히,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2.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가 9.6%로 뒤를 이었다.

<표 45> 지원받았으나 나아지지 못한 이유 비교(수급자)

응답 내용(%)	전체수급자 (716명)	기초수급자 (405명)	긴급수급자 (311명)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12.0	21.2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9.6		22.2
생활비(물가/교육비등)가 많이 올라서	7.3	12.8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3.6		8.4
지원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3.5		8.0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2.8		6.4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반복	2.7		6.1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1.7	3.0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1.4	2.5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3	2.2	
기준에 빗이 많아서	0.1	0.2	
기타	2.7	4.2	0.6
없음/모름/ 무응답	51.4	53.8	48.2

Base: 전체 수급자 716명

제 4 절 체계성 평가

1. 평가기준

규범평가부분에 있어 필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체계 정당성 또는 정합성의 문제이다. 이는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동일법제 내에서의 입법체계와 관련 법제 간의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급여의 유형과 내용에서는 상이하지만, 빈곤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입법목적은 공유한다. 따라

서 양 법제는 일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법제에 적용되는 이념, 일반원칙, 운용원리, 권리의 보장 등에 대한 총체적 규율을 하고 있는 사회보장분야에서의 기본법이다. 그리고 제24조에서는 사회보장법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으로서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계성 및 전문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들 원칙 중 체계정합성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으로 연계성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규범체계간의 정합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4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연계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각각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되는 개념이다. 먼저, 보충성의 원칙이란 유사목적의 법률간에 타법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은 유사한 내용을 갖는 둘 이상의 급여가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그 중 하나의 수급권만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과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이 관련 법제 간의 체계정합성을 상실할 경우, 어느 법에 의해서도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구제라는 동일 목적을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같은 입법모순의 상태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입법목적과 원칙에 따른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행 공공부조법제를 대표하는 법률로서 빈곤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제의 발전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들은 우선 사회보험에 의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되며, 아예 소득이 없거나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중 부양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없거나 미약한 자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불측의 긴급한 빈곤으로 말미암아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빈곤구제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바, 그 사회보장법적 지위는 동일하다. 다만, 빈곤의 상태가 상시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긴급한 것인가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양 법제는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연계성의 원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연계성의 원칙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제간의 제도적 연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는 우선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공공부조에 의한 보호를 요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체계 내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1차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수행되지만,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에 의한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보장법제 영역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입법체계정당성의 차원에서도 단일법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사목적에 갖는 관련 법제 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원칙이다.

빈곤구제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과의 관계에서 상호연계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이들 법제 상호간에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빈곤가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의 입법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상호연계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범체계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1) 탈(奪)빈곤정책으로서 한계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래 빈곤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정책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소득 보전제도이므로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부여측면은 취약하다.

1) 보충급여원칙에 의한 근로동기 결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선을 급여상한선으로 설정해 두고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급여상한선 간의 차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급여방식에서는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액만큼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노동의 금전적 대가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교통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을 할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어 근로동기를 없애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⁴⁾ 이처럼 취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44) 설광연 외 6인,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06-03, KDI, 2006, 128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기초보장제도가 제공하는 각종의 편익보다 크지 않다면, 수급자들은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현재 기초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⁴⁵⁾

2) 자활지원제도(자활급여)의 비체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빈곤완화정책인 데 비하여 그 내부에 위치한 자활지원사업은 개인단위의 빈곤탈출정책으로서 개인이 빈곤탈출에 성공하는 경우 가구단위의 소득보장이 단절된다는 점에서 두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빈곤탈출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또한 자활사업이 실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참여가 제한되고 수급자 중 불완전 취업자도 배제된다. 마지막으로 통합급여체제로 말미암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박탈되도록 되어 있어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⁴⁶⁾

아울러 정부의 자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보다 낮아 차상위 계층의 참여확대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⁴⁷⁾

(2) 최저생계비기준의 조정 필요성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각종 빈곤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형성의 기준이다. 수급자격의 인정여부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급여산정의 기준이며, 또 부양의무의 판정기준 및 차상위계층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바, 해당 사회의 빈곤

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 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7-17-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 센터, 2007, 65면

46) 설광언 외 6인, 전게서, 135면

47) 국회예산정책처, 전게서, 48면

선에 해당한다.⁴⁸⁾

2010년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5.6% 인상(4인가구 기준 136,3만원→143.9만원)하여 기초생활급여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조치는 기초수급자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기초수급자수를 2010년의 163만명에서 2011년에 160만명으로 감소시키고, 생계급여의 재정절감분을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2011년도 생계급여 예산안은 전년대비 삭감되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빈곤심화와 이에 따른 광범위한 빈곤구제의 사각지대의 존재 등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현행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산정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와 평균소득의 상승분에만 의존하는 등, 일련의 절대빈곤선을 최저생계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객관화는 빈곤정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로써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실현되는 계기가 된다. 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은 급여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말을 바꾸어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이에 상응하여 적합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책의 안정성 및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최저생계비가 평균적인 수요를 갖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외에 신축성 있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빈곤의 상대화).⁴⁹⁾

48) 전광석/윤석진, 전계서, 83-84면

49) 전광석/윤석진, 전계서, 84면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반감시키는 결과도 야기하고 있다. 본래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목적은 첫째, 빈곤에 처할 위험에 있는 집단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빈곤예방의 효과를 도모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요건을 정형화하는 상황에서 개별성의 원칙이 소홀히 되어 나타나는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배려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급여인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활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⁵⁰⁾

물론 빈곤 개념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빈곤선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의 욕구를 개별 상황에 따라 충족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급조건으로 최저생계비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이는 빈곤정책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특별한 수요를 가진 자에게는 이에 상응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즉, 절대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광범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 둘째, 일단 수급자가 된 후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자활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⁵¹⁾

이러한 이유로 여러 국제기구와 외국의 선행 연구자료에서는 절대빈곤선 외에도 상대빈곤선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수준은 사회의 소득이나 소비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 그리하여 빈곤측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 이외에도 소비, 부, 소득능력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또는 가족생활영위에 필요한 자원충족능력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빈곤의 개념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50) 전광석/윤석진, 전계서, 86면

51) 전광석/윤석진, 전계서, 84면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수준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빈곤선은 국민소득 중앙값의 50%이다(OECD 기준). 그러나 유럽통계사무소(European Statistical Office:EUROSTAT)에서는 국민소득 중앙값 60%를 권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최저소득기준을 국민소득 중앙값의 60%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미국 공식빈곤선 보다 25내지 30%나 높은 수준이다.⁵²⁾

1) 주요 기구 상대빈곤선

주요기구	상대빈곤선
OECD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EUROSTAT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의 60%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가구 소득의 1/3 - 선진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1/2

2)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상대빈곤선

연구자	연구결과(상대빈곤선)
P. Townsend ⁵³⁾	빈곤층은 평균 가구소득의 80% 이하
Lee Rainwater ⁵⁴⁾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52)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절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측정하는 유럽방식에 따르자면 미국의 빈곤률은 현행 절대기준에 따른 빈곤률 수치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OECD 평균은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 50% 기준 시 상대빈곤률이 11%이고, EUROSTAT 평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60% 기준 적용시 상대빈곤률은 16%임에 비해서 미국의 상대빈곤률은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 50% 기준 적용시 상대빈곤률은 16%이고 60% 기준 적용시에는 상대빈곤률이 무려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관, 전개서, 100면 이하; Forest, Micheal and Marco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22. Paris p.22 참조

53) P. Townsend, 1979 Poverty in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박찬용 외,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7면 이하 참조)

54) L. Rainwater, 1974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89, 229면 이하 참조)

(3) 연계성원칙에 따른 상호체계 평가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가에 의한 구호·보호·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계성 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제 원칙에 충실한 입법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내용의 연계성원칙을 선언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사후조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하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적정성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의 내용을 분석해보건대,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중복급여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급여유형을 보면, 전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그리고 후자의 경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이 있다. 양 법제의 경우 빈곤층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부분에서 동일한 유형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중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이 개별법령 마다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은 과잉사회보장의 방지와 재

정안정화조치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원칙이다. 즉 동일한 요건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동일 수급자에게 주어질 경우 법적 강제 또는 수급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둘 중 하나의 수급권만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규정은 중복급여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한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빈곤층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제급여와 자활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지원은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에 국한되는 부분적 상호연계성 입법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입법적 불비상태가 보인다.

현행법 제5조는 긴급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자격을 가진 자를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격을 배제한 현행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의 적용가능성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4)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상호관계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조제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빈곤구제를 위한 각종 급여는 다른 법령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중복급여 간의 상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⁵⁵⁾

그리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제14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자격을 가진 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부연하는 조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개별 법령단위로 본다면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구제라는 동일목적을 추구하는 입법체계간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입법태도는 상호모순을 야기한다.

55)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도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종의 구호·보호·지원과의 관계에서도 중복급여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내용대로 한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조, 제9조에 의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면, 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를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빈곤층이 양 법제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계속된 빈곤상태에 있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상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대상으로 체계적 해석을 해 본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 종합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정책 및 관련 법·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빈곤해소에 있다. 빈곤 해소란 1차적으로 빈곤층에게 일정한 국가의 급여지급을 지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수급자로 하여금 각종 급여를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수급자에게 근로동기를 제공하여 자력으로 생활유지를 위한 활동의 기회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저하시키는 여러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현행 자활급여의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빈곤수급층의 증대로 이어져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급여의 제공에 그치지 말고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제도에서 이탈되는 수급자의 양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활급여의 기준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은 수급자로 하여금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할 때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선방향만이 수급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장·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상대빈곤선에 의한 최저생계비기준은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자범위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밝힌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간의 부분적 상호연계성의 원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서 선언하여 수범자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4조제2항의 내용을 이관하고,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장제급여 및 재할급여를 받는 차상위계층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상술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입법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상호연계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보충성의 원칙을 개별 입법에서 선언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 법제 간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정당성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빈곤층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의 원칙에도 모두 부합하는 조화로운 입법상태이기 때문이다.

제 5 절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여부 측정

1. 빈곤실태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현황

1) 수급자 현황

2009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6만 명(85만 8천 여 가구)으로 전체인구 대비 수급률(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3.1%에 달한다. 아래의 표는 수급자의 현황과 일반수급자인지 시설수급자인지를 나누어서 나타낸다. 종류별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5%)이며, 시설수급자는 5.5%로 나타나고 있다.

<표 46> 수급자 현황 - 수급자 종류별

(단위: 가구, 명)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3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2007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8	854,205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2009	882,925	1,568,533		1,482,719	85,814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0

2) 일반수급가구 소득현황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로 선정된 일반수급가구의 소득규모를 살펴보면 ‘0원 초과~2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0.2%로 가장 많고, 다음 ‘20만 원 초과~40만 원 이하’가구가 18.3%, ‘40만 원 초과~60만 원 이하’가구가 9.5%로 수급자가구의 약 50%가 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약 81%가 40만 원 이하의 소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일반수급가구 소득 현황

(단위: 명)

시 도	계	소득없음	0원 초과~10만 원이하	10만 원 초과~20만 원이하	20만 원 초과~30만 원이하	30만 원 초과~40만 원이하	40만 원 초과~50만 원이하
2001	698,075	57,165	150,766	173,278	93,514	66,971	52,913
2002	691,018	54,515	166,409	171,588	89,156	63,438	48,153
2003	717,861	57,835	189,057	174,987	91,133	63,234	46,332
2004	753,681	71,892	206,627	176,740	91,377	57,240	46,590
2005	809,745	95,385	226,279	180,488	94,909	58,452	46,803
2006	831,692	121,503	234,255	170,277	91,352	58,386	45,246
2007	852,420	140,650	238,160	165,945	91,210	58,000	45,108
2008	854,205	107,518	251,837	177,090	96,259	59,831	49,179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3)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예산 현황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생계급여 등이 56%를 차지하고 의료급여가 4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2005년에 비해 72.5%p 증가하여 2009년에는 7조 9,731억 원에 이른다.

<표 48>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비중								
기초생활보장급여	46,225	100.0	53,438	100.0	65,759	100.0	72,644	100.0	79,731	100.0
생계급여 등	24,077	52.1	26,815	50.2	29,988	45.6	34,736	47.8	44,625	56.0
의료급여	22,148	47.9	26,623	49.8	35,771	54.4	37,908	52.2	35,106	44.0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2)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입법화 되었다.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초기부터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선정기준이 되는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을 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0만 원)이고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9,500만 원, 중소도시 7,75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의 세부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한다. 아래의 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현황을 나타낸다. 2006년 3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신청 건수는 2008년 기준으로 29,369건 이었으며, 지원건수는 27,205건 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신청건수는 22.3%p, 지원건수는 39.6%p 증가한 수치이다.

<표 49> 긴급복지지원제도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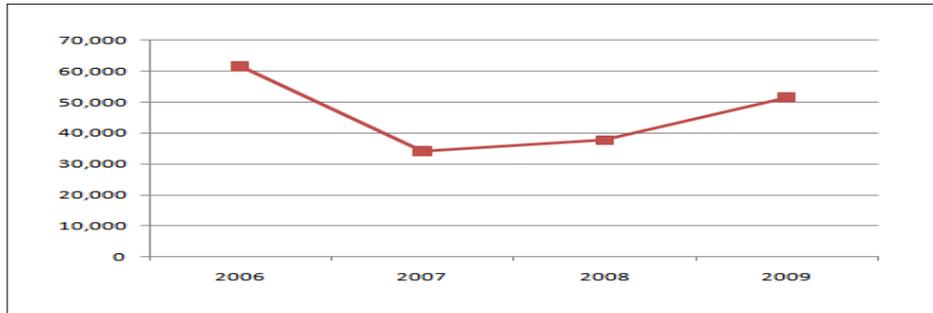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	신청	24,024	-	-	1,828	2,819	2,469	2,352	2,143	2,271	2,578	2,252	2,784	2,528
	지원	19,487	-	-	856	1,890	1,842	1,855	1,815	1,959	2,281	1,997	2,564	2,428
2007	신청	27,759	3,062	2,347	2,636	2,595	2,519	2,119	2,242	2,141	1,625	2,233	2,192	2,048
	지원	24,932	2,695	2,093	2,343	2,257	2,244	1,926	2,012	1,945	1,479	2,005	2,007	1,926
2008	신청	29,369	2,590	2,039	2,430	2,344	2,290	2,345	2,610	2,224	2,198	2,580	2,322	3,397
	지원	27,205	2,328	1,873	2,205	2,149	2,137	2,160	2,419	2,048	2,023	2,382	2,210	3,27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 광정숙 의원실 재분류

긴급복지 예산은 제도 도입 당시 6조 1,532억 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5조 1,532억 원으로 16.3%p 감소하였다.

【그림 27】 긴급복지지원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2. 빈곤율 추이 및 소득분배 현황

(1)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했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지원의 증가가 절대빈곤율에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빈곤갭, 빈곤심도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이론적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⁵⁶⁾

그리고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을 OECD국가와 비교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향후 복지 및 분배정책의 기본방향은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

56) 강성진,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금융경제연구』 제423호, 한국금융경제연구원, 2009, 61면

57)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KDI 정책포럼』 제167호, KDI, 2003, 16면

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脫)빈곤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도 필요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2) 빈곤 및 분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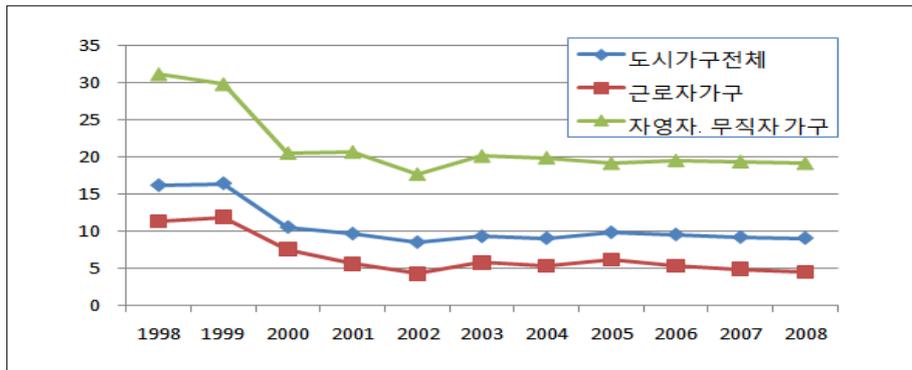
빈곤 및 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빈곤 및 분배 관련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고 각 지표들의 추이를 우선 살펴보았다.

절대빈곤율은 소득과 기초생활비를 비교하는 수치 가운데 하나로, 한 달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총소득 가운데 조세부담액(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을 빼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정의 비율을 일컫는데, 소득불평등 정도 또는 가난의 구조, 경제상황 등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래의 그림은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빈곤율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16%(도시가구 전체 기준)까지 상승한 후, 2002년에 8.5%까지 하락하였지만 이후 9%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무직자의 경우에는 정체되고 있다.

58)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정책포럼』 제215호, KDI, 2009,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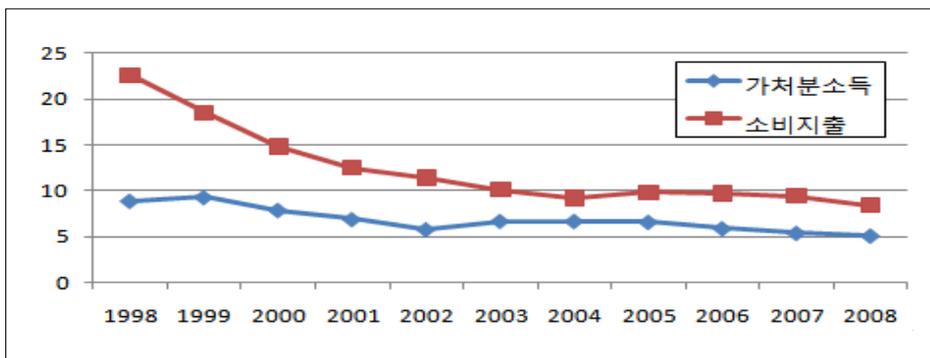
【그림 28】 도시가구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



자료: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2009

보건사회연구원(2009)이 발표한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에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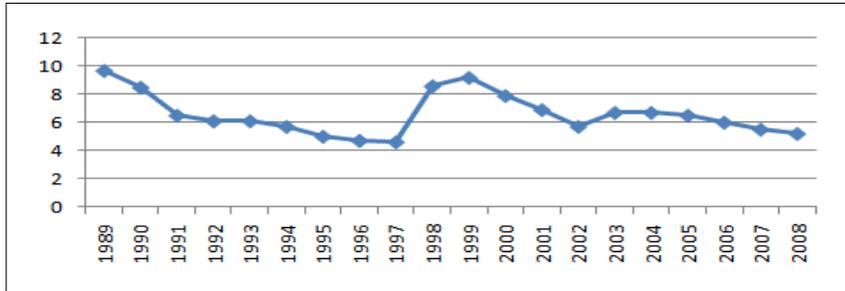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감』, 2009

빈곤가구율은 전체가구중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가구율은 외환위기 때에는 약 9.2%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5.5%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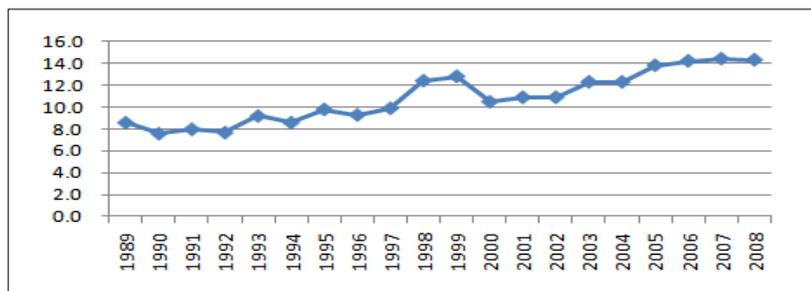
【그림 30】 빈곤가구율 추이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감』, 2009

상대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도시 근로자가구의 빈곤층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빈곤율은 상대적인 빈곤의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도시가구의 빈곤층 비율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임금의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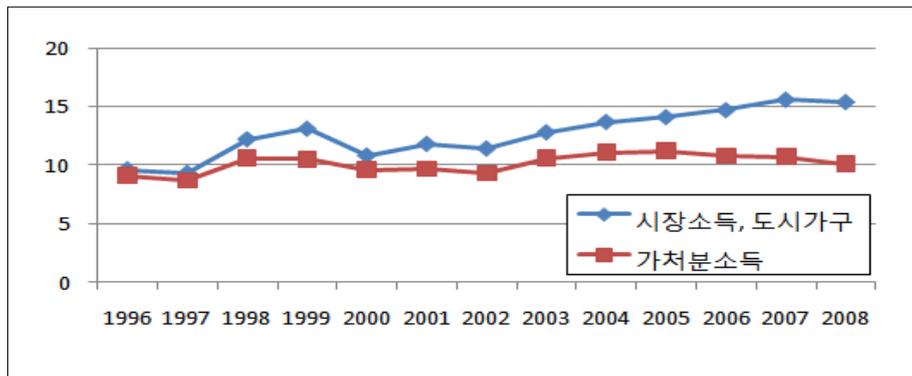
【그림 31】 도시 근로자 가구 빈곤층 비율 추이



자료: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2009

상대빈곤율이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빈곤율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친 것을 말하고,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공적 비(非)소비지출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0%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는 최근 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주로 근로임금의 양극화에 기인하여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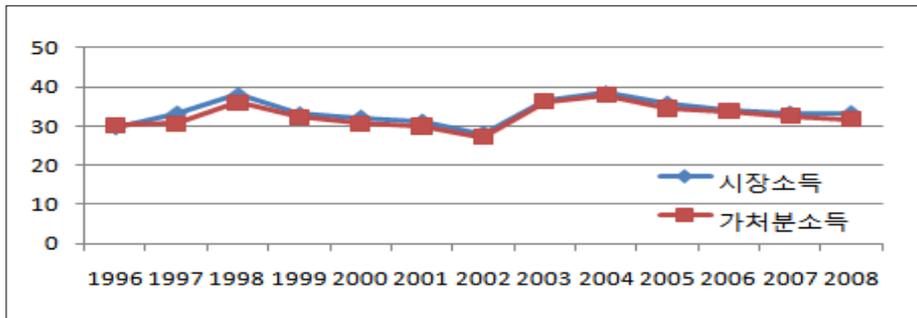
【그림 32】 상대빈곤율 추이



자료: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2009

소득갭 비율은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갭 비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빈곤양상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소득갭 비율 추이



자료: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2009

3. 빈곤층지원제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분석모형

빈곤층지원 법제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빈곤해소 및 분배완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을 도입하였다.

$$P_t = \alpha_0 + \alpha_1 \left(\frac{SE}{GDP} \right)_t + \alpha_2 EMP_t + \varepsilon_t \dots\dots\dots (1)$$

(단: P 는 빈곤/분배 지표, SE 는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GDP 는 실질 경제성장률, EMP 는 고용률)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빈곤 또는 분배지표에 유의한 주요 변수로 사회복지지출 이외에도 GDP, 고용률 등을 꼽고 있으므로 이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중간분석결과 사회복지지출과 GDP의 상관관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실적으로 GDP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GDP와는 무관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율변수를 사용하여 소득 증가에 따른 영향을 통제 하였다.

사회보장지출로 사용한 변수는 기초생활급여 총예산을 자료로 사용했으며, 빈곤·분배 지표로는 다양한 지표들을 각각 분석해 보았다. 세부변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변수요약

우선 사회보장 지출 관련 변수는 앞서 언급한 대로 GDP 대비 비율변수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GDP는 빈곤·분배 지표들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분배 지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편이(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GDP는 기초생활보장 지출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이들을 변수에 함께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빈곤·복지 지표는 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 유경준(2009), 강성진(2009)의 연구 등에서 산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되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대표 변수의 결과만을 내용에 포함하였다.

<표 50> 변수간 상관계수 분석 결과

	절대빈곤율	빈곤층 소득비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고용률	기초생활보장지출	GDP
절대 빈곤율	1.00	-0.44	-0.18	-0.37	-0.71	-0.47	-0.76
빈곤층 소득비율	-0.44	1.00	0.90	0.91	0.06	0.89	0.87
지니계수	-0.18	0.90	1.00	0.88	-0.23	0.80	0.70

	절대빈곤율	빈곤층 소득비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고용률	기초생활 보장지출	GDP
상대 빈곤율	-0.37	0.91	0.88	1.00	-0.20	0.76	0.82
고용률	-0.71	0.06	-0.23	-0.20	1.00	0.28	0.47
기초생활 보장지출	-0.47	0.89	0.80	0.76	0.28	1.00	0.91
GDP	-0.76	0.87	0.70	0.82	0.47	0.91	1.00

<표 51> 사용변수의 기초통계량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	절대빈곤율	빈곤층 소득비율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고용률
Mean	2.10	16.83	10.70	0.29	9.37	59.02
Median	1.21	10.17	10.20	0.29	9.45	59.35
Maximum	5.38	58.71	14.40	0.33	11.20	60.90
Minimum	0.65	7.10	7.60	0.26	7.60	56.40
Std. Dev.	1.60	13.90	2.27	0.02	1.28	1.35
Skewness	0.71	1.94	0.33	-0.02	-0.04	-0.72
Kurtosis	2.07	5.69	1.77	1.68	1.47	2.53

3) 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는 빈곤 지표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율에 대한 분석결과와 분배 지표에 해당하는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아래 표의 절대빈곤율에 대한 분석결과 (1), (2), (3)을 보면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의 계수 값이 모두 음의 값으로 매우 유의하게 분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대비 기초생활 보장지출을 늘릴수록 절대빈곤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지원 법제에 의한 사회보장 지출이 빈곤해소 측면에는 긍정

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률의 증가가 빈곤을 해소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비지출 측면에서의 빈곤율은 기초생활보장지출에 의한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의 빈곤층 소득비율에 대한 효과 역시 양의 값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빈곤층지원 법제에 의한 예산지출의 증가가 빈곤 계층의 소득보전으로 잘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빈곤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1) 절대빈곤율 유경준(2009) 총소득	(2) 절대빈곤율 보건사회연구원 가처분소득	(3) 절대빈곤율 보건사회연구원 소비지출	(4) 빈곤층소득비율 유경준(2009) 총소득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	-2.69** (-2.05)	-0.19** (-1.73)	-2.67*** (-9.38)	1.32*** (9.25)
고용률	-6.52*** (-4.18)	-1.12*** (-7.56)	-1.94*** (-5.02)	-0.28 (-1.64)
constant	407.39*** (4.45)	73.39*** (8.40)	136.65*** (5.97)	24.38** (2.45)

주: 괄호안은 t-statistics.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하지만 다음의 표를 보면 분배지표에 대한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기여는 양의 값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대비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발생하는 분배 악화의 원인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지출에 의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서 마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분배를 악화시키는 듯한 분석결과가 나온 것

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완화를 기초생활보장지출의 1차적 목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표 53> 분배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5) 지니계수 유경준(2009) 총소득	(6) 상대빈곤율 보건사회연구원 가처분소득
GDP 대비 기초생활보장지출	0.01*** (11.76)	0.65*** (6.15)
고용률	-0.01*** (-5.80)	-0.31** (-2.15)
constant	0.70*** (9.43)	26.25*** (3.08)

주: 괄호안은 t-statistics.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출은 빈곤 계층의 소득 보전을 통한 절대 빈곤의 감소라는 1차적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에 의한 분배 악화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빈곤층지원 법제의 지원 수준에 대한 논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측면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계 및 보완점

이상의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과 빈곤 해소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이나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공하여 지역별 패널 분석과 함께 사회보장지출의 성격별 빈곤 해소 영향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긴급지원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의 특성상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실증 분석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제도 도입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려고 한다.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① 긴급지원제도의 사업성과⁵⁹⁾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중간보고서에서 제도의 방향성 검토 등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긴급지원제도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위기극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표 54>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 여부

필요성 정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필요함	50	29.6	29.6
필요함	106	62.7	92.3
필요없음	13	7.7	100.0
합계	169	100.0	

59) 정원오/김진우/신영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2009, 62면

<표 55> 긴급지원제도의 위기극복 도움 여부

도움 정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도움이 됨	54	32.0	32.0
도움이 됨	113	66.9	98.8
도움이 안됨	2	1.2	100.0
합 계	169	100.0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종류별 만족도에서는 의료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6>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만족 정도	빈 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만족	155	50.0	50.0
약간 만족	104	33.5	83.5
보 통	40	12.9	96.5
약간불만	11	3.5	100.0
합 계	310	100.0	

<표 57> 긴급지원 지원종류별 만족도(5점 척도)

지원내용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생계지원	109	4.1651	.73929
의료지원	165	4.6061	.64104
주거지원	36	3.3056	.95077
합 계	310	4.3000	.82654

긴급복지지원 수급자들은 의료지원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74.1%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25.9%

는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58> 의료지원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충분하다	45	24.3	24.3
충분하다	92	49.7	74.1
약간 부족하다	40	21.6	95.7
매우 부족하다	8	4.3	100.0
합 계	185	100.0	

주거지원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33.3%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66.7%는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59> 주거지원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충분성 정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 충분하다	3	5.6	5.6
충분하다	15	27.8	33.3
약간 부족하다	21	38.9	72.2
매우 부족하다	15	27.8	100.0
합 계	54	100.0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사유 완화 시에 우선적으로 추가할 사항을 설문한 결과 사고, 파산, 실직, 사업실패, 기타 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높았다.

<표 60> 위기상황 사유 완화시 우선적으로 추가할 사항

추가 위기사유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 음	48	28.6	28.6
사업실패	11	6.5	35.1
실 직	20	11.9	47.0
과 산	23	13.7	60.7
사 고	58	34.5	95.2
기 타	8	4.8	100.0
합 계	168	100.0	

②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필요성⁶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년 1월~2월 사이에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를 통하여 중앙에서 취합한 비(非)수급 빈곤추정가구(총 약 65만 가구)의 명단인 비(非)수급 빈곤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복지 영역 별로 지원수혜자의 지원 사업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필요 정도를 분석하였다.

60) 김미숙 외, 전계서, 277면

<표 61>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필요정도

(단위: %)

		수급	소득 100%미만			소득 100%이상 ~120%미만	소득 120%이상	전체
			소득인정액 100%미만	소득인정액 100%이상 ~120%미만	소득인정액 120%이상			
인지도 $\chi^2=55.615$ ***	알고있다	44.0	35.9	34.1	33.2	37.3	40.4	39.3
	모른다	56.0	64.1	65.9	66.8	62.7	59.6	6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795)	(2,471)	(91)	(828)	(1,103)	(2,924)	(10,212)
서비스 이용경험 $\chi^2=973.80$ 8***	있다	22.8	5.3	3.3	2.7	3.2	2.2	8.7
	없다	77.2	94.7	96.7	97.3	96.8	97.8	9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794)	(2,470)	(91)	(828)	(1,103)	(2,924)	(10,210)
도움이 되는 정도 $\chi^2=46.184$ ***	전혀 도움안됨	2.2	2.3	0.0	0.0	0.0	1.6	2.0
	도움이 약간됨	9.2	16.8	0.0	31.8	22.9	34.4	13.2
	도움이 많이됨	88.6	80.9	100.0	68.2	77.1	64.1	8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638)	(131)	(3)	(22)	(35)	(64)	(893)	
현재 필요 정도 $\chi^2=580.33$ 4***	전혀 필요없음	22.9	25.3	36.3	39.2	35.1	46.3	33.0
	약간 필요함	15.7	16.8	19.8	20.8	20.4	18.7	17.8
	많이 필요함	61.4	57.9	44.0	40.0	44.5	35.0	4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2,794)	(2,471)	(91)	(826)	(1,103)	(2,924)	(10,209)	

주: *p <0.05, **p <0.01, ***p <0.001

소득계층별로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수급가구가 44.0%로 가장 높았고, 수급경험 또한 22.8%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인식이나 당장의 필요성 정도 또한 수급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100% 미만인 비수급 빈곤층에서는 긴급의료지원 사업의 인지도가 특히 낮았으며, 이용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긴급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가구의 비율도 비수급 빈곤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2> 긴급의료지원 사업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필요정도

(단위: %)

		수급	소득 100%미만			소득 100%이상 ~120%미만	소득 120%이상	전체
			소득인정액 100%미만	소득인정액 100%이상 ~120%미만	소득인정액 120%이상			
인지도 F=49.314***	알고있다	11.1	8.8	11.0	10.9	13.6	14.6	11.8
	모른다	88.9	91.2	89.0	89.1	86.4	85.4	88.2
	계 (사례수)	100.0 (2,794)	100.0 (2,471)	100.0 (91)	100.0 (828)	100.0 (1,103)	100.0 (2,923)	100.0 (10,210)
서비스 이용경험 F=14.886*	있다	0.6	0.2	0.0	0.5	0.3	0.1	0.3
	없다	99.4	99.8	100.0	99.5	99.7	99.9	99.7
	계 (사례수)	100.0 (2,795)	100.0 (2,469)	100.0 (91)	100.0 (828)	100.0 (1,103)	100.0 (2,922)	100.0 (10,208)
도움이 되는 정도 F=12.955	도움이 많이됨	82.4	66.7	0.0	25.0	33.3	100.0	68.7
	도움이 약간됨	5.9	16.7	0.0	25.0	66.7	0.0	15.6
	전혀 도움이 안됨	11.7	16.7	0.0	50.0	0.0	0.0	15.6
	계 (사례수)	100.0 (17)	100.0 (6)	100.0 (0)	100.0 (4)	100.0 (3)	100.0 (2)	100.0 (32)
현재 필요 정도 F=97.269***	전혀 필요하지 않음	65.1	65.9	79.1	75.0	70.3	72.8	69.0
	많이 필요함	22.9	20.8	12.1	16.4	17.6	14.6	18.8
	약간 필요함	12.0	13.2	8.8	8.6	12.1	12.6	12.2
	계 (사례수)	100.0 (2,794)	100.0 (2,469)	100.0 (91)	100.0 (828)	100.0 (1,103)	100.0 (2,923)	100.0 (10,208)

주: *p <0.05, **p <0.01, ***p <0.001

위 표에 나타난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11.8%로 파악되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계층별 긴급복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의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현재 필요 정도

(단위: %)

	수급	소득 100%미만			소득 100%이상 ~120%미만	소득 120%이상	전체	
		소득인정액 100%미만	소득인정액 100%이상 ~120%미만	소득인정액 120%이상				
인지도 $\chi^2=50.722$ ***	알고있다	27.1	20.2	13.2	19.6	25.7	23.6	
	모른다	72.9	79.8	86.8	80.4	74.3	76.4	
	계 (사례수)	100.0 (2,795)	100.0 (2,471)	100.0 (91)	100.0 (828)	100.0 (1,103)	100.0 (2,924)	100.0 (10,212)
서비스 이용경험 $\chi^2=230.329$ ***	있다	9.4	4.3	2.2	2.8	2.5	1.6	4.6
	없다	90.6	95.7	97.8	97.2	97.5	98.4	95.4
	계 (사례수)	100.0 (2,795)	100.0 (2,471)	100.0 (91)	100.0 (828)	100.0 (1,101)	100.0 (2,924)	100.0 (10,210)
도움이 되는 정도 $\chi^2=11.974$ ($p=0.287$)	도움이 많이됨	90.9	85.0	50.0	91.3	77.8	82.6	87.8
	도움이 약간됨	8.0	13.1	50.0	8.7	18.5	13.0	10.4
	전혀 도움이 안됨	1.1	1.9	0.0	0.0	3.7	4.3	1.7
	계 (사례수)	100.0 (264)	100.0 (107)	100.0 (2)	100.0 (23)	100.0 (27)	100.0 (46)	100.0 (469)
현재 필요 정도 $\chi^2=192.636$ ***	전혀 필요하지 않음	33.1	37.5	49.4	46.4	44.4	48.3	41.0
	많이 필요함	48.9	43.1	36.3	36.6	38.7	33.7	40.9
	약간 필요함	18.1	19.4	14.3	17.0	16.9	18.0	18.1
	계 (사례수)	100.0 (2,795)	100.0 (2,471)	100.0 (91)	100.0 (828)	100.0 (1,103)	100.0 (2,924)	100.0 (10,212)

주: *p <0.05, **p <0.01, ***p <0.001

2)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만족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개선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진행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와 2010년 9월에 진행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아래 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6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급자 만족도 개선여부 비교

보건사회연구원(2009)		법제연구원(2010)	
구 분	응답 비율	구 분	응답 비율
매우 만족	50.0%	긍정평가(잘 진행)	71.4%
약간 만족	33.5%	보통	19.9%
보 통	12.9%	부정평가(잘못 진행)	5.1%
약간 불만	3.5%	잘 모르겠다	3.5%

분석 결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만족함’ 이상을 나타낸 응답자가 83.5%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만족함’ 이상을 나타낸 응답자가 71.4%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2009년에 3.5%에서 2010년에 5.1%로 늘어나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하락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들의 만족도 하락은 예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표는 2009년과 2010년의 긴급복지지원예산을 비교한 것이다.

<표 65> 긴급복지지원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 산	추 경	정부안 (A)	최 종 (B)	증 액 (B-A)
긴급복지	51,532	153,312	52,912	57,912	5,000

(자료: 보건복지부)

위 표를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2009년의 예산은 515억 원 정도였으나 1,533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총 2,0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10년에는 57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9년의 긴급복지지원예산에 비해서 약 28%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시사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위기극복 도움여부에 있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종류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에 비해 주거지원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인지도 측면에서 비수급 빈곤층의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수급 빈곤층이 긴급지원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소득계층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지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계층을 위한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확대 시행 방법들을 더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4 장 대안 및 권고

제 1 절 대안별 검토

1.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현 제도상 기초보장 수급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현행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데, 현행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이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양쪽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 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게 되며, 부양의무자가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양쪽 가구 최저생계비 합이 130%이하이면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받게 된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양쪽 가구 최고재산액의 약 120%~130% 이상이 되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양쪽 가구 최고재산액의 약 120%~130%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양능력 없음”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빈곤층은 60,278명(35,458가구)으로 전체 사각지대 340만명의 약 1.8%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1,938억원으로 나타났다.

2)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일부견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을 위해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다.⁶¹⁾ 이 견해에 따르면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가운데 74.2%가 소득기준은 충족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림으로써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둘째, 2009년 우리나라 빈곤층은 58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9퍼센트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대상자는 175만 명으로 전체 빈곤층의 29.9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수급자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1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61) 어기구/전영호, 전계서, 81면 참조. 또한 부양의무자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 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2010.9.17 공성진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2010.9.7.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2010.6.10. 광정숙의원 대표발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2010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최저생계비 기준의 개선

1)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최저생계비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최대의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더불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제도는 절대적 빈곤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물가와 평균소득 상승분에 연동하도록 하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빈곤선 개념을 도입하여 계측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경우 최저생계비는 예컨대 현행법상 “전년도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50% 이상” 등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⁶²⁾

2) 중립적 방식에 따른 최저생계비 산정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의 변화, 소비행태,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하위소득계층의 지출유형과 내용을 고려하

62)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으로는 1952년 ILO 102호 조약, 즉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 Convention)”을 참고할 만하다. 이 조약에서는 급여제공 수단으로서 사회보험 외에도 일반조세에 의한 보호, 그리고 관리운영의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경우라면 민간보험 까지도 사회보장의 범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급여계산방식으로는 소득비례방식(사회보험), 정액급여방식(수당),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방식(공공부조)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보장 구성체계를 바탕으로 각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급여 수준 요건과 급여기간, 급여 수급의 최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중 적용범위의 최저기준을 보면 전체 피용자의 50% 이상, 경제활동 인구의 20% 이상, 거주자 기준으로 전체 거주자의 50% 이상 또는 일정기준 이하의 자산을 갖는 거주자 전체이며, 급여수급 요건과 급여기간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리 설정되었다. ILO 102호 조약이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이후에도 ILO는 다른 조약과 권고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ILO 102호 조약의 개별 급여기준을 상향조정한 급여별 영역조약(120호 조약 등)과 이보다 높은 기준을 담고 있는 권고 등(134호 권고 등)이 채택되었다. 물론 ILO 조약은 관련 당사국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관련 당사국의 경제·경제 등의 제반 여건에 따라 목표치에 달하는 사회보장수준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조약에서는 절대빈곤선 개념과 상대빈곤선 개념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절대빈곤선 개념을 상대빈곤선 개념에 입각하여 개편하는 데에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를 국내적 상황에 맞게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만 남기 때문이다.

여 생계급여의 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⁶³⁾ 이와 더불어 위 고려요소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의 측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매 3년 마다 측정되도록 하고 있고, 3년 기간 중간에 매년 이루어지는 최저생계비 갱신의 기준은 주로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일반가구의 소득 혹은 지출증가율에 미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방법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조정이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발전에 연계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⁶⁴⁾ 따라서 최저생계비 측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급여체계의 개선

근로능력자의 최저생활보장과 근로유인의 정책패키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적인 측면에서 욕구별 급여체계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와 관련성 등 보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급여체계의 다원화

현행 급여체계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여체계를 다원화 할 수 있다. 이 경

63)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사회부조법이다. 독일의 사회부조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필수적인 수요를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회부조법은 임금의 변화, 소비행태, 생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의 통계를 통하여 조사된 하위 소득계층의 지출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들 고려요소들이 예시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신축성있는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Vgl. J. Hoffmann, "Sicherung eines Existenzminimums im Sozialstaat - Zur aktuellen Diskussion um die Reform des Sozialhilferechts", Vierteljahresschrift für Sozialrecht(2002), ff. 107).

64) 허선, "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15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329면

우 급여의 유형은 기본급여, 부가급여, 특별급여의 형태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급여는 모든 가구의 공통적 욕구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로 이는 현 생계급여의 문제점을 보완한 급여이다. 기본급여는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비, 연료비, 교통통신비, 가구사용품비, 기타 소비지출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생계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산정시 반영한다.⁶⁵⁾

부가급여는 가구구성 및 가구특성에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부가급여의 범주에는 현재 현물급여로 제공되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 지급한다), 주거급여(주거별 임대료와 주택보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를 비롯하여 장애, 노령 등에 다른 추가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급여들을 포함한다.⁶⁶⁾ 다만, 의료급여는 현재와 같이 의료보호의 형태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과의 입법체계적 조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 노령 등에 대한 부가급여의 신설은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이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65) 김태성/손병돈, 전계서, 353면 이하 참조

66)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在家) 정신장애인 152명과 20개 집단 주거시설에 사는 정신장애인 13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50.4%와 집단 주거시설 거주장애인의 48%가 기초생활수급권자였으며, 두 집단 모두 정신장애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40만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참조). 이 보고서는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작성되었지만, 우리사회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 많은 수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이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빈곤층에 있는 자들의 경우 일반 빈곤층과는 달리 추가 소득 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에 대처방안으로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제도의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빈곤구제를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수당형식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애, 노령, 아동 등에 대한 부가급여를 신설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대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장애수당, 노인수당(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서는 이들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⁶⁷⁾

다만, 여기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령부가급여의 신설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의 노령연금과의 관계이다. 사회적 위험 중 노령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현금급여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부가급여와 노령연금이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중복급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부양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기능한다는 점에서 노령보호에 있어 진전된 법제이지만 급여는 정액급여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수준과는 관계없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초노령보장에 충실한 개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이러한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행하되 수급조건에 있어서 노인의 수요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⁶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애부가급여의 경우 획일적 급여기준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급여수준을 세분

67)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 대한 수당,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는바, 위 대안이 반영될 경우 아동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 보육료, 양육비 지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68) 전광석/윤석진, 전거서, 82-83면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부가급여의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상의 현행 노령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관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수당의 급여종류 및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부가급여의 경우에도 일반아동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과 장애아동부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분리하여 빈곤가구별 특성에 맞추어 차등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행 통합급여체계의 개편

1) 완전 개별급여체계의 개편

차상위계층은 이미 생계욕구는 충족하고 있으며, 주거에 대해서도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공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거, 의료, 자활 등의 욕구에 상응하는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⁶⁹⁾

2)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용방식으로서의 전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통합급여와 부분급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통합급여의 형식으로 지급되며, 이외의 급여는 개인별 욕구에 상응하여 개별급여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69) 개별급여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필요적용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급여체계이다. 이 원칙은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리로서 기준 및 정도의 원칙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원칙이다. 즉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될 때 법의 본래의 목적이 오히려 흐려질 우려가 있어 법을 구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통상의 일상수요 이외에 특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고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요,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필수원칙인 것이다(박석돈,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복지행정논총』 제13집제2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3, 19-120면).

개별급여의 대상은 대부분 수급자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력의 투입은 급여의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합급여부분과 개별급여부분은 목적 및 운영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급여를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요건을 충족시키면 두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어 중복급여금지 또는 급여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른 법률상의 급여는 중복급여금지 또는 급여의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보장원칙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⁷⁰⁾ 이에 따를 경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통합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 가구별로 대상 가구의 욕구에 따라 일부 급여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근로유인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1) 생계급여의 개편과 근로소득보전제도 등의 도입

소득보장제도로써 기초생계급여제도의 수급집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여기에 이른바 “근로소득보전제도(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로 불리우는 일종의 근로장려세제를 신설하는 것이다.⁷¹⁾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의 증가와 함께 급여도 증가하는 설

70) 이러한 방식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사회법 제12장에서 사회부조제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계보호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보호급여를 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급여지원에 비해서는 높은 소득기준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도 경우에 따라서 보호대상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예산투입에 있어서도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광석, 『독일의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244-245면 참조

71) 근로소득보전제도(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의 자세한 내용은 박능후,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4, 6면 이하 참조

계를 갖추고 있어 저숙련 근로빈곤층의 지원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수준까지는 근로가 증가할수록 소득 지원 혜택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전통적인 공공부조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정수준의 소득부터는 그 혜택을 점차 감소시켜 제도의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다.⁷²⁾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장려세제라는 명목으로 근로소득보전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고려하고 있는 빈곤구제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보전제도의 적용은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들의 소득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자활사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직접적인 금전인센티브로서 취업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를

72)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기관지에 수록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연금저축,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서 계층간 세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244명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5분위의 소득(7082만원)은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 소득(1630만원)의 4.3배였으며, 소득공제금 차이는 각각 1043만원, 193만원으로 5.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정운오/전병욱,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계연구』 제15권 제2호, 통계청, 24면 이하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제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공제로 인한 세후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빈곤층으로 대표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배려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는바, 근로소득장려세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한 근로소득 증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이 탈수급시 의료·교육 등의 현물급여 상실이므로 현물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의 상향조정 노력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소득보전제도는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으로 근로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⁷³⁾

(2) 생계급여의 분리운영

생계급여의 분리·운영 방안은 앞서 제시한 생계급여재편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갖는다. 이 방안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제도를 분리·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능력유무의 판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애판정 인프라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근로유인을 위한 생계급여의 재편은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4. 기타 민원처리 복잡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대안

공무원대상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관련기관에서의 상시적 자산과약 필요성, 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의 문제는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착이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00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과 2009년 4월 기반구축 1차사업분석을 완료하였고, 2009년 6월부터 기반구축 2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통하였다.

73) 구인회, 전계서, 126-127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개인별·가구별 복지급여를 관리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대상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공적 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수급자의 자격변공과약이 용이해진다. 또한 소득·재산의 표준화와 공적 자료의 확대 및 공동활동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을 간소화·자동화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경감과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2 절 대안별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제도개선 방향은 공공부조에 대한 광범한 수요의 충족,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그리고 제한된 재원으로부터의 효과 최대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세계적 경향은 공공부조제도의 표적성(targeting)강화와 취업연계급여(in-work benefit)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일반적 공공부조를 범주적 공공부조와 결합하여 운영하거나 보편적 데모그란트(demogrant)를 슬림화하여 일부 요소를 공공부조로 전환함으로써 표적화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탈빈곤 및 근로유인 부족의 경우 복지체제 전반의 설계의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상의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황을 기초로 대안별 비교를 한다.

1.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1) 기준완화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제한된 국가재정 범위를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생활의 사각지대와 국

가재정부담의 가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 중 단지 1.8%정도만 보호할 수 있어 여전히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2) 기준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빈곤층을 대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급자범위의 확대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의 개선

상대적 빈곤개념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률보다 빈곤률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산정은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반면에, 수급자의 범위 확대는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립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산정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단순화된 지표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을 포기하고 임금의 변화, 소비행태 및 생활비용을 최저생계비 계측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하위소득계층의 지출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다만 이 경우 통계청 등 통계전문기관과 연계되어 개별 고려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급여체계의 개선

(1) 긍정적 효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차상위계층 혹은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급여방식은 통합급여방식의 단점, 즉 개별 급여별 수급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급여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빈곤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용방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게 장제급여와 자활급여만 지급하여야 하는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생계급여 분리운영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은 첫째,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근로소득보전제도는 근로유인효과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부정적 효과

장애, 노령 등에 대한 부가급여의 신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사회수당형식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가급여를 신설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현행 공공부조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게 되는데,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예상된다.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은 기존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흡수되지 못하던 빈곤층을 추가로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국가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제 3 절 한 계

1.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 지원 제공의 기준선으로서의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통계적·이론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책집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비계량적인 기준으로서 집행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결정시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공공재정의 부담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계비산정기준의 조정은 결국 재정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 복지예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히 빈곤층구제의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사이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제도자체로서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생계비기준 보완작업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⁷⁴⁾

2. 근로연계형 기초생활보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은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74) 이정관, 전계서, 321면

통합급여체계와 보충급여방식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제도 틀로 인해 근로유인효과의 부족 문제가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에 해당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근로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보다 실질 가치 분소득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근로활동과 연계시켜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목적과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물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①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②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③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④자활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30%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대상이 네 개에 불과한 점에서 보듯이 공제대상 소득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전체 수급대상자의 근로소득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적요범위의 확대가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근로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제도의 포커스 설정, 근로능력판정기준의 재설계, 정확한 소득과약 등이 충분히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판단 기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그 절차의 복잡성이 있다.

이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근로소득보전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현행 근로소득공제제도와는 달리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의 소득세 성격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을 하는 수급가구만이 수혜대

상이기 때문에 일과 복지를 연계 하려는 최근 추세에 부합되며 효과적인 근로유인제도로써 평가받고 있다.⁷⁵⁾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 즉 근로연계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그 대상을 현 수급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내용을 보충하고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한 빈곤탈출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계층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부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하여 상호보완작용을 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도입절차의 복잡성이 예상된다. 그리고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을 위해 생계급여를 분리·운영하는 방안은 자칫 근로 가능한 수급층 보다 근로무능력 수급층에 대한 소득보전분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근로유인동기의 부여를 위한 관련 요건의 정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맹점인 광범위한 빈곤구제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우려도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75) 이정관, 전계서, 336면 이하; 구인회, 전계서, 12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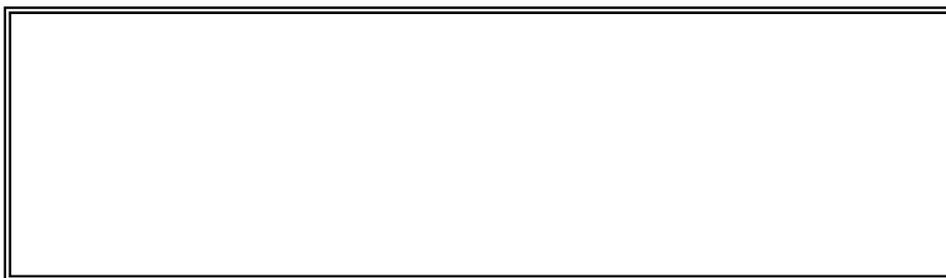
참고문헌

- 강명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대안 방향-비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입법화를 위한 기초연구-”, 빈곤퇴치연구포럼, 2010
- 강성진,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금융경제연구』 423호, 2009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정부) 검토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2010
- 관계부처합동,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회의자료집, 2009. 3.1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문현,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의 규범성”, 『법학논집』 제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김미숙 외 11인, “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연구: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 『정책 2009-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태성/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9

- 김한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사회복지실천』 제 7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8
- 남기철,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2007
- 문진영, “사회보장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 및 정책과제(1)”, 『보건복지포럼』 통권 167호, 2010.9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요인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 박석돈,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복지행정논총』 제13집제2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3
- 방하남/황덕순,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백서, 2010
- _____,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 _____,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0
- 어기구/전영호, “경제위기와 저소득층 보호정책의 평가 및 대안연구”, 『연구총서』 2009-0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9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KDI 정책포럼 제 167호, 2003

-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 정책포럼 제 215호, 2009
- 이정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글로벌, 2009
- 이현주 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 _____, 독일의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2008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구체적 권리로서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허 선, “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제 15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P. Townsend, 1979 Poverty in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 Rainwater, 1974 What Money Buys. New York: Basic Books
- J. Hoffmann, “Sicherung eines Existenzminimums im Sozialstaat - Zur aktuellen Diskussion um die Reform des Sozialhilferechts”, Vierteljahresschrift für Sozialrecht, 2002

<부 록 1>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긴급복지지원급여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법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짝짝마다 방문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실태과약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월 ~ 10월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02)3498-8792)

▣ 조사 수행 기관
(주)디시알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02)3775-1060)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 E-mail: kkd@dcrpoll.com

<부 록 1> 설문조사서

응답자 성명		연락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표기 하지 않음)
구 분	① 긴급복지지원급여 수급자 ② 긴급복지지원급여 비수급자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별	만 ___ 세 (만 13세 이상인 경우만 면 접 진행)
거 주 지 광역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상세주소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담당자 서 명		자 료 수집일	

I. 응답자 가구 일반 사항

※ 문 1번부터 문 7번까지는 각 문항을 읽고 나서 다음 페이지의 [표]에 해당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p>문 1. 본인을 포함해서 선생님의 가족을 모두 적어주세요.</p> <p>☞ 예) 조부(할아버지), 부(아버지), 모(어머니), 삼촌, 고모, 형(오빠), 언니(누나), 자녀 등</p>
<p>문 2. 해당 가족의 성별을 적어주세요.</p> <p>☞ 남성이면 '남', 여성이면 '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3. 해당 가족의 나이를 적어주세요.</p> <p>☞ 만 ___ 세 [예: 1974년생= 만 36세(2010년-1974년)]</p>
<p>문 4. 해당 가족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말씀해주세요.</p> <p>☞ 예) ① 상시고용 ② 임시고용 ③ 일용직(파출부, 일용잡부) ④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⑤ 자활근로 ⑥ 실업 ⑦ 비경제활동(근로 불가능) ⑧ 기타(구체적으로:)</p>
<p>문 5. 해당 가족이 현재 함께 살고 계신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p> <p>☞ 현재 함께 살고 있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6.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p> <p>☞ 해당 가족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7.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p> <p>☞ 장애가 없다면 0, 가벼운 장애가 있다면 1,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2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표> 해당되는 사항에 숫자를 적거나 O, X로 표시해주세요. 빈 칸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1. 가족구성	2. 성별	3. 연령	4. 취업상태	5. 동거여부	6. 만성질환여부	7. 장애여부
① 본인				-	-	-
②		만 ___ 세				
③		만 ___ 세				
④		만 ___ 세				
⑤		만 ___ 세				
⑥		만 ___ 세				
⑦		만 ___ 세				

문 8.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 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럿일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가족을 한 분만 적어주세요.

()

예)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또는 자매, 남매, 자녀, 손자녀 등

문 9. 실례지만 선생님 본인께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십니까?

- ① 중증 장애가 있다 ② 가벼운 장애가 있다
- ③ 장애가 없다

문 10. 실례지만 선생님 본인께서는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으십니까?

- ①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 ②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
- ③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하다
- ④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문 10_1. (앞에서 ①,②,③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여러 개일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고혈압성질환 ② 당뇨병 ③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 ④ 호흡기결핵 ⑤ 심장질환 ⑥ 대뇌혈관질환
- ⑦ 신경계질환 ⑧ 암 ⑨ 갑상선의 장애
- ⑩ 간 질환 ⑪ 만성신부전증
-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11. 선생님의 현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 ①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된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② 1종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③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④ 잘 모르겠다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가구 대상 설문

※ 문 12번부터 문 20번까지는 현재 지원대상으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설문지의 뒷 장을 넘겨 7페이지의 문 21번부터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1. (앞에서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야 한다
-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 ③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13. 본인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
- ②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
-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⑤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 곤란
- ⑥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곤란
- ⑦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4. 선생님께서는 현재 기초보장 수급형태 중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중복된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생계급여
- ② 주거급여
- ③ 의료급여
- ④ 교육급여
- ⑤ 해산급여
- ⑥ 장제급여
- ⑦ 자활급여
-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5. 현재 선생님께서 받고 계신 지원의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응답해주세요.

	해당 여부	구분	내용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보기]	✓	생계 급여	방법			✓		
			기간		✓			

<부 록 1> 설문조사서

해당 여부	구 분	내 용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생계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주거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의료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교육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자활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그외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 본인이 수급대상이 아닌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1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담당 공무원 및 담당기관(민간기관 포함)이 ‘신청-심사-선정-지원’의 모든 과정에서 일을 얼마나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잘 진행되었다 ② 비교적 잘 진행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잘 못 진행된 편이다
- ⑤ 매우 잘 못 진행되었다 ⑥ 잘 모르겠다

문 17.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 18. 선생님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을 지원받기 전과 비교할 때 가장 나아진 점은 무엇입니까?

문 19.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0.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 지원 방법에 대해:

- 지원규모(금액)에 대해:

- 지원 기간에 대해:

Ⅲ. 비수급가구(긴급복지지원법)

※ 문 21번부터 문 30번까지는 지원을 신청하셨지만 현재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설문지의 뒷 장을 넘겨 101페이지의 문 31번부터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21. 본인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대상자로 신청 혹은 지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
- ②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
-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⑤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 곤란
- ⑥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곤란
- ⑦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22. 본인의 경우 어떤 기준(미달)때문에 탈락하셨는지요?

- ①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유무
- ② 가구의 재산 및 소득
- ③ 관련 서류 등 행정절차 미비
- ④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 ⑤ 잘 모르겠다

문 23.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 (앞에서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 ①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 ③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25. 선생님께서 신청하셨던 지원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중 가장 희망하시는 것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②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③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⑤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⑥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⑦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문 26번부터 문 29번까지는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가정 및 신청 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여쭙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며, 만약 누군가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응답내용을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염려하시고 가급적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26. 선생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 각각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식료품비	약 _____ 만원
2) 전/월세 등 주거비	약 _____ 만원
3) 보건의료비(약값, 치료비 등)	약 _____ 만원
4) 본인 및 자녀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약 _____ 만원
5) 저축, 보험 등 보장금액(예금, 적금 포함)	약 _____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약 _____ 만원

문 27.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각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본인의 근로소득	약 _____ 만원
2) 본인 외 가족의 근로소득	약 _____ 만원
3)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약 _____ 만원
4) 기타 정부보조금	약 _____ 만원
5)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약 _____ 만원

문 28.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총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금융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등)	약 _____ 만원
2)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상가 등)	약 _____ 만원
3) 그 외 자산(자동차 등)	약 _____ 만원

문 29. 실례지만 선생님 가족의 총 부채(빚)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빚이 전혀 없다 ② 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 이상

문 30.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IV.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 31번부터 문 34번까지는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31. 본인은 현재 결혼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이혼 또는 별거 중
 ③ 사별 후 독신 ④ 미혼(19세 이상)
 ⑤ 그 외 기타 (예) 현재 미성년자임 _____)

문 32.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학교에 다니지 않음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중학교 재학중 ④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고등학교 재학중 ⑥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⑦ 전문대학교 재학중 ⑧ 전문대학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⑨ 4년제 대학교 재학중 ⑩ 4년제 대학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⑪ 대학원 재학중 ⑫ 대학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⑬ 기타 (적을 것: _____)

문 33.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다음 중 어떤 종류인가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 ③ 다가구(연립)주택 ④ 무허가 주택
- ⑤ 구호 시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34. 선생님 가구의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① 자가(본인 및 가족 소유의 집에서 거주)
- ② 전세(1억 이상) ③ 전세(1억 미만)
- ④ 월세 ⑤ 장기(영구)임대
- ⑥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집집마다 방문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실태과약에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으로 규정된 일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9월 ~ 10월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02)3498-8792)

▣ 조사 수행 기관
(주)디시알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02)3775-1060)

▣ 조사 담당자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 E-mail: kkd@dcrpoll.com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탈락자 실태조사 설문지

응답자 성 명		연락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표기 하지 않음)
구 분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② 기초생활보장급여 비수급자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별	만 ___ 세 (만 13세 이상인 경우만 면 접 진행)
거 주 지 광역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상세주소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담당자 서 명		자 료 수집일	

I. 응답자 가구 일반 사항

※ 문 1번부터 문 7번까지는 각 문항을 읽고 나서 다음 페이지의 [표]에 해당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p>문 1. 본인을 포함해서 선생님의 가족을 모두 적어주세요.</p> <p>☞ 예) 조부(할아버지), 부(아버지), 모(어머니), 삼촌, 고모, 형(오빠), 언니(누나), 자녀 등</p>
<p>문 2. 해당 가족의 성별을 적어주세요.</p> <p>☞ 남성이면 ‘남’, 여성이면 ‘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3. 해당 가족의 나이를 적어주세요.</p> <p>☞ 만 ___ 세 [예: 1974년생= 만 36세(2010년-1974년)]</p>
<p>문 4. 해당 가족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말씀해주세요.</p> <p>☞ 예) ① 상시고용 ② 임시고용 ③ 일용직(파출부, 일용잡부) ④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⑤ 자활근로 ⑥ 실업 ⑦ 비경제활동(근로 불가능) ⑧ 기타(구체적으로:)</p>
<p>문 5. 해당 가족이 현재 함께 살고 계신지 여부를 말씀해주세요.</p> <p>☞ 현재 함께 살고 있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6.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p> <p>☞ 해당 가족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O,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p>문 7. 선생님의 가족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p> <p>☞ 장애가 없다면 0, 가벼운 장애가 있다면 1,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2로 표시하시면 됩니다.</p>

<표> 해당되는 사항에 숫자를 적거나 O, X로 표시해주세요. 빈 칸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1. 가족구성	2. 성별	3. 연령	4. 취업상태	5. 동거여부	6. 만성질환여부	7. 장애여부
① 본인				-	-	-
②		만 ___ 세				
③		만 ___ 세				
④		만 ___ 세				
⑤		만 ___ 세				
⑥		만 ___ 세				
⑦		만 ___ 세				

문 8.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 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럿일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가족을 한 분만 적어주세요.

()

예)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또는 자매, 남매, 자녀, 손자녀 등

문 9. 실례지만 선생님 본인께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십니까?

- ① 중증 장애가 있다 ② 가벼운 장애가 있다
- ③ 장애가 없다

문 10. 실례지만 선생님 본인께서는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으십니까?

- ①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
- ②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
- ③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하다
- ④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문 10_1. (앞에서 ①,②,③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여러 개일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고혈압성질환 ② 당뇨병
- ③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 ④ 호흡기결핵 ⑤ 심장질환
- ⑥ 대뇌혈관질환 ⑦ 신경계질환
- ⑧ 암 ⑨ 갑상선의 장애
- ⑩ 간 질환 ⑪ 만성신부전증
- ⑫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1. 선생님의 현재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 ①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된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② 1종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③ 2중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④ 잘 모르겠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가구 대상 설문

※ 문 12번부터 문 23번까지는 현재 지원대상으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설문지의 뒷 장을 넘겨 8페이지의 문 24번부터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2.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1. (앞에서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세요?

- ①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 ③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13.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담당 공무원 및 담당기관(민간기관 포함)이 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을 얼마나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진행되었다 ② 비교적 잘 진행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잘 못 진행된 편이다
- ⑤ 매우 잘 못 진행되었다 ⑥ 잘 모르겠다

문 14. 선생님께서는 현재 기초보장 수급형태 중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중복된 경우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 ⑦ 자활급여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5. (자활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만 해당) 최근 3개월 이내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 자활근로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무료간병, 집수리 등)
- ② 자활사업도우미(자활사업실시기관 근무)
- ③ 복지도우미(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④ 그 외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 ⑤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내용 (구체적으로 : _____)

문 16. (자활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만 해당) 본인의 자활근로 참여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 17. (자활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만 해당) 선생님께서는 향후에도 자활근로 또는 그 외의 근로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중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자활근로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 ② 자활근로사업이외의 다른 근로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 ③ 자활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있다
- ④ 자활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없다
- ⑤ 잘 모르겠다

문 17-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18. 현재 선생님께서 받고 계신 지원의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응답해주세요.

<부 록 1> 설문조사서

[보기]	해당여부	구분	내용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생계 급여	방법			✓		
			기간		✓			

해당여부	구분	내용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생계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주거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의료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교육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자활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그외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 본인이 수급대상이 아닌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19.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 편이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 20. 선생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전과 비교할 때 가장 나아진 점은 무엇입니까?

문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22.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 지원 방법에 대해:

- 지원규모(금액)에 대해:

- 지원 기간에 대해:

Ⅲ. 비수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문 23번부터 문 29번까지는 지원을 신청하셨지만 현재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급대상인 분들께서는 설문지의 뒷 장을 넘겨 11페이지의 문 30번부터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23. (모든 응답자에 해당) 본인의 경우 어떤 기준(미달)때문에 탈락 하셨는지요?

- ①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이 기준을 초과해서
- ② 본인 및 가족의 재산기준이 기준을 초과해서
- ③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신청자의 준비부족으로
- ④ 그 외 기타 ()

문 24.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1. (앞에서 ①,②번을 선택한 경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지원수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
- ③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문 25번부터 문 28번까지는 기초보장제도 신청 가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여쭙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되며, 만약 누군가 통계분석 이외의 목적으로 응답내용을 누설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염려하시고 가급적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25. 선생님께서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음 항목에 대해 각각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식료품비	약 _____ 만원
2) 전/월세 등 주거비	약 _____ 만원
3) 보건의료비(약값, 치료비 등)	약 _____ 만원
4) 본인 및 자녀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약 _____ 만원
5) 저축, 보험 등 보장금액(예금, 적금 포함)	약 _____ 만원
6)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약 _____ 만원

문 26.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각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본인의 근로소득	약 _____ 만원
2) 본인 외 가족의 근로소득	약 _____ 만원
3)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약 _____ 만원
4) 기타 정부보조금	약 _____ 만원
5)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약 _____ 만원

문 27.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의 총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구 분	금액(만원 단위)
1) 금융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등)	약 _____ 만원
2)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상가 등)	약 _____ 만원
3) 그 외 자산(자동차 등)	약 _____ 만원

문 28. 실례지만 선생님 가족의 총 부채(빚)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빚이 전혀 없다
- ② 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 이상

문 29.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IV.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 30번부터 문 33번까지는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30. 본인은 현재 결혼하셨습니다가?

- ① 기혼
- ② 이혼 또는 별거 중
- ③ 사별 후 독신
- ④ 미혼(19세 이상)
- ⑤ 그 외 기타 (예) 현재 미성년자임 _____)

문 31.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학교에 다니지 않음
-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③ 중학교 재학중
- ④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⑤ 고등학교 재학중
- ⑥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⑦ 전문대학교 재학중
- ⑧ 전문대학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⑨ 4년제 대학교 재학중
- ⑩ 4년제 대학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⑪ 대학원 재학중 ⑫ 대학원 졸업(휴학, 중퇴 포함)
- ⑬ 기타 (적을 것: _____)

문 32.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다음 중 어떤 종류인가요?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 ③ 다가구(연립)주택 ④ 무허가 주택
- ⑤ 구호 시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33. 선생님 가구의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① 자가(본인 및 가족 소유의 집에서 거주)
- ② 전세(1억 이상) ③ 전세(1억 미만)
- ④ 월세 ⑤ 장기(영구)임대
- ⑥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 설문지(공무원)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급여의 효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자 해당업무를 맡고 계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향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개별 지역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제도개선 및 보완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오니, 가급적이면 자세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9월 ~ 10월

▣ 조사 주관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02)3498-8792)

▣ 조사 수행 기관
 (주)디시알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02)3775-1060)
 조사연구실장 김기덕 T: (02)3775-1068 / F: (02)3775-1061 / E-mail: kkd@dcrpoll.com

<부 록 1> 설문조사서

응답자 성명		연락처	☎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별	만 ___ 세
거주지 광역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상세주소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소속기관		직급	근속년수

I. 일반 사항

문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직렬에 해당되십니까?

- ① 행정 ② 사회복지 ③ 보건 ④ 기능직
⑤ 기타 ()

문 2. 선생님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문 3.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전체 업무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업무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의 전체 업무를 감안하여 최대 100%까지로 응답하여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	()	()%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업무	+	()%
그 외 일반 업무	+	()%
전체 업무량	=	100%

Ⅱ. 업무 현황 및 집행 시 애로사항

문 4. 선생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①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 ② 인증 및 결제 등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 ③ 담당인력에 비해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
- ④ 신청자의 하소연이나 탈락자의 항의 등 정서적 문제가 심하다
- ⑤ 기타 ()

문 5. 본인의 현장경험을 비취 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시거나, 보다 간소화 시켜도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문 6.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문 6-1. (문 6의 응답에 대해) 특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문 7. 수급자를 선정할 때,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배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7-1. (문 7의 ①번 응답자의 경우) 그렇다면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생각하셨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세요.

덧붙여 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세요.

문 8.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파악이 쉽지 않을 경우, 금융권,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자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문 9. 선생님의 경우 주로 다루는 지원의 종류가 어떠신지요? 각 종류 별로 비율을 적어주세요.

(주: 전체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생계급여	()%	해산급여	()%
주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	자활급여	()%
교육급여	()%	총 계	100%

문 10.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심사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의 경우, 가장 많은 탈락사유가 무엇인가요?

- ①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 ②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재산기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 ③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신청자의 준비부족으로
- ④ 그 외 기타 ()

문 1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급자(신청탈락자 포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종류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 ⑦ 자활급여

문 11-1. 앞에서 응답하신 지원종류(문 11의 응답)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 주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업무 담당자만 해당)

문 12. 선생님께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현장에서 빈번하게(혹은 주로, 자주) 보신(혹은 경험하신) 위기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
- ②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
- 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 ⑤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 곤란
- ⑥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곤란
- ⑦ 그 외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 13.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아래의 빈 칸에 [보기]와 같이 응답해주세요.

[보기]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부 록 1> 설문조사서

구 분	내 용	매우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생계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주거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의료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교육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자활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그외 급여	1) 수급방법						
	2) 지원규모(금액)						
	3) 지원기간						

문 14.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혹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
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전혀 만족 못 한다	해당 없음/ 잘 모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긴급 복지지원법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이 지원받기 전과 비교할 때 가장 나아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문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다수의 수급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 등의 전반적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현재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수급자에 비해 지원정도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현장 경험상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지원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덧붙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문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주세요.

- 지원 방법에 대해:

- 지원규모(금액)에 대해:

- 지원 기간에 대해:

문 19. (긴급복지지원법만 해당)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자들이 지원받기 전과 비교할 때 가장 나아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문 20. (긴급복지지원법만 해당) 다수의 수급자들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 등의 전반적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가급적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 21. (긴급복지지원만 해당)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은 1인 기준 345,000원/월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504,344원/월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현행(345,000원/월)대로 유지해도 관계없다
- ② 400,000원대로 상향해야 한다
- ③ 500,000원대로 상향해야 한다
- ④ 600,000원대로 상향해야 한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과 연동시켜야 한다
- ⑥ 기타 ()

문 22. (긴급복지지원만 해당)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은 접수 후 8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필요한 시간은 얼마정도입니까?

- ① 접수 후 4시간 이내 ② 접수 후 8시간 이내(현행)
- ③ 접수 후 12시간 이내 ④ 접수 후 24시간 이내
- ⑤ 접수 후 36시간 내외 ⑥ 그 이상 (____시간 정도)

문 23. (긴급복지지원만 해당)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횟수(총 3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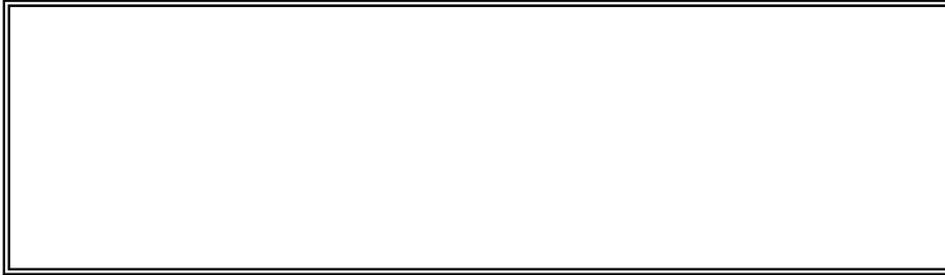
문 24.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세요.

<부 록 1> 설문조사서

- 지원 방법에 대해:
- 지원규모(금액)에 대해:
- 지원 기간에 대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제 1 장 조사개요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제로는 빈곤층지원 목적의 공공부조법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긴급복지지원법 역시 제정된 지 5년에 이르렀으나, 빈곤층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방치된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차상위 계층 및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빈곤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점검하고, 빈곤지원에 대한 수급자들의 빈곤개선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본 과업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급여의 수급이전과 이후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규범의 목표달성도, 비용-효과, 효과모델의 긍정성·부정성, 유효성여부를 평가하고 양 법제간의 체계정합성·상호연계성 여부를 분석하여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입법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II. 조사 설계 및 절차

본 조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24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복지법제 담당공무원 159명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528명(수급자 405명 + 탈락자 123명),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급여 관련 405명(수급 311명+탈락자 94명)의 1,092명이었다.

조사는 각 지역의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과 복지기관 직원들의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민원기관 방문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참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완료된 문항들은 통계 프로그램 SPSS Window(ver.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문항별로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 및 2검정(Chi-Square Test) 등의 추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 록 2>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복지법제 담당 공무원 - 지원법제 수급자 및 탈락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조사 방법	- 공무원 : 자기기입식 설문 - 수급자 및 탈락자 : 담당업무 공무원에 의한 가구방문 조사 :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하는 수급자 자기기입식 작성 및 배포 후 수거 :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지원기관 직원의 가구방문 및 설문지 배포 후 수거
조사 표본 수	총 1,092명 - 복지법제 담당공무원 159명 -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528명 (수급자 405명 + 탈락자 123명) - 긴급복지지원급여 관련 405명 (수급자 311명 + 탈락자 94명)
표본추출 방법	지역/응답자 특성별 할당 후 Random Sampling
조사 기간	2010년 9월 27일 ~ 2010년 10월 20일 (총 24일간)

Ⅲ. 응답자 특성_ (1) 담당 공무원

응답자(담당 공무원)의 주요 분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126명, 79.2%)이 남성(33명, 20.8%)에 비해 많았고, 연령대는 30대 19.5%, 40대 47.2%, 50대 27.0%, 60대 5.0%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직급은 7급(39.6%)과 8급(34.6%)의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9급(11.3%), 6급(7.5%)의 순이었으며, 직렬구분은 사회복지 84.9%, 행정 11.3%, 보건 3.8%의 순이었다.

【표】 응답자 특성 _ (1) 담당 공무원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59	100.0	전 체		159	100.0	
권역	서울/수도권	48	30.2	연령별	30대	31	19.5	
	6대광역시	38	23.9		40대	75	47.2	
	중소도시	44	27.7		50대	43	27.0	
	기타농어촌	29	18.2		60대	8	5.0	
지역	서울	33	20.8	직급	6급	12	7.5	
	부산	5	3.1		7급	63	39.6	
	대구	6	3.8		8급	55	34.6	
	인천	3	1.9		9급	18	11.3	
	광주	27	17.0	직렬	행정	18	11.3	
	대전	1	0.6		사회복지	135	84.9	
	울산	4	2.5		보건	6	3.8	
	경기	15	9.4	근속 년수	1년이하	6	3.8	
	강원	5	3.1		1년~3년이하	14	8.8	
	충북	2	1.3		3년~5년이하	28	17.6	
	충남	6	3.8		5년~7년이하	32	20.1	
	전북	4	2.5		7년이상	26	16.4	
	전남	7	4.4		응답거부	44	27.7	
	성별	남성	33	20.8	담당 기간	3개월미만	16	10.1
		여성	126	79.2		3~6개월미만	6	3.8
						6~12개월미만	22	13.8
						1년~2년미만	27	17.0
				2년이상		87	54.7	

Ⅲ. 응답자 특성_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

본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 모두 40대와 50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 10대 9명(2.2%), 20대 22명(5.4%), 30대 55명(13.6%), 40대 108명(26.7%), 50대 75명(18.5%), 60대 53명(13.1%), 70대 57명(14.1%), 80대이상 24명(5.9%)이었으며,

탈락자의 경우 10대 2명(1.6%), 20대 15명(12.2%), 30대 13명(10.6%), 40대 28명(22.8%), 50대 28명(22.8%), 60대 11명(8.9%), 70대 21명(17.1%), 80대이상 5명(4.1%)의 분포를 보였다.

【표】 응답자 특성 _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

		수급자		탈락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05	100.0	123	100.0
지역	서울/수도권	133	32.8	26	21.1
	6대광역시	73	18.0	6	4.9
	중소도시	109	26.9	61	49.6
	기타농어촌	90	22.2	30	24.4
성별	남성	138	34.1	39	31.7
	여성	267	65.9	84	68.3
연령별	10대	9	2.2	2	1.6
	20대	22	5.4	15	12.2
	30대	55	13.6	13	10.6
	40대	108	26.7	28	22.8
	50대	75	18.5	28	22.8
	60대	53	13.1	11	8.9
	70대	57	14.1	21	17.1
	80대이상	24	5.9	5	4.1
혼인 여부	기혼	86	21.2	37	30.1
	이혼또는별거중	121	29.9	25	20.3
	사별후독신	114	28.1	37	30.1
	미혼19세이상	67	16.5	16	13.0
	그외기타	13	3.2	4	3.3
	모름/무응답	4	1.0	4	3.3

(뒷장 계속)

【표】 응답자 특성 _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

(앞장에 이어 계속)

		수급자		탈락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405	100.0	123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8	4.4	17	13.8
	임시고용	12	3.0	14	11.4
	일용직	14	3.5	13	10.6
	자영업	13	3.2	1	0.8
	자활근로	91	22.5	13	10.6
	실업	17	4.2	4	3.3
	비경제활동	181	44.7	32	26.0
	기타	17	4.2	18	14.6
	모름/무응답	42	10.4	11	8.9
장애 여부	장애가있다	127	31.4	8	6.5
	장애가없다	274	67.7	22	17.9
	모름/무응답	4	1.0	-	-
학력	무학	66	16.3	14	11.4
	중졸이하	155	38.3	45	36.6
	고졸이하	135	33.3	40	32.5
	대졸이하	42	10.4	18	14.6
	대학원이상	2	0.5	-	-
	기타(검정고시)	-	-	1	0.8
	모름/무응답	4	1.0	5	4.1
주택 종류	단독주택	168	41.5	58	47.2
	아파트	113	27.9	25	20.3
	다가구연립주택	82	20.2	25	20.3
	무허가주택	10	2.5	3	2.4
	구호시설	1	0.2	1	0.8
	기타	27	6.7	6	4.9
	모름/무응답	4	1.0	5	4.1
주거 형태	자가	89	22.0	45	36.6
	전세1억이상	1	0.2	-	-
	전세1억미만	38	9.4	17	13.8
	월세	114	28.1	26	21.1
	장기영구임대	95	23.5	13	10.6
	기타	61	15.1	15	12.2
	모름/무응답	7	1.7	7	5.7

Ⅲ. 응답자 특성 _ (3)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및 탈락자

본 조사에 참여한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는 311명, 탈락자는 9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수급자의 경우 51.4%(160명)와 48.6%(151명), 탈락자의 경우 45.7%(43명)와 54.3%(51명)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 10대 10명(3.2%), 20대 7명(2.3%), 30대 23명(7.4%), 40대 94명(30.2%), 50대 79명(25.4%), 60대 52명(16.7%), 70대 34명(10.9%), 80대이상 11명(3.5%)이었으며,
 탈락자의 경우 10대 2명(2.1%), 20대 4명(4.3%), 30대 12명(12.8%), 40대 23명(24.5%), 50대 21명(22.3%), 60대 13명(13.8%), 70대 17명(18.1%), 80대이상 2명(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응답자 특성 _ (3)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및 탈락자

		수급자		탈락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11	100.0	94	100.0
권역	서울/수도권	50	16.1	13	13.8
	6대광역시	68	21.9	24	25.5
	중소도시	98	31.5	29	30.9
	기타농어촌	95	30.5	28	29.8
성별	남성	160	51.4	43	45.7
	여성	151	48.6	51	54.3
연령별	10대	10	3.2	2	2.1
	20대	7	2.3	4	4.3
	30대	23	7.4	12	12.8
	40대	94	30.2	23	24.5
	50대	79	25.4	21	22.3
	60대	52	16.7	13	13.8
	70대	34	10.9	17	18.1
	80대이상	11	3.5	2	2.1
	무응답	1	0.3	7	7.4
	혼인 여부	기혼	109	35.0	37
이혼또는별거중		92	29.6	20	21.3
사별후독신		58	18.6	21	22.3
미혼19세이상		37	11.9	11	11.7
그외기타		11	3.5	2	2.1
모름/무응답		3	1.0	2	2.1

(뒷장 계속)

【표】 응답자 특성 _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

(앞장에 이어 계속)

		수급자		탈락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11	100.0	94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5.1	3	3.2
	임시고용	13	4.2	6	6.4
	일용직	23	7.4	2	2.1
	자영업	8	2.6	2	2.1
	자활근로	5	1.6	2	2.1
	실업	24	7.7	57	60.6
	비경제활동	194	62.4	13	13.8
	기타	28	9.0	2	2.1
	모름/무응답	-	-	-	-
장애 여부	장애가있다	137	44.1	45	47.9
	장애가없다	170	54.7	49	52.1
	모름/무응답	4	1.3		0.0
학력	무학	39	12.5	12	12.8
	중졸이하	140	45.0	35	37.2
	고졸이하	92	29.6	34	36.2
	대졸이하	30	9.6	7	7.4
	대학원이상	3	1.0	-	0.0
	기타(검정고시)	-	0.0	-	0.0
	모름/무응답	-	0.0	5	5.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48.6	45	47.9
	아파트	60	19.3	14	14.9
	다가구연립주택	61	19.6	24	25.5
	무허가주택	10	3.2	1	1.1
	구호시설	1	0.3		0.0
	기타	24	7.7	6	6.4
	모름/무응답	3	1.0	3	3.2
주거 형태	자가	80	25.7	27	28.7
	전세1억이상	-	0.0	-	0.0
	전세1억미만	17	5.5	11	11.7
	월세	103	33.1	26	27.7
	장기영구임대	41	13.2	10	10.6
	기타	64	20.6	17	18.1
	모름/무응답	5	1.6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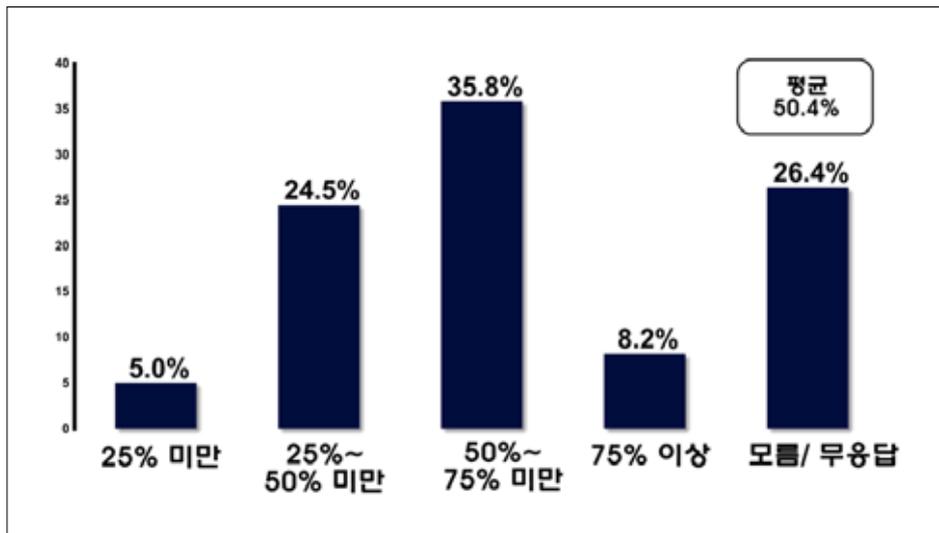
제 2 장 조사 결과 분석

I. 담당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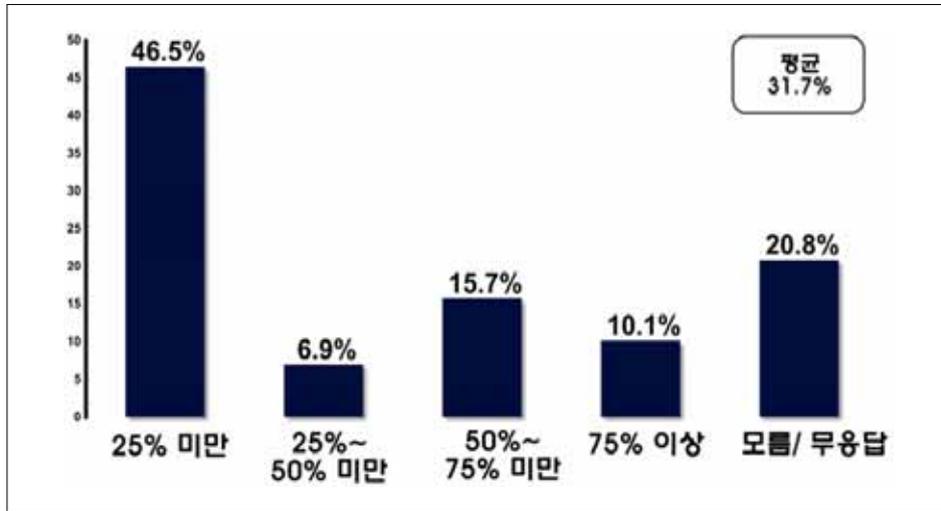
1. 담당 업무 중 복지법제 관련 업무비중

현재 담당업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그 외 일반 업무 각각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평균 50.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평균 31.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외 일반 업무의 경우 41.5% 가량을 차지한다고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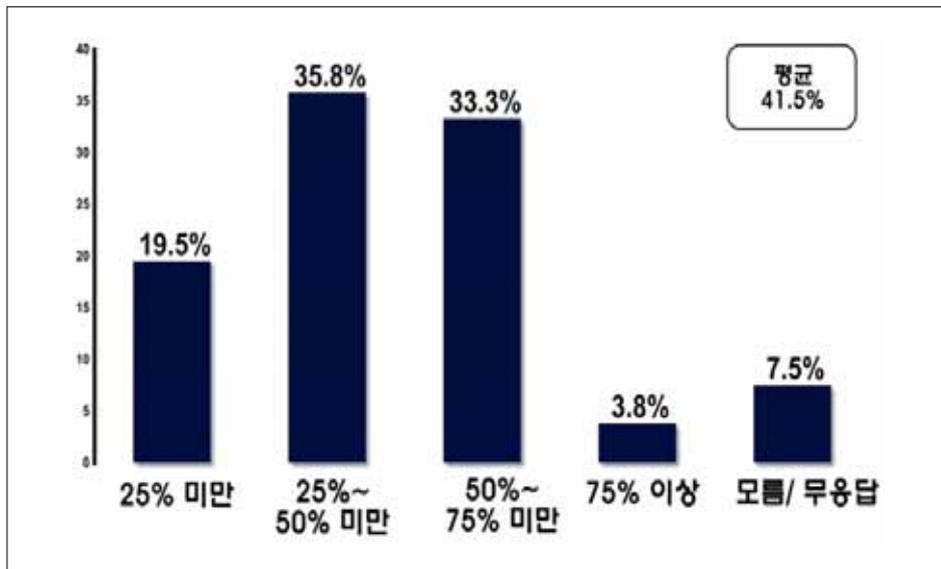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비중



긴급복지지원제도 업무비중



그 외 일반 업무비중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1_1】 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업무비중

단위:%		사례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
■ 전 체 ■		(159)	5.0	24.5	35.8	8.2	26.4	50.4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2.5	31.3	31.3	6.3	18.8	45.97
	6대 광역시	(38)	5.3	15.8	36.8	7.9	34.2	53.88
	중소도시	(44)		18.2	45.5	13.6	22.7	55.00
	기타 농어촌	(29)		34.5	27.6	3.4	34.5	46.47
지역	서울	(33)	9.1	36.4	39.4	6.1	9.1	47.07
	부산	(5)			40.0		60.0	70.00
	대구	(6)	16.7	33.3	33.3		16.7	39.00
	인천	(3)	33.3		33.3		33.3	35.00
	광주	(27)		7.4	40.7	22.2	29.6	64.84
	대전	(1)		100.0				30.00
	울산	(4)		25.0	50.0		25.0	53.33
	경기	(15)	20.0	20.0	13.3	6.7	40.0	41.88
	강원	(5)		20.0		20.0	60.0	65.00
	충북	(2)		50.0			50.0	40.00
	충남	(6)					100.0	.
	전북	(4)				25.0	75.0	80.00
	전남	(7)		14.3	28.6		57.1	46.67
경북	(3)			33.3		66.7	60.00	
경남	(38)		39.5	55.3	5.3		47.97	
성별	남성	(33)	6.1	27.3	39.4	6.1	21.2	47.00
	여성	(126)	4.8	23.8	34.9	8.7	27.8	51.39
연령별	30대	(31)	12.9	35.5	35.5	6.5	9.7	43.50
	40대	(75)	2.7	18.7	40.0	5.3	33.3	53.20
	50대	(43)	2.3	30.2	30.2	9.3	27.9	49.84
	60대	(8)	12.5	12.5	25.0	25.0	25.0	56.17
직급	6급	(12)	16.7	50.0	16.7		16.7	35.00
	7급	(63)	1.6	19.0	34.9	12.7	31.7	57.12
	8급	(55)	3.6	23.6	40.0	3.6	29.1	49.31
	9급	(18)	11.1	38.9	27.8	5.6	16.7	41.00
직렬	행정	(18)	11.1	5.6	16.7		66.7	36.67
	사회복지	(135)	4.4	27.4	39.3	9.6	19.3	51.18
	보건	(6)		16.7	16.7		66.7	50.00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33.3	16.7	16.7	50.00
	1년~3년 이하	(14)	14.3	35.7	21.4	7.1	21.4	45.50
	3년~5년 이하	(28)	14.3	25.0	42.9	3.6	14.3	43.67
	5년~7년 이하	(32)		21.9	37.5		40.6	48.95
	7년 이상	(26)		19.2	38.5	11.5	30.8	57.89
	무응답(응답거부)	(44)	4.5	25.0	27.3	13.6	29.5	52.65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12.5	12.5	43.8	6.3	25.0	50.91
	3~6개월 미만	(6)	16.7	16.7			66.7	17.50
	6~12개월 미만	(22)	4.5	18.2	18.2	4.5	54.5	44.50
	1년~2년 미만	(27)	3.7	22.2	14.8		59.3	38.64
	2년 이상	(87)	2.3	29.9	48.3	12.6	6.9	54.04

【Q1_2】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업무비중

단위:%		사례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
■ 전 체 ■		(159)	46.5	6.9	15.7	10.1	20.8	31.6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50.0	2.1	10.4	16.7	20.8	34.75
	6대 광역시	(38)	47.4	10.5	15.8	10.5	15.8	31.91
	중소도시	(44)	36.4	4.5	15.9	6.8	36.4	29.96
	기타 농어촌	(29)	55.2	13.8	24.1	3.4	3.4	28.96
지역	서울	(33)	63.6			9.1	27.3	20.05
	부산	(5)	60.0	20.0	20.0			29.00
	대구	(6)	33.3	16.7		16.7	33.3	32.50
	인천	(3)	66.7			33.3		36.67
	광주	(27)	37.0	7.4	18.5	11.1	25.9	37.16
	대전	(1)	100.0					5.00
	울산	(4)	25.0		25.0		50.0	27.50
	경기	(15)	20.0	6.7	33.3	33.3	6.7	57.86
	강원	(5)	20.0	40.0	40.0			42.00
	충북	(2)	100.0					20.00
	충남	(6)		16.7	83.3			55.00
	전북	(4)	25.0		25.0	50.0		62.50
	전남	(7)	28.6	28.6	28.6	14.3		39.29
경북	(3)		33.3	66.7			56.67	
경남	(38)	65.8		2.6		31.6	8.31	
성별	남성	(33)	48.5	9.1	15.2	6.1	21.2	26.08
	여성	(126)	46.0	6.3	15.9	11.1	20.6	33.14
연령별	30대	(31)	58.1	3.2	9.7	9.7	19.4	25.61
	40대	(75)	44.0	8.0	17.3	10.7	20.0	33.02
	50대	(43)	41.9	7.0	14.0	11.6	25.6	34.52
	60대	(8)	50.0	12.5	37.5			30.38
직급	6급	(12)	33.3		41.7		25.0	33.89
	7급	(63)	47.6	11.1	9.5	12.7	19.0	32.02
	8급	(55)	41.8	5.5	18.2	12.7	21.8	35.62
	9급	(18)	61.1	5.6	16.7	5.6	11.1	24.73
직렬	행 정	(18)	16.7	5.6	44.4	16.7	16.7	53.67
	사회복지	(135)	51.9	6.7	11.1	8.1	22.2	26.65
	보 건	(6)	16.7	16.7	33.3	33.3		61.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50.0		16.7		33.3	21.50
	1년~3년 이하	(14)	57.1	7.1	21.4	7.1	7.1	30.08
	3년~5년 이하	(28)	46.4	3.6	7.1	17.9	25.0	35.10
	5년~7년 이하	(32)	37.5	9.4	25.0	9.4	18.8	35.69
	7년 이상	(26)	61.5	7.7	11.5	3.8	15.4	21.73
	무응답(응답거부)	(44)	36.4	9.1	18.2	13.6	22.7	38.88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6)	50.0		25.0	12.5	12.5	41.25
	3~6개월 미만	(6)	16.7		50.0	33.3		59.17
	6~12개월 미만	(22)	27.3	18.2	27.3	22.7	4.5	49.81
	1년~2년 미만	(27)	33.3	11.1	22.2	22.2	11.1	45.25
	2년 이상	(87)	57.5	4.6	6.9		31.0	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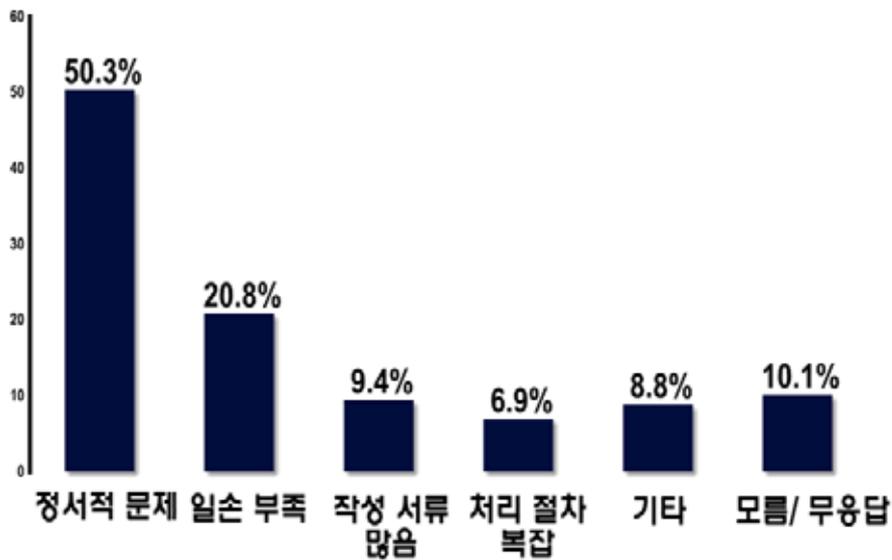
【Q1_3】 그 외 일반 업무 비중

단위:%		사례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
■ 전 체 ■		(159)	19.5	35.8	33.3	3.8	7.5	41.5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9.2	27.1	31.3	6.3	6.3	39.77
	6대 광역시	(38)	18.4	34.2	31.6	2.6	13.2	40.67
	중소도시	(44)	15.9	43.2	34.1		6.8	41.24
	기타 농어촌	(29)	10.3	41.4	37.9	6.9	3.4	45.70
지역	서울	(33)	24.2	24.2	39.4	9.1	3.0	43.59
	부산	(5)	20.0	40.0	20.0	20.0		43.00
	대구	(6)	16.7	33.3	50.0			45.83
	인천	(3)	33.3	33.3	33.3			40.00
	광주	(27)	18.5	22.2	33.3		25.9	38.58
	대전	(1)			100.0			65.00
	울산	(4)	25.0	50.0			25.0	28.33
	경기	(15)	40.0	33.3	13.3		13.3	29.58
	강원	(5)	20.0	60.0	20.0			32.00
	충북	(2)		50.0		50.0		60.00
	충남	(6)		50.0	50.0			45.00
	전북	(4)	75.0	25.0				17.50
	전남	(7)	28.6	28.6	28.6	14.3		40.71
경북	(3)		66.7			33.3	35.00	
경남	(38)	5.3	50.0	44.7			47.53	
성별	남성	(33)	21.2	30.3	45.5		3.0	43.75
	여성	(126)	19.0	37.3	30.2	4.8	8.7	40.90
연령별	30대	(31)	19.4	32.3	35.5	6.5	6.5	44.28
	40대	(75)	17.3	45.3	30.7	1.3	5.3	40.20
	50대	(43)	20.9	23.3	41.9	4.7	9.3	43.19
	60대	(8)	25.0	25.0	12.5	12.5	25.0	38.33
직급	6급	(12)	16.7	8.3	58.3	8.3	8.3	50.45
	7급	(63)	23.8	28.6	33.3	4.8	9.5	41.10
	8급	(55)	14.5	49.1	27.3		9.1	39.44
	9급	(18)	11.1	44.4	38.9	5.6		45.22
직렬	행정	(18)	16.7	22.2	44.4	5.6	11.1	42.19
	사회복지	(135)	19.3	37.0	33.3	3.7	6.7	42.06
	보건	(6)	33.3	50.0			16.7	26.00
근속 연수	1년 이하	(6)	16.7	50.0	33.3			44.00
	1년~3년 이하	(14)	28.6	28.6	35.7	7.1		40.77
	3년~5년 이하	(28)	14.3	42.9	25.0	3.6	14.3	41.46
	5년~7년 이하	(32)	12.5	50.0	37.5			41.94
	7년 이상	(26)	15.4	34.6	34.6	7.7	7.7	45.08
	무응답(응답거부)	(44)	27.3	20.5	34.1	4.5	13.6	39.33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6)	31.3	31.3	25.0	6.3	6.3	38.89
	3~6개월 미만	(6)	33.3	33.3	33.3			35.00
	6~12개월 미만	(22)	18.2	40.9	13.6	4.5	22.7	38.53
	1년~2년 미만	(27)	18.5	29.6	40.7	3.7	7.4	43.56
	2년 이상	(87)	16.1	37.9	37.9	3.4	4.6	42.70

2. 관련 업무 처리 시 가장 부담되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는 ‘신청자의 하소연이나 탈락자의 항의 등 정서적 문제가 심하다’는 응답이 50.3%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담당인력에 비해 신청자의 수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0.8%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9.4%, ‘인증 및 결제 등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6.9%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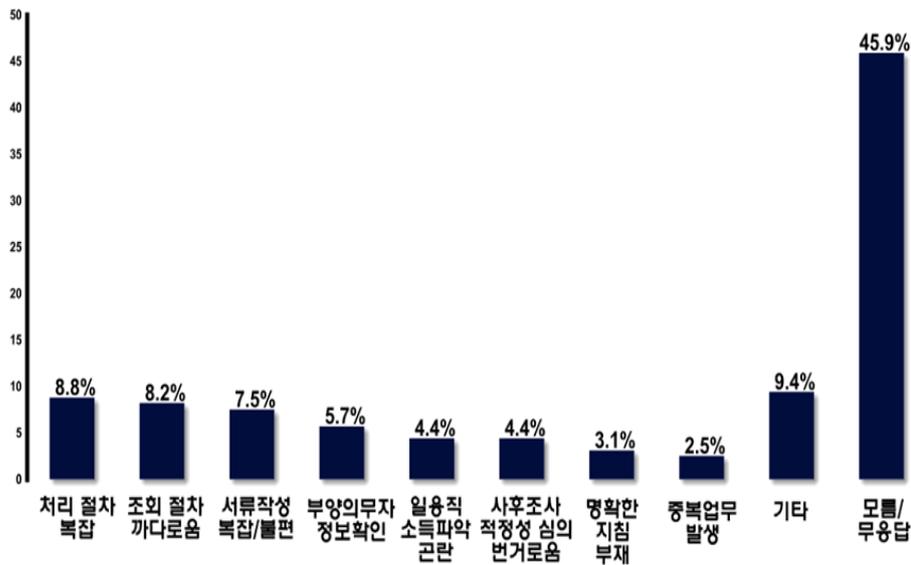
[Q2] 관련 업무 처리 시 가장 부담되는 것

단위:%	사례수	관련된 작성서류너무많음	인증결재처리차복 및등	담당인력에 비해자신청자맡아손쪽	신청자이나탈락의정서문제심합	적검사사후환등	성상사용환등	통고의화이지않	알중독,정신자상업무	관단의어	부양자의비	별없음	모름/무응답
☐ 전 체 ☐	(159)	9.4	6.9	20.8	50.3	4.4	1.3	0.6	1.3	0.6	0.6	10.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0.4	6.3	14.6	54.2	6.3	4.2		2.1			10.4
	6대 광역시	(38)	5.3		28.9	52.6	2.6		2.6			2.6	13.2
	중소도시	(44)	6.8	9.1	27.3	45.5	2.3			2.3			6.8
	기타 농어촌	(29)	17.2	13.8	10.3	48.3	6.9				3.4		10.3
지역	서울	(33)	12.1	6.1	15.2	54.5	6.1	3.0					9.1
	부산	(5)			40.0	60.0							
	대구	(6)			33.3	66.7							
	인천	(3)	66.7		33.3								
	광주	(27)		7.4	29.6	48.1	7.4					3.7	14.8
	대전	(1)							100.0				100.0
	울산	(4)			50.0								50.0
	경기	(15)	6.7	6.7	13.3	53.3	6.7	6.7		6.7			13.3
	강원	(5)		20.0	20.0	60.0							
	충북	(2)	50.0				50.0						50.0
	충남	(6)			16.7	50.0	16.7			16.7			
	전북	(4)	25.0			75.0							
	전남	(7)		28.6	14.3	57.1							
경북	(3)		66.7		33.3								
경남	(38)	15.8	2.6	21.1	52.6					2.6		7.9	
성별	남성	(33)	9.1	3.0	33.3	45.5	6.1					3.0	3.0
	여성	(126)	9.5	7.9	17.5	51.6	4.0	1.6	0.8	1.6	0.8		11.9
연령별	30대	(31)	16.1	3.2	25.8	41.9	3.2	3.2					9.7
	40대	(75)	8.0	8.0	13.3	56.0	4.0	1.3		2.7			10.7
	50대	(43)	9.3	7.0	30.2	44.2	7.0				2.3		9.3
	60대	(8)		12.5	12.5	62.5						12.5	12.5
	직급	6급	(12)	8.3		25.0	66.7						
7급	(63)	11.1	11.1	17.5	46.0	7.9				1.6	1.6	12.7	
8급	(55)	7.3	3.6	21.8	52.7	3.6			3.6			9.1	
9급	(18)	11.1	5.6	27.8	50.0		5.6					5.6	
직렬	행정	(18)	11.1	11.1	16.7	50.0							11.1
	사회복지	(135)	8.9	5.9	21.5	51.1	5.2	1.5	0.7	0.7	0.7	0.7	9.6
	보건	(6)	16.7	16.7	16.7	33.3				16.7			1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66.7		16.7					16.7
	1년~3년 이하	(14)	21.4	7.1	21.4	50.0							
	3년~5년 이하	(28)	7.1		25.0	50.0	7.1	3.6					10.7
	5년~7년 이하	(32)	9.4	6.3	15.6	53.1	3.1			6.3			9.4
	7년 이상	(26)	7.7	11.5	19.2	50.0	7.7						11.5
	무응답(응답거부)	(44)	9.1	9.1	25.0	47.7	4.5				2.3	2.3	9.1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12.5	43.8	31.3	6.3			6.3			6.3
	3~6개월 미만	(6)	16.7			66.7	16.7						
	6~12개월 미만	(22)	13.6	27.3		50.0	4.5	4.5					9.1
	1년~2년 미만	(27)	14.8		18.5	51.9	3.7			3.7			11.1
	2년 이상	(87)	8.0	3.4	24.1	51.7	3.4	1.1	1.1		1.1	1.1	11.5

3. 개선해야 할 사항(Open 응답)

본인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간소화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질문한 결과, ‘심의/결재 등 처리절차 복잡’ 8.8%, ‘조회 절차 까다롭고 비효율적(본인 동의절차 등)’ 8.2%, ‘서류작성(신청서 등) 복잡/불편’ 7.5%, ‘부양 의무자 정보확인 어려움(타 지역 거주, 금융정보 등)’ 5.7%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소득과약 곤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의 번거로움’, ‘명확한 지침 부재로 혼란’, ‘중복업무(전산 및 수기 자료 2중 입력 등) 발생’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3】 개선해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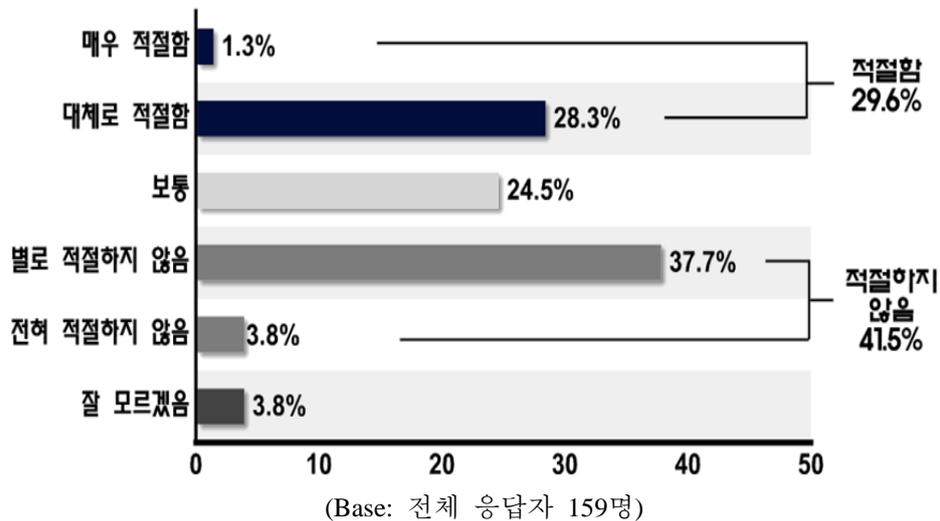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심재/결 처리/복 잡	부양 자의 정보 확인 어려 움(타 지역 거주 정보 등)	조회 차 비 효 율 (본 인 등 의 등)	서류 작성 서 집 (신 청 등) 불 편	일 용 자 의 근 로 과 관	중 복 수 중 등	무 및 자 력 생 발 생	명 확 한 지 침 로 란	사 후 조 사 정 심 의 변 거 로 움	기 타	모 름/ 무 응 답
■ 전	체 ■ (159)	8.8	5.7	8.2	7.5	4.4	2.5	3.1	4.4	9.4	45.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0.4	8.3	4.2	6.3	12.5		2.1	2.1	10.4	43.8
	6대 광역시	(38)	10.5		7.9	2.6	2.6	5.3	5.3	7.9	5.3	52.6
	중소도시	(44)	2.3	2.3	13.6	13.6		2.3	4.5	4.5	9.1	47.7
	기타 농어촌	(29)	13.8	13.8	6.9	6.9		3.4		3.4	13.8	37.9
지역	서울	(33)	6.1		6.1	9.1	18.2		3.0		15.2	42.4
	부산	(5)	20.0							40.0		40.0
	대구	(6)	16.7			16.7	16.7	16.7	16.7			16.7
	인천	(3)						33.3			33.3	33.3
	광주	(27)	7.4	3.7	25.9					7.4		55.6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25.0	25.0
	경기	(15)	20.0	26.7						6.7		46.7
	강원	(5)	40.0			20.0						40.0
	충북	(2)	50.0								50.0	
	충남	(6)						16.7		16.7	33.3	33.3
	전북	(4)			25.0	25.0				25.0		25.0
	전남	(7)	14.3	14.3	14.3						14.3	42.9
경북	(3)			33.3						33.3	33.3	
경남	(38)		7.9	2.6	15.8		2.6	5.3		7.9	57.9	
성별	남성	(33)	9.1	9.1	9.1	12.1	6.1			3.0	6.1	45.5
	여성	(126)	8.7	4.8	7.9	6.3	4.0	3.2	4.0	4.8	10.3	46.0
연령별	30대	(31)	12.9	3.2	6.5	9.7	9.7				9.7	48.4
	40대	(75)	5.3	6.7	6.7	9.3	1.3	5.3	6.7	4.0	6.7	48.0
	50대	(43)	11.6	7.0	9.3	4.7	2.3			9.3	11.6	44.2
	60대	(8)	12.5		25.0						25.0	37.5
직급	6급	(12)	16.7	8.3	16.7						25.0	33.3
	7급	(63)	7.9	4.8	12.7	4.8	1.6		3.2	11.1	11.1	42.9
	8급	(55)	5.5	5.5	3.6	12.7	5.5	7.3	5.5		9.1	45.5
	9급	(18)	16.7	11.1		11.1	5.6					55.6
직렬	행 정	(18)	16.7		22.2				5.6		16.7	38.9
	사회복지	(135)	8.1	6.7	5.2	8.9	5.2	3.0	3.0	5.2	6.7	48.1
	보 건	(6)			33.3						50.0	1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16.7						83.3
	1년~3년 이하	(14)	21.4	14.3		7.1					7.1	50.0
	3년~5년 이하	(28)	7.1	7.1	7.1	17.9	14.3				10.7	35.7
	5년~7년 이하	(32)	6.3	3.1	3.1	6.3		12.5	6.3	6.3	9.4	46.9
	7년 이상	(26)	11.5	7.7	11.5	3.8			7.7	3.8		53.8
	무응답(응답거부)	(44)	9.1	4.5	13.6	4.5	2.3			9.1	18.2	38.6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6)	6.3	6.3	25.0					6.3	6.3	50.0
	3~6개월 미만	(6)						16.7				83.3
	6~12개월 미만	(22)	18.2	4.5		4.5				9.1	13.6	50.0
	1년~2년 미만	(27)	7.4	3.7	7.4	7.4	3.7		3.7	11.1	18.5	37.0
	2년 이상	(87)	6.9	6.9	8.0	10.3	6.9	3.4	4.6	1.1	6.9	44.8

4. 수급자 선정에 대한 현행 기준 평가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현행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를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29.6% (매우 1.3%+대체로 28.3%)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1.5%(별로 37.7%+전혀 3.8%)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더 우세했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4.5%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을 5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하면 2.85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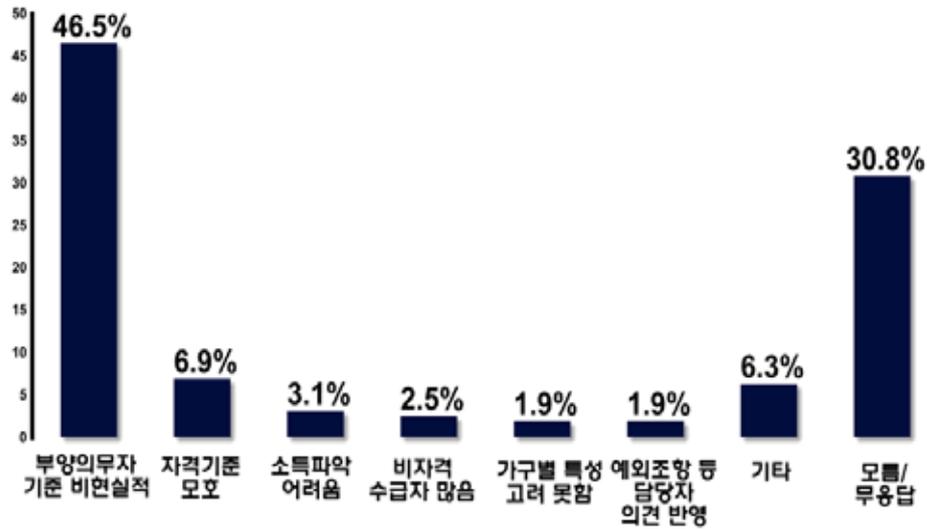
【Q4】수급자 선정에 대한 현행 기준 평가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 전 체 ▣	(159)	1.3	28.3	24.5	37.7	3.8	3.8	29.6	24.5	41.5	0.6	2.8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31.3	18.8	35.4	4.2	8.3	33.3	18.8	39.6	2.91	
	6대 광역시	(38)		31.6	31.6	26.3	5.3	2.6	31.6	31.6	2.6	2.94	
	중소도시	(44)	2.3	27.3	20.5	45.5	2.3	2.3	29.5	20.5	47.7	2.81	
	기타 농어촌	(29)		20.7	31.0	44.8	3.4		20.7	31.0	48.3	2.69	
지역	서울	(33)		30.3	15.2	36.4	6.1	12.1	30.3	15.2	42.4	2.79	
	부산	(5)		40.0	60.0				40.0	60.0		3.40	
	대구	(6)		16.7	33.3	33.3		16.7	16.7	33.3	33.3	2.80	
	인천	(3)			33.3	66.7				33.3	66.7	2.33	
	광주	(27)		44.4	22.2	25.9	3.7		44.4	22.2	29.6	3.12	
	대전	(1)					100.0				100.0	1.00	
	울산	(4)		25.0		50.0	25.0		25.0		75.0	2.25	
	경기	(15)	6.7	33.3	26.7	33.3			40.0	26.7	33.3	3.13	
	강원	(5)		20.0	20.0	40.0		20.0	20.0	20.0	40.0	2.75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33.3	66.7				33.3	66.7	2.33	
	전북	(4)		50.0	50.0				50.0	50.0		3.50	
	전남	(7)		14.3	42.9	42.9			14.3	42.9	42.9	2.71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경남	(38)	2.6	18.4	23.7	52.6	2.6		21.1	23.7	55.3	2.66		
성별	남성	(33)	3.0	36.4	24.2	33.3	3.0		39.4	24.2	36.4	3.03	
	여성	(126)	0.8	26.2	24.6	38.9	4.0	4.8	27.0	24.6	42.9	0.8	2.80
연령별	30대	(31)		32.3	29.0	32.3	3.2	3.2	32.3	29.0	35.5	2.93	
	40대	(75)		21.3	24.0	45.3	2.7	5.3	21.3	24.0	48.0	1.3	2.69
	50대	(43)	4.7	30.2	27.9	32.6	2.3	2.3	34.9	27.9	34.9	3.02	
	60대	(8)		62.5		25.0	12.5		62.5		37.5	3.13	
직급	6급	(12)	8.3	16.7	16.7	50.0	8.3		25.0	16.7	58.3	2.67	
	7급	(63)	1.6	34.9	19.0	38.1	3.2	3.2	36.5	19.0	41.3	2.93	
	8급	(55)		16.4	32.7	40.0	1.8	7.3	16.4	32.7	41.8	1.8	2.70
	9급	(18)		44.4	22.2	33.3			44.4	22.2	33.3	3.11	
직렬	행정	(18)		44.4	27.8	5.6	11.1	11.1	44.4	27.8	16.7	3.19	
	사회복지	(135)	1.5	25.9	23.7	42.2	3.0	3.0	27.4	23.7	45.2	0.7	2.80
	보건	(6)		33.3	33.3	33.3			33.3	33.3	33.3	3.00	
근속 연수	1년 이하	(6)		33.3	16.7	50.0			33.3	16.7	50.0	2.83	
	1년~3년 이하	(14)		57.1	28.6	14.3			57.1	28.6	14.3	3.43	
	3년~5년 이하	(28)		14.3	39.3	35.7	3.6	7.1	14.3	39.3	39.3	2.69	
	5년~7년 이하	(32)		15.6	25.0	56.3		3.1	15.6	25.0	56.3	2.58	
	7년 이상	(26)		30.8	15.4	38.5	3.8	7.7	30.8	15.4	42.3	3.8	2.83
무응답(응답거부)	(44)	4.5	31.8	22.7	34.1	4.5	2.3	36.4	22.7	38.6		2.98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6)		56.3	25.0	12.5	6.3		56.3	25.0	18.8	3.31	
	3~6개월 미만	(6)		16.7	33.3	50.0			16.7	33.3	50.0	2.67	
	6~12개월 미만	(22)		36.4	27.3	27.3		9.1	36.4	27.3	27.3	3.10	
	1년~2년 미만	(27)		44.4	25.9	22.2	3.7	3.7	44.4	25.9	25.9	3.15	
2년 이상	(87)	2.3	17.2	23.0	48.3	4.6	3.4	19.5	23.0	52.9	1.1	2.63	

5.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Open 응답)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비현실적이다’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기준(금융자산 등) 모호’ 6.9%, ‘소득파악이 어려움’ 3.1%, ‘비자격 수급자가 많음’ 2.5%, ‘가구/수급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다’ 1.9% 등이 응답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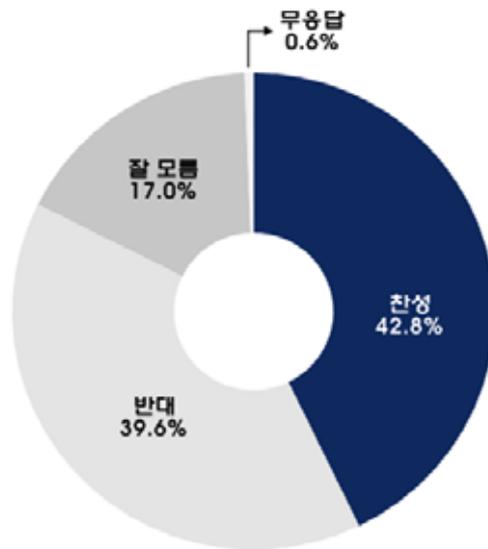
【Q5】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부양 의무자 기준 비현실적	가족 수 등 가구별 특성 고려하지 못함	소득과약 어려운 현실	자격기준 (급용자 산 등) 보호	비자격자 수급자 많음	예외 등 조항 담당자 견영필요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9)	46.5	1.9	3.1	6.9	2.5	1.9	6.3	30.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39.6	4.2	2.1	8.3	4.2	6.3	35.4	
	6대 광역시	(38)	52.6	2.6	5.3	7.9	2.6	7.9	21.1	
	중소도시	(44)	40.9		4.5	4.5	2.3	2.3	36.4	
	기타 농어촌	(29)	58.6			6.9		6.9	27.6	
지역	서울	(33)	42.4	3.0		3.0	3.0	9.1	39.4	
	부산	(5)	40.0		20.0	20.0			20.0	
	대구	(6)	50.0			16.7			33.3	
	인천	(3)	66.7			33.3				
	광주	(27)	44.4	3.7	7.4		3.7	14.8	25.9	
	대전	(1)							100.0	
	울산	(4)	100.0							
	경기	(15)	33.3	6.7	6.7	20.0	6.7		26.7	
	강원	(5)	60.0						40.0	
	충북	(2)	50.0						50.0	
	충남	(6)	50.0			33.3			16.7	
	전북	(4)	25.0				25.0		50.0	
전남	(7)	42.9			28.6		14.3	14.3		
경북	(3)			33.3				66.7		
경남	(38)	55.3					5.3	7.9	31.6	
성별	남성	(33)	48.5		3.0	9.1		12.1	27.3	
	여성	(126)	46.0	2.4	3.2	6.3	3.2	2.4	4.8	31.7
연령별	30대	(31)	35.5		3.2	3.2	6.5	3.2	45.2	
	40대	(75)	46.7	2.7	4.0	12.0	1.3	1.3	8.0	24.0
	50대	(43)	55.8	2.3	2.3	2.3	2.3	2.3	30.2	
	60대	(8)	50.0						12.5	37.5
직급	6급	(12)	83.3		8.3			8.3		
	7급	(63)	44.4		3.2	6.3	3.2	3.2	36.5	
	8급	(55)	49.1	3.6	1.8	9.1	3.6		7.3	25.5
	9급	(18)	38.9	5.6	5.6	11.1			11.1	27.8
직렬	행 정	(18)	33.3	5.6	5.6	5.6		5.6	44.4	
	사회복지	(135)	49.6	1.5	3.0	6.7	3.0	1.5	6.7	28.1
	보 건	(6)	16.7			16.7		16.7	50.0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16.7	33.3	
	1년~3년 이하	(14)	35.7	7.1	7.1	7.1		14.3	28.6	
	3년~5년 이하	(28)	50.0		3.6	3.6	7.1	3.6	32.1	
	5년~7년 이하	(32)	50.0			21.9		9.4	18.8	
	7년 이상	(26)	38.5	7.7	3.8	3.8	3.8	3.8	34.6	
무응답(응답거부)	(44)	52.3		4.5	2.3	2.3	2.3	4.5	31.8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31.3			6.3		6.3	56.3	
	3~6개월 미만	(6)	50.0	16.7		16.7			16.7	
	6~12개월 미만	(22)	36.4		4.5	13.6	4.5	4.5	9.1	27.3
	1년~2년 미만	(27)	40.7	3.7		11.1	3.7	3.7	3.7	33.3
2년 이상	(87)	54.0	1.1	4.6	2.3	2.3	1.1	6.9	27.6	

6.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 선정기준 배제방안 찬반

수급자 선정 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를 선정기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여부를 살펴보았다.

‘찬성’의견은 42.8%, ‘반대’의견은 39.6%로 나타나 찬성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보류의견은 17.0%였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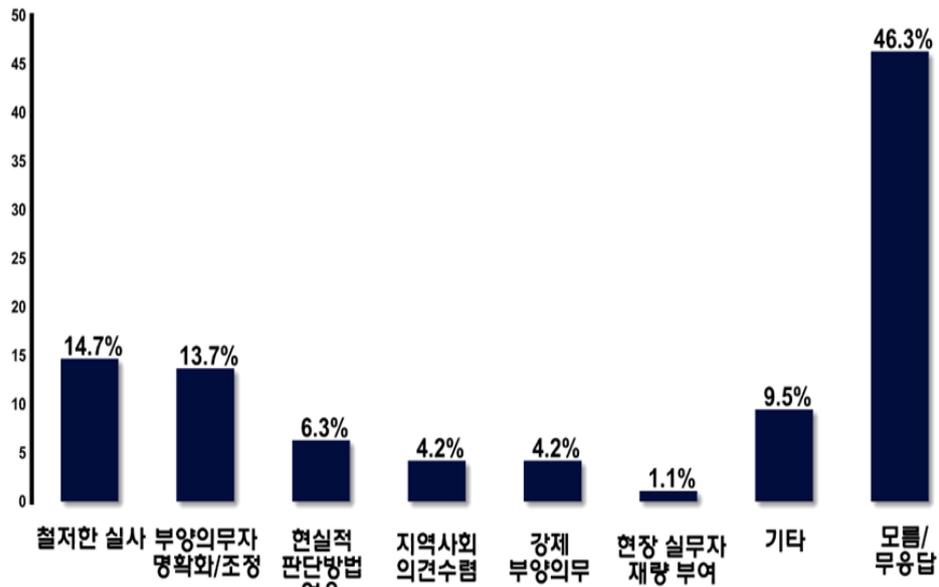
【Q6】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 선정기준 배제방안 찬반

단위:%		사례 수	찬성함	반대함	잘 모르겠음	모름/무응답
■ 전 체 ■		(159)	42.8	39.6	17.0	0.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33.3	45.8	20.8	
	6대 광역시	(38)	50.0	36.8	10.5	2.6
	중소도시	(44)	50.0	36.4	13.6	
	기타 농어촌	(29)	37.9	37.9	24.1	
지역	서울	(33)	36.4	51.5	12.1	
	부산	(5)	20.0	60.0	20.0	
	대구	(6)	33.3	66.7		
	인천	(3)	66.7	33.3		
	광주	(27)	63.0	22.2	11.1	3.7
	대전	(1)		100.0		
	울산	(4)	50.0	50.0		
	경기	(15)	26.7	33.3	40.0	
	강원	(5)	20.0	60.0	20.0	
	충북	(2)		50.0	50.0	
	충남	(6)	50.0	16.7	33.3	
	전북	(4)	50.0	25.0	25.0	
	전남	(7)	85.7	14.3		
성별	경북	(3)	66.7	33.3		
	경남	(38)	36.8	42.1	21.1	
성별	남성	(33)	51.5	39.4	9.1	
	여성	(126)	40.5	39.7	19.0	0.8
연령별	30대	(31)	16.1	45.2	38.7	
	40대	(75)	52.0	30.7	17.3	
	50대	(43)	39.5	53.5	4.7	2.3
	60대	(8)	75.0	25.0		
직급	6급	(12)	41.7	58.3		
	7급	(63)	52.4	38.1	7.9	1.6
	8급	(55)	38.2	38.2	23.6	
	9급	(18)	27.8	38.9	33.3	
직렬	행정	(18)	61.1	27.8	11.1	
	사회복지	(135)	40.0	40.7	18.5	0.7
	보건	(6)	50.0	50.0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16.7	50.0	
	1년~3년 이하	(14)	28.6	42.9	28.6	
	3년~5년 이하	(28)	17.9	39.3	42.9	
	5년~7년 이하	(32)	56.3	25.0	18.8	
	7년 이상	(26)	50.0	46.2	3.8	
	무응답(응답거부)	(44)	47.7	47.7	2.3	2.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56.3	37.5	6.3	
	3~6개월 미만	(6)	50.0	16.7	33.3	
	6~12개월 미만	(22)	31.8	40.9	22.7	4.5
	1년~2년 미만	(27)	37.0	51.9	11.1	
	2년 이상	(87)	44.8	36.8	18.4	

7.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배제방안

실제 부양하지 않는 의무자를 선정기준에서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통화이력 확인이나 주변 보증서 등 철저한 실사’ 14.7%,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조정’ 13.7%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음’ 6.3%, ‘지인 보증 등 지역사회 의견수렴’ 4.2%, ‘강제 부양의무 부여’ 4.2%, ‘현장 실무자 재량 부여’ 1.1% 등이 나타나며, 기타 응답이 9.5%였다.



(Base: 전체 응답자 중 배제방안 찬성 및 중립응답자 95명_반대자 69명 제외)

【Q7】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배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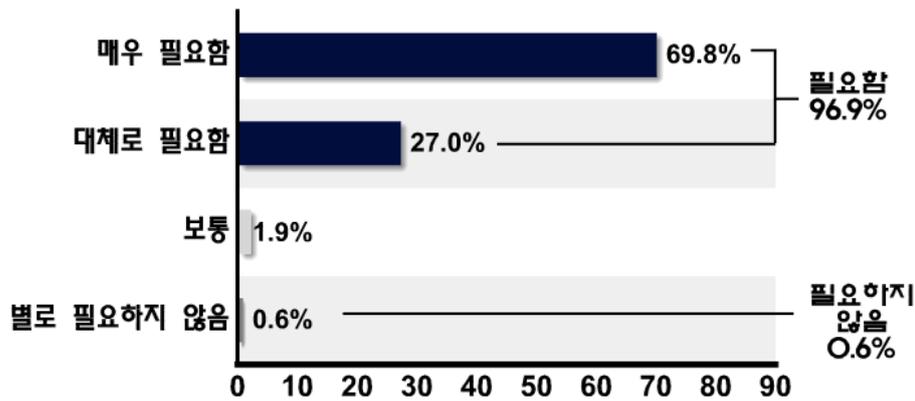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조정	현장 실무자 재량 부여	철저한 실사 (동화이력 확인, 보증서 등)	지인 보증 등 지역사회 의견수렴	강제 부양의무 부여	현실적 판단방법 없음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95)	13.7	1.1	14.7	4.2	4.2	6.3	9.5	46.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6)	15.4		11.5	7.7	11.5	3.8	7.7	42.3
	6대 광역시	(23)	13.0	4.3	13.0	4.3		4.3	8.7	52.2
	중소도시	(28)	10.7		21.4			10.7	7.1	50.0
	기타 농어촌	(18)	16.7		11.1	5.6	5.6	5.6	16.7	38.9
지역	서울	(16)	18.8		6.3	6.3	12.5	6.3	12.5	37.5
	부산	(2)								100.0
	대구	(2)	50.0		50.0					
	인천	(2)								100.0
	광주	(20)	15.0	5.0	15.0	5.0		5.0	10.0	45.0
	대전	(2)							50.0	50.0
	울산	(10)	10.0		20.0	10.0	10.0			50.0
	경기	(2)				50.0				50.0
	강원	(1)								100.0
	충북	(5)	40.0		20.0					40.0
	충남	(3)			33.3					66.7
	전북	(6)	16.7		16.7				50.0	16.7
	전남	(2)								100.0
	경북	(22)	9.1		18.2		4.5	18.2	4.5	45.5
경남	(20)	15.0	5.0	10.0	15.0	5.0		15.0	35.0	
성별	남성	(75)	13.3		16.0	1.3	4.0	8.0	8.0	49.3
	여성	(17)			17.6			17.6	5.9	58.8
연령별	30대	(52)	17.3		15.4	5.8	7.7	3.8	9.6	40.4
	40대	(19)	10.5		5.3	5.3		5.3	15.8	57.9
	50대	(6)	16.7	16.7	33.3					33.3
	60대	(5)	20.0		40.0					40.0
직급	6급	(38)	15.8	2.6	10.5	2.6	5.3		13.2	50.0
	7급	(34)	14.7		14.7	2.9	2.9	14.7	8.8	41.2
	8급	(11)			9.1	18.2	9.1		9.1	54.5
	9급	(13)			15.4	7.7		7.7	7.7	61.5
직렬	행정	(79)	16.5	1.3	13.9	3.8	5.1	6.3	8.9	44.3
	사회복지	(3)			33.3				33.3	33.3
	보건	(5)			20.0			20.0		60.0
근속연수	1년 이하	(8)				25.0	12.5		12.5	50.0
	1년~3년 이하	(17)			17.6			17.6	5.9	58.8
	3년~5년 이하	(24)	25.0		12.5		8.3	4.2	8.3	41.7
	5년~7년 이하	(14)	21.4		7.1	14.3	7.1	7.1	14.3	28.6
	7년 이상	(22)	13.6	4.5	18.2				13.6	50.0
	무응답(응답거부)	(10)	10.0		30.0				10.0	50.0
담당기간	3개월 미만	(5)						20.0		80.0
	3~6개월 미만	(12)	8.3		16.7	8.3		8.3	8.3	50.0
	6~12개월 미만	(13)			23.1	15.4	7.7		15.4	38.5
	1년~2년 미만	(55)	20.0	1.8	10.9	1.8	5.5	7.3	9.1	43.6
	2년 이상	(87)	54.0	1.1	4.6	2.3	2.3	1.1	6.9	27.6

8. 관련기관에서의 상시적 자산파악 방안 필요성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파악을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자 자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찬성이견이 69.8%로 높았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7.0%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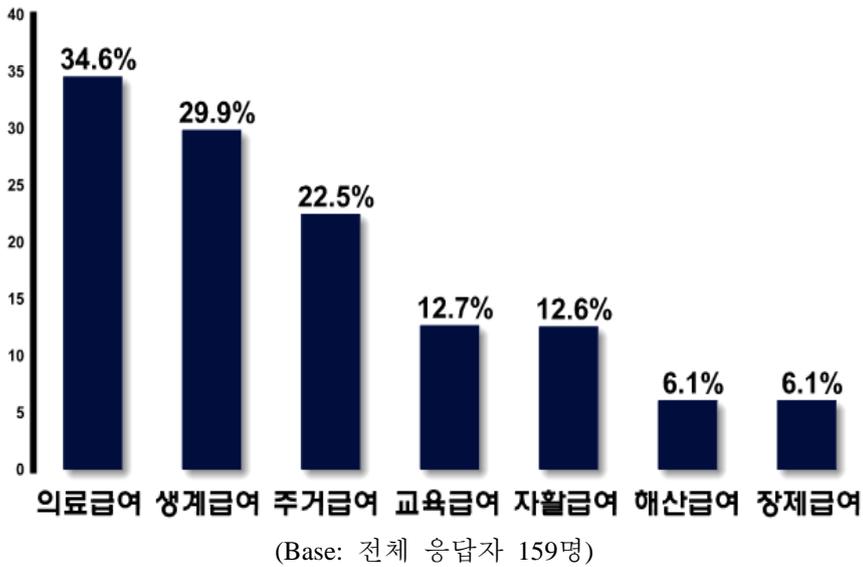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8】 관련기관에서의 상시적 자산 파악 방안 필요성

단위:%	사례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별로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69.8	27.0	1.9	0.6	96.9	1.9	0.6	0.6	4.6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70.8	25.0	2.1		95.8	2.1		4.70
	6대 광역시	(38)	81.6	15.8	2.6		97.4	2.6		4.79
	중소도시	(44)	65.9	31.8		2.3	97.7		2.3	4.61
	기타 농어촌	(29)	58.6	37.9	3.4		96.6	3.4		4.55
지역	서울	(33)	69.7	30.3			100.0			4.70
	부산	(5)	80.0	20.0			100.0			4.80
	대구	(6)	100.0				100.0			5.00
	인천	(3)	66.7	33.3			100.0			4.67
	광주	(27)	77.8	18.5	3.7		96.3	3.7		4.74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100.0				100.0			5.00
	경기	(15)	73.3	13.3	6.7		86.7	6.7	6.7	4.71
	강원	(5)	100.0				100.0			5.00
	충북	(2)		50.0	50.0		50.0	50.0		3.50
	충남	(6)	66.7	33.3			100.0			4.67
	전북	(4)	50.0	50.0			100.0			4.50
	전남	(7)	71.4	28.6			100.0			4.71
경북	(3)	66.7	33.3			100.0			4.67	
경남	(38)	57.9	39.5		2.6	97.4		2.6	4.53	
성별	남성	(33)	72.7	27.3			100.0			4.73
	여성	(126)	69.0	27.0	2.4	0.8	96.0	2.4	0.8	4.66
연령별	30대	(31)	67.7	32.3			100.0			4.68
	40대	(75)	72.0	24.0	2.7		96.0	2.7	1.3	4.70
	50대	(43)	67.4	27.9	2.3	2.3	95.3	2.3	2.3	4.60
	60대	(8)	75.0	25.0			100.0			4.75
직급	6급	(12)	66.7	25.0		8.3	91.7		8.3	4.50
	7급	(63)	68.3	28.6	3.2		96.8	3.2		4.65
	8급	(55)	74.5	23.6	1.8		98.2	1.8		4.73
	9급	(18)	61.1	33.3			94.4		5.6	4.65
직렬	행정	(18)	66.7	33.3			100.0			4.67
	사회복지	(135)	71.9	24.4	2.2	0.7	96.3	2.2	0.7	4.69
	보건	(6)	33.3	66.7			100.0			4.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33.3			83.3		16.7	4.60
	1년~3년 이하	(14)	78.6	14.3	7.1		92.9	7.1		4.71
	3년~5년 이하	(28)	75.0	25.0			100.0			4.75
	5년~7년 이하	(32)	75.0	25.0			100.0			4.75
	7년 이상	(26)	50.0	42.3	7.7		92.3	7.7		4.42
무응답(응답거부)	(44)	75.0	22.7		2.3	97.7		2.3	4.70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31.3	6.3		93.8	6.3		4.56
	3~6개월 미만	(6)	66.7	33.3			100.0			4.67
	6~12개월 미만	(22)	86.4	9.1			95.5		4.5	4.90
	1년~2년 미만	(27)	59.3	40.7			100.0			4.59
	2년 이상	(87)	70.1	26.4	2.3	1.1	96.6	2.3	1.1	4.66

9. 지원업무 중 급여종류별 비율

현재 다루고 있는 지원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가 평균 3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생계급여’ 29.9%, ‘주거급여’ 22.5%, ‘교육급여’ 12.7%, ‘자활급여’ 12.6%, ‘해산급여’ 6.1%, 장제급여 6.1% 등의 순이었다.



【Q9_1】 지원업무 중 생계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 전 체 ■		(159)	26.4	51.6	10.7	0.6	10.7	29.8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5.0	62.5	4.2		8.3	29.21
	6대 광역시	(38)	23.7	44.7	13.2	2.6	15.8	30.81
	중소도시	(44)	22.7	52.3	15.9		9.1	32.10
	기타 농어촌	(29)	37.9	41.4	10.3		10.3	26.31
지역	서울	(33)	12.1	72.7	3.0		12.1	31.83
	부산	(5)	60.0	40.0				15.60
	대구	(6)	16.7	50.0	16.7		16.7	33.00
	인천	(3)	66.7		33.3			30.00
	광주	(27)	11.1	40.7	25.9	3.7	18.5	39.00
	대전	(1)		100.0				30.00
	울산	(4)	25.0	50.0			25.0	27.67
	경기	(15)	53.3	40.0	6.7			24.16
	강원	(5)	60.0	40.0				24.20
	충북	(2)	50.0				50.0	15.00
	충남	(6)	83.3	16.7				15.00
	전북	(4)	50.0	50.0				23.75
	전남	(7)	85.7	14.3				14.86
	경북	(3)	33.3				66.7	5.00
경남	(38)	5.3	71.1	15.8		7.9	34.86	
성별	남성	(33)	27.3	54.5	12.1		6.1	29.74
	여성	(126)	26.2	50.8	10.3	0.8	11.9	29.89
연령별	30대	(31)	9.7	61.3	16.1		12.9	35.85
	40대	(75)	30.7	53.3	9.3	1.3	5.3	28.47
	50대	(43)	30.2	44.2	9.3		16.3	28.36
	60대	(8)	25.0	37.5	12.5		25.0	29.00
직급	6급	(12)	33.3	33.3	16.7		16.7	31.50
	7급	(63)	28.6	52.4	7.9		11.1	27.20
	8급	(55)	27.3	52.7	10.9	1.8	7.3	30.26
	9급	(18)	22.2	44.4	16.7		16.7	36.87
직렬	행정	(18)	38.9	33.3	11.1		16.7	27.40
	사회복지	(135)	23.7	56.3	11.1	0.7	8.1	30.62
	보건	(6)	50.0				50.0	10.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50.0	33.3			38.33
	1년~3년 이하	(14)	28.6	50.0	7.1		14.3	32.08
	3년~5년 이하	(28)	17.9	64.3	7.1		10.7	29.90
	5년~7년 이하	(32)	31.3	40.6	18.8	3.1	6.3	30.63
	7년 이상	(26)	26.9	61.5	3.8		7.7	27.63
	무응답(응답거부)	(44)	31.8	43.2	9.1		15.9	27.5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18.8	37.5	25.0		18.8	36.38
	3~6개월 미만	(6)	33.3	66.7				24.17
	6~12개월 미만	(22)	50.0	13.6	18.2	4.5	13.6	28.34
	1년~2년 미만	(27)	55.6	25.9			18.5	19.73
	2년 이상	(87)	12.6	71.3	10.3		5.7	32.30

【Q9_2】 지원업무 중 주거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전체	(159)	37.1	34.0	1.3	0.6	27.0	22.4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1.7	35.4		2.1	20.8	21.75
	6대 광역시	(38)	26.3	34.2			39.5	22.52
	중소도시	(44)	36.4	38.6	2.3		22.7	24.21
	기타 농어촌	(29)	44.8	24.1	3.4		27.6	20.71
지역	서울	(33)	39.4	45.5		3.0	12.1	23.29
	부산	(5)	20.0	40.0			40.0	21.00
	대구	(6)	33.3	33.3			33.3	19.25
	인천	(3)	33.3	33.3			33.3	25.00
	광주	(27)	25.9	33.3	3.7		37.0	24.00
	대전	(1)		100.0				30.00
	울산	(4)	25.0	25.0			50.0	27.50
	경기	(15)	46.7	13.3			40.0	16.38
	강원	(5)	60.0		20.0		20.0	22.50
	충북	(2)	50.0				50.0	5.00
	충남	(6)	33.3				66.7	3.00
	전북	(4)	50.0				50.0	11.00
	전남	(7)	57.1	14.3			28.6	15.00
경북	(3)					100.0	.	
경남	(38)	39.5	52.6			7.9	25.57	
성별	남성	(33)	30.3	42.4	3.0		24.2	23.28
	여성	(126)	38.9	31.7	0.8	0.8	27.8	22.21
연령별	30대	(31)	48.4	29.0	3.2		19.4	21.68
	40대	(75)	34.7	37.3		1.3	26.7	22.42
	50대	(43)	32.6	32.6	2.3		32.6	23.41
	60대	(8)	37.5	25.0			37.5	19.00
직급	6급	(12)	16.7	41.7			41.7	26.86
	7급	(63)	33.3	36.5	1.6	1.6	27.0	22.60
	8급	(55)	47.3	27.3			25.5	20.30
	9급	(18)	38.9	27.8	5.6		27.8	23.62
직렬	행정	(18)	27.8	11.1	5.6		55.6	18.38
	사회복지	(135)	40.0	38.5	0.7	0.7	20.0	22.75
	보건	(6)					100.0	.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33.3			16.7	25.00
	1년~3년 이하	(14)	50.0	14.3	7.1		28.6	21.30
	3년~5년 이하	(28)	46.4	35.7			17.9	21.05
	5년~7년 이하	(32)	37.5	25.0		3.1	34.4	19.80
	7년 이상	(26)	30.8	42.3	3.8		23.1	25.70
	무응답(응답거부)	(44)	31.8	34.1			34.1	22.10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31.3	25.0	6.3		37.5	22.00
	3~6개월 미만	(6)	16.7	16.7			66.7	14.00
	6~12개월 미만	(22)	45.5	4.5	4.5		45.5	18.09
	1년~2년 미만	(27)	29.6	14.8			55.6	19.17
	2년 이상	(87)	40.2	50.6		1.1	8.0	23.82

【Q9_3】 지원업무 중 의료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전 체	(159)	51.6	5.7	8.8	16.4	17.6	34.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0.4	4.2	8.3	12.5	14.6	30.04
	6대 광역시	(38)	47.4	5.3	7.9	21.1	18.4	37.73
	중소도시	(44)	50.0	4.5	9.1	13.6	22.7	32.24
	기타 농어촌	(29)	44.8	10.3	10.3	20.7	13.8	41.67
지역	서울	(33)	72.7	6.1		3.0	18.2	17.88
	부산	(5)	40.0			60.0		58.80
	대구	(6)	66.7			16.7	16.7	29.00
	인천	(3)	66.7			33.3		45.00
	광주	(27)	33.3	7.4	14.8	7.4	37.0	32.53
	대전	(1)	100.0					20.00
	울산	(4)	25.0			25.0	50.0	45.00
	경기	(15)	33.3		26.7	33.3	6.7	52.61
	강원	(5)	60.0		20.0	20.0		45.25
	충북	(2)				50.0	50.0	80.00
	충남	(6)			33.3	66.7		80.83
	전북	(4)	25.0		50.0	25.0		56.25
	전남	(7)	42.9		14.3	42.9		55.00
	경북	(3)				66.7	33.3	95.00
경남	(38)	71.1	13.2			15.8	15.31	
성별	남성	(33)	45.5	15.2	15.2	12.1	12.1	32.59
	여성	(126)	53.2	3.2	7.1	17.5	19.0	35.20
연령별	30대	(31)	74.2	6.5	3.2	3.2	12.9	20.00
	40대	(75)	50.7	4.0	12.0	18.7	14.7	37.01
	50대	(43)	32.6	9.3	9.3	20.9	27.9	42.90
	60대	(8)	62.5			25.0	12.5	35.00
직급	6급	(12)	33.3	8.3		25.0	33.3	43.13
	7급	(63)	46.0	6.3	9.5	22.2	15.9	39.87
	8급	(55)	52.7	5.5	10.9	14.5	16.4	33.59
	9급	(18)	66.7		5.6	5.6	22.2	21.54
직렬	행정	(18)	16.7	5.6	38.9	16.7	22.2	55.36
	사회복지	(135)	58.5	5.9	5.2	14.1	16.3	29.91
	보건	(6)				66.7	33.3	91.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66.7	16.7		16.7		28.33
	1년~3년 이하	(14)	57.1		14.3	7.1	21.4	30.00
	3년~5년 이하	(28)	64.3	3.6	7.1	7.1	17.9	23.77
	5년~7년 이하	(32)	46.9	6.3	15.6	18.8	12.5	39.63
	7년 이상	(26)	53.8	3.8	7.7	19.2	15.4	34.90
	무응답(응답거부)	(44)	36.4	9.1	6.8	25.0	22.7	43.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43.8		12.5	18.8	25.0	39.17
	3~6개월 미만	(6)		16.7	50.0	33.3		63.33
	6~12개월 미만	(22)	27.3	9.1	9.1	40.9	13.6	58.42
	1년~2년 미만	(27)	29.6		14.8	33.3	22.2	56.14
	2년 이상	(87)	70.1	6.9	3.4	3.4	16.1	19.00

【Q9_4】 지원업무 중 교육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전체		(159)	70.4	2.5	0.6	26.4	12.67	34.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75.0		2.1	22.9	13.39	30.04
	6대 광역시	(38)	65.8			34.2	12.67	37.73
	중소도시	(44)	75.0	6.8		18.2	13.31	32.24
	기타 농어촌	(29)	62.1	3.4		34.5	10.11	41.67
지역	서울	(33)	81.8			18.2	11.63	17.88
	부산	(5)	60.0			40.0	7.33	58.80
	대구	(6)	66.7			33.3	14.25	29.00
	인천	(3)	66.7			33.3	10.00	45.00
	광주	(27)	55.6	11.1		33.3	15.06	32.53
	대전	(1)	100.0				10.00	20.00
	울산	(4)	50.0			50.0	20.00	45.00
	경기	(15)	60.0		6.7	33.3	18.11	52.61
	강원	(5)	60.0	20.0		20.0	14.00	45.25
	충북	(2)	50.0			50.0		80.00
	충남	(6)	83.3			16.7	3.80	80.83
	전북	(4)	75.0			25.0	10.00	56.25
	전남	(7)	42.9			57.1	15.00	55.00
경북	(3)	33.3			66.7	5.00	95.00	
경남	(38)	86.8			13.2	12.09	15.31	
성별	남성	(33)	78.8			21.2	10.50	32.59
	여성	(126)	68.3	3.2	0.8	27.8	13.28	35.20
연령별	30대	(31)	80.6			19.4	10.13	20.00
	40대	(75)	73.3	1.3	1.3	24.0	13.25	37.01
	50대	(43)	55.8	7.0		37.2	13.77	42.90
	60대	(8)	75.0			25.0	11.83	35.00
직급	6급	(12)	50.0			50.0	11.83	43.13
	7급	(63)	65.1	6.3		28.6	12.36	39.87
	8급	(55)	80.0			20.0	12.88	33.59
	9급	(18)	72.2		5.6	22.2	12.15	21.54
직렬	행정	(18)	55.6			44.4	7.80	55.36
	사회복지	(135)	74.8	3.0	0.7	21.5	13.28	29.91
	보건	(6)	16.7			83.3	1.00	91.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66.7			33.3	6.67	28.33
	1년~3년 이하	(14)	64.3		7.1	28.6	14.10	30.00
	3년~5년 이하	(28)	82.1			17.9	13.32	23.77
	5년~7년 이하	(32)	71.9			28.1	12.64	39.63
	7년 이상	(26)	69.2	3.8		26.9	12.25	34.90
	무응답(응답거부)	(44)	61.4	6.8		31.8	12.63	43.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6.3		31.3	9.55	39.17
	3~6개월 미만	(6)	50.0			50.0	6.00	63.33
	6~12개월 미만	(22)	59.1			40.9	9.27	58.42
	1년~2년 미만	(27)	51.9		3.7	44.4	10.53	56.14
	2년 이상	(87)	82.8	3.4		13.8	14.44	19.00

【Q9_5】 지원업무 중 해산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 전 체 ■		(159)	50.3	0.6	0.6	48.4	6.10	34.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2.5			37.5	5.19	30.04	
	6대 광역시	(38)	36.8	2.6		60.5	6.07	37.73	
	중소도시	(44)	54.5		2.3	43.2	7.21	32.24	
	기타 농어촌	(29)	41.4			58.6	6.22	41.67	
지역	서울	(33)	72.7			27.3	5.24	17.88	
	부산	(5)	20.0			80.0	5.00	58.80	
	대구	(6)	50.0			50.0	4.00	29.00	
	인천	(3)	66.7			33.3	5.00	45.00	
	광주	(27)	37.0	3.7	3.7	55.6	11.27	32.53	
	대전	(1)				100.0	.	20.00	
	울산	(4)	25.0			75.0	5.00	45.00	
	경기	(15)	40.0			60.0	5.00	52.61	
	강원	(5)	80.0			20.0	3.67	45.25	
	충북	(2)				100.0	.	80.00	
	충남	(6)				100.0	.	80.83	
	전북	(4)	25.0			75.0	.	56.25	
	전남	(7)	42.9			57.1	6.67	55.00	
성별	경북	(3)				100.0	.	95.00	
	경남	(38)	65.8			34.2	5.11	15.31	
	남성	(33)	54.5	3.0		42.4	5.88	32.59	
	여성	(126)	49.2		0.8	50.0	6.17	35.20	
	연령별	30대	(31)	67.7			32.3	6.06	20.00
		40대	(75)	52.0			48.0	4.88	37.01
		50대	(43)	34.9		2.3	62.8	8.17	42.90
		60대	(8)	37.5	12.5		50.0	11.25	35.00
	직급	6급	(12)	25.0			75.0	3.67	43.13
		7급	(63)	42.9	1.6		55.6	5.83	39.87
		8급	(55)	58.2			41.8	5.46	33.59
9급		(18)	61.1			38.9	5.50	21.54	
직렬	행정	(18)	22.2		5.6	72.2	16.25	55.36	
	사회복지	(135)	56.3	0.7		43.0	5.45	29.91	
	보건	(6)				100.0	.	91.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66.7	5.00	28.33	
	1년~3년 이하	(14)	64.3			35.7	5.25	30.00	
	3년~5년 이하	(28)	75.0			25.0	6.00	23.77	
	5년~7년 이하	(32)	37.5			62.5	5.00	39.63	
	7년 이상	(26)	57.7			42.3	4.73	34.90	
	무응답(응답거부)	(44)	34.1	2.3		63.6	6.29	43.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37.5		6.3	56.3	12.00	39.17	
	3~6개월 미만	(6)	16.7			83.3	5.00	63.33	
	6~12개월 미만	(22)	40.9			59.1	5.20	58.42	
	1년~2년 미만	(27)	29.6			70.4	4.94	56.14	
	2년 이상	(87)	64.4	1.1		34.5	5.66	19.00	

【Q9_6】 지원업무 중 장제급여 비율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전체		(159)	62.9	0.6	0.6	35.8	6.05	34.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75.0			25.0	5.46	30.04
	6대 광역시	(38)	50.0	2.6		47.4	5.50	37.73
	중소도시	(44)	61.4		2.3	36.4	7.40	32.24
	기타 농어촌	(29)	62.1			37.9	5.88	41.67
지역	서울	(33)	78.8			21.2	5.78	17.88
	부산	(5)	60.0			40.0	4.33	58.80
	대구	(6)	50.0			50.0	4.00	29.00
	인천	(3)	66.7			33.3	5.00	45.00
	광주	(27)	44.4	3.7	3.7	48.1	10.23	32.53
	대전	(1)				100.0	.	20.00
	울산	(4)	50.0			50.0	3.50	45.00
	경기	(15)	66.7			33.3	4.56	52.61
	강원	(5)	100.0				4.20	45.25
	충북	(2)	50.0			50.0	.	80.00
	충남	(6)				100.0	.	80.83
	전북	(4)	50.0			50.0	4.00	56.25
	전남	(7)	57.1			42.9	5.25	55.00
	경북	(3)				100.0	.	95.00
경남	(38)	78.9			21.1	6.07	15.31	
성별	남성	(33)	69.7	3.0		27.3	5.77	32.59
	여성	(126)	61.1		0.8	38.1	6.13	35.20
연령별	30대	(31)	74.2			25.8	5.45	20.00
	40대	(75)	65.3			34.7	5.83	37.01
	50대	(43)	53.5		2.3	44.2	6.32	42.90
	60대	(8)	37.5	12.5		50.0	11.25	35.00
직급	6급	(12)	41.7			58.3	3.60	43.13
	7급	(63)	57.1	1.6		41.3	5.89	39.87
	8급	(55)	70.9			29.1	5.89	33.59
	9급	(18)	72.2			27.8	5.08	21.54
직렬	행정	(18)	33.3		5.6	61.1	12.17	55.36
	사회복지	(135)	68.1	0.7		31.1	5.73	29.91
	보건	(6)	33.3			66.7	1.50	91.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66.7			33.3	5.00	28.33
	1년~3년 이하	(14)	64.3			35.7	4.89	30.00
	3년~5년 이하	(28)	85.7			14.3	6.26	23.77
	5년~7년 이하	(32)	50.0			50.0	5.60	39.63
	7년 이상	(26)	73.1			26.9	5.94	34.90
	무응답(응답거부)	(44)	50.0	2.3		47.7	5.32	43.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43.8		6.3	50.0	11.00	39.17
	3~6개월 미만	(6)	50.0			50.0	4.67	63.33
	6~12개월 미만	(22)	50.0			50.0	4.67	58.42
	1년~2년 미만	(27)	48.1			51.9	4.19	56.14
	2년 이상	(87)	75.9	1.1		23.0	6.14	19.00

【Q9_7】 지원업무 중 자활급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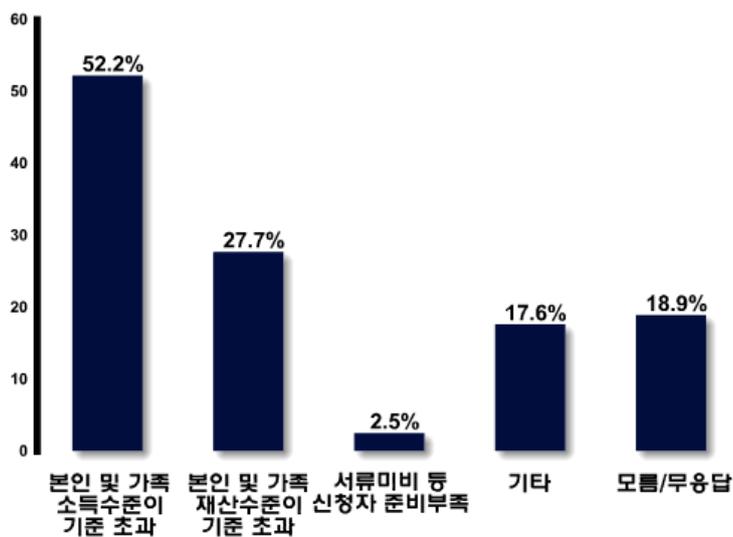
단위:%		사례 수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
전 체		(159)	54.1	0.6	1.3	44.0	12.58	34.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2.5	2.1		35.4	11.07	30.04
	6대 광역시	(38)	50.0			50.0	9.68	37.73
	중소도시	(44)	52.3			47.7	10.40	32.24
	기타 농어촌	(29)	48.3		6.9	44.8	22.20	41.67
지역	서울	(33)	78.8	3.0		18.2	11.23	17.88
	부산	(5)	40.0			60.0	12.50	58.80
	대구	(6)	66.7			33.3	5.50	29.00
	인천	(3)	66.7			33.3	15.00	45.00
	광주	(27)	33.3			66.7	10.78	32.53
	대전	(1)	100.0				10.00	20.00
	울산	(4)	50.0			50.0	10.00	45.00
	경기	(15)	26.7			73.3	10.00	52.61
	강원	(5)	20.0			80.0	20.00	45.25
	충북	(2)			50.0	50.0	100.00	80.00
	충남	(6)				100.0		80.83
	전북	(4)	25.0			75.0	20.00	56.25
	전남	(7)	42.9			57.1	13.33	55.00
	경북	(3)			33.3	66.7	100.00	95.00
경남	(38)	81.6			18.4	8.93	15.31	
성별	남성	(33)	57.6			42.4	10.63	32.59
	여성	(126)	53.2	0.8	1.6	44.4	13.15	35.20
연령별	30대	(31)	71.0			29.0	9.76	20.00
	40대	(75)	56.0	1.3		42.7	10.33	37.01
	50대	(43)	34.9		4.7	60.5	21.41	42.90
	60대	(8)	62.5			37.5	14.00	35.00
직급	6급	(12)	33.3			66.7	10.50	43.13
	7급	(63)	49.2		3.2	47.6	17.32	39.87
	8급	(55)	58.2	1.8		40.0	10.03	33.59
	9급	(18)	61.1			38.9	9.70	21.54
직렬	행정	(18)	16.7			83.3	13.33	55.36
	사회복지	(135)	61.5	0.7		37.8	10.34	29.91
	보건	(6)			33.3	66.7	100.00	91.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66.7			33.3	11.67	28.33
	1년~3년 이하	(14)	50.0			50.0	10.71	30.00
	3년~5년 이하	(28)	67.9	3.6		28.6	10.42	23.77
	5년~7년 이하	(32)	53.1			46.9	9.87	39.63
	7년 이상	(26)	53.8			46.2	10.77	34.90
	무응답(응답거부)	(44)	38.6		4.5	56.8	21.00	43.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43.8			56.3	10.29	39.17
	3~6개월 미만	(6)	16.7			83.3	10.00	63.33
	6~12개월 미만	(22)	22.7		9.1	68.2	40.83	58.42
	1년~2년 미만	(27)	29.6			70.4	10.63	56.14
	2년 이상	(87)	74.7	1.1		24.1	10.40	19.00

10. 탈락사유

현장에서 느끼는 심사 탈락자들의 탈락사유를 질문한 결과,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의 재산기준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가 27.7%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라는 응답의 합이 80%에 달해 전체 응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신청자의 준비부족’이 2.5%로 나타나며, 그 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가족구성 변화(자녀 성장 등)로 지위 상실’ 등이 기타 응답으로 답변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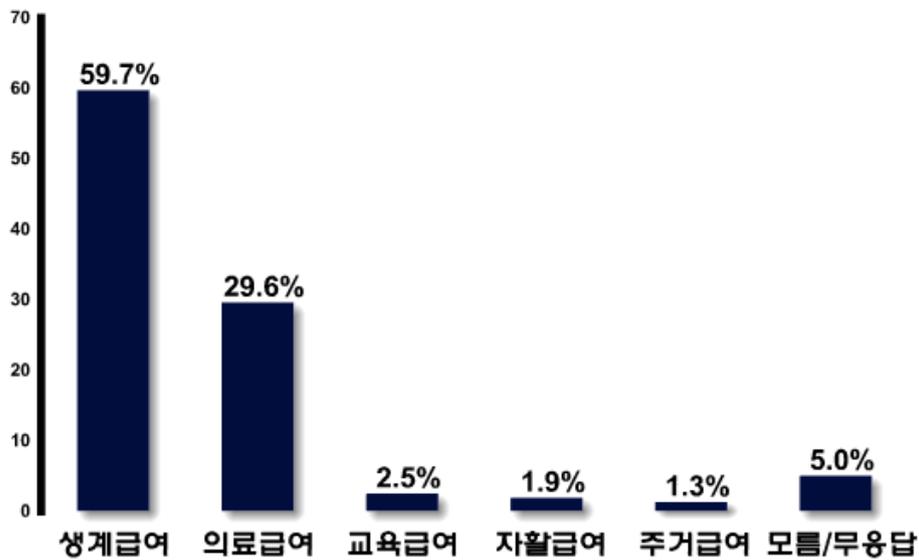
【Q10】 탈락사유

단위:%	사례 수	신청자 및 가점 기준 미달	신청자 및 가점 기준 미달	제출서류 미비	금융조사 결과	부양가족의 양육능력	가족구성 변화(자녀 등)로 인한 위급상황	모름/무응답	
■ 전	(159)	52.2	27.7	2.5	5.0	9.4	0.6	2.5	18.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3.8	37.5	4.2	2.1	4.2	4.2	14.6
	6대 광역시	(38)	57.9	23.7	2.6	2.6	7.9	2.6	15.8
	중소도시	(44)	54.5	25.0		6.8	11.4	2.3	20.5
	기타 농어촌	(29)	55.2	20.7	3.4	10.3	17.2		27.6
지역	서울	(33)	42.4	39.4	6.1		6.1		12.1
	부산	(5)	40.0	40.0	20.0				
	대구	(6)	66.7	16.7		16.7			16.7
	인천	(3)		66.7			33.3		33.3
	광주	(27)	66.7	18.5		3.7	3.7	3.7	18.5
	대전	(1)	100.0						
	울산	(4)	75.0				25.0		25.0
	경기	(15)	46.7	33.3		6.7		13.3	20.0
	강원	(5)	80.0	20.0					
	충북	(2)	100.0						
	충남	(6)		66.7		33.3			33.3
	전북	(4)	25.0	25.0		50.0			50.0
	전남	(7)	57.1	28.6			14.3		28.6
성별	남성	(33)	63.6	15.2	3.0	3.0	9.1	6.1	18.2
	여성	(126)	49.2	31.0	2.4	5.6	9.5	0.8	19.0
연령별	30대	(31)	54.8	29.0	3.2	3.2	6.5		12.9
	40대	(75)	46.7	30.7	2.7	4.0	10.7	5.3	21.3
	50대	(43)	65.1	18.6	2.3	7.0	9.3		16.3
	60대	(8)	25.0	37.5		12.5	12.5	12.5	37.5
직급	6급	(12)	50.0	25.0		8.3	16.7		25.0
	7급	(63)	54.0	27.0	1.6	4.8	9.5	1.6	19.0
	8급	(55)	47.3	32.7	5.5	3.6	9.1		16.4
	9급	(18)	55.6	16.7		11.1	5.6	11.1	27.8
직렬	행정	(18)	16.7	55.6		11.1	5.6	11.1	27.8
	사회복지	(135)	56.3	24.4	3.0	3.0	10.4	0.7	17.8
	보건	(6)	66.7	16.7		33.3			1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50.0	16.7		16.7	16.7		33.3
	1년~3년 이하	(14)	50.0	35.7				14.3	14.3
	3년~5년 이하	(28)	50.0	25.0	7.1	7.1	10.7		17.9
	5년~7년 이하	(32)	40.6	34.4	3.1	3.1	15.6	3.1	25.0
	7년 이상	(26)	61.5	30.8			3.8		7.7
무응답(응답거부)	(44)	52.3	22.7	2.3	9.1	11.4	2.3	2.3	25.0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6)	50.0	37.5		12.5			18.8
	3~6개월 미만	(6)	33.3	50.0		16.7			16.7
	6~12개월 미만	(22)	45.5	31.8		9.1	9.1	9.1	27.3
	1년~2년 미만	(27)	29.6	44.4	3.7	7.4	3.7	7.4	22.2
2년 이상	(87)	63.2	18.4	3.4		13.8	1.1	14.9	

11.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종류

수급자와 탈락자를 모두 포함하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종류로 ‘생계급여’가 59.7%로 다른 종류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29.6%가 뒤를 이었으며, 그 외로는 ‘교육급여’ 2.5%, ‘자활급여’ 1.9%, ‘주거급여’ 1.3% 등의 순이었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11】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종류

단위:%		사례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9)	59.7	1.3	29.6	2.5	1.9	5.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2.5	4.2	22.9	4.2	2.1	4.2
	6대 광역시	(38)	60.5		23.7	5.3	5.3	5.3
	중소도시	(44)	56.8		36.4			6.8
	기타 농어촌	(29)	58.6		37.9			3.4
지역	서울	(33)	69.7	6.1	12.1	3.0	3.0	6.1
	부산	(5)	40.0		60.0			
	대구	(6)	66.7		16.7			16.7
	인천	(3)	33.3		33.3	33.3		
	광주	(27)	63.0		18.5	3.7	7.4	7.4
	대전	(1)	100.0					
	울산	(4)	75.0					25.0
	경기	(15)	46.7		46.7	6.7		
	강원	(5)	40.0		60.0			
	충북	(2)			100.0			
	충남	(6)	16.7		83.3			
	전북	(4)			100.0			
	전남	(7)	85.7					14.3
	경북	(3)	33.3		66.7			
경남	(38)	71.1		26.3			2.6	
성별	남성	(33)	60.6		36.4	3.0		
	여성	(126)	59.5	1.6	27.8	2.4	2.4	6.3
연령별	30대	(31)	74.2		19.4	3.2		3.2
	40대	(75)	58.7	1.3	30.7	1.3	2.7	5.3
	50대	(43)	53.5	2.3	32.6	4.7		7.0
	60대	(8)	37.5		50.0		12.5	
직급	6급	(12)	50.0		41.7	8.3		
	7급	(63)	49.2	3.2	33.3	1.6	4.8	7.9
	8급	(55)	72.7		23.6			3.6
	9급	(18)	44.4		44.4	5.6		5.6
직렬	행정	(18)	33.3	5.6	38.9	5.6		16.7
	사회복지	(135)	64.4	0.7	26.7	2.2	2.2	3.7
	보건	(6)	33.3		6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83.3		16.7			
	1년~3년 이하	(14)	42.9		50.0	7.1		
	3년~5년 이하	(28)	78.6		14.3			7.1
	5년~7년 이하	(32)	53.1		37.5		3.1	6.3
	7년 이상	(26)	61.5	3.8	23.1		3.8	7.7
	무응답(응답거부)	(44)	50.0	2.3	36.4	4.5	2.3	4.5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37.5			
	3~6개월 미만	(6)	33.3		66.7			
	6~12개월 미만	(22)	54.5	4.5	40.9			
	1년~2년 미만	(27)	40.7		48.1	3.7		7.4
	2년 이상	(87)	69.0	1.1	17.2	3.4	3.4	5.7

11_1. 구체적 지원 필요 사항(Open 응답)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질문한 결과, ‘실질적 주거 지원(임대주택 지원, 월세, 난방비 등)’이 14.8%, ‘의료급여지원 기준 대폭 완화’이 11.1%, ‘지역, 계절, 가구원 수 변화 등 고려한 탄력적 생계비 지급’ 9.9% 등이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녀 학비 포괄적 지원(급식비, 학원비 등 포함)’ 7.4%,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 등이 많아 의료지원 충분치 않음’ 7.4%, ‘최저 생계비 인상필요’ 6.2%, ‘수급에서 탈락되었어도 의료(만성질환자), 교육 등은 지원필요’ 6.2%, ‘위기상황일 경우 기준에 초과되더라도 지원 확대해야 함’ 3.7%,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지원’ 3.7%,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2.5%, ‘퇴원 이후에도 지원(의료기기 등)’ 2.5%, ‘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아 의료비 부담’ 2.5%, ‘유예기간 더 두는 것이 좋을 듯’ 2.5%, ‘자립수당(취업수당)’ 1.2%, ‘조건 비 해당되더라도 생계유지 어려우면 1회 지원 필요’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한편 그 외 기타 응답은 8.6% 가량으로 나타났다.

<부 록 2>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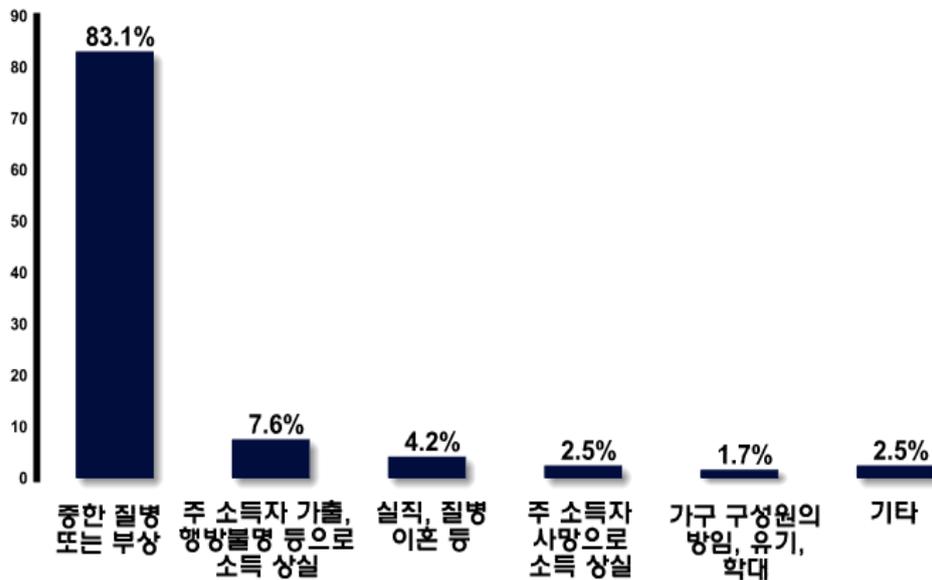
단위:%	사례 수	자립수당 (취업수당)	자녀 학비 지원 (급식비, 학원비 포함)	부양 의무자로 탈락자에 대항생계급여	위기상황 일준초과 지원확대	의료급여 기준대폭 완화	퇴원 이후에도 의료(의 기 등)	비급여항목, 선택진료 등이 많아 충분치 않음	최저 생계비 필요	병으로 인해 병원찾는 횟수가 많아 의료비 부담	유예 기간장	실질적 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월세, 난방비 등)	수급탈락 되어도 의료, 교육 등은 필요	일반적 노동시장 에서의 일자리 지원	조건 비해당되 더라도 생계유지 어려우면 1회 지원 필요	지역, 계절, 수 변화 등 고려한 탄력적 생계비 지급	기타
▣ 전 체 ▣	(81)	1.2	7.4	2.5	3.7	11.1	2.5	7.4	6.2	2.5	2.5	14.8	6.2	3.7	1.2	9.9	8.6
권 역	생계급여	(50)	2.0	8.0	4.0	4.0	6.0	2.0	8.0		4.0	22.0	4.0		2.0	12.0	12.0
	주거급여	(1)										100.0					
	의료급여	(25)				4.0	24.0	4.0	24.0	4.0	8.0		12.0			8.0	4.0
	교육급여	(2)		100.0													
	자활급여	(3)												100.0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중 개방형 질문 응답자 81명)

12. 빈번한 위기사유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는 위기사유로는 응답자의 83.1%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라고 답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 7.6%, ‘실직(폐업), 질병, 이혼 등’ 4.2%,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 2.5%,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1.7% 등이었으며, 그 외 기타 응답의 비중은 2.5%였다.



(Base: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자 1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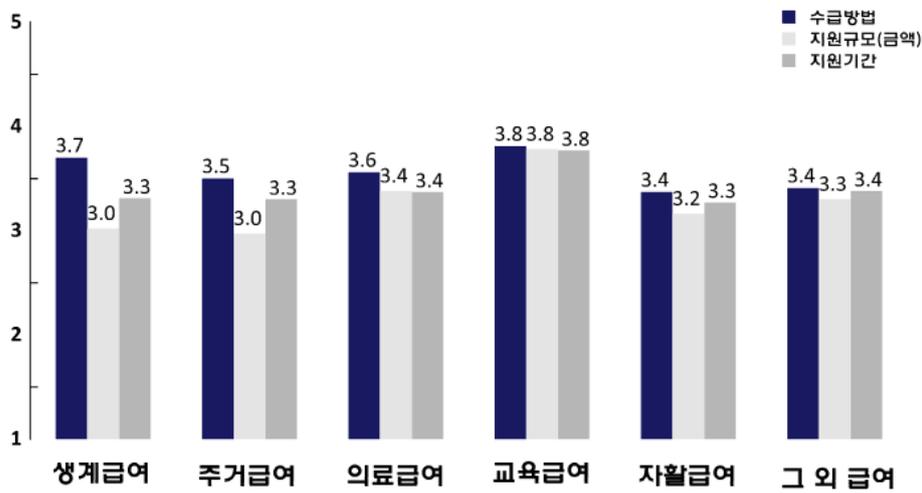
【Q12】 빈번한 위기사유

단위:%	사례 수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을 상실	주 소득자가 가솔,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 학대	실직(폐업), 질병, 이혼 등	결손가정 내 아동	소득, 재산 부족	부양의무자의 기피	
■ 전 체 ■	(118)	2.5	7.6	83.1	1.7	4.2	0.8	0.8	0.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3)		6.1	81.8	3.0	9.1	3.0		
	6대 광역시	(29)		10.3	86.2		3.4		3.4	
	중소도시	(30)	10.0	3.3	83.3	3.3				
	기타 농어촌	(26)		11.5	80.8		3.8		3.8	
지역	서울	(19)		5.3	84.2		10.5	5.3		
	부산	(4)		25.0	75.0					
	대구	(3)			66.7				33.3	
	인천	(3)			100.0					
	광주	(21)	9.5	14.3	76.2		4.8			
	대전	(4)			100.0					
	울산	(14)		7.1	78.6	7.1	7.1			
	경기	(4)			100.0					
	강원	(2)			100.0					
	충북	(6)			100.0					
	충남	(4)			100.0					
	전북	(7)		14.3	85.7					
	전남	(3)			100.0					
경북	(24)	4.2	8.3	75.0	4.2	4.2			4.2	
경남	(28)	7.1	10.7	78.6		3.6				
성별	남성	(90)	1.1	6.7	84.4	2.2	4.4	1.1	1.1	1.1
	여성	(18)	5.6	11.1	77.8	5.6			5.6	
연령별	30대	(56)		5.4	89.3		3.6	1.8		1.8
	40대	(35)	2.9	11.4	80.0	2.9	2.9			
	50대	(7)	14.3		71.4		14.3			
	60대	(9)	11.1		66.7		22.2			
직급	6급	(51)	2.0	7.8	84.3	2.0	2.0	2.0		2.0
	7급	(36)		8.3	91.7		2.8			
	8급	(14)		7.1	85.7				7.1	
	9급	(17)	11.8	5.9	76.5		5.9			
직렬	행정	(95)	1.1	7.4	84.2	2.1	4.2	1.1	1.1	1.1
	사회복지	(6)		16.7	83.3					
	보건	(3)			100.0					
근속연수	1년 이하	(11)		18.2	81.8	9.1				
	1년~3년 이하	(16)		6.3	87.5		6.3			
	3년~5년 이하	(25)		4.0	96.0					
	5년~7년 이하	(21)	4.8	4.8	76.2	4.8	4.8	4.8		4.8
	7년 이상	(34)	2.9	8.8	82.4		5.9			
	무응답(응답거부)	(15)	20.0	13.3	53.3	6.7			6.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6)			100.0					
	3~6개월 미만	(18)			100.0					
	6~12개월 미만	(24)		20.8	79.2		4.2			
	1년~2년 미만	(54)		3.7	85.2	1.9	7.4	1.9		1.9
	2년 이상	(87)	69.0			1.1	17.2	3.4	3.4	5.7

13. 급여별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 평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종류별 수급방법과 금액, 기간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교육급여가 3가지 평가항목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 큰 차이 없이 3점대 초중반(5점 기준)의 평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규모(금액)측면에서 3.0점으로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13_1_1】 [생계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9.4	45.3	23.3	6.3	0.6	54.7	23.3	6.9	15.1	3.6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0.4	35.4	25.0	8.3	2.1	45.8	25.0	10.4	18.8	3.54
	6대 광역시	(38)	13.2	39.5	26.3	7.9		52.6	26.3	7.9	13.2	3.67
	중소도시	(44)	4.5	47.7	22.7	6.8		52.3	22.7	6.8	18.2	3.61
	기타 농어촌	(29)	10.3	65.5	17.2			75.9	17.2		6.9	3.93
지역	서울	(33)	9.1	42.4	18.2	12.1	3.0	51.5	18.2	15.2	15.2	3.50
	부산	(5)		100.0				100.0				4.00
	대구	(6)		50.0	16.7	16.7		50.0	16.7	16.7	16.7	3.40
	인천	(3)	33.3	33.3				66.7			33.3	4.50
	광주	(27)	14.8	37.0	25.9	11.1		51.9	25.9	11.1	11.1	3.63
	대전	(1)			100.0				100.0			3.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13.3	20.0	40.0			33.3	40.0		26.7	3.64
	강원	(5)	20.0	60.0				80.0			20.0	4.25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100.0				100.0				4.00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3.33
	전남	(7)	14.3	42.9	28.6			57.1	28.6		14.3	3.83
경북	(3)		66.7				66.7			33.3	4.00	
경남	(38)	5.3	50.0	26.3	5.3		55.3	26.3	5.3	13.2	3.64	
성별	남성	(33)	12.1	48.5	18.2	6.1	3.0	60.6	18.2	9.1	12.1	3.69
	여성	(126)	8.7	44.4	24.6	6.3		53.2	24.6	6.3	15.9	3.66
연령별	30대	(31)	6.5	48.4	25.8	3.2		54.8	25.8	3.2	16.1	3.69
	40대	(75)	9.3	44.0	24.0	8.0		53.3	24.0	8.0	14.7	3.64
	50대	(43)	11.6	41.9	23.3	7.0		53.5	23.3	7.0	16.3	3.69
	60대	(8)	12.5	62.5	12.5			75.0	12.5		12.5	4.00
직급	6급	(12)	8.3	25.0	33.3	16.7		33.3	33.3	16.7	16.7	3.30
	7급	(63)	12.7	50.8	17.5	4.8		63.5	17.5	4.8	14.3	3.83
	8급	(55)	5.5	49.1	27.3	5.5		54.5	27.3	5.5	12.7	3.63
	9급	(18)	11.1	38.9	11.1	5.6		50.0	11.1	5.6	33.3	3.83
직렬	행정	(18)	11.1	55.6				66.7			33.3	4.17
	사회복지	(135)	9.6	43.7	25.9	7.4	0.7	53.3	25.9	8.1	12.6	3.62
	보건	(6)		50.0	33.3			50.0	33.3		16.7	3.60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33.3			50.0	33.3		16.7	3.60
	1년~3년 이하	(14)	21.4	35.7	21.4			57.1	21.4		21.4	4.00
	3년~5년 이하	(28)	3.6	42.9	25.0	7.1		46.4	25.0	7.1	21.4	3.55
	5년~7년 이하	(32)	6.3	50.0	25.0	6.3		56.3	25.0	6.3	12.5	3.64
	7년 이상	(26)	19.2	46.2	19.2	11.5		65.4	19.2	11.5	3.8	3.76
	무응답(응답거부)	(44)	9.1	45.5	20.5	4.5		54.5	20.5	4.5	20.5	3.74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62.5	18.8			68.8	18.8		12.5	3.86
	3~6개월 미만	(6)	16.7	33.3	16.7	16.7		50.0	16.7	16.7	16.7	3.60
	6~12개월 미만	(22)	13.6	54.5	18.2			68.2	18.2		13.6	3.95
	1년~2년 미만	(27)	7.4	48.1	18.5			55.6	18.5		25.9	3.85
2년 이상	(87)	9.2	40.2	27.6	10.3	1.1	49.4	27.6	11.5	11.5	3.52	

【Q13_1_2】 [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1.9	27.7	38.4	22.0	3.8	29.6	38.4	25.8	6.3	3.0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2.9	39.6	18.8	6.3	22.9	39.6	25.0	12.5	2.90
	6대 광역시	(38)	2.6	21.1	42.1	23.7	2.6	23.7	42.1	26.3	7.9	2.97
	중소도시	(44)	2.3	29.5	34.1	29.5	2.3	31.8	34.1	31.8	2.3	3.00
	기타 농어촌	(29)	3.4	41.4	37.9	13.8	3.4	44.8	37.9	17.2		3.28
지역	서울	(33)		24.2	27.3	21.2	9.1	24.2	27.3	30.3	18.2	2.81
	부산	(5)		40.0	40.0	20.0		40.0	40.0	20.0		3.20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16.7	3.00
	인천	(3)			33.3	33.3	33.3		33.3	66.7		2.00
	광주	(27)	3.7	33.3	40.7	18.5		37.0	40.7	18.5	3.7	3.23
	대전	(1)				100.0				100.0		2.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33
	경기	(15)		20.0	66.7	13.3		20.0	66.7	13.3		3.07
	강원	(5)		40.0	20.0	40.0		40.0	20.0	40.0		3.00
	충북	(2)		50.0	50.0			50.0	50.0			3.50
	충남	(6)		50.0	33.3		16.7	50.0	33.3	16.7		3.17
	전북	(4)		50.0	25.0	25.0		50.0	25.0	25.0		3.25
	전남	(7)	14.3	14.3	42.9	14.3	14.3	28.6	42.9	28.6		3.00
	경북	(3)		33.3		66.7		33.3		66.7		2.67
경남	(38)		28.9	42.1	26.3		28.9	42.1	26.3	2.6	3.03	
성별	남성	(33)	6.1	33.3	39.4	15.2	6.1	39.4	39.4	21.2		3.18
	여성	(126)	0.8	26.2	38.1	23.8	3.2	27.0	38.1	27.0	7.9	2.97
연령별	30대	(31)		32.3	35.5	16.1	3.2	32.3	35.5	19.4	12.9	3.11
	40대	(75)		21.3	38.7	30.7	4.0	21.3	38.7	34.7	5.3	2.82
	50대	(43)	4.7	34.9	41.9	11.6	2.3	39.5	41.9	14.0	4.7	3.29
	60대	(8)	12.5	37.5	25.0	25.0		50.0	25.0	25.0		3.38
직급	6급	(12)	8.3	8.3	50.0	25.0		16.7	50.0	25.0	8.3	3.00
	7급	(63)	3.2	38.1	33.3	19.0	1.6	41.3	33.3	20.6	4.8	3.23
	8급	(55)		23.6	38.2	25.5	7.3	23.6	38.2	32.7	5.5	2.83
	9급	(18)		16.7	55.6	11.1		16.7	55.6	11.1	16.7	3.07
직렬	행정	(18)	5.6	50.0	22.2	11.1		55.6	22.2	11.1	11.1	3.56
	사회복지	(135)	1.5	24.4	40.0	23.7	4.4	25.9	40.0	28.1	5.9	2.94
	보건	(6)		33.3	50.0	16.7		33.3	50.0	16.7		3.17
근속연수	1년 이하	(6)			83.3	16.7			83.3	16.7		2.83
	1년~3년 이하	(14)		35.7	35.7	14.3		35.7	35.7	14.3	14.3	3.25
	3년~5년 이하	(28)		21.4	46.4	14.3	3.6	21.4	46.4	17.9	14.3	3.00
	5년~7년 이하	(32)		18.8	21.9	46.9	9.4	18.8	21.9	56.3	3.1	2.52
	7년 이상	(26)	3.8	26.9	46.2	19.2		30.8	46.2	19.2	3.8	3.16
	무응답(응답거부)	(44)	4.5	38.6	36.4	13.6	2.3	43.2	36.4	15.9	4.5	3.31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43.8	18.8	12.5	12.5	50.0	18.8	25.0	6.3	3.20
	3~6개월 미만	(6)		33.3	16.7	33.3	16.7	33.3	16.7	50.0		2.67
	6~12개월 미만	(22)	4.5	31.8	40.9	18.2		36.4	40.9	18.2	4.5	3.24
	1년~2년 미만	(27)		29.6	55.6	7.4		29.6	55.6	7.4	7.4	3.24
2년 이상	(87)	1.1	23.0	37.9	28.7	3.4	24.1	37.9	32.2	5.7	2.89	

【Q13_1_3】 [생계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점 (Mean)	
전 체	(159)	5.0	34.6	28.9	14.5	1.9	0.6	39.6	28.9	16.4	14.5	3.3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2	31.3	29.2	16.7	2.1		35.4	29.2	18.8	16.7	3.23
	6대 광역시	(38)	2.6	39.5	26.3	10.5	5.3	2.6	42.1	26.3	15.8	13.2	3.28
	중소도시	(44)	6.8	29.5	29.5	15.9			36.4	29.5	15.9	18.2	3.33
	기타 농어촌	(29)	6.9	41.4	31.0	13.8			48.3	31.0	13.8	6.9	3.44
지역	서울	(33)	3.0	30.3	27.3	24.2	3.0		33.3	27.3	27.3	12.1	3.07
	부산	(5)		80.0		20.0			80.0		20.0		3.60
	대구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00
	인천	(3)		66.7					66.7			33.3	4.00
	광주	(27)	3.7	40.7	29.6	14.8			44.4	29.6	14.8	11.1	3.38
	대전	(1)						100.0					.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경기	(15)	6.7	33.3	33.3				40.0	33.3		26.7	3.64
	강원	(5)		20.0	40.0	20.0			20.0	40.0	20.0	20.0	3.0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16.7	16.7			66.7	16.7	16.7		3.50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3.33
	전남	(7)	28.6	14.3	42.9				42.9	42.9		14.3	3.83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00	
경남	(38)	5.3	28.9	34.2	18.4			34.2	34.2	18.4	13.2	3.24	
성별	남성	(33)	12.1	36.4	24.2	9.1	6.1		48.5	24.2	15.2	12.1	3.45
	여성	(126)	3.2	34.1	30.2	15.9	0.8	0.8	37.3	30.2	16.7	15.1	3.27
연령별	30대	(31)	3.2	35.5	29.0	12.9		3.2	38.7	29.0	12.9	16.1	3.36
	40대	(75)	2.7	26.7	34.7	21.3	1.3		29.3	34.7	22.7	13.3	3.09
	50대	(43)	9.3	46.5	20.9	4.7	2.3		55.8	20.9	7.0	16.3	3.67
	60대	(8)	12.5	50.0	12.5	12.5			62.5	12.5	12.5	12.5	3.71
직급	6급	(12)	16.7	25.0	25.0	16.7			41.7	25.0	16.7	16.7	3.50
	7급	(63)	4.8	44.4	22.2	14.3	1.6		49.2	22.2	15.9	12.7	3.42
	8급	(55)	1.8	29.1	38.2	16.4	1.8		30.9	38.2	18.2	12.7	3.15
	9급	(18)	11.1	27.8	22.2	5.6			38.9	22.2	5.6	33.3	3.67
직렬	행정	(18)	5.6	38.9	11.1	11.1			44.4	11.1	11.1	33.3	3.58
	사회복지	(135)	5.2	33.3	31.1	15.6	2.2	0.7	38.5	31.1	17.8	11.9	3.27
	보건	(6)		50.0	33.3				50.0	33.3		16.7	3.6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16.7	33.3	16.7			33.3	33.3	16.7	16.7	3.40
	1년~3년 이하	(14)	7.1	35.7	28.6	7.1			42.9	28.6	7.1	21.4	3.55
	3년~5년 이하	(28)		28.6	35.7	10.7	3.6		28.6	35.7	14.3	21.4	3.14
	5년~7년 이하	(32)	3.1	28.1	31.3	25.0			31.3	31.3	25.0	12.5	3.11
	7년 이상	(26)	3.8	38.5	26.9	23.1	3.8		42.3	26.9	26.9	3.8	3.16
	무응답(응답거부)	(44)	9.1	43.2	22.7	6.8			52.3	22.7	6.8	18.2	3.6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12.5	56.3	12.5	6.3			68.8	12.5	6.3	12.5	3.86
	3~6개월 미만	(6)		66.7	16.7				66.7	16.7		16.7	3.80
	6~12개월 미만	(22)	9.1	27.3	27.3	22.7			36.4	27.3	22.7	13.6	3.26
	1년~2년 미만	(27)	3.7	29.6	40.7				33.3	40.7		25.9	3.50
	2년 이상	(87)	3.4	32.2	29.9	19.5	3.4	1.1	35.6	29.9	23.0	10.3	3.14

【Q13_2_1】 [주거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6.9	40.3	28.9	8.8	0.6	47.2	28.9	9.4	14.5	3.5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8.3	39.6	25.0	8.3	2.1	47.9	25.0	10.4	16.7	3.53
	6대 광역시	(38)	7.9	31.6	36.8	10.5		39.5	36.8	10.5	13.2	3.42
	중소도시	(44)	2.3	38.6	29.5	11.4		40.9	29.5	11.4	18.2	3.39
	기타 농어촌	(29)	10.3	55.2	24.1	3.4		65.5	24.1	3.4	6.9	3.78
지역	서울	(33)	9.1	42.4	24.2	9.1	3.0	51.5	24.2	12.1	12.1	3.52
	부산	(5)		80.0	20.0			80.0	20.0			3.80
	대구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인천	(3)	33.3		33.3			33.3	33.3		33.3	4.00
	광주	(27)	3.7	37.0	37.0	11.1		40.7	37.0	11.1	11.1	3.38
	대전	(1)			100.0				100.0			3.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6.7	33.3	26.7	6.7		40.0	26.7	6.7	26.7	3.55
	강원	(5)	20.0	20.0	20.0	20.0		40.0	20.0	20.0	20.0	3.5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16.7	66.7	16.7			83.3	16.7			4.00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2.67
	전남	(7)	14.3	28.6	28.6	14.3		42.9	28.6	14.3	14.3	3.50
	경북	(3)			66.7				66.7		33.3	3.00
경남	(38)	2.6	50.0	28.9	5.3		52.6	28.9	5.3	13.2	3.58	
성별	남성	(33)	9.1	36.4	33.3	6.1	3.0	45.5	33.3	9.1	12.1	3.48
	여성	(126)	6.3	41.3	27.8	9.5		47.6	27.8	9.5	15.1	3.52
연령별	30대	(31)	3.2	54.8	22.6	3.2		58.1	22.6	3.2	16.1	3.69
	40대	(75)	9.3	32.0	33.3	12.0		41.3	33.3	12.0	13.3	3.45
	50대	(43)	4.7	39.5	30.2	9.3		44.2	30.2	9.3	16.3	3.47
	60대	(8)	12.5	62.5	12.5			75.0	12.5		12.5	4.00
직급	6급	(12)	8.3	25.0	41.7	8.3		33.3	41.7	8.3	16.7	3.40
	7급	(63)	9.5	46.0	23.8	7.9		55.6	23.8	7.9	12.7	3.65
	8급	(55)	3.6	36.4	36.4	10.9		40.0	36.4	10.9	12.7	3.38
	9급	(18)	11.1	38.9	11.1	5.6		50.0	11.1	5.6	33.3	3.83
직렬	행정	(18)		55.6	11.1			55.6	11.1		33.3	3.83
	사회복지	(135)	8.1	38.5	30.4	10.4	0.7	46.7	30.4	11.1	11.9	3.49
	보건	(6)		33.3	50.0			33.3	50.0		16.7	3.40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33.3			50.0	33.3		16.7	3.60
	1년~3년 이하	(14)	14.3	50.0	7.1	7.1		64.3	7.1	7.1	21.4	3.91
	3년~5년 이하	(28)	3.6	35.7	32.1	7.1		39.3	32.1	7.1	21.4	3.45
	5년~7년 이하	(32)	9.4	31.3	31.3	15.6		40.6	31.3	15.6	12.5	3.39
	7년 이상	(26)	11.5	46.2	30.8	7.7		57.7	30.8	7.7	3.8	3.64
	무응답(응답거부)	(44)	4.5	40.9	29.5	6.8		45.5	29.5	6.8	18.2	3.5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18.8	6.3		62.5	18.8	6.3	12.5	3.64
	3~6개월 미만	(6)	16.7	33.3	16.7	16.7		50.0	16.7	16.7	16.7	3.60
	6~12개월 미만	(22)	9.1	36.4	36.4	4.5		45.5	36.4	4.5	13.6	3.58
	1년~2년 미만	(27)		44.4	22.2	7.4		44.4	22.2	7.4	25.9	3.50
2년 이상	(87)	9.2	36.8	32.2	10.3	1.1	46.0	32.2	11.5	10.3	3.47	

【Q13_2_2】 [주거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 전 체 ■	(159)	1.9	25.2	40.3	22.0	5.0	0.6	27.0	40.3	27.0	5.0	2.9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16.7	41.7	22.9	6.3	2.1	18.8	41.7	29.2	8.3	2.84
	6대 광역시	(38)	2.6	21.1	36.8	26.3	5.3		23.7	36.8	31.6	7.9	2.89
	중소도시	(44)		34.1	40.9	20.5	2.3		34.1	40.9	22.7	2.3	3.09
	기타 농어촌	(29)	3.4	31.0	41.4	17.2	6.9		34.5	41.4	24.1		3.07
지역	서울	(33)	3.0	15.2	33.3	27.3	9.1		18.2	33.3	36.4	12.1	2.72
	부산	(5)		60.0	20.0	20.0			60.0	20.0			3.40
	대구	(6)		16.7	33.3	33.3			16.7	33.3	33.3	16.7	2.80
	인천	(3)			33.3	33.3	33.3			33.3	66.7		2.00
	광주	(27)		25.9	48.1	14.8	7.4		25.9	48.1	22.2	3.7	2.96
	대전	(1)				100.0					100.0		2.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33
	경기	(15)		20.0	60.0	13.3		6.7	20.0	60.0	13.3		3.07
	강원	(5)		20.0		60.0	20.0		20.0		80.0		2.20
	충북	(2)		50.0	50.0				50.0	50.0			3.50
	충남	(6)		33.3	33.3	16.7	16.7		33.3	33.3	33.3		2.83
	전북	(4)		50.0		50.0			50.0		50.0		3.00
	전남	(7)	14.3	14.3	42.9	28.6			28.6	42.9	28.6		3.14
	경북	(3)		33.3	66.7				33.3	66.7			3.33
경남	(38)		34.2	47.4	15.8			34.2	47.4	15.8	2.6	3.19	
성별	남성	(33)	3.0	36.4	36.4	18.2	6.1		39.4	36.4	24.2		3.12
	여성	(126)	1.6	22.2	41.3	23.0	4.8	0.8	23.8	41.3	27.8	6.3	2.92
연령별	30대	(31)	3.2	22.6	41.9	16.1	6.5		25.8	41.9	22.6	9.7	3.00
	40대	(75)		20.0	40.0	30.7	4.0	1.3	20.0	40.0	34.7	4.0	2.80
	50대	(43)	2.3	32.6	41.9	14.0	4.7		34.9	41.9	18.6	4.7	3.15
	60대	(8)	12.5	50.0	25.0	12.5			62.5	25.0	12.5		3.63
직급	6급	(12)	8.3	8.3	50.0	25.0			16.7	50.0	25.0	8.3	3.00
	7급	(63)	1.6	39.7	31.7	20.6	3.2		41.3	31.7	23.8	3.2	3.16
	8급	(55)	1.8	14.5	43.6	27.3	7.3		16.4	43.6	34.5	5.5	2.75
	9급	(18)		16.7	50.0	11.1	5.6	5.6	16.7	50.0	16.7	11.1	2.93
직렬	행정	(18)		50.0	22.2	16.7			50.0	22.2	16.7	11.1	3.38
	사회복지	(135)	2.2	21.5	41.5	23.7	5.9	0.7	23.7	41.5	29.6	4.4	2.90
	보건	(6)		33.3	66.7				33.3	66.7			3.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83.3			16.7		83.3			3.00
	1년~3년 이하	(14)	7.1	28.6	35.7	14.3	7.1		35.7	35.7	21.4	7.1	3.15
	3년~5년 이하	(28)		14.3	46.4	21.4	3.6		14.3	46.4	25.0	14.3	2.83
	5년~7년 이하	(32)		18.8	28.1	40.6	9.4		18.8	28.1	50.0	3.1	2.58
	7년 이상	(26)		30.8	42.3	26.9			30.8	42.3	26.9		3.04
	무응답(응답거부)	(44)	4.5	34.1	40.9	11.4	4.5		38.6	40.9	15.9	4.5	3.24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50.0	25.0	12.5	12.5		50.0	25.0	25.0		3.13
	3~6개월 미만	(6)		33.3	16.7	33.3	16.7		33.3	16.7	50.0		2.67
	6~12개월 미만	(22)	9.1	13.6	40.9	22.7	4.5	4.5	22.7	40.9	27.3	4.5	3.00
	1년~2년 미만	(27)		25.9	48.1	18.5			25.9	48.1	18.5	7.4	3.08
	2년 이상	(87)	1.1	23.0	42.5	24.1	4.6		24.1	42.5	28.7	4.6	2.92

【Q13_2_3】 [주거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3.8	34.0	33.3	11.9	1.9	0.6	37.7	33.3	13.8	14.5	3.3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2	31.3	29.2	16.7	2.1		35.4	29.2	18.8	16.7	3.23
	6대 광역시	(38)	2.6	31.6	34.2	10.5	5.3	2.6	34.2	34.2	15.8	13.2	3.19
	중소도시	(44)	4.5	31.8	36.4	9.1			36.4	36.4	9.1	18.2	3.39
	기타 농어촌	(29)	3.4	44.8	34.5	10.3			48.3	34.5	10.3	6.9	3.44
지역	서울	(33)	3.0	33.3	27.3	21.2	3.0		36.4	27.3	24.2	12.1	3.14
	부산	(5)		80.0		20.0			80.0		20.0		3.60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16.7	2.80
	인천	(3)		33.3	33.3				33.3	33.3		33.3	3.50
	광주	(27)		37.0	40.7	11.1			37.0	40.7	11.1	11.1	3.29
	대전	(1)						100.0					.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경기	(15)	6.7	26.7	33.3	6.7			33.3	33.3	6.7	26.7	3.45
	강원	(5)		40.0	40.0				40.0	40.0		20.0	3.5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83.3	16.7				83.3	16.7			3.83
	전북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전남	(7)	14.3	14.3	42.9	14.3			28.6	42.9	14.3	14.3	3.33
	경북	(3)			66.7					66.7		33.3	3.00
경남	(38)	5.3	31.6	36.8	13.2			36.8	36.8	13.2	13.2	3.33	
성별	남성	(33)	6.1	33.3	39.4	3.0	6.1		39.4	39.4	9.1	12.1	3.34
	여성	(126)	3.2	34.1	31.7	14.3	0.8	0.8	37.3	31.7	15.1	15.1	3.29
연령별	30대	(31)	3.2	45.2	25.8	6.5		3.2	48.4	25.8	6.5	16.1	3.56
	40대	(75)	1.3	24.0	41.3	18.7	1.3		25.3	41.3	20.0	13.3	3.06
	50대	(43)	7.0	41.9	27.9	4.7	2.3		48.8	27.9	7.0	16.3	3.56
	60대	(8)	12.5	50.0	12.5	12.5			62.5	12.5	12.5	12.5	3.71
직급	6급	(12)	16.7	25.0	33.3	8.3			41.7	33.3	8.3	16.7	3.60
	7급	(63)	3.2	42.9	28.6	11.1	1.6		46.0	28.6	12.7	12.7	3.40
	8급	(55)		25.5	43.6	16.4	1.8		25.5	43.6	18.2	12.7	3.06
	9급	(18)	11.1	33.3	16.7	5.6			44.4	16.7	5.6	33.3	3.75
직렬	행정	(18)		44.4	16.7	5.6			44.4	16.7	5.6	33.3	3.58
	사회복지	(135)	4.4	32.6	34.8	13.3	2.2	0.7	37.0	34.8	15.6	11.9	3.27
	보건	(6)		33.3	50.0				33.3	50.0		16.7	3.4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16.7	50.0				33.3	50.0		16.7	3.60
	1년~3년 이하	(14)	7.1	57.1	7.1	7.1			64.3	7.1	7.1	21.4	3.82
	3년~5년 이하	(28)		17.9	46.4	10.7	3.6		17.9	46.4	14.3	21.4	3.00
	5년~7년 이하	(32)		31.3	34.4	21.9			31.3	34.4	21.9	12.5	3.11
	7년 이상	(26)		42.3	30.8	19.2	3.8		42.3	30.8	23.1	3.8	3.16
	무응답(응답거부)	(44)	9.1	36.4	31.8	4.5			45.5	31.8	4.5	18.2	3.61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18.8	6.3			62.5	18.8	6.3	12.5	3.64
	3~6개월 미만	(6)		50.0	33.3				50.0	33.3		16.7	3.60
	6~12개월 미만	(22)	9.1	22.7	40.9	13.6			31.8	40.9	13.6	13.6	3.32
	1년~2년 미만	(27)	3.7	33.3	37.0				37.0	37.0		25.9	3.55
	2년 이상	(87)	3.4	31.0	33.3	17.2	3.4	1.1	34.5	33.3	20.7	10.3	3.16

【Q13_3_1】 [의료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5.7	47.8	22.6	7.5	1.9	53.5	22.6	9.4	14.5	3.5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37.5	31.3	10.4	2.1	39.6	31.3	12.5	16.7	3.33
	6대 광역시	(38)	7.9	44.7	21.1	10.5	2.6	52.6	21.1	13.2	13.2	3.52
	중소도시	(44)	2.3	63.6	11.4	2.3	2.3	65.9	11.4	4.5	18.2	3.75
	기타 농어촌	(29)	13.8	44.8	27.6	6.9		58.6	27.6	6.9	6.9	3.70
지역	서울	(33)	3.0	39.4	30.3	12.1	3.0	42.4	30.3	15.2	12.1	3.31
	부산	(5)		100.0				100.0				4.00
	대구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인천	(3)	33.3	33.3				66.7			33.3	4.50
	광주	(27)	7.4	55.6	14.8	7.4	3.7	63.0	14.8	11.1	11.1	3.63
	대전	(1)				100.0				100.0		2.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33
	경기	(15)		33.3	33.3	6.7		33.3	33.3	6.7	26.7	3.36
	강원	(5)	20.0	40.0	20.0			60.0	20.0		20.0	4.0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16.7	83.3				100.0				4.17
	전북	(4)		75.0				75.0			25.0	4.00
	전남	(7)	28.6	14.3	28.6	14.3		42.9	28.6	14.3	14.3	3.67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50
경남	(38)	2.6	52.6	23.7	5.3	2.6	55.3	23.7	7.9	13.2	3.55	
성별	남성	(33)	3.0	51.5	21.2	9.1	3.0	54.5	21.2	12.1	12.1	3.48
	여성	(126)	6.3	46.8	23.0	7.1	1.6	53.2	23.0	8.7	15.1	3.58
연령별	30대	(31)	3.2	48.4	22.6	9.7		51.6	22.6	9.7	16.1	3.54
	40대	(75)	6.7	38.7	30.7	10.7		45.3	30.7	10.7	13.3	3.48
	50대	(43)	4.7	60.5	9.3	2.3	7.0	65.1	9.3	9.3	16.3	3.64
	60대	(8)	12.5	62.5	12.5			75.0	12.5		12.5	4.00
직급	6급	(12)		58.3	8.3	8.3	8.3	58.3	8.3	16.7	16.7	3.40
	7급	(63)	9.5	52.4	19.0	3.2	3.2	61.9	19.0	6.3	12.7	3.71
	8급	(55)	1.8	47.3	29.1	9.1		49.1	29.1	9.1	12.7	3.48
	9급	(18)	11.1	33.3	16.7	5.6		44.4	16.7	5.6	33.3	3.75
직렬	행정	(18)		50.0	16.7			50.0	16.7		33.3	3.75
	사회복지	(135)	5.9	47.4	23.7	8.9	2.2	53.3	23.7	11.1	11.9	3.52
	보건	(6)	16.7	50.0	16.7			66.7	16.7		16.7	4.00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50.0			33.3	50.0		16.7	3.40
	1년~3년 이하	(14)	14.3	42.9	14.3	7.1		57.1	14.3	7.1	21.4	3.82
	3년~5년 이하	(28)		46.4	25.0	7.1		46.4	25.0	7.1	21.4	3.50
	5년~7년 이하	(32)	9.4	37.5	28.1	12.5		46.9	28.1	12.5	12.5	3.50
	7년 이상	(26)	3.8	53.8	30.8	7.7		57.7	30.8	7.7	3.8	3.56
	무응답(응답거부)	(44)	6.8	54.5	11.4	2.3	6.8	61.4	11.4	9.1	18.2	3.64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75.0		12.5		75.0		12.5	12.5	3.71
	3~6개월 미만	(6)	16.7	33.3	16.7		16.7	50.0	16.7	16.7	16.7	3.40
	6~12개월 미만	(22)	13.6	45.5	27.3			59.1	27.3		13.6	3.84
	1년~2년 미만	(27)	3.7	55.6	14.8			59.3	14.8		25.9	3.85
2년 이상	(87)	4.6	42.5	28.7	11.5	2.3	47.1	28.7	13.8	10.3	3.40	

【Q13_3_2】 [의료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3.8	47.8	27.0	13.8	2.5	51.6	27.0	16.4	5.0	3.3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35.4	31.3	20.8	2.1	37.5	31.3	22.9	8.3	3.16
	6대 광역시	(38)	2.6	36.8	31.6	15.8	5.3	39.5	31.6	21.1	7.9	3.17
	중소도시	(44)	2.3	68.2	18.2	6.8	2.3	70.5	18.2	9.1	2.3	3.63
	기타 농어촌	(29)	10.3	51.7	27.6	10.3		62.1	27.6	10.3		3.62
지역	서울	(33)	3.0	30.3	33.3	18.2	3.0	33.3	33.3	21.2	12.1	3.14
	부산	(5)		60.0	20.0	20.0		60.0	20.0	20.0		3.40
	대구	(6)		33.3	50.0			33.3	50.0		16.7	3.40
	인천	(3)		66.7		33.3		66.7		33.3		3.33
	광주	(27)	3.7	44.4	33.3	11.1	3.7	48.1	33.3	14.8	3.7	3.35
	대전	(1)					100.0			100.0		1.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경기	(15)		46.7	26.7	26.7		46.7	26.7	26.7		3.20
	강원	(5)	20.0	60.0		20.0		80.0		20.0		3.8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50.0	50.0			50.0	50.0			3.50
	전북	(4)		75.0	25.0			75.0	25.0			3.75
	전남	(7)	28.6	42.9	14.3	14.3		71.4	14.3	14.3		3.86
	경북	(3)		66.7	33.3			66.7	33.3			3.67
경남	(38)	2.6	60.5	21.1	10.5	2.6	63.2	21.1	13.2	2.6	3.51	
성별	남성	(33)	3.0	57.6	27.3	9.1	3.0	60.6	27.3	12.1		3.48
	여성	(126)	4.0	45.2	27.0	15.1	2.4	49.2	27.0	17.5	6.3	3.36
연령별	30대	(31)	3.2	48.4	22.6	12.9	3.2	51.6	22.6	16.1	9.7	3.39
	40대	(75)	1.3	41.3	32.0	21.3		42.7	32.0	21.3	4.0	3.24
	50대	(43)	7.0	58.1	18.6	4.7	7.0	65.1	18.6	11.6	4.7	3.56
	60대	(8)	12.5	50.0	37.5			62.5	37.5			3.75
직급	6급	(12)		50.0	33.3		8.3	50.0	33.3	8.3	8.3	3.36
	7급	(63)	6.3	50.8	22.2	14.3	3.2	57.1	22.2	17.5	3.2	3.44
	8급	(55)		43.6	34.5	16.4		43.6	34.5	16.4	5.5	3.29
	9급	(18)	11.1	50.0	22.2	5.6		61.1	22.2	5.6	11.1	3.75
직렬	행정	(18)		50.0	27.8	11.1		50.0	27.8	11.1	11.1	3.44
	사회복지	(135)	3.7	47.4	26.7	14.8	3.0	51.1	26.7	17.8	4.4	3.36
	보건	(6)	16.7	50.0	33.3			66.7	33.3			3.83
근속연수	1년 이하	(6)		66.7	33.3			66.7	33.3			3.67
	1년~3년 이하	(14)	14.3	35.7	21.4	21.4		50.0	21.4	21.4	7.1	3.46
	3년~5년 이하	(28)		46.4	32.1	7.1		46.4	32.1	7.1	14.3	3.46
	5년~7년 이하	(32)		43.8	25.0	28.1		43.8	25.0	28.1	3.1	3.16
	7년 이상	(26)		46.2	30.8	23.1		46.2	30.8	23.1		3.23
무응답(응답거부)	(44)	9.1	52.3	25.0	2.3	6.8	61.4	25.0	9.1	4.5	3.5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81.3	6.3	12.5		81.3	6.3	12.5		3.69
	3~6개월 미만	(6)		33.3	33.3	16.7	16.7	33.3	33.3	33.3		2.83
	6~12개월 미만	(22)	13.6	50.0	13.6	18.2		63.6	13.6	18.2	4.5	3.62
	1년~2년 미만	(27)	3.7	48.1	29.6	11.1		51.9	29.6	11.1	7.4	3.48
2년 이상	(87)	2.3	42.5	33.3	13.8	3.4	44.8	33.3	17.2	4.6	3.28	

【Q13_3_3】 [의료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3.1	42.1	27.7	10.1	3.1	45.3	27.7	13.2	13.8	3.3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33.3	29.2	14.6	4.2	35.4	29.2	18.8	16.7	3.18
	6대 광역시	(38)	2.6	34.2	34.2	10.5	5.3	36.8	34.2	15.8	13.2	3.21
	중소도시	(44)	2.3	54.5	18.2	6.8	2.3	56.8	18.2	9.1	15.9	3.57
	기타 농어촌	(29)	6.9	48.3	31.0	6.9		55.2	31.0	6.9	6.9	3.59
지역	서울	(33)	3.0	33.3	30.3	18.2	3.0	36.4	30.3	21.2	12.1	3.17
	부산	(5)		60.0	40.0			60.0	40.0			3.60
	대구	(6)		33.3	50.0			33.3	50.0		16.7	3.40
	인천	(3)		66.7				66.7			33.3	4.00
	광주	(27)	3.7	44.4	22.2	14.8	3.7	48.1	22.2	18.5	11.1	3.33
	대전	(1)			100.0				100.0			3.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67
	경기	(15)		33.3	26.7	6.7	6.7	33.3	26.7	13.3	26.7	3.18
	강원	(5)		60.0	20.0			60.0	20.0		20.0	3.75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50.0	50.0			50.0	50.0			3.50
	전북	(4)		75.0				75.0			25.0	4.00
	전남	(7)	28.6	28.6	28.6			57.1	28.6		14.3	4.00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경남	(38)	2.6	44.7	26.3	10.5	2.6	47.4	26.3	13.2	13.2	3.39	
성별	남성	(33)		45.5	30.3	9.1	3.0	45.5	30.3	12.1	12.1	3.34
	여성	(126)	4.0	41.3	27.0	10.3	3.2	45.2	27.0	13.5	14.3	3.38
연령별	30대	(31)		41.9	32.3	9.7		41.9	32.3	9.7	16.1	3.38
	40대	(75)	2.7	32.0	36.0	16.0		34.7	36.0	16.0	13.3	3.25
	50대	(43)	4.7	58.1	7.0	2.3	11.6	62.8	7.0	14.0	16.3	3.50
	60대	(8)	12.5	50.0	37.5			62.5	37.5			3.75
직급	6급	(12)		50.0	8.3	8.3	16.7	50.0	8.3	25.0	16.7	3.10
	7급	(63)	4.8	47.6	22.2	9.5	4.8	52.4	22.2	14.3	11.1	3.43
	8급	(55)	1.8	36.4	38.2	10.9		38.2	38.2	10.9	12.7	3.33
	9급	(18)	5.6	38.9	16.7	5.6		44.4	16.7	5.6	33.3	3.67
직렬	행정	(18)		38.9	22.2	5.6		38.9	22.2	5.6	33.3	3.50
	사회복지	(135)	3.0	42.2	28.1	11.1	3.7	45.2	28.1	14.8	11.9	3.34
	보건	(6)	16.7	50.0	33.3			66.7	33.3			3.83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50.0			33.3	50.0		16.7	3.40
	1년~3년 이하	(14)	7.1	42.9	14.3	14.3		50.0	14.3	14.3	21.4	3.55
	3년~5년 이하	(28)		32.1	42.9	3.6		32.1	42.9	3.6	21.4	3.36
	5년~7년 이하	(32)	3.1	31.3	34.4	18.8		34.4	34.4	18.8	12.5	3.21
	7년 이상	(26)		50.0	26.9	15.4	3.8	50.0	26.9	19.2	3.8	3.28
	무응답(응답거부)	(44)	6.8	50.0	13.6	4.5	9.1	56.8	13.6	13.6	15.9	3.49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8.8	18.8	6.3		68.8	18.8	6.3	6.3	3.67
	3~6개월 미만	(6)		50.0	16.7		16.7	50.0	16.7	16.7	16.7	3.20
	6~12개월 미만	(22)	9.1	50.0	18.2	9.1		59.1	18.2	9.1	13.6	3.68
	1년~2년 미만	(27)	3.7	44.4	22.2	3.7		48.1	22.2	3.7	25.9	3.65
2년 이상	(87)	2.3	34.5	34.5	13.8	4.6	36.8	34.5	18.4	10.3	3.18	

【Q13_4_1】 [교육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14.5	44.7	21.4	3.8	0.6	59.1	21.4	4.4	15.1	3.8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6.7	25.0	29.2	6.3	2.1	41.7	29.2	8.3	20.8	3.61
	6대 광역시	(38)	13.2	55.3	15.8	2.6		68.4	15.8	2.6	13.2	3.91
	중소도시	(44)	15.9	45.5	20.5	2.3		61.4	20.5	2.3	15.9	3.89
	기타 농어촌	(29)	10.3	62.1	17.2	3.4		72.4	17.2	3.4	6.9	3.85
지역	서울	(33)	18.2	33.3	21.2	9.1	3.0	51.5	21.2	12.1	15.2	3.64
	부산	(5)		80.0	20.0			80.0	20.0			3.80
	대구	(6)	16.7	50.0	16.7			66.7	16.7		16.7	4.00
	인천	(3)	33.3	33.3				66.7			33.3	4.50
	광주	(27)	7.4	63.0	11.1	7.4		70.4	11.1	7.4	11.1	3.79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13.3	6.7	46.7			20.0	46.7		33.3	3.50
	강원	(5)		60.0		20.0		60.0		20.0	20.0	3.5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33.3	33.3	33.3			66.7	33.3			4.00
	전북	(4)		75.0				75.0			25.0	4.00
	전남	(7)	14.3	28.6	42.9			42.9	42.9		14.3	3.67
경북	(3)		66.7				66.7			33.3	4.00	
경남	(38)	18.4	50.0	21.1			68.4	21.1		10.5	3.97	
성별	남성	(33)	24.2	30.3	27.3	6.1		54.5	27.3	6.1	12.1	3.83
	여성	(126)	11.9	48.4	19.8	3.2	0.8	60.3	19.8	4.0	15.9	3.80
연령별	30대	(31)	6.5	58.1	16.1	3.2	3.2	64.5	16.1	6.5	12.9	3.70
	40대	(75)	13.3	44.0	24.0	4.0		57.3	24.0	4.0	14.7	3.78
	50대	(43)	20.9	34.9	20.9	4.7		55.8	20.9	4.7	18.6	3.89
	60대	(8)	12.5	62.5	12.5			75.0	12.5		12.5	4.00
직급	6급	(12)	33.3	25.0	8.3	16.7		58.3	8.3	16.7	16.7	3.90
	7급	(63)	17.5	41.3	23.8	3.2		58.7	23.8	3.2	14.3	3.85
	8급	(55)	9.1	52.7	20.0	1.8	1.8	61.8	20.0	3.6	14.5	3.77
	9급	(18)	11.1	44.4	11.1	5.6		55.6	11.1	5.6	27.8	3.85
직렬	행정	(18)		44.4	22.2			44.4	22.2		33.3	3.67
	사회복지	(135)	16.3	45.2	20.7	4.4	0.7	61.5	20.7	5.2	12.6	3.82
	보건	(6)	16.7	33.3	33.3			50.0	33.3		16.7	3.8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50.0	16.7			66.7	16.7		16.7	4.00
	1년~3년 이하	(14)	7.1	35.7	28.6		7.1	42.9	28.6	7.1	21.4	3.45
	3년~5년 이하	(28)	7.1	46.4	25.0	3.6		53.6	25.0	3.6	17.9	3.70
	5년~7년 이하	(32)	15.6	46.9	21.9	3.1		62.5	21.9	3.1	12.5	3.86
	7년 이상	(26)	15.4	42.3	23.1	7.7		57.7	23.1	7.7	11.5	3.74
	무응답(응답거부)	(44)	20.5	40.9	15.9	4.5		61.4	15.9	4.5	18.2	3.94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56.3	25.0			62.5	25.0		12.5	3.79
	3~6개월 미만	(6)	16.7	33.3	16.7	16.7		50.0	16.7	16.7	16.7	3.60
	6~12개월 미만	(22)	13.6	40.9	18.2	4.5		54.5	18.2	4.5	22.7	3.82
	1년~2년 미만	(27)	11.1	37.0	22.2		3.7	48.1	22.2	3.7	25.9	3.70
2년 이상	(87)	17.2	47.1	21.8	4.6		64.4	21.8	4.6	9.2	3.85	

【Q13_4_2】 [교육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 체	(159)	14.5	47.2	24.5	5.0	0.6	61.6	24.5	5.0	8.2	3.7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6.7	27.1	35.4	6.3	2.1	43.8	35.4	6.3	12.5	3.63
	6대 광역시	(38)	13.2	55.3	13.2	10.5		68.4	13.2	10.5	7.9	3.77
	중소도시	(44)	18.2	52.3	20.5	2.3		70.5	20.5	2.3	6.8	3.93
	기타 농어촌	(29)	6.9	62.1	27.6			69.0	27.6		3.4	3.79
지역	서울	(33)	18.2	33.3	24.2	9.1		51.5	24.2	9.1	15.2	3.71
	부산	(5)		60.0		40.0		60.0		40.0		3.20
	대구	(6)	16.7	66.7				83.3			16.7	4.20
	인천	(3)		66.7	33.3			66.7	33.3			3.67
	광주	(27)	11.1	59.3	18.5	7.4		70.4	18.5	7.4	3.7	3.77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25.0	25.0			50.0	25.0		25.0	4.00
	경기	(15)	13.3	13.3	60.0		6.7	26.7	60.0		6.7	3.46
	강원	(5)		80.0	20.0			80.0	20.0			3.8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16.7	33.3	50.0			50.0	50.0			3.67
	전북	(4)		100.0				100.0				4.00
	전남	(7)	14.3	57.1	28.6			71.4	28.6			3.86
성별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50
	경남	(38)	21.1	47.4	21.1	2.6		68.4	21.1	2.6	7.9	3.94
연령별	남성	(33)	27.3	21.2	42.4	3.0		48.5	42.4	3.0	6.1	3.77
	여성	(126)	11.1	54.0	19.8	5.6	0.8	65.1	19.8	5.6	8.7	3.78
직급	30대	(31)	6.5	58.1	16.1	3.2		64.5	16.1	3.2	16.1	3.81
	40대	(75)	12.0	48.0	28.0	6.7	1.3	60.0	28.0	6.7	4.0	3.69
	50대	(43)	23.3	39.5	23.3	4.7		62.8	23.3	4.7	9.3	3.90
	60대	(8)	12.5	50.0	25.0			62.5	25.0		12.5	3.86
직렬	6급	(12)	33.3	25.0	25.0	8.3		58.3	25.0	8.3	8.3	3.91
	7급	(63)	17.5	44.4	27.0	3.2		61.9	27.0	3.2	7.9	3.83
	8급	(55)	9.1	56.4	20.0	7.3		65.5	20.0	7.3	7.3	3.73
	9급	(18)	11.1	44.4	16.7	5.6	5.6	55.6	16.7	5.6	16.7	3.79
근속연수	행정	(18)	11.1	44.4	33.3			55.6	33.3		11.1	3.75
	사회복지	(135)	15.6	48.1	22.2	5.9	0.7	63.7	22.2	5.9	7.4	3.80
	보건	(6)		33.3	50.0			33.3	50.0		16.7	3.40
담당기간	1년 이하	(6)	16.7	33.3	33.3		16.7	50.0	33.3			3.80
	1년~3년 이하	(14)	7.1	50.0	35.7			57.1	35.7		7.1	3.69
	3년~5년 이하	(28)	7.1	39.3	21.4	10.7		46.4	21.4	10.7	21.4	3.55
	5년~7년 이하	(32)	12.5	56.3	21.9	6.3		68.8	21.9	6.3	3.1	3.77
	7년 이상	(26)	19.2	53.8	19.2	3.8		73.1	19.2	3.8	3.8	3.92
	무응답(응답거부)	(44)	20.5	38.6	27.3	4.5		59.1	27.3	4.5	9.1	3.8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62.5	25.0			68.8	25.0		6.3	3.80
	3~6개월 미만	(6)	16.7	50.0	16.7	16.7		66.7	16.7	16.7		3.67
	6~12개월 미만	(22)	13.6	40.9	27.3	4.5	4.5	54.5	27.3	4.5	9.1	3.74
	1년~2년 미만	(27)	7.4	51.9	29.6	3.7		59.3	29.6	3.7	7.4	3.68
	2년 이상	(87)	18.4	44.8	23.0	5.7		63.2	23.0	5.7	8.0	3.83

【Q13_4_3】 [교육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 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13.2	44.0	21.4	5.7	57.2	21.4	5.7	15.7	3.7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6.7	27.1	27.1	8.3	43.8	27.1	8.3	20.8	3.66
	6대 광역시	(38)	13.2	55.3	13.2	5.3	68.4	13.2	5.3	13.2	3.88
	중소도시	(44)	15.9	40.9	22.7	4.5	56.8	22.7	4.5	15.9	3.81
	기타 농어촌	(29)	3.4	62.1	20.7	3.4	65.5	20.7	3.4	10.3	3.73
지역	서울	(33)	18.2	33.3	24.2	9.1	51.5	24.2	9.1	15.2	3.71
	부산	(5)		80.0		20.0	80.0		20.0		3.60
	대구	(6)	16.7	50.0	16.7		66.7	16.7		16.7	4.00
	인천	(3)		66.7			66.7			33.3	4.00
	광주	(27)	7.4	63.0	14.8	3.7	70.4	14.8	3.7	11.1	3.83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50.0		25.0		50.0	25.0		25.0	4.33
	경기	(15)	13.3	13.3	33.3	6.7	26.7	33.3	6.7	33.3	3.50
	강원	(5)		60.0	20.0		60.0	20.0		20.0	3.75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16.7	50.0	33.3		66.7	33.3			3.83
	전북	(4)		75.0			75.0			25.0	4.00
	전남	(7)	14.3	42.9	28.6		57.1	28.6		14.3	3.83
	경북	(3)		33.3	66.7		33.3	66.7			3.33
경남	(38)	15.8	39.5	21.1	7.9	55.3	21.1	7.9	15.8	3.75	
성별	남성	(33)	24.2	21.2	36.4	3.0	45.5	36.4	3.0	15.2	3.79
	여성	(126)	10.3	50.0	17.5	6.3	60.3	17.5	6.3	15.9	3.76
연령별	30대	(31)	6.5	58.1	12.9	3.2	64.5	12.9	3.2	19.4	3.84
	40대	(75)	10.7	37.3	28.0	10.7	48.0	28.0	10.7	13.3	3.55
	50대	(43)	20.9	44.2	14.0		65.1	14.0		20.9	4.09
	60대	(8)	12.5	62.5	25.0		75.0	25.0			3.88
직급	6급	(12)	33.3	41.7	8.3		75.0	8.3		16.7	4.30
	7급	(63)	15.9	41.3	25.4	3.2	57.1	25.4	3.2	14.3	3.81
	8급	(55)	7.3	47.3	20.0	10.9	54.5	20.0	10.9	14.5	3.60
	9급	(18)	11.1	38.9	11.1	5.6	50.0	11.1	5.6	33.3	3.83
직렬	행정	(18)	5.6	33.3	27.8		38.9	27.8		33.3	3.67
	사회복지	(135)	14.8	45.2	19.3	6.7	60.0	19.3	6.7	14.1	3.79
	보건	(6)		50.0	50.0		50.0	50.0			3.5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33.3	33.3		50.0	33.3		16.7	3.80
	1년~3년 이하	(14)	7.1	50.0	21.4		57.1	21.4		21.4	3.82
	3년~5년 이하	(28)	7.1	35.7	17.9	14.3	42.9	17.9	14.3	25.0	3.48
	5년~7년 이하	(32)	9.4	40.6	25.0	12.5	50.0	25.0	12.5	12.5	3.54
	7년 이상	(26)	19.2	46.2	23.1	3.8	65.4	23.1	3.8	7.7	3.88
	무응답(응답거부)	(44)	18.2	45.5	18.2		63.6	18.2		18.2	4.00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62.5	25.0		68.8	25.0		6.3	3.80
	3~6개월 미만	(6)		66.7	16.7		66.7	16.7		16.7	3.80
	6~12개월 미만	(22)	13.6	40.9	18.2	9.1	54.5	18.2	9.1	18.2	3.72
	1년~2년 미만	(27)	7.4	44.4	22.2		51.9	22.2		25.9	3.80
	2년 이상	(87)	17.2	40.2	21.8	8.0	57.5	21.8	8.0	12.6	3.76

【Q13_5_1】 [자활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점 Mean)	
☐ 전 체 ☐	(159)	5.7	30.8	32.1	6.9	3.1	1.9	36.5	32.1	10.1	19.5	3.3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3	27.1	27.1	8.3	8.3	4.2	33.3	27.1	16.7	18.8	3.19
	6대 광역시	(38)	7.9	36.8	26.3	7.9	2.6		44.7	26.3	10.5	18.4	3.48
	중소도시	(44)	2.3	34.1	31.8	9.1			36.4	31.8	9.1	22.7	3.38
	기타 농어촌	(29)	6.9	24.1	48.3			3.4	31.0	48.3		17.2	3.48
지역	서울	(33)	6.1	36.4	15.2	9.1	12.1	6.1	42.4	15.2	21.2	15.2	3.19
	부산	(5)		40.0	20.0		20.0		40.0	20.0	20.0	20.0	3.00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16.7	3.00
	인천	(3)	33.3	33.3					66.7			33.3	4.50
	광주	(27)	3.7	51.9	18.5	11.1			55.6	18.5	11.1	14.8	3.57
	대전	(1)			100.0					100.0			3.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6.7	6.7	53.3	6.7			13.3	53.3	6.7	26.7	3.18
	강원	(5)		20.0	20.0				20.0	20.0		60.0	3.50
	충북	(2)		50.0				50.0	50.0				4.00
	충남	(6)	16.7	33.3	50.0				50.0	50.0			3.67
	전북	(4)			50.0					50.0		50.0	3.00
	전남	(7)	14.3	28.6	42.9				42.9	42.9		14.3	3.67
경북	(3)			33.3					33.3		66.7	3.00	
경남	(38)	2.6	31.6	42.1	7.9			34.2	42.1	7.9	15.8	3.34	
성별	남성	(33)	6.1	36.4	21.2	15.2	6.1		42.4	21.2	21.2	15.2	3.25
	여성	(126)	5.6	29.4	34.9	4.8	2.4	2.4	34.9	34.9	7.1	20.6	3.40
연령별	30대	(31)	3.2	38.7	29.0	3.2	3.2		41.9	29.0	6.5	22.6	3.46
	40대	(75)	6.7	26.7	33.3	8.0	4.0	1.3	33.3	33.3	12.0	20.0	3.31
	50대	(43)	4.7	25.6	34.9	9.3	2.3	4.7	30.2	34.9	11.6	18.6	3.27
	60대	(8)	12.5	50.0	25.0				62.5	25.0		12.5	3.86
직급	6급	(12)	8.3	16.7	50.0	8.3			25.0	50.0	8.3	16.7	3.30
	7급	(63)	9.5	27.0	30.2	7.9	4.8	3.2	36.5	30.2	12.7	17.5	3.36
	8급	(55)	3.6	32.7	30.9	7.3	3.6	1.8	36.4	30.9	10.9	20.0	3.33
	9급	(18)		33.3	22.2	5.6			33.3	22.2	5.6	38.9	3.45
직렬	행정	(18)		27.8	22.2			5.6	27.8	22.2		44.4	3.56
	사회복지	(135)	6.7	31.9	31.9	8.1	3.7	1.5	38.5	31.9	11.9	16.3	3.36
	보건	(6)		16.7	66.7				16.7	66.7		16.7	3.2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66.7				16.7	66.7		16.7	3.20
	1년~3년 이하	(14)		35.7	28.6		7.1		35.7	28.6	7.1	28.6	3.30
	3년~5년 이하	(28)	3.6	25.0	32.1	10.7			28.6	32.1	10.7	28.6	3.30
	5년~7년 이하	(32)	9.4	37.5	25.0	3.1	3.1		46.9	25.0	6.3	21.9	3.60
	7년 이상	(26)	7.7	19.2	34.6	19.2	7.7	7.7	26.9	34.6	26.9	3.8	3.00
	무응답(응답거부)	(44)	6.8	27.3	34.1	4.5	2.3	2.3	34.1	34.1	6.8	22.7	3.4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56.3	25.0		6.3		56.3	25.0	6.3	12.5	3.50
	3~6개월 미만	(6)	16.7	16.7	33.3				33.3	33.3		33.3	3.75
	6~12개월 미만	(22)	9.1	18.2	27.3	4.5	4.5	9.1	27.3	27.3	9.1	27.3	3.36
	1년~2년 미만	(27)		14.8	40.7	7.4			14.8	40.7	7.4	37.0	3.12
	2년 이상	(87)	6.9	35.6	32.2	9.2	3.4	1.1	42.5	32.2	12.6	11.5	3.38

【Q13_5_2】 [자활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3.1	30.2	32.1	15.1	3.8	3.1	33.3	32.1	18.9	12.6	3.1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2	20.8	27.1	16.7	8.3	8.3	25.0	27.1	14.6	2.95
	6대 광역시	(38)	2.6	42.1	28.9	7.9	2.6		44.7	28.9	15.8	3.41
	중소도시	(44)	2.3	36.4	36.4	13.6	2.3		38.6	36.4	9.1	3.25
	기타 농어촌	(29)	3.4	20.7	37.9	24.1		3.4	24.1	37.9	10.3	3.04
지역	서울	(33)	3.0	24.2	21.2	18.2	12.1	6.1	27.3	21.2	15.2	2.85
	부산	(5)		20.0	40.0		20.0		20.0	40.0	20.0	2.75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3.00
	인천	(3)		66.7					66.7		33.3	4.00
	광주	(27)		51.9	25.9	14.8			51.9	25.9	14.8	3.40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25.0	25.0				50.0	25.0	25.0	4.00
	경기	(15)	6.7	13.3	40.0	13.3		13.3	20.0	40.0	13.3	3.18
	강원	(5)		40.0		20.0			40.0		20.0	3.33
	충북	(2)		50.0				50.0	50.0			4.00
	충남	(6)	16.7	33.3	50.0				50.0	50.0		3.67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3.33
	전남	(7)	14.3	14.3	42.9	28.6			28.6	42.9	28.6	3.14
	성별	경북	(3)			33.3					33.3	66.7
경남		(38)		28.9	42.1	21.1	2.6		28.9	42.1	23.7	3.03
성별	남성	(33)	6.1	27.3	27.3	24.2	9.1		33.3	27.3	6.1	2.97
	여성	(126)	2.4	31.0	33.3	12.7	2.4	4.0	33.3	33.3	15.1	3.22
연령별	30대	(31)	3.2	45.2	19.4	12.9		3.2	48.4	19.4	16.1	3.48
	40대	(75)	2.7	21.3	36.0	18.7	4.0	2.7	24.0	36.0	22.7	3.00
	50대	(43)	2.3	27.9	37.2	14.0	7.0	4.7	30.2	37.2	20.9	3.05
	60대	(8)	12.5	50.0	25.0				62.5	25.0	12.5	3.86
직급	6급	(12)	8.3	25.0	33.3	25.0			33.3	33.3	25.0	3.18
	7급	(63)	4.8	27.0	34.9	12.7	7.9	3.2	31.7	34.9	9.5	3.09
	8급	(55)	1.8	29.1	34.5	14.5	1.8	1.8	30.9	34.5	16.4	3.18
	9급	(18)		22.2	27.8	22.2		5.6	22.2	27.8	22.2	3.00
직렬	행정	(18)		38.9	16.7	5.6		11.1	38.9	16.7	5.6	3.55
	사회복지	(135)	3.7	29.6	33.3	17.0	4.4	2.2	33.3	33.3	9.6	3.13
	보건	(6)		16.7	50.0				16.7	50.0	33.3	3.25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33.3		16.7		50.0	33.3	2.60
	1년~3년 이하	(14)		35.7	14.3	21.4		7.1	35.7	14.3	21.4	3.20
	3년~5년 이하	(28)	3.6	25.0	42.9	7.1			28.6	42.9	7.1	3.32
	5년~7년 이하	(32)	3.1	28.1	28.1	18.8	3.1		31.3	28.1	21.9	3.12
	7년 이상	(26)	3.8	19.2	30.8	30.8	7.7	7.7	23.1	30.8	38.5	2.79
	무응답(응답거부)	(44)	4.5	31.8	36.4	6.8	6.8	2.3	36.4	36.4	13.6	3.24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18.8	6.3	6.3		62.5	18.8	6.3	3.47
	3~6개월 미만	(6)			50.0	16.7				50.0	16.7	3.33
	6~12개월 미만	(22)	9.1	9.1	31.8	18.2		13.6	18.2	31.8	18.2	3.13
	1년~2년 미만	(27)		25.9	29.6	11.1	3.7	3.7	25.9	29.6	14.8	3.11
2년 이상	(87)	3.4	33.3	34.5	17.2	4.6	1.1	36.8	34.5	21.8	3.15	

【Q13_5_3】 [자활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3.8	28.9	31.4	9.4	3.1	2.5	32.7	31.4	12.6	20.8	3.2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6.3	27.1	20.8	10.4	8.3	6.3	33.3	20.8	18.8	3.17
	6대 광역시	(38)	2.6	36.8	28.9	7.9	2.6		39.5	28.9	10.5	3.37
	중소도시	(44)	2.3	31.8	34.1	11.4			34.1	34.1	11.4	3.31
	기타 농어촌	(29)	3.4	17.2	48.3	6.9		3.4	20.7	48.3	6.9	3.23
지역	서울	(33)	6.1	33.3	15.2	12.1	12.1	6.1	39.4	15.2	24.2	3.12
	부산	(5)		20.0	40.0		20.0		20.0	40.0	20.0	2.75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3.00
	인천	(3)		33.3					33.3			4.00
	광주	(27)		48.1	22.2	14.8			48.1	22.2	14.8	3.39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25.0	25.0				50.0	25.0		4.00
	경기	(15)	6.7	13.3	33.3	6.7		6.7	20.0	33.3	6.7	3.33
	강원	(5)		20.0	20.0				20.0	20.0		3.50
	충북	(2)		50.0				50.0	50.0			4.00
	충남	(6)	16.7	33.3	50.0				50.0	50.0		3.67
	전북	(4)			50.0					50.0		3.00
	전남	(7)	14.3	14.3	42.9				28.6	42.9		3.60
	경북	(3)			66.7					66.7		3.00
경남	(38)		26.3	44.7	13.2			26.3	44.7	13.2	3.16	
성별	남성	(33)	6.1	24.2	33.3	15.2	6.1		30.3	33.3	21.2	3.11
	여성	(126)	3.2	30.2	31.0	7.9	2.4	3.2	33.3	31.0	10.3	3.32
연령별	30대	(31)	3.2	45.2	16.1	6.5	3.2	3.2	48.4	16.1	9.7	3.52
	40대	(75)	4.0	17.3	40.0	10.7	4.0	1.3	21.3	40.0	14.7	3.09
	50대	(43)	2.3	30.2	27.9	11.6	2.3	4.7	32.6	27.9	14.0	3.25
	60대	(8)	12.5	50.0	37.5				62.5	37.5		3.75
직급	6급	(12)	8.3	16.7	41.7	16.7			25.0	41.7	16.7	3.20
	7급	(63)	6.3	25.4	33.3	9.5	4.8	3.2	31.7	33.3	14.3	3.24
	8급	(55)	1.8	25.5	34.5	9.1	3.6	1.8	27.3	34.5	12.7	3.17
	9급	(18)		27.8	22.2	11.1			27.8	22.2	11.1	3.27
직렬	행정	(18)		33.3	11.1			11.1	33.3	11.1		3.75
	사회복지	(135)	4.4	28.9	32.6	11.1	3.7	1.5	33.3	32.6	14.8	3.24
	보건	(6)		16.7	66.7				16.7	66.7		3.2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50.0	16.7			16.7	50.0	16.7	3.00
	1년~3년 이하	(14)		42.9	14.3		7.1	7.1	42.9	14.3	7.1	3.44
	3년~5년 이하	(28)	3.6	21.4	39.3	7.1			25.0	39.3	7.1	3.30
	5년~7년 이하	(32)	6.3	21.9	31.3	9.4	3.1		28.1	31.3	12.5	3.26
	7년 이상	(26)	3.8	23.1	30.8	23.1	7.7	7.7	26.9	30.8	30.8	2.91
	무응답(응답거부)	(44)	4.5	27.3	34.1	6.8	2.3	2.3	31.8	34.1	9.1	3.3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56.3	31.3		6.3		56.3	31.3	6.3	3.47
	3~6개월 미만	(6)			50.0					50.0		3.00
	6~12개월 미만	(22)	9.1	13.6	27.3	4.5	4.5	9.1	22.7	27.3	9.1	3.18
	1년~2년 미만	(27)		14.8	29.6	11.1		3.7	14.8	29.6	11.1	3.07
	2년 이상	(87)	4.6	34.5	32.2	12.6	3.4	1.1	39.1	32.2	11.5	3.28

【Q13_6_1】 [그 외 급여] 수급방법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4.4	24.5	37.1	3.1	0.6	0.6	28.9	37.1	3.8	29.6	3.4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4.2	14.6	37.5	6.3	2.1	2.1	18.8	37.5	8.3	33.3	3.19
	6대 광역시	(38)	7.9	26.3	42.1				34.2	42.1		23.7	3.55
	중소도시	(44)		34.1	27.3	2.3			34.1	27.3	2.3	36.4	3.50
	기타 농어촌	(29)	6.9	24.1	44.8	3.4			31.0	44.8	3.4	20.7	3.43
지역	서울	(33)	6.1	12.1	33.3	9.1	3.0	3.0	18.2	33.3	12.1	33.3	3.14
	부산	(5)		60.0					60.0			40.0	4.00
	대구	(6)		16.7	83.3				16.7	83.3			3.17
	인천	(3)	33.3		33.3				33.3	33.3		33.3	4.00
	광주	(27)	3.7	29.6	33.3				33.3	33.3		33.3	3.56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20.0	46.7				20.0	46.7		33.3	3.30
	강원	(5)	20.0	40.0	20.0				60.0	20.0		20.0	4.0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33.3				66.7	33.3			3.67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3.33
	전남	(7)	14.3	14.3	42.9				28.6	42.9		28.6	3.60
	경북	(3)			33.3					33.3		66.7	3.00
경남	(38)		23.7	39.5	5.3			23.7	39.5	5.3	31.6	3.27	
성별	남성	(33)	3.0	21.2	39.4	6.1	3.0		24.2	39.4	9.1	27.3	3.21
	여성	(126)	4.8	25.4	36.5	2.4		0.8	30.2	36.5	2.4	30.2	3.47
연령별	30대	(31)	3.2	38.7	25.8	6.5			41.9	25.8	6.5	25.8	3.52
	40대	(75)	4.0	24.0	42.7	1.3	1.3		28.0	42.7	2.7	26.7	3.38
	50대	(43)	4.7	20.9	32.6	4.7		2.3	25.6	32.6	4.7	34.9	3.41
	60대	(8)	12.5		50.0				12.5	50.0		37.5	3.40
직급	6급	(12)	8.3	8.3	25.0	8.3			16.7	25.0	8.3	50.0	3.33
	7급	(63)	4.8	23.8	38.1	3.2		1.6	28.6	38.1	3.2	28.6	3.43
	8급	(55)	1.8	29.1	40.0	1.8	1.8		30.9	40.0	3.6	25.5	3.37
	9급	(18)	11.1	16.7	27.8	5.6			27.8	27.8	5.6	38.9	3.55
직렬	행정	(18)		22.2	16.7			5.6	22.2	16.7		55.6	3.57
	사회복지	(135)	5.2	25.2	38.5	3.7	0.7		30.4	38.5	4.4	26.7	3.41
	보건	(6)		16.7	66.7				16.7	66.7		16.7	3.2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66.7				16.7	66.7		16.7	3.20
	1년~3년 이하	(14)	14.3	14.3	28.6	7.1			28.6	28.6	7.1	35.7	3.56
	3년~5년 이하	(28)		25.0	39.3	3.6			25.0	39.3	3.6	32.1	3.32
	5년~7년 이하	(32)	3.1	37.5	34.4		3.1		40.6	34.4	3.1	21.9	3.48
	7년 이상	(26)	3.8	30.8	38.5	3.8			34.6	38.5	3.8	23.1	3.45
	무응답(응답거부)	(44)	6.8	11.4	36.4	4.5		2.3	18.2	36.4	4.5	38.6	3.35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56.3	12.5				56.3	12.5		31.3	3.82
	3~6개월 미만	(6)	16.7	16.7	33.3				33.3	33.3		33.3	3.75
	6~12개월 미만	(22)	13.6	22.7	36.4			4.5	36.4	36.4		22.7	3.69
	1년~2년 미만	(27)		18.5	33.3	3.7			18.5	33.3	3.7	44.4	3.27
2년 이상	(87)	3.4	21.8	42.5	4.6	1.1		25.3	42.5	5.7	26.4	3.30	

【Q13_6_2】 [그 외 급여] 지원금액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점 Mean)	
☐ 전 체 ☐	(159)	3.1	26.4	39.0	8.2	0.6	1.3	29.6	39.0	8.8	21.4	3.3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12.5	41.7	10.4	2.1	4.2	14.6	41.7	12.5	27.1	3.03
	6대 광역시	(38)	7.9	23.7	44.7	5.3			31.6	44.7	5.3	18.4	3.42
	중소도시	(44)		40.9	29.5	9.1			40.9	29.5	9.1	20.5	3.40
	기타 농어촌	(29)	3.4	31.0	41.4	6.9			34.5	41.4	6.9	17.2	3.38
지역	서울	(33)	3.0	9.1	36.4	12.1	3.0	3.0	12.1	36.4	15.2	33.3	2.95
	부산	(5)		60.0					60.0			40.0	4.00
	대구	(6)	16.7	16.7	66.7				33.3	66.7			3.50
	인천	(3)		66.7	33.3				66.7	33.3			3.67
	광주	(27)	3.7	22.2	40.7	7.4			25.9	40.7	7.4	25.9	3.30
	대전	(1)			100.0					100.0			3.00
	울산	(4)	25.0		50.0				25.0	50.0		25.0	3.67
	경기	(15)		20.0	53.3	6.7		6.7	20.0	53.3	6.7	13.3	3.17
	강원	(5)		80.0		20.0			80.0		20.0		3.6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33.3				66.7	33.3			3.67
	전북	(4)		50.0	50.0				50.0	50.0			3.50
	전남	(7)	14.3	28.6	42.9				42.9	42.9		14.3	3.67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50	
경남	(38)		23.7	39.5	13.2			23.7	39.5	13.2	23.7	3.14	
성별	남성	(33)	3.0	24.2	42.4	9.1	3.0		27.3	42.4	12.1	18.2	3.19
	여성	(126)	3.2	27.0	38.1	7.9		1.6	30.2	38.1	7.9	22.2	3.33
연령별	30대	(31)	3.2	38.7	25.8	9.7			41.9	25.8	9.7	22.6	3.46
	40대	(75)	1.3	22.7	44.0	10.7	1.3	1.3	24.0	44.0	12.0	18.7	3.15
	50대	(43)	4.7	27.9	37.2	4.7		2.3	32.6	37.2	4.7	23.3	3.44
	60대	(8)	12.5	12.5	50.0				25.0	50.0		25.0	3.50
직급	6급	(12)	8.3	16.7	25.0	8.3			25.0	25.0	8.3	41.7	3.43
	7급	(63)	3.2	27.0	38.1	11.1		1.6	30.2	38.1	11.1	19.0	3.28
	8급	(55)		30.9	41.8	5.5	1.8		30.9	41.8	7.3	20.0	3.27
	9급	(18)	11.1	22.2	33.3	5.6		5.6	33.3	33.3	5.6	22.2	3.54
직렬	행정	(18)		27.8	27.8			5.6	27.8	27.8		38.9	3.50
	사회복지	(135)	3.7	25.9	39.3	9.6	0.7	0.7	29.6	39.3	10.4	20.0	3.28
	보건	(6)		33.3	66.7				33.3	66.7			3.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50.0	16.7		16.7	16.7	50.0	16.7		3.00
	1년~3년 이하	(14)	7.1	21.4	35.7	7.1			28.6	35.7	7.1	28.6	3.40
	3년~5년 이하	(28)	3.6	25.0	39.3	3.6			28.6	39.3	3.6	28.6	3.40
	5년~7년 이하	(32)		40.6	34.4	9.4	3.1		40.6	34.4	12.5	12.5	3.29
	7년 이상	(26)		19.2	42.3	19.2			19.2	42.3	19.2	19.2	3.00
	무응답(응답거부)	(44)	6.8	25.0	36.4	4.5		2.3	31.8	36.4	4.5	25.0	3.4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2.5	18.8				62.5	18.8		18.8	3.77
	3~6개월 미만	(6)		33.3	50.0				33.3	50.0		16.7	3.40
	6~12개월 미만	(22)	9.1	22.7	27.3	18.2		9.1	31.8	27.3	18.2	13.6	3.29
	1년~2년 미만	(27)		25.9	37.0	3.7			25.9	37.0	3.7	33.3	3.33
	2년 이상	(87)	2.3	20.7	46.0	9.2	1.1		23.0	46.0	10.3	20.7	3.17

【Q13_6_3】 [그 외 급여] 지원기간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Mean)	
전체	(159)	3.8	23.9	37.7	3.8	0.6	0.6	27.7	37.7	4.4	29.6	3.3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1	14.6	39.6	6.3	2.1	2.1	16.7	39.6	8.3	33.3	3.13
	6대 광역시	(38)	5.3	28.9	39.5	2.6			34.2	39.5	2.6	23.7	3.48
	중소도시	(44)		31.8	29.5	2.3			31.8	29.5	2.3	36.4	3.46
	기타 농어촌	(29)	10.3	20.7	44.8	3.4			31.0	44.8	3.4	20.7	3.48
지역	서울	(33)	3.0	12.1	36.4	9.1	3.0	3.0	15.2	36.4	12.1	33.3	3.05
	부산	(5)		60.0					60.0			40.0	4.00
	대구	(6)		33.3	66.7				33.3	66.7			3.33
	인천	(3)		33.3	33.3				33.3	33.3		33.3	3.50
	광주	(27)	3.7	22.2	37.0	3.7			25.9	37.0	3.7	33.3	3.39
	대전	(1)		100.0					100.0				4.00
	울산	(4)	25.0	25.0	25.0				50.0	25.0		25.0	4.00
	경기	(15)		20.0	46.7				20.0	46.7		33.3	3.30
	강원	(5)	20.0	40.0	20.0				60.0	20.0		20.0	4.0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33.3				66.7	33.3			3.67
	전북	(4)		25.0	50.0				25.0	50.0		25.0	3.33
	전남	(7)	28.6		42.9				28.6	42.9		28.6	3.80
	경북	(3)			33.3					33.3		66.7	3.00
경남	(38)		21.1	42.1	5.3			21.1	42.1	5.3	31.6	3.23	
성별	남성	(33)	6.1	15.2	42.4	6.1	3.0		21.2	42.4	9.1	27.3	3.21
	여성	(126)	3.2	26.2	36.5	3.2		0.8	29.4	36.5	3.2	30.2	3.43
연령별	30대	(31)	3.2	41.9	22.6	6.5			45.2	22.6	6.5	25.8	3.57
	40대	(75)	2.7	20.0	46.7	2.7	1.3		22.7	46.7	4.0	26.7	3.27
	50대	(43)	4.7	23.3	30.2	4.7		2.3	27.9	30.2	4.7	34.9	3.44
	60대	(8)	12.5		50.0				12.5	50.0		37.5	3.40
직급	6급	(12)	8.3	8.3	25.0	8.3			16.7	25.0	8.3	50.0	3.33
	7급	(63)	3.2	23.8	39.7	3.2		1.6	27.0	39.7	3.2	28.6	3.39
	8급	(55)	1.8	25.5	41.8	3.6	1.8		27.3	41.8	5.5	25.5	3.29
	9급	(18)	11.1	22.2	22.2	5.6			33.3	22.2	5.6	38.9	3.64
직렬	행정	(18)		22.2	16.7			5.6	22.2	16.7		55.6	3.57
	사회복지	(135)	4.4	24.4	39.3	4.4	0.7		28.9	39.3	5.2	26.7	3.37
	보건	(6)		16.7	66.7				16.7	66.7		16.7	3.2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66.7				16.7	66.7		16.7	3.20
	1년~3년 이하	(14)	14.3	14.3	28.6	7.1			28.6	28.6	7.1	35.7	3.56
	3년~5년 이하	(28)		28.6	35.7	3.6			28.6	35.7	3.6	32.1	3.37
	5년~7년 이하	(32)	3.1	31.3	37.5	3.1	3.1		34.4	37.5	6.3	21.9	3.36
	7년 이상	(26)		30.8	42.3	3.8			30.8	42.3	3.8	23.1	3.35
	무응답(응답거부)	(44)	6.8	11.4	36.4	4.5		2.3	18.2	36.4	4.5	38.6	3.35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6.3	50.0	12.5				56.3	12.5		31.3	3.91
	3~6개월 미만	(6)		33.3	33.3				33.3	33.3		33.3	3.50
	6~12개월 미만	(22)	13.6	18.2	36.4	4.5		4.5	31.8	36.4	4.5	22.7	3.56
	1년~2년 미만	(27)		18.5	33.3	3.7			18.5	33.3	3.7	44.4	3.27
2년 이상	(87)	2.3	20.7	44.8	4.6	1.1		23.0	44.8	5.7	26.4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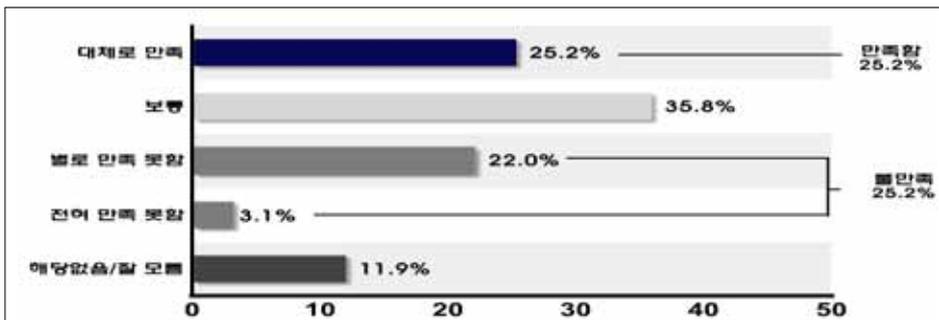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법 전반적 평가

일선 공무원들이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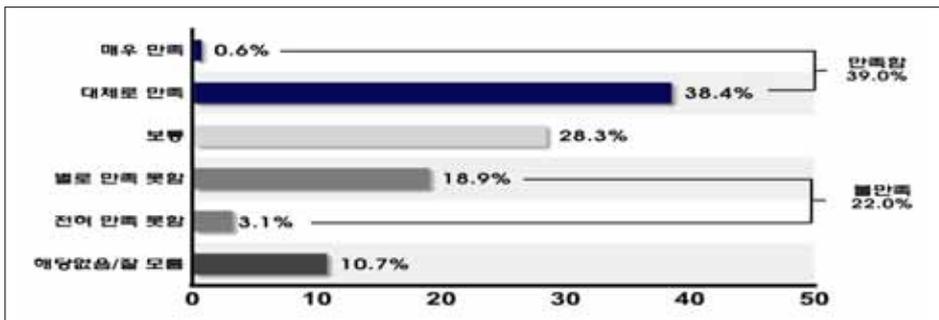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만족’ 25.2%, ‘불만족’ 25.2%로 대등한 가운데 ‘보통’이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나며, 5점 기준의 평점은 2.96점이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의 경우 ‘만족’ 39.0%, ‘불만족’ 22.0%로 긍정평가가 우세했으며, ‘보통’은 28.3%였다. 5점 기준의 평점은 3.16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평가



(Base: 전체 응답자 159명)

【Q14_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적 평가

단위:%	사례수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해당 없음/잘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균 Mean)	
☐ 전 체 ☐	(159)	25.2	35.8	22.0	3.1	1.9	25.2	35.8	25.2	11.9	2.9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16.7	41.7	20.8	6.3		16.7	41.7	27.1	14.6	2.80
	6대 광역시	(38)	13.2	31.6	34.2	2.6	2.6	13.2	31.6	36.8	15.8	2.68
	중소도시	(44)	36.4	34.1	18.2	2.3	4.5	36.4	34.1	20.5	4.5	3.15
	기타 농어촌	(29)	37.9	34.5	13.8			37.9	34.5	13.8	13.8	3.28
지역	서울	(33)	15.2	42.4	18.2	9.1		15.2	42.4	27.3	15.2	2.75
	부산	(5)		60.0					60.0		40.0	3.00
	대구	(6)		16.7	50.0		16.7		16.7	50.0	16.7	2.25
	인천	(3)		66.7					66.7		33.3	3.00
	광주	(27)	29.6	33.3	29.6			29.6	33.3	29.6	7.4	3.00
	대전	(1)				100.0				100.0		1.00
	울산	(4)		25.0	75.0				25.0	75.0		2.25
	경기	(15)	20.0	40.0	26.7			20.0	40.0	26.7	13.3	2.92
	강원	(5)		60.0					60.0		40.0	3.00
	충북	(2)	50.0	50.0				50.0	50.0			3.50
	충남	(6)	33.3	33.3			16.7	33.3	33.3		16.7	3.50
	전북	(4)	25.0		25.0			25.0		25.0	50.0	3.00
	전남	(7)	42.9	14.3	28.6			42.9	14.3	28.6	14.3	3.17
경북	(3)	33.3	33.3			33.3	33.3	33.3			3.50	
경남	(38)	42.1	34.2	21.1	2.6		42.1	34.2	23.7		3.16	
성별	남성	(33)	45.5	21.2	18.2	3.0	6.1	45.5	21.2	21.2	6.1	3.24
	여성	(126)	19.8	39.7	23.0	3.2	0.8	19.8	39.7	26.2	13.5	2.89
연령별	30대	(31)	29.0	35.5	16.1	6.5		29.0	35.5	22.6	12.9	3.00
	40대	(75)	17.3	34.7	29.3		4.0	17.3	34.7	29.3	14.7	2.85
	50대	(43)	34.9	37.2	18.6	2.3		34.9	37.2	20.9	7.0	3.13
	60대	(8)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14
직급	6급	(12)	16.7	58.3	8.3	8.3		16.7	58.3	16.7	8.3	2.91
	7급	(63)	34.9	30.2	22.2	1.6	4.8	34.9	30.2	23.8	6.3	3.11
	8급	(55)	20.0	38.2	25.5			20.0	38.2	25.5	16.4	2.93
	9급	(18)	16.7	38.9	16.7	5.6		16.7	38.9	22.2	22.2	2.86
직렬	행정	(18)	33.3	22.2	5.6	5.6	11.1	33.3	22.2	11.1	22.2	3.25
	사회복지	(135)	23.7	37.8	25.2	3.0	0.7	23.7	37.8	28.1	9.6	2.92
	보건	(6)	33.3	33.3				33.3	33.3		33.3	3.5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33.3	50.0			16.7	33.3	50.0		2.67
	1년~3년 이하	(14)	35.7	21.4	21.4			35.7	21.4	21.4	21.4	3.18
	3년~5년 이하	(28)	17.9	46.4	21.4	3.6		17.9	46.4	25.0	10.7	2.88
	5년~7년 이하	(32)	25.0	25.0	28.1		3.1	25.0	25.0	28.1	18.8	2.96
	7년 이상	(26)	23.1	38.5	19.2	3.8	3.8	23.1	38.5	23.1	11.5	2.95
	무응답(응답거부)	(44)	31.8	40.9	15.9	2.3	2.3	31.8	40.9	18.2	6.8	3.1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43.8	37.5	6.3		6.3	43.8	37.5	6.3	6.3	3.43
	3~6개월 미만	(6)			50.0					50.0	50.0	2.00
	6~12개월 미만	(22)	22.7	27.3	31.8		4.5	22.7	27.3	31.8	13.6	2.89
	1년~2년 미만	(27)	33.3	25.9	7.4		3.7	33.3	25.9	7.4	29.6	3.39
	2년 이상	(87)	21.8	43.7	25.3	5.7		21.8	43.7	31.0	3.4	2.85

【Q14_2】 긴급복지지원법 전반적 평가

단위:%	사례수	매우 만족하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 못하는 편이다	전혀 만족 못한다	해당 없음/잘 모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균 Mean)	
■ 전체 ■	(159)	0.6	38.4	28.3	18.9	3.1	2.5	39.0	28.3	22.0	8.2	3.1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8)	27.1	31.3	16.7	6.3	4.2	27.1	31.3	22.9	14.6	2.97	
	6대 광역시	(38)	2.6	36.8	18.4	34.2		5.3	39.5	18.4	34.2	2.6	3.09
	중소도시	(44)		50.0	34.1	9.1			50.0	34.1	9.1	6.8	3.44
	기타 농어촌	(29)		41.4	27.6	17.2	6.9		41.4	27.6	24.1	6.9	3.11
지역	서울	(33)	21.2	33.3	18.2	6.1	6.1	21.2	33.3	24.2	15.2	2.88	
	부산	(5)	40.0	40.0	20.0			40.0	40.0	20.0		3.20	
	대구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인천	(3)		66.7		33.3			66.7		33.3	3.33	
	광주	(27)		44.4	14.8	25.9		3.7	44.4	14.8	25.9	11.1	3.22
	대전	(1)				100.0					100.0		2.00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3.33
	경기	(15)		40.0	26.7	13.3	6.7		40.0	26.7	20.0	13.3	3.15
	강원	(5)		60.0	40.0				60.0	40.0			3.60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16.7	16.7		66.7		33.3		3.17
	전북	(4)		50.0	50.0				50.0	50.0			3.50
	전남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경북	(3)		66.7					66.7			33.3	4.00
경남	(38)		36.8	36.8	18.4	2.6		36.8	36.8	21.1	5.3	3.14	
성별	남성	(33)	3.0	42.4	33.3	9.1	3.0		45.5	33.3	12.1	9.1	3.37
	여성	(126)		37.3	27.0	21.4	3.2	3.2	37.3	27.0	24.6	7.9	3.11
연령별	30대	(31)		32.3	25.8	22.6		3.2	32.3	25.8	22.6	16.1	3.12
	40대	(75)		33.3	33.3	17.3	4.0	2.7	33.3	33.3	21.3	9.3	3.09
	50대	(43)	2.3	41.9	25.6	23.3	2.3	2.3	44.2	25.6	25.6	2.3	3.20
	60대	(8)		100.0					100.0				4.00
직급	6급	(12)	8.3	58.3		25.0	8.3		66.7		33.3		3.33
	7급	(63)		42.9	30.2	17.5	1.6	1.6	42.9	30.2	19.0	6.3	3.24
	8급	(55)		34.5	32.7	18.2	3.6	3.6	34.5	32.7	21.8	7.3	3.10
	9급	(18)		33.3	27.8	22.2			33.3	27.8	22.2	16.7	3.13
직렬	행정	(18)		44.4	22.2	11.1		11.1	44.4	22.2	11.1	11.1	3.43
	사회복지	(135)	0.7	36.3	28.9	20.7	3.7	1.5	37.0	28.9	24.4	8.1	3.11
	보건	(6)		66.7	33.3				66.7	33.3			3.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1년~3년 이하	(14)		42.9	21.4	14.3			42.9	21.4	14.3	21.4	3.36
	3년~5년 이하	(28)		25.0	35.7	21.4	3.6	7.1	25.0	35.7	25.0	7.1	2.96
	5년~7년 이하	(32)		43.8	28.1	12.5	6.3		43.8	28.1	18.8	9.4	3.21
	7년 이상	(26)		38.5	26.9	26.9		3.8	38.5	26.9	26.9	3.8	3.13
무응답(응답거부)	(44)	2.3	47.7	25.0	18.2	2.3	2.3	50.0	25.0	20.5	2.3	3.31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6)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29
	3~6개월 미만	(6)		50.0	16.7	16.7			50.0	16.7	16.7	16.7	3.40
	6~12개월 미만	(22)		36.4	22.7	27.3		4.5	36.4	22.7	27.3	9.1	3.11
	1년~2년 미만	(27)		51.9	25.9	14.8		3.7	51.9	25.9	14.8	3.7	3.40
	2년 이상	(87)	1.1	34.5	29.9	18.4	5.7	2.3	35.6	29.9	24.1	8.0	3.08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후 나아진 점 (Open 문항)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후 나아진 점으로는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22.8%,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3%, ‘기초 생존권 보장’ 15.8%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5.1%, ‘고정적 수입 발생’ 3.8%, ‘주거의 안정 획득’ 3.2%, ‘자녀 교육지원 가능’ 1.3%, ‘가족 해체 방지’ 0.6% 등이었으며, 그 외 기타 응답은 2.5%였다.

No	응답내용	응답비율(%)
1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22.8%
2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3%
3	기초 생존권 보장	15.8%
4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5.1%
5	고정적 수입 발생	3.8%
6	주거의 안정 획득	3.2%
7	자녀 교육지원 가능	1.3%
8	가족 해체 방지	0.6%
9	기 타	2.5%
	모름/ 무응답	24.7%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158명)

【Q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이후 나아진 점

단위:%	사례 수	기초 생존권 보장	심리적 위안 자활의 계기	의료비 지원 으로 부담 경감	'자녀 교육 지원 가능'	주거의 안정 획득	생활 안정 및 불편 해소	고정적 수입 발생	가족 해체 방지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8)	15.8	5.1	20.3	1.3	3.2	22.8	3.8	0.6	2.5	24.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12.8	4.3	12.8		4.3	27.7	6.4	4.3	27.7	
	6대 광역시	(38)	28.9	2.6	10.5	2.6	7.9	13.2	2.6		28.9	
	중소도시	(44)	9.1	9.1	31.8			25.0	2.3	2.3	20.5	
	기타 농어촌	(29)	13.8	3.4	27.6	3.4		24.1	3.4	3.4	20.7	
지역	서울	(33)	12.1	3.0	15.2		6.1	33.3	6.1	6.1	18.2	
	부산	(5)	40.0					20.0			40.0	
	대구	(6)	33.3				16.7				50.0	
	인천	(3)						33.3	33.3		33.3	
	광주	(27)	18.5	11.1	22.2	3.7	7.4	14.8		3.7	18.5	
	대전	(1)						100.0				
	울산	(4)	50.0					25.0			25.0	
	경기	(14)	14.3	7.1	7.1			14.3	7.1		50.0	
	강원	(5)			40.0				20.0		40.0	
	충북	(2)			50.0						50.0	
	충남	(6)			33.3			16.7			50.0	
	전북	(4)		25.0							75.0	
	성별	남성	(33)	21.1	5.3	36.8	2.6	3.0	31.6	2.6		9.1
여성		(125)	14.4	5.6	20.0	0.8	3.2	20.8	4.0	3.0	28.8	
연령별		30대	(31)	12.9		12.9		3.2	35.5	6.5	3.2	25.8
		40대	(74)	17.6	5.4	24.3	1.4	2.7	12.2	5.4	1.4	29.7
		50대	(43)	11.6	9.3	20.9	2.3	2.3	30.2		2.3	18.6
		60대	(8)	37.5				12.5	25.0		12.5	12.5
직급		6급	(12)	25.0		33.3	8.3	8.3		8.3	8.3	
		7급	(62)	11.3	8.1	21.0		3.2	27.4			25.8
		8급	(55)	23.6	1.8	16.4	1.8	3.6	14.5	9.1	1.8	27.3
		9급	(18)	11.1	5.6	16.7			27.8	5.6		33.3
직렬	행정	(18)	11.1				5.6	11.1		5.6	55.6	
	사회복지	(134)	17.2	6.0	23.1	1.5	3.0	23.9	4.5	1.5	19.4	
	보건	(6)			16.7			33.3			50.0	
근속 연수	1년 이하	(6)		16.7	16.7			50.0			16.7	
	1년~3년 이하	(13)	7.7		23.1			30.8	7.7		30.8	
	3년~5년 이하	(28)	32.1		7.1		3.6	21.4	7.1	3.6	25.0	
	5년~7년 이하	(32)	12.5	3.1	28.1	3.1	3.1	6.3	9.4		34.4	
	7년 이상	(26)	7.7	7.7	23.1		3.8	30.8		3.8	23.1	
무응답(응답거부)	(44)	18.2	6.8	20.5	2.3	4.5	22.7		2.3	18.2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40.0		6.7	40.0	
	3~6개월 미만	(6)	16.7		33.3						50.0	
	6~12개월 미만	(22)	4.5	4.5	18.2		4.5	18.2			50.0	
	1년~2년 미만	(27)	7.4	3.7	7.4			25.9		3.7	51.9	
2년 이상	(87)	24.1	5.7	26.4	2.3	4.6	21.8	6.9	3.4	4.6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Open 문항)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자활의지 부족)’(33.5%)였다.

그 다음으로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12.0%,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8.2%, ‘대부분 근로무능력자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7.0%, ‘생활비(월세/물가/교육비 등)가 많이 들어 저축 불가능’ 6.3%,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3%, ‘기준에 빛이 많아서’ 0.6%, 지원기간이 짧아서‘ 0.6% 등이 응답되었으며, 그 외 기타 응답은 5.7%였다.

No	응답내용	응답비율(%)
1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자활의지 부족)	33.5%
2	급여(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12.0%
3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8.2%
4	대부분 근로무능력자로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7.0%
5	생활비(월세/물가/교육비 등)가 많이 들어 저축 불가능	6.3%
6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3%
7	기준에 빛이 많아서	0.6%
8	지원기간이 짧아서	0.6%
9	기 타	5.7%
	모름/ 무응답	24.7%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158명)

【Q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 수	대부분 근로무능 력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음	생활비 많이 들어 저축 불가능	급여가 너무 적음	기준에 맞지 않음	건강 상의 이유로 일할수 없어서	지원 기간이 짧아서	본인이 노력 하지 않아서 (자활 의지 부족)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아서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8)	7.0	6.3	12.0	0.6	1.3	0.6	33.5	8.2	5.7	24.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6.4	8.5	14.9			36.2	8.5	2.1	23.4	
	6대 광역시	(38)		5.3	5.3	2.6	5.3	39.5	13.2	5.3	23.7	
	중소도시	(44)	11.4	9.1	9.1			2.3	29.5	6.8	4.5	27.3
	기타 농어촌	(29)	10.3		20.7				27.6	3.4	13.8	24.1
지역	서울	(33)	9.1	12.1	15.2			42.4	3.0	3.0	15.2	
	부산	(5)		20.0			20.0	20.0			40.0	
	대구	(6)		16.7				16.7		16.7	50.0	
	인천	(3)			33.3			33.3			33.3	
	광주	(27)	3.7	3.7	3.7		3.7	37.0	22.2	7.4	18.5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4)			14.3			21.4	21.4		42.9	
	강원	(5)						60.0			40.0	
	충북	(2)						50.0			50.0	
	충남	(6)						50.0			50.0	
	전북	(4)						25.0			75.0	
	전남	(7)						14.3		28.6	57.1	
경북	(3)							33.3		66.7		
경남	(38)	18.4	7.9	23.7			2.6	28.9	5.3	7.9	5.3	
성별	남성	(33)	9.1	9.1	9.1		3.0	3.0	27.3	9.1	15.2	15.2
	여성	(125)	6.4	5.6	12.8	0.8	0.8		35.2	8.0	3.2	27.2
연령별	30대	(31)	9.7		16.1			38.7	9.7	3.2	22.6	
	40대	(74)	4.1	8.1	12.2		1.4	36.5	6.8	5.4	25.7	
	50대	(43)	11.6	7.0	11.6	2.3		2.3	23.3	9.3	7.0	25.6
	60대	(8)					12.5		37.5	12.5	12.5	25.0
직급	6급	(12)	8.3		25.0			33.3	16.7	16.7		
	7급	(62)	8.1	6.5	11.3	1.6	1.6	1.6	32.3	3.2	4.8	29.0
	8급	(55)	5.5	5.5	10.9		1.8		32.7	12.7	5.5	25.5
	9급	(18)	11.1	11.1	16.7				22.2	5.6	5.6	27.8
직렬	행정	(18)		5.6	5.6				16.7		11.1	61.1
	사회복지	(134)	8.2	6.7	13.4	0.7	1.5	0.7	35.8	9.0	5.2	18.7
	보건	(6)							33.3	16.7		50.0
근속 연수	1년 이하	(6)			33.3			33.3		16.7	16.7	
	1년~3년 이하	(13)	15.4	15.4	7.7			30.8	7.7		23.1	
	3년~5년 이하	(28)	7.1	3.6	14.3		3.6	32.1	14.3	3.6	21.4	
	5년~7년 이하	(32)	6.3	6.3	15.6			25.0	9.4	9.4	28.1	
	7년 이상	(26)		3.8	11.5	3.8		42.3	7.7	3.8	26.9	
무응답(응답거부)	(44)	11.4	6.8	9.1		2.3	2.3	29.5	6.8	6.8	25.0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26.7	6.7	13.3	40.0	
	3~6개월 미만	(6)						16.7		33.3	50.0	
	6~12개월 미만	(22)		4.5	9.1			22.7	9.1		54.5	
	1년~2년 미만	(27)	7.4	11.1	7.4			18.5	3.7	3.7	48.1	
	2년 이상	(87)	9.2	6.9	16.1	1.1	2.3	1.1	43.7	10.3	4.6	4.6

17. 현장에서의 지원방안(Open 문항)

공무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살펴본 결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산을 늘려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지원’ 7.6%, ‘차상위 자녀대상 교육지원’ 4.4%, ‘차상위계층 상향조정 등 탈 수급에 대한 방안 마련’ 3.8%, ‘담당인력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2.5%, ‘후원기관 연계 등 새로운 제도 도출’ 1.9%, ‘국가의 선 부양 후 부양의무자에 지급 요청’ 0.6% 등이 응답되었다.

한편 ‘현재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8%, 그 외 기타 응답은 8.9%였다.

No	응답내용	응답비율(%)
1	차상위계층 지원금 별도 필요	14.6%
2	예산 늘려 부가적 혜택지원	7.6%
3	차상위 자녀대상 교육지원	4.4%
4	차상위계층 상향조정 등 탈 수급에 대한 방안 마련	3.8%
5	현재 문제없다고 생각함	3.8%
6	담당인력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강화	2.5%
7	후원기관 연계 등 새로운 제도 도출	1.9%
8	국가의 선 부양 후 부양의무자에 지급 요청	0.6%
9	기 타	8.9%
	모름/ 무응답	51.9%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158명)

【Q17】 현장에서의 지원방안

단위:%	사례 수	차상위 계층 조정 등 탈수 급 대한 방안 마련	담당 인력 확충 행정 서비스 강화	예산 늘려 부가 적 혜택 지원	차상위 자녀 교육 지원	후원 기관 등 연계 등 새로 운 제도 출 도출	국가의 선부 양 의무 자 에 지 급 요 청	차상위 계층 지원 금 별 도 필 요	현재 문 제 없 다 고 생 각 함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8)	3.8	2.5	7.6	4.4	1.9	0.6	14.6	3.8	8.9	51.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10.6	4.3	6.4		4.3	2.1	10.6		10.6	51.1
	6대 광역시	(38)		2.6	18.4	5.3	2.6		21.1		7.9	42.1
	중소도시	(44)		2.3	2.3	11.4			4.5	9.1	13.6	56.8
	기타 농어촌	(29)	3.4		3.4				27.6	6.9		58.6
지역	서울	(33)	12.1	3.0	3.0		6.1	3.0	15.2		9.1	48.5
	부산	(5)				40.0			20.0			40.0
	대구	(6)		16.7					16.7		16.7	50.0
	인천	(3)			33.3				33.3			33.3
	광주	(27)	3.7	3.7	14.8		3.7		11.1	3.7	3.7	55.6
	대전	(1)									100.0	
	울산	(4)			50.0				50.0			
	경기	(14)	7.1	7.1	14.3						14.3	57.1
	강원	(5)							20.0		20.0	60.0
	충북	(2)										100.0
	충남	(6)							33.3		16.7	50.0
	전북	(4)				25.0						75.0
	전남	(7)							14.3	14.3		71.4
경북	(3)			33.3							66.7	
경남	(38)			2.6	10.5			15.8	10.5	10.5	50.0	
성별	남성	(33)	3.0	3.0	12.1	3.0			12.1		21.2	45.5
	여성	(125)	4.0	2.4	6.4	4.8	2.4	0.8	15.2	4.8	5.6	53.6
연령별	30대	(31)	9.7	3.2		3.2			16.1	6.5	6.5	54.8
	40대	(74)	1.4	2.7	8.1	4.1	4.1		17.6	5.4	10.8	45.9
	50대	(43)	4.7	2.3	14.0	7.0			7.0		7.0	58.1
	60대	(8)						12.5	25.0			62.5
직급	6급	(12)			25.0	8.3		8.3	8.3			50.0
	7급	(62)	4.8	3.2	4.8	3.2	1.6		11.3	3.2	4.8	62.9
	8급	(55)	3.6	1.8	5.5	7.3	3.6		20.0	5.5	14.5	38.2
	9급	(18)	5.6		5.6				22.2			66.7
직렬	행정	(18)			5.6			5.6	11.1			77.8
	사회복지	(134)	4.5	3.0	7.5	5.2	2.2		14.9	4.5	10.4	47.8
	보건	(6)			16.7				16.7			6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16.7	83.3
	1년~3년 이하	(13)	7.7		7.7				38.5			46.2
	3년~5년 이하	(28)	7.1	7.1	3.6	7.1			14.3	3.6	14.3	42.9
	5년~7년 이하	(32)		3.1	3.1	6.3			18.8	6.3	12.5	50.0
	7년 이상	(26)	3.8		7.7		11.5		7.7	7.7	3.8	57.7
	무응답(응답거부)	(44)	4.5	2.3	11.4	6.8		2.3	11.4		4.5	56.8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6.7			6.7	6.7		66.7
	3~6개월 미만	(6)									16.7	83.3
	6~12개월 미만	(22)	4.5	4.5	4.5				13.6		4.5	68.2
	1년~2년 미만	(27)	3.7		7.4				22.2		3.7	63.0
	2년 이상	(87)	3.4	3.4	9.2	6.9	3.4	1.1	14.9	5.7	12.6	39.1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점(Open 응답)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본 결과, 지원방법 차원에서는 ‘개별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지원 규모와 금액 차원에서는 ‘물가, 최저생계비수준 감안 현실적 지원’이, 지원기간에서는 ‘사전에 명확한 탈수급 기간 제시’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No	지원방법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1	맞춤형 서비스 지원	5.1%	물가, 최저생계비수준 감안 현실적 지원	12.7%	사전에 탈수급 기간 제시	10.8%
2	근로의욕 증대	4.4%				
3	급여 형평성 제고	2.5%	맞춤형 서비스 지원	3.8%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만 지원	3.8%
4	일용소득 파악	1.9%	자활장려/일자리지원 등	1.9%		
5	고의적 부정수급자 제재	1.9%	소득/자산따른 차별화	1.3%	탈수급 직후 일정 유예기간 부여	1.9%
6	부양의무자 기준조정	1.9%				
7	현금지원 중심으로 자율의지 감소	1.9%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0.6%	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1.3%
8	바우처 도입 확대	1.3%	부가적인 서비스가 조정	0.6%		
9	한시적 급여지원	1.3%	현금지원은 자율의지 감소	0.6%	자활기간 단축 노력	0.6%
10	부가적 서비스가 너무 많아 조정 필요	0.6%				
11	물가, 최저생계비수준 감안 현실적 지원	0.6%	기 타	6.3%	기 타	3.2%
	기 타	4.4%	기 타	6.3%	기 타	3.2%
	현행 만족	4.4%	현행 만족	4.4%	현행 만족	6.3%
	모름/ 무응답	67.7%	모름/ 무응답	67.7%	모름/ 무응답	72.2%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158명)

【Q18_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수	일용소득 과액부 급	고의적 부진 수자대 제	적정 지원 금 수 준 유 지	자활 리 자 원 지 원 수 준 유 지	부 가 인 비 가 무 어 정 요	바 우 치 도 입 대	한 시 여 원	적 기 의 기 준 비 조	부 양 자 및 의 기 준 비 조	소 자 따 라 차 별 하 여 성 고	맞 춤 형 서 비 원	현 금 지 출 자 의 감 소	금 원 심 로 유 지 자 의 감 소	물 가 저 생 계 수 감 안 적 원	12	기타	모 름/ 무 응 답
■ 전 체 ■	(158)	1.9	1.9	4.4	0.6		1.3	1.3	1.9	2.5	5.1	1.9	0.6	4.4	4.4	67.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4.3	2.1	4.3						2.1	6.4	4.3	2.1	6.4	2.1	66.0	
	6대 광역시	(38)		2.6	5.3	2.6	5.3	5.3	2.6	7.9	7.9						60.5	
	중소도시	(44)		2.3	4.5				2.3		2.3	2.3			6.8	9.1	70.5	
	기타 농어촌	(29)	3.4		3.4				3.4		3.4				3.4	6.9	75.9	
지역	서울	(33)	3.0		6.1						3.0	9.1	6.1	3.0	6.1	3.0	60.6	
	부산	(5)						20.0									80.0	
	대구	(6)		16.7													83.3	
	인천	(3)										33.3					66.7	
	광주	(27)			7.4	3.7	3.7		3.7	11.1	3.7	3.7				7.4	55.6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4)	7.1	7.1												7.1	78.6	
	강원	(5)			20.0												80.0	
	충북	(2)															100.0	
	충남	(6)	16.7							16.7		16.7					50.0	
	전북	(4)															100.0	
	전남	(7)															14.3	85.7
	경북	(3)															33.3	66.7
경남	(38)		2.6	5.3					2.6		2.6			10.5	5.3	71.1		
성별	남성	(33)		3.0	3.0				6.1	3.0	9.1				6.1	69.7		
	여성	(125)	2.4	1.6	4.8	0.8	1.6	1.6	0.8	2.4	4.0	2.4	0.8	4.0	5.6	67.2		
연령별	30대	(31)	6.5		6.5		3.2	3.2		3.2	3.2				3.2	71.0		
	40대	(74)	1.4	2.7	4.1	1.4		1.4	1.4	1.4	5.4	2.7	1.4	5.4	4.1	67.6		
	50대	(43)		2.3	4.7		2.3		2.3	2.3	4.7			4.7	9.3	67.4		
	60대	(8)							12.5	12.5			12.5			62.5		
직급	6급	(12)			8.3				8.3		8.3	8.3				8.3	58.3	
	7급	(62)		1.6	4.8	1.6	1.6		1.6	3.2	4.8	3.2	1.6	3.2	4.8	67.7		
	8급	(55)	1.8	3.6	1.8		1.8	1.8	1.8	1.8	5.5			3.6	5.5	70.9		
	9급	(18)	5.6		5.6									16.7		72.2		
직렬	행정	(18)									5.6	5.6					88.9	
	사회복지 보건	(134)	2.2	2.2	5.2	0.7	1.5	1.5	1.5	3.0	5.2	1.5	0.7	5.2	4.5	64.9		
근속연수	1년 이하	(6)															100.0	
	1년~3년 이하	(13)	7.7		7.7					7.7					23.1	53.8		
	3년~5년 이하	(28)	3.6	3.6	3.6		3.6	3.6			3.6			3.6	7.1	67.9		
	5년~7년 이하	(32)	3.1	3.1	3.1				3.1		3.1	3.1		3.1	3.1	75.0		
	7년 이상	(26)		3.8	3.8	3.8	3.8				7.7	3.8	3.8			69.2		
	무응답 (응답거부)	(44)			4.5					4.5	4.5	4.5	2.3		4.5	9.1	65.9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86.7	
	3~6개월 미만	(6)			16.7												83.3	
	6~12개월 미만	(22)		4.5						4.5					4.5	4.5	81.8	
	1년~2년 미만	(27)							3.7		7.4				7.4		81.5	
	2년 이상	(87)	2.3	2.3	5.7	1.1	2.3	2.3	2.3	3.4	6.9	3.4	1.1	4.6	6.9	55.2		

【Q18_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금액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 수	고의적 부정수급 자에 대한 제재	자활 장려/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근로 의욕 증대	부가적인 서비스가 너무 조정 필요	소득/ 자산 따른 차별화 등급 여 형평 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현 금 지 원 심 으로 자 율 의 감 소	물 가, 최 저 생 계 비 수 준 감 안 현 실 적 지 원	현 행 만 족	기 타	모 름/ 무 응 답	
□ 전 체 □	(158)	0.6	1.9	0.6	1.3	3.8	0.6	12.7	4.4	6.3	67.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4.3	2.1	4.3	6.4	2.1	10.6	2.1	6.4	61.7
	6대 광역시	(38)		2.6			5.3		10.5	5.3	7.9	68.4
	중소도시	(44)	2.3						20.5	2.3	4.5	70.5
	기타 농어촌	(29)					3.4		6.9	10.3	6.9	72.4
지역	서울	(33)		6.1	3.0	6.1	6.1	3.0	12.1	3.0	6.1	54.5
	부산	(5)							40.0			60.0
	대구	(6)							16.7			83.3
	인천	(3)									66.7	33.3
	광주	(27)		3.7					7.4	7.4		81.5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4)					7.1		7.1		7.1	78.6
	강원	(5)							20.0			80.0
	충북	(2)							50.0			50.0
	충남	(6)	16.7							16.7		66.7
	전북	(4)										100.0
	전남	(7)							14.3			85.7
경북	(3)								33.3		66.7	
경남	(38)					2.6		18.4	5.3	10.5	63.2	
성별	남성	(33)	3.0				3.0		15.2	3.0	6.1	69.7
	여성	(125)		2.4	0.8	1.6	4.0	0.8	12.0	4.8	6.4	67.2
연령별	30대	(31)				6.5	6.5	3.2	6.5	9.7	6.5	61.3
	40대	(74)	1.4	2.7	1.4		2.7		16.2	2.7	8.1	64.9
	50대	(43)					4.7		14.0	4.7	4.7	72.1
	60대	(8)		12.5								87.5
직급	6급	(12)		8.3			8.3				8.3	75.0
	7급	(62)	1.6	3.2	1.6		1.6		14.5	3.2	4.8	69.4
	8급	(55)				1.8	3.6		10.9	7.3	9.1	67.3
	9급	(18)				5.6	5.6	5.6	22.2			61.1
직렬	행정	(18)		5.6					5.6		5.6	83.3
	사회복지	(134)	0.7	1.5	0.7	1.5	4.5	0.7	13.4	4.5	6.7	65.7
	보건	(6)							16.7	16.7		6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50.0			50.0
	1년~3년 이하	(13)				7.7	7.7		15.4	7.7	15.4	46.2
	3년~5년 이하	(28)				3.6	7.1	3.6	10.7	7.1	3.6	64.3
	5년~7년 이하	(32)	3.1	3.1					12.5	3.1	15.6	62.5
	7년 이상	(26)		3.8	3.8				7.7		3.8	80.8
	무응답(응답거부)	(44)		2.3			4.5		13.6	4.5	2.3	72.7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86.7
	3~6개월 미만	(6)										100.0
	6~12개월 미만	(22)							22.7	4.5	4.5	68.2
	1년~2년 미만	(27)					3.7		11.1	3.7	3.7	77.8
2년 이상	(87)	1.1	3.4	1.1	2.3	5.7	1.1	12.6	5.7	8.0	58.6	

【Q18_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 수	자 활 기 간 축 력	사 전 에 탈 수 급 기 간 제 시	근 로 력 확 보 까 지 할 지 원 만 족 되 는 가	탈 수 급 직 업 유 기 부 여	학 생 의 경 우 까 지	현 행 만 족	기 타	모 름/ 무 응 답	
■ 전 체 ■	(158)	0.6	10.8	3.8	1.9	1.3	6.3	3.2	72.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7)	2.1	8.5	6.4	2.1		8.5	6.4	66.0
	6대 광역시	(38)		23.7	2.6	5.3	2.6	2.6		63.2
	중소도시	(44)		4.5	2.3		2.3	4.5	2.3	84.1
	기타 농어촌	(29)		6.9	3.4			10.3	3.4	75.9
지역	서울	(33)	3.0	12.1	9.1	3.0		12.1	3.0	57.6
	부산	(5)				20.0				80.0
	대구	(6)								100.0
	인천	(3)					33.3			66.7
	광주	(27)		29.6	3.7	3.7		3.7	3.7	55.6
	대전	(1)		100.0						
	울산	(4)		25.0						75.0
	경기	(14)							14.3	85.7
	강원	(5)		20.0						80.0
	충북	(2)								100.0
	충남	(6)			16.7					83.3
	전북	(4)								100.0
	전남	(7)								100.0
	경북	(3)						33.3		66.7
경남	(38)		5.3	2.6		2.6	10.5	2.6	76.3	
성별	남성	(33)		3.0	6.1	3.0	3.0	6.1		78.8
	여성	(125)	0.8	12.8	3.2	1.6	0.8	6.4	4.0	70.4
연령별	30대	(31)		16.1	3.2			9.7	6.5	64.5
	40대	(74)		9.5	4.1	2.7	1.4	4.1	2.7	75.7
	50대	(43)		11.6	2.3		2.3	9.3	2.3	72.1
	60대	(8)	12.5			12.5				75.0
직급	6급	(12)	8.3	8.3		8.3	8.3			66.7
	7급	(62)		11.3	3.2			6.5	3.2	75.8
	8급	(55)		7.3	3.6	3.6	1.8	9.1	1.8	72.7
	9급	(18)		11.1	5.6			5.6	5.6	72.2
직렬	행정	(18)	5.6				5.6			88.9
	사회복지	(134)		12.7	4.5	2.2	0.7	6.7	3.7	69.4
	보건	(6)						16.7		8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100.0
	1년~3년 이하	(13)		7.7	7.7			15.4	23.1	46.2
	3년~5년 이하	(28)		10.7	3.6	3.6		10.7		71.4
	5년~7년 이하	(32)		6.3	3.1	3.1	3.1		3.1	81.3
	7년 이상	(26)		19.2	3.8			3.8		73.1
담당기간	무응답(응답거부)	(44)	2.3	6.8	2.3	2.3	2.3	9.1	2.3	72.7
	3개월 미만	(15)		6.7					6.7	86.7
	3~6개월 미만	(6)		16.7						83.3
	6~12개월 미만	(22)			4.5			4.5	4.5	86.4
	1년~2년 미만	(27)		3.7			3.7	7.4	3.7	81.5
2년 이상	(87)	1.1	16.1	5.7	3.4	1.1	8.0	2.3	62.1	

19. 긴급복지지원법 수급 이후 나아진 점(Open 문항)

현장경험을 통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긴급지원법 수급자들의 수급 이후 나아진 점으로는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4%, ‘위기상황 극복 가능’ 18.5%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8.3%,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3.8%, ‘가족 해체 방지’ 2.5%, ‘기초 생존권 보장’ 1.9% 등이었으며, 그 외 기타 응답은 3.8%였다.

No	응답내용	응답비율(%)
1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4%
2	위기상황 극복 가능	18.5%
3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8.3%
4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3.8%
5	가족 해체 방지	2.5%
6	기초 생존권 보장	1.9%
7	기 타	3.8%
8	모름/ 무응답	40.8%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Q19】 긴급복지지원법 수급 이후 나아진 점

단위:%	사례 수	기초 생존권 보장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생활 안정 및 불편 해소	가족 해체 방지	기타	위기 상황 극복 가능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7)	1.9	3.8	20.4	8.3	2.5	3.8	18.5	40.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2.2	4.3	23.9	2.2	4.3	2.2	10.9	50.0
	6대 광역시	(38)	5.3		15.8	10.5	2.6	2.6	26.3	36.8
	중소도시	(44)		9.1	20.5	6.8	2.3		18.2	43.2
	기타 농어촌	(29)			20.7	17.2		13.8	20.7	27.6
지역	서울	(31)		3.2	12.9	3.2	3.2	3.2	12.9	61.3
	부산	(5)			40.0	20.0			20.0	20.0
	대구	(6)				16.7			33.3	50.0
	인천	(3)					33.3		66.7	
	광주	(27)	7.4		11.1	7.4		7.4	18.5	48.1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5)	6.7	6.7	46.7		6.7		6.7	26.7
	강원	(5)				40.0			40.0	20.0
	충북	(2)			50.0	50.0				
	충남	(6)		16.7	33.3	16.7			16.7	16.7
	전북	(4)		25.0	50.0					25.0
	전남	(7)			14.3				57.1	28.6
	경북	(3)			33.3			33.3	33.3	
경남	(38)		5.3	21.1	10.5	2.6	5.3	13.2	42.1	
성별	남성	(33)	6.1		15.2	18.2	3.0	6.1	21.2	30.3
	여성	(124)	0.8	4.8	21.8	5.6	2.4	3.2	17.7	43.5
연령별	30대	(29)	3.4	3.4	13.8	6.9		3.4	13.8	55.2
	40대	(75)	1.3	5.3	20.0	5.3	2.7	2.7	26.7	36.0
	50대	(43)		2.3	27.9	9.3	2.3	7.0	11.6	39.5
	60대	(8)	12.5		12.5	25.0	12.5			37.5
직급	6급	(12)			25.0	8.3	16.7		8.3	41.7
	7급	(63)	1.6	3.2	22.2	9.5		7.9	15.9	39.7
	8급	(54)	1.9	3.7	16.7	3.7	1.9	1.9	27.8	42.6
	9급	(17)		11.8	23.5	17.6	5.9		17.6	23.5
직렬	행정	(18)			27.8		11.1		16.7	44.4
	사회복지	(133)	2.3	4.5	18.0	9.0	1.5	3.8	18.8	42.1
	보건	(6)			50.0	16.7		16.7	1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33.3	33.3	16.7				16.7
	1년~3년 이하	(13)	7.7	7.7	7.7	7.7	7.7		23.1	38.5
	3년~5년 이하	(27)		3.7	18.5	3.7			18.5	55.6
	5년~7년 이하	(32)	3.1	3.1	15.6	6.3	3.1	9.4	34.4	25.0
	7년 이상	(26)			30.8	11.5			19.2	38.5
	무응답(응답거부)	(44)	2.3	2.3	22.7	9.1	4.5	6.8	11.4	40.9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6.7	6.7		6.7	20.0	46.7
	3~6개월 미만	(6)			33.3	16.7			33.3	16.7
	6~12개월 미만	(22)		4.5	36.4	4.5		4.5	22.7	27.3
	1년~2년 미만	(27)		7.4	22.2	22.2	7.4		18.5	22.2
	2년 이상	(86)	2.3	2.3	17.4	3.5	2.3	4.7	16.3	51.2

20.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공무원들이 볼 때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19.7%)였다.

그 다음으로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14.0%, ‘수급자의 의지부족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5.1%, ‘지원수준이 낮아서’ 5.1%,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3.2%, ‘자활방법을 잘 몰라서’ 3.2%,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2.5%, ‘가정 해체 등은 지원을 통해 되돌리기 어려움’ 0.6% 등이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No	응답내용	응답비율(%)
1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19.7%
2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14%
3	수급자의 의지부족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5.1%
4	지원수준이 낮아서	5.1%
5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3.2%
6	자활방법을 잘 몰라서	3.2%
7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2.5%
8	가정 해체 등은 지원을 통해 되돌리기 어려움	0.6%
9	기 타	5.1%
	모름/ 무응답	41.4%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Q20】 긴급복지지원법 지원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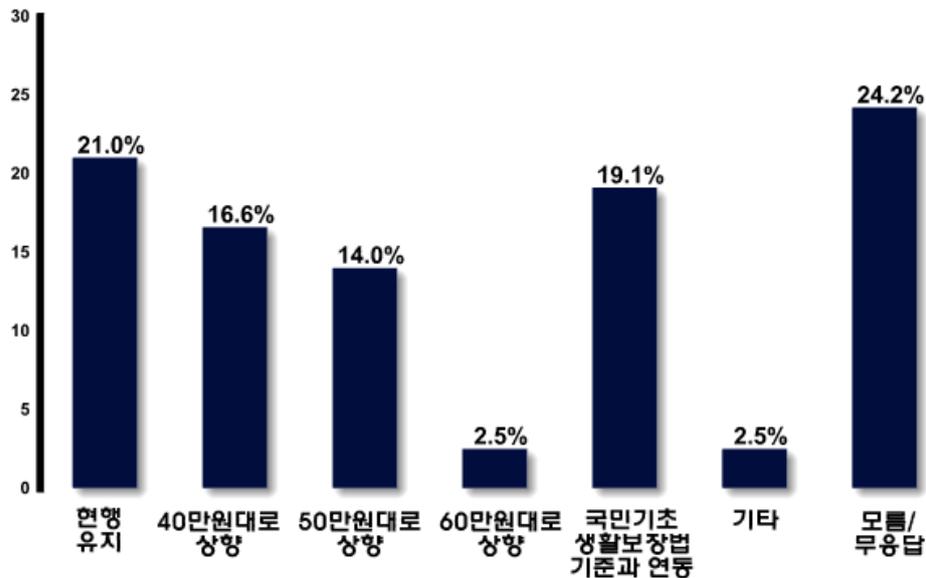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수급자의 지 부족 및 해이로 인해	질병 등 여건 마련되지 못함	자활 방법 알 모름	일시적 지원에 그침	지원 수준 낮음	대부분 의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가정 등 지원을 받기 어려움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57)	14.0	5.1	3.2	3.2	19.7	5.1	2.5	0.6	5.1	41.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8.7	6.5	2.2	6.5	17.4	6.5	2.2	8.7	41.3	
	6대 광역시	(38)	13.2	2.6	2.6	2.6	21.1	7.9	7.9	5.3	36.8	
	중소도시	(44)	15.9	2.3	4.5	2.3	15.9	4.5			54.5	
	기타 농어촌	(29)	20.7	10.3	3.4		27.6		3.4	6.9	27.6	
지역	서울	(31)	9.7	6.5	3.2	6.5	12.9	6.5		9.7	45.2	
	부산	(5)					20.0	20.0	40.0		20.0	
	대구	(6)				16.7	33.3			16.7	33.3	
	인천	(3)					66.7	33.3				
	광주	(27)	14.8	3.7	3.7		18.5	3.7	3.7	3.7	48.1	
	대전	(1)									100.0	
	울산	(4)	25.0								75.0	
	경기	(15)	6.7	6.7		6.7	26.7	6.7		6.7	33.3	
	강원	(5)	40.0				20.0		20.0		20.0	
	충북	(2)			50.0					50.0		
	충남	(6)	33.3	33.3			33.3					
	전북	(4)	25.0		25.0		25.0	25.0				
	전남	(7)	14.3	14.3			42.9				28.6	
경북	(3)	66.7	33.3									
경남	(38)	13.2		2.6	2.6	15.8	2.6			2.6	60.5	
성별	남성	(33)	12.1	6.1	6.1		21.2	6.1	6.1	3.0	39.4	
	여성	(124)	14.5	4.8	2.4	4.0	19.4	4.8	1.6	0.8	5.6	41.9
연령별	30대	(29)	6.9	3.4	3.4		17.2	3.4		6.9	58.6	
	40대	(75)	17.3	2.7		5.3	24.0	5.3	1.3	1.3	5.3	37.3
	50대	(43)	9.3	9.3	9.3	2.3	16.3	7.0	7.0	4.7	34.9	
	60대	(8)	37.5	12.5			12.5				37.5	
직급	6급	(12)	8.3	8.3		8.3	8.3		8.3		58.3	
	7급	(63)	12.7	4.8	6.3	4.8	22.2	6.3	4.8	6.3	31.7	
	8급	(54)	18.5	5.6	1.9	1.9	18.5	5.6		3.7	44.4	
	9급	(17)	17.6	5.9			23.5	5.9		5.9	35.3	
직렬	행정	(18)	22.2	5.6		5.6	33.3	5.6			27.8	
	사회복지	(133)	12.8	3.0	3.8	3.0	18.0	5.3	3.0	0.8	5.3	45.1
	보건	(6)	16.7	50.0			16.7				1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33.3				50.0	
	1년~3년 이하	(13)	15.4			7.7	23.1	7.7		7.7	23.1	15.4
	3년~5년 이하	(27)	11.1	3.7	3.7		14.8	7.4			59.3	
	5년~7년 이하	(32)	21.9	6.3			28.1	3.1		6.3	34.4	
	7년 이상	(26)	7.7	7.7	3.8	11.5	26.9	7.7	3.8	3.8	26.9	
무응답(응답거부)	(44)	15.9	6.8	6.8	2.3	13.6	4.5	6.8		4.5	38.6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6.7	26.7		6.7	6.7	40.0	
	3~6개월 미만	(6)	16.7	16.7				16.7	16.7	16.7	16.7	
	6~12개월 미만	(22)	18.2	9.1			27.3	4.5	4.5	13.6	22.7	
	1년~2년 미만	(27)	18.5	7.4	7.4	3.7	29.6	7.4	3.7	3.7	14.8	
	2년 이상	(86)	12.8	2.3	3.5	3.5	14.0	4.7		2.3	57.0	

21.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지원 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지원 수준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현행(345,000원/월)대로 유지해도 관계없다’는 응답이 2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과 연동시켜야한다’는 응답이 19.1%로 뒤를 이었다.

그 외 ‘400,000원대로 상향해야한다’는 응답은 16.60%, ‘500,000원대로 상향해야한다’는 응답은 14.0%, ‘600,000원대로 상향해야한다’는 응답은 2.5%를 각각 차지하였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Q21】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지원 수준 향상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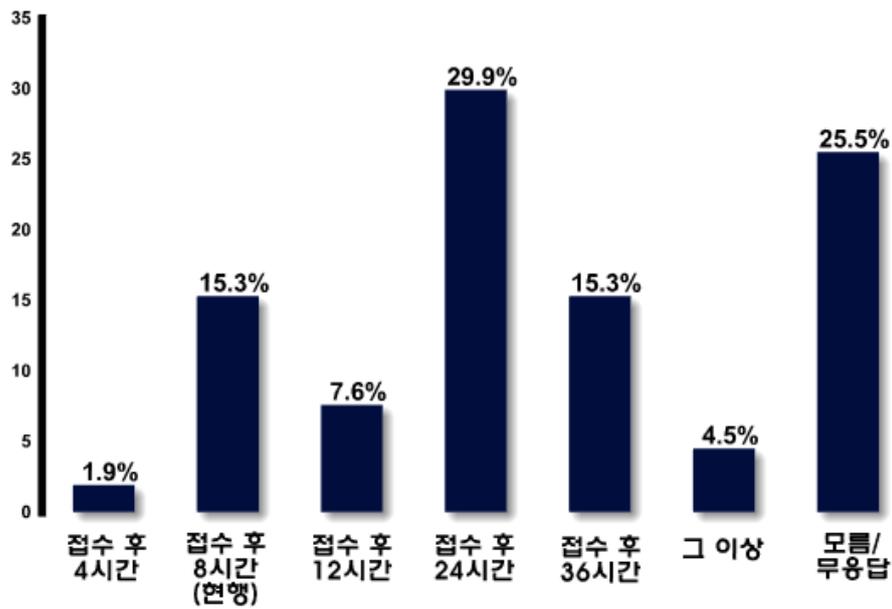
단위:%	사례 수	현행대로 유지해도 관계없음	400,000원 대로 상향해야함	500,000원 대로 상향해야함	600,000원 대로 상향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준과 연동시켜야 함	기타	모름/무응답	
☐ 전 ☐ 체 ☐	(157)	21.0	16.6	14.0	2.5	19.1	2.5	24.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34.8	17.4	2.2		17.4	2.2	26.1
	6대 광역시	(38)	18.4	23.7	10.5	2.6	15.8	5.3	23.7
	중소도시	(44)	13.6	11.4	18.2	6.8	20.5		29.5
	기타 농어촌	(29)	13.8	13.8	31.0		24.1	3.4	13.8
지역	서울	(31)	25.8	16.1	3.2		22.6		32.3
	부산	(5)			20.0		40.0	20.0	20.0
	대구	(6)	33.3	16.7	16.7			16.7	16.7
	인천	(3)			66.7		33.3		
	광주	(27)	18.5	29.6	7.4	7.4	11.1		25.9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5)	53.3	20.0			6.7	6.7	13.3
	강원	(5)		20.0	20.0		20.0	20.0	20.0
	충북	(2)	50.0				50.0		
	충남	(6)	16.7		33.3	33.3	16.7		
	전북	(4)	50.0		25.0		25.0		
	전남	(7)		28.6	57.1		14.3		
	경북	(3)	66.7				33.3		
경남	(38)	7.9	15.8	18.4		23.7		34.2	
성별	남성	(33)	18.2	24.2	12.1	9.1	12.1	6.1	18.2
	여성	(124)	21.8	14.5	14.5	0.8	21.0	1.6	25.8
연령별	30대	(29)	31.0	10.3	6.9		13.8	3.4	34.5
	40대	(75)	18.7	24.0	16.0	2.7	13.3	1.3	24.0
	50대	(43)	20.9	7.0	16.3	2.3	30.2	4.7	18.6
	60대	(8)	12.5	25.0	12.5	12.5	25.0		12.5
직급	6급	(12)	33.3		16.7	8.3	25.0		16.7
	7급	(63)	22.2	9.5	17.5	3.2	22.2	4.8	20.6
	8급	(54)	16.7	25.9	13.0	1.9	16.7		25.9
	9급	(17)	17.6	35.3	5.9		11.8	5.9	23.5
직렬	행정	(18)	38.9	11.1	22.2	5.6	11.1		11.1
	사회복지	(133)	18.0	18.0	12.0	2.3	19.5	3.0	27.1
	보건	(6)	33.3		33.3		33.3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50.0		33.3
	1년~3년 이하	(13)	38.5	30.8	7.7				23.1
	3년~5년 이하	(27)	25.9	22.2	3.7		3.7	3.7	40.7
	5년~7년 이하	(32)	12.5	25.0	25.0	6.3	21.9		9.4
	7년 이상	(26)	15.4	15.4	15.4		26.9	7.7	19.2
	무응답(응답거부)	(44)	25.0	6.8	15.9	4.5	25.0	2.3	20.5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26.7	6.7	20.0	20.0	13.3		13.3
	3~6개월 미만	(6)	50.0		33.3		16.7		
	6~12개월 미만	(22)	31.8	22.7	4.5		18.2	9.1	13.6
	1년~2년 미만	(27)	18.5	18.5	22.2		22.2	3.7	14.8
	2년 이상	(86)	16.3	17.4	11.6	1.2	19.8		33.7

22.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접수 후 처리에 필요한 시간

현재 8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생계지원에 대해, 실제 사례에 비추어 본 필요시간을 응답하게 한 결과, ‘접수 후 24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접수 후 8시간 이내(현행)’과 ‘접수 후 36시간 내외’가 각각 15.3%로 같았고, 그 다음으로 ‘접수 후 12시간 이내’ 7.6%, ‘접수 후 4시간 이내’ 1.9%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그 이상(3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4.5%, ‘잘 모르거나 무응답’은 25.5%였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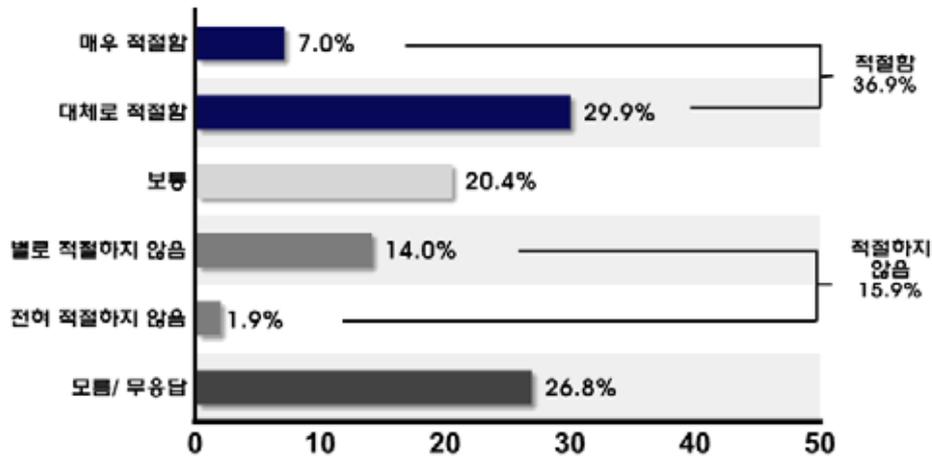
【Q22】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접수 후 처리에 필요한 시간

단위:%	사례 수	접수 후 4시간 이내	접수 후 8시간 이내(현행)	접수 후 12시간 이내	접수 후 24시간 이내	접수 후 36시간 내외	그 이상	모름/ 무응답	
전 체	(157)	1.9	15.3	7.6	29.9	15.3	4.5	25.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2.2	10.9	8.7	19.6	23.9	8.7	26.1
	6대 광역시	(38)		23.7	5.3	31.6	10.5	2.6	26.3
	중소도시	(44)	4.5	20.5	9.1	25.0	9.1	4.5	27.3
	기타 농어촌	(29)		3.4	6.9	51.7	17.2		20.7
지역	서울	(31)	3.2	12.9	9.7	19.4	12.9	9.7	32.3
	부산	(5)				60.0	20.0		20.0
	대구	(6)		16.7	16.7	50.0			16.7
	인천	(3)		66.7	33.3				
	광주	(27)		25.9		25.9	18.5		29.6
	대전	(1)							100.0
	울산	(4)				25.0		25.0	50.0
	경기	(15)		6.7	6.7	20.0	46.7	6.7	13.3
	강원	(5)		20.0		20.0	20.0		40.0
	충북	(2)				100.0			
	충남	(6)			16.7	33.3	33.3	16.7	
	전북	(4)				75.0		25.0	
	전남	(7)		14.3	14.3	42.9	28.6		
	경북	(3)		33.3		66.7			
	경남	(38)	5.3	15.8	10.5	28.9	5.3		34.2
성별	남성	(33)	9.1	21.2	3.0	39.4	12.1		15.2
	여성	(124)		13.7	8.9	27.4	16.1	5.6	28.2
연령별	30대	(29)		6.9	6.9	24.1	13.8	3.4	44.8
	40대	(75)	2.7	13.3	10.7	29.3	14.7	5.3	24.0
	50대	(43)	2.3	23.3	2.3	37.2	14.0	4.7	16.3
	60대	(8)		25.0		25.0	37.5		12.5
직급	6급	(12)		25.0		25.0	33.3		16.7
	7급	(63)	1.6	15.9	1.6	39.7	14.3	7.9	19.0
	8급	(54)	1.9	13.0	14.8	22.2	16.7	1.9	29.6
	9급	(17)	5.9	11.8	11.8	35.3	5.9	5.9	23.5
직렬	행정	(18)		11.1	5.6	44.4	22.2	5.6	11.1
	사회복지	(133)	2.3	15.8	8.3	27.8	12.8	4.5	28.6
	보건	(6)		16.7		33.3	50.0		
근속연수	1년 이하	(6)			16.7	33.3			50.0
	1년~3년 이하	(13)	7.7	7.7	15.4	23.1	15.4	7.7	23.1
	3년~5년 이하	(27)	3.7	7.4	3.7	18.5	22.2		44.4
	5년~7년 이하	(32)		15.6	18.8	28.1	12.5	9.4	15.6
	7년 이상	(26)	3.8	19.2	3.8	34.6	15.4	7.7	15.4
	무응답(응답거부)	(44)		20.5		40.9	18.2	2.3	18.2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13.3	6.7	40.0	26.7		13.3
	3~6개월 미만	(6)			16.7	50.0	33.3		
	6~12개월 미만	(22)		18.2	4.5	36.4	18.2	4.5	18.2
	1년~2년 미만	(27)	3.7	7.4	11.1	37.0	18.5	11.1	11.1
	2년 이상	(86)	2.3	17.4	7.0	23.3	10.5	3.5	36.0

23.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횟수(총 3회)에 대한 의견

현재 총 3회인 지원 횟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6.9%(매우 7.0% + 대체로 29.9%)였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9%(별로 14.0% + 전혀 1.9%)였다.

그 외 ‘보통’이라는 응답은 20.4%, ‘잘 모름’은 26.8%로 응답되었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Q23】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횟수(총 3회)에 대한 의견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평균 점 Mean)	
전 체	(157)	7.0	29.9	20.4	14.0	1.9	1.9	36.9	20.4	15.9	24.8	3.3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8.7	19.6	28.3	10.9	2.2	4.3	28.3	28.3	13.0	26.1	3.31
	6대 광역시	(38)	10.5	28.9	7.9	21.1	2.6	2.6	39.5	7.9	23.7	26.3	3.33
	중소도시	(44)	4.5	36.4	20.5	11.4			40.9	20.5	11.4	27.3	3.47
	기타 농어촌	(29)	3.4	37.9	24.1	13.8	3.4		41.4	24.1	17.2	17.2	3.29
지역	서울	(31)	6.5	19.4	22.6	9.7	3.2	3.2	25.8	22.6	12.9	35.5	3.26
	부산	(5)	20.0	40.0		20.0			60.0		20.0	20.0	3.75
	대구	(6)		33.3		50.0			33.3		50.0	16.7	2.80
	인천	(3)	33.3			33.3			33.3		33.3	33.3	3.50
	광주	(27)	7.4	37.0	14.8	11.1			44.4	14.8	11.1	29.6	3.58
	대전	(1)										100.0	.
	울산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경기	(15)	13.3	20.0	40.0	13.3		6.7	33.3	40.0	13.3	6.7	3.38
	강원	(5)		40.0		20.0			40.0		20.0	40.0	3.33
	충북	(2)		100.0					100.0				4.00
	충남	(6)		66.7	16.7		16.7		66.7	16.7	16.7		3.33
	전북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전남	(7)	14.3	57.1	28.6				71.4	28.6			3.86
	경북	(3)			66.7	33.3				66.7	33.3		2.67
경남	(38)	2.6	26.3	23.7	15.8			28.9	23.7	15.8	31.6	3.23	
성별	남성	(33)	12.1	33.3	21.2	12.1			45.5	21.2	12.1	21.2	3.58
	여성	(124)	5.6	29.0	20.2	14.5	2.4	2.4	34.7	20.2	16.9	25.8	3.29
연령별	30대	(29)	3.4	24.1	13.8	13.8	3.4		27.6	13.8	17.2	41.4	3.18
	40대	(75)	6.7	25.3	24.0	16.0	1.3	4.0	32.0	24.0	17.3	22.7	3.27
	50대	(43)	9.3	37.2	18.6	14.0	2.3		46.5	18.6	16.3	18.6	3.46
	60대	(8)	12.5	62.5	12.5				75.0	12.5		12.5	4.00
직급	6급	(12)	8.3	41.7	25.0				50.0	25.0		25.0	3.78
	7급	(63)	7.9	34.9	19.0	15.9	1.6		42.9	19.0	17.5	20.6	3.40
	8급	(54)	7.4	18.5	22.2	14.8	3.7	5.6	25.9	22.2	18.5	27.8	3.17
	9급	(17)	5.9	47.1	11.8	23.5			52.9	11.8	23.5	11.8	3.40
직렬	행정	(18)	5.6	38.9	22.2	16.7		5.6	44.4	22.2	16.7	11.1	3.40
	사회복지	(133)	6.8	28.6	18.8	14.3	2.3	1.5	35.3	18.8	16.5	27.8	3.33
	보건	(6)	16.7	33.3	50.0				50.0	50.0			3.67
근속 연수	1년 이하	(6)		33.3	16.7	16.7			33.3	16.7	16.7	33.3	3.25
	1년~3년 이하	(13)	7.7	30.8	30.8	7.7	7.7		38.5	30.8	15.4	15.4	3.27
	3년~5년 이하	(27)	7.4	7.4	18.5	18.5		7.4	14.8	18.5	18.5	40.7	3.07
	5년~7년 이하	(32)	6.3	34.4	28.1	15.6	3.1		40.6	28.1	18.8	12.5	3.29
	7년 이상	(26)		30.8	15.4	23.1	3.8	3.8	30.8	15.4	26.9	23.1	3.00
	무응답(응답거부)	(44)	13.6	38.6	18.2	9.1			52.3	18.2	9.1	20.5	3.71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53.3	26.7				60.0	26.7		13.3	3.77
	3~6개월 미만	(6)	33.3		50.0	16.7			33.3	50.0	16.7		3.50
	6~12개월 미만	(22)	4.5	31.8	27.3	22.7			36.4	27.3	22.7	13.6	3.21
	1년~2년 미만	(27)	11.1	40.7	11.1	18.5	3.7	3.7	51.9	11.1	22.2	11.1	3.43
2년 이상	(86)	4.7	24.4	18.6	11.6	2.3	2.3	29.1	18.6	14.0	36.0	3.28	

24.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점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본 결과, 지원방법 차원에서는 ‘사전-사후조사의 체계화’, 지원 규모와 금액 차원에서는 ‘지원 금액 및 한도 향상’, 지원기간에서는 ‘기간 및 횟수 연장’이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No	지원방법		지원 규모		지원 기간	
	내용	비율	내용	비율	내용	비율
1	사전-사후조사의 체계화	3.8%	지원 금액/한도향상	11.5%	기간/횟수 연장	6.4%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2.5%	현재가 적당	5.7%	판단기준 모호하여 객관적 기준 필요	3.8%
3	지침이 더 명확해야 한다	1.9%				
4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필요	1.9%	분류별 기준 설정	1.9%	긴급상황 종료시까지 (기간/횟수 제한)	2.5%
5	수급자의 해이 막기 위해 모니터링 필요	1.3%	선정기준 완화	1.9%	수급자특성별 차등화	2.5%
6	연료지원 등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1.3%	현물지원 확대	0.6%	자활의지 고취 및 구직 독려	0.6%
7	신청이전 발생 금액 보전 방안	1.3%				
8	미부양가족 등 예외조항 필요	0.6%	사전-사후조사의 체계화	0.6%	기타	3.2%
9	부양 의무자 기준 설정	0.6%	기타	3.8%	현행 만족	5.7%
10	기타	7%				
11	현행 만족	6.4%				
	모름/ 무응답	71.3%	모름/ 무응답	73.9%	모름/ 무응답	75.2%

(Base: 긴급복지지원법 담당자 157명)

【Q24_1】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수	수급자 해이 막기 위해 모니터 링 필요	지 침 확 해 야 함	직 접 달 하 기 어 려 운 경 우 생	미 부 양 가 족 등 의 조 항 요	신 청 이 발 생 금 액 보 조 방 안	사 전- 사 후 조 사의 체 계 화	부 양 의 무 자 기 준 경	지 원 대 상 정 준 화	중 복 지 원 에 대 한 제 한 필 요	현 행 만 족	기 타	모 름/ 무 응 답	
■ 전	■ 체 ■	(157)	1.3	1.9	1.3	0.6	1.3	3.8	0.6	2.5	1.9	6.4	7.0	71.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4.3	2.2	2.2		2.2	4.3			8.7	10.9		65.2
	6대 광역시	(38)		5.3				2.6		5.3	2.6	5.3	5.3	73.7
	중소도시	(44)			2.3		2.3	4.5			2.3	4.5	6.8	77.3
	기타 농어촌	(29)				3.4		3.4	3.4	6.9	3.4	6.9	3.4	69.0
지역	서울	(31)	3.2	3.2	3.2			3.2				6.5	9.7	71.0
	부산	(5)		20.0										80.0
	대구	(6)		16.7										83.3
	인천	(3)												100.0
	광주	(27)						3.7		7.4		7.4	7.4	74.1
	대전	(1)												100.0
	울산	(4)									25.0			75.0
	경기	(15)	6.7				6.7	6.7				13.3	13.3	53.3
	강원	(5)			20.0								20.0	60.0
	충북	(2)				50.0						50.0		
	충남	(6)					16.7	16.7			16.7	16.7		33.3
	전북	(4)									25.0		25.0	50.0
	전남	(7)						14.3		28.6		14.3		42.9
경북	(3)						33.3	33.3				33.3		
경남	(38)										2.6	2.6	94.7	
성별	남성	(33)	3.0				3.0	6.1		3.0		3.0	3.0	78.8
	여성	(124)	0.8	2.4	1.6	0.8	0.8	3.2	0.8	2.4	2.4	7.3	8.1	69.4
연령별	30대	(29)	3.4									6.9	6.9	82.8
	40대	(75)		2.7	2.7		2.7	6.7		4.0	1.3	6.7	8.0	65.3
	50대	(43)	2.3	2.3		2.3		2.3	2.3	2.3	4.7	7.0	2.3	72.1
	60대	(8)											25.0	75.0
직급	6급	(12)											8.3	91.7
	7급	(63)	1.6	4.8		1.6		6.3	1.6	1.6	3.2	4.8	6.3	68.3
	8급	(54)			3.7		3.7	3.7		5.6	1.9	7.4	3.7	70.4
	9급	(17)	5.9									11.8	23.5	58.8
직렬	행 정	(18)		5.6				5.6					16.7	72.2
	사회복지	(133)	1.5	1.5	1.5	0.8	1.5	3.8		3.0	2.3	6.0	5.3	72.9
	보 건	(6)							16.7			33.3	16.7	33.3
근속 연수	1년 이하	(6)											33.3	66.7
	1년~3년 이하	(13)									15.4	23.1		61.5
	3년~5년 이하	(27)	3.7				3.7	3.7				3.7		85.2
	5년~7년 이하	(32)			3.1		3.1	6.3		6.3	3.1	9.4	6.3	62.5
	7년 이상	(26)	3.8	7.7	3.8	3.8		3.8		3.8	3.8	3.8		65.4
무응답(응답거부)	(44)		2.3				4.5	2.3	2.3	2.3	4.5	9.1	72.7	
담당 기간	3개월 미만	(15)								6.7		6.7	6.7	80.0
	3~6개월 미만	(6)					16.7							83.3
	6~12개월 미만	(22)	4.5		4.5			18.2	4.5	9.1		18.2	13.6	27.3
	1년~2년 미만	(27)		7.4	3.7		3.7				3.7	7.4	18.5	55.6
2년 이상	(86)	1.2	1.2		1.2		2.3		1.2	2.3	3.5	2.3	84.9	

【Q24_2】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금액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 수	현금지원 줄이고 현물지원 확대	지원금액/ 한도향상	분류별 기준 설정	사전사후 조사의 체계화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현재가 적당	기타	
□ 전 체 □	(157)	0.6	11.5	1.9	0.6	1.9	5.7	3.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2.2	2.2	2.2		10.9	6.5	
	6대 광역시	(38)		15.8	2.6	2.6	2.6	5.3	
	중소도시	(44)		15.9			2.3	2.3	
	기타 농어촌	(29)		13.8	3.4		6.9	3.4	
지역	서울	(31)	3.2				9.7	3.2	
	부산	(5)		20.0	20.0				
	대구	(6)					16.7	16.7	
	인천	(3)		33.3					
	광주	(27)		14.8		3.7			
	대전	(1)							
	울산	(4)						25.0	
	경기	(15)		6.7	6.7			13.3	13.3
	강원	(5)		80.0					
	충북	(2)					50.0		
	충남	(6)		50.0				16.7	16.7
	전북	(4)		25.0			25.0		
전남	(7)		28.6	14.3		14.3			
경북	(3)						33.3		
경남	(38)		2.6				2.6		
성별	남성	(33)		12.1			6.1	3.0	
	여성	(124)	0.8	11.3	2.4	0.8	2.4	5.6	4.0
연령별	30대	(29)	3.4	3.4			10.3	6.9	
	40대	(75)		17.3	1.3		1.3	5.3	2.7
	50대	(43)		7.0	4.7	2.3	4.7	4.7	2.3
	60대	(8)		12.5					12.5
직급	6급	(12)						8.3	
	7급	(63)		11.1	3.2	1.6	3.2	9.5	1.6
	8급	(54)		18.5			1.9	1.9	5.6
	9급	(17)	5.9	5.9	5.9			11.8	5.9
직렬	행정	(18)		11.1				5.6	5.6
	사회복지	(133)	0.8	11.3	2.3	0.8	1.5	5.3	3.8
	보건	(6)		16.7			16.7	1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1년~3년 이하	(13)		7.7	7.7			23.1	
	3년~5년 이하	(27)	3.7	3.7					11.1
	5년~7년 이하	(32)		31.3			3.1	9.4	3.1
	7년 이상	(26)		3.8				7.7	3.8
	무응답(응답거부)	(44)		11.4	4.5	2.3	4.5	2.3	2.3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20.0					
	3~6개월 미만	(6)		16.7				16.7	
	6~12개월 미만	(22)		22.7	4.5	4.5	9.1	18.2	4.5
	1년~2년 미만	(27)		18.5	7.4		3.7	7.4	
	2년 이상	(86)	1.2	4.7				3.5	3.5

【Q24_3】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점

단위:%	사례 수	긴급 상황 종료까지 (기간/횟수 제한)	기간/ 횟수 연장	수급자 특성별 차등화	자활의지 고취 및 구직독려	판단기준 보호하여 객관적 기준 필요	현행 만족	기타	
□ 전 체 □	(157)	2.5	6.4	2.5	0.6	3.8	5.7	3.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6)	4.3	4.3	4.3		2.2	10.9	4.3
	6대 광역시	(38)	2.6	7.9	2.6	2.6	7.9		2.6
	중소도시	(44)	2.3	6.8			4.5	2.3	2.3
	기타 농어촌	(29)		6.9	3.4			10.3	3.4
지역	서울	(31)	3.2	6.5	3.2			9.7	3.2
	부산	(5)		20.0	20.0		20.0		
	대구	(6)		16.7		16.7			
	인천	(3)					33.3		
	광주	(27)		3.7			3.7		3.7
	대전	(1)							
	울산	(4)	25.0						
	경기	(15)	6.7		6.7		6.7	13.3	6.7
	강원	(5)		20.0			20.0	20.0	
	충북	(2)							50.0
	충남	(6)		33.3				16.7	
	전북	(4)	25.0						
	전남	(7)			14.3			28.6	
	경북	(3)		33.3					33.3
경남	(38)		2.6			2.6			
성별	남성	(33)		12.1				6.1	6.1
	여성	(124)	3.2	4.8	3.2	0.8	4.8	5.6	2.4
연령별	30대	(29)	3.4			3.4		13.8	
	40대	(75)	2.7	8.0	2.7		6.7	4.0	4.0
	50대	(43)	2.3	9.3	4.7		2.3	4.7	2.3
	60대	(8)							12.5
직급	6급	(12)							8.3
	7급	(63)	4.8	9.5	4.8		3.2	4.8	3.2
	8급	(54)		5.6			7.4	5.6	1.9
	9급	(17)	5.9	5.9	5.9	5.9		17.6	5.9
직렬	행정	(18)	5.6	16.7					16.7
	사회복지	(133)	2.3	4.5	3.0	0.8	3.8	6.0	0.8
	보건	(6)		16.7			16.7	16.7	16.7
근속연수	1년 이하	(6)							
	1년~3년 이하	(13)		7.7	7.7			30.8	7.7
	3년~5년 이하	(27)	3.7	3.7		3.7		3.7	
	5년~7년 이하	(32)	3.1	6.3			12.5	6.3	3.1
	7년 이상	(26)	3.8	15.4	3.8		3.8	3.8	
무응답(응답거부)	(44)	2.3	4.5	4.5		2.3	2.3	6.8	
담당기간	3개월 미만	(15)		13.3					
	3~6개월 미만	(6)		16.7					
	6~12개월 미만	(22)	4.5	9.1	4.5		4.5	22.7	13.6
	1년~2년 미만	(27)	3.7	11.1	7.4		11.1	7.4	3.7
	2년 이상	(86)	2.3	2.3	1.2		2.3	2.3	1.2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표】 응답자 특성 _ 기초 수급자 가족의 분포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손자녀		기타 (삼촌,고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전 체 ■		405		14		43		72		51		351		30		3	
성별	남성	137	33.8	5	35.7	16	37.2	36	50.0	29	56.9	193	55.0	14	46.7	3	100
	여성	268	66.2	9	64.3	27	62.8	36	50.0	22	43.1	158	45.0	16	53.3	0	0.0
연령	10대이하	0	0.0	0	0.0	0	0.0	0	0.0	2	3.9	72	20.5	2	6.7	0	0.0
	10대	9	2.2	1	7.1	0	0.0	1	1.4	19	37.3	195	55.6	22	73.3	1	33.3
	20대	22	5.4	0	0.0	1	2.3	1	1.4	6	11.8	54	15.4	4	13.3	0	0.0
	30대	55	13.6	0	0.0	3	7.0	8	11.1	2	3.9	6	1.7	0	0.0	0	0.0
	40대	108	26.7	0	0.0	6	14.0	29	40.3	9	17.6	8	2.3	0	0.0	2	66.7
	50대	75	18.5	2	14.3	3	7.0	15	20.8	7	13.7	7	2.0	0	0.0	0	0.0
	60대	53	13.1	1	7.1	3	7.0	7	9.7	4	7.8	1	0.3	0	0.0	0	0.0
	70대	57	14.1	10	71.4	16	37.2	5	6.9	0	0.0	0	0.0	0	0.0	0	0.0
	80대이상	24	5.9	0	0.0	9	20.9	1	1.4	0	0.0	0	0.0	0	0.0	0	0.0
현재 하는 일	상시고용	18	4.4	0	0.0	1	2.3	4	5.6	4	7.8	7	2.0	0	0.0	0	0.0
	임시고용	12	3.0	1	7.1	0	0.0	3	4.2	1	2.0	8	2.3	4	13.3	0	0.0
	일용직 (파출부, 일용잡부)	14	3.5	1	7.1	0	0.0	6	8.3	1	2.0	1	0.3	0	0.0	0	0.0
	자영업 (노점행상, 농어업등)	13	3.2	0	0.0	3	7.0	4	5.6	1	2.0	0	0.0	0	0.0	1	33.3
	자활근로	91	22.5	0	0.0	0	0.0	6	8.3	1	2.0	0	0.0	0	0.0	0	0.0
	실업	17	4.2	1	7.1	1	2.3	10	13.9	5	9.8	1	0.3	0	0.0	0	0.0
	비경제활동 (근로불가능)	181	44.7	6	42.9	22	51.2	27	37.5	13	25.5	40	11.4	5	16.7	0	0.0
	기타	17	4.2	3	21.4	5	11.6	6	8.3	14	27.5	259	73.8	17	56.7	2	66.7
	모름/무응답	42	1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동거 여부	함께 살고 있다	405	100	10	71.4	36	83.7	66	91.7	31	60.8	314	89.5	28	93.3	1	33.3
	함께 살고 있지 않다		0.0	3	21.4	7	16.3	4	5.6	20	39.2	26	7.4	2	6.7	1	33.3
만성 질환 여부	없고 있다	235	58.0	5	35.7	20	46.5	32	44.4	4	7.8	20	5.7	0	0.0	0	0.0
	없고 있지 않다	167	41.2	8	57.1	23	53.5	35	48.6	47	92.2	299	85.2	25	83.3	2	66.7
	모름/무응답	3	0.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27	31.4	2	14.3	15	34.9	13	18.1	9	17.6	21	6.0	3	10.0	0	0.0
	장애가 없다	274	67.7	11	78.6	26	60.5	52	72.2	41	80.4	292	83.2	23	76.7	2	66.7
	모름/무응답	4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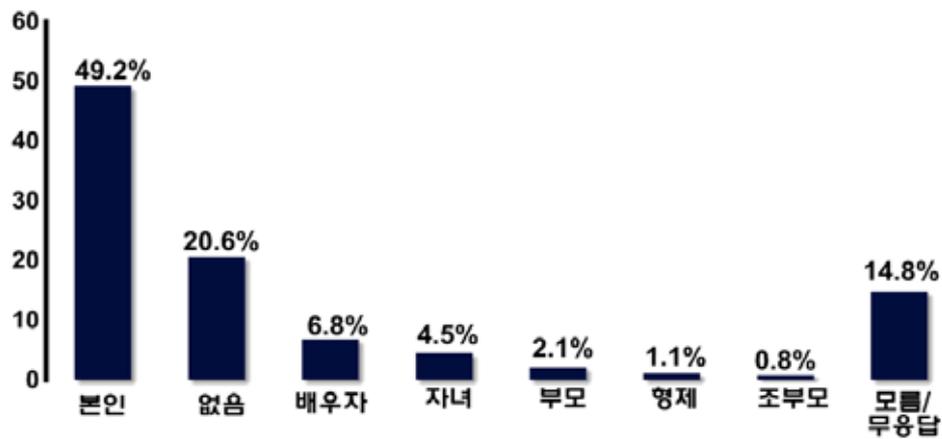
【표】 응답자 특성 _ 기초 탈락자 가족의 분포

		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손자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전 체 ■		122		16		35		10		109		7	
성별	남성	40	32.8	4	25.0	18	51.4	6	60.0	60	55.0	2	28.6
	여성	82	67.2	12	75.0	17	48.6	4	40.0	49	45.0	5	71.4
연령	10대이하	1	0.8	0	0.0	0	0.0	0	0.0	16	14.7	1	14.3
	10대	1	0.8	0	0.0	1	2.9	2	20.0	46	42.2	6	85.7
	20대	15	12.3	0	0.0	2	5.7	6	60.0	22	20.2	0	0.0
	30대	13	10.7	0	0.0	3	8.6	2	20.0	6	5.5	0	0.0
	40대	28	23.0	3	18.8	11	31.4	0	0.0	9	8.3	0	0.0
	50대	27	22.1	6	37.5	7	20.0	0	0.0	6	5.5	0	0.0
	60대	11	9.0	1	6.3	5	14.3	0	0.0	2	1.8	0	0.0
	70대	21	17.2	2	12.5	5	14.3	0	0.0	0	0.0	0	0.0
	80대이상	5	4.1	4	25.0	0	0.0	0	0.0	0	0.0	0	0.0
현재 하는 일	상시고용	17	13.9	3	18.8	8	22.9	0	0.0	25	22.9	0	0.0
	임시고용	14	11.5	1	6.3	1	2.9	0	0.0	6	5.5	0	0.0
	일용직 (파출부,일용잡부)	13	10.7	1	6.3	2	5.7	1	10.0	7	6.4	0	0.0
	자영업 (노점행상,농어업등)	1	0.8	1	6.3	0	0.0	0	0.0	0	0.0	0	0.0
	자활근로	13	10.7	0	0.0	0	0.0	0	0.0	0	0.0	0	0.0
	실업	4	3.3	0	0.0	6	17.1	1	10.0	3	2.8	0	0.0
	비경제활동 (근로불가능)	32	26.2	5	31.3	10	28.6	0	0.0	12	11.0	3	42.9
	기타	18	14.8	5	31.3	6	17.1	5	50.0	47	43.1	4	57.1
	모름/무응답	11	9.0	0	0.0	0	0.0	0	0.0	0	0.0	0	0.0
동거 여부	함께살고있다	122	100	13	81.3	31	88.6	6	60.0	72	66.1	6	85.7
	함께살고있지않다		0.0	1	6.3	0	0.0	0	0.0	28	25.7	0	0.0
만성질 환여부	없고있다	13	10.7	3	18.8	14	40.0	0	0.0	2	1.8	0	0.0
	없고있지않다	16	13.1	9	56.3	15	42.9	6	60.0	76	69.7	6	85.7
장애 여부	장애가있다	8	6.6	3	18.8	6	17.1	0	0.0	12	11.0	1	14.3
	장애가없다	22	18.0	8	50.0	20	57.1	6	60.0	64	58.7	5	71.4

1. 가구 내 주 소득자

가족 내 주 소득자를 질문한 결과, ‘본인’이라는 응답이 49.2%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구 내 소득자가 없다’는 응답도 20.6%로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6.8%, ‘자녀’ 4.5%, ‘부모’ 2.1%, ‘형제’ 1.1%, ‘조부모’ 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4.8%였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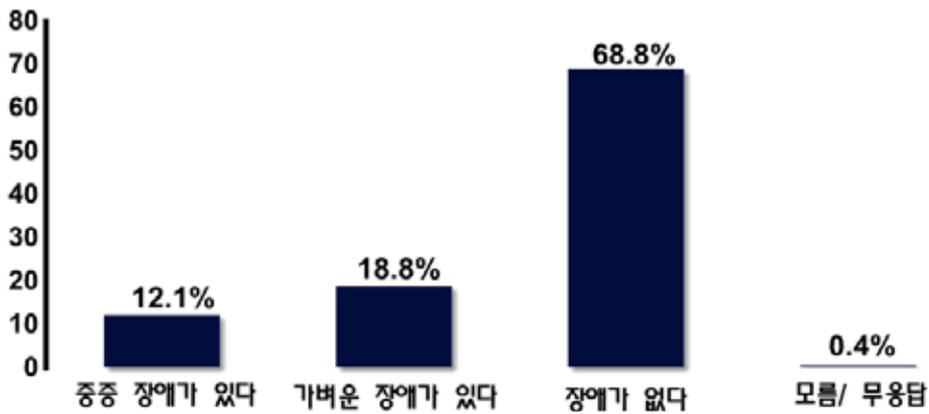
【표 1】주 소득자

단위:%		사례수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없음	모름/ 무응답
■ 전 체 ■		(528)	49.2	0.8	2.1	6.8	1.1	4.5	20.6	14.8
구분	기초 수급자	(405)	48.1	1.0	1.7	6.2	1.2	2.5	22.2	17.0
	기초 탈락자	(123)	52.8		3.3	8.9	0.8	11.4	15.4	7.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45.3		1.3	9.4	1.3	4.4	22.0	16.4
	6대 광역시	(79)	53.2	1.3		6.3	1.3	5.1	20.3	12.7
	중소도시	(170)	48.2	1.8	2.9	5.9	1.2	3.5	17.1	19.4
	기타 농어촌	(120)	53.3		3.3	5.0	0.8	5.8	24.2	7.5
성별	남성	(177)	42.9	0.6	4.0	6.2	1.1	4.0	22.6	18.6
	여성	(351)	52.4	0.9	1.1	7.1	1.1	4.8	19.7	12.8
연령별	10대	(11)	27.3	18.2	36.4				9.1	9.1
	20대	(37)	67.6	5.4	2.7	8.1	5.4	2.7	2.7	5.4
	30대	(68)	57.4		2.9	16.2	2.9	1.5	10.3	8.8
	40대	(136)	57.4		0.7	9.6		5.9	16.2	10.3
	50대	(103)	53.4		1.9	4.9	1.9	4.9	19.4	13.6
	60대	(64)	42.2			4.7		7.8	21.9	23.4
	70대	(78)	29.5		1.3	1.3		2.6	37.2	28.2
	80대 이상	(29)	31.0					6.9	48.3	13.8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88.6			8.6		2.9		
	임시고용	(26)	65.4		3.8	3.8		7.7	7.7	11.5
	일용직	(27)	77.8			3.7		3.7	7.4	7.4
	자영업	(14)	78.6		7.1		7.1	7.1		
	자활근로	(104)	85.6			8.7	1.9	1.0	1.0	1.9
	실업	(21)	28.6		9.5	14.3		4.8	14.3	28.6
	비경제활동	(213)	22.1	0.5	0.9	5.6	0.5	5.2	40.8	24.4
	기타	(35)	48.6	2.9	8.6	11.4		2.9	22.9	2.9
	모름/무응답	(53)	39.6	3.8	3.8	5.7	3.8	9.4	11.3	22.6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32.6		3.0	6.7	2.2	2.2	31.1	22.2
	장애가 없다	(296)	56.4	1.4	1.7	7.1	0.7	2.7	16.6	13.5
	모름/무응답	(4)	25.0							75.0
혼인 여부	기혼	(123)	35.0		0.8	28.5		8.1	16.3	11.4
	이혼 또는 별거	(146)	69.2		1.4		0.7	1.4	15.8	11.6
	사별 후 독신	(151)	43.7			0.7		6.6	26.5	22.5
	미혼 (19세 이상)	(83)	50.6	2.4	7.2		6.0	1.2	18.1	14.5
	그 외 기타	(17)	23.5	11.8	11.8				47.1	5.9
	모름/무응답	(8)	50.0					12.5	37.5	
학력	무학	(80)	37.5					3.8	35.0	23.8
	중졸이하	(200)	39.0	0.5	2.0	5.5		6.0	27.5	19.5
	고졸이하	(175)	62.3	0.6	2.3	9.7	2.3	3.4	10.9	8.6
	대졸이하	(60)	63.3	3.3	5.0	11.7	1.7	1.7	5.0	8.3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11)	45.5				9.1	18.2	27.3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51.8	1.3	3.1	6.2	0.9	4.0	19.0	13.7
	아파트	(138)	47.1		2.9	7.2	2.9	5.1	15.2	19.6
	다가구(연립)주택	(107)	45.8	0.9		7.5		4.7	29.0	12.1
	무허가주택	(13)	46.2						30.8	23.1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51.5			9.1		6.1	21.2	12.1
	모름/무응답	(9)	55.6					11.1	33.3	
주거 형태	자가	(134)	46.3	1.5	4.5	6.0	1.5	5.2	24.6	10.4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47.3		3.6	5.5		1.8	25.5	16.4
	월세	(140)	57.9	0.7	0.7	8.6	0.7	2.9	17.9	10.7
	장기(영구)임대	(108)	38.9		1.9	10.2	1.9	6.5	16.7	24.1
	기타	(76)	53.9	1.3		2.6		3.9	21.1	17.1
	모름/무응답	(14)	50.0				7.1	14.3	21.4	7.1

2. 본인의 장애여부

본인의 장애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68.8%,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30.9%(중증 장애 12.1% + 가벼운 장애 1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4%였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장애가 없다’(71.5%), ‘가벼운 장애가 있다’(22.8%), ‘중증 장애가 있다’(5.7%)의 분포를 보였으며, 기초탈락자의 경우 ‘장애가 없다’(67.9%), ‘가벼운 장애가 있다’(17.5%), ‘중증 장애가 있다’(14.1%)의 분포를 보여, 전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수급자 비율이 더 높았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2】 본인의 장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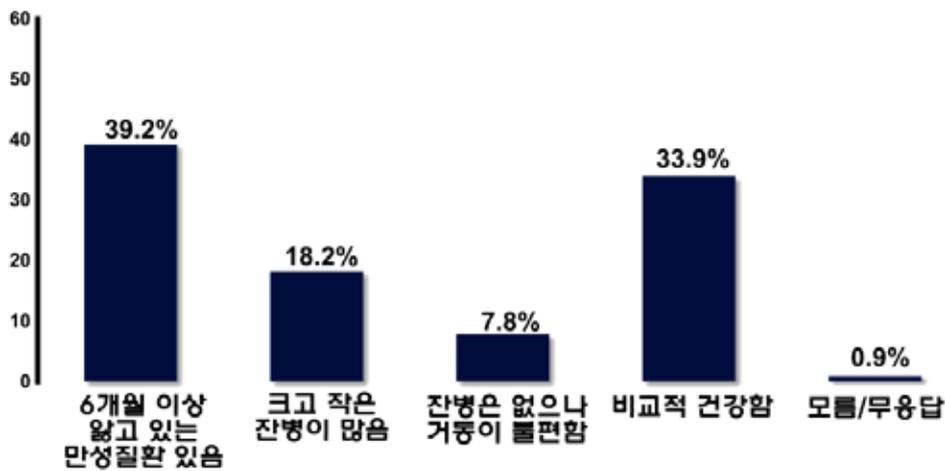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중증 장애가 있다	가벼운 장애가 있다	장애가 없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528)	12.1	18.8	68.8	0.4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4.1	17.5	67.9	0.5
	기초 탈락자	(123)	5.7	22.8	71.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5.7	18.9	65.4	
	6대 광역시	(79)	10.1	11.4	78.5	
	중소도시	(170)	10.6	16.5	72.4	0.6
	기타 농어촌	(120)	10.8	26.7	61.7	0.8
성별	남성	(177)	25.4	27.1	46.9	0.6
	여성	(351)	5.4	14.5	79.8	0.3
연령별	10대	(11)			100.0	
	20대	(37)	2.7	2.7	94.6	
	30대	(68)	17.6	4.4	77.9	
	40대	(136)	11.8	22.1	66.2	
	50대	(103)	18.4	28.2	53.4	
	60대	(64)	15.6	18.8	64.1	1.6
	70대	(78)	7.7	24.4	67.9	
	80대 이상	(29)		13.8	82.8	3.4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1.4	88.6	
	임시고용	(26)		15.4	84.6	
	일용직	(27)	3.7	14.8	81.5	
	자영업	(14)		21.4	78.6	
	자활근로	(104)	1.9	14.4	83.7	
	실업	(21)	14.3	23.8	61.9	
	비경제활동	(213)	23.0	23.5	52.6	0.9
	기타	(35)	11.4	14.3	74.3	
	모름/무응답	(53)	9.4	17.0	73.6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42.2	55.6	2.2	
	장애가 없다	(296)	0.3	0.7	99.0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 여부	기혼	(123)	10.6	26.0	63.4	
	이혼 또는 별거	(146)	11.0	18.5	69.9	0.7
	사별 후 독신	(151)	9.3	16.6	73.5	0.7
	미혼(19세 이상)	(83)	21.7	14.5	63.9	
	그 외 기타	(17)	5.9	5.9	88.2	
	모름/무응답	(8)	25.0	25.0	50.0	
학력	무학	(80)	8.8	23.8	67.5	
	중졸이하	(200)	14.0	22.5	62.5	1.0
	고졸이하	(175)	10.9	14.3	74.9	
	대졸이하	(60)	11.7	11.7	76.7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27.3	27.3	45.5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0.2	19.9	69.0	0.9
	아파트	(138)	13.8	10.9	75.4	
	다가구(연립)주택	(107)	11.2	17.8	71.0	
	무허가주택	(13)	15.4	53.8	30.8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18.2	30.3	51.5	
	모름/무응답	(9)	22.2	22.2	55.6	
주거 형태	자가	(134)	14.2	23.9	61.2	0.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7.3	12.7	80.0	
	월세	(140)	7.9	19.3	72.9	
	장기(영구)임대	(108)	18.5	12.0	69.4	
	기타	(76)	10.5	21.1	67.1	1.3
	모름/무응답	(14)	14.3	21.4	64.3	

3.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39.2%로 높은 편이며,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 18.2%,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하다’ 7.8% 순으로 응답되었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는 응답은 33.9%였으며, 그 외 ‘모름/무응답’은 0.9%였다.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은 기초 수급자(40.5%)가 기초 탈락자(35.0%)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기초 탈락자(35.8%)와 기초 수급자(33.3%)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 표 3 】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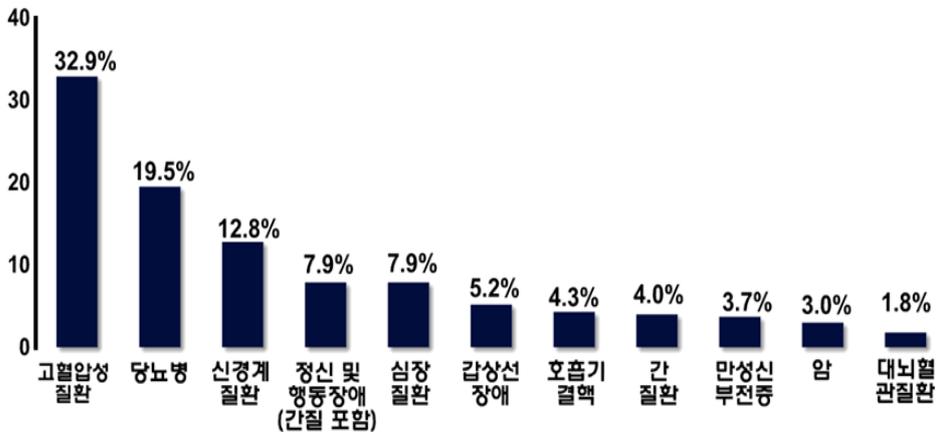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만성질환 있음	크고 작은 잔병 많음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함	비교적 건강한 편	모름/ 무응답
전 체	(528)	39.2	18.2	7.8	33.9	0.9
구분						
기초 수급자	(405)	40.5	17.5	7.7	33.3	1.0
기초 탈락자	(123)	35.0	20.3	8.1	35.8	0.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40.3	21.4	6.3	29.6	2.5
6대 광역시	(79)	38.0	19.0	11.4	31.6	
중소도시	(170)	36.5	14.7	8.2	40.6	
기타 농어촌	(120)	42.5	18.3	6.7	31.7	0.8
성별						
남성	(177)	46.3	13.6	12.4	26.0	1.7
여성	(351)	35.6	20.5	5.4	37.9	0.6
연령별						
10대	(11)	9.1	18.2		72.7	
20대	(37)	2.7	8.1		89.2	
30대	(68)	25.0	13.2	2.9	57.4	1.5
40대	(136)	35.3	18.4	5.1	40.4	0.7
50대	(103)	46.6	18.4	10.7	23.3	1.0
60대	(64)	56.3	21.9	10.9	10.9	
70대	(78)	53.8	20.5	10.3	12.8	2.6
80대 이상	(29)	44.8	27.6	20.7	6.9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14.3	5.7	80.0	
일시고용	(26)	19.2	11.5		69.2	
일용직	(27)	37.0	14.8	7.4	40.7	
자영업	(14)	50.0	14.3		35.7	
자활근로	(104)	23.1	20.2	3.8	51.9	1.0
실업	(21)	38.1	33.3		28.6	
비경제활동	(213)	54.5	15.5	13.1	15.0	1.9
기타	(35)	37.1	28.6	2.9	31.4	
모름/무응답	(53)	45.3	20.8	7.5	26.4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53.3	13.3	13.3	18.5	1.5
장애가 없다	(296)	34.5	19.6	4.4	40.9	0.7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혼인 여부						
기혼	(123)	38.2	22.0	8.1	30.1	1.6
이혼 또는 별거	(146)	37.7	16.4	6.8	39.0	
사별 후 독신	(151)	49.0	20.5	8.6	20.5	1.3
미혼(19세 이상)	(83)	24.1	15.7	7.2	51.8	1.2
그 외 기타	(17)	29.4	5.9	11.8	52.9	
모름/무응답	(8)	75.0			25.0	
학력						
무학	(80)	47.5	23.8	12.5	15.0	1.3
중졸이하	(200)	47.5	19.5	10.5	21.5	1.0
고졸이하	(175)	30.9	18.3	4.6	45.1	1.1
대졸이하	(60)	21.7	10.0	3.3	65.0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63.6			36.4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43.4	16.4	6.6	32.7	0.9
아파트	(138)	32.6	21.0	8.7	37.0	0.7
다가구(연립)주택	(107)	36.4	20.6	6.5	34.6	1.9
무허가주택	(13)	38.5	7.7	46.2	7.7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42.4	21.2		36.4	
모름/무응답	(9)	66.7			33.3	
주거 형태						
자가	(134)	38.8	14.9	11.9	33.6	0.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41.8	14.5	3.6	36.4	3.6
월세	(140)	39.3	17.9	5.0	37.1	0.7
장기(영구)임대	(108)	38.0	24.1	8.3	28.7	0.9
기타	(76)	36.8	21.1	7.9	34.2	
모름/무응답	(14)	57.1		7.1	35.7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N=328명)에게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이 32.9%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19.5%) > ‘신경계질환’(12.8%) > ‘정신 및 행동장애’, ‘심장질환’(7.9%) > ‘갑상선 장애’(5.2%) > ‘호흡기 결핵’(4.3%) > ‘간 질환’(4.0%) > ‘만성신부전증’(3.7%) > ‘암’(3.0%) ‘대뇌혈관질환’(1.8%)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그 외 기타 질환이라는 응답은 46.0%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응답된 ‘고혈압성 질환’이라는 응답은 기초 수급자(33.5%)와 기초 탈락자(31.1%)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병’의 경우 기초 수급자(21.3%)와 기초 탈락자(13.5%)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신경계질환’은 기초 탈락자(13.5%)와 기초 수급자(12.6%)에게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Base: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 328명)

【표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단위:%	사례수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 질환
■ 전 체 ■		(328)	32.9	19.5	7.9	4.3	7.9	1.8
구분	기초 수급자	(254)	33.5	21.3	10.2	4.3	7.9	1.6
	기초 탈락자	(74)	31.1	13.5		4.1	8.1	2.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06)	34.0	25.5	8.5	1.9	9.4	2.8
	6대 광역시	(51)	35.3	13.7	5.9	3.9	3.9	
	중소도시	(91)	26.4	19.8	4.4	6.6	4.4	2.2
	기타 농어촌	(80)	37.5	15.0	12.5	5.0	12.5	1.3
성별	남성	(118)	32.2	22.0	14.4	5.1	10.2	4.2
	여성	(210)	33.3	18.1	4.3	3.8	6.7	0.5
연령별	10대	(2)						50.0
	20대	(4)						
	30대	(28)	17.9	3.6	28.6	10.7		
	40대	(77)	13.0	14.3	15.6	3.9	6.5	1.3
	50대	(74)	32.4	21.6	5.4	4.1	6.8	4.1
	60대	(55)	43.6	20.0	1.8	3.6	10.9	
	70대	(60)	53.3	30.0		3.3	6.7	1.7
	80대 이상	(27)	44.4	22.2	3.7	3.7	18.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7)	28.6			14.3		
	일시고용	(8)	37.5	12.5				
	일용직	(16)	18.8	12.5	6.3	6.3	12.5	
	자영업	(9)	22.2	11.1	11.1	11.1	11.1	
	자활근로	(48)	25.0	10.4	6.3	6.3	4.2	
	실업	(13)	15.4	23.1	30.8		15.4	
	비경제활동	(169)	38.5	22.5	10.1	4.7	10.1	2.4
	기타	(22)	18.2	22.7			9.1	9.1
	모름/무응답	(36)	41.7	2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99)	37.4	20.2	17.2	2.0	12.1	4.0
	장애가 없다	(169)	29.6	21.3	5.3	5.3	6.5	0.6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혼인 여부	기혼	(80)	35.0	20.0	3.8	5.0	8.8	1.3
	이혼 또는 별거	(85)	23.5	16.5	8.2	7.1	7.1	4.7
	사별 후 독신	(114)	42.1	24.6	2.6	2.6	9.6	
	미혼(19세 이상)	(36)	25.0	11.1	30.6	2.8	5.6	
	그 외 기타	(7)	14.3	14.3	28.6			14.3
	모름/무응답	(6)	33.3	16.7				
학력	무학	(65)	43.1	24.6	4.6	1.5	10.8	
	중졸이하	(148)	36.5	22.3	6.8	6.8	8.8	2.0
	고졸이하	(89)	23.6	13.5	10.1	3.4	4.5	2.2
	대졸이하	(19)	15.8	10.5	21.1		10.5	5.3
	모름/무응답	(7)	28.6	14.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4)	34.0	16.7	7.6	6.9	8.3	2.8
	아파트	(82)	23.2	19.5	11.0		6.1	1.2
	다가구(연립)주택	(66)	40.9	25.8	4.5	4.5	7.6	
	무허가주택	(9)	44.4	22.2		11.1	22.2	
	구호시설	(1)						
	기타	(20)	35.0	20.0	15.0		10.0	5.0
	모름/무응답	(6)	33.3	16.7				
주거 형태	자가	(80)	36.3	16.3	8.8	5.0	7.5	2.5
	전세(1억 이상)	(1)						
	전세(1억 미만)	(33)	27.3	33.3		9.1	3.0	
	월세	(83)	41.0	22.9	6.0	3.6	10.8	2.4
	장기(영구)임대	(74)	27.0	18.9	12.2	2.7	6.8	
	기타	(48)	29.2	8.3	10.4	4.2	10.4	4.2
	모름/무응답	(9)	22.2	33.3				

【표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_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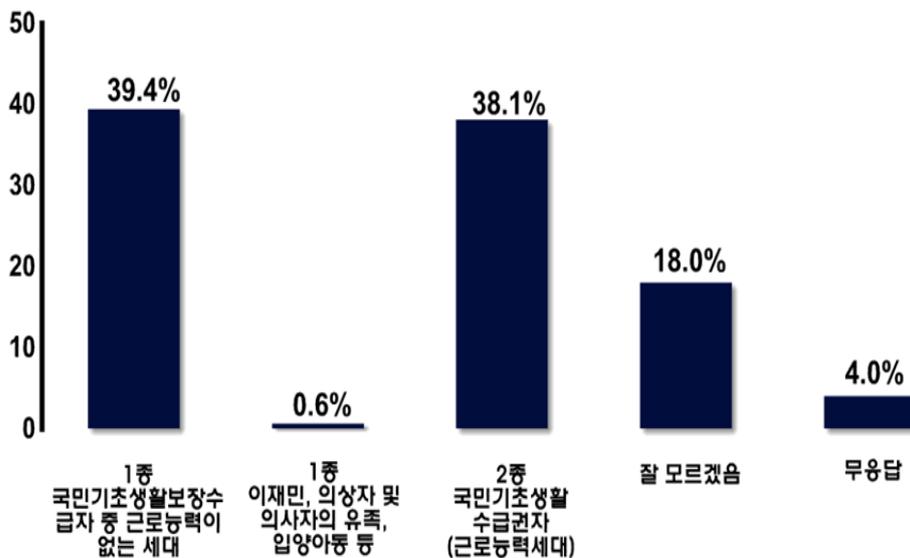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신경계질환	암	감상선의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기타
☐ 전	☐ 체 ☐	(328)	12.8	3.0	5.2	4.0	3.7	46.0
구분	기초 수급자	(254)	12.6	3.1	5.5	4.3	2.8	44.1
	기초 탈락자	(74)	13.5	2.7	4.1	2.7	6.8	52.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06)	13.2	2.8	7.5	2.8	4.7	40.6
	6대 광역시	(51)	13.7	3.9	9.8	2.0		47.1
	중소도시	(91)	14.3	4.4	3.3	7.7	3.3	50.5
	기타 농어촌	(80)	10.0	1.3	1.3	2.5	5.0	47.5
성별	남성	(118)	11.9	3.4	1.7	8.5	5.9	35.6
	여성	(210)	13.3	2.9	7.1	1.4	2.4	51.9
연령별	10대	(2)						100.0
	20대	(4)			25.0			75.0
	30대	(28)	7.1		3.6	3.6	3.6	39.3
	40대	(77)	14.3	5.2	7.8	9.1	7.8	46.8
	50대	(74)	20.3	4.1	9.5	5.4	4.1	41.9
	60대	(55)	5.5	3.6	3.6	1.8	1.8	56.4
	70대	(60)	11.7	1.7			1.7	41.7
	80대 이상	(27)	14.8					44.4
	모름/무응답	(1)						
고용 형태	상시고용	(7)			28.6			85.7
	임시고용	(8)	25.0		12.5		12.5	62.5
	일용직	(16)	12.5			12.5	12.5	62.5
	자영업	(9)						55.6
	자활근로	(48)	18.8	2.1	8.3	2.1		52.1
	실업	(13)	15.4	7.7	7.7	7.7		15.4
	비경제활동	(169)	10.1	4.7	2.4	4.7	3.6	41.4
	기타	(22)	13.6				9.1	45.5
모름/무응답	(36)	19.4		13.9	2.8	2.8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99)	8.1	4.0	2.0	7.1	6.1	39.4
	장애가 없다	(169)	14.8	3.0	7.7	2.4	2.4	45.6
	모름/무응답	(3)	33.3					66.7
혼인 여부	기혼	(80)	8.8	5.0	2.5	2.5	1.3	50.0
	이혼 또는 별거	(85)	16.5	2.4	9.4	4.7	9.4	43.5
	사별 후 독신	(114)	14.0	2.6	5.3	0.9	0.9	46.5
	미혼(19세 이상)	(36)	11.1		2.8	13.9	5.6	36.1
	그 외 기타	(7)		14.3		14.3		57.1
	모름/무응답	(6)	16.7					66.7
학력	무학	(65)	12.3			1.5	1.5	47.7
	중졸이하	(148)	11.5	4.7	4.1	6.1	4.7	43.9
	고졸이하	(89)	16.9	2.2	11.2	2.2	3.4	44.9
	대졸이하	(19)	5.3	5.3	5.3	5.3	5.3	52.6
	모름/무응답	(7)	14.3					71.4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4)	10.4	2.1	2.1	4.9	4.9	43.8
	아파트	(82)	17.1	3.7	12.2	2.4	2.4	52.4
	다가구(연립)주택	(66)	15.2	4.5	4.5	1.5	1.5	40.9
	무허가주택	(9)		11.1				55.6
	구호시설	(1)						100.0
	기타	(20)	10.0		5.0	15.0	10.0	40.0
모름/무응답	(6)	16.7					66.7	
주거 형태	자가	(80)	7.5	2.5		1.3	2.5	48.8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3)	15.2	6.1		6.1		51.5
	월세	(83)	10.8	2.4	6.0	6.0	7.2	36.1
	장기(영구)임대	(74)	18.9	4.1	10.8	2.7	1.4	45.9
	기타	(48)	14.6	2.1	8.3	4.2	6.3	52.1
모름/무응답	(9)	11.1			11.1		55.6	

5. 의료급여 수급형태

현재 의료급여 수급형태를 질문한 결과,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인 경우(39.4%)와 ‘2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38.1%)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1종-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등’이 0.6%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없음’과 ‘무응답’을 합한 비중은 22.0%(각각 18.0%, 4.0%)였다.

기초 수급자의 경우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가 49.9%, ‘2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45.2% 등으로 높게 응답되는 반면, 기초 탈락자의 경우 각각 4.9%, 14.6%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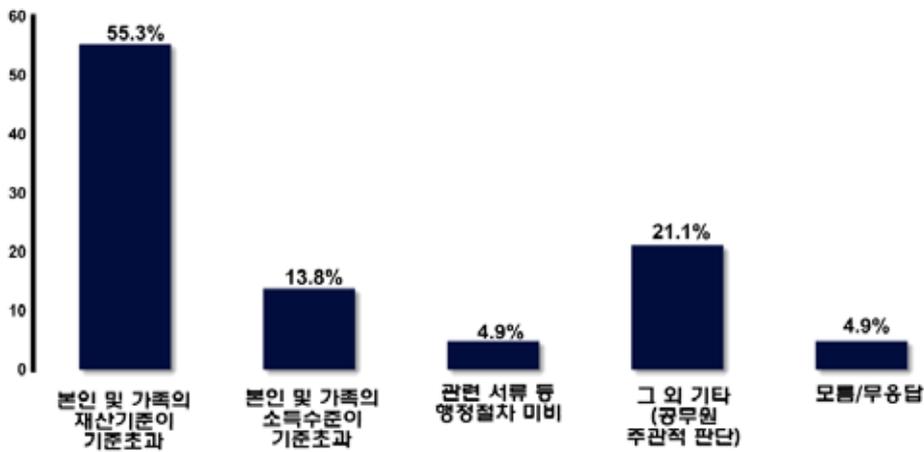
【표 5】 의료급여 수급형태

단위:%		사례수	1종 - 근로 능력 없는 세대 외	1종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외	2종-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잘 모름 / 없음	무응답
■ 전 체 ■		(528)	39.4	0.6	38.1	18.0	4.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49.9	0.5	45.2	3.0	1.5
	기초 탈락자	(123)	4.9	0.8	14.6	67.5	12.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37.1		45.3	13.8	3.8
	6대 광역시	(79)	44.3		48.1	5.1	2.5
	중소도시	(170)	36.5		34.1	23.5	5.9
	기타 농어촌	(120)	43.3	2.5	27.5	24.2	2.5
성별	남성	(177)	45.8	1.1	32.8	16.4	4.0
	여성	(351)	36.2	0.3	40.7	18.8	4.0
연령별	10대	(11)	45.5		27.3	27.3	
	20대	(37)	18.9		43.2	32.4	5.4
	30대	(68)	26.5		54.4	14.7	4.4
	40대	(136)	25.7	0.7	55.9	12.5	5.1
	50대	(103)	29.1	1.0	46.6	18.4	4.9
	60대	(64)	56.3		26.6	17.2	
	70대	(78)	67.9	1.3	2.6	24.4	3.8
	80대 이상	(29)	79.3		3.4	13.8	3.4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5.7		62.9	25.7	5.7
	일시고용	(26)	15.4		38.5	46.2	
	일용직	(27)	11.1		51.9	29.6	7.4
	자영업	(14)	28.6	7.1	57.1	7.1	
	자활근로	(104)	1.0	1.0	82.7	11.5	3.8
	실업	(21)	47.6		33.3	14.3	4.8
	비경제활동	(213)	70.0	0.5	13.6	13.1	2.8
	기타	(35)	31.4		20.0	42.9	5.7
모름/무응답	(53)	45.3		34.0	13.2	7.5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64.4		27.4	6.7	1.5
	장애가 없다	(296)	38.5	0.7	50.3	9.1	1.4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여부	기혼	(123)	24.4	0.8	44.7	24.4	5.7
	이혼 또는 별거	(146)	30.1	0.7	58.2	7.5	3.4
	사별 후 독신	(151)	53.0		20.5	22.5	4.0
	미혼 (19세 이상)	(83)	51.8		30.1	16.9	1.2
	그 외 기타	(17)	47.1	5.9	23.5	23.5	
	모름/무응답	(8)	37.5		12.5	25.0	25.0
학력	무학	(80)	71.3	1.3	11.3	15.0	1.3
	중졸이하	(200)	49.0	0.5	29.0	18.0	3.5
	고졸이하	(175)	20.6	0.6	58.3	16.6	4.0
	대졸이하	(60)	21.7		48.3	26.7	3.3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11)	36.4		18.2	18.2	27.3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41.2	1.3	34.1	21.2	2.2
	아파트	(138)	35.5		44.2	15.9	4.3
	다가구(연립)주택	(107)	38.3		42.1	15.0	4.7
	무허가주택	(13)	61.5		15.4	23.1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36.4		45.5	9.1	9.1
	모름/무응답	(9)	44.4		11.1	22.2	22.2
주거형태	자가	(134)	44.0	2.2	26.1	23.9	3.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38.2		29.1	25.5	7.3
	월세	(140)	32.1		50.0	14.3	3.6
	장기(영구)임대	(108)	42.6		43.5	10.2	3.7
	기타	(76)	44.7		38.2	15.8	1.3
	모름/무응답	(14)	21.4		21.4	42.9	14.3

6. 탈락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N=123명)에게 본인의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 기준 초과’라는 응답이 55.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이 기준 초과’ 13.8%, ‘관련 서류 등 행정절차 미비’ 4.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외 기타’라는 응답은 21.1%, ‘모름/무응답’은 4.9%였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123명)

【 표 6 】 탈락이유

단위:%		사례수	재산 기준초과	소득 기준초과	행정절차 미비	그 외 기타	모름/무응답
☐ 전 ☐ 채		(123)	13.8	55.3	4.9	21.1	4.9
구분	기초 탈락자	(123)	13.8	55.3	4.9	21.1	4.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6)	7.7	61.5	11.5	15.4	3.8
	6대 광역시	(6)		100.0			
	중소도시	(61)	14.8	44.3	3.3	31.1	6.6
	기타 농어촌	(30)	20.0	63.3	3.3	10.0	3.3
성별	남성	(39)	15.4	64.1		17.9	2.6
	여성	(84)	13.1	51.2	7.1	22.6	6.0
연령별	10대	(2)		50.0		50.0	
	20대	(15)	13.3	53.3		20.0	13.3
	30대	(13)		38.5	15.4	38.5	7.7
	40대	(28)	14.3	53.6		21.4	10.7
	50대	(28)	7.1	67.9	7.1	17.9	
	60대	(11)	18.2	72.7	9.1		
	70대	(21)	14.3	52.4	4.8	28.6	
	80대 이상	(5)	80.0	2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7)	5.9	78.6		47.1	5.9
	임시고용	(14)	7.1	61.5		7.1	7.1
	일용직	(13)	23.1		7.7	7.7	
	자영업	(1)	100.0	69.2			
	자활근로	(13)		50.0	7.7	7.7	15.4
	실업	(4)		50.0		50.0	
	비경제활동	(32)	25.0	61.1	6.3	18.8	
	기타	(18)	11.1	36.4	11.1	16.7	
장애여부	모름/무응답	(11)	9.1	37.5		36.4	18.2
	장애가 있다	(8)		59.1	25.0	25.0	12.5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다	(22)	13.6	67.6	4.5	22.7	
	기혼	(37)	13.5	52.0		13.5	5.4
혼인여부	이혼 또는 별거	(25)	4.0	51.4	8.0	28.0	8.0
	사별 후 독신	(37)	18.9	37.5	8.1	21.6	
	미혼 (19세이상)	(16)	25.0	50.0		31.3	6.3
	그 외 기타	(4)		75.0	25.0	25.0	
	모름/무응답	(4)		57.1			25.0
학력	무학	(14)	21.4	53.3		21.4	
	중졸이하	(45)	20.0	65.0	4.4	20.0	2.2
	고졸이하	(40)	5.0	33.3	10.0	15.0	5.0
	대졸이하	(18)	11.1	66.7		44.4	11.1
	모름/무응답	(6)	16.7	56.9			16.7
주택종류	단독주택	(58)	13.8	44.0	5.2	22.4	1.7
	아파트	(25)	20.0	56.0	4.0	28.0	4.0
	다가구(연립)주택	(25)	8.0	33.3	8.0	16.0	12.0
	무허가주택	(3)	33.3	100.0		33.3	
	구호시설	(1)		66.7			
	기타	(6)	16.7	80.0		16.7	
	모름/무응답	(5)		48.9			20.0
주거형태	자가	(45)	20.0	64.7	2.2	26.7	2.2
	전세(1억 미만)	(17)	5.9	69.2	11.8	5.9	11.8
	월세	(26)		61.5	11.5	19.2	
	장기(영구)임대	(13)	7.7	33.3		30.8	
	기타	(15)	33.3	57.1		20.0	13.3
	모름/무응답	(7)	14.3	40.0		14.3	14.3

7.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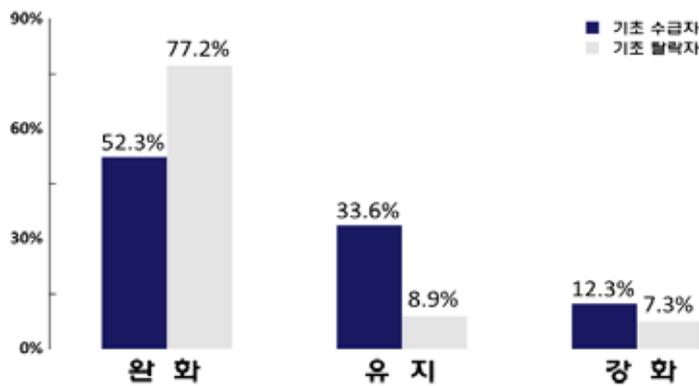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수급자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이 52.3%로 과반수준인데 비해, 탈락자의 경우 7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에서는 ‘완화’ 52.3%, ‘유지’ 33.6%, ‘강화’ 12.3%로 나타났으며, 탈락자에서는 ‘완화’ 77.2%, ‘유지’ 8.9%, ‘강화’ 7.3%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이 58.1%(대폭 14.0% + 조금 44.1%),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11.2%(조금 8.9% + 대폭 2.3%), ‘현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7.8%로 나타났다.

구 분	완화	유지	강화	평점(5점 기준)
■ 전 체 ■	58.1%	27.8%	11.2%	3.60점
기초 수급자 (405명)	52.3%	33.6%	12.3%	3.50점
기초 탈락자 (123명)	77.2%	8.9%	7.3%	3.97점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7】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대폭 완화	조금 완화	현수준 유지	조금 강화	대폭 강화	『완화』	『유지』	『강화』	모름/ 무응답	평균	
전체	(528)	14.0	44.1	27.8	8.9	2.3	58.1	27.8	11.2	2.8	3.6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1.4	41.0	33.6	9.9	2.5	52.3	33.6	12.3	1.7	3.50
	기초 탈락자	(123)	22.8	54.5	8.9	5.7	1.6	77.2	8.9	7.3	6.5	3.9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2.6	40.9	32.1	10.1	2.5	53.5	32.1	12.6	1.9	3.52
	6대 광역시	(79)	21.5	39.2	25.3	11.4	2.5	60.8	25.3	13.9		3.66
	중소도시	(170)	11.8	44.7	25.3	10.0	2.9	56.5	25.3	12.9	5.3	3.55
	기타 농어촌	(120)	14.2	50.8	27.5	4.2	0.8	65.0	27.5	5.0	2.5	3.75
성별	남성	(177)	14.1	43.5	26.6	10.2	4.0	57.6	26.6	14.1	1.7	3.55
	여성	(351)	14.0	44.4	28.5	8.3	1.4	58.4	28.5	9.7	3.4	3.63
연령별	10대	(11)	9.1	18.2	27.3	36.4	9.1	27.3	27.3	45.5		2.82
	20대	(37)	10.8	40.5	35.1	2.7	2.7	51.4	35.1	5.4	8.1	3.59
	30대	(68)	13.2	44.1	25.0	8.8	4.4	57.4	25.0	13.2	4.4	3.55
	40대	(136)	16.9	43.4	21.3	12.5	1.5	60.3	21.3	14.0	4.4	3.65
	50대	(103)	18.4	40.8	28.2	7.8	4.9	59.2	28.2	12.6		3.60
	60대	(64)	17.2	40.6	32.8	7.8		57.8	32.8	7.8	1.6	3.68
	70대	(78)	6.4	53.8	29.5	7.7		60.3	29.5	7.7	2.6	3.61
	80대 이상	(29)	6.9	51.7	41.4			58.6	41.4			3.66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8.6	62.9	14.3	2.9	2.9	71.4	14.3	5.7	8.6
임시고용		(26)	23.1	19.2	38.5	11.5	3.8	42.3	38.5	15.4	3.8	3.48
일용직		(27)	29.6	44.4	22.2	3.7		74.1	22.2	3.7		4.00
자영업		(14)	14.3	64.3	21.4			78.6	21.4			3.93
자활근로		(104)	13.5	33.7	32.7	11.5	4.8	47.1	32.7	16.3	3.8	3.41
실업		(21)	14.3	52.4	19.0	4.8	4.8	66.7	19.0	9.5	4.8	3.70
비경제활동		(213)	12.2	46.5	31.5	7.5	1.4	58.7	31.5	8.9	0.9	3.61
기타		(35)	20.0	42.9	17.1	20.0		62.9	17.1	20.0		3.63
모름/무응답	(53)	9.4	47.2	22.6	11.3	1.9	56.6	22.6	13.2	7.5	3.55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5.6	37.0	31.9	11.9	2.2	52.6	31.9	14.1	1.5	3.53
	장애가 없다	(296)	11.5	43.2	31.1	8.8	3.0	54.7	31.1	11.8	2.4	3.53
	모름/무응답	(4)			100.0			100.0				3.00
혼인 여부	기혼	(123)	13.0	48.0	26.8	6.5	4.1	61.0	26.8	10.6	1.6	3.60
	이혼 또는 별거	(146)	17.8	39.0	25.3	12.3	3.4	56.8	25.3	15.8	2.1	3.57
	사별 후 독신	(151)	13.9	49.0	28.5	4.6	0.7	62.9	28.5	5.3	3.3	3.73
	미혼(19세 이상)	(83)	9.6	42.2	33.7	10.8		51.8	33.7	10.8	3.6	3.53
	그 외 기타	(17)	5.9	35.3	23.5	23.5	5.9	41.2	23.5	29.4	5.9	3.13
	모름/무응답	(8)	25.0	25.0	25.0	12.5		50.0	25.0	12.5	12.5	3.71
학력	무학	(80)	8.8	48.8	37.5	3.8		57.5	37.5	3.8	1.3	3.63
	중졸이하	(200)	15.5	40.5	30.5	10.0	2.0	56.0	30.5	12.0	1.5	3.58
	고졸이하	(175)	14.3	46.9	21.1	11.4	2.9	61.1	21.1	14.3	3.4	3.60
	대졸이하	(60)	13.3	45.0	26.7	5.0	3.3	58.3	26.7	8.3	6.7	3.64
	대학원이상	(2)	50.0					50.0				3.00
	모름/무응답	(11)	18.2	36.4	27.3	9.1		54.5	27.3	9.1	9.1	3.7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4.6	45.1	26.1	9.3	3.1	59.7	26.1	12.4	1.8	3.60
	아파트	(138)	15.2	45.7	26.8	8.7	0.7	60.9	26.8	9.4	2.9	3.68
	다가구(연립)주택	(107)	8.4	47.7	31.8	7.5	1.9	56.1	31.8	9.3	2.8	3.55
	무허가주택	(13)	15.4	38.5	23.1	15.4		53.8	23.1	15.4	7.7	3.58
	구호시설	(2)			100.0			100.0				3.00
	기타	(33)	21.2	30.3	30.3	6.1	6.1	51.5	30.3	12.1	6.1	3.58
모름/무응답	(9)	22.2	22.2	22.2	22.2		44.4	22.2	22.2	11.1	3.50	
주거 형태	자가	(134)	9.7	51.5	26.9	8.2	2.2	61.2	26.9	10.4	1.5	3.59
	전세(1억이상)	(1)		100.0				100.0				4.00
	전세(1억미만)	(55)	14.5	47.3	25.5	7.3	1.8	61.8	25.5	9.1	3.6	3.68
	월세	(140)	13.6	41.4	28.6	10.0	4.3	55.0	28.6	14.3	2.1	3.51
	장기(영구)임대	(108)	14.8	43.5	31.5	8.3		58.3	31.5	8.3	1.9	3.66
	기타	(76)	19.7	36.8	26.3	10.5	1.3	56.6	26.3	11.8	5.3	3.67
모름/무응답	(14)	21.4	28.6	21.4	7.1	7.1	50.0	21.4	14.3	14.3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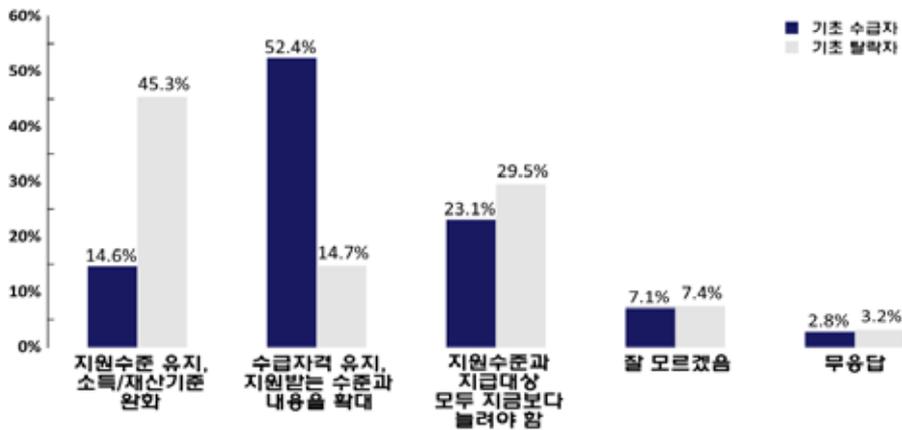
8.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N=307명)에게 개선의견을 물어본 결과,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기초 수급자에서 52.4%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지원수준과 지급대상을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과 ‘지원수준 유지,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기초 탈락자에서 각각 29.5%와 45.3%로 기초 수급자(각 23.1%, 1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세부 응답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았다.

구 분	지원수준 유지하되, 소득/재산 기준완화	수급자격 유지하되, 지원수준과 내용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 모두 늘려야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24.1%	40.7%	25.1%	7.2%	2.9%
기초 수급자 (212명)	14.6%	52.4%	23.1%	7.1%	2.8%
기초 탈락자 (95명)	45.3%	14.7%	29.5%	7.4%	3.2%

(Base: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307명)



【표 8】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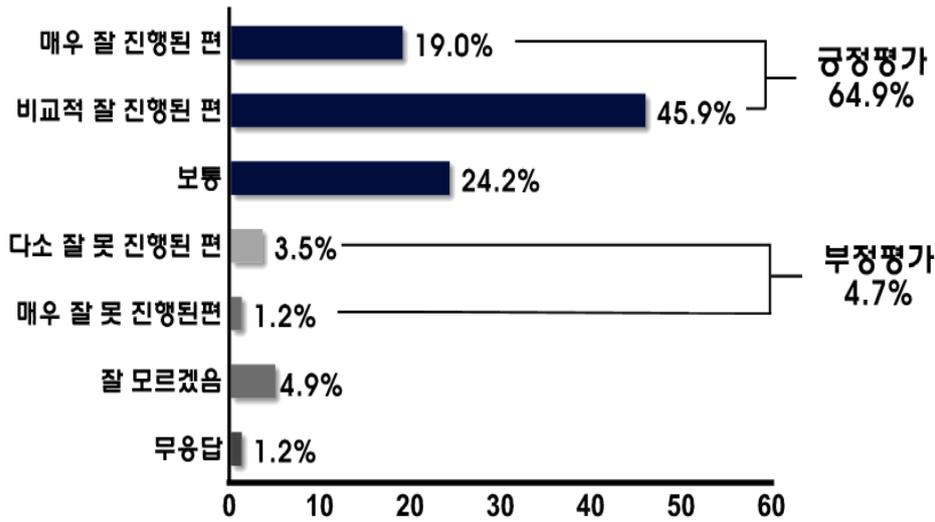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지원수준 유지하되, 소득/ 재산기준 완화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 모두 지금보다 늘려야함	잘 모르겠음	모름/ 무응답	
■ 전 체 ■	(307)	24.1	40.7	25.1	7.2	2.9	
구분	기초 수급자	(212)	14.6	52.4	23.1	7.1	2.8
	기초 탈락자	(95)	45.3	14.7	29.5	7.4	3.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85)	22.4	41.2	28.2	7.1	1.2
	6대 광역시	(48)	29.2	41.7	22.9	2.1	4.2
	중소도시	(96)	20.8	49.0	19.8	6.3	4.2
	기타 농어촌	(78)	26.9	29.5	29.5	11.5	2.6
성별	남성	(102)	22.5	41.2	25.5	6.9	3.9
	여성	(205)	24.9	40.5	24.9	7.3	2.4
연령별	10대	(3)	33.3	66.7			
	20대	(19)	31.6	21.1	10.5	26.3	10.5
	30대	(39)	12.8	61.5	20.5	2.6	2.6
	40대	(82)	26.8	46.3	19.5	4.9	2.4
	50대	(61)	23.0	32.8	36.1	4.9	3.3
	60대	(37)	27.0	45.9	21.6	2.7	2.7
	70대	(47)	29.8	31.9	25.5	10.6	2.1
	80대 이상	(17)	11.8	23.5	47.1	17.6	
	모름/무응답	(2)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5)	24.0	36.0	24.0	8.0	8.0
	임시고용	(11)	45.5	18.2	18.2	9.1	9.1
	일용직	(20)	25.0	40.0	25.0	5.0	5.0
	자영업	(11)	18.2	54.5	18.2	9.1	
	자활근로	(49)	16.3	57.1	18.4	6.1	2.0
	실업	(14)	28.6	35.7	35.7		
	비경제활동	(125)	24.8	38.4	28.8	6.4	1.6
	기타	(22)	40.9	27.3	18.2	13.6	
	모름/무응답	(30)	13.3	43.3	26.7	10.0	6.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71)	15.5	49.3	23.9	8.5	2.8
	장애가 없다	(162)	18.5	49.4	22.2	7.4	2.5
혼인 여부	기혼	(75)	34.7	30.7	26.7	5.3	2.7
	이혼 또는 별거	(83)	15.7	51.8	25.3	3.6	3.6
	사별 후 독신	(95)	21.1	37.9	32.6	6.3	2.1
	미혼(19세 이상)	(43)	30.2	44.2	9.3	14.0	2.3
	그 외 기타	(7)	14.3	42.9	14.3	28.6	
	모름/무응답	(4)	25.0	25.0	25.0	25.0	
학력	무학	(46)	19.6	30.4	34.8	13.0	2.2
	중졸이하	(112)	26.8	39.3	30.4	3.6	
	고졸이하	(107)	22.4	42.1	21.5	8.4	5.6
	대졸이하	(35)	25.7	57.1	11.4	5.7	
	대학원이상	(1)	100.0				
	모름/무응답	(6)	16.7	33.3		16.7	33.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35)	25.9	37.0	27.4	8.1	1.5
	아파트	(84)	25.0	42.9	21.4	7.1	3.6
	다가구(연립)주택	(60)	25.0	41.7	30.0	1.7	1.7
	무허가주택	(7)		71.4	14.3	14.3	
	기타	(17)	11.8	47.1	17.6	11.8	11.8
	모름/무응답	(4)	25.0	25.0		25.0	25.0
주거 형태	자가	(82)	29.3	30.5	26.8	13.4	
	전세(1억이상)	(1)			100.0		
	전세(1억미만)	(34)	26.5	38.2	29.4	2.9	2.9
	월세	(77)	18.2	45.5	26.0	7.8	2.6
	장기(영구)임대	(63)	28.6	49.2	15.9	3.2	3.2
	기타	(43)	14.0	46.5	32.6	2.3	4.7
	모름/무응답	(7)	42.9	14.3	14.3	28.6	

9.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64.9%(매우 잘 진행 19.0% + 비교적 잘 진행 45.9%), 부정평가가 4.7%(다소 잘 못 진행 3.5% + 매우 잘 못 진행 1.2%)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월등히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4.2%,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의 평점은 3.8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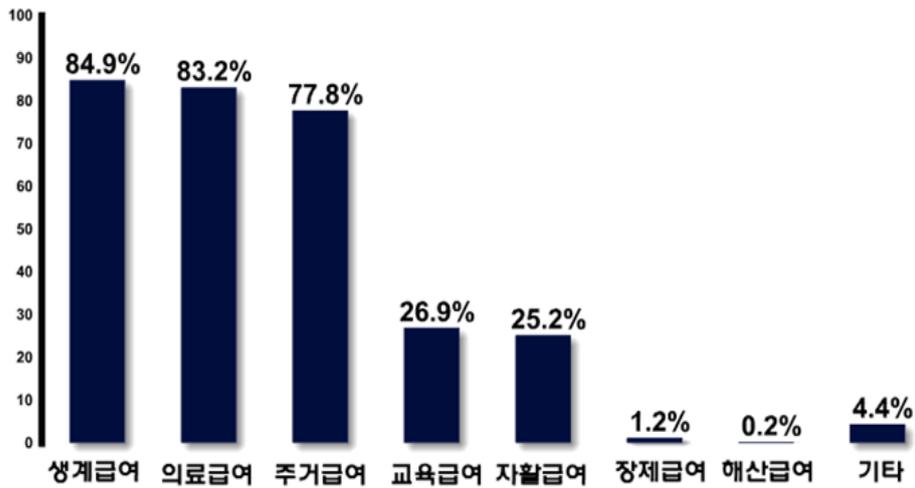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표 9】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단위:%	사례수	매우 잘진행	비교적 잘진행	보통	다소 잘못 진행	매우 잘못 진행	잘 모름	『긍정』	『보통』	『부정』	모름/ 무응답	평점	
□ 전	(405)	19.0	45.9	24.2	3.5	1.2	4.9	64.9	24.2	4.7	1.2	3.83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9.0	45.9	24.2	3.5	1.2	4.9	64.9	24.2	4.7	1.2	3.8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15.8	41.4	26.3	5.3	3.8	6.8	57.1	26.3	9.0	0.8	3.65
	6대 광역시	(73)	20.5	35.6	32.9	5.5		5.5	56.2	32.9	5.5		3.75
	중소도시	(109)	23.9	55.0	13.8	1.8		2.8	78.9	13.8	1.8	2.8	4.07
	기타 농어촌	(90)	16.7	50.0	26.7	1.1		4.4	66.7	26.7	1.1	1.1	3.87
성별	남성	(138)	23.9	46.4	23.9	2.9		2.2	70.3	23.9	2.9	0.7	3.94
	여성	(267)	16.5	45.7	24.3	3.7	1.9	6.4	62.2	24.3	5.6	1.5	3.77
연령별	10대	(9)	11.1	33.3	33.3			22.2	44.4	33.3			3.71
	20대	(22)	18.2	54.5	22.7				72.7	22.7		4.5	3.95
	30대	(55)	20.0	40.0	32.7	1.8		3.6	60.0	32.7	1.8	1.8	3.83
	40대	(108)	18.5	44.4	25.9	3.7	0.9	4.6	63.0	25.9	4.6	1.9	3.81
	50대	(75)	24.0	46.7	17.3	5.3	1.3	5.3	70.7	17.3	6.7		3.92
	60대	(53)	18.9	50.9	20.8	5.7	1.9	1.9	69.8	20.8	7.5		3.81
	70대	(57)	15.8	50.9	22.8	1.8	1.8	5.3	66.7	22.8	3.5	1.8	3.83
	80대 이상	(24)	16.7	37.5	29.2		4.2	12.5	54.2	29.2	4.2		3.71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8)	22.2	61.1	5.6			5.6	83.3	5.6		5.6
임시고용		(12)	33.3	50.0	16.7				83.3	16.7			4.17
일용직		(14)	28.6	42.9	28.6				71.4	28.6			4.00
자영업		(13)	7.7	53.8	38.5				61.5	38.5			3.69
자활근로		(91)	24.2	42.9	16.5	5.5	2.2	6.6	67.0	16.5	7.7	2.2	3.89
실업		(17)	17.6	41.2	23.5	11.8	5.9		58.8	23.5	17.6		3.53
비경제활동		(181)	16.6	45.3	29.8	1.7	1.1	5.0	61.9	29.8	2.8	0.6	3.79
기타		(17)	11.8	41.2	29.4	5.9		11.8	52.9	29.4	5.9		3.67
모름/무응답		(42)	16.7	50.0	19.0	7.1		4.8	66.7	19.0	7.1	2.4	3.82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27)	26.0	39.4	23.6	6.3	0.8	3.9	65.4	23.6	7.1		3.87
	장애가 없다	(274)	15.7	49.3	24.1	2.2	1.5	5.5	65.0	24.1	3.6	1.8	3.81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50.0	50.0			3.75
혼인여부	기혼	(86)	17.4	44.2	23.3	3.5	2.3	9.3	61.6	23.3	5.8		3.78
	이혼 또는 별거	(121)	21.5	49.6	20.7	3.3		3.3	71.1	20.7	3.3	1.7	3.94
	사별 후 독신	(114)	17.5	41.2	27.2	5.3	2.6	4.4	58.8	27.2	7.9	1.8	3.70
	미혼(19세 이상)	(67)	14.9	49.3	28.4	1.5		4.5	64.2	28.4	1.5	1.5	3.83
	그 외 기타	(13)	23.1	53.8	23.1				76.9	23.1			4.00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4.75
학력	무학	(66)	18.2	48.5	19.7	3.0	1.5	7.6	66.7	19.7	4.5	1.5	3.87
	중졸이하	(155)	18.7	42.6	30.3	2.6	1.3	3.9	61.3	30.3	3.9	0.6	3.78
	고졸이하	(135)	20.0	47.4	21.5	4.4	1.5	3.7	67.4	21.5	5.9	1.5	3.84
	대졸이하	(42)	14.3	52.4	19.0	2.4		9.5	66.7	19.0	2.4	2.4	3.89
	대학원이상	(2)			50.0	50.0				50.0	50.0		2.50
	모름/무응답	(5)	60.0	40.0					100.0				4.60
주택종류	단독주택	(168)	23.8	48.8	19.6	3.0		4.2	72.6	19.6	3.0	0.6	3.98
	아파트	(113)	12.4	43.4	22.1	5.3	4.4	8.8	55.8	22.1	9.7	3.5	3.62
	다가구(연립)주택	(82)	15.9	46.3	34.1	2.4		1.2	62.2	34.1	2.4		3.77
	무허가주택	(10)	40.0	30.0	20.0			10.0	70.0	20.0			4.22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7)	11.1	48.1	33.3	3.7		3.7	59.3	33.3	3.7		3.69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4.75
주거형태	자가	(89)	14.6	58.4	19.1	3.4		3.4	73.0	19.1	3.4	1.1	3.88
	전세(1억이상)	(1)				100.0					100.0		2.00
	전세(1억미만)	(38)	21.1	44.7	28.9	5.3			65.8	28.9	5.3		3.82
	월세	(114)	22.8	49.1	20.2	1.8		5.3	71.9	20.2	1.8	0.9	3.99
	장기(영구)임대	(95)	12.6	33.7	31.6	5.3	5.3	9.5	46.3	31.6	10.5	2.1	3.49
	기타	(61)	24.6	42.6	27.9	1.6		1.6	67.2	27.9	1.6	1.6	3.93
	모름/무응답	(7)	42.9	42.9				14.3	85.7				4.50

10.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형태(복수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형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생계급여’ 84.9% > ‘의료급여’ 83.2% > ‘주거급여’ 77.8% > ‘교육급여’ 26.9% > ‘자활급여’ 25.2% > ‘장제급여’ 1.2% > ‘해산급여’ 0.2%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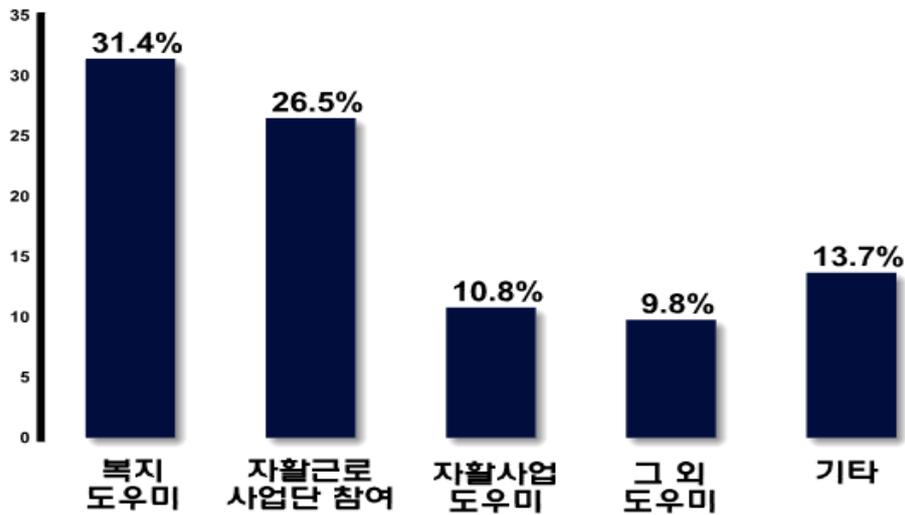
【표 10】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형태(복수응답)

단위:%	사례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재산 급여	장제 급여	자활 급여	기타	
■ 전 체 ■	(405)	84.9	77.8	83.2	26.9	0.2	1.2	25.2	4.4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4.9	77.8	83.2	26.9	0.2	1.2	25.2	4.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81.2	75.9	84.2	35.3		0.8	28.6	3.0
	6대 광역시	(73)	86.3	60.3	78.1	32.9		1.4	32.9	5.5
	중소도시	(109)	88.1	87.2	83.5	18.3		0.9	22.9	5.5
	기타 농어촌	(90)	85.6	83.3	85.6	20.0	1.1	2.2	16.7	4.4
성별	남성	(138)	86.2	78.3	87.0	18.8		2.2	18.8	3.6
	여성	(267)	84.3	77.5	81.3	31.1	0.4	0.7	28.5	4.9
연령별	10대	(9)	100.0	66.7	77.8	44.4				
	20대	(22)	72.7	63.6	86.4	4.5			36.4	4.5
	30대	(55)	85.5	78.2	67.3	32.7	1.8	3.6	32.7	5.5
	40대	(108)	81.5	76.9	86.1	48.1		0.9	36.1	4.6
	50대	(75)	77.3	66.7	85.3	24.0		1.3	36.0	5.3
	60대	(53)	90.6	86.8	88.7	18.9			17.0	3.8
	70대	(57)	94.7	89.5	91.2	5.3		1.8		3.5
	80대 이상	(24)	91.7	83.3	70.8	8.3				4.2
	모름/무응답	(2)	100.0	100.0	50.0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8)	72.2	66.7	61.1	38.9			27.8	22.2
	임시고용	(12)	100.0	100.0	100.0	33.3			16.7	
	일용직	(14)	100.0	100.0	85.7	57.1			7.1	
	자영업	(13)	61.5	46.2	76.9	30.8			7.7	15.4
	자활근로	(91)	61.5	60.4	76.9	39.6		2.2	85.7	5.5
	실업	(17)	94.1	82.4	70.6	41.2	5.9			5.9
	비경제활동	(181)	96.1	88.4	87.3	16.6		1.7	1.7	2.8
	기타	(17)	82.4	58.8	82.4	35.3			11.8	5.9
	모름/무응답	(42)	88.1	76.2	90.5	16.7			23.8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27)	89.0	80.3	83.5	16.5		3.1	15.0	3.9
	장애가 없다	(274)	83.2	77.0	83.6	32.1	0.4	0.4	29.9	4.7
	모름/무응답	(4)	75.0	50.0	50.0				25.0	
혼인 여부	기혼	(86)	75.6	64.0	81.4	39.5	1.2		30.2	8.1
	이혼 또는 별거	(121)	83.5	77.7	82.6	37.2		1.7	38.8	4.1
	사별 후 독신	(114)	90.4	88.6	86.0	18.4			12.3	4.4
	미혼(19세 이상)	(67)	86.6	76.1	82.1	4.5		3.0	20.9	1.5
	그 외 기타	(13)	100.0	76.9	100.0	38.5				
	모름/무응답	(4)	100.0	100.0	25.0	25.0		25.0	25.0	
학력	무학	(66)	97.0	95.5	89.4	9.1		1.5	3.0	4.5
	중졸이하	(155)	85.8	76.8	82.6	18.1		1.3	18.1	3.9
	고졸이하	(135)	80.7	69.6	82.2	43.7	0.7	0.7	40.0	4.4
	대졸이하	(42)	78.6	81.0	85.7	28.6			38.1	7.1
	대학원이상	(2)			50.0	100.0			50.0	
	모름/무응답	(5)	100.0	100.0	40.0	40.0		20.0	2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68)	84.5	81.0	89.3	29.8	0.6	2.4	24.4	3.0
	아파트	(113)	81.4	73.5	76.1	28.3			29.2	6.2
	다가구(연립)주택	(82)	90.2	80.5	87.8	26.8			24.4	7.3
	무허가주택	(10)	100.0	70.0	90.0	10.0				
	구호시설	(1)	100.0		100.0					
	기타	(27)	77.8	70.4	66.7	11.1			25.9	
	모름/무응답	(4)	100.0	100.0	25.0	25.0		25.0	25.0	
주거 형태	자가	(89)	86.5	80.9	89.9	16.9	1.1	1.1	16.9	3.4
	전세(1억이상)	(1)		100.0	100.0				100.0	
	전세(1억미만)	(38)	81.6	81.6	84.2	34.2		2.6	21.1	5.3
	월세	(114)	82.5	73.7	80.7	33.3		0.9	29.8	6.1
	장기(영구)임대	(95)	86.3	73.7	77.9	28.4			25.3	3.2
	기타	(61)	86.9	82.0	88.5	23.0		1.6	29.5	4.9
	모름/무응답	(7)	100.0	100.0	57.1	28.6		14.3	28.6	

11. 참여 경험이 있는 자활근로의 종류(복수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응답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참여경험이 있는 자활근로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복지도우미’가 31.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26.5%, ‘자활사업 도우미’ 10.8%, ‘그 외 보육지원도우미 등’ 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응답은 13.7%였다.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중 응답자 102명)

【표 11】 참여 경험이 있는 자활 근로의 종류(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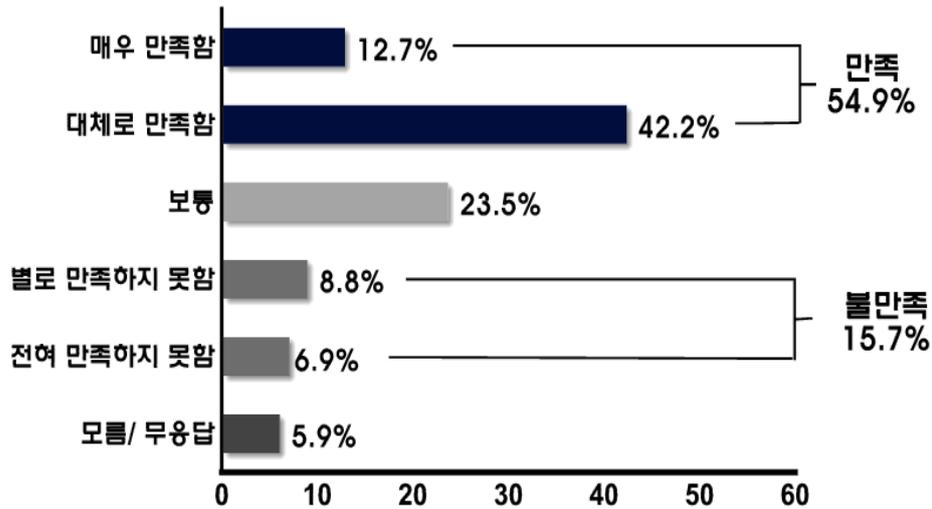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자활근로 사업단참여	자활사업 도우미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복지 시설도우미 등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02)	26.5	10.8	31.4	9.8	13.7	73.5	
구분	기초 수급자	(102)	26.5	10.8	31.4	9.8	13.7	73.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8)	42.1	7.9	15.8	10.5	2.6	57.9
	6대 광역시	(24)	16.7	8.3	37.5	12.5	20.8	83.3
	중소도시	(25)	12.0	16.0	56.0	8.0	12.0	88.0
	기타 농어촌	(15)	26.7	13.3	20.0	6.7	33.3	73.3
성별	남성	(26)	53.8	3.8	11.5	3.8	15.4	46.2
	여성	(76)	17.1	13.2	38.2	11.8	13.2	82.9
연령별	20대	(8)		12.5	75.0			100.0
	30대	(18)	11.1	22.2	50.0	5.6	5.6	88.9
	40대	(39)	28.2	5.1	35.9	15.4	12.8	71.8
	50대	(27)	33.3	11.1	7.4	11.1	22.2	66.7
	60대	(9)	55.6		11.1		22.2	44.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5)		40.0	60.0		20.0	100.0
	임시고용	(2)			100.0			100.0
	일용직	(1)			100.0			100.0
	자영업	(1)	100.0					
	자활근로	(78)	29.5	9.0	29.5	9.0	15.4	70.5
	비경제활동	(3)	33.3			33.3		66.7
	기타	(2)					50.0	100.0
	모름/무응답	(10)	20.0	20.0	30.0	20.0		8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9)	47.4		10.5	10.5	15.8	52.6
	장애가 없다	(82)	20.7	13.4	36.6	9.8	13.4	79.3
	모름/무응답	(1)	100.0					
혼인 여부	기혼	(26)	34.6	3.8	15.4	15.4	11.5	65.4
	이혼 또는 별거	(47)	23.4	17.0	40.4	6.4	12.8	76.6
	사별 후 독신	(14)	14.3	7.1	21.4	21.4	21.4	85.7
	미혼(19세 이상)	(14)	35.7	7.1	35.7		14.3	64.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학력	무학	(2)					100.0	100.0
	중졸이하	(28)	32.1	7.1	10.7	21.4	10.7	67.9
	고졸이하	(54)	29.6	13.0	29.6	7.4	14.8	70.4
	대졸이하	(16)	6.3	12.5	75.0		6.3	93.8
	대학원이상	(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41)	36.6	12.2	22.0	7.3	19.5	63.4
	아파트	(33)	15.2	12.1	42.4	18.2	6.1	84.8
	다가구(연립)주택	(20)	25.0	10.0	40.0	5.0	5.0	75.0
	기타	(7)	28.6				42.9	71.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주거 형태	자가	(15)	33.3	6.7	33.3		20.0	66.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8)	37.5	12.5	25.0	25.0		62.5
	월세	(34)	32.4	11.8	32.4	2.9	11.8	67.6
	장기(영구)임대	(24)	20.8	4.2	29.2	29.2	8.3	79.2
	기타	(18)	11.1	22.2	33.3		27.8	88.9
모름/무응답	(2)			50.0			100.0	

12.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응답자(N=102명)에게 자활근로 사업의 만족 정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 응답이 54.9% (매우 잘 진행 12.7% + 비교적 잘 진행 42.2%), ‘불만족’ 응답이 15.7% (별로 8.8% + 전혀 6.9%)로 만족응답이 불만족응답에 비해 매우 우세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3.5%, ‘모름/무응답’은 5.9%였다.

이를 5점 기준의 평점으로 환산한 결과, 3.48점으로 나타났다.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중 응답자 102명)

【표 12】 자활 근로 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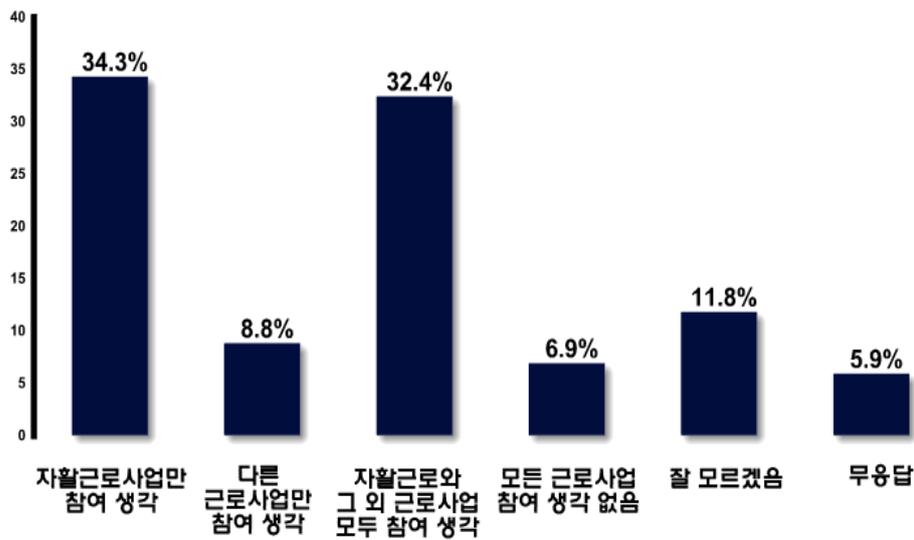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만족』	『보통』	『불만족』	모름/무응답	평점
□ 전 체 □		(102)	12.7	42.2	23.5	8.8	6.9	54.9	23.5	15.7	5.9	3.48
구분	기초 수급자	(102)	12.7	42.2	23.5	8.8	6.9	54.9	23.5	15.7	5.9	3.4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8)	7.9	31.6	23.7	13.2	13.2	39.5	23.7	26.3	10.5	3.09
	6대 광역시	(24)	25.0	45.8	16.7	8.3		70.8	16.7	8.3	4.2	3.91
	중소도시	(25)	12.0	56.0	20.0	8.0	4.0	68.0	20.0	12.0		3.64
	기타 농어촌	(15)	6.7	40.0	40.0		6.7	46.7	40.0	6.7	6.7	3.43
성별	남성	(26)	7.7	42.3	15.4	7.7	19.2	50.0	15.4	26.9	7.7	3.13
	여성	(76)	14.5	42.1	26.3	9.2	2.6	56.6	26.3	11.8	5.3	3.60
연령별	20대	(8)	37.5	37.5	25.0			75.0	25.0			4.13
	30대	(18)	27.8	50.0	5.6	16.7		77.8	5.6	16.7		3.89
	40대	(39)	5.1	56.4	23.1	7.7	5.1	61.5	23.1	12.8	2.6	3.50
	50대	(27)	7.4	22.2	33.3	7.4	14.8	29.6	33.3	22.2	14.8	3.00
	60대	(9)	11.1	33.3	22.2	11.1	11.1	44.4	22.2	22.2	11.1	3.2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5)	40.0	20.0	20.0	20.0		60.0	20.0	20.0		3.80
	임시고용	(2)		50.0	50.0			50.0	50.0			3.50
	일용직	(1)		100.0				100.0				4.00
	자영업	(1)									100.0	.
	자활근로	(78)	14.1	42.3	23.1	9.0	7.7	56.4	23.1	16.7	3.8	3.48
	비경제활동	(3)		33.3	33.3			33.3	33.3		33.3	3.50
	기타	(2)			50.0			50.0		50.0		3.00
	모름/무응답	(10)		60.0	20.0	10.0	10.0	60.0	20.0	20.0		3.3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9)	10.5	36.8	15.8	5.3	15.8	47.4	15.8	21.1	15.8	3.25
	장애가 없다	(82)	13.4	42.7	25.6	9.8	4.9	56.1	25.6	14.6	3.7	3.52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혼인여부	기혼	(26)	15.4	42.3	23.1	7.7	7.7	57.7	23.1	15.4	3.8	3.52
	이혼 또는 별거	(47)	12.8	51.1	17.0	8.5	8.5	63.8	17.0	17.0	2.1	3.52
	사별 후 독신	(14)		21.4	35.7	14.3	7.1	21.4	35.7	21.4	21.4	2.91
	미혼(19세 이상)	(14)	14.3	35.7	35.7	7.1		50.0	35.7	7.1	7.1	3.62
	모름/무응답	(1)	100.0					100.0				5.00
학력	무학	(2)			100.0				100.0			3.00
	중졸이하	(28)	7.1	35.7	28.6	7.1	10.7	42.9	28.6	17.9	10.7	3.24
	고졸이하	(54)	13.0	46.3	22.2	11.1	3.7	59.3	22.2	14.8	3.7	3.56
	대졸이하	(16)	18.8	50.0	12.5	6.3	6.3	68.8	12.5	12.5	6.3	3.73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5.00
주택종류	단독주택	(41)	12.2	46.3	29.3	4.9	4.9	58.5	29.3	9.8	2.4	3.58
	아파트	(33)	12.1	36.4	27.3	12.1	3.0	48.5	27.3	15.2	9.1	3.47
	다가구(연립)주택	(20)	10.0	50.0	5.0	10.0	20.0	60.0	5.0	30.0	5.0	3.21
	기타	(7)	14.3	28.6	28.6	14.3		42.9	28.6	14.3	14.3	3.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주거형태	자가	(15)	13.3	46.7	20.0	6.7	6.7	60.0	20.0	13.3	6.7	3.57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1.00
	전세(1억 미만)	(8)	12.5	50.0	25.0		12.5	62.5	25.0	12.5		3.50
	월세	(34)	11.8	41.2	26.5	5.9	11.8	52.9	26.5	17.6	2.9	3.36
	장기(영구)임대	(24)		37.5	33.3	12.5		37.5	33.3	12.5	16.7	3.30
	기타	(18)	27.8	44.4	11.1	16.7		72.2	11.1	16.7		3.83
	모름/무응답	(2)	50.0	50.0				100.0				4.50

13. 향후 자활근로 참여 의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응답자(N=102명)에게 향후 자활근로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자활근로 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34.3%)과 ‘자활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32.4%)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활근로 사업이외의 근로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8.8%, ‘자활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없다’ 6.9%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11.8%, ‘무응답’은 5.9%였다.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중 응답자 102명)

【표 13】 자활근로 참여 의향

단위:%	사례수	자활 근로 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자활 근로 사업 이외의 다른 근로 사업에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자활 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있다	자활 근로 사업과 그 외 근로사업 모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전체	(102)	34.3	8.8	32.4	6.9	11.8	5.9	
구분	기초 수급자	(102)	34.3	8.8	32.4	6.9	11.8	5.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8)	31.6	7.9	31.6	2.6	18.4	7.9
	6대 광역시	(24)	37.5	8.3	29.2	8.3	8.3	8.3
	중소도시	(25)	24.0	8.0	44.0	12.0	12.0	
	기타 농어촌	(15)	53.3	13.3	20.0	6.7		6.7
성별	남성	(26)	50.0	11.5	15.4	7.7	7.7	7.7
	여성	(76)	28.9	7.9	38.2	6.6	13.2	5.3
연령별	20대	(8)	25.0		50.0		25.0	
	30대	(18)	16.7	11.1	55.6	5.6	11.1	
	40대	(39)	25.6	5.1	38.5	10.3	12.8	7.7
	50대	(27)	51.9	11.1	11.1	7.4	11.1	7.4
	60대	(9)	55.6	22.2	11.1			11.1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5)	40.0		40.0		20.0	
	임시고용	(2)			50.0			50.0
	일용직	(1)			100.0			
	자영업	(1)						100.0
	자활근로	(78)	35.9	9.0	34.6	6.4	11.5	2.6
	비경제활동	(3)	66.7					33.3
	기타	(2)				50.0		50.0
	모름/무응답	(10)	30.0	20.0	20.0	10.0	2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9)	52.6	5.3	15.8	10.5		15.8
	장애가 없다	(82)	29.3	9.8	36.6	6.1	14.6	3.7
	모름/무응답	(1)	100.0					
혼인 여부	기혼	(26)	42.3	7.7	23.1	7.7	15.4	3.8
	이혼 또는 별거	(47)	25.5	10.6	40.4	6.4	10.6	6.4
	사별 후 독신	(14)	50.0	7.1	28.6	7.1		7.1
	미혼(19세 이상)	(14)	28.6	7.1	28.6	7.1	21.4	7.1
	모름/무응답	(1)	100.0					
학력	무학	(2)	100.0					
	중졸이하	(28)	57.1	7.1	21.4	3.6	3.6	7.1
	고졸이하	(54)	27.8	11.1	33.3	5.6	16.7	5.6
	대졸이하	(16)	6.3	6.3	56.3	12.5	12.5	6.3
	대학원이상	(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41)	41.5	7.3	26.8	7.3	14.6	2.4
	아파트	(33)	30.3	12.1	33.3	6.1	12.1	6.1
	다가구(연립)주택	(20)	25.0	5.0	45.0	5.0	10.0	10.0
	기타	(7)	28.6	14.3	28.6	14.3		14.3
	모름/무응답	(1)	100.0					
주거 형태	자가	(15)	20.0	6.7	46.7	6.7	13.3	6.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8)	37.5	12.5	50.0			
	월세	(34)	38.2		29.4	11.8	11.8	8.8
	장기(영구)임대	(24)	41.7	8.3	29.2		12.5	8.3
	기타	(18)	27.8	16.7	27.8	11.1	16.7	
	모름/무응답	(2)	50.0	50.0				

14. 자활근로 참여 의향에 대한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응답자(N=102명)에게 자활근로 참여 의향에 대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생계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라는 응답이 1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가 10.8%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므로’(5.9%), ‘자활사업은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4.9%),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3.9%),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2.0%), ‘자활근로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응답은 7.8%, ‘없음/모름/무응답’은 45.1%였다.

No.	참여 의향에 대한 이유	비율 (%)
1	생계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17.6%
2	건강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	10.8%
3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므로	5.9%
4	자활사업은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4.9%
5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3.9%
6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2.0%
7	자활근로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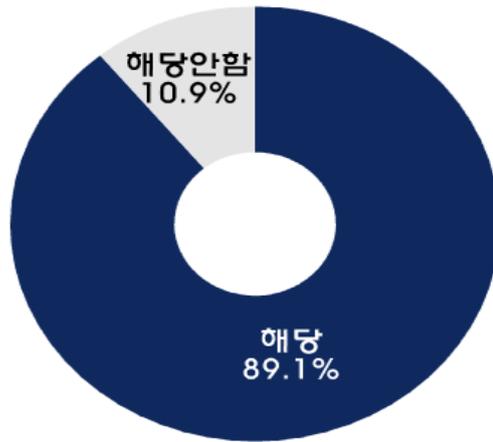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중 응답자 102명)

【표 14】 자활근로 참여의향에 대한 이유

단위:%	사례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건강상 일할 수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자인감을 얻지 못함	자활사업은 쉽게 할 수 있음	가족을 도와야 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이 있음	자활근로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음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2)	17.6	2.0	5.9	4.9	2.0	10.8	3.9	7.8	45.1	
구분	기초 수급자	(102)	17.6	2.0	5.9	4.9	2.0	10.8	3.9	7.8	45.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8)	13.2	5.3	7.9	2.6		10.5	2.6	7.9	50.0
	6대 광역시	(24)	25.0		4.2			8.3	12.5	8.3	41.7
	중소도시	(25)	24.0		8.0			8.0		12.0	40.0
	기타 농어촌	(15)	6.7			13.3	13.3	20.0			46.7
성별	남성	(26)	26.9					15.4		7.7	50.0
	여성	(76)	14.5	2.6	7.9	6.6	2.6	9.2	5.3	7.9	43.4
연령별	20대	(8)	12.5		12.5	12.5			12.5	12.5	37.5
	30대	(18)	33.3	11.1	5.6					11.1	38.9
	40대	(39)	15.4		7.7	2.6	2.6	10.3	7.7	7.7	46.2
	50대	(27)	14.8		3.7	7.4		22.2			51.9
	60대	(9)	11.1			11.1	11.1	11.1		22.2	33.3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5)				20.0					80.0
	임시고용	(2)			50.0						50.0
	일용직	(1)								100.0	
	자영업	(1)									100.0
	자활근로	(78)	19.2	2.6	6.4	3.8	2.6	10.3	5.1	9.0	41.0
	비경제활동	(3)						33.3			66.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9)	15.8		5.3			21.1			57.9
	장애가 없다	(82)	18.3	2.4	6.1	6.1	2.4	8.5	4.9	9.8	41.5
	모름/무응답	(1)									100.0
	기혼	(26)	19.2		7.7			15.4	3.8	7.7	46.2
	이혼 또는 별거	(47)	19.1	4.3	4.3	4.3		6.4	6.4	10.6	44.7
	사별 후 독신	(14)	21.4		7.1		14.3	14.3			42.9
혼인 여부	미혼(19세 이상)	(14)	7.1		7.1	21.4		14.3		7.1	42.9
	모름/무응답	(1)									100.0
	무학	(2)				50.0					50.0
	중졸이하	(28)	17.9		3.6	3.6	3.6	10.7		10.7	50.0
학력	고졸이하	(54)	16.7	3.7	9.3	3.7	1.9	14.8	7.4	5.6	37.0
	대졸이하	(16)	25.0			6.3				12.5	56.3
	대학원이상	(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41)	22.0		7.3	7.3	4.9	9.8	4.9	4.9	39.0
	아파트	(33)	18.2		6.1	6.1		12.1		6.1	51.5
	다가구(연립)주택	(20)	5.0	10.0	5.0				10.0	15.0	55.0
	기타	(7)	28.6					42.9		14.3	14.3
	모름/무응답	(1)									100.0
주거 형태	자가	(15)	20.0		6.7		6.7	6.7	6.7	6.7	46.7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8)	37.5					12.5		25.0	25.0
	월세	(34)	11.8	5.9	5.9	8.8	2.9	11.8	2.9	5.9	44.1
	장기(영구)임대	(24)	8.3		12.5	4.2		16.7		8.3	50.0
	기타	(18)	33.3			5.6		5.6	11.1	5.6	38.9
모름/무응답	(2)									100.0	

15.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9.1%로 나타나며,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0.9%였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생계급여의 적절성에 대하여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응답을 받은 결과, 수급방법(3.57점) > 지원기간(3.31점) > 지원규모(2.81점) 순으로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5점 기준)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수급방법	52.1%	27.7%	11.9%	3.57점
생계급여 지원규모	22.4%	34.6%	38.8%	2.81점
생계급여 지원기간	39.3%	34.6%	14.1%	3.31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361명)

【표 15】 생계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528)	68.4	31.6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9.1	10.9
	기초 탈락자	(123)		100.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71.7	28.3
	6대 광역시	(79)	82.3	17.7
	중소도시	(170)	60.6	39.4
	기타 농어촌	(120)	65.8	34.2
성별	남성	(177)	67.8	32.2
	여성	(351)	68.7	31.3
연령별	10대	(11)	81.8	18.2
	20대	(37)	48.6	51.4
	30대	(68)	69.1	30.9
	40대	(136)	69.9	30.1
	50대	(103)	62.1	37.9
	60대	(64)	76.6	23.4
	70대	(78)	70.5	29.5
	80대 이상	(29)	79.3	20.7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42.9	57.1
	임시고용	(26)	46.2	53.8
	일용직	(27)	48.1	51.9
	자영업	(14)	64.3	35.7
	자활근로	(104)	66.3	33.7
	실업	(21)	76.2	23.8
	비경제활동	(213)	80.8	19.2
	기타	(35)	42.9	57.1
	모름/무응답	(53)	75.5	24.5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83.0	17.0
	장애가 없다	(296)	83.1	16.9
	모름/무응답	(4)	75.0	25.0
혼인여부	기혼	(123)	61.0	39.0
	이혼 또는 별거	(146)	71.2	28.8
	사별 후 독신	(151)	70.9	29.1
	미혼(19세 이상)	(83)	72.3	27.7
	그 외 기타	(17)	76.5	23.5
	모름/무응답	(8)	25.0	75.0
학력	무학	(80)	82.5	17.5
	중졸이하	(200)	70.0	30.0
	고졸이하	(175)	65.7	34.3
	대졸이하	(60)	61.7	38.3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27.3	72.7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64.6	35.4
	아파트	(138)	75.4	24.6
	다가구(연립)주택	(107)	72.0	28.0
	무허가주택	(13)	69.2	30.8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66.7	33.3
	모름/무응답	(9)	22.2	77.8
주거형태	자가	(134)	59.7	40.3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56.4	43.6
	월세	(140)	74.3	25.7
	장기(영구)임대	(108)	80.6	19.4
	기타	(76)	71.1	28.9
모름/무응답	(14)	35.7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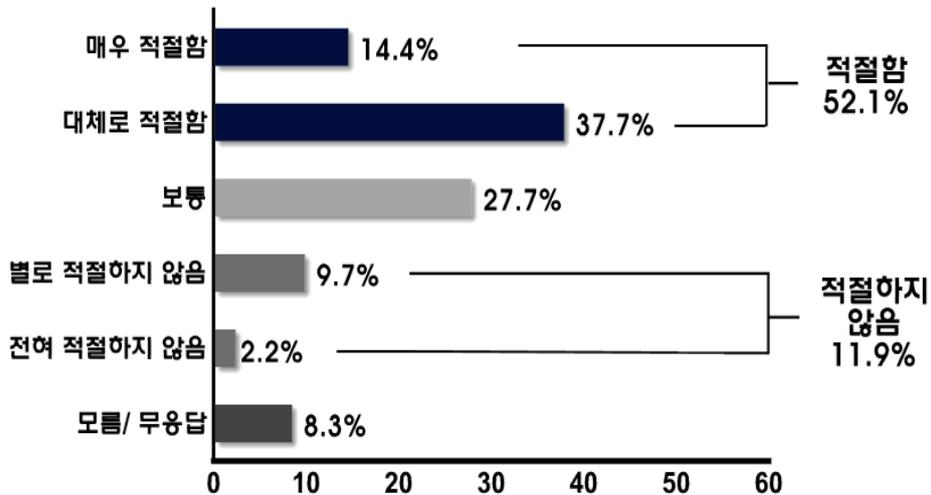
15_1. 생계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361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2.1%(매우 14.4% + 대체로 37.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1.9%(별로 9.7% + 전혀 2.2%)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7.7%, ‘잘 모르겠다’는 0.6%, ‘무응답’은 7.8%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7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수급방법	52.1%	27.7%	11.9%	3.57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361명)

【표 15_1】 생계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361)	14.4	37.7	27.7	9.7	2.2	0.6	52.1	27.7	11.9	7.8	3.57	
구분	기초 수급자	(361)	14.4	37.7	27.7	9.7	2.2	0.6	52.1	27.7	11.9	7.8	3.5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4)	17.5	29.8	30.7	8.8	5.3	1.8	47.4	30.7	14.0	6.1	3.50
	6대 광역시	(65)	15.4	36.9	29.2	9.2	1.5		52.3	29.2	10.8	7.7	3.60
	중소도시	(103)	10.7	50.5	23.3	11.7	1.0		61.2	23.3	12.6	2.9	3.60
	기타 농어촌	(79)	13.9	32.9	27.8	8.9			46.8	27.8	8.9	16.5	3.62
성별	남성	(120)	14.2	40.0	25.0	12.5	1.7		54.2	25.0	14.2	6.7	3.56
	여성	(241)	14.5	36.5	29.0	8.3	2.5	0.8	51.0	29.0	10.8	8.3	3.58
연령별	10대	(9)	11.1	22.2	66.7				33.3	66.7			3.44
	20대	(18)	5.6	55.6	27.8	5.6			61.1	27.8	5.6	5.6	3.65
	30대	(47)	19.1	44.7	19.1	6.4	4.3		63.8	19.1	10.6	6.4	3.73
	40대	(95)	12.6	30.5	27.4	14.7	1.1	1.1	43.2	27.4	15.8	12.6	3.45
	50대	(64)	20.3	37.5	25.0	10.9	4.7		57.8	25.0	15.6	1.6	3.59
	60대	(49)	12.2	40.8	32.7	8.2	2.0		53.1	32.7	10.2	4.1	3.55
	70대	(55)	12.7	43.6	23.6	7.3	1.8	1.8	56.4	23.6	9.1	9.1	3.65
	80대 이상	(23)	13.0	26.1	39.1	8.7			39.1	39.1	8.7	13.0	3.50
	모름/무응답	(1)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6.7	26.7	26.7	6.7	6.7		33.3	26.7	13.3	26.7	3.27
	임시고용	(12)	33.3	8.3	25.0	25.0			41.7	25.0	25.0	8.3	3.55
	일용직	(13)	38.5	30.8	30.8				69.2	30.8			4.08
	자영업	(9)	11.1	55.6	22.2				66.7	22.2		11.1	3.88
	자활근로	(69)	18.8	29.0	31.9	11.6	4.3	1.4	47.8	31.9	15.9	2.9	3.48
	실업	(16)	18.8	37.5	12.5	25.0	6.3		56.3	12.5	31.3		3.38
	비경제활동	(172)	11.0	40.7	26.7	9.3	1.7	0.6	51.7	26.7	11.0	9.9	3.56
	기타	(15)	13.3	20.0	53.3				33.3	53.3		13.3	3.54
	모름/무응답	(40)	10.0	57.5	22.5	7.5			67.5	22.5	7.5	2.5	3.7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12)	15.2	38.4	25.0	12.5	1.8	0.9	53.6	25.0	14.3	6.3	3.57
	장애가 없다	(246)	14.2	37.4	28.9	8.5	2.0	0.4	51.6	28.9	10.6	8.5	3.58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33.3		2.67
혼인 여부	기혼	(75)	9.3	29.3	34.7	12.0	1.3	1.3	38.7	34.7	13.3	12.0	3.38
	이혼 또는 별거	(104)	21.2	41.3	18.3	9.6	3.8		62.5	18.3	13.5	5.8	3.70
	사별 후 독신	(107)	15.9	34.6	26.2	9.3	2.8	0.9	50.5	26.2	12.1	10.3	3.58
	미혼(19세 이상)	(60)	6.7	45.0	35.0	10.0			51.7	35.0	10.0	3.3	3.50
	그 외 기타	(13)	15.4	38.5	46.2				53.8	46.2			3.69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6)	10.6	37.9	28.8	7.6	1.5	1.5	48.5	28.8	9.1	12.1	3.56
	중졸이하	(140)	16.4	38.6	30.0	11.4	1.4		55.0	30.0	12.9	2.1	3.58
	고졸이하	(115)	16.5	33.0	25.2	9.6	3.5		49.6	25.2	13.0	12.2	3.56
	대졸이하	(37)	8.1	45.9	27.0	8.1	2.7	2.7	54.1	27.0	10.8	5.4	3.53
	모름/무응답	(3)		66.7					66.7			33.3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6)	15.8	36.3	28.1	8.9	0.7		52.1	28.1	9.6	10.3	3.64
	아파트	(104)	12.5	40.4	24.0	14.4	5.8	1.0	52.9	24.0	20.2	1.9	3.41
	다가구(연립)주택	(77)	16.9	36.4	31.2	5.2		1.3	53.2	31.2	5.2	9.1	3.72
	무허가주택	(9)		44.4	44.4				44.4	44.4		11.1	3.5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2)	13.6	31.8	22.7	13.6	4.5		45.5	22.7	18.2	13.6	3.42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80)	11.3	41.3	28.8	10.0			52.5	28.8	10.0	8.8	3.59
	전세(1억 미만)	(31)	12.9	41.9	32.3	3.2			54.8	32.3	3.2	9.7	3.71
	월세	(104)	16.3	38.5	26.9	4.8	1.9	1.0	54.8	26.9	6.7	10.6	3.71
	장기(영구)임대	(87)	18.4	28.7	27.6	14.9	5.7	1.1	47.1	27.6	20.7	3.4	3.41
	기타	(54)	11.1	38.9	27.8	13.0	1.9		50.0	27.8	14.8	7.4	3.48
	모름/무응답	(5)		80.0		20.0			80.0		20.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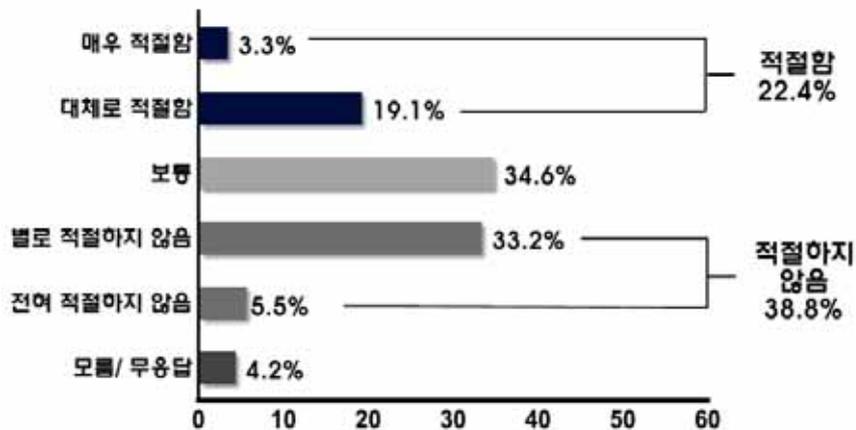
15_2. 생계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361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2.4%(매우 3.3% + 대체로 19.1%)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38.8%(별로 33.2% + 전혀 5.5%)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1.4%, ‘무응답’은 2.8%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지원규모	22.4%	34.6%	38.8%	2.81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361명)

【표 15_2】 생계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361)	3.3	19.1	34.6	33.2	5.5	1.4	22.4	34.6	38.8	2.8	2.81	
구분	기초 수급자	(361)	3.3	19.1	34.6	33.2	5.5	1.4	22.4	34.6	38.8	2.8	2.8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4)	5.3	14.9	28.1	37.7	8.8	1.8	20.2	28.1	46.5	3.5	2.69
	6대 광역시	(65)	6.2	15.4	35.4	36.9	4.6	1.5	21.5	35.4	41.5		2.81
	중소도시	(103)	1.0	25.2	35.0	33.0	1.0	1.9	26.2	35.0	34.0	2.9	2.92
	기타 농어촌	(79)	1.3	20.3	43.0	24.1	7.6		21.5	43.0	31.6	3.8	2.83
성별	남성	(120)	4.2	20.0	30.8	38.3	3.3		24.2	30.8	41.7	3.3	2.83
	여성	(241)	2.9	18.7	36.5	30.7	6.6	2.1	21.6	36.5	37.3	2.5	2.80
연령별	10대	(9)	11.1	22.2	44.4	22.2			33.3	44.4	22.2		3.22
	20대	(18)		27.8	44.4	16.7	5.6		27.8	44.4	22.2	5.6	3.00
	30대	(47)		23.4	36.2	27.7	6.4	2.1	23.4	36.2	34.0	4.3	2.82
	40대	(95)	3.2	14.7	40.0	34.7	3.2	3.2	17.9	40.0	37.9	1.1	2.79
	50대	(64)	6.3	20.3	17.2	43.8	6.3		26.6	17.2	50.0	6.3	2.75
	60대	(49)	4.1	16.3	40.8	28.6	10.2		20.4	40.8	38.8		2.76
	70대	(55)		23.6	30.9	34.5	5.5	1.8	23.6	30.9	40.0	3.6	2.77
	80대 이상	(23)	8.7	13.0	43.5	30.4	4.3		21.7	43.5	34.8		2.91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6.7	6.7	53.3	6.7		20.0	13.3	53.3	6.7	6.7	3.18
	임시고용	(12)		16.7	41.7	33.3	8.3		16.7	41.7	41.7		2.67
	일용직	(13)		30.8	23.1	30.8	7.7		30.8	23.1	38.5	7.7	2.83
	자영업	(9)		44.4	44.4	11.1			44.4	44.4	11.1		3.33
	자활근로	(69)	4.3	17.4	36.2	33.3	5.8	1.4	21.7	36.2	39.1	1.4	2.81
	실업	(16)		6.3	43.8	18.8	25.0		6.3	43.8	43.8	6.3	2.33
	비경제활동	(172)	4.1	19.8	33.1	34.3	5.2	0.6	23.8	33.1	39.5	2.9	2.83
	기타	(15)		13.3	40.0	46.7			13.3	40.0	46.7		2.67
	모름/무응답	(40)	2.5	22.5	25.0	45.0	2.5		25.0	25.0	47.5	2.5	2.7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12)	5.4	14.3	33.0	37.5	4.5	0.9	19.6	33.0	42.0	4.5	2.77
	장애가 없다	(246)	2.4	21.1	35.4	31.7	5.7	1.6	23.6	35.4	37.4	2.0	2.82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2.67	
혼인 여부	기혼	(75)	4.0	16.0	41.3	32.0	2.7	2.7	20.0	41.3	34.7	1.3	2.86
	이혼 또는 별거	(104)	2.9	20.2	26.0	40.4	4.8	1.9	23.1	26.0	45.2	3.8	2.74
	사별 후 독신	(107)	3.7	18.7	33.6	28.0	11.2	0.9	22.4	33.6	39.3	3.7	2.75
	미혼(19세 이상)	(60)	1.7	21.7	43.3	30.0	1.7		23.3	43.3	31.7	1.7	2.92
	그 외 기타	(13)	7.7	15.4	30.8	46.2			23.1	30.8	46.2		2.85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학력	무학	(66)	4.5	27.3	34.8	25.8	6.1	1.5	31.8	34.8	31.8		2.98
	중졸이하	(140)	3.6	17.1	36.4	34.3	6.4		20.7	36.4	40.7	2.1	2.77
	고졸이하	(115)	2.6	14.8	31.3	40.0	5.2	1.7	17.4	31.3	45.2	4.3	2.68
	대졸이하	(37)	2.7	21.6	37.8	24.3	2.7	5.4	24.3	37.8	27.0	5.4	2.97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6)	3.4	22.6	39.7	28.1	3.4		26.0	39.7	31.5	2.7	2.94
	아파트	(104)	3.8	14.4	29.8	37.5	9.6	1.9	18.3	29.8	47.1	2.9	2.64
	다가구(연립)주택	(77)	3.9	16.9	28.6	41.6	3.9	2.6	20.8	28.6	45.5	2.6	2.74
	무허가주택	(9)		33.3	33.3	33.3			33.3	33.3	33.3		3.00
	구호시설	(1)				100.0					100.0		2.00
	기타	(22)		18.2	45.5	18.2	9.1	4.5	18.2	45.5	27.3	4.5	2.8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주거 형태	자가	(80)	2.5	25.0	32.5	33.8	5.0		27.5	32.5	38.8	1.3	2.86
	전세(1억 미만)	(31)	6.5	19.4	38.7	25.8	3.2		25.8	38.7	29.0	6.5	3.00
	월세	(104)	3.8	20.2	37.5	28.8	4.8	2.9	24.0	37.5	33.7	1.9	2.89
	장기(영구)임대	(87)	3.4	8.0	33.3	42.5	10.3	1.1	11.5	33.3	52.9	1.1	2.51
	기타	(54)	1.9	24.1	31.5	31.5	1.9	1.9	25.9	31.5	33.3	7.4	2.92
	모름/무응답	(5)		40.0	40.0	20.0			40.0	40.0	20.0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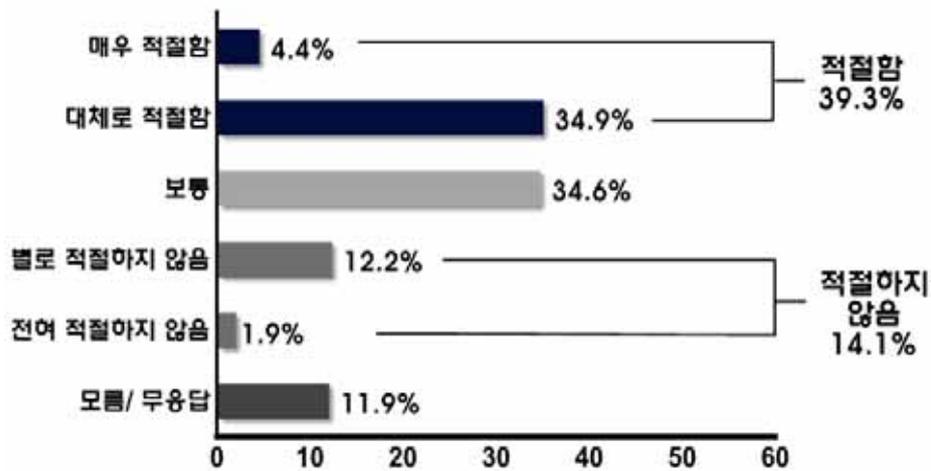
15_3. 생계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361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3%(매우 4.4% + 대체로 34.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1%(별로 12.2% + 전혀 1.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2.2%, ‘무응답’은 9.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1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생계급여 지원기간	39.3%	34.6%	14.1%	3.3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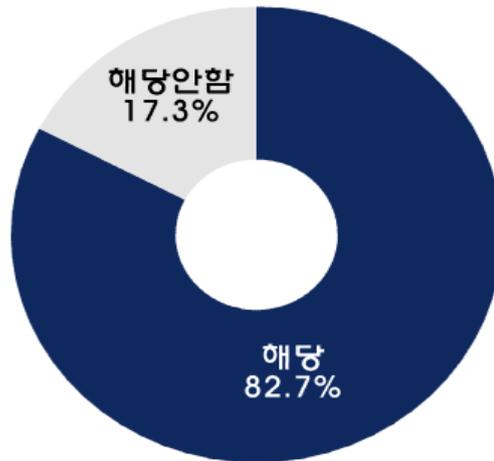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361명)

【표 15_3】 생계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361)	4.4	34.9	34.6	12.2	1.9	2.2	39.3	34.6	14.1	9.7	3.31	
구분	기초 수급자	(361)	4.4	34.9	34.6	12.2	1.9	2.2	39.3	34.6	14.1	9.7	3.3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4)	7.0	26.3	37.7	11.4	4.4	2.6	33.3	37.7	15.8	10.5	3.23
	6대 광역시	(65)	4.6	32.3	36.9	13.8	3.1	1.5	36.9	36.9	16.9	7.7	3.24
	중소도시	(103)	2.9	46.6	29.1	11.7		3.9	49.5	29.1	11.7	5.8	3.45
	기타 농어촌	(79)	2.5	34.2	35.4	12.7			36.7	35.4	12.7	15.2	3.31
성별	남성	(120)	5.0	39.2	32.5	13.3	0.8	2.5	44.2	32.5	14.2	6.7	3.38
	여성	(241)	4.1	32.8	35.7	11.6	2.5	2.1	36.9	35.7	14.1	11.2	3.28
연령별	10대	(9)	11.1	11.1	55.6	11.1			22.2	55.6	11.1	11.1	3.25
	20대	(18)		44.4	33.3	5.6			44.4	33.3	5.6	16.7	3.47
	30대	(47)	4.3	38.3	29.8	12.8	2.1	2.1	42.6	29.8	14.9	10.6	3.34
	40대	(95)	3.2	27.4	36.8	16.8	1.1	3.2	30.5	36.8	17.9	11.6	3.17
	50대	(64)	9.4	37.5	29.7	12.5	1.6	3.1	46.9	29.7	14.1	6.3	3.45
	60대	(49)	4.1	34.7	40.8	10.2	6.1		38.8	40.8	16.3	4.1	3.21
	70대	(55)	1.8	45.5	30.9	7.3	1.8	3.6	47.3	30.9	9.1	9.1	3.44
	80대 이상	(23)	4.3	30.4	39.1	13.0			34.8	39.1	13.0	13.0	3.30
	모름/무응답	(1)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6.7	26.7	33.3	13.3			33.3	33.3	13.3	20.0	3.33
	임시고용	(12)	8.3	25.0	33.3	16.7	8.3		33.3	33.3	25.0	8.3	3.09
	일용직	(13)	7.7	46.2	30.8	7.7			53.8	30.8	7.7	7.7	3.58
	자영업	(9)		44.4	44.4				44.4	44.4		11.1	3.50
	자활근로	(69)	5.8	34.8	34.8	14.5	2.9	2.9	40.6	34.8	17.4	4.3	3.28
	실업	(16)	12.5	31.3	25.0	25.0	6.3		43.8	25.0	31.3		3.19
	비경제활동	(172)	2.9	35.5	33.1	12.8	1.7	2.3	38.4	33.1	14.5	11.6	3.29
	기타	(15)		13.3	60.0			6.7	13.3	60.0		20.0	3.18
모름/무응답	(40)	5.0	42.5	35.0	7.5		2.5	47.5	35.0	7.5	7.5	3.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12)	6.3	33.9	32.1	15.2	1.8	2.7	40.2	32.1	17.0	8.0	3.31
	장애가 없다	(246)	3.7	35.4	35.8	11.0	1.6	2.0	39.0	35.8	12.6	10.6	3.33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2.67	
혼인 여부	기혼	(75)	2.7	30.7	38.7	14.7		4.0	33.3	38.7	14.7	9.3	3.25
	이혼 또는 별거	(104)	5.8	42.3	23.1	14.4	1.9	1.9	48.1	23.1	16.3	10.6	3.41
	사별 후 독신	(107)	4.7	31.8	36.4	9.3	4.7	1.9	36.4	36.4	14.0	11.2	3.26
	미혼(19세 이상)	(60)	3.3	31.7	43.3	13.3			35.0	43.3	13.3	8.3	3.27
	그 외 기타	(13)	7.7	30.8	53.8			7.7	38.5	53.8			3.50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6)	4.5	39.4	30.3	9.1	3.0	3.0	43.9	30.3	12.1	10.6	3.39
	중졸이하	(140)	5.7	35.0	39.3	12.9	1.4	0.7	40.7	39.3	14.3	5.0	3.33
	고졸이하	(115)	3.5	32.2	33.0	13.0	2.6	2.6	35.7	33.0	15.7	13.0	3.25
	대졸이하	(37)	2.7	32.4	32.4	13.5		5.4	35.1	32.4	13.5	13.5	3.30
	모름/무응답	(3)		66.7					66.7			33.3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6)	4.1	37.0	34.9	10.3		1.4	41.1	34.9	10.3	12.3	3.40
	아파트	(104)	4.8	32.7	28.8	19.2	5.8	4.8	37.5	28.8	25.0	3.8	3.13
	다가구(연립)주택	(77)	5.2	31.2	42.9	7.8	1.3	1.3	36.4	42.9	9.1	10.4	3.35
	무허가주택	(9)		55.6	44.4				55.6	44.4			3.56
	구호시설	(1)				100.0					100.0		2.00
	기타	(22)	4.5	31.8	31.8	9.1			36.4	31.8	9.1	22.7	3.41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80)	3.8	40.0	32.5	11.3		2.5	43.8	32.5	11.3	10.0	3.41
	전세(1억 미만)	(31)	6.5	41.9	35.5	3.2			48.4	35.5	3.2	12.9	3.59
	월세	(104)	4.8	35.6	40.4	6.7	1.0	1.9	40.4	40.4	7.7	9.6	3.41
	장기(영구)임대	(87)	4.6	20.7	37.9	21.8	6.9	2.3	25.3	37.9	28.7	5.7	2.94
	기타	(54)	3.7	42.6	20.4	14.8		3.7	46.3	20.4	14.8	14.8	3.43
모름/무응답	(5)		60.0	40.0				60.0	40.0			3.60	

16. 주거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2.7%로 나타났으며,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7.3%였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주거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53점) > 지원기간(3.30점) > 지원규모(2.8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주거급여 수급방법	48.7%	31.6%	10.4%	3.53점
주거급여 지원규모	24.5%	34.3%	35.5%	2.85점
주거급여 지원기간	37.0%	37.0%	12.5%	3.30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335명)

【표 16】 주거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528)	63.4	36.6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2.7	17.3
	기초 탈락자	(123)		100.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69.2	30.8
	6대 광역시	(79)	62.0	38.0
	중소도시	(170)	58.2	41.8
	기타 농어촌	(120)	64.2	35.8
성별	남성	(177)	62.7	37.3
	여성	(351)	63.8	36.2
연령별	10대	(11)	63.6	36.4
	20대	(37)	45.9	54.1
	30대	(68)	61.8	38.2
	40대	(136)	65.4	34.6
	50대	(103)	55.3	44.7
	60대	(64)	78.1	21.9
	70대	(78)	65.4	34.6
	80대 이상	(29)	72.4	27.6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40.0	60.0
	임시고용	(26)	46.2	53.8
	일용직	(27)	48.1	51.9
	자영업	(14)	50.0	50.0
	자활근로	(104)	62.5	37.5
	실업	(21)	66.7	33.3
	비경제활동	(213)	76.5	23.5
	기타	(35)	37.1	62.9
	모름/무응답	(53)	64.2	35.8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77.0	23.0
	장애가 없다	(296)	77.4	22.6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여부	기혼	(123)	51.2	48.8
	이혼 또는 별거	(146)	69.9	30.1
	사별 후 독신	(151)	69.5	30.5
	미혼(19세 이상)	(83)	65.1	34.9
	그 외 기타	(17)	58.8	41.2
	모름/무응답	(8)	12.5	87.5
학력	무학	(80)	80.0	20.0
	중졸이하	(200)	64.5	35.5
	고졸이하	(175)	58.9	41.1
	대졸이하	(60)	61.7	38.3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18.2	81.8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61.1	38.9
	아파트	(138)	70.3	29.7
	다가구(연립)주택	(107)	65.4	34.6
	무허가주택	(13)	61.5	38.5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60.6	39.4
모름/무응답	(9)	11.1	88.9	
주거형태	자가	(134)	57.5	42.5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54.5	45.5
	월세	(140)	66.4	33.6
	장기(영구)임대	(108)	75.0	25.0
	기타	(76)	64.5	35.5
모름/무응답	(14)	28.6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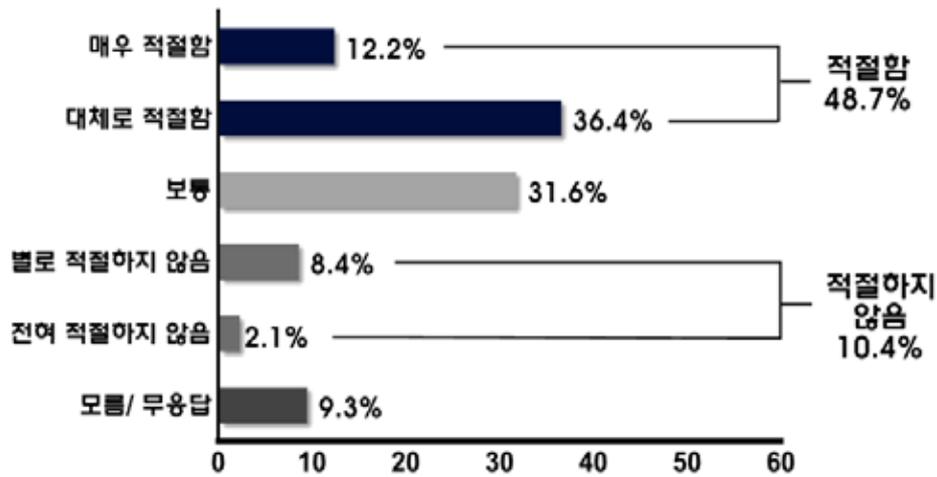
16_1. 주거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335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7%(매우 12.2% + 대체로 36.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0.4%(별로 8.4% + 전혀 2.1%)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1.6%, ‘잘 모르겠다’는 1.2%, ‘무응답’은 8.1%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주거급여 수급방법	48.7%	31.6%	10.4%	3.53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335명)

【표 16_1】 주거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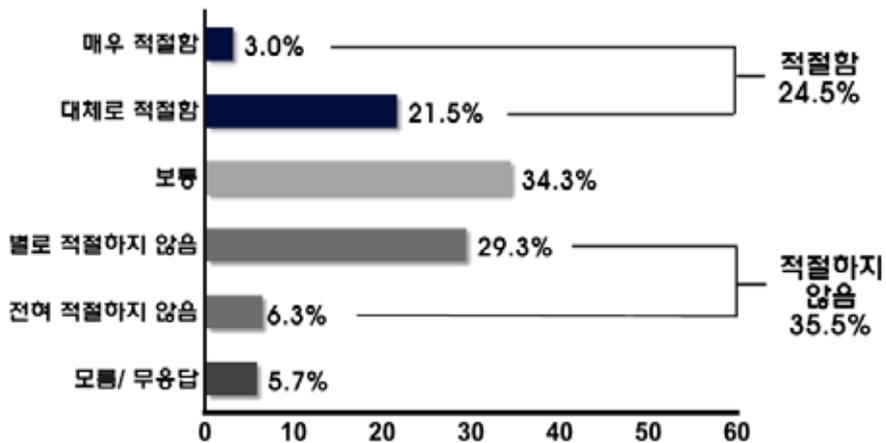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335)	12.2	36.4	31.6	8.4	2.1	1.2	48.7	31.6	10.4	8.1	3.53	
구분	기초 수급자	(335)	12.2	36.4	31.6	8.4	2.1	1.2	48.7	31.6	10.4	8.1	3.5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0)	16.4	30.0	30.9	10.0	5.5	1.8	46.4	30.9	15.5	5.5	3.45
	6대 광역시	(49)	12.2	36.7	32.7	6.1	2.0		49.0	32.7	8.2	10.2	3.57
	중소도시	(99)	10.1	43.4	30.3	11.1		2.0	53.5	30.3	11.1	3.0	3.55
	기타 농어촌	(77)	9.1	36.4	33.8	3.9			45.5	33.8	3.9	16.9	3.61
성별	남성	(111)	9.0	44.1	29.7	9.0	1.8	0.9	53.2	29.7	10.8	5.4	3.53
	여성	(224)	13.8	32.6	32.6	8.0	2.2	1.3	46.4	32.6	10.3	9.4	3.54
연령별	10대	(7)		28.6	57.1	14.3			28.6	57.1	14.3		3.14
	20대	(17)	5.9	41.2	41.2	5.9			47.1	41.2	5.9	5.9	3.50
	30대	(42)	19.0	26.2	35.7	2.4	4.8		45.2	35.7	7.1	11.9	3.59
	40대	(89)	9.0	36.0	28.1	13.5		1.1	44.9	28.1	13.5	12.4	3.47
	50대	(57)	19.3	35.1	28.1	14.0	1.8		54.4	28.1	15.8	1.8	3.57
	60대	(50)	8.0	44.0	30.0	6.0	6.0	2.0	52.0	30.0	12.0	4.0	3.45
	70대	(51)	11.8	45.1	29.4	3.9	2.0	2.0	56.9	29.4	5.9	5.9	3.66
	80대 이상	(21)	14.3	23.8	42.9			4.8	38.1	42.9		14.3	3.65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4)	7.1	21.4	21.4	14.3		7.1	28.6	21.4	14.3	28.6	3.33
	일시고용	(12)	25.0	8.3	33.3	25.0			33.3	33.3	25.0	8.3	3.36
	일용직	(13)	23.1	38.5	38.5				61.5	38.5			3.85
	자영업	(7)	14.3	57.1	28.6				71.4	28.6			3.86
	자활근로	(65)	18.5	29.2	29.2	12.3	3.1	3.1	47.7	29.2	15.4	4.6	3.52
	실업	(14)	21.4	35.7	28.6	7.1	7.1		57.1	28.6	14.3		3.57
	비경제활동	(163)	8.6	39.3	32.5	6.7	1.8	0.6	47.9	32.5	8.6	10.4	3.52
	기타	(13)	7.7	23.1	38.5	7.7	7.7		30.8	38.5	15.4	15.4	3.18
	모름/무응답	(34)	8.8	52.9	32.4	5.9			61.8	32.4	5.9		3.65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04)	14.4	38.5	31.7	5.8	1.9		52.9	31.7	7.7	7.7	3.63
	장애가 없다	(229)	11.4	35.4	31.9	9.6	1.7	1.7	46.7	31.9	11.4	8.3	3.5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2.50
혼인여부	기혼	(63)	6.3	33.3	38.1	6.3	3.2		39.7	38.1	9.5	12.7	3.38
	이혼 또는 별거	(102)	17.6	40.2	21.6	10.8	1.0	1.0	57.8	21.6	11.8	7.8	3.69
	사별 후 독신	(105)	14.3	32.4	31.4	5.7	3.8	2.9	46.7	31.4	9.5	9.5	3.54
	미혼(19세 이상)	(54)	7.4	38.9	38.9	13.0			46.3	38.9	13.0	1.9	3.42
	그 외 기타	(10)		40.0	60.0				40.0	60.0			3.4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4)	10.9	37.5	31.3	3.1	3.1	3.1	48.4	31.3	6.3	10.9	3.58
	중졸이하	(129)	13.2	39.5	31.8	10.9	1.6	0.8	52.7	31.8	12.4	2.3	3.54
	고졸이하	(103)	13.6	31.1	29.1	9.7	2.9	1.0	44.7	29.1	12.6	12.6	3.49
	대졸이하	(37)	8.1	37.8	40.5	5.4			45.9	40.5	5.4	8.1	3.53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38)	11.6	37.7	33.3	5.8	1.4	1.4	49.3	33.3	7.2	8.7	3.58
	아파트	(97)	11.3	38.1	26.8	12.4	5.2	2.1	49.5	26.8	17.5	4.1	3.41
	다가구(연립)주택	(70)	15.7	32.9	34.3	7.1			48.6	34.3	7.1	10.0	3.63
	무허가주택	(8)		50.0	37.5				50.0	37.5		12.5	3.57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0)	15.0	25.0	30.0	15.0			40.0	30.0	15.0	15.0	3.47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형태	자가	(77)	9.1	42.9	32.5	5.2			51.9	32.5	5.2	10.4	3.62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5.00
	전세(1억 미만)	(30)	6.7	30.0	43.3	3.3	6.7	3.3	36.7	43.3	10.0	6.7	3.30
	월세	(93)	17.2	34.4	29.0	7.5		1.1	51.6	29.0	7.5	10.8	3.70
	장기(영구)임대	(81)	16.0	32.1	28.4	9.9	6.2	2.5	48.1	28.4	16.0	4.9	3.45
	기타	(49)	4.1	42.9	32.7	14.3			46.9	32.7	14.3	6.1	3.39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25.0	50.0	25.0		3.00

16_2. 주거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335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4.5%(매우 3.0% + 대체로 21.5%),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5.5%(별로 29.3% + 전혀 6.3%)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르겠다’는 2.1%, ‘무응답’은 3.6%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85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주거급여 지원규모	24.5%	34.3%	35.5%	2.85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335명)

【표 16_2】 주거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335)	3.0	21.5	34.3	29.3	6.3	2.1	24.5	34.3	35.5	3.6	2.85	
구분	기초 수급자	(335)	3.0	21.5	34.3	29.3	6.3	2.1	24.5	34.3	35.5	3.6	2.8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0)	7.3	18.2	25.5	30.0	12.7	1.8	25.5	25.5	42.7	4.5	2.76
	6대 광역시	(49)		20.4	38.8	32.7	4.1	2.0	20.4	38.8	36.7	2.0	2.79
	중소도시	(99)		23.2	34.3	32.3		4.0	23.2	34.3	32.3	6.1	2.90
	기타 농어촌	(77)	2.6	24.7	44.2	22.1	6.5		27.3	44.2	28.6		2.95
성별	남성	(111)	2.7	21.6	32.4	32.4	5.4	0.9	24.3	32.4	37.8	4.5	2.83
	여성	(224)	3.1	21.4	35.3	27.7	6.7	2.7	24.6	35.3	34.4	3.1	2.86
연령별	10대	(7)		14.3	28.6	42.9	14.3		14.3	28.6	57.1		2.43
	20대	(17)		29.4	41.2	17.6	5.9		29.4	41.2	23.5	5.9	3.00
	30대	(42)	4.8	19.0	35.7	21.4	7.1	2.4	23.8	35.7	28.6	9.5	2.92
	40대	(89)	2.2	22.5	37.1	32.6	1.1	3.4	24.7	37.1	33.7	1.1	2.92
	50대	(57)	5.3	19.3	21.1	40.4	8.8		24.6	21.1	49.1	5.3	2.70
	60대	(50)		22.0	42.0	20.0	10.0	2.0	22.0	42.0	30.0	4.0	2.81
	70대	(51)		25.5	31.4	33.3	5.9	2.0	25.5	31.4	39.2	2.0	2.80
	80대 이상	(21)	14.3	14.3	42.9	14.3	9.5	4.8	28.6	42.9	23.8		3.1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4)		21.4	35.7	21.4		21.4	21.4	35.7	21.4		3.00
	임시고용	(12)		8.3	41.7	50.0			8.3	41.7	50.0		2.58
	일용직	(13)		23.1	30.8	38.5			23.1	30.8	38.5	7.7	2.83
	자영업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자활근로	(65)	4.6	24.6	33.8	23.1	7.7	4.6	29.2	33.8	30.8	1.5	2.95
	실업	(14)	7.1	21.4	28.6	21.4	21.4		28.6	28.6	42.9		2.71
	비경제활동	(163)	3.7	19.6	35.0	30.1	6.1	0.6	23.3	35.0	36.2	4.9	2.84
	기타	(13)		15.4	38.5	30.8	15.4		15.4	38.5	46.2		2.54
	모름/무응답	(34)		23.5	32.4	35.3	2.9		23.5	32.4	38.2	5.9	2.81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4)	4.8	16.3	37.5	28.8	5.8		21.2	37.5	34.6	6.7	2.85
	장애가 없다	(229)	2.2	23.6	33.2	29.7	6.1	3.1	25.8	33.2	35.8	2.2	2.85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2.50
혼인 여부	기혼	(63)	6.3	19.0	38.1	27.0	6.3		25.4	38.1	33.3	3.2	2.92
	이혼 또는 별거	(102)	2.0	21.6	29.4	35.3	3.9	3.9	23.5	29.4	39.2	3.9	2.81
	사별 후 독신	(105)	2.9	21.9	35.2	22.9	10.5	2.9	24.8	35.2	33.3	3.8	2.83
	미혼(19세 이상)	(54)	1.9	25.9	37.0	27.8	3.7		27.8	37.0	31.5	3.7	2.94
	그 외 기타	(10)		10.0	30.0	60.0			10.0	30.0	60.0		2.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학력	무학	(64)	6.3	28.1	35.9	17.2	7.8	3.1	34.4	35.9	25.0	1.6	3.08
	중졸이하	(129)	3.1	20.9	33.3	32.6	6.2	0.8	24.0	33.3	38.8	3.1	2.81
	고졸이하	(103)	1.0	19.4	32.0	32.0	7.8	2.9	20.4	32.0	39.8	4.9	2.72
	대졸이하	(37)	2.7	18.9	40.5	29.7		2.7	21.6	40.5	29.7	5.4	2.94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2.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38)	1.4	25.4	37.0	26.8	4.3	1.4	26.8	37.0	31.2	3.6	2.92
	아파트	(97)	5.2	19.6	32.0	27.8	9.3	3.1	24.7	32.0	37.1	3.1	2.82
	다가구(연립)주택	(70)	4.3	20.0	30.0	34.3	5.7	1.4	24.3	30.0	40.0	4.3	2.82
	무허가주택	(8)		25.0	12.5	50.0			25.0	12.5	50.0	12.5	2.71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0)		10.0	45.0	30.0	10.0	5.0	10.0	45.0	40.0		2.5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주거 형태	자가	(77)	1.3	23.4	39.0	28.6	5.2		24.7	39.0	33.8	2.6	2.87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1.00
	전세(1억 미만)	(30)	3.3	16.7	36.7	16.7	10.0	3.3	20.0	36.7	26.7	13.3	2.84
	월세	(93)	1.1	24.7	34.4	32.3	4.3	2.2	25.8	34.4	36.6	1.1	2.86
	장기(영구)임대	(81)	6.2	14.8	33.3	28.4	11.1	2.5	21.0	33.3	39.5	3.7	2.75
	기타	(49)	4.1	28.6	24.5	34.7		4.1	32.7	24.5	34.7	4.1	3.02
모름/무응답	(4)			75.0	25.0				75.0	25.0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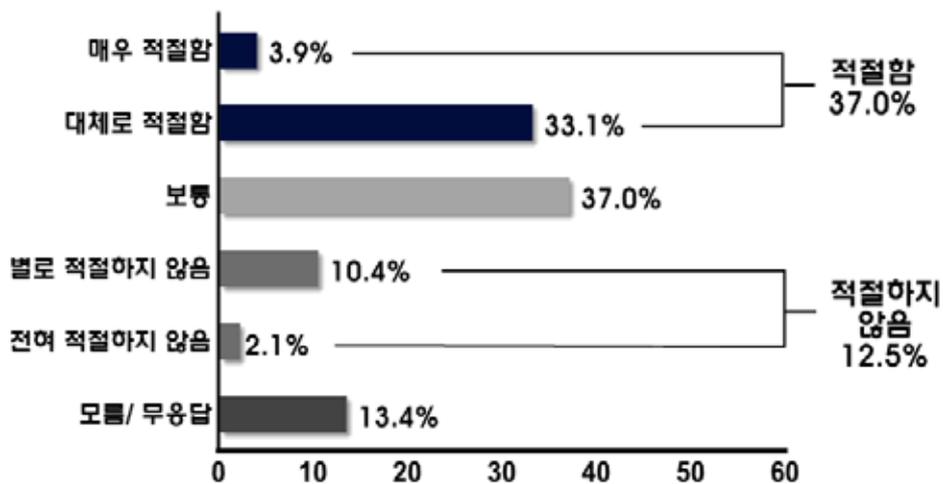
16_3. 주거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335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7.0%(매우 3.9% + 대체로 33.1%),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2.5%(별로 10.4% + 전혀 2.1%)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7.0%, ‘잘 모르겠다’는 3.0%, ‘무응답’은 10.4%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0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주거급여 지원기간	37.0%	37.0%	12.5%	3.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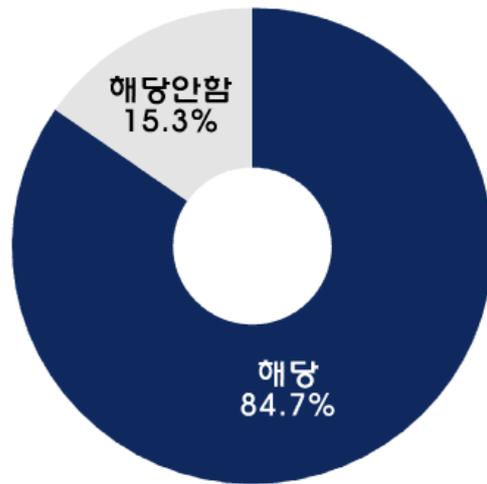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335명)

【표 16_3】 주거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335)	3.9	33.1	37.0	10.4	2.1	3.0	37.0	37.0	12.5	10.4	3.30	
구분	기초 수급자	(335)	3.9	33.1	37.0	10.4	2.1	3.0	37.0	37.0	12.5	10.4	3.3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0)	7.3	24.5	40.9	9.1	4.5	3.6	31.8	40.9	13.6	10.0	3.24
	6대 광역시	(49)	2.0	34.7	34.7	14.3	2.0		36.7	34.7	16.3	12.2	3.23
	중소도시	(99)	2.0	41.4	34.3	11.1		6.1	43.4	34.3	11.1	5.1	3.39
	기타 농어촌	(77)	2.6	33.8	36.4	9.1	1.3		36.4	36.4	10.4	16.9	3.33
성별	남성	(111)	2.7	38.7	36.9	10.8	0.9	3.6	41.4	36.9	11.7	6.3	3.35
	여성	(224)	4.5	30.4	37.1	10.3	2.7	2.7	34.8	37.1	12.9	12.5	3.28
연령별	10대	(7)		28.6	42.9	28.6			28.6	42.9	28.6		3.00
	20대	(17)		35.3	41.2	5.9			35.3	41.2	5.9	17.6	3.36
	30대	(42)	7.1	28.6	38.1	7.1	4.8	2.4	35.7	38.1	11.9	11.9	3.31
	40대	(89)	3.4	28.1	36.0	13.5	1.1	2.2	31.5	36.0	14.6	15.7	3.23
	50대	(57)	7.0	35.1	31.6	15.8	1.8	3.5	42.1	31.6	17.5	5.3	3.33
	60대	(50)		36.0	40.0	10.0	6.0	4.0	36.0	40.0	16.0	4.0	3.15
	70대	(51)	2.0	45.1	35.3	5.9		3.9	47.1	35.3	5.9	7.8	3.49
	80대 이상	(21)	9.5	23.8	47.6			4.8	33.3	47.6		14.3	3.53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4)		21.4	28.6	14.3		7.1	21.4	28.6	14.3	28.6	3.11
	임시고용	(12)	8.3	16.7	33.3	33.3			25.0	33.3	33.3	8.3	3.00
	일용직	(13)	7.7	38.5	38.5	7.7			46.2	38.5	7.7	7.7	3.50
	자영업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자활근로	(65)	3.1	32.3	40.0	7.7	4.6	4.6	35.4	40.0	12.3	7.7	3.25
	실업	(14)	14.3	21.4	42.9	14.3	7.1		35.7	42.9	21.4		3.21
	비경제활동	(163)	3.7	33.7	37.4	9.8	1.2	3.1	37.4	37.4	11.0	11.0	3.34
	기타	(13)		15.4	46.2	15.4	7.7		15.4	46.2	23.1	15.4	2.82
		모름/무응답	(34)	2.9	47.1	29.4	5.9		2.9	50.0	29.4	5.9	11.8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4)	6.7	31.7	37.5	10.6	1.9	1.9	38.5	37.5	12.5	9.6	3.35
	장애가 없다	(229)	2.6	33.6	36.7	10.5	2.2	3.5	36.2	36.7	12.7	10.9	3.28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혼인 여부	기혼	(63)	3.2	27.0	42.9	9.5	3.2	3.2	30.2	42.9	12.7	11.1	3.20
	이혼 또는 별거	(102)	4.9	38.2	30.4	12.7	1.0	2.0	43.1	30.4	13.7	10.8	3.38
	사별 후 독신	(105)	3.8	30.5	36.2	8.6	3.8	4.8	34.3	36.2	12.4	12.4	3.26
	미혼(19세 이상)	(54)	3.7	35.2	40.7	13.0			38.9	40.7	13.0	7.4	3.32
	그 외 기타	(10)		30.0	60.0			10.0	30.0	60.0			3.3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4)	6.3	42.2	31.3	4.7	1.6	4.7	48.4	31.3	6.3	9.4	3.55
	중졸이하	(129)	4.7	32.6	41.1	13.2	0.8	2.3	37.2	41.1	14.0	5.4	3.29
	고졸이하	(103)	1.9	29.1	35.9	10.7	3.9	2.9	31.1	35.9	14.6	15.5	3.18
	대졸이하	(37)	2.7	29.7	37.8	10.8	2.7	2.7	32.4	37.8	13.5	13.5	3.23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38)	2.9	36.2	37.7	7.2	1.4	2.2	39.1	37.7	8.7	12.3	3.37
	아파트	(97)	6.2	33.0	27.8	17.5	3.1	7.2	39.2	27.8	20.6	5.2	3.25
	다가구(연립)주택	(70)	2.9	28.6	45.7	8.6	1.4		31.4	45.7	10.0	12.9	3.26
	무허가주택	(8)		37.5	62.5				37.5	62.5			3.38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0)	5.0	25.0	35.0	10.0	5.0		30.0	35.0	15.0	20.0	3.1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주거 형태	자가	(77)	2.6	40.3	33.8	7.8	1.3	2.6	42.9	33.8	9.1	11.7	3.41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3.00
	전세(1억 미만)	(30)	6.7	33.3	36.7	6.7	6.7	3.3	40.0	36.7	13.3	6.7	3.30
	월세	(93)	2.2	32.3	41.9	7.5	1.1	1.1	34.4	41.9	8.6	14.0	3.32
	장기(영구)임대	(81)	7.4	21.0	40.7	16.0	3.7	4.9	28.4	40.7	19.8	6.2	3.14
	기타	(49)	2.0	42.9	26.5	12.2		4.1	44.9	26.5	12.2	12.2	3.41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50.0	25.0	25.0		3.25

17. 의료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84.7%로 나타나며,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15.3%였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의료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가지 평가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68점) > 지원기간(3.60점) > 지원규모(3.48점) 순으로 높았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의료급여 수급방법	56.0%	28.9%	6.1%	3.68점
의료급여 지원규모	53.4%	29.4%	14.3%	3.48점
의료급여 지원기간	50.1%	32.1%	6.4%	3.60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343명)

【표 17】 의료급여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405)	84.7	15.3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4.7	15.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71.1	28.9
	6대 광역시	(79)	74.7	25.3
	중소도시	(170)	55.3	44.7
	기타 농어촌	(120)	64.2	35.8
성별	남성	(177)	67.8	32.2
	여성	(351)	63.5	36.5
연령별	10대	(11)	63.6	36.4
	20대	(37)	51.4	48.6
	30대	(68)	55.9	44.1
	40대	(136)	70.6	29.4
	50대	(103)	64.1	35.9
	60대	(64)	71.9	28.1
	70대	(78)	65.4	34.6
	80대 이상	(29)	65.5	34.5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42.9	57.1
	임시고용	(26)	42.3	57.7
	일용직	(27)	48.1	51.9
	자영업	(14)	57.1	42.9
	자활근로	(104)	71.2	28.8
	실업	(21)	57.1	42.9
	비경제활동	(213)	74.6	25.4
	기타	(35)	42.9	57.1
	모름/무응답	(53)	67.9	32.1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78.5	21.5
	장애가 없다	(296)	79.4	20.6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여부	기혼	(123)	57.7	42.3
	이혼 또는 별거	(146)	70.5	29.5
	사별 후 독신	(151)	66.9	33.1
	미혼(19세 이상)	(83)	66.3	33.7
	그 외 기타	(17)	70.6	29.4
	모름/무응답	(8)	12.5	87.5
학력	무학	(80)	76.3	23.8
	중졸이하	(200)	65.0	35.0
	고졸이하	(175)	64.6	35.4
	대졸이하	(60)	60.0	40.0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11)	18.2	81.8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65.0	35.0
	아파트	(138)	69.6	30.4
	다가구(연립)주택	(107)	67.3	32.7
	무허가주택	(13)	69.2	30.8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51.5	48.5
주거형태	모름/무응답	(9)	11.1	88.9
	자가	(134)	61.2	38.8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56.4	43.6
	월세	(140)	67.1	32.9
	장기(영구)임대	(108)	75.0	25.0
	기타	(76)	67.1	32.9
모름/무응답	(14)	21.4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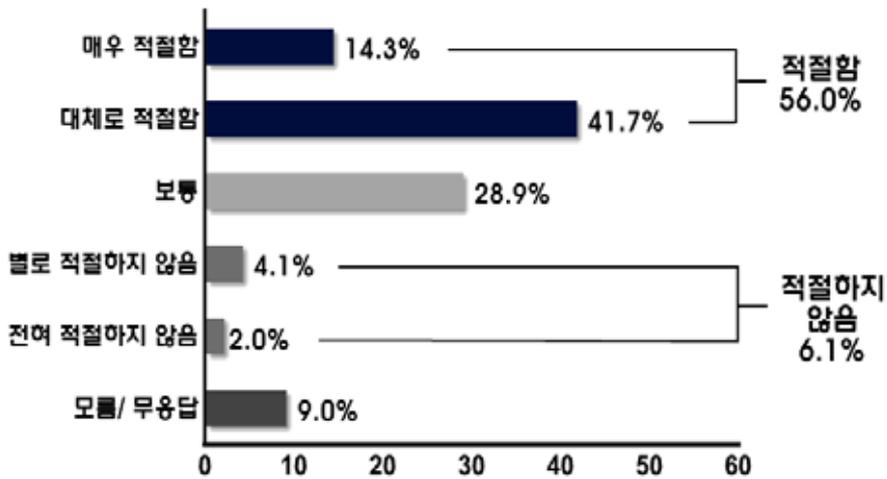
17_1. 의료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343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6.0%(매우 14.3% + 대체로 41.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별로 4.1% + 전혀 2.0%)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응답되었다.

그 외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8.9%, ‘잘 모르겠다’(0.9%)와 ‘무응답’(8.2%) 등이었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68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의료급여 수급방법	56.0%	28.9%	6.1%	3.68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343명)

【표 17_1】 의료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343)	14.3	41.7	28.9	4.1	2.0	0.9	56.0	28.9	6.1	8.2	3.68	
구분	기초 수급자	(343)	14.3	41.7	28.9	4.1	2.0	0.9	56.0	28.9	6.1	8.2	3.6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3)	17.7	33.6	34.5	4.4	1.8	1.8	51.3	34.5	6.2	6.2	3.66
	6대 광역시	(59)	16.9	33.9	25.4	8.5	5.1		50.8	25.4	13.6	10.2	3.55
	중소도시	(94)	14.9	52.1	25.5	3.2	2.1		67.0	25.5	5.3	2.1	3.76
	기타 농어촌	(77)	6.5	46.8	27.3	1.3		1.3	53.2	27.3	1.3	16.9	3.71
성별	남성	(120)	8.3	49.2	30.8	3.3	2.5		57.5	30.8	5.8	5.8	3.61
	여성	(223)	17.5	37.7	27.8	4.5	1.8	1.3	55.2	27.8	6.3	9.4	3.72
연령별	10대	(7)	14.3	14.3	57.1	14.3			28.6	57.1	14.3		3.29
	20대	(19)	5.3	52.6	36.8				57.9	36.8		5.3	3.67
	30대	(38)	13.2	42.1	28.9	2.6			55.3	28.9	2.6	13.2	3.76
	40대	(96)	13.5	39.6	24.0	6.3	4.2	1.0	53.1	24.0	10.4	11.5	3.60
	50대	(66)	16.7	40.9	37.9	1.5	1.5		57.6	37.9	3.0	1.5	3.71
	60대	(46)	19.6	45.7	23.9	2.2	4.3		65.2	23.9	6.5	4.3	3.77
	70대	(51)	9.8	41.2	29.4	7.8		3.9	51.0	29.4	7.8	7.8	3.60
	80대 이상	(19)	21.1	47.4	15.8				68.4	15.8		15.8	4.06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20.0	33.3	26.7				53.3	26.7		20.0	3.92
	일시고용	(11)	18.2	18.2	45.5		9.1		36.4	45.5	9.1	9.1	3.40
	일용직	(13)	15.4	38.5	38.5				53.8	38.5		7.7	3.75
	자영업	(8)	12.5	87.5					100.0				4.13
	자활근로	(74)	18.9	40.5	31.1	1.4	2.7	1.4	59.5	31.1	4.1	4.1	3.76
	실업	(12)	16.7	50.0	25.0		8.3		66.7	25.0	8.3		3.67
	비경제활동	(159)	10.1	44.0	26.4	5.0	1.9	1.3	54.1	26.4	6.9	11.3	3.63
	기타	(15)	20.0	6.7	53.3	6.7			26.7	53.3	6.7	13.3	3.46
모름/무응답	(36)	16.7	47.2	25.0	11.1			63.9	25.0	11.1		3.69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6)	14.2	49.1	21.7	4.7	2.8		63.2	21.7	7.5	7.5	3.72
	장애가 없다	(235)	14.5	38.3	32.3	3.4	1.7	1.3	52.8	32.3	5.1	8.5	3.67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00
혼인 여부	기혼	(71)	12.7	36.6	33.8	2.8		1.4	49.3	33.8	2.8	12.7	3.69
	이혼 또는 별거	(103)	17.5	44.7	25.2	2.9	1.9	1.0	62.1	25.2	4.9	6.8	3.79
	사별 후 독신	(101)	15.8	39.6	21.8	6.9	4.0	1.0	55.4	21.8	10.9	10.9	3.64
	미혼(19세 이상)	(55)	5.5	49.1	40.0	1.8	1.8		54.5	40.0	3.6	1.8	3.56
	그 외 기타	(12)	25.0	25.0	41.7	8.3			50.0	41.7	8.3		3.67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1)	16.4	44.3	19.7	4.9	1.6	1.6	60.7	19.7	6.6	11.5	3.79
	중졸이하	(130)	14.6	40.8	33.1	6.9	1.5	0.8	55.4	33.1	8.5	2.3	3.62
	고졸이하	(113)	14.2	41.6	26.5	1.8	2.7	0.9	55.8	26.5	4.4	12.4	3.72
	대졸이하	(36)	11.1	38.9	38.9		2.8		50.0	38.9	2.8	8.3	3.61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7)	14.3	43.5	27.9	2.0	1.4	1.4	57.8	27.9	3.4	9.5	3.76
	아파트	(96)	15.6	40.6	22.9	10.4	5.2	1.0	56.3	22.9	15.6	4.2	3.54
	다가구(연립)주택	(72)	16.7	34.7	37.5	1.4			51.4	37.5	1.4	9.7	3.74
	무허가주택	(9)		55.6	33.3				55.6	33.3		11.1	3.63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7)	5.9	52.9	29.4				58.8	29.4		11.8	3.7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82)	7.3	53.7	25.6	3.7			61.0	25.6	3.7	9.8	3.72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5.00
	전세(1억 미만)	(31)	19.4	35.5	32.3		3.2	3.2	54.8	32.3	3.2	6.5	3.75
	월세	(94)	18.1	36.2	31.9	1.1	2.1		54.3	31.9	3.2	10.6	3.75
	장기(영구)임대	(81)	16.0	35.8	25.9	9.9	4.9	2.5	51.9	25.9	14.8	4.9	3.52
	기타	(51)	11.8	47.1	29.4	3.9			58.8	29.4	3.9	7.8	3.72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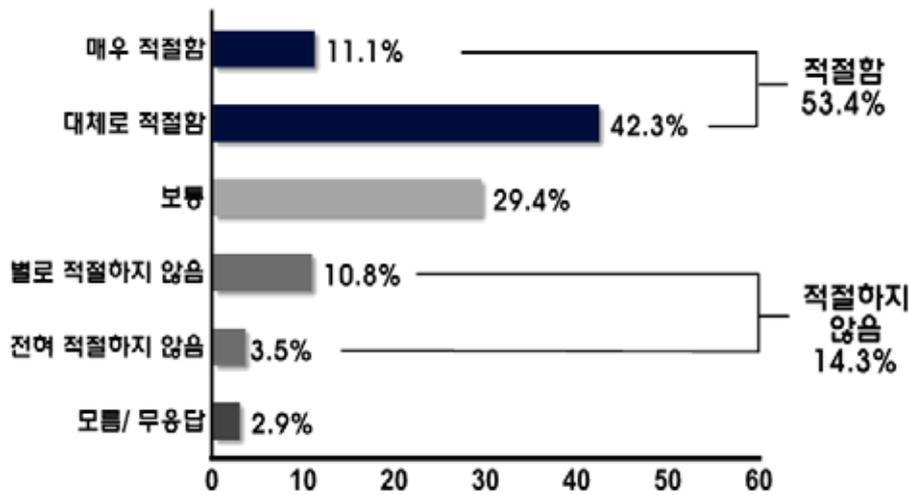
17_2. 의료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343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3.4%(매우 11.1% + 대체로 42.3%),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3%(별로 10.8% + 전혀 3.5%)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9.4%, ‘잘 모르겠다’는 0.9%, ‘무응답’은 2.0%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48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지원규모	53.4%	29.4%	14.3%	3.48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343명)

【표 17_2】 의료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343)	11.1	42.3	29.4	10.8	3.5	0.9	53.4	29.4	14.3	2.0	3.48	
구분	기초 수급자 (343)	11.1	42.3	29.4	10.8	3.5	0.9	53.4	29.4	14.3	2.0	3.4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3)	15.0	35.4	30.1	8.0	6.2	1.8	50.4	30.1	14.2	3.5	3.48	
	6대 광역시 (59)	6.8	42.4	28.8	16.9	5.1		49.2	28.8	22.0		3.29	
	중소도시 (94)	11.7	51.1	24.5	8.5	1.1		62.8	24.5	9.6	3.2	3.66	
	기타 농어촌 (77)	7.8	41.6	35.1	13.0	1.3	1.3	49.4	35.1	14.3		3.42	
성별	남성 (120)	10.0	48.3	26.7	9.2	3.3		58.3	26.7	12.5	2.5	3.54	
	여성 (223)	11.7	39.0	30.9	11.7	3.6	1.3	50.7	30.9	15.2	1.8	3.45	
연령별	10대 (7)	14.3	28.6	42.9	14.3			42.9	42.9	14.3		3.43	
	20대 (19)	5.3	52.6	36.8				57.9	36.8		5.3	3.67	
	30대 (38)	15.8	36.8	31.6	5.3	5.3		52.6	31.6	10.5	5.3	3.56	
	40대 (96)	7.3	44.8	30.2	14.6	2.1	1.0	52.1	30.2	16.7		3.41	
	50대 (66)	10.6	37.9	30.3	12.1	4.5		48.5	30.3	16.7	4.5	3.40	
	60대 (46)	17.4	41.3	26.1	6.5	6.5		58.7	26.1	13.0	2.2	3.58	
	70대 (51)	7.8	45.1	29.4	11.8	2.0	3.9	52.9	29.4	13.7		3.47	
	80대 이상 (19)	21.1	47.4	15.8	10.5	5.3		68.4	15.8	15.8		3.6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20.0	46.7	33.3				66.7	33.3			3.87	
	임시고용 (11)	18.2	18.2	54.5		9.1		36.4	54.5	9.1		3.36	
	일용직 (13)	15.4	30.8	30.8	15.4			46.2	30.8	15.4	7.7	3.50	
	자영업 (8)		87.5	12.5				87.5	12.5			3.88	
	자활근로 (74)	10.8	44.6	33.8	5.4	4.1	1.4	55.4	33.8	9.5		3.53	
	실업 (12)	8.3	50.0	16.7	8.3	8.3		58.3	16.7	16.7	8.3	3.45	
	비경제활동 (159)	9.4	42.8	28.3	12.6	3.1	1.3	52.2	28.3	15.7	2.5	3.44	
	기타 (15)	20.0	20.0	33.3	26.7			40.0	33.3	26.7		3.33	
		모름/무응답 (36)	11.1	41.7	22.2	16.7	5.6		52.8	22.2	22.2	2.8	3.3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6)	14.2	45.3	20.8	12.3	3.8		59.4	20.8	16.0	3.8	3.56	
	장애가 없다 (235)	9.8	40.9	33.6	10.2	3.0	1.3	50.6	33.6	13.2	1.3	3.45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2.50	
혼인 여부	기혼 (71)	15.5	35.2	36.6	9.9	1.4	1.4	50.7	36.6	11.3		3.54	
	이혼 또는 별거 (103)	7.8	49.5	28.2	6.8	2.9	1.0	57.3	28.2	9.7	3.9	3.55	
	사별 후 독신 (101)	12.9	40.6	21.8	15.8	5.9	1.0	53.5	21.8	21.8	2.0	3.40	
	미혼(19세 이상) (55)	5.5	47.3	32.7	9.1	3.6		52.7	32.7	12.7	1.8	3.43	
	그 외 기타 (12)	25.0	16.7	41.7	16.7			41.7	41.7	16.7		3.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무학 (61)	18.0	42.6	26.2	8.2	3.3	1.6	60.7	26.2	11.5		3.65
학력	중졸이하 (130)	10.8	40.0	28.5	14.6	3.8	0.8	50.8	28.5	18.5	1.5	3.40	
	고졸이하 (113)	8.0	44.2	30.1	9.7	4.4	0.9	52.2	30.1	14.2	2.7	3.43	
	대졸이하 (36)	11.1	41.7	36.1	5.6			52.8	36.1	5.6	5.6	3.62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7)	10.2	41.5	32.0	11.6	1.4	1.4	51.7	32.0	12.9	2.0	3.49	
	아파트 (96)	14.6	39.6	19.8	14.6	8.3	1.0	54.2	19.8	22.9	2.1	3.39	
	다가구(연립)주택 (72)	12.5	40.3	34.7	6.9	2.8		52.8	34.7	9.7	2.8	3.54	
	무허가주택 (9)		66.7	22.2	11.1			66.7	22.2	11.1		3.56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7)		64.7	35.3				64.7	35.3			3.6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주거 형태	자가 (82)	6.1	53.7	25.6	13.4	1.2		59.8	25.6	14.6		3.50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1.00	
	전세(1억 미만) (31)	12.9	35.5	22.6	12.9	3.2	3.2	48.4	22.6	16.1	9.7	3.48	
	월세 (94)	14.9	44.7	33.0	6.4	1.1		59.6	33.0	7.4		3.66	
	장기(영구)임대 (81)	13.6	32.1	27.2	12.3	9.9	2.5	45.7	27.2	22.2	2.5	3.29	
	기타 (51)	7.8	43.1	33.3	11.8			51.0	33.3	11.8	3.9	3.49	
	모름/무응답 (3)			100.0					10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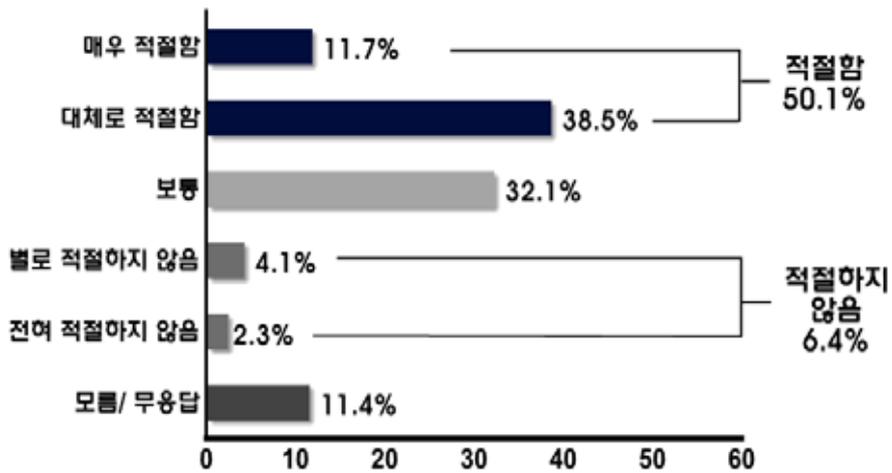
17_3. 의료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343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0.1%(매우 11.7% + 대체로 38.5%),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4%(별로 4.1% + 전혀 2.3%)로 각각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2.1%, ‘잘 모르겠다’는 1.7%, ‘무응답’은 9.6%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60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지원기간	50.1%	32.1%	6.4%	3.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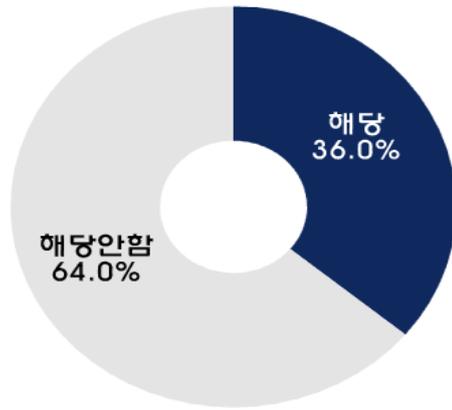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343명)

【표 17_3】 의료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343)	11.7	38.5	32.1	4.1	2.3	1.7	50.1	32.1	6.4	9.6	3.60
구분	기초 수급자 (343)	11.7	38.5	32.1	4.1	2.3	1.7	50.1	32.1	6.4	9.6	3.6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13)	13.3	33.6	35.4	4.4	2.7	2.7	46.9	35.4	7.1	8.0	3.56
	6대 광역시 (59)	11.9	28.8	37.3	6.8	3.4		40.7	37.3	10.2	11.9	3.44
	중소도시 (94)	12.8	45.7	27.7	4.3	2.1	2.1	58.5	27.7	6.4	5.3	3.68
	기타 농어촌 (77)	7.8	44.2	28.6	1.3	1.3	1.3	51.9	28.6	2.6	15.6	3.67
성별	남성 (120)	9.2	45.8	30.0	5.0	1.7	1.7	55.0	30.0	6.7	6.7	3.61
	여성 (223)	13.0	34.5	33.2	3.6	2.7	1.8	47.5	33.2	6.3	11.2	3.59
연령별	10대 (7)	14.3	14.3	42.9	14.3			28.6	42.9	14.3	14.3	3.33
	20대 (19)	5.3	42.1	36.8				47.4	36.8		15.8	3.63
	30대 (38)	13.2	39.5	31.6		2.6	2.6	52.6	31.6	2.6	10.5	3.70
	40대 (96)	9.4	36.5	31.3	4.2	3.1	2.1	45.8	31.3	7.3	13.5	3.53
	50대 (66)	12.1	39.4	34.8	7.6	1.5	1.5	51.5	34.8	9.1	3.0	3.56
	60대 (46)	17.4	39.1	30.4	4.3	4.3		56.5	30.4	8.7	4.3	3.64
	70대 (51)	5.9	45.1	31.4	3.9	2.0	3.9	51.0	31.4	5.9	7.8	3.56
	80대 이상 (19)	26.3	31.6	26.3				57.9	26.3		15.8	4.00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5)	20.0	26.7	33.3				46.7	33.3		20.0	3.83
	임시고용 (11)	18.2	9.1	54.5		9.1		27.3	54.5	9.1	9.1	3.30
	일용직 (13)	15.4	30.8	38.5				46.2	38.5		15.4	3.73
	자영업 (8)		87.5	12.5				87.5	12.5			3.88
	자활근로 (74)	12.2	43.2	31.1	4.1	2.7	2.7	55.4	31.1	6.8	4.1	3.62
	실업 (12)	25.0	41.7	25.0		8.3		66.7	25.0	8.3		3.75
	비경제활동 (159)	8.8	42.1	28.9	4.4	2.5	1.9	50.9	28.9	6.9	11.3	3.58
	기타 (15)	13.3		60.0	6.7			13.3	60.0	6.7	20.0	3.25
모름/무응답 (36)	13.9	33.3	33.3	8.3		2.8	47.2	33.3	8.3	8.3	3.59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6)	12.3	44.3	27.4	4.7	2.8	0.9	56.6	27.4	7.5	7.5	3.64
	장애가 없다 (235)	11.5	35.7	34.5	3.8	1.7	2.1	47.2	34.5	5.5	10.6	3.59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2.50
혼인 여부	기혼 (71)	12.7	32.4	38.0	1.4		2.8	45.1	38.0	1.4	12.7	3.67
	이혼 또는 별거 (103)	11.7	45.6	27.2	3.9	1.9	1.9	57.3	27.2	5.8	7.8	3.68
	사별 후 독신 (101)	12.9	36.6	26.7	5.9	5.0	1.0	49.5	26.7	10.9	11.9	3.53
	미혼(19세 이상) (55)	5.5	40.0	41.8	3.6	1.8		45.5	41.8	5.5	7.3	3.47
	그 외 기타 (12)	25.0	16.7	41.7	8.3		8.3	41.7	41.7	8.3		3.6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61)	19.7	41.0	21.3	3.3	1.6	1.6	60.7	21.3	4.9	11.5	3.85
	중졸이하 (130)	10.0	40.8	36.9	6.9	1.5	0.8	50.8	36.9	8.5	3.1	3.53
	고졸이하 (113)	10.6	37.2	30.1	2.7	2.7	2.7	47.8	30.1	5.3	14.2	3.61
	대졸이하 (36)	8.3	27.8	41.7		5.6	2.8	36.1	41.7	5.6	13.9	3.4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7)	10.9	40.8	30.6	2.7	1.4	1.4	51.7	30.6	4.1	12.2	3.66
	아파트 (96)	17.7	32.3	28.1	8.3	4.2	4.2	50.0	28.1	12.5	5.2	3.56
	다가구(연립)주택 (72)	9.7	37.5	37.5	2.8	1.4		47.2	37.5	4.2	11.1	3.58
	무허가주택 (9)		44.4	44.4				44.4	44.4		11.1	3.5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7)		52.9	35.3		5.9		52.9	35.3	5.9	5.9	3.4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82)	7.3	50.0	25.6	3.7	1.2	1.2	57.3	25.6	4.9	11.0	3.67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3.00
	전세(1억 미만) (31)	16.1	35.5	29.0		3.2	3.2	51.6	29.0	3.2	12.9	3.73
	월세 (94)	13.8	36.2	34.0	3.2	2.1		50.0	34.0	5.3	10.6	3.63
	장기(영구)임대 (81)	13.6	27.2	37.0	7.4	4.9	3.7	40.7	37.0	12.3	6.2	3.41
	기타 (51)	9.8	45.1	29.4	3.9		2.0	54.9	29.4	3.9	9.8	3.69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3.33

18. 교육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6.0%,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4.0%로 나타났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교육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72점) > 지원기간(3.55점) > 지원규모(3.51점) 순으로 높았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교육급여 수급방법	52.7%	19.2%	7.5%	3.72점
교육급여 지원규모	49.3%	25.3%	12.3%	3.51점
교육급여 지원기간	42.5%	24.7%	10.3%	3.55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146명)

【표 18】 교육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405)	36.0	64.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36.0	64.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38.4	61.6
	6대 광역시	(79)	32.9	67.1
	중소도시	(170)	20.0	80.0
	기타 농어촌	(120)	20.8	79.2
성별	남성	(177)	21.5	78.5
	여성	(351)	30.8	69.2
연령별	10대	(11)	54.5	45.5
	20대	(37)	8.1	91.9
	30대	(68)	35.3	64.7
	40대	(136)	47.1	52.9
	50대	(103)	23.3	76.7
	60대	(64)	20.3	79.7
	70대	(78)	9.0	91.0
	80대 이상	(29)	17.2	82.8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34.3	65.7
	임시고용	(26)	23.1	76.9
	일용직	(27)	25.9	74.1
	자영업	(14)	42.9	57.1
	자활근로	(104)	40.4	59.6
	실업	(21)	33.3	66.7
	비경제활동	(213)	21.6	78.4
	기타	(35)	25.7	74.3
	모름/무응답	(53)	20.8	79.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3.0	77.0
	장애가 없다	(296)	38.9	61.1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23)	33.3	66.7
	이혼 또는 별거	(146)	39.0	61.0
	사별 후 독신	(151)	20.5	79.5
	미혼(19세 이상)	(83)	12.0	88.0
	그 외 기타	(17)	35.3	64.7
	모름/무응답	(8)	12.5	87.5
학력	무학	(80)	15.0	85.0
	중졸이하	(200)	22.0	78.0
	고졸이하	(175)	37.7	62.3
	대졸이하	(60)	33.3	66.7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18.2	81.8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4.3	75.7
	아파트	(138)	39.9	60.1
	다가구(연립)주택	(107)	25.2	74.8
	무허가주택	(13)	7.7	92.3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18.2	81.8
	모름/무응답	(9)	11.1	88.9
주거 형태	자가	(134)	15.7	84.3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25.5	74.5
	월세	(140)	34.3	65.7
	장기(영구)임대	(108)	39.8	60.2
	기타	(76)	22.4	77.6
	모름/무응답	(14)	21.4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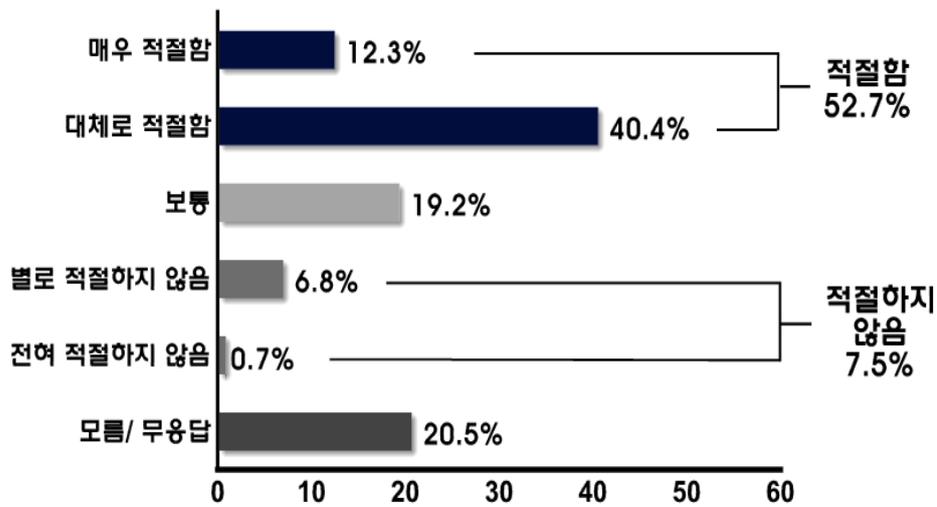
18_1. 교육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146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2.7%(매우 12.3% + 대체로 40.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5%(별로 6.8% + 전혀 0.7%)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9.2%, ‘잘 모르겠다’는 7.5%, ‘무응답’은 13.0%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수급방법	52.7%	19.2%	7.5%	3.72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146명)

【표 18_1】 교육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146)	12.3	40.4	19.2	6.8	0.7	7.5	52.7	19.2	7.5	13.0	3.72	
구분	기초 수급자	(146)	12.3	40.4	19.2	6.8	0.7	7.5	52.7	19.2	7.5	13.0	3.7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1)	13.1	31.1	19.7	14.8		8.2	44.3	19.7	14.8	13.1	3.54
	6대 광역시	(26)	19.2	34.6	19.2	3.8	3.8		53.8	19.2	7.7	19.2	3.76
	중소도시	(34)	11.8	55.9	14.7			11.8	67.6	14.7		5.9	3.96
	기타 농어촌	(25)	4.0	48.0	24.0			8.0	52.0	24.0		16.0	3.74
성별	남성	(38)	10.5	31.6	23.7	2.6		15.8	42.1	23.7	2.6	15.8	3.73
	여성	(108)	13.0	43.5	17.6	8.3	0.9	4.6	56.5	17.6	9.3	12.0	3.71
연령별	10대	(6)	16.7	33.3	50.0				50.0	50.0			3.67
	20대	(3)		66.7					66.7			33.3	4.00
	30대	(24)	12.5	41.7	16.7	8.3		4.2	54.2	16.7	8.3	16.7	3.74
	40대	(64)	10.9	46.9	12.5	4.7		9.4	57.8	12.5	4.7	15.6	3.85
	50대	(24)	20.8	25.0	29.2	8.3	4.2		45.8	29.2	12.5	12.5	3.57
	60대	(13)	7.7	38.5	30.8	15.4			46.2	30.8	15.4	7.7	3.42
	70대	(7)	14.3	28.6	14.3	14.3		28.6	42.9	14.3	14.3		3.60
	80대 이상	(5)		40.0	20.0			40.0	40.0	20.0			3.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12)	8.3	25.0	25.0	8.3			33.3	25.0	8.3	33.3	3.50
	임시고용	(6)		16.7	16.7	33.3		16.7	16.7	16.7	33.3	16.7	2.75
	일용직	(7)	14.3	71.4	14.3				85.7	14.3			4.00
	자영업	(6)	33.3	50.0					83.3			16.7	4.40
	자활근로	(42)	11.9	54.8	16.7	7.1	2.4		66.7	16.7	9.5	7.1	3.72
	실업	(7)	42.9	14.3	14.3	28.6			57.1	14.3	28.6		3.71
	비경제활동	(46)	4.3	32.6	19.6	4.3		21.7	37.0	19.6	4.3	17.4	3.61
	기타	(9)	11.1	22.2	44.4				33.3	44.4		22.2	3.57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11)	27.3	54.5	18.2				81.8	18.2			4.09
	장애가 있다	(31)		35.5	19.4	6.5		22.6	35.5	19.4	6.5	16.1	3.47
	장애가 없다	(115)	15.7	41.7	19.1	7.0	0.9	3.5	57.4	19.1	7.8	12.2	3.76
혼인 여부	기혼	(41)	9.8	36.6	22.0	7.3		4.9	46.3	22.0	7.3	19.5	3.65
	이혼 또는 별거	(57)	17.5	43.9	10.5	7.0		5.3	61.4	10.5	7.0	15.8	3.91
	사별 후 독신	(31)	9.7	32.3	29.0	9.7	3.2	12.9	41.9	29.0	12.9	3.2	3.42
	미혼(19세 이상)	(10)		50.0	20.0			20.0	50.0	20.0		10.0	3.71
	그 외 기타	(6)	16.7	50.0	33.3				66.7	33.3			3.8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12)		41.7	25.0	8.3		25.0	41.7	25.0	8.3		3.44
	중졸이하	(44)	15.9	29.5	29.5	6.8		11.4	45.5	29.5	6.8	6.8	3.67
	고졸이하	(66)	13.6	39.4	16.7	6.1	1.5	3.0	53.0	16.7	7.6	19.7	3.75
	대졸이하	(20)	5.0	65.0	5.0	10.0		5.0	70.0	5.0	10.0	10.0	3.76
	대학원이상	(2)	50.0	50.0					100.0				4.5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55)	10.9	43.6	21.8	3.6		5.5	54.5	21.8	3.6	14.5	3.77
	아파트	(55)	16.4	36.4	16.4	12.7	1.8	12.7	52.7	16.4	14.5	3.6	3.63
	다가구(연립)주택	(27)	7.4	48.1	11.1			3.7	55.6	11.1		29.6	3.94
	무허가주택	(1)			100.0					100.0			3.0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6)	16.7	16.7	33.3	16.7			33.3	33.3	16.7	16.7	3.4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21)	4.8	42.9	28.6			19.0	47.6	28.6		4.8	3.69
	전세(1억 미만)	(14)	14.3	42.9	28.6				57.1	28.6		14.3	3.83
	월세	(48)	16.7	39.6	12.5	6.3		4.2	56.3	12.5	6.3	20.8	3.89
	장기(영구)임대	(43)	14.0	30.2	18.6	16.3	2.3	9.3	44.2	18.6	18.6	9.3	3.46
	기타	(17)	5.9	58.8	17.6			5.9	64.7	17.6		11.8	3.86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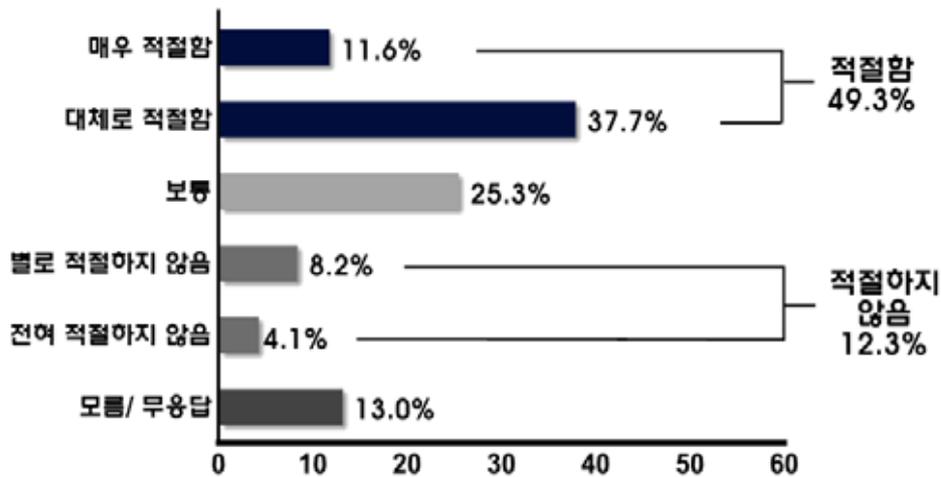
18_2. 교육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146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9.3%(매우 11.6% + 대체로 37.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2.3%(별로 8.2% + 전혀 4.1%)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5.3%, ‘잘 모르겠다’는 8.9%, ‘무응답’은 4.1%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지원규모	49.3%	25.3%	12.3%	3.51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146명)

【표 18_2】 교육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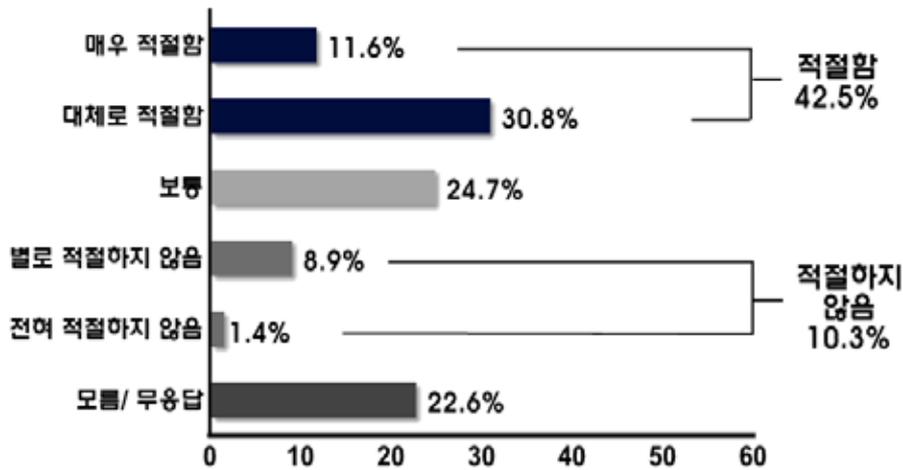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146)	11.6	37.7	25.3	8.2	4.1	8.9	49.3	25.3	12.3	4.1	3.51	
구분 기초 수급자	(146)	11.6	37.7	25.3	8.2	4.1	8.9	49.3	25.3	12.3	4.1	3.5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1)	13.1	27.9	26.2	9.8	6.6	9.8	41.0	26.2	16.4	6.6	3.37
	6대 광역시	(26)	15.4	46.2	26.9	7.7	3.8		61.5	26.9	11.5		3.62
	중소도시	(34)	11.8	41.2	17.6	8.8		14.7	52.9	17.6	8.8	5.9	3.70
	기타 농어촌	(25)	4.0	48.0	32.0	4.0	4.0	8.0	52.0	32.0	8.0		3.48
성별	남성	(38)	15.8	26.3	21.1	10.5		18.4	42.1	21.1	10.5	7.9	3.64
	여성	(108)	10.2	41.7	26.9	7.4	5.6	5.6	51.9	26.9	13.0	2.8	3.47
연령별	10대	(6)	16.7	33.3	33.3				50.0	33.3		16.7	3.80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50
	30대	(24)	12.5	37.5	25.0	12.5	4.2	4.2	50.0	25.0	16.7	4.2	3.45
	40대	(64)	10.9	46.9	18.8	6.3	3.1	12.5	57.8	18.8	9.4	1.6	3.65
	50대	(24)	20.8	20.8	41.7	12.5	4.2		41.7	41.7	16.7		3.42
	60대	(13)	7.7	30.8	30.8	7.7	15.4		38.5	30.8	23.1	7.7	3.08
	70대	(7)		28.6	14.3	14.3		28.6	28.6	14.3	14.3	14.3	3.25
	80대 이상	(5)		40.0	20.0			40.0	40.0	20.0			3.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12)	8.3	33.3	41.7		8.3	8.3	41.7	41.7	8.3		3.36
	임시고용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16.7		3.40
	일용직	(7)	14.3	57.1	14.3		14.3		71.4	14.3	14.3		3.57
	자영업	(6)	33.3	50.0	16.7				83.3	16.7			4.17
	자활근로	(42)	9.5	50.0	28.6	7.1	4.8		59.5	28.6	11.9		3.52
	실업	(7)	42.9		42.9		14.3		42.9	42.9	14.3		3.57
	비경제활동	(46)	6.5	30.4	17.4	13.0	2.2	21.7	37.0	17.4	15.2	8.7	3.38
	기타	(9)		44.4	33.3				44.4	33.3		22.2	3.57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11)	18.2	36.4	18.2	18.2		9.1	54.5	18.2	18.2		3.60
	장애가 있다	(31)	6.5	25.8	19.4	16.1	3.2	22.6	32.3	19.4	19.4	6.5	3.23
장애 여부	장애가 없다	(115)	13.0	40.9	27.0	6.1	4.3	5.2	53.9	27.0	10.4	3.5	3.57
	기혼	(41)	14.6	29.3	29.3	17.1		7.3	43.9	29.3	17.1	2.4	3.46
혼인 여부	이혼 또는 별거	(57)	14.0	45.6	19.3	7.0	3.5	7.0	59.6	19.3	10.5	3.5	3.67
	사별 후 독신	(31)	6.5	35.5	29.0	3.2	9.7	12.9	41.9	29.0	12.9	3.2	3.31
	미혼(19세 이상)	(10)		30.0	20.0		10.0	20.0	30.0	20.0	10.0	20.0	3.17
	그 외 기타	(6)	16.7	50.0	33.3				66.7	33.3			3.8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무학	(12)		33.3	25.0		8.3	25.0	33.3	25.0	8.3	8.3	3.25
학력	중졸이하	(44)	15.9	25.0	27.3	11.4	4.5	11.4	40.9	27.3	15.9	4.5	3.43
	고졸이하	(66)	10.6	43.9	21.2	10.6	4.5	6.1	54.5	21.2	15.2	3.0	3.50
	대졸이하	(20)	10.0	50.0	30.0			5.0	60.0	30.0		5.0	3.78
	대학원이상	(2)	50.0		50.0				50.0	50.0			4.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55)	10.9	41.8	32.7	1.8	3.6	5.5	52.7	32.7	5.5	3.6	3.60
	아파트	(55)	12.7	30.9	16.4	12.7	7.3	14.5	43.6	16.4	20.0	5.5	3.36
	다가구(연립)주택	(27)	11.1	51.9	22.2	7.4		3.7	63.0	22.2	7.4	3.7	3.72
	무허가주택	(1)				100.0					100.0		2.00
	구호시설	(1)				100.0					100.0		2.00
	기타	(6)	16.7	16.7	50.0			16.7	33.3	50.0			3.6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주거 형태	자가	(21)	4.8	42.9	28.6	4.8		19.0	47.6	28.6	4.8		3.59
	전세(1억 미만)	(14)	14.3	50.0	21.4	7.1			64.3	21.4	7.1	7.1	3.77
	월세	(48)	14.6	39.6	29.2	8.3	2.1	6.3	54.2	29.2	10.4		3.60
	장기(영구)임대	(43)	14.0	20.9	23.3	11.6	9.3	11.6	34.9	23.3	20.9	9.3	3.24
	기타	(17)	5.9	58.8	11.8	5.9	5.9	5.9	64.7	11.8	11.8	5.9	3.60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3.33

18_3. 교육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146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2.5%(매우 11.6% + 대체로 30.8%),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0.3%(별로 8.9% + 전혀 1.4%)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4.7%, ‘잘 모르겠다’는 8.9%, ‘무응답’은 13.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지원기간	42.5%	24.7%	10.3%	3.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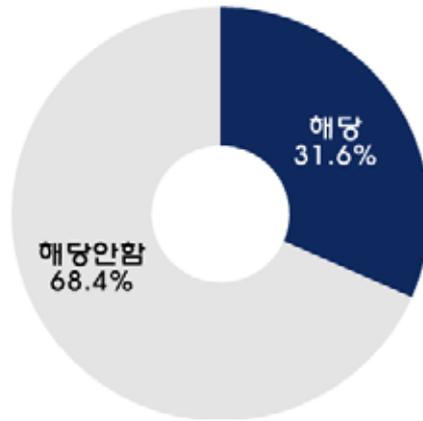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146명)

【표 18_3】 교육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146)	11.6	30.8	24.7	8.9	1.4	8.9	42.5	24.7	10.3	13.7	3.55	
구분	기초 수급자	(146)	11.6	30.8	24.7	8.9	1.4	8.9	42.5	24.7	10.3	13.7	3.5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1)	13.1	21.3	27.9	14.8	1.6	9.8	34.4	27.9	16.4	11.5	3.38
	6대 광역시	(26)	15.4	34.6	23.1	3.8	3.8		50.0	23.1	7.7	19.2	3.67
	중소도시	(34)	11.8	32.4	20.6	8.8		14.7	44.1	20.6	8.8	11.8	3.64
	기타 농어촌	(25)	4.0	48.0	24.0			8.0	52.0	24.0		16.0	3.74
성별	남성	(38)	13.2	23.7	26.3	2.6		21.1	36.8	26.3	2.6	13.2	3.72
	여성	(108)	11.1	33.3	24.1	11.1	1.9	4.6	44.4	24.1	13.0	13.9	3.50
연령별	10대	(6)	16.7	33.3	33.3				50.0	33.3		16.7	3.80
	20대	(3)		33.3					33.3			66.7	4.00
	30대	(24)	12.5	16.7	20.8	25.0	4.2	4.2	29.2	20.8	29.2	16.7	3.11
	40대	(64)	10.9	39.1	18.8	6.3		10.9	50.0	18.8	6.3	14.1	3.73
	50대	(24)	20.8	20.8	37.5		4.2	4.2	41.7	37.5	4.2	12.5	3.65
	60대	(13)	7.7	30.8	46.2	15.4			38.5	46.2	15.4		3.31
	70대	(7)		28.6	14.3	14.3		28.6	28.6	14.3	14.3	14.3	3.25
	80대 이상	(5)		40.0	20.0				40.0	20.0			3.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12)	8.3	25.0	41.7				33.3	41.7		25.0	3.56
	임시고용	(6)		16.7	16.7	33.3		16.7	16.7	16.7	33.3	16.7	2.75
	일용직	(7)	14.3	71.4	14.3				85.7	14.3			4.00
	자영업	(6)	33.3	33.3	16.7				66.7	16.7		16.7	4.20
	자활근로	(42)	11.9	40.5	21.4	11.9	4.8		52.4	21.4	16.7	9.5	3.47
	실업	(7)	42.9		28.6	28.6			42.9	28.6	28.6		3.57
	비경제활동	(46)	2.2	23.9	21.7	8.7		23.9	26.1	21.7	8.7	19.6	3.35
	기타	(9)	11.1	33.3	33.3				44.4	33.3		22.2	3.71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11)	27.3	27.3	36.4			9.1	54.5	36.4			3.90
	장애가 있다	(31)	3.2	22.6	22.6	12.9		25.8	25.8	22.6	12.9	12.9	3.26
혼인 여부	장애가 없다	(115)	13.9	33.0	25.2	7.8	1.7	4.3	47.0	25.2	9.6	13.9	3.61
	기혼	(41)	12.2	26.8	22.0	12.2		9.8	39.0	22.0	12.2	17.1	3.53
	이혼 또는 별거	(57)	15.8	36.8	21.1	8.8		5.3	52.6	21.1	8.8	12.3	3.72
	사별 후 독신	(31)	6.5	25.8	35.5	9.7	3.2	12.9	32.3	35.5	12.9	6.5	3.28
	미혼(19세 이상)	(10)		20.0	20.0		10.0	20.0	20.0	20.0	10.0	30.0	3.00
	그 외 기타	(6)	16.7	50.0	33.3				66.7	33.3			3.83
	모름/무응답	(1)										100.0	.
	학력	무학	(12)		33.3	33.3			25.0	33.3	33.3		8.3
중졸이하		(44)	13.6	27.3	27.3	9.1		13.6	40.9	27.3	9.1	9.1	3.59
고졸이하		(66)	13.6	34.8	19.7	9.1	3.0	4.5	48.5	19.7	12.1	15.2	3.58
대졸이하		(20)	5.0	30.0	30.0	15.0		5.0	35.0	30.0	15.0	15.0	3.31
대학원이상		(2)	50.0		50.0				50.0	50.0			4.00
모름/무응답		(2)										100.0	.
주택 종류	단독주택	(55)	9.1	34.5	29.1	5.5	1.8	5.5	43.6	29.1	7.3	14.5	3.55
	아파트	(55)	16.4	25.5	21.8	12.7	1.8	16.4	41.8	21.8	14.5	5.5	3.53
	다가구(연립)주택	(27)	7.4	40.7	22.2	3.7		3.7	48.1	22.2	3.7	22.2	3.70
	무허가주택	(1)			100.0								3.00
	구호시설	(1)				100.0					100.0		2.00
	기타	(6)	16.7	16.7	16.7	16.7			33.3	16.7	16.7	33.3	3.5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1)										100.0	.
	자가	(21)	4.8	42.9	23.8			23.8	47.6	23.8		4.8	3.73
	전세(1억 미만)	(14)	14.3	42.9	21.4	14.3			57.1	21.4	14.3	7.1	3.62
	월세	(48)	12.5	31.3	27.1	4.2	2.1	4.2	43.8	27.1	6.3	18.8	3.62
	장기(영구)임대	(43)	16.3	16.3	25.6	18.6	2.3	11.6	32.6	25.6	20.9	9.3	3.32
	기타	(17)	5.9	47.1	17.6	5.9		5.9	52.9	17.6	5.9	17.6	3.69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00	

19. 자활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자활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31.6%,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8.4%로 나타났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자활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44점) > 지원기간(3.17점) > 지원규모(2.8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자활급여 수급방법	39.8%	25.8%	13.3%	3.44점
자활급여 지원규모	20.3%	30.5%	33.6%	2.81점
자활급여 지원기간	28.1%	28.9%	17.2%	3.17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02명)

【표 19】 자활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528)	24.2	75.8
구분	기초 수급자	(405)	31.6	68.4
	기초 탈락자	(123)		100.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32.1	67.9
	6대 광역시	(79)	30.4	69.6
	중소도시	(170)	17.6	82.4
	기타 농어촌	(120)	19.2	80.8
성별	남성	(177)	19.8	80.2
	여성	(351)	26.5	73.5
연령별	10대	(11)	9.1	90.9
	20대	(37)	32.4	67.6
	30대	(68)	29.4	70.6
	40대	(136)	40.4	59.6
	50대	(103)	25.2	74.8
	60대	(64)	15.6	84.4
	70대	(78)	2.6	97.4
	80대 이상	(29)	6.9	93.1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25.7	74.3
	일시고용	(26)	11.5	88.5
	일용직	(27)	7.4	92.6
	자영업	(14)	21.4	78.6
	자활근로	(104)	76.9	23.1
	실업	(21)	9.5	90.5
	비경제활동	(213)	8.5	91.5
	기타	(35)	8.6	91.4
모름/무응답	(53)	15.1	84.9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0.7	79.3
	장애가 없다	(296)	33.4	66.6
	모름/무응답	(4)	25.0	75.0
혼인 여부	기혼	(123)	29.3	70.7
	이혼 또는 별거	(146)	36.3	63.7
	사별 후 독신	(151)	11.9	88.1
	미혼(19세 이상)	(83)	24.1	75.9
	그 외 기타	(17)		100.0
	모름/무응답	(8)	12.5	87.5
학력	무학	(80)	10.0	90.0
	중졸이하	(200)	17.0	83.0
	고졸이하	(175)	36.6	63.4
	대졸이하	(60)	33.3	66.7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11)	9.1	90.9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1.2	78.8
	아파트	(138)	34.8	65.2
	다가구(연립)주택	(107)	22.4	77.6
	무허가주택	(13)		100.0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18.2	81.8
모름/무응답	(9)	11.1	88.9	
주거 형태	자가	(134)	16.4	83.6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16.4	83.6
	월세	(140)	30.0	70.0
	장기(영구)임대	(108)	32.4	67.6
	기타	(76)	23.7	76.3
모름/무응답	(14)	7.1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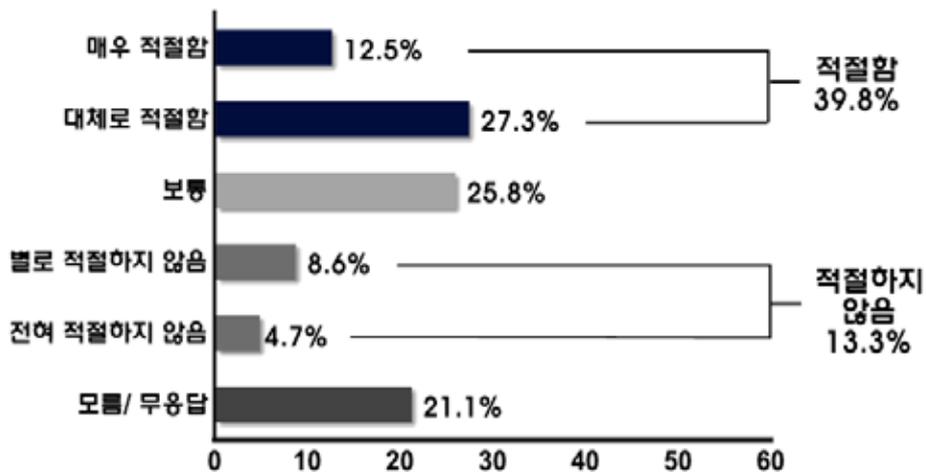
19_1. 자활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2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9.8%(매우 12.5% + 대체로 27.3%),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3.3%(별로 8.6% + 전혀 4.7%)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5.8%, ‘잘 모르겠다’는 11.7%, ‘무응답’은 9.4%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44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수급방법	39.8%	25.8%	13.3%	3.44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28명)

【표 19_1】 자활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128)	12.5	27.3	25.8	8.6	4.7	11.7	39.8	25.8	13.3	9.4	3.44	
구분	기초 수급자	(128)	12.5	27.3	25.8	8.6	4.7	11.7	39.8	25.8	13.3	9.4	3.4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1)	13.7	15.7	37.3	5.9	7.8	15.7	29.4	37.3	13.7	3.9	3.27
	6대 광역시	(24)	16.7	37.5	12.5	12.5	4.2		54.2	12.5	16.7	16.7	3.60
	중소도시	(30)	13.3	43.3	16.7	10.0		13.3	56.7	16.7	10.0	3.3	3.72
	기타 농어촌	(23)	4.3	21.7	26.1	8.7	4.3	13.0	26.1	26.1	13.0	21.7	3.20
성별	남성	(35)	11.4	28.6	14.3	14.3	5.7	20.0	40.0	14.3	20.0	5.7	3.35
	여성	(93)	12.9	26.9	30.1	6.5	4.3	8.6	39.8	30.1	10.8	10.8	3.47
연령별	10대	(1)			100.0					100.0			3.00
	20대	(12)	8.3	66.7				8.3	75.0			16.7	4.11
	30대	(20)	5.0	40.0	25.0	10.0		5.0	45.0	25.0	10.0	15.0	3.50
	40대	(55)	9.1	20.0	34.5	7.3	3.6	14.5	29.1	34.5	10.9	10.9	3.32
	50대	(26)	30.8	23.1	19.2	11.5	11.5	3.8	53.8	19.2	23.1		3.52
	60대	(10)	10.0	20.0	30.0	20.0	10.0		30.0	30.0	30.0	10.0	3.00
	70대	(2)						100.0					
	80대 이상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9)	22.2	22.2	22.2			11.1	44.4	22.2		22.2	4.00
	임시고용	(3)	33.3					33.3	33.3			33.3	5.00
	일용직	(2)			50.0			50.0		50.0			3.00
	자영업	(3)				33.3		33.3			33.3	33.3	2.00
	자활근로	(80)	13.8	35.0	27.5	11.3	7.5		48.8	27.5	18.8	5.0	3.38
	실업	(2)			100.0					100.0			3.00
	비경제활동	(18)		5.6	22.2			61.1	5.6	22.2		11.1	3.20
	기타	(3)			33.3					33.3		66.7	3.00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8)	25.0	50.0	12.5	12.5		75.0	12.5	12.5		3.88	
	장애가 있다	(28)	14.3	25.0	21.4	7.1		25.0	39.3	21.4	7.1	7.1	3.68
	장애가 없다	(99)	12.1	28.3	26.3	9.1	6.1	8.1	40.4	26.3	15.2	10.1	3.38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기혼	(36)	5.6	19.4	44.4	8.3	5.6	8.3	25.0	44.4	13.9	8.3	3.13
	이혼 또는 별거	(53)	18.9	34.0	11.3	7.5	5.7	9.4	52.8	11.3	13.2	13.2	3.68
	사별 후 독신	(18)	16.7	16.7	33.3	5.6	5.6	22.2	33.3	33.3	11.1		3.43
	미혼(19세 이상)	(20)	5.0	30.0	25.0	15.0		15.0	35.0	25.0	15.0	10.0	3.33
학력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무학	(8)	12.5	12.5	37.5			37.5	25.0	37.5			3.60
	중졸이하	(34)	14.7	26.5	26.5	11.8	2.9	14.7	41.2	26.5	14.7	2.9	3.46
	고졸이하	(64)	12.5	25.0	26.6	6.3	6.3	7.8	37.5	26.6	12.5	15.6	3.41
	대졸이하	(20)	10.0	40.0	20.0	15.0		10.0	50.0	20.0	15.0	5.0	3.53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주택 종류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단독주택	(48)	6.3	29.2	35.4	6.3	6.3	6.3	35.4	35.4	12.5	10.4	3.28
	아파트	(48)	16.7	25.0	20.8	10.4	4.2	16.7	41.7	20.8	14.6	6.3	3.51
	다가구(연립)주택	(24)	16.7	25.0	16.7	8.3	4.2	12.5	41.7	16.7	12.5	16.7	3.59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6)	16.7	33.3	16.7	16.7		16.7	50.0	16.7	16.7		3.6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자가	(22)	4.5	40.9	18.2	9.1	4.5	18.2	45.5	18.2	13.6	4.5	3.41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5.00
	전세(1억 미만)	(9)		22.2	77.8				22.2	77.8			3.22
	월세	(42)	14.3	16.7	33.3	2.4	7.1	14.3	31.0	33.3	9.5	11.9	3.39
	장기(영구)임대	(35)	17.1	22.9	22.9	11.4	5.7	11.4	40.0	22.9	17.1	8.6	3.43
	기타	(18)	11.1	44.4		22.2		5.6	55.6		22.2	16.7	3.57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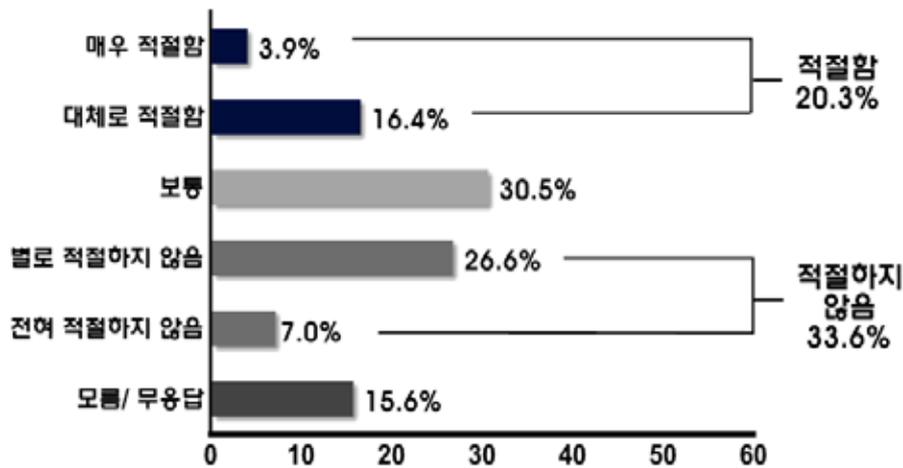
19_2. 자활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28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0.3%(매우 3.9% + 대체로 16.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3.6%(별로 26.6% + 전혀 7.0%)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0.5%, ‘잘 모르겠다’는 13.3%, ‘무응답’은 2.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지원규모	20.3%	30.5%	33.6%	2.81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28명)

【표 33】 자활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128)	3.9	16.4	30.5	26.6	7.0	13.3	20.3	30.5	33.6	2.3	2.81	
구분	기초 수급자	(128)	3.9	16.4	30.5	26.6	7.0	13.3	20.3	30.5	33.6	2.3	2.8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1)	3.9	13.7	21.6	31.4	13.7	15.7	17.6	21.6	45.1		2.56
	6대 광역시	(24)		20.8	50.0	20.8	4.2	4.2	20.8	50.0	25.0		2.91
	중소도시	(30)	3.3	16.7	30.0	26.7		13.3	20.0	30.0	26.7	10.0	2.96
성별	기타 농어촌	(23)	8.7	17.4	30.4	21.7	4.3	17.4	26.1	30.4	26.1		3.05
	남성	(35)	5.7	11.4	22.9	25.7	11.4	20.0	17.1	22.9	37.1	2.9	2.67
연령별	여성	(93)	3.2	18.3	33.3	26.9	5.4	10.8	21.5	33.3	32.3	2.2	2.85
	10대	(1)		100.0					100.0				4.00
	20대	(12)	8.3	33.3	33.3	8.3		8.3	41.7	33.3	8.3	8.3	3.50
	30대	(20)	5.0	35.0	25.0	20.0	5.0	5.0	40.0	25.0	25.0	5.0	3.17
	40대	(55)		10.9	38.2	30.9	1.8	18.2	10.9	38.2	32.7		2.71
	50대	(26)	11.5	11.5	11.5	38.5	23.1	3.8	23.1	11.5	61.5		2.48
	60대	(10)			60.0	20.0	10.0			60.0	30.0	10.0	2.56
	70대	(2)						100.0					.
	80대 이상	(2)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9)	11.1	11.1	22.2	22.2		33.3	22.2	22.2	22.2		3.17
	일시고용	(3)			66.7			33.3		66.7			3.00
	일용직	(2)			50.0			50.0					3.00
	자영업	(3)			33.3	33.3		33.3		33.3	33.3		2.50
	자활근로	(80)	5.0	21.3	31.3	31.3	10.0		26.3	31.3	41.3	1.3	2.80
	실업	(2)			50.0	50.0				50.0	50.0		2.50
	비경제활동	(18)		5.6	11.1	11.1		61.1	5.6	11.1	11.1	11.1	2.80
	기타	(3)		66.7	33.3				66.7	33.3			3.67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8)			50.0	37.5	12.5			50.0	50.0		2.38
	장애가 있다	(28)	7.1	7.1	14.3	35.7	7.1	25.0	14.3	14.3	42.9	3.6	2.60
	장애가 없다	(99)	3.0	19.2	34.3	24.2	7.1	10.1	22.2	34.3	31.3	2.0	2.85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기혼	(36)	5.6	11.1	36.1	27.8	8.3	11.1	16.7	36.1	36.1		2.75
	이혼 또는 별거	(53)	1.9	20.8	26.4	30.2	7.5	11.3	22.6	26.4	37.7	1.9	2.76
	사별 후 독신	(18)	5.6	5.6	33.3	22.2	11.1	22.2	11.1	33.3	33.3		2.64
	미혼(19세 이상)	(20)	5.0	25.0	30.0	20.0		15.0	30.0	30.0	20.0	5.0	3.19
학력	모름/무응답	(1)									100.0		.
	무학	(8)	12.5	12.5	37.5			37.5	25.0	37.5			3.60
	중졸이하	(34)	5.9	8.8	23.5	35.3	8.8	14.7	14.7	23.5	44.1	2.9	2.61
	고졸이하	(64)	1.6	21.9	37.5	21.9	6.3	10.9	23.4	37.5	28.1		2.89
	대졸이하	(20)	5.0	15.0	20.0	40.0	5.0	10.0	20.0	20.0	45.0	5.0	2.71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주택 종류	모름/무응답	(1)									100.0		.
	단독주택	(48)	2.1	16.7	41.7	25.0	4.2	8.3	18.8	41.7	29.2	2.1	2.86
	아파트	(48)	6.3	12.5	25.0	31.3	6.3	16.7	18.8	25.0	37.5	2.1	2.77
	다가구(연립)주택	(24)	4.2	25.0	20.8	16.7	16.7	16.7	29.2	20.8	33.3		2.8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6)		16.7	16.7	50.0		16.7	16.7	16.7	50.0		2.6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1)									100.0		.
	자가	(22)	4.5	22.7	36.4	13.6	4.5	18.2	27.3	36.4	18.2		3.11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1.00
	전세(1억 미만)	(9)		11.1	55.6	33.3			11.1	55.6	33.3		2.78
	월세	(42)	2.4	11.9	40.5	19.0	9.5	16.7	14.3	40.5	28.6		2.74
	장기(영구)임대	(35)	2.9	14.3	20.0	42.9	5.7	11.4	17.1	20.0	48.6	2.9	2.60
	기타	(18)	11.1	27.8	11.1	27.8	5.6	11.1	38.9	11.1	33.3	5.6	3.13
모름/무응답	(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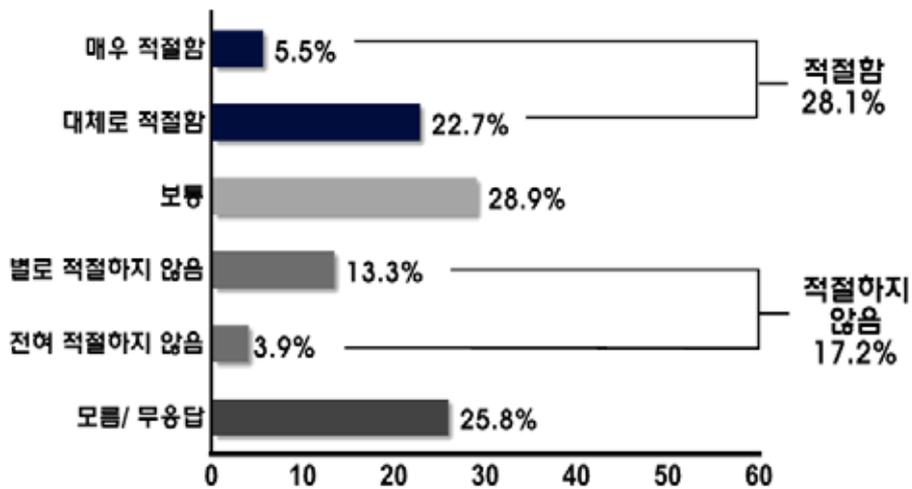
19_3. 자활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28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8.1%(매우 5.5% + 대체로 22.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7.2%(별로 13.3% + 전혀 3.9%)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9%, ‘잘 모르겠다’는 13.3%, ‘무응답’은 12.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지원기간	28.1%	28.9%	17.2%	3.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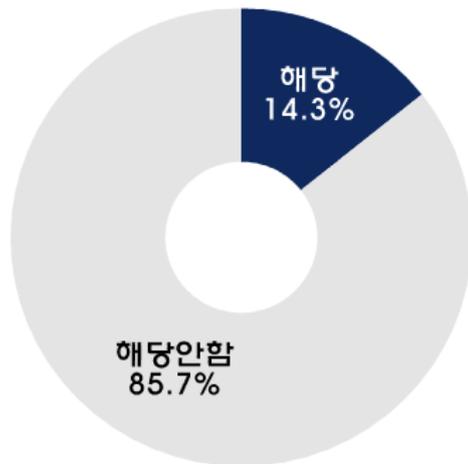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28명)

【표 19_3】 자활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128)	5.5	22.7	28.9	13.3	3.9	13.3	28.1	28.9	17.2	12.5	3.17	
구분	기초 수급자	(128)	5.5	22.7	28.9	13.3	3.9	13.3	28.1	28.9	17.2	12.5	3.1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1)	3.9	17.6	31.4	15.7	5.9	17.6	21.6	31.4	21.6	7.8	2.97
	6대 광역시	(24)	4.2	41.7	16.7	16.7	4.2		45.8	16.7	20.8	16.7	3.30
	중소도시	(30)	10.0	20.0	33.3	10.0		16.7	30.0	33.3	10.0	10.0	3.41
성별	기타 농어촌	(23)	4.3	17.4	30.4	8.7	4.3	13.0	21.7	30.4	13.0	21.7	3.13
	남성	(35)	5.7	25.7	17.1	17.1	5.7	22.9	31.4	17.1	22.9	5.7	3.12
연령별	여성	(93)	5.4	21.5	33.3	11.8	3.2	9.7	26.9	33.3	15.1	15.1	3.19
	10대	(1)										100.0	.
	20대	(12)	8.3	41.7	8.3	8.3		8.3	50.0	8.3	8.3	25.0	3.75
	30대	(20)	5.0	35.0	20.0	10.0		10.0	40.0	20.0	10.0	20.0	3.50
	40대	(55)	1.8	16.4	36.4	10.9	5.5	16.4	18.2	36.4	16.4	12.7	2.97
	50대	(26)	11.5	26.9	26.9	23.1	3.8	3.8	38.5	26.9	26.9	3.8	3.21
	60대	(10)	10.0	10.0	50.0	20.0	10.0		20.0	50.0	30.0		2.90
	70대	(2)						100.0					.
	80대 이상	(2)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9)	11.1	33.3	11.1	11.1		11.1	44.4	11.1	11.1	22.2	3.67
	임시고용	(3)	33.3					33.3	33.3			33.3	5.00
	일용직	(2)			50.0			50.0		50.0			3.00
	자영업	(3)				33.3		33.3			33.3	33.3	2.00
	자활근로	(80)	3.8	31.3	32.5	17.5	5.0	1.3	35.0	32.5	22.5	8.8	3.13
	실업	(2)			100.0					100.0			3.00
	비경제활동	(18)			22.2		5.6	61.1		22.2	5.6	11.1	2.60
	기타	(3)										100.0	.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8)	25.0	12.5	37.5	12.5		12.5	37.5	37.5	12.5		3.57
	장애가 있다	(28)	3.6	21.4	28.6	14.3	3.6	25.0	25.0	28.6	17.9	3.6	3.10
	장애가 없다	(99)	6.1	23.2	28.3	13.1	4.0	10.1	29.3	28.3	17.2	15.2	3.19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기혼	(36)	5.6	19.4	33.3	13.9	8.3	11.1	25.0	33.3	22.2	8.3	3.00
	이혼 또는 별거	(53)	5.7	30.2	24.5	13.2	1.9	11.3	35.8	24.5	15.1	13.2	3.33
	사별 후 독신	(18)	5.6	11.1	38.9	11.1	5.6	22.2	16.7	38.9	16.7	5.6	3.00
학력	미혼(19세 이상)	(20)	5.0	20.0	25.0	15.0		15.0	25.0	25.0	15.0	20.0	3.23
	모름/무응답	(1)										100.0	.
	무학	(8)	12.5		37.5			37.5	12.5	37.5			3.50
주택 종류	중졸이하	(34)	2.9	32.4	26.5	11.8	5.9	14.7	35.3	26.5	17.6	5.9	3.19
	고졸이하	(64)	6.3	23.4	28.1	14.1	3.1	9.4	29.7	28.1	17.2	15.6	3.21
	대졸이하	(20)	5.0	15.0	35.0	20.0		15.0	20.0	35.0	20.0	10.0	3.07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모름/무응답	(1)										100.0	.
주택 형태	단독주택	(48)	4.2	25.0	41.7	8.3	2.1	6.3	29.2	41.7	10.4	12.5	3.26
	아파트	(48)	8.3	16.7	20.8	18.8	4.2	20.8	25.0	20.8	22.9	10.4	3.09
	다가구(연립)주택	(24)		33.3	16.7	12.5	8.3	12.5	33.3	16.7	20.8	16.7	3.06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6)	16.7	16.7	33.3	16.7		16.7	33.3	33.3	16.7		3.4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1)										100.0	.
	자가	(22)	4.5	36.4	22.7	9.1	4.5	18.2	40.9	22.7	13.6	4.5	3.35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3.00
	전세(1억 미만)	(9)		33.3	66.7				33.3	66.7			3.33
	월세	(42)	2.4	23.8	38.1	4.8	4.8	14.3	26.2	38.1	9.5	11.9	3.19
	장기(영구)임대	(35)	8.6	8.6	25.7	22.9	5.7	14.3	17.1	25.7	28.6	14.3	2.88
기타	(18)	11.1	27.8		27.8		11.1	38.9		27.8	22.2	3.33	
모름/무응답	(1)										100.0	.	

20. 기타 급여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기타 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4.3%,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5.7%로 나타났다.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기타급여의 적절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47점) > 지원기간(3.39점) > 지원규모(3.31점) 순으로 높았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기타급여 수급방법	34.5%	15.5%	8.6%	3.47점
기타급여 지원규모	25.9%	25.9%	8.6%	3.31점
기타급여 지원기간	24.1%	24.1%	5.2%	3.39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58명)

【표 20】 그 외 기타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528)	11.0	89.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4.3	85.7
	기초 탈락자	(123)		100.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1.9	88.1
	6대 광역시	(79)	10.1	89.9
	중소도시	(170)	10.0	90.0
	기타 농어촌	(120)	11.7	88.3
성별	남성	(177)	8.5	91.5
	여성	(351)	12.3	87.7
연령별	10대	(11)	9.1	90.9
	20대	(37)	10.8	89.2
	30대	(68)	14.7	85.3
	40대	(136)	16.2	83.8
	50대	(103)	8.7	91.3
	60대	(64)	6.3	93.8
	70대	(78)	7.7	92.3
	80대 이상	(29)	6.9	93.1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14.3	85.7
	일시고용	(26)	7.7	92.3
	일용직	(27)	7.4	92.6
	자영업	(14)	28.6	71.4
	자활근로	(104)	16.3	83.7
	실업	(21)	14.3	85.7
	비경제활동	(213)	9.9	90.1
	기타	(35)	2.9	97.1
	모름/무응답	(53)	5.7	94.3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13.3	86.7
	장애가 없다	(296)	13.5	86.5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123)	11.4	88.6
	이혼 또는 별거	(146)	15.1	84.9
	사별 후 독신	(151)	8.6	91.4
	미혼(19세 이상)	(83)	9.6	90.4
	그 외 기타	(17)		100.0
	모름/무응답	(8)	12.5	87.5
학력	무학	(80)	10.0	90.0
	중졸이하	(200)	7.0	93.0
	고졸이하	(175)	14.9	85.1
	대졸이하	(60)	15.0	85.0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11)	9.1	90.9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7.5	92.5
	아파트	(138)	16.7	83.3
	다가구(연립)주택	(107)	11.2	88.8
	무허가주택	(13)	15.4	84.6
	구호시설	(2)	50.0	50.0
	기타	(33)	6.1	93.9
	모름/무응답	(9)	11.1	88.9
주거형태	자가	(134)	8.2	91.8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1.8	98.2
	월세	(140)	14.3	85.7
	장기(영구)임대	(108)	13.9	86.1
	기타	(76)	13.2	86.8
	모름/무응답	(14)	7.1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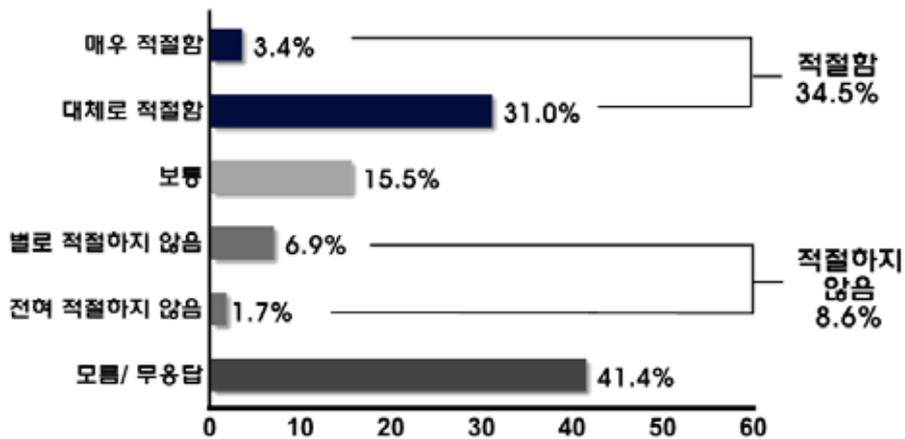
20_1. 기타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5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4.5%(매우 3.4% + 대체로 31.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8.6%(별로 6.9% + 전혀 1.7%)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5.5%, ‘잘 모르겠다’는 31.0%, ‘무응답’은 10.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47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기타급여 수급방법	34.5%	15.5%	8.6%	3.47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58명)

【표 20_1】 기타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58)	3.4	31.0	15.5	6.9	1.7	31.0	34.5	15.5	8.6	10.3	3.47
구분	기초 수급자	(58)	3.4	31.0	15.5	6.9	1.7	31.0	34.5	15.5	8.6	10.3	3.4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9)	10.5	10.5	15.8	10.5		47.4	21.1	15.8	10.5	5.3	3.44
	6대 광역시	(8)		25.0	25.0	12.5	12.5		25.0	25.0	25.0	25.0	2.83
	중소도시	(17)		47.1	11.8	5.9		35.3	47.1	11.8	5.9		3.64
	기타 농어촌	(14)		42.9	14.3			21.4	42.9	14.3		21.4	3.75
성별	남성	(15)		33.3	13.3	6.7		46.7	33.3	13.3	6.7		3.50
	여성	(43)	4.7	30.2	16.3	7.0	2.3	25.6	34.9	16.3	9.3	14.0	3.46
연령별	10대	(1)		100.0					100.0				4.00
	20대	(4)		25.0				50.0	25.0			25.0	4.00
	30대	(10)		30.0	10.0	20.0		30.0	30.0	10.0	20.0	10.0	3.17
	40대	(22)		22.7	18.2	4.5		40.9	22.7	18.2	4.5	13.6	3.40
	50대	(9)	11.1	33.3	11.1	11.1	11.1	11.1	44.4	11.1	22.2	11.1	3.29
	60대	(4)		50.0	50.0				50.0	50.0			3.50
	70대	(6)		50.0	16.7			33.3	50.0	16.7			3.75
	80대 이상	(2)	50.0					50.0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5)			20.0			40.0		20.0		40.0	3.00
	임시고용	(2)		50.0				50.0	50.0				4.00
	일용직	(2)			50.0			50.0		50.0			3.00
	자영업	(4)		25.0	50.0				25.0	50.0		25.0	3.33
	자활근로	(17)	5.9	35.3	17.6	5.9	5.9	23.5	41.2	17.6	11.8	5.9	3.42
	실업	(3)		66.7		33.3			66.7		33.3		3.33
	비경제활동	(21)	4.8	28.6	9.5	4.8		47.6	33.3	9.5	4.8	4.8	3.70
	기타	(1)										100.0	.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33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	5.6	38.9	5.6	11.1		38.9	44.4	5.6	11.1		3.64
	장애가 없다	(40)	2.5	27.5	20.0	5.0	2.5	27.5	30.0	20.0	7.5	15.0	3.39
혼인 여부	기혼	(14)		28.6	7.1	7.1		42.9	28.6	7.1	7.1	14.3	3.50
	이혼 또는 별거	(22)		22.7	27.3	4.5		31.8	22.7	27.3	4.5	13.6	3.33
	사별 후 독신	(13)	15.4	30.8	15.4	15.4	7.7	15.4	46.2	15.4	23.1		3.36
	미혼(19세 이상)	(8)		50.0				37.5	50.0			12.5	4.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8)	12.5	37.5	25.0	12.5		12.5	50.0	25.0	12.5		3.57
	중졸이하	(14)	7.1	21.4	14.3	7.1		42.9	28.6	14.3	7.1	7.1	3.57
	고졸이하	(26)		30.8	15.4	3.8	3.8	30.8	30.8	15.4	7.7	15.4	3.36
	대졸이하	(9)		33.3	11.1	11.1		33.3	33.3	11.1	11.1	11.1	3.4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7)		47.1	11.8			23.5	47.1	11.8		17.6	3.80
	아파트	(23)	8.7	26.1	17.4	8.7	4.3	30.4	34.8	17.4	13.0	4.3	3.40
	다가구(연립)주택	(12)		16.7	16.7	8.3		41.7	16.7	16.7	8.3	16.7	3.20
	무허가주택	(2)		50.0	50.0				50.0	50.0			3.5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2)				50.0		50.0			50.0		2.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11)		45.5	9.1			36.4	45.5	9.1		9.1	3.83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20)		25.0	20.0	5.0		40.0	25.0	20.0	5.0	10.0	3.40
	장기(영구)임대	(15)	13.3	26.7	6.7	13.3	6.7	26.7	40.0	6.7	20.0	6.7	3.40
	기타	(10)		30.0	20.0	10.0		20.0	30.0	20.0	10.0	20.0	3.3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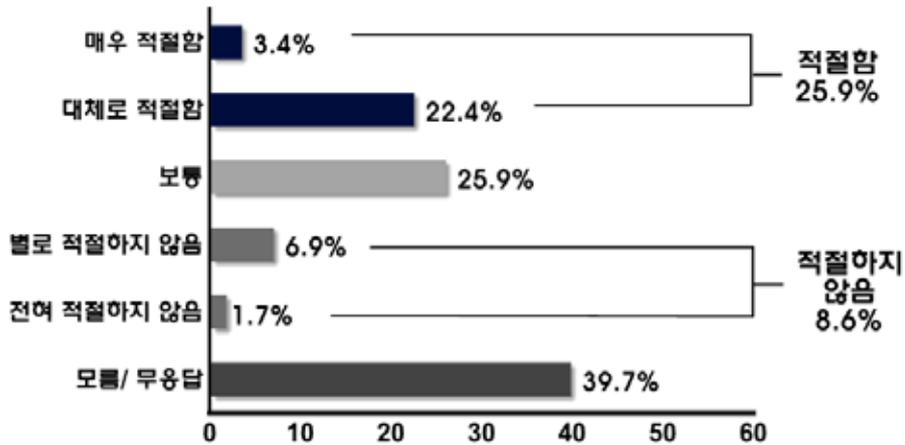
20_2. 기타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5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5.9%(매우 3.4% + 대체로 22.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8.6%(별로 6.9% + 전혀 1.7%)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5.9%, ‘잘 모르겠다’는 36.2%, ‘무응답’은 3.4%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1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기타급여 지원규모	25.9%	25.9%	8.6%	3.31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58명)

【표 20_2】 기타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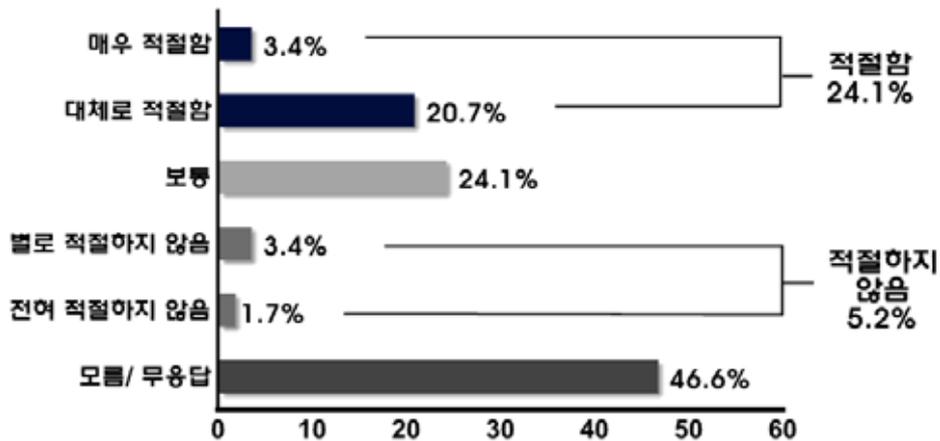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58)	3.4	22.4	25.9	6.9	1.7	36.2	25.9	25.9	8.6	3.4	3.31
구분	기초 수급자	(58)	3.4	22.4	25.9	6.9	1.7	36.2	25.9	25.9	8.6	3.4	3.3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9)	10.5	10.5	31.6			47.4	21.1	31.6			3.60
	6대 광역시	(8)		12.5	37.5	25.0	12.5	12.5	12.5	37.5	37.5		2.57
	중소도시	(17)		29.4	17.6	11.8		35.3	29.4	17.6	11.8	5.9	3.30
	기타 농어촌	(14)		35.7	21.4			35.7	35.7	21.4		7.1	3.63
성별	남성	(15)		20.0	26.7			46.7	20.0	26.7		6.7	3.43
	여성	(43)	4.7	23.3	25.6	9.3	2.3	32.6	27.9	25.6	11.6	2.3	3.29
연령별	10대	(1)		100.0					100.0				4.00
	20대	(4)		25.0	25.0			50.0	25.0	25.0			3.50
	30대	(10)		10.0	40.0	10.0		30.0	10.0	40.0	10.0	10.0	3.00
	40대	(22)		13.6	31.8	4.5		50.0	13.6	31.8	4.5		3.18
	50대	(9)	11.1	22.2	22.2	11.1	11.1	22.2	33.3	22.2	22.2		3.14
	60대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70대	(6)		66.7				33.3	66.7				4.00
	80대 이상	(2)	50.0					50.0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5)			20.0			80.0		20.0			3.00
	임시고용	(2)		50.0				50.0	50.0				4.00
	일용직	(2)			50.0			50.0		50.0			3.00
	자영업	(4)		25.0	25.0			25.0	25.0	25.0		25.0	3.50
	자활근로	(17)	5.9	23.5	29.4	5.9	5.9	23.5	29.4	29.4	11.8	5.9	3.25
	실업	(3)		33.3	66.7				33.3	66.7			3.33
	비경제활동	(21)	4.8	23.8	19.0	4.8		47.6	28.6	19.0	4.8		3.55
	기타	(1)			100.0					100.0			3.00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2.67
	장애가 있다	(18)	5.6	16.7	22.2	11.1		38.9	22.2	22.2	11.1	5.6	3.30
혼인 여부	장애가 없다	(40)	2.5	25.0	27.5	5.0	2.5	35.0	27.5	27.5	7.5	2.5	3.32
	기혼	(14)		14.3	35.7			50.0	14.3	35.7			3.29
학력	이혼 또는 별거	(22)		18.2	27.3	9.1		40.9	18.2	27.3	9.1	4.5	3.17
	사별 후 독신	(13)	15.4	30.8	15.4	15.4	7.7	15.4	46.2	15.4	23.1		3.36
	미혼(19세 이상)	(8)		37.5	25.0			37.5	37.5	25.0			3.60
	모름/무응답	(1)										100.0	.
주택 종류	무학	(8)	12.5	50.0	25.0			12.5	62.5	25.0			3.86
	중졸이하	(14)	7.1	7.1	14.3	14.3		50.0	14.3	14.3	14.3	7.1	3.17
	고졸이하	(26)		26.9	26.9	3.8	3.8	38.5	26.9	26.9	7.7		3.25
	대졸이하	(9)		11.1	44.4	11.1		33.3	11.1	44.4	11.1		3.00
	모름/무응답	(1)										100.0	.
주거 형태	단독주택	(17)		47.1	17.6			35.3	47.1	17.6			3.73
	아파트	(23)	8.7	17.4	30.4	8.7	4.3	30.4	26.1	30.4	13.0		3.25
	다가구(연립)주택	(12)			33.3	16.7		50.0		33.3	16.7		2.67
	무허가주택	(2)		50.0					50.0			50.0	4.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2)			50.0			50.0		50.0			3.0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1)										100.0	.
	자가	(11)		45.5	9.1			45.5	45.5	9.1			3.83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20)		5.0	40.0	10.0		45.0	5.0	40.0	10.0		2.91
	장기(영구)임대	(15)	13.3	20.0	26.7	6.7	6.7	26.7	33.3	26.7	13.3		3.36
기타	(10)		40.0	10.0	10.0		30.0	40.0	10.0	10.0	10.0	3.50	
모름/무응답	(1)										100.0	.	

20_3. 기타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5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4.1%(매우 3.4% + 대체로 20.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별로 3.4% + 전혀 1.7%)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4.1%, ‘잘 모르겠다’는 31.0%, ‘무응답’은 15.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9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기타급여 지원기간	24.1%	24.1%	5.2%	3.39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58명)

【표 20_3】 기타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58)	3.4	20.7	24.1	3.4	1.7	31.0	24.1	24.1	5.2	15.5	3.39
구분	기초 수급자	(58)	3.4	20.7	24.1	3.4	1.7	31.0	24.1	24.1	5.2	15.5	3.3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9)	10.5		31.6			47.4	10.5	31.6		10.5	3.50
	6대 광역시	(8)		12.5	37.5	12.5	12.5		12.5	37.5	25.0	25.0	2.67
	중소도시	(17)		29.4	23.5	5.9		35.3	29.4	23.5	5.9	5.9	3.40
	기타 농어촌	(14)		42.9	7.1			21.4	42.9	7.1		28.6	3.86
성별	남성	(15)		26.7	20.0			46.7	26.7	20.0		6.7	3.57
	여성	(43)	4.7	18.6	25.6	4.7	2.3	25.6	23.3	25.6	7.0	18.6	3.33
연령별	10대	(1)		100.0					100.0				4.00
	20대	(4)		25.0				50.0	25.0			25.0	4.00
	30대	(10)		20.0	20.0	10.0		30.0	20.0	20.0	10.0	20.0	3.20
	40대	(22)		9.1	31.8			40.9	9.1	31.8		18.2	3.22
	50대	(9)	11.1	22.2	22.2	11.1	11.1	11.1	33.3	22.2	22.2	11.1	3.14
	60대	(4)		25.0	50.0				25.0	50.0		25.0	3.33
	70대	(6)		50.0	16.7			33.3	50.0	16.7			3.75
	80대 이상	(2)	50.0					50.0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5)			20.0			40.0		20.0		40.0	3.00
	임시고용	(2)		50.0				50.0	50.0				4.00
	일용직	(2)			50.0			50.0		50.0			3.00
	자영업	(4)		25.0	25.0				25.0	25.0		50.0	3.50
	자활근로	(17)	5.9	17.6	23.5	5.9	5.9	23.5	23.5	23.5	11.8	17.6	3.20
	실업	(3)		33.3	66.7				33.3	66.7			3.33
	비경제활동	(21)	4.8	23.8	19.0			47.6	28.6	19.0		4.8	3.70
	기타	(1)										100.0	.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	5.6	22.2	27.8			38.9	27.8	27.8		5.6	3.60
	장애가 없다	(40)	2.5	20.0	22.5	5.0	2.5	27.5	22.5	22.5	7.5	20.0	3.29
혼인여부	기혼	(14)		7.1	28.6			42.9	7.1	28.6		21.4	3.20
	이혼 또는 별거	(22)		18.2	27.3	4.5		31.8	18.2	27.3	4.5	18.2	3.27
	사별 후 독신	(13)	15.4	23.1	30.8	7.7	7.7	15.4	38.5	30.8	15.4		3.36
	미혼(19세 이상)	(8)		50.0				37.5	50.0			12.5	4.00
	모름/무응답	(1)										100.0	.
학력	무학	(8)	12.5	37.5	37.5			12.5	50.0	37.5			3.71
	중졸이하	(14)	7.1	7.1	14.3	7.1		42.9	14.3	14.3	7.1	21.4	3.40
	고졸이하	(26)		26.9	19.2	3.8	3.8	30.8	26.9	19.2	7.7	15.4	3.29
	대졸이하	(9)		11.1	44.4			33.3	11.1	44.4		11.1	3.20
	모름/무응답	(1)										100.0	.
주택종류	단독주택	(17)		41.2	17.6			23.5	41.2	17.6		17.6	3.70
	아파트	(23)	8.7	17.4	30.4	4.3	4.3	30.4	26.1	30.4	8.7	4.3	3.33
	다가구(연립)주택	(12)			25.0	8.3		41.7		25.0	8.3	25.0	2.75
	무허가주택	(2)		50.0					50.0			50.0	4.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2)			50.0			50.0		50.0			3.00
	모름/무응답	(1)									100.0	.	
주거형태	자가	(11)		45.5	9.1			36.4	45.5	9.1		9.1	3.83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20)		10.0	35.0			40.0	10.0	35.0		15.0	3.22
	장기(영구)임대	(15)	13.3	13.3	26.7	6.7	6.7	26.7	26.7	26.7	13.3	6.7	3.30
	기타	(10)		30.0	10.0	10.0		20.0	30.0	10.0	10.0	30.0	3.40
	모름/무응답	(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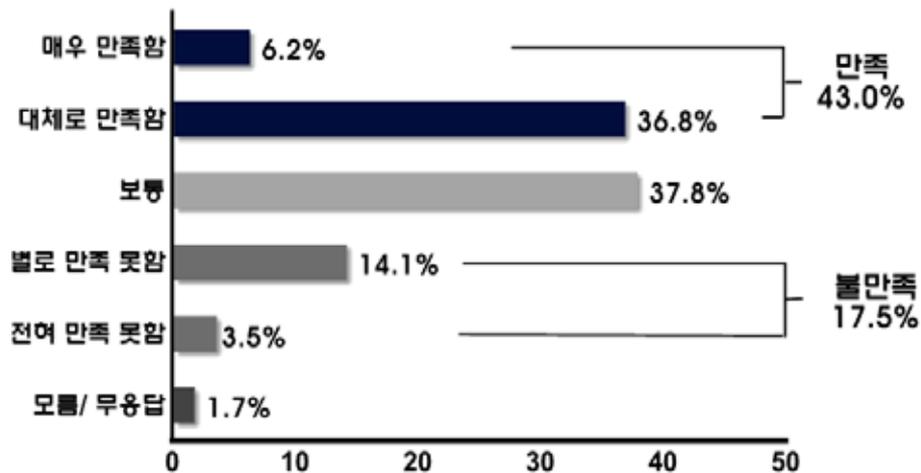
21.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족 한다’는 응답이 43.0%(매우 6.2% + 대체로 36.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7.5%(별로 14.1% + 전혀 3.5%)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7.8%, ‘무응답’은 1.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2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전반적인 의견	43.0%	37.8%	17.5%	3.29점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표 21】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만족』	『보통』	『불만족』	무응답	평점
□ 전 체 □		(405)	6.2	36.8	37.8	14.1	3.5	43.0	37.8	17.5	1.7	3.29
구분	기초 수급자	(405)	6.2	36.8	37.8	14.1	3.5	43.0	37.8	17.5	1.7	3.29
	서울 포함 수도권	(133)	5.3	33.8	35.3	16.5	8.3	39.1	35.3	24.8	0.8	3.11
권역	6대 광역시	(73)	9.6	37.0	35.6	12.3	2.7	46.6	35.6	15.1	2.7	3.39
	중소도시	(109)	5.5	37.6	38.5	14.7	0.9	43.1	38.5	15.6	2.8	3.33
	기타 농어촌	(90)	5.6	40.0	42.2	11.1		45.6	42.2	11.1	1.1	3.40
성별	남성	(138)	5.8	36.2	35.5	18.1	3.6	42.0	35.5	21.7	0.7	3.23
	여성	(267)	6.4	37.1	39.0	12.0	3.4	43.4	39.0	15.4	2.2	3.32
연령별	10대	(9)	22.2	11.1	55.6	11.1		33.3	55.6	11.1		3.44
	20대	(22)		36.4	50.0	13.6		36.4	50.0	13.6		3.23
	30대	(55)	3.6	41.8	36.4	12.7	1.8	45.5	36.4	14.5	3.6	3.34
	40대	(108)	4.6	38.0	40.7	16.7		42.6	40.7	16.7		3.31
	50대	(75)	8.0	29.3	36.0	13.3	10.7	37.3	36.0	24.0	2.7	3.11
	60대	(53)	5.7	43.4	35.8	9.4	3.8	49.1	35.8	13.2	1.9	3.38
	70대	(57)	7.0	40.4	31.6	15.8	3.5	47.4	31.6	19.3	1.8	3.32
	80대 이상	(24)	12.5	33.3	33.3	12.5	4.2	45.8	33.3	16.7	4.2	3.39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8)	16.7	38.9	38.9		5.6	55.6	38.9	5.6		3.61
	일시고용	(12)	8.3	41.7	25.0	16.7	8.3	50.0	25.0	25.0		3.25
	일용직	(14)		50.0	42.9	7.1		50.0	42.9	7.1		3.43
	자영업	(13)		46.2	30.8	15.4		46.2	30.8	15.4	7.7	3.33
	자활근로	(91)	4.4	31.9	42.9	14.3	6.6	36.3	42.9	20.9		3.13
	실업	(17)		58.8	17.6	17.6	5.9	58.8	17.6	23.5		3.29
	비경제활동	(181)	6.1	36.5	36.5	16.0	2.2	42.5	36.5	18.2	2.8	3.29
	기타	(17)	11.8	29.4	52.9			41.2	52.9		5.9	3.56
	모름/무응답	(42)	9.5	33.3	38.1	16.7	2.4	42.9	38.1	19.0		3.31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27)	4.7	37.8	34.6	17.3	1.6	42.5	34.6	18.9	3.9	3.28
	장애가 없다	(274)	6.9	36.5	38.7	12.8	4.4	43.4	38.7	17.2	0.7	3.29
	모름/무응답	(4)		25.0	75.0			25.0	75.0			3.25
혼인여부	기혼	(86)	3.5	40.7	37.2	16.3	2.3	44.2	37.2	18.6		3.27
	이혼 또는 별거	(121)	4.1	43.0	35.5	10.7	5.8	47.1	35.5	16.5	0.8	3.29
	사별 후 독신	(114)	9.6	33.3	32.5	17.5	4.4	43.0	32.5	21.9	2.6	3.27
	미혼(19세 이상)	(67)	4.5	28.4	50.7	14.9		32.8	50.7	14.9	1.5	3.23
	그 외 기타	(13)	23.1	23.1	53.8			46.2	53.8			3.69
	모름/무응답	(4)		50.0				50.0			50.0	4.00
학력	무학	(66)	12.1	37.9	28.8	16.7	3.0	50.0	28.8	19.7	1.5	3.40
	중졸이하	(155)	4.5	40.6	37.4	12.3	3.9	45.2	37.4	16.1	1.3	3.30
	고졸이하	(135)	5.2	31.1	44.4	14.1	3.7	36.3	44.4	17.8	1.5	3.20
	대졸이하	(42)	7.1	38.1	35.7	16.7	2.4	45.2	35.7	19.0		3.31
	대학원이상	(2)			50.0	50.0			50.0	50.0		2.50
	모름/무응답	(5)		60.0				60.0			40.0	4.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68)	7.7	35.7	43.5	10.1	2.4	43.5	43.5	12.5	0.6	3.37
	아파트	(113)	7.1	35.4	29.2	22.1	5.3	42.5	29.2	27.4	0.9	3.17
	다가구(연립)주택	(82)	4.9	36.6	45.1	9.8	2.4	41.5	45.1	12.2	1.2	3.32
	무허가주택	(10)		70.0	10.0	10.0		70.0	10.0	10.0	10.0	3.67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27)		37.0	29.6	22.2	7.4	37.0	29.6	29.6	3.7	3.00
	모름/무응답	(4)		50.0				50.0			50.0	4.00
주거형태	자가	(89)	4.5	42.7	42.7	10.1		47.2	42.7	10.1		3.42
	전세(1억 이상)	(1)				100.0				100.0		2.00
	전세(1억 미만)	(38)	7.9	34.2	28.9	21.1	2.6	42.1	28.9	23.7	5.3	3.25
	월세	(114)	7.0	36.0	41.2	9.6	5.3	43.0	41.2	14.9	0.9	3.30
	장기(영구)임대	(95)	6.3	31.6	36.8	18.9	5.3	37.9	36.8	24.2	1.1	3.15
	기타	(61)	6.6	37.7	36.1	14.8	3.3	44.3	36.1	18.0	1.6	3.30
모름/무응답	(7)		57.1		14.3		57.1		14.3	28.6	3.60	

22.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2%, ‘자녀 교육 지원 가능’ 9.4%, ‘고정적 수입 발생’ 3.5%, ‘기초 생존권 보장’ 3.2%,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5%, ‘주거의 안정 획득’ 2.0%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1.0%, ‘없음/모름/무응답’은 27.2%였다.

No.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비율 (%)
1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	31.1%
2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20.2%
3	자녀 교육 지원 가능	9.4%
4	고정적 수입 발생	3.5%
5	기초 생존권 보장	3.2%
6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5%
7	주거의 안정 획득	2.0%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표 22】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단위:%	사례수	기초 생존권 보장	심리적 위안 자활의 계기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자녀 교육지원 가능	주거의 안정 획득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고정적 수입 발생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 전 체 □	(405)	3.2	2.5	20.2	9.4	2.0	31.1	3.5	1.0	27.2	
구분	기초 수급자	(405)	3.2	2.5	20.2	9.4	2.0	31.1	3.5	1.0	27.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2.3	3.0	24.1	10.5	3.8	28.6	8.3	0.8	18.8
	6대 광역시	(73)	4.1	2.7	6.8	6.8	2.7	42.5			34.2
	중소도시	(109)	0.9	0.9	22.9	9.2	0.9	27.5	1.8	0.9	34.9
	기타 농어촌	(90)	6.7	3.3	22.2	10.0		30.0	1.1	2.2	24.4
성별	남성	(138)	2.9	2.2	28.3	6.5	3.6	32.6	2.9	0.7	20.3
	여성	(267)	3.4	2.6	16.1	10.9	1.1	30.3	3.7	1.1	30.7
연령별	10대	(9)				11.1		44.4			44.4
	20대	(22)		9.1	13.6	4.5		18.2	4.5	4.5	45.5
	30대	(55)	1.8	1.8	10.9	20.0	3.6	32.7			29.1
	40대	(108)	2.8	3.7	14.8	16.7	3.7	27.8	2.8		27.8
	50대	(75)	2.7	1.3	26.7	6.7		38.7	4.0		20.0
	60대	(53)	1.9	1.9	34.0	3.8		26.4		1.9	30.2
	70대	(57)	8.8	1.8	22.8		3.5	33.3	10.5	1.8	17.5
	80대 이상	(24)	4.2		25.0			33.3	4.2		33.3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8)		5.6	5.6	22.2		38.9		5.6	22.2
	일시고용	(12)			25.0			33.3	8.3		33.3
	일용직	(14)	7.1		14.3	42.9		21.4			14.3
	자영업	(13)	7.7	7.7	15.4	7.7		30.8			30.8
	자활근로	(91)	2.2	4.4	14.3	16.5	4.4	33.0	1.1	1.1	23.1
	실업	(17)			5.9	11.8		23.5	5.9		52.9
	비경제활동	(181)	3.9	1.7	26.0	3.3	2.2	29.8	5.5	1.1	26.5
	기타	(17)	5.9		23.5	17.6		23.5			29.4
모름/무응답	(42)	2.4	2.4	21.4	2.4		38.1	2.4		31.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27)	3.1	2.4	24.4	4.7	1.6	33.9	4.7	1.6	23.6
	장애가 없다	(274)	3.3	2.6	18.2	11.7	2.2	29.9	2.9	0.7	28.5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혼인 여부	기혼	(86)	2.3	2.3	23.3	9.3	2.3	36.0	1.2	1.2	22.1
	이혼 또는 별거	(121)	2.5	1.7	23.1	18.2	1.7	28.9	2.5		21.5
	사별 후 독신	(114)	6.1	2.6	18.4	5.3	2.6	34.2	3.5	1.8	25.4
	미혼(19세 이상)	(67)	1.5	4.5	17.9	1.5	1.5	22.4	6.0	1.5	43.3
	그 외 기타	(13)			7.7	7.7		38.5	15.4		30.8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66)	7.6	1.5	12.1	4.5	1.5	33.3	7.6	3.0	28.8
	중졸이하	(155)	3.2	1.9	31.0	6.5	2.6	31.0	2.6	0.6	20.6
	고졸이하	(135)	2.2	3.0	13.3	14.8	0.7	31.9	3.0	0.7	30.4
	대졸이하	(42)		4.8	19.0	11.9	2.4	26.2			35.7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5)						20.0	20.0		6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68)	4.8	2.4	23.2	9.5	0.6	30.4	1.8	1.2	26.2
	아파트	(113)	1.8	1.8	15.0	11.5	0.9	37.2			31.9
	다가구(연립)주택	(82)	1.2	4.9	19.5	9.8	3.7	28.0	11.0	1.2	20.7
	무허가주택	(10)	20.0		20.0			30.0	10.0	10.0	1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7)			29.6	3.7	11.1	22.2	3.7		29.6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 형태	자가	(89)	6.7	3.4	20.2	6.7		28.1	3.4	2.2	29.2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8)		5.3	26.3	15.8		23.7	5.3		23.7
	월세	(114)	2.6	3.5	20.2	10.5	4.4	29.8	6.1	1.8	21.1
	장기(영구)임대	(95)	2.1	1.1	14.7	9.5	2.1	38.9	2.1		29.5
	기타	(61)	3.3		26.2	8.2	1.6	32.8			27.9
모름/무응답	(7)						14.3			85.7	

23.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급여(지원 금액)가 너무 적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1.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가 12.8%로 뒤를 이었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약값부족 등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2.5%,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2.2%, ‘기준에 빚이 많아서’ 0.2% 등이 있었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53.8%였다.

No.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비율 (%)
1	급여(지원 금액)가 너무 적기 때문에	21.2%
2	생활비가 많이 올라서	12.8%
3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4	약값부족 등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2.5%
5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2.2%
6	기준에 빚이 많아서	0.2%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표 23】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단위:%	사례수	급여(지원 금액)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생활비(물가/교육비 등)가 많이 올라서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약값부족 등 필요한 지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기존에 빚이 많아서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 전	■ (405)	21.2	12.8	3.0	2.5	2.2	0.2	4.2	53.8
구분	기준 수급자 (405)	21.2	12.8	3.0	2.5	2.2	0.2	4.2	53.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30.8	13.5	3.0	2.3	3.8		4.5	42.1
	6대 광역시 (73)	19.2	15.1	1.4	5.5	2.7		5.5	50.7
	중소도시 (109)	11.9	10.1	5.5	0.9	1.8		2.8	67.0
	기타 농어촌 (90)	20.0	13.3	1.1	2.2		1.1	4.4	57.8
성별	남성 (138)	21.0	10.1	5.1	0.7	2.9		5.8	54.3
	여성 (267)	21.3	14.2	1.9	3.4	1.9	0.4	3.4	53.6
연령별	10대 (9)		22.2					11.1	66.7
	20대 (22)	13.6	9.1	4.5				9.1	63.6
	30대 (55)	12.7	20.0	3.6	1.8	1.8	1.8	7.3	50.9
	40대 (108)	27.8	11.1	4.6	0.9	3.7		1.9	50.0
	50대 (75)	18.7	16.0		2.7	2.7		5.3	54.7
	60대 (53)	32.1	9.4	5.7	3.8	1.9		1.9	45.3
	70대 (57)	17.5	10.5	1.8	3.5	1.8		5.3	59.6
	80대 이상 (24)	16.7	8.3		8.3				66.7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8)	16.7	11.1	5.6				11.1	55.6
	임시고용 (12)	16.7	25.0					8.3	50.0
	일용직 (14)	14.3	21.4					7.1	57.1
	자영업 (13)	23.1						7.7	69.2
	자활근로 (91)	25.3	25.3	1.1	1.1	1.1	1.1	3.3	41.8
	실업 (17)	17.6	17.6	5.9					58.8
	비경제활동 (181)	19.3	3.9	5.0	4.4	3.9		3.9	59.7
	기타 (17)	23.5	23.5		5.9			5.9	41.2
	모름/무응답 (42)	26.2	16.7			2.4		2.4	52.4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27)	20.5	6.3	7.1	2.4	3.9		4.7	55.1
	장애가 없다 (274)	21.9	16.1	1.1	2.6	1.5	0.4	3.6	52.9
	모름/무응답 (4)							25.0	75.0
혼인 여부	기혼 (86)	27.9	9.3	4.7	2.3	1.2		4.7	50.0
	이혼 또는 별거 (121)	21.5	20.7	3.3	2.5	4.1		4.1	43.8
	사별 후 독신 (114)	20.2	12.3	0.9	3.5	0.9	0.9	1.8	59.6
	미혼(19세 이상) (67)	13.4	6.0	4.5		3.0		7.5	65.7
	그 외 기타 (13)	30.8	7.7		7.7			7.7	46.2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66)	18.2	4.5	1.5	4.5				71.2
	중졸이하 (155)	21.9	11.0	4.5	3.2	2.6		1.9	54.8
	고졸이하 (135)	23.7	18.5	1.5	1.5	3.7		8.1	43.0
	대졸이하 (42)	14.3	16.7	4.8			2.4	7.1	54.8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5)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68)	17.3	12.5	2.4	1.8	1.2		4.8	60.1
	아파트 (113)	28.3	10.6	3.5	0.9	2.7	0.9	1.8	51.3
	다가구(연립)주택 (82)	20.7	18.3	1.2	7.3	3.7		6.1	42.7
	무허가주택 (10)	30.0	10.0	10.0				10.0	4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7)	18.5	11.1	7.4		3.7		3.7	55.6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 형태	자가 (89)	16.9	9.0	3.4	1.1	1.1		6.7	61.8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8)	21.1	5.3	7.9	7.9			5.3	52.6
	월세 (114)	18.4	20.2	0.9	1.8	3.5	0.9	5.3	49.1
	장기(영구)임대 (95)	30.5	6.3	3.2	2.1	2.1		1.1	54.7
	기타 (61)	21.3	21.3	3.3	3.3	1.6		3.3	45.9
	모름/무응답 (7)								100.0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에게 개선점을 질문하였다.

먼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만족’ 9.4% > ‘복지 서비스 제공’ 3.0% >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1.7% > ‘현금으로 수급 요망’ 1.5% > ‘홍보활동 및 수급대상 확대’ 1.2% > ‘수급자라는 비밀보장’ 0.7% > ‘지원 분야 확대’ 0.5%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없음/모름/무응답’은 79.5%였다.

다음으로 지원 규모에 대한 개선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원 금액 확대’ 35.6% > ‘물가 상승분 반영’ 4.2% > ‘현행 만족’ 2.7% >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1.2%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고, ‘없음/모름/무응답’은 55.8%였다.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만족’ 8.4% > ‘전반적으로 기간 연장’ 4.9% >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시까지 지원’ 1.5% > ‘아동이 학업마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0.7%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없음/모름/무응답’은 83.2%였다.

No.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		지원 규모에 대한 개선의견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의견	
1	현행 만족	9.4%	지원 금액 확대	35.6%	현행 만족	8.4%
2	복지 서비스 제공	3.0%	물가 상승분 반영	4.2%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4.9%
3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1.7%	현행 만족	2.7%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시까지 지원	1.5%
4	현금으로 수급 요망	1.5%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1.2%	학업마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	0.7%
5	홍보활동 및 수급 대상 확대	1.2%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0.7%
6	수급자라는 비밀 보장	0.7%				
7	지원 분야 확대	0.5%				
-	없음/모름/무응답	79.5%	없음/모름/무응답	55.8%	없음/모름/무응답	83.2%

(Bas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405명)

【표 24_1】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현행만족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복지서비스 제공	현금으로 지급요망	홍보 및 상수급대상 확대	수급자라는 비밀 보장	지원분야 확대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405)	9.4	1.7	3.0	1.5	1.2	0.7	0.5	2.5	79.5
구분	기초 수급자 (405)	9.4	1.7	3.0	1.5	1.2	0.7	0.5	2.5	79.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8.3	4.5	3.0	2.3	0.8	2.3	0.8	3.0	75.2
	6대 광역시 (73)	17.8	1.4			2.7			2.7	75.3
	중소도시 (109)	5.5		2.8	1.8				1.8	88.1
	기타 농어촌 (90)	8.9		5.6	1.1	2.2		1.1	2.2	78.9
성별	남성 (138)	10.9	1.4	2.2	1.4			0.7	2.2	81.2
	여성 (267)	8.6	1.9	3.4	1.5	1.9	1.1	0.4	2.6	78.7
연령별	10대 (9)					11.1		11.1		77.8
	20대 (22)				4.5	4.5				90.9
	30대 (55)	7.3		12.7	3.6	1.8			3.6	70.9
	40대 (108)	11.1	4.6	1.9	0.9		1.9		2.8	76.9
	50대 (75)	6.7		2.7	1.3		1.3		4.0	84.0
	60대 (53)	17.0	3.8			1.9			1.9	75.5
	70대 (57)	8.8				1.8		1.8	1.8	86.0
	80대 이상 (24)	12.5		4.2	4.2					79.2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8)		5.6	5.6	5.6					83.3
	일시고용 (12)	8.3								91.7
	일용직 (14)	14.3				7.1				78.6
	자영업 (13)	7.7				7.7			7.7	76.9
	자활근로 (91)	12.1		4.4	2.2	1.1	1.1		4.4	74.7
	실업 (17)	11.8	5.9	17.6			5.9			58.8
	비경제활동 (181)	9.4	1.7	1.7	1.7			0.6	2.2	82.9
	기타 (17)	11.8	5.9	5.9		5.9		5.9	5.9	58.8
모름/무응답 (42)	4.8	2.4			2.4	2.4			88.1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27)	11.0	2.4	2.4	1.6				0.8	81.9
	장애가 없다 (274)	8.8	1.5	3.3	1.5	1.8	1.1	0.7	3.3	78.1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86)	4.7	3.5	3.5	2.3				1.2	84.9
	이혼 또는 별거 (121)	12.4	1.7	4.1	0.8	0.8	2.5		5.0	72.7
	사별 후 독신 (114)	10.5	1.8	2.6		1.8		0.9	0.9	81.6
	미혼(19세 이상) (67)	6.0		1.5	3.0	1.5			3.0	85.1
	그 외 기타 (13)	23.1			7.7	7.7		7.7		53.8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66)	12.1	3.0	1.5		1.5				81.8
	중졸이하 (155)	9.7	0.6	1.9	0.6	1.3		1.3	2.6	81.9
	고졸이하 (135)	8.9	3.0	4.4	1.5	0.7	2.2		3.7	75.6
	대졸이하 (42)	7.1		4.8	7.1	2.4			2.4	76.2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5)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68)	7.7	0.6	2.4	1.2	1.2		0.6	3.6	82.7
	아파트 (113)	11.5	3.5	1.8	1.8	0.9	2.7	0.9	1.8	75.2
	다가구(연립)주택 (82)	12.2		4.9	2.4	2.4			1.2	76.8
	무허가주택 (10)			10.0						9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7)	7.4	3.7	3.7					3.7	81.5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형태	자가 (89)	5.6		1.1	1.1	3.4			3.4	85.4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8)	18.4		5.3		2.6				73.7
	월세 (114)	7.9	0.9	2.6	1.8		0.9		2.6	83.3
	장기(영구)임대 (95)	12.6	5.3	1.1	2.1	1.1	2.1	1.1		74.7
	기타 (61)	8.2	1.6	8.2	1.6			1.6	6.6	72.1
모름/무응답 (7)									100.0	

【표 24_2】 지원규모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지원 금액 확대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물가 상승분 반영	기타	현행 만족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405)	35.6	1.2	4.2	0.5	2.7	55.8	
구분	기준 수급자	(405)	35.6	1.2	4.2	0.5	2.7	55.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44.4	1.5	6.8	0.8	2.3	44.4
	6대 광역시	(73)	39.7	2.7	2.7	1.4	5.5	47.9
	중소도시	(109)	29.4	0.9	2.8		1.8	65.1
	기타 농어촌	(90)	26.7		3.3		2.2	67.8
성별	남성	(138)	41.3		2.9		2.2	53.6
	여성	(267)	32.6	1.9	4.9	0.7	3.0	56.9
연령별	10대	(9)	11.1		11.1			77.8
	20대	(22)	18.2		4.5			77.3
	30대	(55)	32.7	1.8	5.5		1.8	58.2
	40대	(108)	36.1	1.9	5.6	0.9	1.9	53.7
	50대	(75)	40.0	1.3	5.3		1.3	52.0
	60대	(53)	39.6	1.9	1.9	1.9	7.5	47.2
	70대	(57)	40.4		1.8		3.5	54.4
	80대 이상	(24)	25.0				4.2	70.8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8)	5.6	5.6	5.6			83.3
	임시고용	(12)	33.3		16.7			50.0
	일용직	(14)	35.7		7.1			57.1
	자영업	(13)	38.5					61.5
	자활근로	(91)	38.5	1.1	6.6		1.1	52.7
	실업	(17)	29.4	5.9	5.9		5.9	52.9
	비경제활동	(181)	37.6	1.1	2.2	0.6	3.3	55.2
	기타	(17)	29.4		5.9		5.9	58.8
	모름/무응답	(42)	38.1		2.4	2.4	4.8	52.4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27)	44.1	1.6	3.1	0.8	1.6	48.8
	장애가 없다	(274)	31.8	1.1	4.7	0.4	3.3	58.8
	모름/무응답	(4)	25.0					75.0
혼인 여부	기혼	(86)	33.7	1.2	9.3		1.2	54.7
	이혼 또는 별거	(121)	45.5	1.7	4.1		2.5	46.3
	사별 후 독신	(114)	32.5	0.9	0.9	1.8	3.5	60.5
	미혼(19세 이상)	(67)	26.9		4.5		3.0	65.7
	그 외 기타	(13)	30.8	7.7			7.7	53.8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66)	34.8			1.5	6.1	57.6
	중졸이하	(155)	37.4	1.3	3.9	0.6	3.2	53.5
	고졸이하	(135)	38.5	0.7	5.9		0.7	54.1
	대졸이하	(42)	21.4	4.8	7.1		2.4	64.3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5)	20.0					8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68)	29.2	0.6	4.2		2.4	63.7
	아파트	(113)	42.5	1.8	2.7	1.8	3.5	47.8
	다가구(연립)주택	(82)	42.7	1.2	4.9		3.7	47.6
	무허가주택	(10)	50.0					5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7)	18.5	3.7	11.1			66.7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 형태	자가	(89)	30.3				1.1	68.5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8)	47.4		2.6		5.3	44.7
	월세	(114)	29.8	2.6	7.9		2.6	57.0
	장기(영구)임대	(95)	46.3	2.1	3.2	2.1	4.2	42.1
	기타	(61)	31.1		6.6		1.6	60.7
	모름/무응답	(7)	14.3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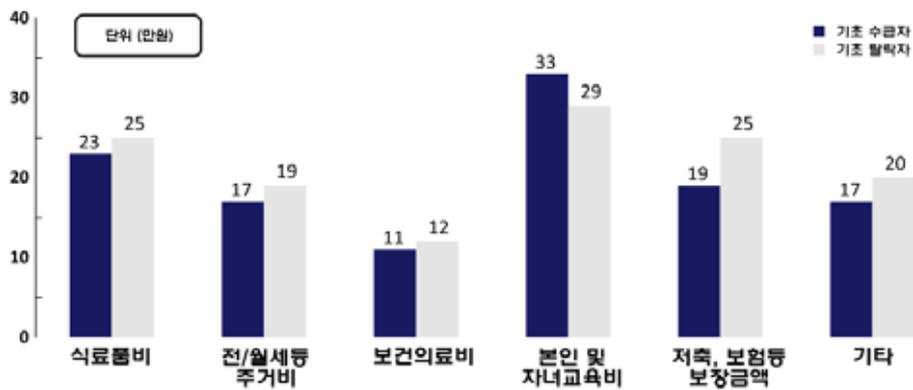
【표 24_3】 지원기간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아동이 학업마칠 때까지 지원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시 까지 지원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기타	현행 만족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405)	0.7	1.5	0.7	4.9	0.5	8.4	83.2	
구분	기초 수급자	(405)	0.7	1.5	0.7	4.9	0.5	8.4	83.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3)	1.5	3.0	1.5	10.5	0.8	8.3	74.4
	6대 광역시	(73)	1.4	2.7		2.7	1.4	16.4	75.3
	중소도시	(109)				0.9		4.6	94.5
	기타 농어촌	(90)			1.1	3.3		6.7	88.9
성별	남성	(138)	0.7	0.7	2.2	5.8	1.4	9.4	79.7
	여성	(267)	0.7	1.9		4.5		7.9	85.0
연령별	10대	(9)			11.1				88.9
	20대	(22)		4.5		4.5			90.9
	30대	(55)	1.8	3.6		3.6		5.5	85.5
	40대	(108)	1.9	2.8		6.5		12.0	76.9
	50대	(75)			2.7	5.3	2.7	5.3	84.0
	60대	(53)				9.4		13.2	77.4
	70대	(57)						8.8	91.2
	80대 이상	(24)				4.2		8.3	87.5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8)		5.6	5.6	5.6			83.3
	일시고용	(12)				8.3		8.3	83.3
	일용직	(14)		7.1			7.1	7.1	78.6
	자영업	(13)				23.1			76.9
	자활근로	(91)		3.3		7.7		8.8	80.2
	실업	(17)				11.8		11.8	76.5
	미경제활동	(181)	0.6	0.6	0.6	2.8	0.6	8.8	86.2
	기타	(17)	5.9		5.9			11.8	76.5
	모름/무응답	(42)	2.4			2.4		9.5	85.7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27)	0.8	1.6	0.8	6.3	0.8	9.4	80.3
	장애가 없다	(274)	0.7	1.5	0.7	4.4	0.4	8.0	84.3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86)			1.2	9.3	1.2	3.5	84.9
	이혼 또는 별거	(121)	2.5	4.1	0.8	3.3	0.8	9.9	78.5
	사별 후 독신	(114)				3.5		10.5	86.0
	미혼(19세 이상)	(67)		1.5		6.0		6.0	86.6
	그 외 기타	(13)			7.7			23.1	69.2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66)				1.5		12.1	86.4
	중졸이하	(155)	0.6	0.6	0.6	5.2		7.7	85.2
	고졸이하	(135)	1.5	3.0	1.5	5.2	0.7	7.4	80.7
	대졸이하	(42)		2.4		7.1	2.4	9.5	78.6
	대학원이상	(2)				50.0			50.0
	모름/무응답	(5)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68)	0.6		0.6	0.6		6.5	91.7
	아파트	(113)	1.8	0.9	0.9	11.5	0.9	10.6	73.5
	다가구(연립)주택	(82)		6.1	1.2	2.4	1.2	11.0	78.0
	무허가주택	(10)				10.0		10.0	8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7)				11.1		3.7	85.2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형태	자가	(89)				1.1		3.4	95.5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38)		2.6				13.2	84.2
	월세	(114)	0.9	2.6	0.9	1.8	0.9	8.8	84.2
	장기(영구)임대	(95)	2.1	1.1	1.1	12.6	1.1	11.6	70.5
	기타	(61)		1.6	1.6	8.2		8.2	80.3
	모름/무응답	(7)							100.0

25. 월평균 생활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 월평균 생활비 규모는 ‘본인 및 자녀교육비’ 32만 9천원 > ‘식료품비’ 23만 4천원 > ‘저축/보험 등 보장금액’ 18만 9천원 > ‘전/월세 등 주거비’ 16만 7천원 > ‘보건의료비’ 11만 2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 비용은 16만 6천원으로 응답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탈락자(N=123명)의 경우는 ‘본인 및 자녀교육비’ 28만 8천원 > ‘저축/보험 등 보장금액’ 24만 9천원 > ‘식료품비’ 24만 8천원 > ‘전/월세 등 주거비’ 19만원 > ‘보건의료비’ 12만 1천원 등의 순으로 높았고, ‘기타’ 비용은 20만 3천원이었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25_1】 월평균생활비-식료품비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20.6	33.1	23.1	7.2	5.3	2.5	8.1	23.77	
구분	기초 수급자	(405)	21.0	34.3	22.5	6.9	4.7	2.2	8.4	23.43
	기초 탈락자	(123)	19.5	29.3	25.2	8.1	7.3	3.3	7.3	24.8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4.5	39.0	20.8	10.1	5.0	3.8	6.9	25.98
	6대 광역시	(79)	35.4	24.1	27.8	5.1	3.8		3.8	19.83
	중소도시	(170)	15.9	32.9	24.1	7.1	5.9	2.9	11.2	24.79
	기타 농어촌	(120)	25.8	31.7	21.7	5.0	5.8	1.7	8.3	22.12
성별	남성	(177)	16.9	35.0	22.0	7.3	4.0	5.1	9.6	25.67
	여성	(351)	22.5	32.2	23.6	7.1	6.0	1.1	7.4	22.83
연령별	10대	(11)	27.3	18.2	27.3	9.1	9.1		9.1	24.00
	20대	(37)	10.8	27.0	21.6	13.5	5.4	5.4	16.2	32.16
	30대	(68)	7.4	27.9	35.3	7.4	7.4	5.9	8.8	29.18
	40대	(136)	14.0	29.4	26.5	9.6	8.1	2.9	9.6	26.68
	50대	(103)	16.5	31.1	26.2	10.7	4.9	2.9	7.8	25.13
	60대	(64)	26.6	45.3	17.2	1.6	4.7		4.7	20.02
	70대	(78)	34.6	43.6	12.8	2.6			6.4	15.96
	80대 이상	(29)	55.2	31.0	6.9		3.4		3.4	13.79
	모름/무응답	(2)	50.0		50.0					2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5.7	34.3	34.3	8.6	8.6	5.7	2.9
임시고용		(26)	30.8	23.1	7.7	11.5	15.4	3.8	7.7	26.88
일용직		(27)	29.6	11.1	37.0	7.4	14.8			26.27
자영업		(14)	14.3	42.9	28.6	7.1			7.1	20.15
자활근로		(104)	16.3	28.8	26.0	13.5	4.8		10.6	24.35
실업		(21)	9.5	28.6	28.6		9.5	9.5	14.3	29.06
비경제활동		(213)	23.5	40.8	17.4	4.2	3.3	2.3	8.5	20.93
기타		(35)	20.0	28.6	22.9	11.4	5.7	2.9	8.6	26.29
모름/무응답	(53)	24.5	28.3	30.2	3.8	1.9	3.8	7.5	23.88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20.7	35.6	20.0	5.9	3.0	3.0	11.9	22.60
	장애가 없다	(296)	22.0	32.4	24.7	7.1	5.7	1.7	6.4	23.63
	모름/무응답	(4)		50.0					50.0	17.50
혼인여부	기혼	(123)	10.6	29.3	27.6	7.3	11.4	6.5	7.3	30.35
	이혼 또는 별거	(146)	14.4	32.9	26.7	11.6	3.4	0.7	10.3	24.30
	사별 후 독신	(151)	36.4	33.8	16.6	4.0	3.3	2.0	4.0	18.94
	미혼 (19세 이상)	(83)	18.1	39.8	22.9	6.0	3.6	1.2	8.4	22.80
	그 외 기타	(17)	29.4	23.5	23.5	5.9	5.9		11.8	21.07
	모름/무응답	(8)		37.5	12.5				50.0	21.00
학력	무학	(80)	38.8	43.8	8.8	3.8		1.3	3.8	16.57
	중졸이하	(200)	24.0	38.0	22.0	4.0	4.0	0.5	7.5	20.67
	고졸이하	(175)	14.9	24.6	28.0	13.7	7.4	5.1	6.3	29.18
	대졸이하	(60)	6.7	26.7	33.3	5.0	10.0	3.3	15.0	28.57
	대학원이상	(2)		100.0						17.50
	모름/무응답	(11)		27.3	18.2		9.1		45.5	25.67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23.5	34.5	22.6	6.6	3.5	2.2	7.1	22.24
	아파트	(138)	15.2	33.3	26.1	8.0	7.2	2.9	7.2	25.55
	다가구(연립)주택	(107)	23.4	31.8	21.5	8.4	3.7	3.7	7.5	24.39
	무허가주택	(13)	38.5	30.8	15.4		7.7		7.7	18.17
	구호시설	(2)			50.0		50.0			40.00
	기타	(33)	15.2	27.3	24.2	9.1	12.1		12.1	26.71
모름/무응답	(9)		44.4	11.1				44.4	19.80	
주거형태	자가	(134)	21.6	29.1	24.6	6.7	5.2	4.5	8.2	24.65
	전세(1억 이상)	(1)			100.0					30.00
	전세(1억 미만)	(55)	18.2	36.4	18.2	7.3	3.6	3.6	12.7	23.43
	월세	(140)	24.3	35.0	25.0	5.0	5.7	0.7	4.3	22.50
	장기(영구)임대	(108)	15.7	35.2	26.9	8.3	5.6	3.7	4.6	24.97
	기타	(76)	23.7	32.9	14.5	11.8	5.3		11.8	22.92
모름/무응답	(14)	7.1	28.6	21.4		7.1		35.7	23.78	

【표 25_2】 월평균생활비-전/월세 등 주거비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 체 □	(528)	27.8	20.5	10.4	2.8	0.8	0.2	37.5	17.19
구분	기초 수급자	(405)	26.4	22.5	9.1	2.7	0.5	0.2	38.5	16.70
	기초 탈락자	(123)	32.5	13.8	14.6	3.3	1.6		34.1	19.0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1.4	37.1	13.8	6.9	1.3	0.6	18.9	20.42
	6대 광역시	(79)	43.0	17.7	15.2	2.5	1.3		20.3	15.86
	중소도시	(170)	31.8	17.1	11.8	1.2	0.6		37.6	15.53
	기타 농어촌	(120)	20.8	5.0	0.8				73.3	10.92
성별	남성	(177)	29.9	17.5	6.8	2.3			43.5	15.20
	여성	(351)	26.8	21.9	12.3	3.1	1.1	0.3	34.5	18.00
연령별	10대	(11)	18.2	9.1			9.1		63.6	21.25
	20대	(37)	16.2	21.6	8.1	8.1	2.7		43.2	23.41
	30대	(68)	27.9	20.6	17.6	2.9		1.5	29.4	19.00
	40대	(136)	25.7	25.7	9.6	3.7	1.5		33.8	17.80
	50대	(103)	31.1	21.4	16.5	4.9			26.2	18.36
	60대	(64)	35.9	15.6	6.3				42.2	12.67
	70대	(78)	32.1	17.9	3.8				46.2	11.91
	80대 이상	(29)	17.2	13.8	6.9				62.1	15.80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37.1	17.1	22.9	2.9			20.0	17.84
	일시고용	(26)	7.7	34.6	15.4	7.7			34.6	22.93
	일용직	(27)	48.1	11.1	3.7	3.7			33.3	11.38
	자영업	(14)	42.9	14.3					42.9	9.57
	자활근로	(104)	23.1	32.7	18.3	3.8		1.0	21.2	19.28
	실업	(21)	19.0	23.8	4.8	4.8			47.6	16.64
	비경제활동	(213)	25.8	17.8	3.3	1.4			51.6	14.02
	기타	(35)	40.0	11.4	11.4	5.7	8.6		22.9	22.70
		모름/무응답	(53)	30.2	13.2	20.8	1.9	1.9		32.1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1.5	20.7	8.1	2.2			47.4	16.77
	장애가 없다	(296)	28.7	23.0	10.1	3.7	1.0	0.3	33.1	17.16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14.00
혼인 여부	기혼	(123)	24.4	20.3	15.4	5.7	1.6		32.5	20.63
	이혼 또는 별거	(146)	32.2	23.3	11.6	2.7	0.7	0.7	28.8	16.84
	사별 후 독신	(151)	30.5	18.5	8.6	0.7			41.7	14.41
	미혼 (19세 이상)	(83)	22.9	21.7	6.0	2.4	1.2		45.8	17.36
	그 외 기타	(17)	23.5	11.8	5.9	5.9			52.9	17.43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12.00
학력	무학	(80)	26.3	16.3	1.3				56.3	11.29
	중졸이하	(200)	32.0	20.5	10.0	1.5	0.5		35.5	15.66
	고졸이하	(175)	28.0	22.3	14.9	5.7	1.1	0.6	27.4	19.66
	대졸이하	(60)	20.0	20.0	10.0	3.3	1.7		45.0	18.86
	대학원이상	(2)		50.0	50.0					25.00
	모름/무응답	(11)	9.1	18.2	9.1				63.6	18.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8.8	12.4	6.6	1.3			50.9	14.85
	아파트	(138)	24.6	35.5	15.9	3.6	0.7		19.6	17.96
	다가구(연립)주택	(107)	28.0	17.8	11.2	5.6	2.8	0.9	33.6	20.42
	무허가주택	(13)	69.2						30.8	6.63
	구호시설	(2)	50.0	50.0						12.50
	기타	(33)	21.2	30.3	18.2	3.0			27.3	18.55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12.00
주거 형태	자가	(134)	19.4	4.5	5.2	0.7	0.7		69.4	16.16
	전세(1억 이상)	(1)		100.0						20.00
	전세(1억 미만)	(55)	40.0	14.5	3.6	1.8			40.0	15.16
	월세	(140)	32.9	32.9	18.6	5.7	2.1	0.7	7.1	18.56
	장기(영구)임대	(108)	25.9	37.0	13.0	3.7			20.4	16.72
	기타	(76)	30.3	7.9	6.6				55.3	14.15
	모름/무응답	(14)	14.3	7.1	7.1	7.1			64.3	18.80

【표 25_3】 월평균 생활비-보건의료비(약값, 치료비 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 체	(528)	62.5	11.2	2.8	0.6	1.3	1.1	20.5	11.42
구분	기초 수급자	(405)	63.0	10.4	2.2	0.5	1.7	1.0	21.2	11.21
	기초 탈락자	(123)	61.0	13.8	4.9	0.8		1.6	17.9	12.0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62.9	12.6	3.1	1.3	2.5	3.1	14.5	13.95
	6대 광역시	(79)	73.4	11.4	1.3		1.3		12.7	8.71
	중소도시	(170)	61.2	8.2	2.9		1.2	0.6	25.9	11.27
	기타 농어촌	(120)	56.7	13.3	3.3	0.8			25.8	10.07
성별	남성	(177)	57.6	12.4	3.4	0.6		2.8	23.2	14.59
	여성	(351)	65.0	10.5	2.6	0.6	2.0	0.3	19.1	9.96
연령별	10대	(11)	63.6				9.1		27.3	13.14
	20대	(37)	62.2	8.1	2.7		2.7		24.3	10.76
	30대	(68)	73.5	7.4	1.5				17.6	7.20
	40대	(136)	60.3	10.3	4.4	1.5	1.5	0.7	21.3	11.73
	50대	(103)	60.2	13.6	3.9		1.0	2.9	18.4	14.44
	60대	(64)	59.4	15.6	1.6		1.6	1.6	20.3	11.27
	70대	(78)	60.3	10.3	2.6	1.3	1.3	1.3	23.1	11.58
	80대 이상	(29)	69.0	13.8					17.2	8.88
	모름/무응답	(2)	50.0	50.0						10.5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54.3	17.1	5.7				22.9
일시고용		(26)	65.4	11.5	3.8		3.8		15.4	10.45
일용직		(27)	74.1	7.4		3.7			14.8	9.00
자영업		(14)	57.1	14.3					28.6	10.11
자활근로		(104)	69.2	8.7	1.0				21.2	6.65
실업		(21)	61.9	14.3		4.8			19.0	11.50
비경제활동		(213)	57.7	13.6	2.8	0.5	0.9	2.3	22.1	14.19
기타		(35)	74.3	2.9	2.9		2.9	2.9	14.3	12.62
모름/무응답		(53)	60.4	7.5	7.5		5.7		18.9	12.4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54.8	9.6	2.2	0.7	0.7	3.7	28.1
	장애가 없다	(296)	66.9	10.8	3.0	0.3	2.0		16.9	9.59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10.67
혼인 여부	기혼	(123)	58.5	16.3	6.5	1.6	0.8	1.6	14.6	13.45
	이혼 또는 별거	(146)	63.0	6.2	1.4	0.7	1.4	1.4	26.0	9.70
	사별 후 독신	(151)	62.9	15.2	1.3		1.3	1.3	17.9	12.48
	미혼 (19세 이상)	(83)	65.1	8.4	1.2		2.4		22.9	9.71
	그 외 기타	(17)	82.4		5.9				11.8	7.40
	모름/무응답	(8)	37.5		12.5				50.0	11.25
학력	무학	(80)	67.5	12.5					20.0	8.33
	중졸이하	(200)	59.5	13.0	2.0	1.0	1.5	1.5	21.5	11.64
	고졸이하	(175)	67.4	10.3	5.1	0.6	0.6	1.1	14.9	11.65
	대졸이하	(60)	51.7	8.3	1.7		5.0	1.7	31.7	15.84
	대학원이상	(2)	100.0							2.00
	모름/무응답	(11)	54.5		9.1				36.4	9.1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65.0	11.1	2.2		0.9	0.9	19.9	10.94
	아파트	(138)	66.7	7.2	2.9	1.4	2.9	0.7	18.1	10.58
	다가구(연립)주택	(107)	60.7	17.8	2.8		0.9	1.9	15.9	12.73
	무허가주택	(13)	38.5	15.4					46.2	10.00
	구호시설	(2)	100.0							7.50
	기타	(33)	48.5	9.1	6.1	3.0		3.0	30.3	15.79
	모름/무응답	(9)	33.3		11.1				55.6	11.25
주거 형태	자가	(134)	53.0	16.4	3.7		1.5		25.4	11.30
	전세(1억 이상)	(1)	100.0							5.00
	전세(1억 미만)	(55)	61.8	10.9				3.6	23.6	17.83
	월세	(140)	74.3	6.4	2.1		1.4	0.7	15.0	8.50
	장기(영구)임대	(108)	66.7	9.3	5.6	0.9	1.9	1.9	13.9	12.57
	기타	(76)	53.9	14.5		2.6	1.3	1.3	26.3	12.04
	모름/무응답	(14)	50.0	7.1	7.1				35.7	9.00

【표 25_4】 월평균생활비-본인 및 자녀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22.9	9.7	5.9	2.5	2.1	4.0	53.0	32.07
구분	기초 수급자	(405)	20.2	8.9	6.7	3.0	1.7	4.0	55.6	32.90
	기초 탈락자	(123)	31.7	12.2	3.3	0.8	3.3	4.1	44.7	28.8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7.0	11.3	5.7	2.5	2.5	4.4	46.5	27.27
	6대 광역시	(79)	25.3	11.4	7.6	8.9	5.1	2.5	39.2	33.21
	중소도시	(170)	20.0	10.6	6.5	1.2	1.2	6.5	54.1	36.33
	기타 농어촌	(120)	20.0	5.0	4.2		0.8	0.8	69.2	31.00
성별	남성	(177)	24.3	6.2	4.5	1.7	1.7	3.4	58.2	33.67
	여성	(351)	22.2	11.4	6.6	2.8	2.3	4.3	50.4	31.51
연령별	10대	(11)	27.3	9.1	18.2			27.3		18.2
	20대	(37)	29.7	5.4	5.4	2.7		5.4	51.4	32.87
	30대	(68)	22.1	26.5	11.8		1.5	2.9	35.3	20.54
	40대	(136)	22.8	12.5	5.1	6.6	5.1	8.1	39.7	34.25
	50대	(103)	27.2	6.8	6.8	1.0	2.9	1.9	53.4	35.26
	60대	(64)	23.4	4.7	4.7	3.1		1.6	62.5	23.54
	70대	(78)	16.7	1.3	2.6				79.5	14.22
	80대 이상	(29)	17.2						82.8	7.50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4.3	28.6	14.3		5.7	2.9	34.3	24.32
	임시고용	(26)	15.4	7.7	3.8	3.8	3.8	3.8	61.5	33.75
	일용직	(27)	37.0	11.1	3.7		7.4		40.7	22.10
	자영업	(14)	7.1	7.1	7.1			14.3	64.3	103.00
	자활근로	(104)	22.1	14.4	9.6	8.7	1.0	4.8	39.4	24.90
	실업	(21)	28.6	14.3	9.5	4.8	4.8	4.8	33.3	26.54
	비경제활동	(213)	22.5	3.8	1.9	0.5		3.3	68.1	41.46
	기타	(35)	54.3	11.4	2.9	2.9	8.6		20.0	24.36
	모름/무응답	(53)	9.4	9.4	11.3		1.9	7.5	60.4	35.95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7.8	4.4	1.5	1.5	0.7	3.0	71.1	25.37
	장애가 없다	(296)	22.0	11.5	8.8	3.7	2.4	4.7	47.0	35.13
	모름/무응답	(4)	25.0						75.0	2.00
혼인 여부	기혼	(123)	22.0	12.2	4.9	1.6	4.9	9.8	44.7	44.70
	이혼 또는 별거	(146)	28.1	15.1	8.2	6.2	2.1	2.1	38.4	22.32
	사별 후 독신	(151)	18.5	7.3	6.0	0.7	1.3	0.7	65.6	20.78
	미혼 (19세 이상)	(83)	18.1	2.4	2.4	1.2		6.0	69.9	65.00
	그 외 기타	(17)	52.9	5.9	5.9				35.3	11.88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29.00
학력	무학	(80)	16.3	5.0	1.3				77.5	12.08
	중졸이하	(200)	26.0	6.0	3.5	1.5	1.5	1.0	60.5	28.87
	고졸이하	(175)	24.0	14.9	9.1	4.6	4.6	5.1	37.7	28.92
	대졸이하	(60)	18.3	15.0	10.0	3.3		13.3	40.0	51.74
	대학원이상	(2)	50.0					50.0		60.00
	모름/무응답	(11)	18.2		9.1			9.1	63.6	39.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4.8	8.4	3.1	1.8	1.8	3.5	56.6	29.42
	아파트	(138)	19.6	12.3	13.8	5.1	1.4	4.3	43.5	26.20
	다가구(연립)주택	(107)	19.6	12.1	2.8	0.9	4.7	4.7	55.1	37.38
	무허가주택	(13)	15.4						84.6	10.00
	구호시설	(2)	50.0					50.0		60.00
	기타	(33)	39.4	6.1	3.0	3.0		3.0	45.5	90.00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29.00	
주거 형태	자가	(134)	20.1	10.4	3.7		1.5	3.0	61.2	22.54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27.3	10.9	9.1		1.8	9.1	41.8	29.38
	월세	(140)	31.4	11.4	5.0	2.9	4.3	2.1	42.9	34.05
	장기(영구)임대	(108)	20.4	10.2	6.5	5.6	1.9	6.5	49.1	30.40
	기타	(76)	14.5	5.3	6.6	3.9		2.6	67.1	56.89
모름/무응답	(14)	14.3		14.3				71.4	29.50	

【표 25_5】 월평균생활비-저축, 보험 등 보장금액(예금, 적금 포함)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29.7	9.1	6.3	1.5	0.4	1.3	51.7	20.42
구분	기초 수급자	(405)	26.9	9.4	5.9	1.5	0.2	0.7	55.3	18.93
	기초 탈락자	(123)	39.0	8.1	7.3	1.6	0.8	3.3	39.8	24.8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38.4	9.4	10.1	1.3		1.3	39.6	16.62
	6대 광역시	(79)	38.0	8.9	3.8	2.5		1.3	45.6	17.03
	중소도시	(170)	18.2	11.2	5.3	1.2	0.6	1.8	61.8	23.30
	기타 농어촌	(120)	29.2	5.8	4.2	1.7	0.8	0.8	57.5	25.14
성별	남성	(177)	28.8	5.1	3.4	0.6		1.7	60.5	24.06
	여성	(351)	30.2	11.1	7.7	2.0	0.6	1.1	47.3	19.23
연령별	10대	(11)	27.3		9.1			18.2	45.5	67.50
	20대	(37)	21.6	10.8	16.2	2.7	2.7	2.7	43.2	27.43
	30대	(68)	36.8	11.8	10.3			1.5	39.7	16.11
	40대	(136)	29.4	11.8	11.0	4.4	0.7	1.5	41.2	24.58
	50대	(103)	39.8	11.7	2.9	1.0		1.0	43.7	13.93
	60대	(64)	25.0	7.8	1.6				65.6	14.25
	70대	(78)	21.8	1.3					76.9	9.55
	80대 이상	(29)	24.1	3.4					72.4	9.20
	모름/무응답	(2)		50.0					50.0	1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48.6	11.4	8.6	2.9		2.9	25.7
임시고용		(26)	30.8	7.7	7.7		3.8	3.8	46.2	21.38
일용직		(27)	37.0		3.7	3.7			55.6	14.86
자영업		(14)	14.3	14.3		7.1			64.3	17.00
자활근로		(104)	33.7	16.3	16.3	1.9	1.0		30.8	17.03
실업		(21)	23.8	9.5	4.8	4.8		4.8	52.4	63.78
비경제활동		(213)	25.4	6.1	2.3	0.5		0.5	65.3	14.10
기타		(35)	60.0		5.7			2.9	31.4	19.48
모름/무응답		(53)	9.4	15.1	3.8	1.9		3.8	66.0	39.73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5.2	4.4	3.7	0.7		1.5	64.4	25.08
	장애가 없다	(296)	29.7	11.1	7.1	1.7	0.3	0.7	49.3	17.07
	모름/무응답	(4)		25.0					75.0	13.00
혼인 여부	기혼	(123)	30.9	12.2	7.3	1.6	0.8	2.4	44.7	20.15
	이혼 또는 별거	(146)	32.9	11.6	9.6	3.4		0.7	41.8	17.25
	사별 후 독신	(151)	29.8	6.6	2.6				60.9	12.05
	미혼 (19세 이상)	(83)	21.7	2.4	7.2	1.2	1.2	3.6	62.7	47.41
	그 외 기타	(17)	41.2	11.8					47.1	11.83
	모름/무응답	(8)	12.5	25.0					62.5	12.00
	학력	무학	(80)	27.5	5.0	1.3				66.3
중졸이하		(200)	28.5	7.0	2.5	1.0	0.5	0.5	60.0	15.86
고졸이하		(175)	35.4	12.6	9.7	2.3	0.6	1.7	37.7	22.27
대졸이하		(60)	23.3	8.3	13.3	3.3		5.0	46.7	30.11
대학원이상		(2)		50.0					50.0	12.00
모름/무응답		(11)	18.2	18.2	18.2				45.5	17.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9.2	7.5	4.4	1.3	0.4	1.3	55.8	24.10
	아파트	(138)	22.5	13.0	11.6	2.9	0.7	0.7	48.6	20.22
	다가구(연립)주택	(107)	36.4	8.4	5.6			2.8	46.7	17.19
	무허가주택	(13)	7.7			7.7			84.6	40.00
	구호시설	(2)	50.0						50.0	10.00
	기타	(33)	51.5	6.1	3.0				39.4	11.50
모름/무응답	(9)	22.2	22.2					55.6	11.50	
주거 형태	자가	(134)	29.1	6.7	4.5	1.5	0.7	2.2	55.2	22.38
	전세(1억 이상)	(1)		100.0						20.00
	전세(1억 미만)	(55)	30.9	12.7	9.1	1.8		1.8	43.6	20.74
	월세	(140)	35.7	9.3	5.0	2.1		0.7	47.1	14.76
	장기(영구)임대	(108)	25.9	9.3	10.2	1.9		0.9	51.9	18.62
	기타	(76)	28.9	7.9	3.9		1.3	1.3	56.6	31.50
모름/무응답	(14)	7.1	14.3	7.1				71.4	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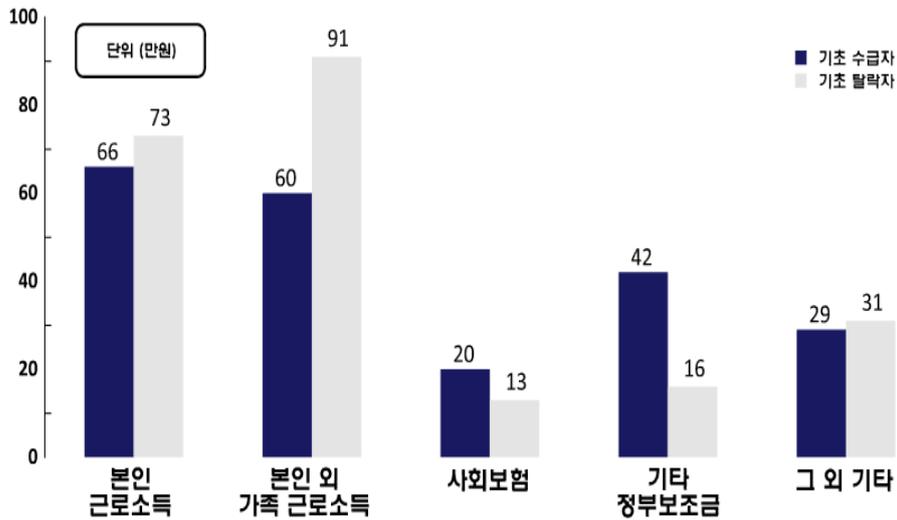
【표 25_6】 월평균생활비-기타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 체	(528)	28.6	11.4	3.8	2.3	0.6	1.7	51.7	17.44
구분	기초 수급자	(405)	28.1	11.6	3.7	2.0	0.7	1.2	52.6	16.63
	기초 탈락자	(123)	30.1	10.6	4.1	3.3		3.3	48.8	20.2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37.7	10.7	2.5	2.5	0.6	1.3	44.7	16.56
	6대 광역시	(79)	34.2	8.9	2.5	5.1		1.3	48.1	17.00
	중소도시	(170)	17.1	10.6	4.1	1.8	1.2	2.9	62.4	21.46
	기타 농어촌	(120)	29.2	15.0	5.8	0.8		0.8	48.3	14.62
성별	남성	(177)	30.5	14.7	3.4	0.6	0.6	1.7	48.6	16.55
	여성	(351)	27.6	9.7	4.0	3.1	0.6	1.7	53.3	17.92
연령별	10대	(11)	18.2	9.1	18.2				54.5	20.00
	20대	(37)	21.6	10.8	2.7	5.4		2.7	56.8	21.17
	30대	(68)	26.5	13.2	5.9	2.9	1.5	2.9	47.1	22.97
	40대	(136)	21.3	13.2	4.4	1.5	1.5	1.5	56.6	20.23
	50대	(103)	23.3	11.7	1.9	3.9		1.9	57.3	18.34
	60대	(64)	31.3	10.9	4.7	1.6		3.1	48.4	18.88
	70대	(78)	41.0	9.0	1.3	1.3			47.4	10.86
	80대 이상	(29)	62.1	3.4					34.5	6.53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1.4	14.3					74.3	16.25
	임시고용	(26)	15.4	11.5	11.5			7.7	53.8	25.75
	일용직	(27)	18.5	22.2	7.4			7.4	44.4	24.00
	자영업	(14)	21.4						78.6	8.67
	자활근로	(104)	29.8	14.4	3.8	3.8	1.0	1.9	45.2	18.65
	실업	(21)	14.3	14.3		4.8			66.7	15.86
	비경제활동	(213)	35.7	9.4	3.8	1.4	0.5	0.9	48.4	14.52
	기타	(35)	51.4	5.7	5.7			2.9	34.3	18.18
모름/무응답	(53)	13.2	11.3	1.9	7.5	1.9		64.2	21.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3.0	11.9	3.7	1.5		2.2	57.8	19.17
	장애가 없다	(296)	31.8	11.1	4.1	2.4	1.0	0.7	49.0	15.70
	모름/무응답	(4)			25.0				75.0	30.00
혼인 여부	기혼	(123)	24.4	8.1	5.7	4.9	2.4	0.8	53.7	21.91
	이혼 또는 별거	(146)	26.0	12.3	4.8	1.4		2.7	52.7	20.48
	사별 후 독신	(151)	38.4	9.3	2.0	2.0		2.0	46.4	13.75
	미혼 (19세 이상)	(83)	24.1	13.3	2.4	1.2		1.2	57.8	14.65
	그 외 기타	(17)	23.5	23.5	5.9				47.1	15.71
	모름/무응답	(8)	12.5	37.5					50.0	17.67
학력	무학	(80)	38.8	10.0	1.3			1.3	48.8	10.63
	중졸이하	(200)	34.0	7.5	5.5	2.0		1.5	49.5	15.65
	고졸이하	(175)	23.4	13.7	3.4	2.9	1.1	1.7	53.7	20.52
	대졸이하	(60)	15.0	15.0	3.3	3.3	1.7	3.3	58.3	27.25
	대학원이상	(2)	50.0						50.0	10.00
	모름/무응답	(11)	9.1	36.4		9.1			45.5	21.6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31.9	12.8	4.9	0.4	0.9	0.9	48.2	15.01
	아파트	(138)	18.8	8.7	1.4	4.3	0.7	2.9	63.0	23.21
	다가구(연립)주택	(107)	39.3	11.2	3.7	2.8		0.9	42.1	16.24
	무허가주택	(13)	7.7	15.4					76.9	13.33
	구호시설	(2)						50.0	50.0	60.00
	기타	(33)	27.3	6.1	9.1	6.1		3.0	48.5	18.94
모름/무응답	(9)	11.1	33.3					55.6	17.67	
주거 형태	자가	(134)	26.9	14.2	3.7	0.7		1.5	53.0	15.72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45.5	7.3	1.8		1.8		43.6	11.95
	월세	(140)	32.9	13.6	3.6	2.1		0.7	47.1	14.24
	장기(영구)임대	(108)	17.6	6.5	1.9	4.6	1.9	2.8	64.8	26.07
	기타	(76)	30.3	10.5	7.9	2.6		2.6	46.1	19.66
모름/무응답	(14)	14.3	21.4	7.1	7.1		7.1	42.9	27.14	

26. 월평균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405명)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항목별로 살펴 본 결과, ‘본인 근로소득’ 65만 8천원 > ‘본인 외 가족 근로소득’ 60만원 > ‘기타 정부보조금’ 42만 4천원 > ‘사회보험’ 2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고, ‘기타’ 소득은 28만 8천원으로 응답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N=123명)의 경우 ‘본인 외 가족 근로소득’ 90만 6천원 > ‘본인 근로소득’ 73만 3천원 > ‘기타 정부보조금’ 16만 4천원 > ‘사회보험’ 12만 8천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기타’ 소득은 31만 1천원으로 응답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26_1】 본인의 근로소득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6.8	4.9	11.6	9.7	13.1	1.9	0.6	51.5	68.04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1	4.9	12.1	9.1	10.6	1.2	0.2	53.6	65.81
	기초 탈락자	(123)	2.4	4.9	9.8	11.4	21.1	4.1	1.6	44.7	73.2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2.6	4.4	13.8	10.7	10.1	2.5	0.6	45.3	77.35
	6대 광역시	(79)	10.1	3.8	15.2	6.3	16.5			48.1	61.15
	중소도시	(170)	1.2	2.4	10.0	12.9	18.2	2.4	1.2	51.8	72.07
	기타 농어촌	(120)	5.0	10.0	8.3	5.8	7.5	1.7		61.7	51.09
성별	남성	(177)	5.6	6.2	7.9	7.3	5.1	4.0	1.1	62.7	89.34
	여성	(351)	7.4	4.3	13.4	10.8	17.1	0.9	0.3	45.9	61.10
연령별	10대	(11)				9.1	9.1	9.1		72.7	106.67
	20대	(37)	2.7		10.8	21.6	18.9	2.7	5.4	37.8	137.27
	30대	(68)	7.4	1.5	14.7	13.2	22.1	1.5		39.7	66.86
	40대	(136)	5.1	5.9	13.2	14.0	26.5	2.2		33.1	66.98
	50대	(103)	4.9	6.8	23.3	10.7	7.8	3.9	1.0	41.7	58.39
	60대	(64)	12.5	6.3	6.3	4.7	1.6			68.8	41.62
	70대	(78)	7.7	7.7	1.3					83.3	17.50
	80대 이상	(29)	13.8							86.2	3.50
	모름/무응답	(2)					50.0			50.0	8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2.9		11.4	28.6	40.0	5.7	5.7	5.7	117.25
	임시고용	(26)	7.7		3.8	11.5	38.5	11.5	3.8	23.1	91.21
	일용직	(27)	11.1	3.7	29.6	18.5	22.2			14.8	56.23
	자영업	(14)	14.3	21.4	14.3		7.1	14.3		28.6	49.30
	자활근로	(104)	1.0	10.6	32.7	23.1	25.0	1.9		5.8	57.85
	실업	(21)	4.8	9.5	9.5	4.8	4.8			66.7	50.00
	비경제활동	(213)	8.9	1.9	0.5	0.5	0.5			87.8	32.44
	기타	(35)	14.3	8.6	11.4		5.7	2.9		57.1	55.10
	모름/무응답	(53)	3.8	3.8	9.4	13.2	15.1			54.7	64.8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7.4	5.2	7.4	5.2	4.4			70.4	50.52
	장애가 없다	(296)	8.1	5.1	14.2	10.5	14.5	2.0	0.7	44.9	70.19
	모름/무응답	(4)				25.0				75.0	70.00
혼인 여부	기혼	(123)	5.7	8.1	9.8	12.2	12.2	4.1	1.6	46.3	85.91
	이혼 또는 별거	(146)	6.8	2.7	16.4	13.0	22.6	2.1	0.7	35.6	67.61
	사별 후 독신	(151)	8.6	4.6	11.3	2.0	6.6			66.9	45.87
	미혼 (19세 이상)	(83)	3.6	3.6	9.6	14.5	12.0	1.2		55.4	66.98
	그 외 기타	(17)	17.6	11.8		11.8				58.8	45.00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91.00
학력	무학	(80)	6.3	7.5	3.8	1.3	1.3			80.0	30.29
	중졸이하	(200)	10.0	6.0	10.5	8.0	3.0	1.5		61.0	50.56
	고졸이하	(175)	3.4	4.0	18.9	14.3	24.6	2.9	1.1	30.9	78.90
	대졸이하	(60)	6.7	1.7	6.7	13.3	25.0	1.7	1.7	43.3	75.94
	대학원이상	(2)				50.0	50.0				72.50
	모름/무응답	(11)	9.1				27.3	9.1		54.5	95.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5.8	7.1	11.5	10.2	9.7	1.3	0.4	54.0	57.34
	아파트	(138)	5.8	2.2	13.8	9.4	18.1	2.2	0.7	47.8	68.76
	다가구(연립)주택	(107)	9.3	3.7	11.2	7.5	15.9	1.9	0.9	49.5	91.42
	무허가주택	(13)		7.7			15.4			76.9	57.0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15.2	6.1	12.1	21.2	3.0	3.0		39.4	60.93
	모름/무응답	(9)					22.2	11.1		66.7	94.00
주거 형태	자가	(134)	2.2	8.2	8.2	6.7	11.2	0.7	0.7	61.9	61.57
	전세(1억 이상)	(1)					100.0				80.00
	전세(1억 미만)	(55)	14.5	7.3	5.5	10.9	14.5	3.6	1.8	41.8	75.42
	월세	(140)	10.7	5.0	18.6	8.6	17.9	2.9	0.7	35.7	76.13
	장기(영구)임대	(108)	4.6	1.9	13.9	13.0	7.4	0.9		58.3	58.40
	기타	(76)	6.6	2.6	7.9	11.8	13.2	1.3		56.6	62.34
	모름/무응답	(14)				7.1	14.3	7.1		71.4	85.50

【표 26_2】 본인 외 가족의 근로소득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14.4	2.7	3.2	1.9	3.0	1.9	0.8	0.2	72.0	71.23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1.9	2.2	3.7	2.2	2.0	0.7	0.5	76.8	59.98	
	기초 탈락자	(123)	22.8	4.1	1.6	0.8	6.5	5.7	1.6	0.8	56.1	90.6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1.4	2.5	3.8	3.1	3.1	0.6	1.3		64.2	59.85
	6대 광역시	(79)	30.4		2.5	1.3	5.1	2.5	1.3		57.0	100.00
	중소도시	(170)	5.3	1.8	1.8	1.2	2.4	2.4	0.6	0.6	84.1	91.05
	기타 농어촌	(120)	7.5	5.8	5.0	1.7	2.5	2.5			75.0	54.35
성별	남성	(177)	16.9	2.8	4.0	2.8	1.7	1.1	0.6		70.1	57.12
	여성	(351)	13.1	2.6	2.8	1.4	3.7	2.3	0.9	0.3	72.9	77.76
연령별	10대	(11)			9.1					9.1	81.8	225.00
	20대	(37)	10.8	8.1	5.4		2.7	5.4	2.7		64.9	80.33
	30대	(68)	14.7	1.5	7.4		8.8	1.5	2.9		63.2	79.18
	40대	(136)	14.0	3.7	1.5	2.9	5.9	3.7	0.7		67.6	72.81
	50대	(103)	16.5	3.9	3.9	2.9	1.0	1.0			70.9	48.00
	60대	(64)	18.8	1.6	1.6	3.1		1.6			73.4	62.00
	70대	(78)	14.1			1.3					84.6	26.67
	80대 이상	(29)	10.3		6.9						82.8	40.00
	모름/무응답	(2)								100.0	.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14.3	2.9	2.9			5.7			74.3	69.00
	일시고용	(26)		7.7	3.8		3.8	3.8			80.8	64.00
	일용직	(27)	22.2	3.7			3.7				70.4	38.67
	자영업	(14)			7.1						92.9	50.00
	자활근로	(104)	12.5	2.9	4.8	1.9	5.8	1.9	1.0		69.2	70.95
	실업	(21)	9.5		9.5		14.3	4.8			61.9	72.86
	비경제활동	(213)	13.6	2.3	2.8	1.9	0.5	0.9	0.5		77.5	56.25
	기타	(35)	40.0	2.9		5.7	2.9	2.9	5.7		40.0	100.43
	모름/무응답	(53)	13.2	1.9	1.9	3.8	5.7	1.9	1.9	69.8	94.45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5)	8.9	3.0	5.9	3.0	1.5		0.7		77.0	53.90
	장애가 없다	(296)	14.9	2.0	2.7	1.7	3.4	1.7	0.7		73.0	69.53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여부	기혼	(123)	13.8	5.7	6.5	4.9	8.1	4.9	3.3		52.8	76.60
	이혼 또는 별거	(146)	17.1	2.1	0.7	1.4	0.7				78.1	46.43
	사별 후 독신	(151)	13.2	0.7	2.0	1.3	1.3	1.3			80.1	55.38
	미혼(19세 이상)	(83)	12.0	3.6	4.8		2.4	1.2		1.2	74.7	79.85
	그 외 기타	(17)	17.6		5.9		5.9				70.6	65.00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120.00
학력	무학	(80)	6.3	1.3	3.8						88.8	29.17
	중졸이하	(200)	17.5	2.5	2.5	2.0	2.5	0.5	0.5		72.0	62.95
	고졸이하	(175)	16.0	1.1	2.3	3.4	2.9	4.0	1.1		69.1	79.57
	대졸이하	(60)	10.0	10.0	8.3		6.7	1.7	1.7	1.7	60.0	80.17
	대학원이상	(2)					50.0				50.0	90.00
	모름/무응답	(11)	18.2				9.1	9.1			63.6	7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226)	15.0	3.1	2.7	1.3	3.1	2.2	0.4	0.4	71.7	75.00
	아파트	(138)	10.1	2.2	4.3	3.6	4.3	2.2			73.2	67.22
	다가구(연립)주택	(107)	15.9	0.9	4.7	1.9	2.8	0.9	1.9		71.0	70.38
	무허가주택	(13)	7.7	7.7							84.6	30.0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27.3	6.1					3.0		63.6	63.75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120.00	
주거형태	자가	(134)	8.2	5.2	4.5	1.5	3.7	3.7	0.7	0.7	71.6	79.14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27.3	3.6	1.8		1.8				65.5	40.00
	월세	(140)	23.6	1.4	4.3	2.9	3.6	0.7	0.7		62.9	55.75
	장기(영구)임대	(108)	7.4	0.9	2.8	3.7	2.8	2.8	0.9		78.7	82.33
	기타	(76)	10.5	2.6	1.3		2.6		1.3		81.6	79.83
	모름/무응답	(14)	7.1				7.1			85.7	120.00	

【표 26_3】 사회보험(국민연금 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17.6	4.5	1.7	0.2	75.9	17.91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4.8	4.7	2.0		78.5	20.00
	기초 탈락자	(123)	26.8	4.1	0.8	0.8	67.5	12.8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1.4	3.8	0.6	0.6	73.6	20.73
	6대 광역시	(79)	32.9		1.3		65.8	24.50
	중소도시	(170)	10.6	2.4	1.8		85.3	16.42
	기타 농어촌	(120)	12.5	11.7	3.3		72.5	17.62
성별	남성	(177)	20.3	3.4	3.4		72.9	21.17
	여성	(351)	16.2	5.1	0.9	0.3	77.5	16.32
연령별	10대	(11)		9.1	18.2		72.7	37.67
	20대	(37)	18.9				81.1	6.00
	30대	(68)	17.6	2.9	2.9		76.5	21.29
	40대	(136)	16.2	4.4			79.4	17.75
	50대	(103)	21.4	1.9	3.9		72.8	22.70
	60대	(64)	20.3	7.8			71.9	15.00
	70대	(78)	17.9	7.7	1.3	1.3	71.8	12.86
	80대 이상	(29)	10.3	6.9			82.8	15.33
	모름/무응답	(2)					100.0	.
고용형태	상시고용	(35)	17.1	2.9	5.7		74.3	27.20
	임시고용	(26)	11.5	7.7			80.8	9.25
	일용직	(27)	22.2				77.8	1.00
	자영업	(14)	7.1	7.1	7.1		78.6	24.67
	자활근로	(104)	15.4	3.8			80.8	14.00
	실업	(21)	9.5				90.5	9.00
	비경제활동	(213)	16.0	6.1	2.3	0.5	75.1	17.85
	기타	(35)	48.6	5.7			45.7	18.00
장애여부	모름/무응답	(53)	15.1	1.9	1.9		81.1	23.50
	장애가 있다	(135)	13.3	1.5	4.4		80.7	25.42
	장애가 없다	(296)	17.6	6.4	0.7		75.3	17.27
혼인여부	모름/무응답	(4)					100.0	.
	기혼	(123)	18.7	5.7	1.6		74.0	17.64
	이혼 또는 별거	(146)	18.5	1.4	1.4		78.8	22.33
	사별 후 독신	(151)	15.9	9.3	0.7	0.7	73.5	15.47
	미혼 (19세 이상)	(83)	13.3		4.8		81.9	27.00
	그 외 기타	(17)	35.3	5.9			58.8	9.33
학력	모름/무응답	(8)	25.0				75.0	.
	무학	(80)	8.8	7.5	1.3		82.5	14.64
	중졸이하	(200)	20.0	5.5	1.0	0.5	73.0	15.94
	고졸이하	(175)	18.9	2.9	1.7		76.6	18.27
	대졸이하	(60)	16.7	3.3	5.0		75.0	26.88
	대학원이상	(2)					100.0	.
주택종류	모름/무응답	(11)	27.3				72.7	.
	단독주택	(226)	19.0	6.2	2.2		72.6	16.53
	아파트	(138)	12.3	3.6	2.9		81.2	25.58
	다가구(연립)주택	(107)	19.6	2.8		0.9	76.6	12.23
	무허가주택	(13)	15.4				84.6	5.0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24.2	6.1			69.7	23.00
주거형태	모름/무응답	(9)	22.2				77.8	.
	자가	(134)	13.4	6.7	3.0		76.9	17.91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30.9	7.3			61.8	16.14
	월세	(140)	25.7	2.9	0.7		70.7	15.40
	장기(영구)임대	(108)	10.2	1.9	1.9		86.1	25.00
주거형태	기타	(76)	11.8	6.6	2.6	1.3	77.6	18.08
	모름/무응답	(14)	14.3				85.7	.

【표 26_4】 기타 정부 보조금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 체 □	(528)	13.4	15.7	18.8	6.6	4.5	0.8	0.2	40.0	39.32
구분	기초 수급자	(405)	8.9	17.3	23.7	8.6	5.7	1.0	0.2	34.6	42.38
	기초 탈락자	(123)	28.5	10.6	2.4		0.8			57.7	16.3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5.1	10.1	24.5	8.8	8.8	1.9	0.6	30.2	47.94
	6대 광역시	(79)	21.5	22.8	21.5	10.1	2.5	1.3		20.3	39.66
	중소도시	(170)	7.1	11.8	12.9	3.5	4.1			60.6	38.44
	기타 농어촌	(120)	15.0	24.2	17.5	5.8	0.8			36.7	28.48
성별	남성	(177)	14.1	16.9	18.1	7.3	5.1	1.1	0.6	36.7	41.94
	여성	(351)	13.1	15.1	19.1	6.3	4.3	0.6		41.6	37.97
연령별	10대	(11)	9.1	9.1	9.1					72.7	22.00
	20대	(37)	18.9	16.2	10.8	2.7				51.4	26.64
	30대	(68)	5.9	5.9	22.1	10.3	4.4	4.4		47.1	53.79
	40대	(136)	9.6	12.5	17.6	5.1	6.6	0.7	0.7	47.1	46.41
	50대	(103)	17.5	16.5	14.6	4.9	4.9			41.7	36.52
	60대	(64)	23.4	14.1	18.8	12.5	3.1			28.1	35.20
	70대	(78)	12.8	28.2	23.1	7.7	3.8			24.4	34.20
	80대 이상	(29)	10.3	24.1	31.0	3.4	6.9			24.1	34.29
	모름/무응답	(2)			50.0					50.0	4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7.1	8.6	11.4					62.9	23.27
	일시고용	(26)		11.5	3.8	7.7				76.9	40.17
	일용직	(27)	29.6	7.4	11.1	3.7				48.1	30.00
	자영업	(14)	14.3	28.6	14.3					42.9	22.63
	자활근로	(104)	12.5	15.4	19.2	3.8	1.9			47.1	32.80
	실업	(21)	4.8	14.3	19.0	19.0	9.5			33.3	52.15
	비경제활동	(213)	8.9	19.7	25.8	8.9	7.5	1.9		27.2	43.56
	기타	(35)	40.0	8.6	11.4	2.9	5.7			31.4	29.00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53)	15.1	13.2	11.3	7.5	3.8		1.9	47.2	43.78
	장애가 있다	(135)	7.4	14.8	17.8	8.9	10.4	1.5		39.3	47.29
	장애가 없다	(296)	12.2	17.6	24.7	7.8	3.0	0.7	0.3	33.8	38.89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4)		25.0						75.0	30.00
	기혼	(123)	10.6	11.4	17.1	9.8	7.3	0.8	0.8	42.3	45.34
	이혼 또는 별거	(146)	12.3	14.4	20.5	5.5	4.1	2.1		41.1	42.66
	사별 후 독신	(151)	15.2	23.2	19.9	6.6	4.6			30.5	34.59
	미혼 (19세 이상)	(83)	12.0	14.5	19.3	3.6	1.2			49.4	34.61
	그 외 기타	(17)	23.5	5.9	5.9	11.8	5.9			47.1	42.14
	모름/무응답	(8)	37.5		12.5					50.0	27.00
학력	무학	(80)	12.5	22.5	30.0	3.8	8.8			22.5	35.89
	중졸이하	(200)	14.0	17.0	17.0	9.0	5.0	0.5		37.5	39.59
	고졸이하	(175)	10.9	15.4	17.1	5.1	3.4	1.7	0.6	45.7	43.31
	대졸이하	(60)	18.3	6.7	15.0	8.3	1.7			50.0	34.67
	대학원이상	(2)								100.0	.
	모름/무응답	(11)	27.3		18.2					54.5	34.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5.5	19.0	15.9	5.3	2.7	0.9		40.7	33.73
	아파트	(138)	10.1	14.5	16.7	10.9	7.2	0.7	0.7	39.1	45.33
	다가구(연립)주택	(107)	11.2	12.1	29.9	5.6	6.5	0.9		33.6	45.08
	무허가주택	(13)	15.4	23.1	7.7					53.8	26.6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15.2	12.1	18.2	6.1	3.0			45.5	35.60
주거 형태	모름/무응답	(9)	33.3		11.1					55.6	27.00
	자가	(134)	14.9	21.6	12.7	6.7	3.0			41.0	31.93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20.0	10.9	18.2	3.6	1.8	5.5		40.0	43.33
	월세	(140)	14.3	14.3	23.6	2.9	4.3			40.7	36.89
	장기(영구)임대	(108)	7.4	14.8	17.6	13.9	11.1	0.9	0.9	33.3	50.99
	기타	(76)	11.8	15.8	25.0	6.6	1.3			39.5	35.43
	모름/무응답	(14)	21.4		7.1					71.4	27.00

<부 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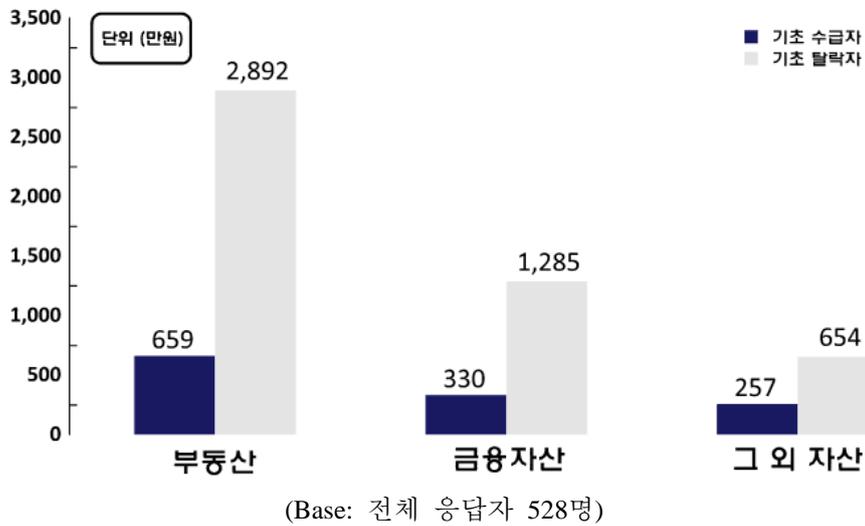
【표 26_5】 그 외 기타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15.7	4.5	0.9	0.2	0.2	0.2	78.2	29.53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4.1	4.7	0.7			0.2	80.2	28.84
	기초 탈락자	(123)	21.1	4.1	1.6	0.8	0.8		71.5	31.0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4.5	5.7	2.5				67.3	19.00
	6대 광역시	(79)	30.4						69.6	7.33
	중소도시	(170)	4.7	4.1	0.6		0.6		90.0	36.09
	기타 농어촌	(120)	10.0	6.7		0.8		0.8	81.7	41.42
성별	남성	(177)	18.6	5.6	1.1				74.6	16.50
	여성	(351)	14.2	4.0	0.9	0.3	0.3	0.3	80.1	36.97
연령별	10대	(11)		18.2					81.8	17.50
	20대	(37)	18.9						81.1	10.00
	30대	(68)	16.2	4.4	1.5				77.9	18.63
	40대	(136)	14.7	2.9	1.5				80.9	21.50
	50대	(103)	19.4	4.9	1.0				74.8	16.25
	60대	(64)	18.8	1.6	1.6	1.6			76.6	28.60
	70대	(78)	11.5	9.0				1.3	78.2	52.31
	80대 이상	(29)	13.8	6.9			3.4		75.9	46.00
	모름/무응답	(2)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1.4						88.6	10.00
	임시고용	(26)	3.8						96.2	10.00
	일용직	(27)	18.5						81.5	.
	자영업	(14)	21.4					7.1	71.4	132.00
	자활근로	(104)	11.5	5.8	1.9				80.8	22.10
	실업	(21)	19.0	14.3					66.7	13.50
	비경제활동	(213)	15.5	6.1	0.9	0.5	0.5		76.5	24.30
	기타	(35)	45.7	2.9	2.9				48.6	24.33
모름/무응답	(53)	9.4	1.9					88.7	17.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3.3	3.0	1.5			0.7	81.5	58.58
	장애가 없다	(296)	16.2	5.7	1.0				77.0	17.61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23)	15.4	6.5	1.6				76.4	18.41
	이혼 또는 별거	(146)	19.2	4.1	0.7				76.0	16.00
	사별 후 독신	(151)	12.6	4.6		0.7	0.7	0.7	80.8	61.53
	미혼 (19세 이상)	(83)	15.7	2.4	1.2				80.7	14.56
	그 외 기타	(17)	23.5	5.9					70.6	15.00
	모름/무응답	(8)			12.5				87.5	50.00
학력	무학	(80)	8.8	5.0		1.3	1.3	1.3	82.5	78.64
	중졸이하	(200)	19.0	5.5	1.0				74.5	15.70
	고졸이하	(175)	14.3	3.4	0.6				81.7	17.00
	대졸이하	(60)	20.0	3.3	1.7				75.0	16.38
	대학원이상	(2)		50.0					50.0	30.00
	모름/무응답	(11)	9.1		9.1				81.8	5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5.5	6.2		0.4	0.4	0.4	77.0	41.46
	아파트	(138)	10.1	2.9	1.4				85.5	19.36
	다가구(연립)주택	(107)	20.6	2.8	1.9				74.8	18.64
	무허가주택	(13)	15.4	7.7					76.9	11.0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30.3	6.1					63.6	14.00
모름/무응답	(9)			11.1				88.9	50.00	
주거 형태	자가	(134)	11.2	6.0		0.7	0.7	0.7	80.6	50.89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27.3	5.5	3.6				63.6	21.63
	월세	(140)	24.3	5.0	0.7				70.0	17.83
	장기(영구)임대	(108)	11.1	1.9	0.9				86.1	14.75
	기타	(76)	9.2	3.9					86.8	12.00
모름/무응답	(14)		7.1	7.1				85.7	40.00	

27. 가족의 총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탈락자에게 가족 총재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수급자(평균값)는 ‘부동산’ 658만 6천원 > ‘금융자산’ 329만 9천원 > ‘그 외 자산’ 257만 3천원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탈락자의 경우 ‘부동산’ 2천 892만 4천원 > ‘금융자산’ 1천 285만 원 > ‘그 외 자산’ 654만 3천원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7_1】 금융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등)

단위:%		사례수	100만 원이하	3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700만 원이하	1000만 원이하	1500만 원이하	2000만 원이하	2001만 원이상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528)	17.4	8.3	6.1	2.1	3.2	0.9	0.4	1.1	60.4	650.4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6.5	8.6	5.2	2.0	2.2				65.4	329.91
	기초 탈락자	(123)	20.3	7.3	8.9	2.4	6.5	4.1	1.6	4.9	43.9	1,284.9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8.3	10.1	7.5		3.1	1.9	0.6	1.3	47.2	504.53
	6대 광역시	(79)	25.3	5.1	2.5	1.3	6.3				59.5	543.21
	중소도시 기타 농어촌	(170) (120)	7.6 11.7	7.6 9.2	6.5 5.8	2.4 5.0	2.4 2.5	0.6 0.8		1.2 1.7	71.8 62.5	942.05 555.63
성별	남성	(177)	17.5	5.6	4.5	2.3	2.8	0.6	0.6	1.7	64.4	1,143.33
	여성	(351)	17.4	9.7	6.8	2.0	3.4	1.1	0.3	0.9	58.4	475.63
연령별	10대	(11)		9.1			18.2				72.7	700.00
	20대	(37)	18.9	5.4	2.7	5.4	5.4				62.2	428.00
	30대	(68)	22.1	4.4	8.8		4.4				60.3	339.35
	40대	(136)	13.2	9.6	6.6	2.2	3.7	0.7	2.2	61.0	1,058.73	
	50대	(103)	20.4	8.7	3.9	4.9		1.0	1.0	1.9	58.3	672.04
	60대	(64)	15.6	6.3	4.7	1.6	4.7	1.6			65.6	563.08
	70대	(78)	20.5	11.5	7.7		2.6	2.6		1.3	53.8	489.58
	80대 이상	(29)	17.2	6.9	10.3						65.5	235.00
	모름/무응답	(2)		50.0							50.0	26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1.4	8.6	8.6	5.7		2.9		2.9	60.0	727.27
	임시고용	(26)	15.4	3.8		3.8				7.7	69.2	1,330.00
	일용직	(27)	18.5	11.1	14.8	3.7	7.4			3.7	40.7	850.83
	자영업	(14)	7.1		7.1						85.7	205.00
	자활근로	(104)	20.2	9.6	5.8	2.9	3.8			1.0	56.7	453.59
	실업	(21)	9.5	4.8	14.3		4.8	4.8			61.9	541.14
	비경제활동	(213)	15.5	10.8	6.6	1.4	2.3	1.4			62.0	364.03
	기타	(35)	40.0	2.9		2.9	5.7		5.7	2.9	40.0	3,303.75
	모름/무응답	(53)	15.1	3.8	1.9		5.7				73.6	415.7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4.8	4.4	4.4	0.7	2.2				73.3	367.62
	장애가 없다	(296)	18.6	10.8	5.7	2.4	3.0	0.7	0.3	0.3	58.1	414.34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23)	17.9	5.7	6.5	4.1	1.6	2.4		1.6	60.2	1,067.66
	이혼 또는 별거	(146)	19.9	6.8	8.9	2.1	4.1		0.7		57.5	459.18
	사별 후 독신	(151)	16.6	11.3	6.0	0.7	2.6	1.3		2.0	59.6	536.89
	미혼 (19세 이상)	(83)	13.3	7.2	1.2	2.4	4.8			1.2	69.9	594.00
	그 외 기타	(17)	29.4	17.6							52.9	233.33
	모름/무응답	(8)		12.5	12.5		12.5		12.5		50.0	840.00
학력	무학	(80)	16.3	16.3	7.5	2.5	2.5				55.0	299.87
	중졸이하	(200)	19.5	6.0	5.0	3.0	1.5	1.5	0.5	1.0	62.0	633.54
	고졸이하	(175)	16.6	6.9	6.3	1.1	2.3	0.6		2.3	64.0	1,005.86
	대졸이하	(60)	15.0	8.3	6.7	1.7	8.3	1.7			58.3	467.05
	대학원이상	(2)	100.0									75.00
	모름/무응답	(11)		18.2	9.1		27.3		9.1		36.4	794.29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7.3	8.4	6.2	3.1	3.5	0.4	0.4		60.6	411.14
	아파트	(138)	15.2	7.2	6.5	1.4	2.9	1.4		1.4	63.8	1,043.42
	다가구(연립)주택	(107)	21.5	11.2	5.6		3.7	1.9		2.8	53.3	608.11
	무허가주택	(13)		7.7						7.7	84.6	2,450.00
	구호시설	(2)		50.0							50.0	270.00
	기타	(33)	27.3		6.1	6.1					60.6	440.00
모름/무응답	(9)		11.1	11.1		11.1		11.1		55.6	840.00	
주거 형태	자가	(134)	9.7	11.9	8.2	3.7	3.0	0.7	0.7	2.2	59.7	975.29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21.8	9.1	3.6		9.1	1.8		3.6	50.9	924.38
	월세	(140)	28.6	4.3	5.0	0.7	2.1	0.7			58.6	320.06
	장기(영구)임대	(108)	13.9	10.2	7.4	2.8	0.9	1.9		0.9	62.0	439.79
	기타	(76)	15.8	5.3	2.6	2.6	2.6				71.1	423.33
모름/무응답	(14)		14.3	14.3		14.3		7.1		50.0	718.57	

【표 27_2】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상가 등)

단위:%	사례수	100만 원이하	3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700만 원이하	1000만 원이하	1500만 원이하	2000만 원이하	2001만 원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528)	12.1	4.9	2.3	0.9	2.8	1.3	0.8	3.4	71.4	1,514.10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0.1	5.4	2.2	1.0	2.0	0.7		1.2	77.3	658.62
	기초 탈락자 (123)	18.7	3.3	2.4	0.8	5.7	3.3	3.3	10.6	52.0	2,892.3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8.9	1.9	3.1		1.9	0.6	0.6	5.0	67.9	1,919.00
	6대 광역시 (79)	24.1	15.2		1.3	2.5	2.5		1.3	53.2	602.50
	중소도시 (170)	4.1	4.1	1.8	0.6	2.4	0.6		2.9	83.5	2,151.91
	기타 농어촌 (120)	6.7	3.3	3.3	2.5	5.0	2.5	2.5	3.3	70.8	1,402.75
성별	남성 (177)	15.3	3.4	3.4	0.6	2.3	0.6		4.5	70.1	2,092.21
	여성 (351)	10.5	5.7	1.7	1.1	3.1	1.7	1.1	2.8	72.1	1,256.17
연령별	10대 (11)					9.1				90.9	1,000.00
	20대 (37)	16.2					2.7			81.1	1,100.00
	30대 (68)	8.8	2.9	1.5	1.5				5.9	79.4	1,541.11
	40대 (136)	11.0	6.6			0.7		1.5	5.1	75.0	3,409.58
	50대 (103)	14.6	7.8	4.9		3.9	1.9		1.0	66.0	649.75
	60대 (64)	12.5	4.7	3.1	3.1	6.3	3.1	3.1	1.6	62.5	919.39
	70대 (78)	15.4	5.1	2.6	2.6	5.1	1.3		3.8	64.1	976.26
	80대 이상 (29)	6.9		6.9		3.4	3.4		6.9	72.4	1,925.71
	모름/무응답 (2)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11.4	5.7	2.9				2.9		77.1	572.00
	임시고용 (26)	15.4	3.8	3.8			7.7			69.2	742.50
	일용직 (27)	14.8	7.4			3.7		3.7	11.1	59.3	1,756.43
	자영업 (14)			7.1						92.9	350.00
	자활근로 (104)	8.7	7.7	1.9		2.9			3.8	75.0	1,450.22
	실업 (21)	4.8	4.8		4.8					85.7	460.00
	비경제활동 (213)	11.7	3.3	2.8	1.4	3.8	0.9	0.5	3.8	71.8	1,361.98
	기타 (35)	37.1	2.9		2.9	5.7	5.7		5.7	40.0	3,974.63
	모름/무응답 (53)	7.5	7.5	1.9		1.9	1.9	1.9	1.9	75.5	1,172.2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1.1	3.0	3.0	0.7	0.7	0.7		1.5	79.3	793.27
	장애가 없다 (296)	12.2	6.1	2.0	1.0	2.7	0.7		1.4	74.0	713.07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23)	9.8	4.1	3.3	0.8	3.3	1.6	0.8	6.5	69.9	2,143.12
	이혼 또는 별거 (146)	14.4	6.2	1.4		2.7			3.4	71.9	1,455.00
	사별 후 독신 (151)	12.6	7.3	4.0	1.3	4.0	2.0	2.0	2.0	64.9	952.54
	미혼 (19세 이상) (83)	9.6	1.2		1.2	1.2	1.2		1.2	84.3	2,380.00
	그 외 기타 (17)	17.6			5.9		5.9			70.6	1,050.00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4,900.00
학력	무학 (80)	7.5	2.5	3.8	2.5	5.0	2.5	1.3	3.8	71.3	1,334.21
	중졸이하 (200)	15.0	7.0	3.5	1.0	4.0	2.0	0.5	2.5	64.5	984.44
	고졸이하 (175)	11.4	4.6	1.1	0.6	1.1	0.6	0.6	3.4	76.6	2,203.57
	대졸이하 (60)	11.7	1.7			1.7		1.7	3.3	80.0	1,866.67
	대학원이상 (2)									100.0	.
	모름/무응답 (11)	9.1	9.1						18.2	63.6	5,066.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1.1	4.9	2.7	2.2	5.3	1.8	0.4	3.1	68.6	1,237.37
	아파트 (138)	9.4	8.0	1.4		2.2	1.4		2.2	75.4	1,790.86
	다가구(연립)주택 (107)	15.0	1.9	2.8			0.9	1.9	6.5	71.0	1,930.56
	무허가주택 (13)	7.7		7.7				7.7		76.9	1,075.00
	구호시설 (2)		50.0							50.0	195.00
	기타 (33)	24.2	3.0							72.7	300.00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4,900.00
주거 형태	자가 (134)	5.2	2.2	3.0	3.0	5.2	2.2	2.2	6.7	70.1	2,471.31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10.9	3.6		1.8	7.3	1.8		12.7	61.8	2,006.67
	월세 (140)	22.1	3.6	3.6		1.4	0.7	0.7	0.7	67.1	597.50
	장기(영구)임대 (108)	7.4	11.1	1.9		1.9	1.9			75.9	427.72
	기타 (76)	14.5	3.9	1.3						80.3	246.25
	모름/무응답 (14)	7.1	7.1						7.1	78.6	2,547.50

【표 27_3】 그 외 자산(자동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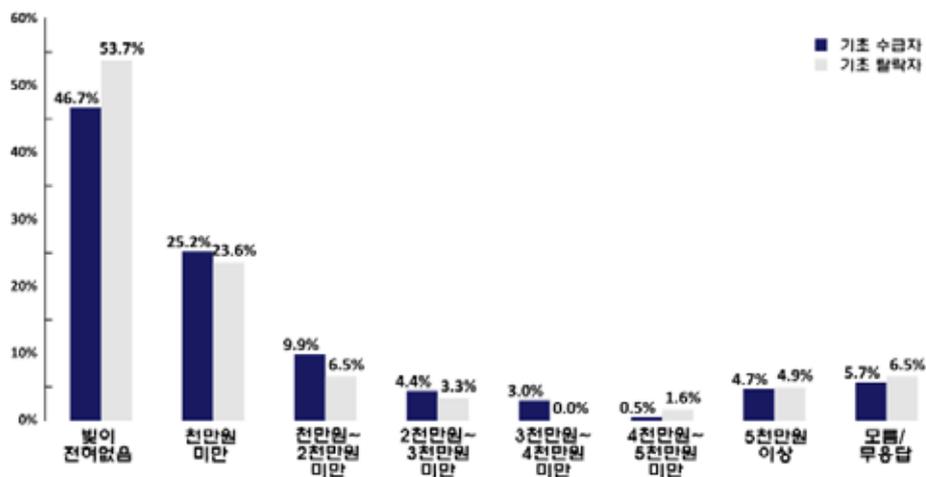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무응답/ 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	(528)	17.0	0.8	1.3	0.6	0.8	0.4	79.2	466.83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3.1	0.7	1.7					84.4	257.29
	기초 탈락자	(123)	30.1	0.8		2.4	3.3	1.6		61.8	654.3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5.2		0.6		0.6	1.3		72.3	937.17
	6대 광역시	(79)	30.4	2.5						67.1	168.00
	중소도시	(170)	7.1	1.2	1.8	0.6	1.8			87.6	452.20
	기타 농어촌	(120)	11.7		2.5	1.7				84.2	356.00
성별	남성	(177)	22.0	1.1	2.8	0.6	1.1			72.3	372.72
	여성	(351)	14.5	0.6	0.6	0.6	0.6	0.6		82.6	560.94
연령 별	10대	(11)				9.1				90.9	1,000.00
	20대	(37)	16.2	2.7			2.7			78.4	750.00
	30대	(68)	17.6	1.5	2.9					77.9	204.00
	40대	(136)	17.6		2.2		1.5			78.7	354.33
	50대	(103)	23.3	1.9	1.9					72.8	203.33
	60대	(64)	20.3			3.1		1.6		75.0	925.00
	70대	(78)	10.3				1.3	1.3		87.2	1,650.00
	80대 이상	(29)	10.3							89.7	.
	모름/무응답	(2)								100.0	.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20.0		2.9					77.1	150.00
	임시고용	(26)	19.2							80.8	30.00
	일용직	(27)	37.0		3.7					59.3	145.80
	자영업	(14)	7.1							92.9	100.00
	자활근로	(104)	12.5	1.9				1.0		84.6	514.00
	실업	(21)	9.5	4.8	9.5		4.8			71.4	507.40
	비경제활동	(213)	14.1		1.4	0.9	0.5	0.5		82.6	716.67
	기타	(35)	51.4				2.9			45.7	570.00
모름/무응답	(53)	7.5	1.9		1.9	1.9			86.8	833.33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13.3		3.7			0.7		82.2	491.11
	장애가 없다	(296)	15.2	1.0	0.7		0.3			82.8	318.82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23)	20.3	1.6		0.8	2.4			74.8	445.62
	이혼 또는 별거	(146)	21.2	0.7	2.7					75.3	221.18
	사별 후 독신	(151)	12.6			0.7		0.7		86.1	787.50
	미혼 (19세 이상)	(83)	9.6	1.2	2.4	1.2	1.2			84.3	555.00
	그 외 기타	(17)	29.4		5.9					64.7	500.00
	모름/무응답	(8)	25.0					12.5		62.5	1,600.00
학력	무학	(80)	8.8							91.3	.
	중졸이하	(200)	20.5	1.0	1.0	1.0	0.5	0.5		75.5	458.69
	고졸이하	(175)	16.0	1.1	2.3		0.6			80.0	326.73
	대졸이하	(60)	18.3		1.7	1.7	1.7			76.7	439.00
	대학원이상	(2)								100.0	.
	모름/무응답	(11)	27.3				9.1	9.1		54.5	1,40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17.7	0.9	1.8	1.3				78.3	366.67
	아파트	(138)	12.3	0.7	1.4		2.9	0.7		81.9	618.29
	다가구(연립)주택	(107)	17.8	0.9	0.9					80.4	400.00
	무허가주택	(13)	15.4							84.6	100.00
	구호시설	(2)								100.0	.
	기타	(33)	30.3							69.7	25.00
	모름/무응답	(9)	22.2					11.1		66.7	1,600.00
주거 형태	자가	(134)	10.4	0.7	1.5	2.2	0.7			84.3	482.50
	전세(1억 이상)	(1)								100.0	.
	전세(1억 미만)	(55)	27.3		1.8		1.8	1.8		67.3	962.50
	월세	(140)	25.0	2.1	1.4					71.4	190.40
	장기(영구)임대	(108)	9.3				0.9			89.8	776.50
	기타	(76)	18.4		2.6					78.9	151.50
모름/무응답	(14)	14.3				7.1	7.1		71.4	1,400.00	

28. 가족의 총 부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탈락자간의 가구 부채 평균을 비교하면, ‘수급자’의 경우 815만 4천원, ‘탈락자’의 경우 682만 6천원으로 나타나 수급자 가구의 부채규모가 탈락자 가구에 비해 평균 130만원 정도 더 높았다.

수급자와 탈락자 모두 ‘빚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53.7%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천만원 미만’이 25.2%, 23.6%로 뒤를 이었다.

한편 빚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수급자에서 4.7%, 탈락자에서 4.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28】부채(빚)

단위:%		사례수	빚이 전혀 없다	1,000만 원미만	1,000만 원이상~ 2,000만 원미만	2,000만 원이상~ 3,000만 원미만	3,000만 원이상~ 4,000만 원미만	4,000만 원이상~ 5,000만 원미만	5,000만 원 이상	모름/ 무응답	(평균: 만원)
■ 전 체 ■		(528)	48.3	24.8	9.1	4.2	2.3	0.8	4.7	5.9	784.71
구분	기초 수급자	(405)	46.7	25.2	9.9	4.4	3.0	0.5	4.7	5.7	815.45
	기초 탈락자	(123)	53.7	23.6	6.5	3.3		1.6	4.9	6.5	682.6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47.2	28.3	10.1	2.5	2.5	1.3	5.0	3.1	801.95
	6대 광역시	(79)	36.7	29.1	12.7	8.9	1.3	1.3	5.1	5.1	986.67
	중소도시	(170)	44.7	28.2	8.2	4.7	2.4	0.6	4.1	7.1	772.15
	기타 농어촌	(120)	62.5	12.5	6.7	2.5	2.5		5.0	8.3	640.91
성별	남성	(177)	46.3	26.6	9.0	2.8	3.4	0.6	5.6	5.6	841.32
	여성	(351)	49.3	23.9	9.1	4.8	1.7	0.9	4.3	6.0	756.06
연령 별	10대	(11)	54.5	18.2			18.2		9.1		1,227.27
	20대	(37)	48.6	21.6	5.4	2.7	2.7		5.4	13.5	750.00
	30대	(68)	33.8	32.4	8.8	8.8	2.9	1.5	8.8	2.9	1,204.55
	40대	(136)	37.5	29.4	16.9	4.4	2.2	0.7	2.9	5.9	832.03
	50대	(103)	43.7	27.2	6.8	4.9	2.9	1.9	6.8	5.8	979.38
	60대	(64)	48.4	23.4	9.4	4.7	1.6		4.7	7.8	745.76
	70대	(78)	73.1	16.7	2.6	1.3			2.6	3.8	306.67
	80대 이상	(29)	79.3	10.3	3.4					6.9	111.11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37.1	34.3	8.6	2.9		2.9	11.4	2.9	1,161.76
	임시고용	(26)	46.2	23.1		11.5			11.5	7.7	1,125.00
	일용직	(27)	51.9	29.6	14.8				3.7		574.07
	자영업	(14)	50.0	21.4	7.1		14.3			7.1	769.23
	자활근로	(104)	38.5	26.9	12.5	5.8	3.8	1.0	5.8	5.8	1,020.41
	실업	(21)	33.3	38.1	14.3	4.8			9.5		1,047.62
	비경제활동	(213)	57.3	22.5	7.0	2.8	0.9		2.3	7.0	484.85
	기타	(35)	54.3	17.1	11.4	2.9	2.9	2.9	2.9	5.7	757.58
모름/무응답	(53)	39.6	22.6	9.4	7.5	5.7	1.9	5.7	7.5	1,122.45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45.9	24.4	10.4	3.7	2.2		5.2	8.1	798.39
	장애가 없다	(296)	48.0	24.3	9.5	4.7	3.0	0.7	5.4	4.4	853.36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166.67
혼인 여부	기혼	(123)	35.8	29.3	13.8	4.1	1.6	0.8	8.1	6.5	1,065.22
	이혼 또는 별거	(146)	40.4	26.7	12.3	5.5	3.4	2.1	6.2	3.4	1,042.55
	사별 후 독신	(151)	61.6	21.9	5.3	4.0	0.7		1.3	5.3	405.59
	미혼 (19세 이상)	(83)	59.0	22.9	3.6	2.4	4.8		1.2	6.0	493.59
	그 외 기타	(17)	47.1	23.5	11.8				11.8	5.9	1,000.00
모름/무응답	(8)	25.0			12.5			12.5	50.0	2,000.00	
학력	무학	(80)	77.5	13.8	3.8	1.3				3.8	162.34
	중졸이하	(200)	51.5	26.5	7.0	4.0	3.0		2.5	5.5	613.76
	고졸이하	(175)	34.9	34.3	10.9	4.0	1.1	2.3	8.0	4.6	1,065.87
	대졸이하	(60)	40.0	11.7	18.3	8.3	6.7		6.7	8.3	1,245.45
	대학원이상	(2)	50.0		50.0						750.00
모름/무응답	(11)	36.4			9.1			18.2	36.4	1,928.57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55.8	22.1	7.1	2.7	1.3		4.0	7.1	590.48
	아파트	(138)	37.0	29.7	11.6	8.7	4.3	0.7	5.8	2.2	1,066.67
	다가구(연립)주택	(107)	51.4	26.2	11.2	0.9	1.9	1.9	1.9	4.7	602.94
	무허가주택	(13)	38.5	23.1	15.4	7.7	7.7		7.7		1,230.77
	구호시설	(2)	50.0	50.0							250.00
	기타	(33)	45.5	21.2	6.1	3.0		3.0	12.1	9.1	1,183.33
모름/무응답	(9)	22.2	11.1		11.1			11.1	44.4	1,700.00	
주거 형태	자가	(134)	51.5	21.6	9.7	1.5	3.0		3.0	9.7	619.83
	전세(1억 이상)	(1)	100.0								0.00
	전세(1억 미만)	(55)	50.9	30.9	12.7				1.8	3.6	462.26
	월세	(140)	47.9	23.6	9.3	2.9	2.9	2.1	6.4	5.0	924.81
	장기(영구)임대	(108)	44.4	30.6	9.3	6.5	0.9	0.9	5.6	1.9	849.06
	기타	(76)	47.4	25.0	6.6	7.9	3.9		5.3	3.9	883.56
모름/무응답	(14)	42.9			21.4			7.1	28.6	1,300.00	

29.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 본 결과, ‘지원 금액 및 횟수 확대’ 9.1%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4.9% > ‘자격기준 완화’ 3.0% > ‘일자리 및 자활교육 확대’ 2.3% > ‘부정수급자 점검 및 엄단’ 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응답으로는 ‘유아, 장애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1.3%, ‘주거안정 대책 마련’ 1.1%, 인 기준을 넘어 융통성 있는 지원’ 1.1%, ‘의료지원 확대’ 1.1%, ‘가족 수/장애여부 등 특성 고려’ 0.8%, ‘부채탕감’ 0.4% 등이 있었으며, ‘없음/모름/무응답’은 69.7%였다.

No.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비율 (%)
1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9.1%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4.9%
3	자격기준(금융자산 등) 완화	3.0%
4	일자리, 자활교육 확대	2.3%
5	부정수급자 점검 및 엄단	1.7%
6	유아, 장애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1.3%
7	주거안정 대책 마련	1.1%
8	획일적인 기준을 넘어 융통성 있는 지원	1.1%
9	의료지원 확대	1.1%
10	가족 수, 장애여부 등 특성 고려	0.8%
11	부채탕감	0.4%

(Base: 전체 응답자 528명)

【표 29】 지원제도에 대한 자유의견

단위:%		사례수	지원 금액 및 횟수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자격기준 (금융자산 등) 완화	가족 수, 장애 여부 등 특성 고려	부정수급자 점검 및 엄단	주거안정 대책 마련
□ 전 체 □		(528)	9.1	4.9	3.0	0.8	1.7	1.1
구분	기초 수급자	(405)	11.4	1.7	1.0	1.0	2.0	1.5
	기초 탈락자	(123)	1.6	15.4	9.8		0.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11.3	8.2	3.1	1.3	2.5	3.1
	6대 광역시	(79)	15.2		3.8	1.3	1.3	
	중소도시	(170)	5.9	4.7	2.9		1.2	0.6
	기타 농어촌	(120)	6.7	4.2	2.5	0.8	1.7	
성별	남성	(177)	6.2	6.8	2.8	0.6	2.3	1.1
	여성	(351)	10.5	4.0	3.1	0.9	1.4	1.1
연령별	10대	(11)						
	20대	(37)	8.1	2.7	5.4			2.7
	30대	(68)	7.4	1.5	4.4	2.9	4.4	
	40대	(136)	13.2	2.2	2.9		1.5	0.7
	50대	(103)	7.8	3.9	3.9	1.0		1.0
	60대	(64)	10.9	7.8	3.1	1.6	4.7	4.7
	70대	(78)	9.0	12.8	1.3			
	80대 이상	(29)		6.9			3.4	
	모름/무응답	(2)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2.9		5.7	2.9		2.9
	임시고용	(26)	7.7	3.8	7.7			
	일용직	(27)	7.4	7.4	7.4			
	자영업	(14)	7.1					
	자활근로	(104)	14.4	3.8	2.9	1.0	1.9	1.9
	실업	(21)	9.5		4.8			
	비경제활동	(213)	9.4	7.5	1.4	0.5	2.3	0.5
	기타	(35)	8.6	5.7	8.6	2.9	2.9	2.9
	모름/무응답	(53)	3.8	1.9			1.9	1.9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6.7	1.5	2.2		3.0	2.2
	장애가 없다	(296)	12.5	3.4	2.7	1.4	1.4	1.0
	모름/무응답	(4)						
혼인 여부	기혼	(123)	8.1	8.9	3.3	1.6	2.4	
	이혼 또는 별거	(146)	13.0	3.4	2.7	1.4	2.1	0.7
	사별 후 독신	(151)	7.3	6.0	3.3		1.3	2.0
	미혼 (19세 이상)	(83)	8.4		2.4		1.2	2.4
	그 외 기타	(17)	5.9		5.9			
	모름/무응답	(8)		12.5				
학력	무학	(80)	5.0	3.8	1.3		1.3	1.3
	중졸이하	(200)	8.0	7.5	2.0	1.0	2.0	1.5
	고졸이하	(175)	13.1	2.9	3.4	0.6	1.7	0.6
	대졸이하	(60)	8.3	1.7	8.3	1.7		1.7
	대학원이상	(2)					50.0	
	모름/무응답	(11)		18.2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7.5	4.0	2.7	0.9	1.8	0.4
	아파트	(138)	9.4	5.1	1.4	0.7		0.7
	다가구(연립)주택	(107)	12.1	6.5	6.5	0.9	3.7	2.8
	무허가주택	(13)	15.4	7.7				
	구호시설	(2)						
	기타	(33)	9.1	3.0	3.0		3.0	3.0
모름/무응답	(9)		11.1					
주거 형태	자가	(134)	3.7	4.5	3.7	0.7	1.5	
	전세(1억 이상)	(1)						
	전세(1억 미만)	(55)	12.7	9.1	1.8	1.8	1.8	1.8
	월세	(140)	12.1	3.6	4.3	1.4	2.9	2.1
	장기(영구)임대	(108)	7.4	3.7	1.9			
	기타	(76)	14.5	5.3	2.6		2.6	2.6
모름/무응답	(14)		14.3					

【표 29】 지원제도에 대한 자유의견 _ 계속

단위:%	사례수	일자리, 자활교육 확대	확실적인 기준을 넘어 융통성 있는 지원	의료지원 확대	부채탕감	유아, 장애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528)	2.3	1.1	1.1	0.4	1.3	3.4	69.7	
구분	기초 수급자	(405)	3.0	1.2	1.5	0.5	1.5	3.2	70.6
	기초 탈락자	(123)		0.8			0.8	4.1	66.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59)	2.5	2.5	0.6	0.6	1.9	3.1	59.1
	6대 광역시	(79)	3.8		1.3	1.3	2.5	2.5	67.1
	중소도시	(170)	1.8	1.2	0.6		0.6	4.1	76.5
	기타 농어촌	(120)	1.7		2.5		0.8	3.3	75.8
성별	남성	(177)	2.3		1.7	1.1	0.6	1.1	73.4
	여성	(351)	2.3	1.7	0.9		1.7	4.6	67.8
연령별	10대	(11)						9.1	90.9
	20대	(37)	2.7					2.7	75.7
	30대	(68)	4.4	1.5	2.9		4.4	5.9	60.3
	40대	(136)	1.5	2.2	1.5		1.5	3.7	69.1
	50대	(103)	2.9	1.9	1.0	1.9	1.0	1.9	71.8
	60대	(64)	3.1				1.6	4.7	57.8
	70대	(78)	1.3		1.3				74.4
	80대 이상	(29)						6.9	82.8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35)			2.9			2.9	80.0
	임시고용	(26)				3.8	7.7	69.2	
	일용직	(27)						7.4	70.4
	자영업	(14)				7.1	14.3	71.4	
	자활근로	(104)	2.9	3.8	1.0	1.0	1.9	3.8	59.6
	실업	(21)	9.5	4.8				4.8	66.7
	비경제활동	(213)	2.3		1.4		0.5	1.4	72.8
	기타	(35)					2.9	2.9	62.9
	모름/무응답	(53)	3.8	1.9	1.9	1.9	1.9	3.8	75.5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5)	2.2	0.7	2.2	1.5	2.2	2.2	73.3
	장애가 없다	(296)	3.0	1.7	1.0		1.4	4.4	66.2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23)	3.3	0.8	1.6		0.8	4.9	64.2
	이혼 또는 별거	(146)	3.4	2.7	0.7	1.4	0.7	2.7	65.1
	사별 후 독신	(151)	1.3	0.7	1.3		1.3	3.3	72.2
	미혼 (19세 이상)	(83)	1.2		1.2		2.4	2.4	78.3
	그 외 기타	(17)					5.9	5.9	76.5
	모름/무응답	(8)							87.5
학력	무학	(80)	1.3					3.8	82.5
	중졸이하	(200)	1.0	0.5	1.5	0.5	0.5	2.0	72.0
	고졸이하	(175)	3.4	1.7	0.6	0.6	2.3	4.6	64.6
	대졸이하	(60)	5.0	3.3	1.7		3.3	5.0	60.0
	대학원이상	(2)			50.0				
모름/무응답	(11)							81.8	
주택 종류	단독주택	(226)	2.7		0.9		1.3	4.0	73.9
	아파트	(138)	2.2	2.2	0.7		2.2	2.9	72.5
	다가구(연립)주택	(107)	0.9	2.8	1.9		0.9	2.8	57.9
	무허가주택	(13)			7.7	7.7		7.7	53.8
	구호시설	(2)							100.0
	기타	(33)	6.1			3.0		3.0	66.7
모름/무응답	(9)							88.9	
주거 형태	자가	(134)	0.7		1.5			1.5	82.1
	전세(1억 이상)	(1)		100.0					
	전세(1억 미만)	(55)	1.8		1.8		1.8	5.5	60.0
	월세	(140)	3.6		0.7	0.7	1.4	0.7	66.4
	장기(영구)임대	(108)	2.8	2.8	0.9		2.8	8.3	69.4
	기타	(76)	2.6	2.6	1.3	1.3	1.3	3.9	59.2
모름/무응답	(14)							85.7	

Ⅲ. 긴급복지지원법

【표】 응답자 특성 _ 긴급 수급자 가족의 분포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손자녀		기타 (삼촌,고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전 체 ■		311		4		32		104		20		266		13		2	
성별	남성	161	51.8	1	25.0	12	37.5	44	42.3	10	50.0	122	45.9	7	53.8	1	50.0
	여성	150	48.2	3	75.0	20	62.5	60	57.7	10	50.0	144	54.1	6	46.2	1	50.0
연령	10대이하		0.0	0	0.0	0	0.0	0	0.0	0	0.0	54	20.3	3	23.1	0	0.0
	10대	10	3.2	0	0.0	0	0.0	1	1.0	9	45.0	126	47.4	9	69.2	0	0.0
	20대	7	2.3	0	0.0	0	0.0	4	3.8	3	15.0	36	13.5	1	7.7	0	0.0
	30대	23	7.4	0	0.0	3	9.4	11	10.6	3	15.0	11	4.1	0	0.0	0	0.0
	40대	94	30.2	1	25.0	6	18.8	27	26.0	1	5.0	18	6.8	0	0.0	2	100
	50대	79	25.4	0	0.0	6	18.8	33	31.7	1	5.0	16	6.0	0	0.0	0	0.0
	60대	52	16.7	0	0.0	3	9.4	8	7.7	0	0.0	1	0.4	0	0.0	0	0.0
	70대	34	10.9	2	50.0	8	25.0	16	15.4	1	5.0	0	0.0	0	0.0	0	0.0
	80대이상	11	3.5	1	25.0	6	18.8	4	3.8	2	10.0	2	0.8	0	0.0	0	0.0
현재 하는일	상시고용	16	5.1	0	0.0	3	9.4	10	9.6	0	0.0	13	4.9	0	0.0	0	0.0
	임시고용	13	4.2	0	0.0	0	0.0	5	4.8	0	0.0	11	4.1	0	0.0	0	0.0
	일용직 (파출부,일용잡부)	23	7.4	0	0.0	5	15.6	6	5.8	1	5.0	10	3.8	0	0.0	0	0.0
	자영업 (노점행상,농어업등)	8	2.6	2	50.0	0	0.0	7	6.7	0	0.0	1	0.4	0	0.0	0	0.0
	자활근로	5	1.6	0	0.0	0	0.0	2	1.9	0	0.0	0	0.0	0	0.0	0	0.0
	실업	24	7.7	0	0.0	1	3.1	13	12.5	0	0.0	6	2.3	1	7.7	0	0.0
	비경제활동 (근로불가능)	194	62.4	2	50.0	21	65.6	50	48.1	7	35.0	55	20.7	0	0.0	1	50.0
	기타	28	9.0	0	0.0	2	6.3	8	7.7	12	60.0	166	62.4	12	92.3	1	50.0
동거 여부	함께살고있다	311	100	4	100	23	71.9	96	92.3	13	65.0	211	79.3	12	92.3	2	100
	함께살고있지않다		0.0	0	0.0	9	28.1	4	3.8	7	35.0	51	19.2	1	7.7	0	0.0
만성 질환 여부	없고있다	229	73.6	2	50.0	19	59.4	40	38.5	3	15.0	23	8.6	2	15.4	1	50.0
	없고있지않다	79	25.4	2	50.0	13	40.6	59	56.7	16	80.0	232	87.2	10	76.9	1	50.0
	모름/무응답	3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애 여부	장애가있다	137	44.1	0	0.0	10	31.3	28	26.9	3	15.0	24	9.0	3	23.1	0	0.0
	장애가없다	170	54.7	4	100	21	65.6	70	67.3	17	85.0	226	85.0	9	69.2	2	100
	모름/무응답	4	1.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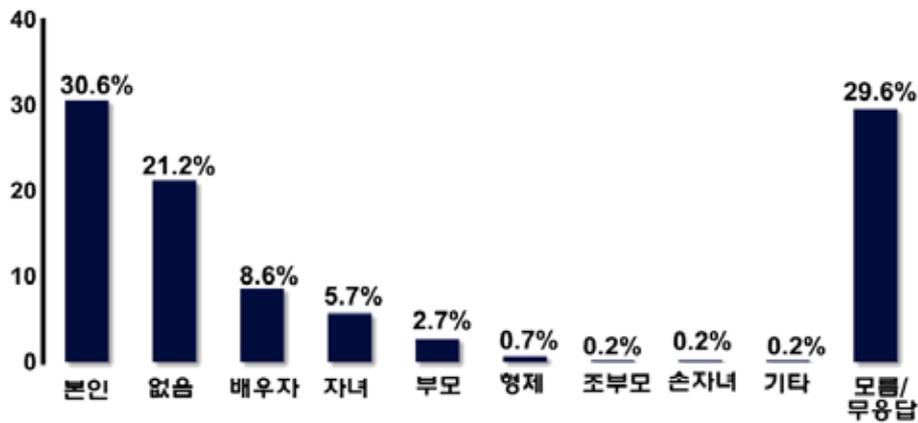
【표】 응답자 특성 _ 긴급 탈락자 가족의 분포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손자녀		기타 (삼촌,고모)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전 체 ☐		94		1		14		36		4		85		3		2	
성별	남성	43	45.7	0	0.0	6	42.9	14	38.9	2	50.0	44	51.8	3	100	0	0.0
	여성	51	54.3	1	100	8	57.1	22	61.1	2	50.0	41	48.2	0	0.0	2	100
연령	10대이하		0.0	0	0.0	0	0.0	0	0.0	0	0.0	20	23.5	1	33.3	0	0.0
	10대	2	2.1	0	0.0	0	0.0	0	0.0	1	25.0	31	36.5	2	66.7	0	0.0
	20대	4	4.3	0	0.0	0	0.0	1	2.8	3	75.0	19	22.4	0	0.0	0	0.0
	30대	12	12.8	0	0.0	1	7.1	4	11.1	0	0.0	8	9.4	0	0.0	1	50.0
	40대	23	24.5	0	0.0	1	7.1	9	25.0	0	0.0	4	4.7	0	0.0	1	50.0
	50대	21	22.3	0	0.0	5	35.7	10	27.8	0	0.0	0	0.0	0	0.0	0	0.0
	60대	13	13.8	1	100	4	28.6	8	22.2	0	0.0	1	1.2	0	0.0	0	0.0
	70대	17	18.1	0	0.0	3	21.4	2	5.6	0	0.0	1	1.2	0	0.0	0	0.0
현재 하는일	상시고용	7	7.4	0	0.0	2	14.3	4	11.1	1	25.0	9	10.6	0	0.0	0	0.0
	임시고용	3	3.2	0	0.0	1	7.1	3	8.3	1	25.0	3	3.5	0	0.0	0	0.0
	일용직 (파출부,일용잡부)	6	6.4	0	0.0	3	21.4	5	13.9	0	0.0	2	2.4	0	0.0	0	0.0
	자영업 (노점행상,농어업등)	2	2.1	0	0.0	0	0.0	2	5.6	0	0.0	0	0.0	0	0.0	0	0.0
	자활근로	2	2.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실업	2	2.1	0	0.0	0	0.0	0	0.0	0	0.0	2	2.4	0	0.0	0	0.0
	비경제활동 (근로불가능)	57	60.6	1	100	7	50.0	10	27.8	1	25.0	19	22.4	0	0.0	1	50.0
	기타	13	13.8	0	0.0	1	7.1	10	27.8	1	25.0	47	55.3	3	100	0	0.0
	모름/무응답	2	2.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동거 여부	함께살고있다	94	100	1	100	12	85.7	30	83.3	1	25.0	75	88.2	3	100	2	100
	함께살고있지않다		0.0	0	0.0	2	14.3	3	8.3	3	75.0	3	3.5	0	0.0	0	0.0
만성 질환 여부	없고있다	65	69.1	0	0.0	5	35.7	7	19.4	1	25.0	1	1.2	0	0.0	0	0.0
	없고있지않다	29	30.9	1	100	8	57.1	24	66.7	3	75.0	66	77.6	3	100	2	100
장애 여부	장애가있다	45	47.9	0	0.0	1	7.1	4	11.1	0	0.0	5	5.9	0	0.0	0	0.0
	장애가없다	49	52.1	1	100	12	85.7	26	72.2	4	100	62	72.9	3	100	2	100

1. 가구 내 주 소득자

가족 내 주 소득자가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본인’이라는 응답이 30.6%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가구 내 소득자가 없다’는 응답은 21.2%였다.

응답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배우자’ 8.6%, ‘자녀’ 5.7%, ‘부모’ 2.7%, ‘형제’ 0.7%, ‘조부모’ 0.2%, ‘손자녀’ 0.2% 등의 순이었다. 한편, ‘모름/무응답’은 29.6%였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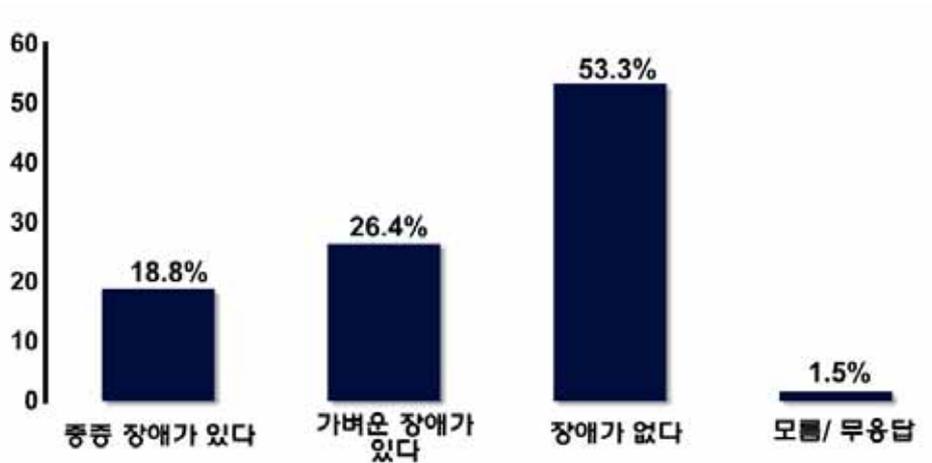
【표 1】 가구 내 주 소득자

	단위:%	사례수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손자녀	없음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 체	(405)	30.6	0.2	2.7	8.6	0.7	5.7	0.2	21.2	0.2	29.6
구분	긴급 수급자	(311)	31.2	0.3	2.6	7.7	0.6	4.8	0.3	22.8	0.3	29.3
	긴급 탈락자	(94)	28.7		3.2	11.7	1.1	8.5		16.0		30.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47.6		1.6	7.9	3.2	6.3		11.1	1.6	20.6
	6대 광역시	(92)	34.8		2.2	12.0		3.3		13.0		34.8
	중소도시	(127)	18.1		4.7	6.3		9.4		25.2		36.2
	기타 농어촌	(123)	31.7	0.8	1.6	8.9	0.8	3.3	0.8	28.5		23.6
성별	남성	(203)	29.1	0.5	3.0	8.4	1.0	3.9		22.2	0.5	31.5
	여성	(202)	32.2		2.5	8.9	0.5	7.4	0.5	20.3		27.7
연령별	10대	(12)		8.3	41.7					25.0	8.3	16.7
	20대	(11)	36.4		9.1	9.1	9.1			9.1		27.3
	30대	(35)	57.1		5.7	5.7				5.7		25.7
	40대	(117)	38.5		1.7	14.5	0.9	3.4		13.7		27.4
	50대	(100)	32.0			7.0	1.0	6.0		30.0		24.0
	60대	(65)	18.5			7.7		9.2		21.5		43.1
	70대	(51)	17.6		2.0	3.9		13.7		21.6		41.2
	80대 이상	(11)	18.2			9.1			9.1	63.6		
	모름/무응답	(3)								66.7		33.3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78.3			8.7		4.3		4.3		4.3
	임시고용	(16)	68.8			12.5				6.3		12.5
	일용직	(29)	86.2			3.4						10.3
	자영업	(10)	70.0			20.0	10.0					
	자활근로	(7)	100.0									
	실업	(26)	26.9			7.7	3.8	3.8		23.1		34.6
	비경제활동	(251)	15.9		2.0	8.8	0.4	6.8	0.4	27.9		37.8
	기타	(41)	17.1	2.4	14.6	9.8		9.8		19.5	2.4	24.4
모름/무응답	(2)	10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25.3		2.7	6.6	1.1	9.9	0.5	19.8		34.1
	장애가 없다	(219)	35.6	0.5	2.7	10.5	0.5	2.3		22.4	0.5	25.1
	모름/무응답	(4)								25.0		75.0
혼인여부	기혼	(146)	32.9		0.7	23.3	0.7	5.5		17.8		19.2
	이혼 또는 별거	(112)	34.8		0.9			5.4		22.3		36.6
	사별 후 독신	(79)	26.6					10.1		26.6		36.7
	미혼(19세 이상)	(48)	31.3	2.1	10.4		4.2			18.8		33.3
	그 외 기타	(13)	7.7		30.8					23.1	7.7	30.8
	모름/무응답	(7)				14.3		14.3	14.3	28.6		28.6
학력	무학	(51)	19.6			3.9		9.8	2.0	33.3		31.4
	중졸이하	(175)	25.1		0.6	9.1	0.6	6.9		21.7	0.6	35.4
	고졸이하	(126)	35.7	0.8	4.8	7.9	1.6	3.2		17.5		28.6
	대졸이하	(37)	51.4		10.8	16.2		2.7		10.8		8.1
	대학원이상	(3)	66.7									33.3
	모름/무응답	(13)	30.8			7.7		7.7		38.5		15.4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29.1	0.5	3.1	8.7		5.6	0.5	24.0		28.6
	아파트	(74)	29.7		1.4	8.1	2.7	6.8		23.0		28.4
	다가구(연립)주택	(85)	31.8		4.7	9.4	1.2	3.5		11.8		37.6
	무허가주택	(11)	36.4			9.1		9.1		36.4		9.1
	기타	(1)	100.0									
모름/무응답	(30)	40.0			6.7		6.7		16.7	3.3	26.7	
주거형태	자가	(8)	12.5			12.5		12.5		37.5		25.0
	전세(1억 이상)	(107)	25.2	0.9	4.7	10.3	1.9	6.5	0.9	16.8		32.7
	전세(1억 미만)	(28)	42.9		3.6	7.1		14.3		10.7		21.4
	월세	(129)	37.2		3.9	9.3	0.8	3.1		16.3		29.5
	장기(영구)임대	(51)	27.5			11.8		3.9		27.5		29.4
	기타	(81)	27.2			3.7		6.2		30.9	1.2	30.9
모름/무응답	(9)	11.1			11.1		11.1		55.6		11.1	

2. 본인의 장애여부

본인의 장애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53.3%, ‘장애가 있다’는 응답이 45.2% (중증 장애 18.8% + 가벼운 장애 26.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5%)

‘장애가 없다’는 응답은 긴급 수급자(54.0%)와 긴급 탈락자(51.1%)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증 장애가 있다’는 응답은 긴급 수급자(19.6%), 긴급 탈락자(16.0%) 순으로, ‘가벼운 장애가 있다’는 응답은 긴급 탈락자(31.9%), 긴급 수급자(24.8%) 순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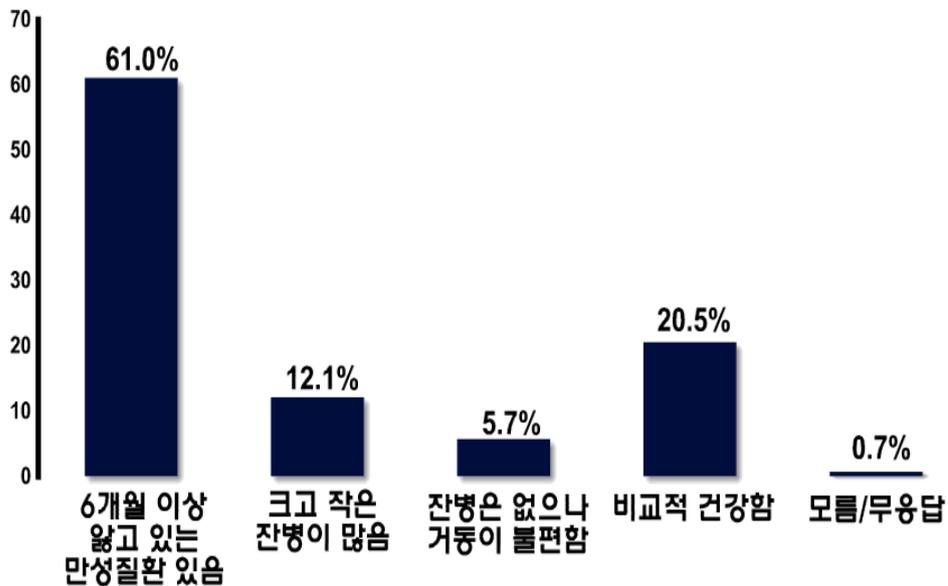
【표 2】 본인의 장애 여부

단위:%		사례수	중증 장애가 있다	가벼운 장애가 있다	장애가 없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405)	18.8	26.4	53.3	1.5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9.6	24.8	54.0	1.6
	긴급 탈락자	(94)	16.0	31.9	51.1	1.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30.2	23.8	46.0	
	6대 광역시	(92)	9.8	23.9	63.0	3.3
	중소도시	(127)	22.8	24.4	51.2	1.6
성별	기타 농어촌	(123)	15.4	31.7	52.0	0.8
	남성	(203)	23.6	24.6	49.3	2.5
	여성	(202)	13.9	28.2	57.4	0.5
연령별	10대	(12)	33.3		58.3	8.3
	20대	(11)	9.1	27.3	63.6	
	30대	(35)	14.3	14.3	71.4	
	40대	(117)	13.7	26.5	59.0	0.9
	50대	(100)	27.0	26.0	46.0	1.0
	60대	(65)	12.3	38.5	44.6	4.6
	70대	(51)	19.6	29.4	51.0	
	80대 이상	(11)	27.3	18.2	54.5	
	모름/무응답	(3)	66.7		33.3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8.7	4.3	87.0	
	임시고용	(16)	6.3	12.5	81.3	
	일용직	(29)		34.5	65.5	
	자영업	(10)	10.0	40.0	50.0	
	자활근로	(7)		14.3	85.7	
	실업	(26)	11.5	15.4	65.4	7.7
	비경제활동	(251)	23.5	29.5	46.2	0.8
	기타	(41)	24.4	24.4	46.3	4.9
장애 여부	모름/무응답	(2)		50.0	50.0	
	장애가 있다	(182)	41.8	57.7		0.5
	장애가 없다	(219)		0.9	98.6	0.5
혼인 여부	모름/무응답	(4)				100.0
	기혼	(146)	15.8	26.7	56.8	0.7
	이혼 또는 별거	(112)	24.1	28.6	45.5	1.8
	사별 후 독신	(79)	11.4	30.4	58.2	
	미혼(19세 이상)	(48)	25.0	16.7	56.3	2.1
	그 외 기타	(13)	23.1	15.4	53.8	7.7
학력	모름/무응답	(7)	28.6	28.6	28.6	14.3
	무학	(51)	21.6	27.5	51.0	
	중졸이하	(175)	15.4	32.0	50.3	2.3
	고졸이하	(126)	23.0	20.6	55.6	0.8
	대졸이하	(37)	10.8	21.6	67.6	
주택 종류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모름/무응답	(13)	30.8	15.4	46.2	7.7
	단독주택	(196)	17.9	27.6	53.1	1.5
	아파트	(74)	18.9	28.4	52.7	
	다가구(연립)주택	(85)	14.1	21.2	62.4	2.4
	무허가주택	(11)	18.2	36.4	45.5	
	구호시설	(1)		100.0		
주거 형태	기타	(30)	36.7	23.3	40.0	
	모름/무응답	(8)	25.0	25.0	37.5	12.5
	자가	(107)	16.8	29.9	52.3	0.9
	전세(1억 미만)	(28)	21.4	21.4	53.6	3.6
	월세	(129)	14.0	25.6	58.1	2.3
	장기(영구)임대	(51)	27.5	31.4	41.2	
기타	(81)	23.5	22.2	54.3		
모름/무응답	(9)	11.1	22.2	55.6	11.1	

3.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61.0%로 높았으며,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20.5%, ‘크고 작은 잔병이 많다’ 12.1%,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하다’ 5.7%로 각각 응답되었다. 한편, ‘모름/무응답’은 0.7%였다.

‘만성질환이 있다’는 경우, 긴급 수급자(62.4%)가 긴급 탈락자(56.4%)에 비해 높았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긴급 탈락자(25.5%)가 긴급 수급자(19.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3】 본인의 만성질환 여부

	단위:%	사례수	만성질환 있음	크고 작은 잔병 많음	잔병은 없으나 거동이 불편함	비교적 건강한 편	모름/ 무응답
■ 전 체 ■		(405)	61.0	12.1	5.7	20.5	0.7
구분	긴급 수급자	(311)	62.4	11.9	5.8	19.0	1.0
	긴급 탈락자	(94)	56.4	12.8	5.3	25.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46.0	20.6	6.3	23.8	3.2
	6대 광역시	(92)	65.2	6.5	2.2	25.0	1.1
	중소도시	(127)	76.4	6.3	4.7	12.6	
	기타 농어촌	(123)	49.6	17.9	8.9	23.6	
성별	남성	(203)	64.5	8.4	6.4	20.2	0.5
	여성	(202)	57.4	15.8	5.0	20.8	1.0
연령별	10대	(12)	33.3	8.3		58.3	
	20대	(11)	27.3	9.1	9.1	54.5	
	30대	(35)	42.9	2.9		54.3	
	40대	(117)	54.7	13.7	6.8	23.1	1.7
	50대	(100)	60.0	14.0	11.0	15.0	
	60대	(65)	76.9	13.8		9.2	
	70대	(51)	80.4	13.7	2.0	3.9	
	80대 이상	(11)	63.6		18.2	9.1	9.1
	모름/무응답	(3)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43.5	4.3		52.2	
	일시고용	(16)	18.8	25.0		56.3	
	일용직	(29)	10.3	13.8	10.3	65.5	
	자영업	(10)	50.0	30.0		20.0	
	자활근로	(7)	28.6	28.6		42.9	
	실업	(26)	57.7	3.8	3.8	30.8	3.8
	비경제활동	(251)	72.9	12.4	6.8	7.6	0.4
	기타	(41)	58.5	7.3	4.9	26.8	2.4
	모름/무응답	(2)	10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69.8	14.3	9.3	6.0	0.5
	장애가 없다	(219)	53.4	10.5	2.7	32.9	0.5
	모름/무응답	(4)	75.0				25.0
혼인 여부	기혼	(146)	61.0	12.3	4.8	21.9	
	이혼 또는 별거	(112)	59.8	14.3	7.1	17.9	0.9
	사별 후 독신	(79)	67.1	11.4	3.8	16.5	1.3
	미혼(19세 이상)	(48)	60.4	8.3	8.3	22.9	
	그 외 기타	(13)	38.5	7.7		53.8	
	모름/무응답	(7)	57.1	14.3	14.3		14.3
학력	무학	(51)	66.7	19.6	3.9	9.8	
	중졸이하	(175)	70.3	9.7	6.9	12.0	1.1
	고졸이하	(126)	52.4	9.5	6.3	31.7	
	대졸이하	(37)	43.2	18.9	2.7	35.1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모름/무응답	(13)	53.8	15.4		23.1	7.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62.8	11.7	5.6	19.9	
	아파트	(74)	67.6	12.2	4.1	16.2	
	다가구(연립)주택	(85)	55.3	9.4	3.5	30.6	1.2
	무허가주택	(11)	54.5	27.3	9.1	9.1	
	구호시설	(1)	100.0				
	기타	(30)	53.3	13.3	13.3	16.7	3.3
	모름/무응답	(8)	50.0	25.0	12.5	12.5	
주거 형태	자가	(107)	64.5	14.0	5.6	15.9	
	전세(1억 미만)	(28)	67.9			32.1	
	월세	(129)	52.7	13.2	6.2	27.1	0.8
	장기(영구)임대	(51)	60.8	21.6	3.9	11.8	2.0
	기타	(81)	67.9	6.2	7.4	18.5	
	모름/무응답	(9)	55.6	11.1	11.1	11.1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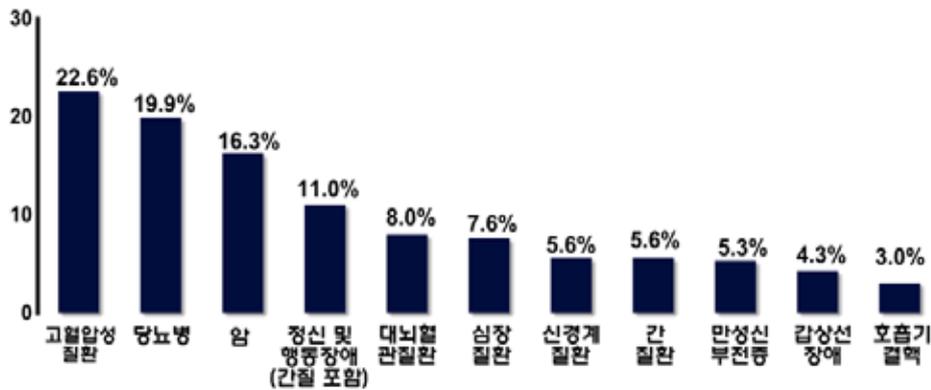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N=301명)에게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22.6%)과 ‘당뇨병’(19.9%)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암’(16.3%) > ‘정신 및 행동장애’(11.0%) > ‘대뇌혈관질환’(8.0%) > ‘심장질환’(7.6%) > ‘신경계질환’, ‘간 질환’(5.6%) > ‘만성신부전증’(5.3%) > ‘갑상선 장애’(4.3%) > ‘호흡기결핵’(3.0%) 순으로 응답되며, 그 외 기타질환은 42.9%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응답된 ‘고혈압성 질환’은 긴급 탈락자 집단에서 26.6%로, 긴급 수급자 집단(21.5%)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당뇨병’이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은 긴급 수급자(19.4%, 11.0%)와 긴급 탈락자(21.9%, 10.9%)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Base: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이 있다는 응답자 301명)

【표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단위:%	사례수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 질환
전체	(301)	22.6	19.9	11.0	3.0	7.6	8.0
구분							
긴급 수급자	(237)	21.5	19.4	11.0	3.8	8.9	8.0
긴급 탈락자	(64)	26.6	21.9	10.9		3.1	7.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5)	20.0	15.6	8.9	2.2	8.9	4.4
6대 광역시	(67)	20.9	20.9	11.9	1.5	6.0	6.0
중소도시	(110)	12.7	18.2	8.2	4.5	6.4	12.7
기타 농어촌	(79)	39.2	24.1	15.2	2.5	10.1	5.1
성별							
남성	(152)	17.1	19.7	10.5	3.3	8.6	7.2
여성	(149)	28.2	20.1	11.4	2.7	6.7	8.7
연령별							
10대	(5)		20.0	20.0			20.0
20대	(5)			20.0			
30대	(16)	18.8	25.0	6.3		6.3	6.3
40대	(83)	13.3	16.9	13.3	3.6	6.0	7.2
50대	(77)	20.8	20.8	14.3	3.9	5.2	7.8
60대	(57)	29.8	24.6	10.5	1.8	7.0	7.0
70대	(47)	38.3	21.3	2.1	4.3	14.9	10.6
80대 이상	(8)	25.0		12.5		25.0	12.5
모름/무응답	(3)	33.3	33.3				
고용 형태							
상시고용	(11)	27.3	36.4	27.3		18.2	
임시고용	(7)	28.6	14.3				
일용직	(8)	25.0	25.0			12.5	
자영업	(8)	37.5	25.0	25.0			12.5
자활근로	(4)	25.0	25.0				
실업	(17)	23.5	17.6			11.8	23.5
비경제활동	(216)	22.2	20.4	10.6	3.2	7.4	8.3
기타	(28)	17.9	10.7	14.3	7.1	7.1	3.6
모름/무응답	(2)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55)	27.7	20.6	12.3	3.2	7.1	7.7
장애가 없다	(143)	17.5	19.6	9.8	2.8	8.4	8.4
모름/무응답	(3)						
혼인 여부							
기혼	(108)	23.1	13.9	11.1	1.9	8.3	5.6
이혼 또는 별거	(84)	15.5	27.4	10.7	4.8	4.8	9.5
사별 후 독신	(62)	38.7	25.8	6.5	1.6	8.1	9.7
미혼(19세 이상)	(36)	11.1	11.1	13.9	5.6	8.3	2.8
그 외 기타	(6)		16.7	16.7		16.7	33.3
모름/무응답	(5)	40.0	20.0	40.0		20.0	20.0
학력							
무학	(44)	34.1	34.1	11.4		9.1	11.4
중졸이하	(138)	26.8	22.5	8.7	3.6	8.0	5.1
고졸이하	(85)	12.9	11.8	8.2	3.5	8.2	10.6
대졸이하	(23)	13.0	8.7	30.4	4.3		4.3
대학원이상	(2)						
모름/무응답	(9)	22.2	22.2	22.2		11.1	22.2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2)	26.1	23.2	7.0	2.1	7.0	8.5
아파트	(62)	24.2	16.1	16.1	6.5	8.1	9.7
다가구(연립)주택	(56)	12.5	19.6	8.9	3.6	8.9	7.1
무허가주택	(10)	20.0	10.0	1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3)	17.4	8.7	21.7		13.0	4.3
모름/무응답	(7)	42.9	28.6	28.6			14.3
주거 형태							
자가	(79)	25.3	21.5	3.8	1.3	10.1	7.6
전세(1억 미만)	(19)	26.3	21.1	10.5		5.3	
월세	(91)	14.3	17.6	11.0	3.3	7.7	6.6
장기(영구)임대	(43)	27.9	14.0	23.3	9.3	7.0	11.6
기타	(62)	24.2	25.8	9.7	1.6	6.5	9.7
모름/무응답	(7)	42.9	14.3	28.6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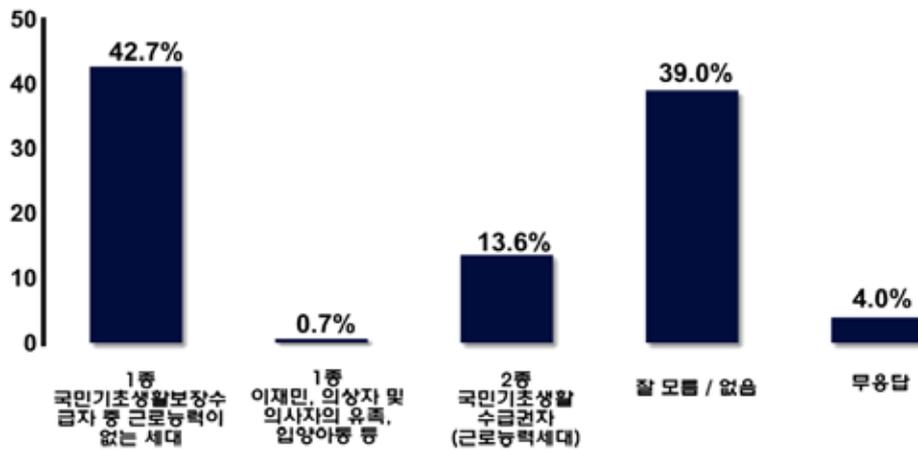
【표 4】 현재 앓고 있는 질환(복수응답) _ 계속

	단위:%	사례수	신경계질환	암	감상전의 장애	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기타
■ 전 체 ■		(301)	5.6	16.3	4.3	5.6	5.3	42.9
구분	긴급 수급자	(237)	5.5	15.2	3.0	6.8	5.5	43.9
	긴급 탈락자	(64)	6.3	20.3	9.4	1.6	4.7	39.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5)	2.2	17.8	8.9	6.7	6.7	40.0
	6대 광역시	(67)	7.5	10.4	10.4	4.5	1.5	46.3
	중소도시	(110)	7.3	23.6	0.9	5.5	6.4	50.0
	기타 농어촌	(79)	3.8	10.1	1.3	6.3	6.3	31.6
성별	남성	(152)	5.9	19.7	2.0	7.2	8.6	36.2
	여성	(149)	5.4	12.8	6.7	4.0	2.0	49.7
연령별	10대	(5)			20.0			60.0
	20대	(5)	20.0				20.0	40.0
	30대	(16)		6.3		6.3	18.8	62.5
	40대	(83)	12.0	13.3	6.0	8.4	6.0	41.0
	50대	(77)	2.6	14.3	5.2	9.1	3.9	44.2
	60대	(57)	5.3	24.6	1.8		3.5	36.8
	70대	(47)		23.4	4.3	4.3	2.1	40.4
	80대 이상	(8)	12.5					62.5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고용 형태	상시고용	(11)	9.1	9.1		18.2		45.5
	임시고용	(7)		14.3			14.3	71.4
	일용직	(8)						62.5
	자영업	(8)		12.5	12.5		12.5	37.5
	자활근로	(4)		25.0	25.0			50.0
	실업	(17)		11.8	5.9			35.3
	비경제활동	(216)	6.5	17.6	2.8	6.5	5.6	41.2
	기타	(28)	7.1	17.9	14.3	3.6	7.1	46.4
모름/무응답	(2)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55)	7.7	14.2	5.8	5.2	8.4	38.7
	장애가 없다	(143)	3.5	18.2	2.8	5.6	2.1	47.6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혼인 여부	기혼	(108)	7.4	20.4	5.6	3.7	5.6	44.4
	이혼 또는 별거	(84)	4.8	15.5	7.1	6.0	3.6	34.5
	사별 후 독신	(62)	3.2	14.5	1.6	4.8	1.6	54.8
	미혼(19세 이상)	(36)	5.6	13.9		13.9	16.7	38.9
	그 외 기타	(6)	16.7					50.0
모름/무응답	(5)						20.0	
학력	무학	(44)	6.8	15.9		2.3	4.5	36.4
	중졸이하	(138)	5.1	18.8	5.1	5.1	5.1	44.9
	고졸이하	(85)	5.9	14.1	5.9	9.4	4.7	38.8
	대졸이하	(23)	8.7	13.0	4.3		13.0	56.5
	대학원이상	(2)		50.0				100.0
	모름/무응답	(9)				11.1		33.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42)	5.6	15.5	3.5	4.9	7.0	43.0
	아파트	(62)	9.7	12.9	8.1	6.5	4.8	38.7
	다가구(연립)주택	(56)	3.6	17.9	1.8	5.4	1.8	42.9
	무허가주택	(10)	10.0	30.0		20.0		60.0
	구호시설	(1)						
	기타	(23)		26.1	8.7	4.3	8.7	52.2
모름/무응답	(7)						28.6	
주거 형태	자가	(79)	6.3	19.0	5.1	3.8	6.3	44.3
	전세(1억 미만)	(19)	5.3	21.1	15.8	10.5	5.3	42.1
	월세	(91)	5.5	16.5	2.2	8.8	3.3	49.5
	장기(영구)임대	(43)	4.7	9.3	7.0	4.7	4.7	34.9
	기타	(62)	6.5	17.7	1.6	3.2	8.1	38.7
모름/무응답	(7)						28.6	

5. 의료급여 수급형태

현재 의료급여 수급형태를 질문한 결과,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2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3.6%, ‘1종-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등’이 0.7%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응답된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의 경우, 긴급 수급자(47.6%)와 긴급 탈락자(26.6%)간에 차이가 나타난 반면, ‘2종-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응답은 긴급 수급자(13.8%)와 긴급 탈락자(13.6%)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5】 의료급여 수급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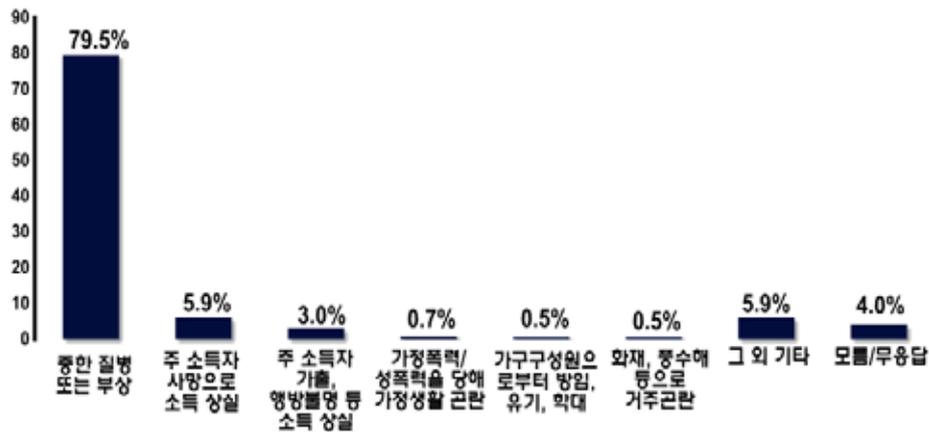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종 - 근로 능력 없는 세대 외	1종 - 이 재민 의상자, 발족 외 의사자의 유족 외	2종-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잘 모름 / 없음	무응답	
■ 전 체 ■	(405)	42.7	0.7	13.6	39.0	4.0	
구분	긴급 수급자	(311)	47.6	1.0	13.8	34.4	3.2
	긴급 탈락자	(94)	26.6		12.8	54.3	6.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9.0	1.6	9.5	68.3	1.6
	6대 광역시	(92)	28.3	1.1	23.9	43.5	3.3
	중소도시	(127)	57.5	0.8	13.4	24.4	3.9
	기타 농어촌	(123)	50.4		8.1	35.8	5.7
성별	남성	(203)	43.8	1.5	14.3	36.0	4.4
	여성	(202)	41.6		12.9	42.1	3.5
연령별	10대	(12)	58.3		8.3	33.3	
	20대	(11)	36.4		9.1	54.5	
	30대	(35)	20.0		8.6	62.9	8.6
	40대	(117)	36.8	0.9	19.7	40.2	2.6
	50대	(100)	45.0	1.0	18.0	34.0	2.0
	60대	(65)	49.2		9.2	35.4	6.2
	70대	(51)	45.1		5.9	41.2	7.8
	80대 이상	(11)	81.8	9.1		9.1	
	모름/무응답	(3)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13.0		17.4	69.6	
	일시고용	(16)	18.8		6.3	75.0	
	일용직	(29)	3.4		17.2	75.9	3.4
	자영업	(10)	10.0		10.0	80.0	
	자활근로	(7)	28.6		28.6	42.9	
	실업	(26)	38.5		3.8	50.0	7.7
	비경제활동	(251)	55.0	1.2	13.1	26.3	4.4
	기타	(41)	34.1		17.1	43.9	4.9
모름/무응답	(2)	50.0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48.4	0.5	13.2	32.4	5.5
	장애가 없다	(219)	37.9	0.9	14.2	44.7	2.3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혼인 여부	기혼	(146)	30.8	1.4	17.1	46.6	4.1
	이혼 또는 별거	(112)	49.1		9.8	34.8	6.3
	사별 후 독신	(79)	48.1		16.5	32.9	2.5
	미혼 (19세 이상)	(48)	54.2	2.1	6.3	37.5	
	그 외 기타	(13)	46.2		23.1	30.8	
	모름/무응답	(7)	42.9			42.9	14.3
학력	무학	(51)	58.8		3.9	35.3	2.0
	중졸이하	(175)	49.1	0.6	16.0	29.1	5.1
	고졸이하	(126)	38.1	0.8	11.9	46.8	2.4
	대졸이하	(37)	18.9	2.7	21.6	51.4	5.4
	대학원이상	(3)				100.0	
	모름/무응답	(13)	15.4		15.4	61.5	7.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48.5	0.5	8.7	39.3	3.1
	아파트	(74)	40.5	2.7	25.7	27.0	4.1
	다가구(연립)주택	(85)	30.6		18.8	47.1	3.5
	무허가주택	(11)	63.6		18.2	9.1	9.1
	구호시설	(1)	100.0				
	기타	(30)	40.0		3.3	50.0	6.7
모름/무응답	(8)	25.0			62.5	12.5	
주거 형태	자가	(107)	43.9	0.9	7.5	40.2	7.5
	전세(1억 미만)	(28)	21.4		25.0	53.6	
	월세	(129)	38.8		13.2	45.0	3.1
	장기(영구)임대	(51)	43.1	3.9	23.5	27.5	2.0
	기타	(81)	55.6		12.3	29.6	2.5
	모름/무응답	(9)	33.3		11.1	44.4	11.1

6.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및 탈락자 모두(N=405명)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지원했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라는 응답이 79.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주 소득자가 사망하여 소득 상실’ 5.9%, ‘주 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 상실’이 3.0%,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 곤란’이 0.7%,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와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주거곤란’이 각각 0.5%로 나타났다.

한편, ‘그 외 기타’ 응답은 5.9%, ‘모름/무응답’은 4.0%였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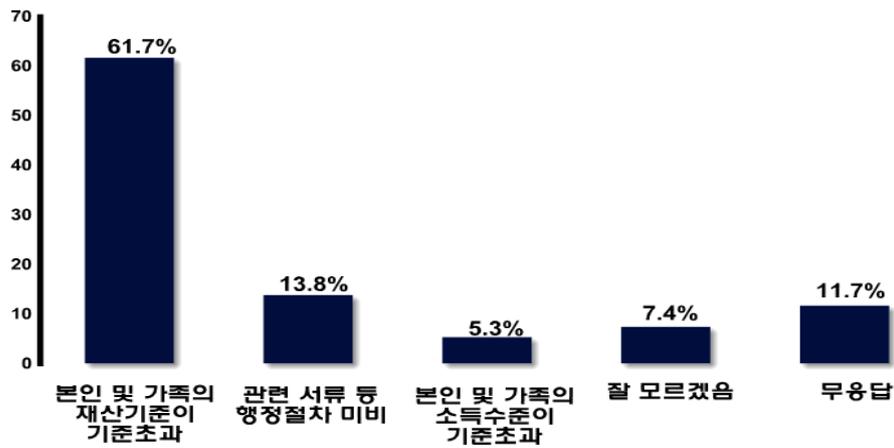
【표 6】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이유

단위:%	사례수	주 소득자의 사망	주 소득자의 가출, 행방 불명 등	중한 질병/부상	방입/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풍수해 등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405)	5.9	3.0	79.5	0.5	0.7	0.5	5.9	4.0	
구분	긴급 수급자	(311)	6.1	2.9	80.1	0.6	0.6	0.6	5.5	3.5
	긴급 탈락자	(94)	5.3	3.2	77.7		1.1		7.4	5.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3.2	63.5	1.6			14.3	9.5
	6대 광역시	(92)	2.2	2.2	91.3				1.1	3.3
	중소도시	(127)	1.6	2.4	87.4		1.6	0.8	4.7	1.6
	기타 농어촌	(123)	12.2	4.1	70.7	0.8	0.8	0.8	6.5	4.1
성별	남성	(203)	3.4	1.0	84.2		0.5	0.5	4.9	5.4
	여성	(202)	8.4	5.0	74.8	1.0	1.0	0.5	6.9	2.5
연령별	10대	(12)	8.3	16.7	58.3		8.3			8.3
	20대	(11)			72.7				18.2	9.1
	30대	(35)	2.9	11.4	71.4		2.9		8.6	2.9
	40대	(117)	6.0	2.6	77.8	0.9	0.9		6.0	6.0
	50대	(100)	2.0	2.0	83.0	1.0		1.0	8.0	3.0
	60대	(65)	13.8		81.5				1.5	3.1
	70대	(51)	3.9	2.0	88.2				5.9	
	80대 이상	(11)	18.2		63.6			9.1		9.1
	모름/무응답	(3)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8.7	4.3	69.6				8.7
일시고용		(16)	6.3		68.8				18.8	6.3
일용직		(29)	3.4	13.8	58.6		6.9		17.2	
자영업		(10)	10.0		50.0			10.0	30.0	
자활근로		(7)			100.0					
실업		(26)	3.8		76.9				11.5	7.7
비경제활동		(251)	6.4	2.0	85.7	0.8			2.8	2.4
기타		(41)	4.9	4.9	70.7		2.4	2.4	2.4	12.2
모름/무응답		(2)			10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4.9	1.1	86.8	0.5	0.5	0.5	2.7	2.7
	장애가 없다	(219)	6.8	4.6	73.5	0.5	0.9	0.5	8.7	4.6
	모름/무응답	(4)			75.0					25.0
혼인여부	기혼	(146)	3.4	2.1	79.5	0.7		0.7	8.2	5.5
	이혼 또는 별거	(112)	2.7	5.4	80.4	0.9	1.8		6.3	2.7
	사별 후 독신	(79)	17.7	1.3	77.2			1.3	1.3	1.3
	미혼(19세 이상)	(48)	2.1		91.7				4.2	2.1
	그 외 기타	(13)	7.7	15.4	61.5		7.7			7.7
	모름/무응답	(7)			42.9				28.6	28.6
학력	무학	(51)	5.9		86.3			2.0	3.9	2.0
	중졸이하	(175)	6.3	0.6	85.1		0.6	0.6	4.0	2.9
	고졸이하	(126)	4.8	7.9	75.4		1.6		8.7	1.6
	대졸이하	(37)	8.1	2.7	62.2	5.4			8.1	13.5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13)			69.2				7.7	23.1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6.6	2.6	81.6			0.5	5.6	3.1
	아파트	(74)	10.8	2.7	71.6	1.4	1.4		4.1	8.1
	다가구(연립)주택	(85)	2.4	3.5	83.5		2.4		7.1	1.2
	무허가주택	(11)			10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30)	3.3	6.7	70.0	3.3		3.3	10.0	3.3
모름/무응답	(8)			62.5				12.5	25.0	
주거형태	자가	(107)	8.4	0.9	80.4		0.9	0.9	4.7	3.7
	전세(1억 미만)	(28)		7.1	89.3					3.6
	월세	(129)	3.9	4.7	76.7		1.6		10.1	3.1
	장기(영구)임대	(51)	7.8		76.5	3.9			5.9	5.9
	기타	(81)	7.4	3.7	82.7			1.2	2.5	2.5
	모름/무응답	(9)			66.7				11.1	22.2

7. 탈락 이유

긴급복지지원 탈락자(N=94명)에게 탈락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본인 및 가족의 재산이 기준 초과’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른 이유로는 ‘관련 서류 등 행정절차 미비’ 13.8%, ‘본인 및 가족의 소득수준 기준 초과’ 5.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음’은 7.4%, ‘무응답’은 11.7%였다.



(Base: 긴급복지지원 탈락자 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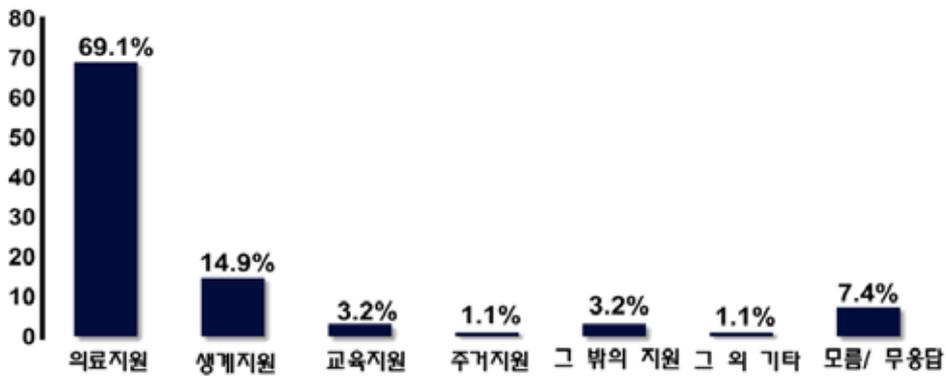
【표 7】 탈락이유

단위:%		사례수	소득 기준초과	재산 기준초과	행정절차미비	잘모르겠다	무응답
□ 전 체 □		(94)	5.3	61.7	13.8	7.4	11.7
구분	긴급 탈락자	(94)	5.3	61.7	13.8	7.4	11.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	15.4	30.8	23.1	7.7	23.1
	6대 광역시	(24)	4.2	66.7	20.8	4.2	4.2
	중소도시	(29)	3.4	62.1	17.2	3.4	13.8
	기타 농어촌	(28)	3.6	71.4		14.3	10.7
성별	남성	(43)	2.3	60.5	18.6	4.7	14.0
	여성	(51)	7.8	62.7	9.8	9.8	9.8
연령별	10대	(2)				50.0	50.0
	20대	(4)		50.0	25.0		25.0
	30대	(12)	16.7	50.0	16.7		16.7
	40대	(23)	4.3	43.5	30.4	8.7	13.0
	50대	(21)	4.8	57.1	9.5	9.5	19.0
	60대	(13)		100.0			
	70대	(17)	5.9	82.4	5.9	5.9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형태	상시고용	(7)		71.4	14.3	14.3	
	임시고용	(3)		33.3	66.7		
	일용직	(6)	16.7	16.7	50.0		16.7
	자영업	(2)		50.0		50.0	
	자활근로	(2)		50.0	50.0		
	실업	(2)		50.0			50.0
	비경제활동	(57)	7.0	66.7	10.5	5.3	10.5
	기타	(13)		69.2		15.4	15.4
모름/무응답	(2)		50.0			5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45)	6.7	75.6	4.4	4.4	8.9
	장애가 없다	(49)	4.1	49.0	22.4	10.2	14.3
혼인여부	기혼	(37)	2.7	70.3	16.2	8.1	2.7
	이혼 또는 별거	(20)	10.0	35.0	25.0	5.0	25.0
	사별 후 독신	(21)	9.5	71.4	4.8	9.5	4.8
	미혼 (19세이상)	(11)		63.6	9.1		27.3
	그 외 기타	(2)		50.0		50.0	
	모름/무응답	(3)		66.7			33.3
학력	무학	(12)		75.0	8.3	16.7	
	중졸이하	(35)	8.6	68.6	8.6	5.7	8.6
	고졸이하	(34)	5.9	50.0	20.6	8.8	14.7
	대졸이하	(7)		71.4	14.3		14.3
	모름/무응답	(6)		50.0	16.7		33.3
주택종류	단독주택	(45)		73.3	11.1	11.1	4.4
	아파트	(14)	7.1	71.4	7.1		14.3
	다가구(연립)주택	(24)	8.3	37.5	29.2	4.2	20.8
	무허가주택	(1)	100.0				
	기타	(6)	16.7	50.0		16.7	16.7
모름/무응답	(4)		75.0			25.0	
주거형태	자가	(27)	3.7	88.9	3.7		3.7
	전세(1억 미만)	(11)	9.1	81.8	9.1		
	월세	(26)		26.9	30.8	19.2	23.1
	장기(영구)임대	(10)	10.0	80.0			10.0
	기타	(17)	11.8	47.1	17.6	11.8	11.8
	모름/무응답	(3)		66.7			33.3

8. 신청한 긴급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법 탈락자(N=94명)에게 신청한 긴급지원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의료지원’이 6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생계지원’ 14.9%, ‘교육지원’ 3.2%, ‘주거지원’ 1.1%였으며, 기타 응답은 1.1%, ‘모름/무응답’은 7.4%였다.



(Base: 긴급복지지원 탈락자 94명)

【표 8】 신청한 긴급지원의 종류

단위:%		사례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그 외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94)	14.9	69.1	1.1	3.2	3.2	1.1	7.4
구분	긴급 탈락자	(94)	14.9	69.1	1.1	3.2	3.2	1.1	7.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3)	23.1	61.5		7.7			7.7
	6대 광역시	(24)	16.7	79.2	4.2				
	중소도시	(29)	24.1	65.5		6.9			3.4
	기타 농어촌	(28)		67.9			10.7	3.6	17.9
성별	남성	(43)	18.6	69.8		4.7	2.3		4.7
	여성	(51)	11.8	68.6	2.0	2.0	3.9	2.0	9.8
연령별	10대	(2)				50.0			50.0
	20대	(4)		100.0					
	30대	(12)	16.7	66.7		8.3			8.3
	40대	(23)	26.1	52.2	4.3	4.3		4.3	8.7
	50대	(21)	19.0	76.2			4.8		
	60대	(13)		92.3					7.7
	70대	(17)	11.8	64.7			11.8		11.8
	모름/무응답	(2)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7)	57.1	28.6			14.3		
	임시고용	(3)		66.7		33.3			
	일용직	(6)	50.0	33.3		16.7			
	자영업	(2)	50.0	50.0					
	자활근로	(2)	50.0		50.0				
	실업	(2)		100.0					
	비경제활동	(57)	8.8	78.9			3.5	1.8	7.0
	기타	(13)		69.2		7.7			23.1
모름/무응답	(2)		10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45)	6.7	77.8	2.2		4.4		8.9
	장애가 없다	(49)	22.4	61.2		6.1	2.0	2.0	6.1
혼인 여부	기혼	(37)	18.9	70.3		2.7	5.4	2.7	
	이혼 또는 별거	(20)	20.0	50.0	5.0	5.0			20.0
	사별 후 독신	(21)	9.5	76.2			4.8		9.5
	미혼(19세 이상)	(11)	9.1	90.9					
	그 외 기타	(2)		50.0		50.0			
	모름/무응답	(3)		66.7					33.3
학력	무학	(12)	8.3	58.3			16.7		16.7
	중졸이하	(35)	5.7	88.6			2.9		2.9
	고졸이하	(34)	23.5	61.8	2.9	5.9		2.9	2.9
	대졸이하	(7)	14.3	57.1		14.3			14.3
	모름/무응답	(6)	33.3	33.3					33.3
주택 종류	단독주택	(45)	8.9	71.1	2.2	2.2	6.7	2.2	6.7
	아파트	(14)	28.6	57.1					14.3
	다가구(연립)주택	(24)	12.5	79.2		8.3			
	무허가주택	(1)		100.0					
	기타	(6)	33.3	50.0					16.7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주거 형태	자가	(27)	7.4	77.8			7.4		7.4
	전세(1억 미만)	(11)	18.2	81.8					
	월세	(26)	23.1	57.7		11.5	3.8		3.8
	장기(영구)임대	(10)	20.0	70.0					10.0
	기타	(17)	11.8	64.7	5.9			5.9	11.8
모름/무응답	(3)		6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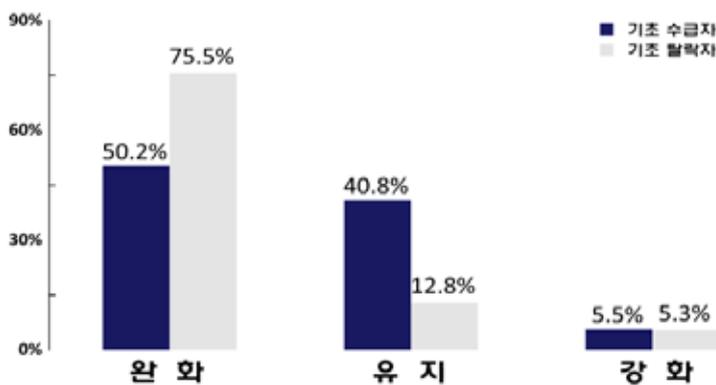
9.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수급자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탈락자의 경우 75.5%로 전체 응답자의 3/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에서는 ‘완화’ 50.2%, ‘유지’ 40.8%, ‘강화’ 5.5%로 나타났으며, 탈락자에서는 ‘완화’ 75.5%, ‘유지’ 12.8%, ‘강화’ 5.3%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대폭 10.6% + 조금 45.4%)로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5.4%(조금 4.7% + 대폭 0.7%)에 그쳤다. 한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구분	완화	유지	강화	평점(5점 기준)
■ 전체 ■	56.0%	34.3%	5.4%	3.63점
긴급 수급자 (311명)	50.2%	40.8%	5.5%	3.53점
긴급 탈락자 (94명)	75.5%	12.8%	5.3%	3.98점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9】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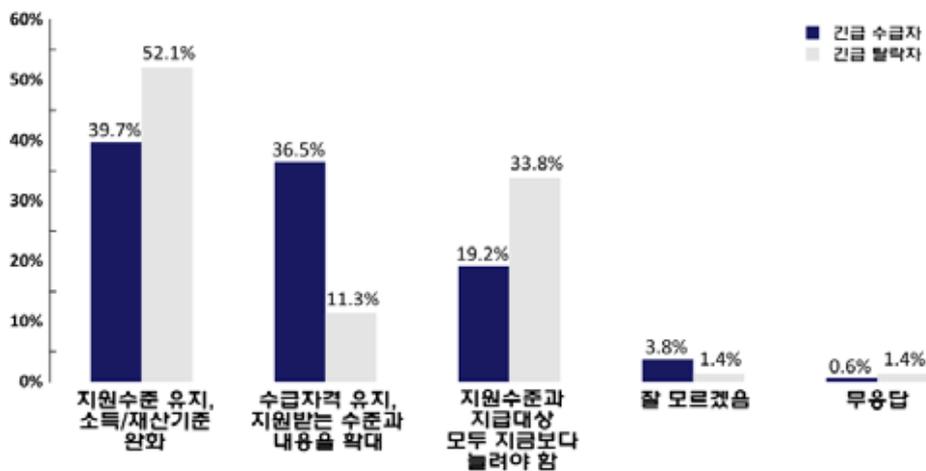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대폭 완화	조금 완화	현 수준 유지	조금 강화	대폭 강화	『안화』	『유지』	『강화』	모름/ 무응답	평점	
■ 전 체 ■	(405)	10.6	45.4	34.3	4.7	0.7	56.0	34.3	5.4	4.2	3.63	
구분	긴급 수급자	(311)	7.4	42.8	40.8	4.5	1.0	50.2	40.8	5.5	3.5	3.53
	긴급 탈락자	(94)	21.3	54.3	12.8	5.3		75.5	12.8	5.3	6.4	3.9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7.5	42.9	27.0	1.6		60.3	27.0	1.6	11.1	3.86
	6대 광역시	(92)	13.0	33.7	46.7	3.3	2.2	46.7	46.7	5.4	1.1	3.53
	중소도시	(127)	7.1	47.2	33.9	9.4		54.3	33.9	9.4	2.4	3.53
	기타 농어촌	(123)	8.9	53.7	29.3	2.4	0.8	62.6	29.3	3.3	4.9	3.71
성별	남성	(203)	8.9	44.8	35.0	4.9	1.0	53.7	35.0	5.9	5.4	3.59
	여성	(202)	12.4	46.0	33.7	4.5	0.5	58.4	33.7	5.0	3.0	3.67
연령별	10대	(12)		33.3	25.0	16.7	8.3	33.3	25.0	25.0	16.7	3.00
	20대	(11)	9.1	36.4	45.5			45.5	45.5		9.1	3.60
	30대	(35)	25.7	42.9	25.7	2.9		68.6	25.7	2.9	2.9	3.94
	40대	(117)	14.5	39.3	35.0	6.0	0.9	53.8	35.0	6.8	4.3	3.63
	50대	(100)	5.0	53.0	33.0	4.0	1.0	58.0	33.0	5.0	4.0	3.59
	60대	(65)	7.7	49.2	36.9	3.1		56.9	36.9	3.1	3.1	3.63
	70대	(51)	7.8	51.0	35.3	3.9		58.8	35.3	3.9	2.0	3.64
	80대 이상	(11)	9.1	27.3	54.5			36.4	54.5		9.1	3.50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66.7		33.3		3.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13.0	30.4	34.8	21.7		43.5	34.8	21.7		3.35
	임시고용	(16)	18.8	56.3	12.5	6.3		75.0	12.5	6.3	6.3	3.93
	일용직	(29)	10.3	58.6	31.0			69.0	31.0			3.79
	자영업	(10)	10.0	50.0	40.0			60.0	40.0			3.70
	자활근로	(7)	28.6	42.9	28.6			71.4	28.6			4.00
	실업	(26)		42.3	50.0			42.3	50.0		7.7	3.46
	비경제활동	(251)	10.8	45.4	35.9	4.4	0.8	56.2	35.9	5.2	2.8	3.63
	기타	(41)	9.8	39.0	26.8	4.9	2.4	48.8	26.8	7.3	17.1	3.59
모름/무응답	(2)		100.0				100.0				4.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1.0	46.2	33.5	4.4	0.5	57.1	33.5	4.9	4.4	3.66
	장애가 없다	(219)	10.5	45.2	34.7	5.0	0.9	55.7	34.7	5.9	3.7	3.62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50.0		25.0	3.33
혼인 여부	기혼	(146)	10.3	47.3	33.6	4.1	1.4	57.5	33.6	5.5	3.4	3.63
	이혼 또는 별거	(112)	8.0	50.9	33.9	2.7		58.9	33.9	2.7	4.5	3.67
	사별 후 독신	(79)	12.7	39.2	38.0	8.9		51.9	38.0	8.9	1.3	3.56
	미혼(19세 이상)	(48)	16.7	39.6	35.4	2.1	2.1	56.3	35.4	4.2	4.2	3.70
	그 외 기타	(13)		46.2	23.1	15.4		46.2	23.1	15.4	15.4	3.36
	모름/무응답	(7)	14.3	28.6	28.6			42.9	28.6		28.6	3.80
학력	무학	(51)	9.8	43.1	45.1	2.0		52.9	45.1	2.0		3.61
	중졸이하	(175)	8.0	48.6	36.0	4.0	0.6	56.6	36.0	4.6	2.9	3.61
	고졸이하	(126)	14.3	40.5	32.5	7.1	1.6	54.8	32.5	8.7	4.0	3.61
	대졸이하	(37)	10.8	48.6	29.7			59.5	29.7		10.8	3.79
	대학원이상	(3)	33.3	66.7				100.0				4.33
모름/무응답	(13)	7.7	46.2	7.7	15.4		53.8	7.7	15.4	23.1	3.6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9.2	50.5	32.7	4.6	0.5	59.7	32.7	5.1	2.6	3.65
	아파트	(74)	10.8	43.2	32.4	5.4		54.1	32.4	5.4	8.1	3.65
	다가구(연립)주택	(85)	10.6	42.4	40.0	2.4	2.4	52.9	40.0	4.7	2.4	3.58
	무허가주택	(11)	18.2	18.2	63.6			36.4	63.6			3.55
	구호시설	(1)	100.0					100.0				5.00
	기타	(30)	13.3	43.3	26.7	10.0		56.7	26.7	10.0	6.7	3.64
모름/무응답	(8)	12.5	25.0	25.0	12.5		37.5	25.0	12.5	25.0	3.50	
주거 형태	자가	(107)	5.6	52.3	34.6	3.7	0.9	57.9	34.6	4.7	2.8	3.60
	전세(1억미만)	(28)	14.3	42.9	28.6	7.1	3.6	57.1	28.6	10.7	3.6	3.59
	월세	(129)	14.0	40.3	35.7	4.7	0.8	54.3	35.7	5.4	4.7	3.65
	장기(영구)임대	(51)	11.8	47.1	31.4	5.9		58.8	31.4	5.9	3.9	3.67
	기타	(81)	9.9	46.9	34.6	4.9		56.8	34.6	4.9	3.7	3.64
	모름/무응답	(9)	11.1	22.2	44.4			33.3	44.4		22.2	3.57

10.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N=227명)에게 개선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원수준 유지,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은 긴급 탈락자에서 52.1%로, 긴급 수급자의 응답 39.7%에 비해 높았으며,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을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의 경우, 긴급 수급자에서 36.5%로 긴급 탈락자(1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세부 응답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았다.

구분	지원수준 유지하되, 소득/재산 기준완화	수급자격 유지하되, 지원수준과 내용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 모두 늘려야	잘 모르겠다	모름/무응답
■ 전체 ■	43.6%	28.6%	23.8%	3.1%	0.9%
긴급 수급자 (156명)	39.7%	36.5%	19.2%	3.8%	0.6%
긴급 탈락자 (71명)	52.1%	11.3%	33.8%	1.4%	1.4%



(Base: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2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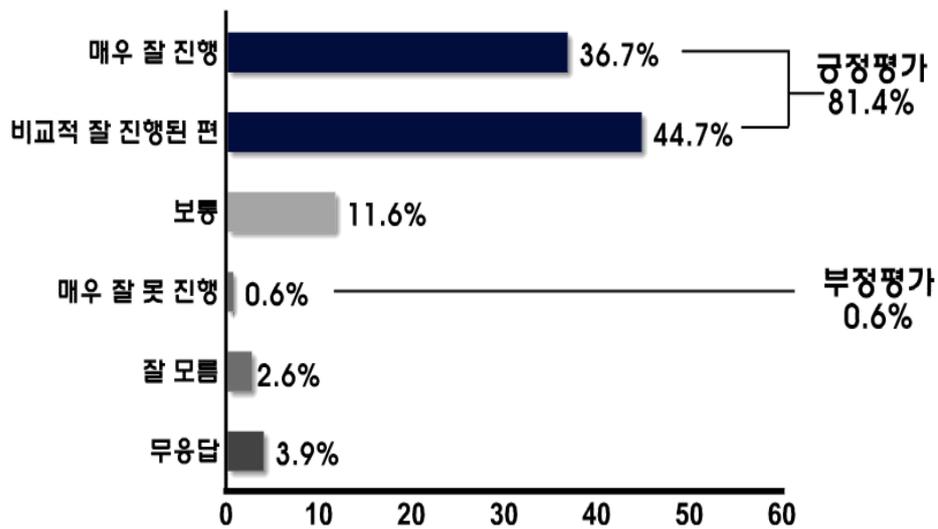
【표 10】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지원수준 유지하되, 소득/재산기준 완화	수급 자격은 유지하되, 지원받는 수준과 내용 확대	지원수준과 지급대상 모두 지급보다 늘려야함	잘 모르겠음	무응답
전체	(227)	43.6	28.6	23.8	3.1	0.9
구분	긴급 수급자 (156)	39.7	36.5	19.2	3.8	0.6
	긴급 탈락자 (71)	52.1	11.3	33.8	1.4	1.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38)	47.4	23.7	23.7	5.3	
	6대 광역시 (43)	51.2	23.3	23.3	2.3	
	중소도시 (69)	44.9	27.5	23.2	4.3	
	기타 농어촌 (77)	36.4	35.1	24.7	1.3	2.6
성별	남성 (109)	44.0	29.4	23.9	2.8	
	여성 (118)	43.2	28.0	23.7	3.4	1.7
연령별	10대 (4)	50.0	25.0	25.0		
	20대 (5)	20.0	40.0	40.0		
	30대 (24)	54.2	20.8	20.8	4.2	
	40대 (63)	39.7	34.9	19.0	4.8	1.6
	50대 (58)	39.7	24.1	32.8	3.4	
	60대 (37)	40.5	29.7	24.3	2.7	2.7
	70대 (30)	60.0	23.3	16.7		
	80대 이상 (4)	25.0	75.0			
	모름/무응답 (2)	50.0		5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0)	50.0	10.0	40.0		
	임시고용 (12)	58.3	8.3	16.7	16.7	
	일용직 (20)	40.0	25.0	30.0	5.0	
	자영업 (6)	50.0	16.7	33.3		
	자활근로 (5)	60.0	40.0			
	실업 (11)	36.4	27.3	36.4		
	비경제활동 (141)	41.1	31.9	22.7	2.8	1.4
	기타 (20)	55.0	30.0	15.0		
	모름/무응답 (2)		50.0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04)	41.3	30.8	25.0	1.9	1.0
	장애가 없다 (122)	45.9	26.2	23.0	4.1	0.8
	모름/무응답 (1)		100.0			
혼인 여부	기혼 (84)	48.8	25.0	22.6	3.6	
	이혼 또는 별거 (66)	31.8	39.4	25.8	3.0	
	사별 후 독신 (41)	41.5	24.4	26.8	2.4	4.9
	미혼(19세 이상) (27)	51.9	22.2	22.2	3.7	
	그 외 기타 (6)	66.7	16.7	16.7		
	모름/무응답 (3)	66.7	33.3			
학력	무학 (27)	48.1	37.0	14.8		
	중졸이하 (99)	40.4	27.3	26.3	5.1	1.0
	고졸이하 (69)	47.8	27.5	21.7	1.4	1.4
	대졸이하 (22)	36.4	31.8	31.8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57.1	28.6		14.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17)	43.6	29.9	23.9	2.6	
	아파트 (40)	47.5	27.5	20.0	5.0	
	다가구(연립)주택 (45)	40.0	31.1	20.0	4.4	4.4
	무허가주택 (4)	50.0	5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17)	41.2	11.8	47.1		
	모름/무응답 (3)	66.7	33.3			
주거 형태	자가 (62)	46.8	24.2	25.8	1.6	1.6
	전세(1억미만) (16)	43.8	12.5	31.3	6.3	6.3
	월세 (70)	40.0	34.3	24.3	1.4	
	장기(영구)임대 (30)	40.0	33.3	20.0	6.7	
	기타 (46)	45.7	28.3	21.7	4.3	
	모름/무응답 (3)	66.7	33.3			

11.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평가가 81.4%(매우 잘 진행 36.7% + 비교적 잘 진행된 편 4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정평가는 0.6%(매우 잘 못 진행 0.6%)에 그쳤다.

한편, ‘보통이다’는 11.6%, ‘질 모름’은 2.6%, ‘무응답’은 3.9%로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점은 4.2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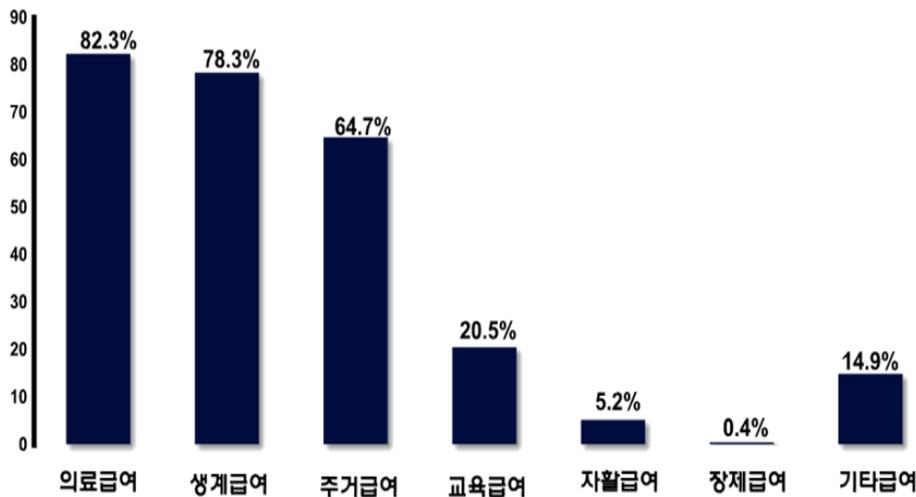
【표 11】 수급자 선정 및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단위:%	사례수	매우 잘 진행	비교적 잘 진행	보통	매우 잘못 진행	잘 모름	『긍정』	『보통』	『부정』	모름/무응답	평점	
■ 전 체 ■	(311)	36.7	44.7	11.6	0.6	2.6	81.4	11.6	0.6	3.9	4.25	
구분	간접 수급자	(311)	36.7	44.7	11.6	0.6	2.6	81.4	11.6	0.6	3.9	4.2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40.0	40.0	6.0	2.0		80.0	6.0	2.0	12.0	4.32
	6대 광역시	(68)	51.5	41.2	2.9		1.5	92.6	2.9		2.9	4.51
	중소도시	(98)	27.6	42.9	21.4	1.0	7.1	70.4	21.4	1.0		4.03
	기타 농어촌	(95)	33.7	51.6	10.5			85.3	10.5		4.2	4.24
성별	남성	(160)	36.9	43.1	13.8		2.5	80.0	13.8		3.8	4.25
	여성	(151)	36.4	46.4	9.3	1.3	2.6	82.8	9.3	1.3	4.0	4.25
연령별	10대	(10)	40.0	50.0	10.0			90.0	10.0			4.30
	20대	(7)	28.6	57.1				85.7			14.3	4.33
	30대	(23)	52.2	30.4	4.3		4.3	82.6	4.3		8.7	4.55
	40대	(94)	42.6	37.2	8.5	2.1	5.3	79.8	8.5	2.1	4.3	4.31
	50대	(79)	34.2	45.6	16.5		1.3	79.7	16.5		2.5	4.18
	60대	(52)	36.5	46.2	15.4			82.7	15.4		1.9	4.22
	70대	(34)	26.5	58.8	11.8		2.9	85.3	11.8			4.15
	80대 이상	(11)	9.1	63.6	9.1			72.7	9.1		18.2	4.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68.8	12.5	12.5	6.3		81.3	12.5	6.3		4.38
	임시고용	(13)	30.8	38.5	23.1			69.2	23.1		7.7	4.08
	일용직	(23)	39.1	34.8	13.0			73.9	13.0		13.0	4.30
	자영업	(8)	37.5	50.0		12.5		87.5		12.5		4.00
	자활근로	(5)	40.0	40.0	20.0			80.0	20.0			4.20
	실업	(24)	50.0	37.5	4.2			87.5	4.2		8.3	4.50
	비경제활동	(194)	29.9	51.0	12.9		4.1	80.9	12.9		2.1	4.18
기타	(28)	53.6	35.7	3.6			89.3	3.6		7.1	4.54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35.0	50.4	10.2		1.5	85.4	10.2		2.9	4.26
	장애가 없다	(170)	37.6	41.2	12.4	1.2	3.5	78.8	12.4	1.2	4.1	4.24
	모름/무응답	(4)	50.0		25.0			50.0	25.0		25.0	4.33
혼인 여부	기혼	(109)	40.4	36.7	13.8	0.9	2.8	77.1	13.8	0.9	5.5	4.26
	이혼 또는 별거	(92)	38.0	48.9	7.6		3.3	87.0	7.6		2.2	4.32
	사별 후 독신	(58)	25.9	55.2	13.8	1.7	1.7	81.0	13.8	1.7	1.7	4.07
	미혼(19세 이상)	(37)	45.9	40.5	8.1		2.7	86.5	8.1		2.7	4.40
	그 외 기타	(11)	18.2	45.5	27.3			63.6	27.3		9.1	3.9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4.33	
학력	무학	(39)	23.1	56.4	12.8		5.1	79.5	12.8		2.6	4.11
	중졸이하	(140)	36.4	42.9	15.0		2.9	79.3	15.0		2.9	4.23
	고졸이하	(92)	39.1	48.9	6.5	1.1	1.1	88.0	6.5	1.1	3.3	4.31
	대졸이하	(30)	53.3	30.0	3.3		3.3	83.3	3.3		10.0	4.58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33.3	33.3	33.3		2.67
	모름/무응답	(7)	28.6	28.6	28.6			57.1	28.6		14.3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34.4	45.0	13.9	0.7	3.3	79.5	13.9	0.7	2.6	4.20
	아파트	(60)	36.7	41.7	15.0	1.7		78.3	15.0	1.7	5.0	4.18
	다가구(연립)주택	(61)	41.0	49.2	3.3		1.6	90.2	3.3		4.9	4.40
	무허가주택	(10)	40.0	30.0	10.0		10.0	70.0	10.0		10.0	4.38
	구호시설	(1)	100.0					100.0				5.00
	기타	(24)	33.3	54.2	8.3		4.2	87.5	8.3			4.26
모름/무응답	(4)	50.0		25.0			50.0	25.0		25.0	4.33	
주거 형태	자가	(80)	32.5	56.3	5.0		3.8	88.8	5.0		2.5	4.29
	전세(1억미만)	(17)	41.2	29.4	17.6		5.9	70.6	17.6		5.9	4.27
	월세	(103)	44.7	32.0	14.6	1.0	1.9	76.7	14.6	1.0	5.8	4.29
	장기(영구)임대	(41)	36.6	46.3	14.6			82.9	14.6		2.4	4.23
	기타	(64)	28.1	57.8	7.8	1.6	3.1	85.9	7.8	1.6	1.6	4.16
모름/무응답	(6)	33.3		50.0			33.3	50.0		16.7	3.80	

12.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형태(복수응답)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 형태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의료급여’ 82.3% > ‘생계급여’ 78.3% > ‘주거급여’ 64.7% > ‘교육급여’ 20.5% > ‘자활급여’ 5.2% > ‘장제급여’ 0.4% > ‘기타급여’ 14.9%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급여’는 14.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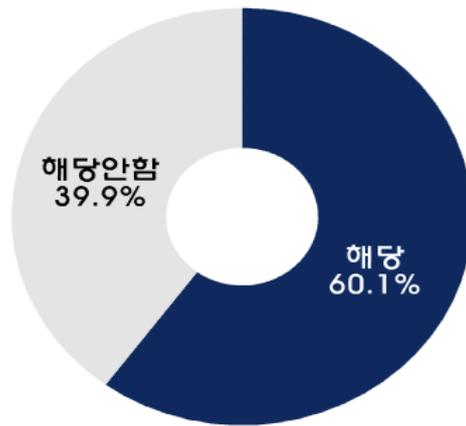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중 응답자 249명)

【표 12】 현재 받고 있는 기초 보장 수급형태(복수응답)

단위:%		사례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타
□ 전		(249)	78.3	64.7	82.3	20.5	0.4	5.2	14.9
구분	긴급 수급자	(249)	78.3	64.7	82.3	20.5	0.4	5.2	14.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6)	61.5	30.8	69.2	11.5			15.4
	6대 광역시	(59)	71.2	59.3	84.7	23.7		8.5	6.8
	중소도시	(92)	87.0	79.3	87.0	21.7	1.1	6.5	21.7
	기타 농어촌	(72)	79.2	62.5	79.2	19.4		2.8	12.5
성별	남성	(130)	78.5	68.5	89.2	13.8		5.4	12.3
	여성	(119)	78.2	60.5	74.8	27.7	0.8	5.0	17.6
연령별	10대	(9)	77.8	55.6	100.0	77.8			11.1
	20대	(5)	20.0	40.0	40.0				40.0
	30대	(17)	70.6	41.2	52.9	17.6			17.6
	40대	(75)	82.7	60.0	84.0	33.3	1.3	4.0	10.7
	50대	(65)	80.0	73.8	84.6	20.0		9.2	18.5
	60대	(41)	80.5	68.3	85.4	4.9		9.8	9.8
	70대	(28)	71.4	64.3	85.7				14.3
	80대 이상	(8)	87.5	87.5	87.5	12.5			37.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9)	44.4	44.4	88.9	22.2		11.1	11.1
	임시고용	(10)	60.0	30.0	50.0	20.0			20.0
	일용직	(18)	61.1	33.3	55.6	22.2			27.8
	자영업	(5)	80.0	40.0	80.0	20.0	20.0		
	자활근로	(4)	100.0	100.0	100.0	50.0		75.0	
	실업	(17)	70.6	41.2	88.2	23.5			11.8
	비경제활동	(165)	83.0	74.5	85.5	16.4		5.5	15.2
기타	(21)	81.0	57.1	85.7	42.9			9.5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15)	74.8	66.1	83.5	13.9		5.2	19.1
	장애가 없다	(131)	81.7	63.4	80.9	26.7	0.8	5.3	11.5
	모름/무응답	(3)	66.7	66.7	100.0				
혼인여부	기혼	(86)	72.1	55.8	82.6	29.1	1.2	4.7	17.4
	이혼 또는 별거	(74)	82.4	63.5	83.8	12.2		8.1	14.9
	사별 후 독신	(48)	81.3	72.9	79.2	20.8		6.3	10.4
	미혼(19세 이상)	(30)	76.7	73.3	76.7	3.3			16.7
	그 외 기타	(9)	88.9	77.8	100.0	55.6			11.1
	모름/무응답	(2)	100.0	100.0	100.0	50.0			
학력	무학	(32)	84.4	68.8	81.3	12.5			18.8
	중졸이하	(116)	83.6	74.1	86.2	17.2		6.0	11.2
	고졸이하	(72)	79.2	59.7	80.6	27.8	1.4	5.6	18.1
	대졸이하	(23)	52.2	34.8	78.3	30.4		8.7	8.7
	대학원이상	(2)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75.0				25.0	
주택종류	단독주택	(124)	83.1	65.3	83.9	25.8	0.8	2.4	14.5
	아파트	(47)	78.7	70.2	80.9	12.8		14.9	14.9
	다가구(연립)주택	(49)	69.4	59.2	83.7	20.4		4.1	12.2
	무허가주택	(10)	80.0	60.0	100.0	10.0		10.0	10.0
	구호시설	(1)	100.0	100.0					
	기타	(17)	64.7	58.8	64.7	5.9			29.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100.0	100.0				
주거형태	자가	(64)	73.4	60.9	84.4	18.8		6.3	17.2
	전세(1억미만)	(14)	50.0	42.9	92.9	35.7		7.1	21.4
	월세	(80)	85.0	67.5	81.3	18.8		2.5	11.3
	장기(영구)임대	(35)	77.1	68.6	77.1	14.3		11.4	14.3
	기타	(53)	81.1	66.0	81.1	24.5	1.9	1.9	15.1
모름/무응답	(3)	100.0	100.0	100.0	33.3		33.3	33.3	

13. 생계급여 수급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60.1%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39.9%)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생계급여의 적절성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51점) > 지원기간(3.19점) > 지원규모(2.8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점 기준)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생계급여 수급방법	48.1%	32.6%	14.4%	3.51점
생계급여 지원규모	22.5%	35.3%	39.6%	2.81점
생계급여 지원기간	33.2%	38.5%	18.7%	3.19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187명)

【표 13】 생계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311)	60.1	39.9
구분	긴급 수급자	(311)	60.1	39.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34.0	66.0
	6대 광역시	(68)	57.4	42.6
	중소도시	(98)	75.5	24.5
	기타 농어촌	(95)	60.0	40.0
성별	남성	(160)	61.3	38.8
	여성	(151)	58.9	41.1
연령별	10대	(10)	50.0	50.0
	20대	(7)	42.9	57.1
	30대	(23)	52.2	47.8
	40대	(94)	61.7	38.3
	50대	(79)	68.4	31.6
	60대	(52)	53.8	46.2
	70대	(34)	52.9	47.1
	80대 이상	(11)	72.7	27.3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25.0	75.0
	임시고용	(13)	53.8	46.2
	일용직	(23)	52.2	47.8
	자영업	(8)	50.0	50.0
	자활근로	(5)	80.0	20.0
	실업	(24)	45.8	54.2
	비경제활동	(194)	68.0	32.0
	기타	(28)	46.4	53.6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60.6	39.4
	장애가 없다	(170)	60.0	40.0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 여부	기혼	(109)	54.1	45.9
	이혼 또는 별거	(92)	67.4	32.6
	사별 후 독신	(58)	58.6	41.4
	미혼(19세 이상)	(37)	62.2	37.8
	그 외 기타	(11)	63.6	36.4
	모름/무응답	(4)	50.0	50.0
학력	무학	(39)	61.5	38.5
	중졸이하	(140)	65.7	34.3
	고졸이하	(92)	60.9	39.1
	대졸이하	(30)	40.0	60.0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28.6	71.4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63.6	36.4
	아파트	(60)	65.0	35.0
	다가구(연립)주택	(61)	49.2	50.8
	무허가주택	(10)	60.0	4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58.3	41.7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 형태	자가	(80)	53.8	46.3
	전세(1억 미만)	(17)	41.2	58.8
	월세	(103)	60.2	39.8
	장기(영구)임대	(41)	68.3	31.7
	기타	(64)	68.8	31.3
	모름/무응답	(6)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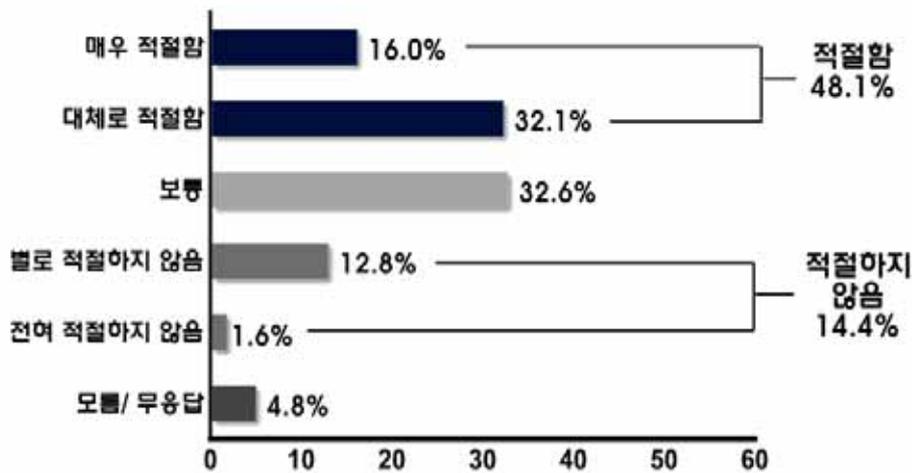
13_1. 생계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187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8.1%(매우 16.0% + 대체로 32.1%),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4%(별로 12.8% + 전혀 1.6%)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2.6%, ‘잘 모르겠다’는 1.1%, ‘무응답’은 3.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5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수급방법	48.1%	32.6%	14.4%	3.51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187명)

【표 13_1】생계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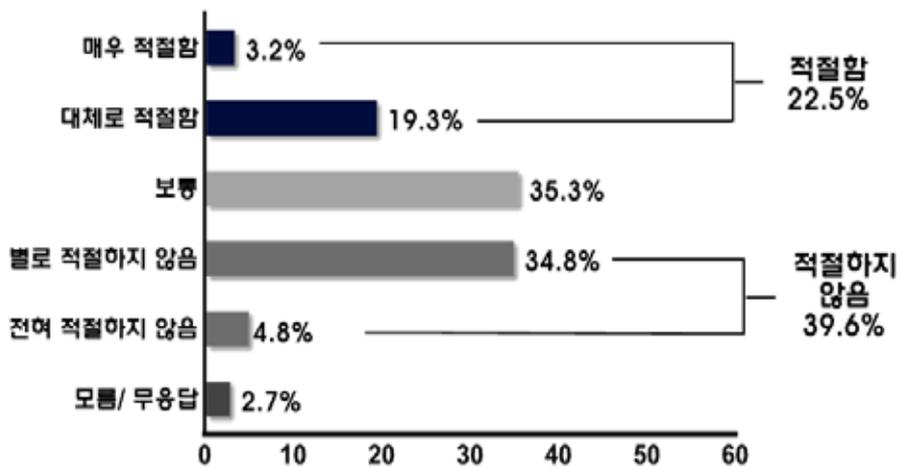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187)	16.0	32.1	32.6	12.8	1.6	1.1	48.1	32.6	14.4	3.7	3.51
구분	긴급 수급자	(187)	16.0	32.1	32.6	12.8	1.6	1.1	48.1	32.6	14.4	3.7	3.5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7)	23.5	29.4	29.4	11.8		5.9	52.9	29.4	11.8		3.69
	6대 광역시	(39)	17.9	30.8	15.4	30.8	5.1		48.7	15.4	35.9		3.26
	중소도시	(74)	9.5	21.6	60.8	5.4	1.4	1.4	31.1	60.8	6.8		3.33
	기타 농어촌	(57)	21.1	47.4	8.8	10.5			68.4	8.8	10.5	12.3	3.90
성별	남성	(98)	13.3	35.7	33.7	13.3	1.0		49.0	33.7	14.3	3.1	3.48
	여성	(89)	19.1	28.1	31.5	12.4	2.2	2.2	47.2	31.5	14.6	4.5	3.53
연령별	10대	(5)	20.0	40.0	40.0				60.0	40.0			3.80
	20대	(3)		66.7				33.3	66.7				4.00
	30대	(12)	33.3	25.0	25.0	16.7			58.3	25.0	16.7		3.75
	40대	(58)	15.5	37.9	25.9	15.5	3.4		53.4	25.9	19.0	1.7	3.47
	50대	(54)	13.0	33.3	31.5	16.7			46.3	31.5	16.7	5.6	3.45
	60대	(28)	25.0	25.0	35.7		3.6	3.6	50.0	35.7	3.6	7.1	3.76
	70대	(18)	11.1	22.2	55.6	5.6			33.3	55.6	5.6	5.6	3.41
	80대 이상	(8)		25.0	50.0	25.0			25.0	50.0	25.0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형태	상시고용	(4)	25.0	25.0	25.0				50.0	25.0		25.0	4.00
	임시고용	(7)		42.9	28.6	28.6			42.9	28.6	28.6		3.14
	일용직	(12)	16.7	50.0	8.3	16.7		8.3	66.7	8.3	16.7		3.73
	자영업	(4)	25.0	75.0					100.0				4.25
	자활근로	(4)				100.0					100.0		2.00
	실업	(11)	27.3	45.5	27.3				72.7	27.3			4.00
	비경제활동	(132)	15.2	26.5	39.4	11.4	2.3	0.8	41.7	39.4	13.6	4.5	3.43
	기타	(13)	23.1	53.8	15.4	7.7			76.9	15.4	7.7		3.92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83)	18.1	34.9	28.9	10.8	1.2		53.0	28.9	12.0	6.0	3.62
	장애가 없다	(102)	14.7	29.4	35.3	14.7	2.0	2.0	44.1	35.3	16.7	2.0	3.42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혼인여부	기혼	(59)	22.0	30.5	39.0	8.5			52.5	39.0	8.5		3.66
	이혼 또는 별거	(62)	16.1	33.9	22.6	17.7	3.2		50.0	22.6	21.0	6.5	3.45
	사별 후 독신	(34)	11.8	26.5	38.2	14.7	2.9		38.2	38.2	17.6	5.9	3.31
	미혼(19세 이상)	(23)	8.7	34.8	34.8	13.0		8.7	43.5	34.8	13.0		3.43
	그 외 기타	(7)	14.3	42.9	42.9				57.1	42.9			3.71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학력	무학	(24)	16.7	29.2	37.5	8.3	4.2	4.2	45.8	37.5	12.5		3.48
	중졸이하	(92)	17.4	34.8	33.7	9.8			52.2	33.7	9.8	4.3	3.63
	고졸이하	(56)	12.5	32.1	28.6	17.9	3.6		44.6	28.6	21.4	5.4	3.34
	대졸이하	(12)	25.0	16.7	33.3	16.7		8.3	41.7	33.3	16.7		3.55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주택종류	단독주택	(96)	15.6	35.4	28.1	14.6	2.1	1.0	51.0	28.1	16.7	3.1	3.50
	아파트	(39)	15.4	17.9	48.7	7.7			33.3	48.7	7.7	10.3	3.46
	다가구(연립)주택	(30)	16.7	43.3	23.3	10.0	3.3	3.3	60.0	23.3	13.3		3.62
	무허가주택	(6)	33.3		33.3	33.3			33.3	33.3	33.3		3.33
	구호시설	(1)		100.0					100.0				4.00
	기타	(14)	14.3	28.6	42.9	14.3			42.9	42.9	14.3		3.4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형태	자가	(43)	16.3	37.2	30.2	7.0		2.3	53.5	30.2	7.0	7.0	3.69
	전세(1억 미만)	(7)	14.3	14.3	42.9	14.3	14.3		28.6	42.9	28.6		3.00
	월세	(62)	17.7	37.1	30.6	8.1	1.6	1.6	54.8	30.6	9.7	3.2	3.64
	장기(영구)임대	(28)	17.9	21.4	42.9	10.7			39.3	42.9	10.7	7.1	3.50
	기타	(44)	13.6	31.8	27.3	25.0	2.3		45.5	27.3	27.3		3.30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2.67	

13_2. 생계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187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2.5%(매우 3.2% + 대체로 19.3%),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9.6%(별로 34.8% + 전혀 4.8%)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3%, ‘잘 모르겠다’는 1.6%, ‘무응답’은 1.1%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지원규모	22.5%	35.3%	39.6%	2.81점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187명)

【표 13_2】생계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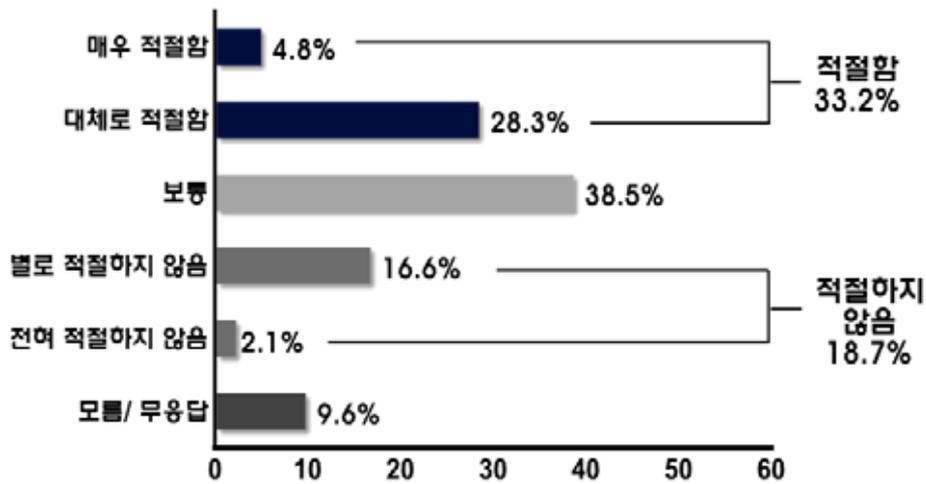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187)	3.2	19.3	35.3	34.8	4.8	1.6	22.5	35.3	39.6	1.1	2.81
구분	간접 수급자	(187)	3.2	19.3	35.3	34.8	4.8	1.6	22.5	35.3	39.6	1.1	2.8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7)	17.6	5.9	29.4	23.5	11.8	5.9	23.5	29.4	35.3	5.9	2.93
	6대 광역시	(39)	5.1	12.8	10.3	66.7	5.1		17.9	10.3	71.8		2.46
	중소도시	(74)	1.4	10.8	58.1	25.7	1.4	1.4	12.2	58.1	27.0	1.4	2.85
	기타 농어촌	(57)		38.6	24.6	28.1	7.0	1.8	38.6	24.6	35.1		2.96
성별	남성	(98)	1.0	18.4	34.7	37.8	5.1	1.0	19.4	34.7	42.9	2.0	2.72
	여성	(89)	5.6	20.2	36.0	31.5	4.5	2.2	25.8	36.0	36.0		2.91
연령별	10대	(5)	20.0	20.0	40.0	20.0			40.0	40.0	20.0		3.40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00
	30대	(12)	16.7	8.3	41.7	33.3			25.0	41.7	33.3		3.08
	40대	(58)	3.4	20.7	27.6	43.1	5.2		24.1	27.6	48.3		2.74
	50대	(54)	1.9	18.5	29.6	38.9	5.6	1.9	20.4	29.6	44.4	3.7	2.71
	60대	(28)		28.6	46.4	10.7	10.7	3.6	28.6	46.4	21.4		2.96
	70대	(18)		11.1	50.0	38.9			11.1	50.0	38.9		2.72
	80대 이상	(8)		12.5	62.5	25.0			12.5	62.5	25.0		2.8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형태	상시고용	(4)			50.0			25.0		50.0		25.0	3.00
	임시고용	(7)		28.6	28.6	42.9			28.6	28.6	42.9		2.86
	일용직	(12)		25.0	33.3	33.3		8.3	25.0	33.3	33.3		2.91
	자영업	(4)	25.0	50.0			25.0		75.0		25.0		3.50
	자활근로	(4)				100.0					100.0		2.00
	실업	(11)	9.1	18.2	36.4	27.3	9.1		27.3	36.4	36.4		2.91
	비경제활동	(132)	1.5	18.2	39.4	34.1	5.3	0.8	19.7	39.4	39.4	0.8	2.76
	기타	(13)	15.4	23.1	15.4	46.2			38.5	15.4	46.2		3.08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83)	4.8	18.1	31.3	34.9	8.4		22.9	31.3	43.4	2.4	2.75
	장애가 없다	(102)	2.0	20.6	37.3	35.3	2.0	2.9	22.5	37.3	37.3		2.85
	모름/무응답	(2)			100.0					100.0			3.00
혼인여부	기혼	(59)	3.4	20.3	37.3	37.3	1.7		23.7	37.3	39.0		2.86
	이혼 또는 별거	(62)	4.8	16.1	29.0	35.5	9.7	1.6	21.0	29.0	45.2	3.2	2.69
	사별 후 독신	(34)		23.5	41.2	29.4	5.9		23.5	41.2	35.3		2.82
	미혼(19세 이상)	(23)		17.4	34.8	39.1		8.7	17.4	34.8	39.1		2.76
	그 외 기타	(7)	14.3	14.3	42.9	28.6			28.6	42.9	28.6		3.14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학력	무학	(24)		20.8	50.0	20.8	4.2	4.2	20.8	50.0	25.0		2.91
	중졸이하	(92)	2.2	21.7	35.9	34.8	4.3		23.9	35.9	39.1	1.1	2.82
	고졸이하	(56)	7.1	17.9	26.8	37.5	7.1	1.8	25.0	26.8	44.6	1.8	2.80
	대졸이하	(12)		8.3	41.7	41.7		8.3	8.3	41.7	41.7		2.64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2.50
주택종류	단독주택	(96)	3.1	22.9	32.3	35.4	5.2	1.0	26.0	32.3	40.6		2.83
	아파트	(39)	2.6	15.4	46.2	28.2	2.6	2.6	17.9	46.2	30.8	2.6	2.86
	다가구(연립)주택	(30)		13.3	36.7	43.3	3.3	3.3	13.3	36.7	46.7		2.62
	무허가주택	(6)	16.7		33.3	50.0			16.7	33.3	50.0		2.83
	구호시설	(1)					100.0				100.0		1.00
	기타	(14)	7.1	21.4	28.6	28.6	7.1		28.6	28.6	35.7	7.1	2.92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형태	자가	(43)	2.3	23.3	32.6	32.6	7.0	2.3	25.6	32.6	39.5		2.81
	전세(1억 미만)	(7)	14.3		42.9	28.6	14.3		14.3	42.9	42.9		2.71
	월세	(62)	1.6	19.4	41.9	29.0	3.2	3.2	21.0	41.9	32.3	1.6	2.86
	장기(영구)임대	(28)		21.4	35.7	35.7	3.6		21.4	35.7	39.3	3.6	2.78
	기타	(44)	6.8	18.2	27.3	43.2	4.5		25.0	27.3	47.7		2.80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2.33

13_3. 생계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생계급여 수급자(N=187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3.2%(매우 4.8% + 대체로 28.3%),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별로 16.6% + 전혀 2.1%)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8.5%, ‘잘 모르겠다’는 3.2%, ‘무응답’은 6.4%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1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생계급여 지원기간	33.2%	38.5%	18.7%	3.1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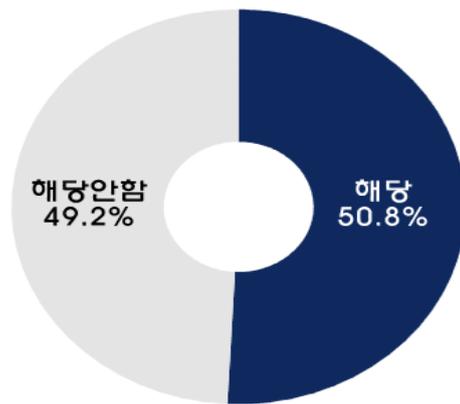
(Base: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187명)

【표 13_3】 생계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187)	4.8	28.3	38.5	16.6	2.1	3.2	33.2	38.5	18.7	6.4	3.19	
구분	긴급 수급자	(187)	4.8	28.3	38.5	16.6	2.1	3.2	33.2	38.5	18.7	6.4	3.1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7)	11.8	11.8	29.4	29.4		11.8	23.5	29.4	29.4	5.9	3.07	
	6대 광역시	(39)	10.3	35.9	20.5	28.2	5.1		46.2	20.5	33.3		3.18	
	중소도시	(74)	1.4	20.3	62.2	10.8	2.7	1.4	21.6	62.2	13.5	1.4	3.07	
	기타 농어촌	(57)	3.5	38.6	22.8	12.3		5.3	42.1	22.8	12.3	17.5	3.43	
성별	남성	(98)	4.1	25.5	40.8	18.4	3.1	2.0	29.6	40.8	21.4	6.1	3.10	
	여성	(89)	5.6	31.5	36.0	14.6	1.1	4.5	37.1	36.0	15.7	6.7	3.29	
연령별	10대	(5)		60.0	40.0				60.0	40.0			3.60	
	20대	(3)		66.7				33.3	66.7				4.00	
	30대	(12)	16.7	25.0	33.3	25.0			41.7	33.3	25.0		3.33	
	40대	(58)	6.9	27.6	31.0	22.4	5.2	3.4	34.5	31.0	27.6	3.4	3.09	
	50대	(54)	3.7	29.6	37.0	16.7	1.9	3.7	33.3	37.0	18.5	7.4	3.19	
	60대	(28)	3.6	35.7	39.3	3.6		3.6	39.3	39.3	3.6	14.3	3.48	
	70대	(18)		11.1	66.7	11.1			11.1	66.7	11.1	11.1	3.00	
	80대 이상	(8)		12.5	62.5	25.0			12.5	62.5	25.0		2.8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4)			50.0	25.0				50.0	25.0	25.0	2.67
임시고용		(7)		42.9	42.9	14.3			42.9	42.9	14.3		3.29	
일용직		(12)		41.7	16.7	33.3		8.3	41.7	16.7	33.3		3.09	
자영업		(4)	25.0	50.0		25.0			75.0		25.0		3.75	
자활근로		(4)				75.0		25.0			75.0		2.00	
실업		(11)	18.2	18.2	36.4	9.1		18.2	36.4	36.4	9.1		3.56	
비경제활동		(132)	3.8	26.5	43.9	13.6	3.0	1.5	30.3	43.9	16.7	7.6	3.16	
기타		(13)	7.7	46.2	23.1	15.4			53.8	23.1	15.4	7.7	3.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83)	8.4	28.9	34.9	13.3	2.4	1.2	37.3	34.9	15.7	10.8	3.32	
	장애가 없다	(102)	2.0	27.5	41.2	19.6	2.0	4.9	29.4	41.2	21.6	2.9	3.09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혼인 여부	기혼	(59)	5.1	33.9	37.3	11.9	3.4	5.1	39.0	37.3	15.3	3.4	3.28	
	이혼 또는 별거	(62)	8.1	21.0	32.3	25.8	3.2	1.6	29.0	32.3	29.0	8.1	3.05	
	사별 후 독신	(34)	2.9	29.4	44.1	11.8			32.4	44.1	11.8	11.8	3.27	
	미혼(19세 이상)	(23)		26.1	47.8	17.4		8.7	26.1	47.8	17.4		3.10	
	그 외 기타	(7)		42.9	57.1				42.9	57.1			3.43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학력	무학	(24)		33.3	50.0	12.5		4.2	33.3	50.0	12.5		3.22	
	중졸이하	(92)	4.3	32.6	37.0	13.0	1.1	3.3	37.0	37.0	14.1	8.7	3.30	
	고졸이하	(56)	8.9	25.0	33.9	21.4	3.6		33.9	33.9	25.0	7.1	3.15	
	대졸이하	(12)		8.3	41.7	25.0	8.3	16.7	8.3	41.7	33.3		2.6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100.0					100.0			3.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96)	4.2	31.3	39.6	16.7	1.0	3.1	35.4	39.6	17.7	4.2	3.22	
	아파트	(39)	2.6	23.1	41.0	10.3	2.6		25.6	41.0	12.8	20.5	3.16	
	다가구(연립)주택	(30)	10.0	30.0	30.0	16.7	6.7	6.7	40.0	30.0	23.3		3.21	
	무허가주택	(6)	16.7		50.0	33.3			16.7	50.0	33.3		3.0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4)		28.6	35.7	28.6		7.1	28.6	35.7	28.6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43)	7.0	25.6	39.5	11.6		4.7	32.6	39.5	11.6	11.6	3.33	
	전세(1억 미만)	(7)	14.3	14.3	57.1	14.3			28.6	57.1	14.3		3.29	
	월세	(62)	4.8	33.9	35.5	12.9	3.2	4.8	38.7	35.5	16.1	4.8	3.27	
	장기(영구)임대	(28)		35.7	35.7	14.3	3.6		35.7	35.7	17.9	10.7	3.16	
	기타	(44)	4.5	22.7	40.9	27.3	2.3		27.3	40.9	29.5	2.3	3.00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33.3		2.50	

14. 주거급여 수급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0.8%,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9.2%로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주거급여의 적절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42점) > 지원기간(3.19점) > 지원규모(2.79점) 순으로 높았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주거급여 수급방법	44.3%	35.4%	14.6%	3.42점
주거급여 지원규모	17.7%	41.8%	36.7%	2.79점
주거급여 지원기간	29.1%	44.9%	13.9%	3.19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158명)

【표 14】 주거급여 수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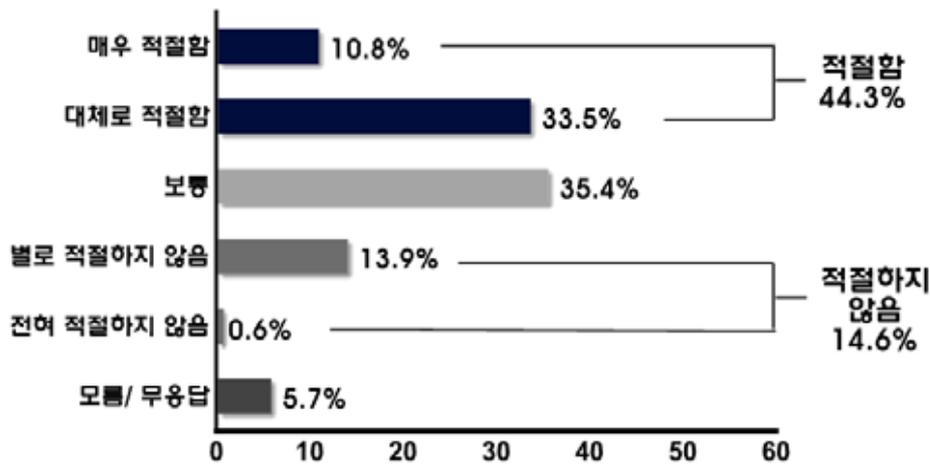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311)	50.8	49.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50.8	49.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20.0	80.0
	6대 광역시	(68)	45.6	54.4
	중소도시	(98)	69.4	30.6
	기타 농어촌	(95)	51.6	48.4
성별	남성	(160)	53.8	46.3
	여성	(151)	47.7	52.3
연령별	10대	(10)	40.0	60.0
	20대	(7)	42.9	57.1
	30대	(23)	26.1	73.9
	40대	(94)	44.7	55.3
	50대	(79)	63.3	36.7
	60대	(52)	51.9	48.1
	70대	(34)	47.1	52.9
	80대 이상	(11)	81.8	18.2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25.0	75.0
	임시고용	(13)	38.5	61.5
	일용직	(23)	26.1	73.9
	자영업	(8)	25.0	75.0
	자활근로	(5)	80.0	20.0
	실업	(24)	25.0	75.0
	비경제활동	(194)	62.4	37.6
	기타	(28)	35.7	64.3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54.0	46.0
	장애가 없다	(170)	48.2	51.8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여부	기혼	(109)	45.0	55.0
	이혼 또는 별거	(92)	50.0	50.0
	사별 후 독신	(58)	56.9	43.1
	미혼(19세 이상)	(37)	59.5	40.5
	그 외 기타	(11)	54.5	45.5
	모름/무응답	(4)	50.0	50.0
학력	무학	(39)	56.4	43.6
	중졸이하	(140)	60.7	39.3
	고졸이하	(92)	42.4	57.6
	대졸이하	(30)	30.0	70.0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28.6	71.4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52.3	47.7
	아파트	(60)	58.3	41.7
	다가구(연립)주택	(61)	41.0	59.0
	무허가주택	(10)	60.0	4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45.8	54.2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형태	자가	(80)	48.8	51.3
	전세(1억 미만)	(17)	35.3	64.7
	월세	(103)	46.6	53.4
	장기(영구)임대	(41)	58.5	41.5
	기타	(64)	59.4	40.6
	모름/무응답	(6)	50.0	50.0

14_1. 주거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15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4.3%(매우 10.8% + 대체로 33.5%),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6%(별로 13.9% + 전혀 0.6%)로 나타나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5.4%, ‘잘 모르겠다’ 1.9%, ‘무응답’은 3.8%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42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주거급여 수급방법	44.3%	35.4%	14.6%	3.42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158명)

【표 14_1】 주거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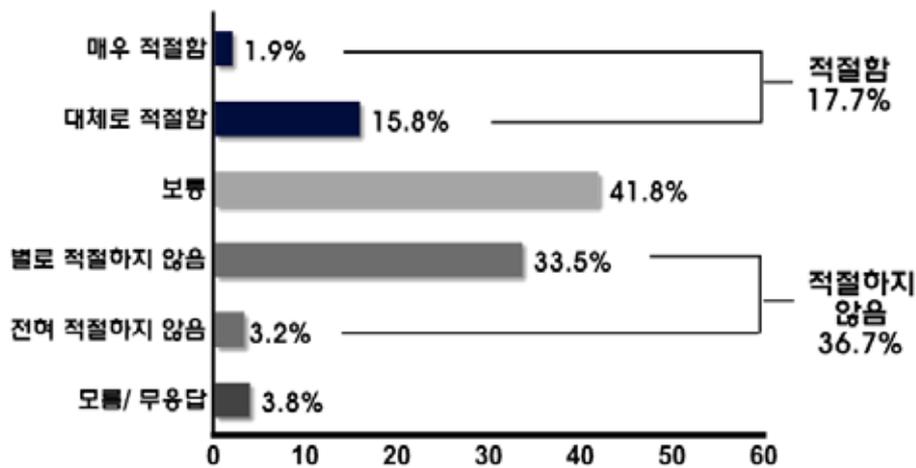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158)	10.8	33.5	35.4	13.9	0.6	1.9	44.3	35.4	14.6	3.8	3.42
구분	긴급 수급자	(158)	10.8	33.5	35.4	13.9	0.6	1.9	44.3	35.4	14.6	3.8	3.4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0)	30.0	10.0	40.0	10.0		10.0	40.0	40.0	10.0		3.67
	6대 광역시	(31)	6.5	32.3	22.6	35.5	3.2		38.7	22.6	38.7		3.03
	중소도시	(68)	8.8	16.2	61.8	10.3		2.9	25.0	61.8	10.3		3.24
	기타 농어촌	(49)	12.2	63.3	6.1	6.1			75.5	6.1	6.1	12.2	3.93
성별	남성	(86)	10.5	38.4	34.9	11.6		1.2	48.8	34.9	11.6	3.5	3.50
	여성	(72)	11.1	27.8	36.1	16.7	1.4	2.8	38.9	36.1	18.1	4.2	3.33
연령별	10대	(4)	25.0	50.0	25.0				75.0	25.0			4.00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50
	30대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40대	(42)	9.5	40.5	31.0	14.3	2.4		50.0	31.0	16.7	2.4	3.41
	50대	(50)	8.0	36.0	36.0	16.0			44.0	36.0	16.0	4.0	3.38
	60대	(27)	22.2	33.3	33.3			3.7	55.6	33.3		7.4	3.88
	70대	(16)	12.5	18.8	50.0	6.3		6.3	31.3	50.0	6.3	6.3	3.43
	80대 이상	(9)		22.2	33.3	44.4			22.2	33.3	44.4		2.7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4)	25.0	25.0	25.0				50.0	25.0		25.0	4.00
	임시고용	(5)		20.0	60.0	20.0			20.0	60.0	20.0		3.00
	일용직	(6)		66.7	16.7			16.7	66.7	16.7			3.80
	자영업	(2)	50.0	50.0					100.0				4.50
	자활근로	(4)				100.0					100.0		2.00
	실업	(6)		50.0	50.0				50.0	50.0			3.50
	비경제활동	(121)	10.7	31.4	39.7	11.6	0.8	1.7	42.1	39.7	12.4	4.1	3.42
기타	(10)	20.0	50.0		30.0			70.0		30.0		3.6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74)	13.5	41.9	24.3	14.9			55.4	24.3	14.9	5.4	3.57
	장애가 없다	(82)	8.5	25.6	45.1	13.4	1.2	3.7	34.1	45.1	14.6	2.4	3.29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혼인 여부	기혼	(49)	12.2	34.7	40.8	10.2		2.0	46.9	40.8	10.2		3.50
	이혼 또는 별거	(46)	10.9	32.6	28.3	19.6	2.2		43.5	28.3	21.7	6.5	3.33
	사별 후 독신	(33)	9.1	30.3	39.4	15.2			39.4	39.4	15.2	6.1	3.35
	미혼(19세 이상)	(22)	9.1	31.8	40.9	9.1		9.1	40.9	40.9	9.1		3.45
	그 외 기타	(6)	16.7	50.0	16.7	16.7			66.7	16.7	16.7		3.67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학력	무학	(22)	13.6	31.8	31.8	18.2		4.5	45.5	31.8	18.2		3.43
	중졸이하	(85)	14.1	35.3	34.1	10.6		1.2	49.4	34.1	10.6	4.7	3.56
	고졸이하	(39)	5.1	35.9	35.9	15.4	2.6		41.0	35.9	17.9	5.1	3.27
	대졸이하	(9)		11.1	55.6	22.2		11.1	11.1	55.6	22.2		2.88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79)	6.3	39.2	31.6	17.7		1.3	45.6	31.6	17.7	3.8	3.36
	아파트	(35)	17.1	20.0	48.6	5.7			37.1	48.6	5.7	8.6	3.53
	다가구(연립)주택	(25)	12.0	40.0	32.0	8.0	4.0	4.0	52.0	32.0	12.0		3.50
	무허가주택	(6)	33.3	16.7	16.7	33.3			50.0	16.7	33.3		3.50
	구호시설	(1)		100.0					100.0				4.00
	기타	(11)	9.1	18.2	45.5	18.2		9.1	27.3	45.5	18.2		3.2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39)	15.4	35.9	23.1	12.8		5.1	51.3	23.1	12.8	7.7	3.62
	전세(1억 미만)	(6)		33.3	66.7				33.3	66.7			3.33
	월세	(48)	6.3	31.3	47.9	6.3	2.1	2.1	37.5	47.9	8.3	4.2	3.36
	장기(영구)임대	(24)	8.3	33.3	45.8	8.3			41.7	45.8	8.3	4.2	3.43
	기타	(38)	15.8	36.8	18.4	28.9			52.6	18.4	28.9		3.39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2.67	

14_2. 주거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158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17.7%(매우 1.9% + 대체로 15.8%),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7%(별로 33.5% + 전혀 3.2%)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1.8%, ‘잘 모르겠다’는 2.5%, ‘무응답’은 1.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7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주거급여 지원규모	17.7%	41.8%	36.7%	2.79점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158명)

【표 14_2】 주거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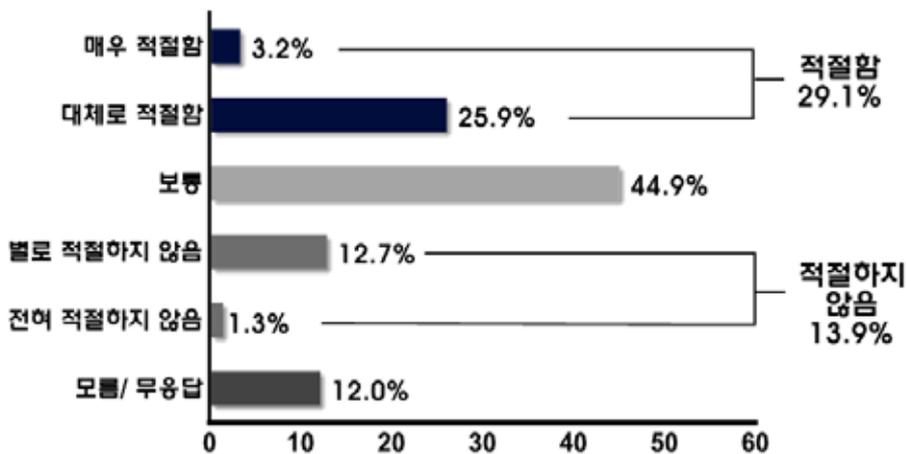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구분	긴급 수급자	(158)	1.9	15.8	41.8	33.5	3.2	2.5	17.7	41.8	36.7	1.3	2.79
	긴급 수급자	(158)	1.9	15.8	41.8	33.5	3.2	2.5	17.7	41.8	36.7	1.3	2.7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0)	20.0		40.0	20.0	10.0	10.0	20.0	40.0	30.0		3.00
	6대 광역시	(31)		6.5	19.4	67.7	3.2		6.5	19.4	71.0	3.2	2.30
	중소도시	(68)	1.5	7.4	61.8	26.5		2.9	8.8	61.8	26.5		2.83
	기타 농어촌	(49)		36.7	28.6	24.5	6.1	2.0	36.7	28.6	30.6	2.0	3.00
성별	남성	(86)		17.4	45.3	31.4	3.5	2.3	17.4	45.3	34.9		2.79
	여성	(72)	4.2	13.9	37.5	36.1	2.8	2.8	18.1	37.5	38.9	2.8	2.79
연령별	10대	(4)	25.0	25.0	25.0	25.0			50.0	25.0			3.50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50
	30대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40대	(42)	2.4	14.3	35.7	42.9	4.8		16.7	35.7	47.6		2.67
	50대	(50)	2.0	16.0	34.0	42.0	2.0	2.0	18.0	34.0	44.0	2.0	2.73
	60대	(27)		25.9	51.9	11.1	7.4	3.7	25.9	51.9	18.5		3.00
	70대	(16)			68.8	25.0		6.3		68.8	25.0		2.73
	80대 이상	(9)		11.1	44.4	33.3			11.1	44.4	33.3	11.1	2.7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4)	25.0		25.0	25.0		25.0	25.0	25.0			3.33
	임시고용	(5)		20.0	40.0	40.0			20.0	40.0	40.0		2.80
	일용직	(6)		33.3	16.7	33.3		16.7	33.3	16.7	33.3		3.00
	자영업	(2)	50.0				50.0		50.0		50.0		3.00
	자활근로	(4)				100.0					100.0		2.00
	실업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비경제활동	(121)		15.7	47.9	29.8	3.3	1.7	15.7	47.9	33.1	1.7	2.79
기타	(10)	10.0	20.0	10.0	60.0			30.0	10.0	60.0		2.8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74)	1.4	20.3	36.5	35.1	5.4		21.6	36.5	40.5	1.4	2.77
	장애가 없다	(82)	2.4	12.2	45.1	32.9	1.2	4.9	14.6	45.1	34.1	1.2	2.81
	모름/무응답	(2)			100.0					100.0			3.00
혼인 여부	기혼	(49)	2.0	14.3	44.9	34.7	2.0	2.0	16.3	44.9	36.7		2.79
	이혼 또는 별거	(46)	2.2	13.0	41.3	34.8	6.5	2.2	15.2	41.3	41.3		2.69
	사별 후 독신	(33)		18.2	42.4	30.3	3.0		18.2	42.4	33.3	6.1	2.81
	미혼(19세 이상)	(22)		18.2	40.9	31.8		9.1	18.2	40.9	31.8		2.85
	그 외 기타	(6)	16.7	16.7	16.7	50.0			33.3	16.7	50.0		3.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학력	무학	(22)		13.6	54.5	22.7		4.5	13.6	54.5	22.7	4.5	2.90
	중졸이하	(85)	2.4	16.5	41.2	34.1	3.5	1.2	18.8	41.2	37.6	1.2	2.80
	고졸이하	(39)	2.6	20.5	33.3	35.9	5.1	2.6	23.1	33.3	41.0		2.79
	대졸이하	(9)			55.6	33.3		11.1		55.6	33.3		2.63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2.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79)		17.7	39.2	38.0	3.8	1.3	17.7	39.2	41.8		2.72
	아파트	(35)	5.7	17.1	51.4	22.9		2.9	22.9	51.4	22.9		3.06
	다가구(연립)주택	(25)		8.0	44.0	36.0	4.0	4.0	8.0	44.0	40.0	4.0	2.61
	무허가주택	(6)		16.7	33.3	33.3			16.7	33.3	33.3	16.7	2.80
	구호시설	(1)					100.0				100.0		1.00
	기타	(11)	9.1	9.1	36.4	36.4		9.1	18.2	36.4	36.4		2.9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39)	2.6	20.5	30.8	33.3	7.7	5.1	23.1	30.8	41.0		2.76
	전세(1억 미만)	(6)			66.7	33.3				66.7	33.3		2.67
	월세	(48)		12.5	52.1	27.1	2.1	4.2	12.5	52.1	29.2	2.1	2.80
	장기(영구)임대	(24)		20.8	45.8	33.3			20.8	45.8	33.3		2.88
	기타	(38)	5.3	15.8	34.2	39.5	2.6		21.1	34.2	42.1	2.6	2.81
	모름/무응답	(3)			33.3	66.7				33.3	66.7		2.33

14_3. 주거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주거급여 수급자(N=158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9.1%(매우 3.2% + 대체로 2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3.9%(별로 12.7% + 전혀 1.3%)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3.2%, ‘무응답’은 8.9%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1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주거급여 지원기간	29.1%	44.9%	13.9%	3.1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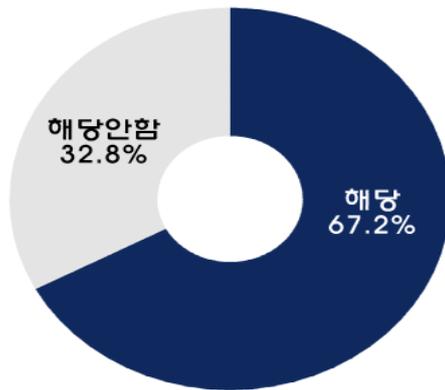
(Base: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158명)

【표 14_3】 주거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구분	전체	(158)	3.2	25.9	44.9	12.7	1.3	3.2	29.1	44.9	13.9	8.9	3.19
	긴급 수급자	(158)	3.2	25.9	44.9	12.7	1.3	3.2	29.1	44.9	13.9	8.9	3.1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10)	10.0		50.0	10.0		10.0	10.0	50.0	10.0	20.0	3.14
	6대 광역시	(31)	3.2	32.3	29.0	32.3	3.2		35.5	29.0	35.5		3.00
	중소도시	(68)		16.2	66.2	10.3	1.5	2.9	16.2	66.2	11.8	2.9	3.03
성별	기타 농어촌	(49)	6.1	40.8	24.5	4.1		4.1	46.9	24.5	4.1	20.4	3.65
	남성	(86)	2.3	27.9	50.0	11.6	1.2	1.2	30.2	50.0	12.8	5.8	3.20
	여성	(72)	4.2	23.6	38.9	13.9	1.4	5.6	27.8	38.9	15.3	12.5	3.19
연령별	10대	(4)		50.0	25.0				50.0	25.0		25.0	3.67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50
	30대	(6)		16.7	50.0	33.3			16.7	50.0	33.3		2.83
	40대	(42)	2.4	28.6	42.9	14.3	2.4	2.4	31.0	42.9	16.7	7.1	3.16
	50대	(50)	6.0	30.0	40.0	14.0	2.0	2.0	36.0	40.0	16.0	6.0	3.26
	60대	(27)	3.7	29.6	48.1			3.7	33.3	48.1		14.8	3.45
	70대	(16)		6.3	68.8	6.3		6.3	6.3	68.8	6.3	12.5	3.00
	80대 이상	(9)		11.1	44.4	33.3			11.1	44.4	33.3	11.1	2.7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4)		25.0	25.0				25.0	25.0		50.0	3.50
	임시고용	(5)		20.0	60.0	20.0			20.0	60.0	20.0		3.00
	일용직	(6)		50.0	16.7	16.7		16.7	50.0	16.7	16.7		3.40
	자영업	(2)	50.0	50.0					100.0				4.50
	자활근로	(4)				75.0		25.0			75.0		2.00
	실업	(6)		16.7	83.3				16.7	83.3			3.17
	비경제활동	(121)	3.3	24.8	49.6	9.9	1.7	2.5	28.1	49.6	11.6	8.3	3.20
	기타	(10)		40.0	10.0	30.0			40.0	10.0	30.0	20.0	3.13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74)	6.8	33.8	35.1	13.5			40.5	35.1	13.5	10.8	3.38
	장애가 없다	(82)		18.3	53.7	12.2	2.4	6.1	18.3	53.7	14.6	7.3	3.01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50.0			3.50
혼인 여부	기혼	(49)	4.1	30.6	42.9	8.2	2.0	6.1	34.7	42.9	10.2	6.1	3.30
	이혼 또는 별거	(46)	4.3	23.9	41.3	19.6	2.2		28.3	41.3	21.7	8.7	3.10
	사별 후 독신	(33)	3.0	21.2	48.5	12.1			24.2	48.5	12.1	15.2	3.18
	미혼(19세 이상)	(22)		22.7	59.1	9.1		9.1	22.7	59.1	9.1		3.15
	그 외 기타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모름/무응답	(2)		50.0				50.0			50.0	4.00
학력	무학	(22)		27.3	50.0	13.6		4.5	27.3	50.0	13.6	4.5	3.15
	중졸이하	(85)	3.5	29.4	41.2	11.8	1.2	2.4	32.9	41.2	12.9	10.6	3.26
	고졸이하	(39)	5.1	23.1	48.7	12.8	2.6		28.2	48.7	15.4	7.7	3.17
	대졸이하	(9)		11.1	44.4	11.1		22.2	11.1	44.4	11.1	11.1	3.0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모름/무응답	(2)			100.0				100.0			3.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79)	2.5	25.3	48.1	16.5		2.5	27.8	48.1	16.5	5.1	3.15
	아파트	(35)	2.9	22.9	42.9	5.7	2.9		25.7	42.9	8.6	22.9	3.22
	다가구(연립)주택	(25)	8.0	32.0	40.0	8.0	4.0	8.0	40.0	40.0	12.0		3.35
	무허가주택	(6)		33.3	33.3	16.7			33.3	33.3	16.7	16.7	3.20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1)		18.2	45.5	18.2		9.1	18.2	45.5	18.2	9.1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39)	10.3	23.1	35.9	10.3		7.7	33.3	35.9	10.3	12.8	3.42
	전세(1억 미만)	(6)		16.7	66.7	16.7			16.7	66.7	16.7		3.00
	월세	(48)	2.1	25.0	56.3	6.3	2.1	2.1	27.1	56.3	8.3	6.3	3.20
	장기(영구)임대	(24)		37.5	41.7	8.3	4.2		37.5	41.7	12.5	8.3	3.23
	기타	(38)		26.3	39.5	23.7			26.3	39.5	23.7	10.5	3.03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33.3		2.50

15. 의료급여 수급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67.2%로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32.8%)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의료급여의 적절성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65점) > 지원기간(3.33점) > 지원규모(3.2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수급방법	57.9%	28.2%	11.5%	3.65점
의료급여 지원규모	43.5%	29.2%	25.8%	3.26점
의료급여 지원기간	41.1%	34.9%	17.2%	3.33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209명)

【표 15】 의료급여 수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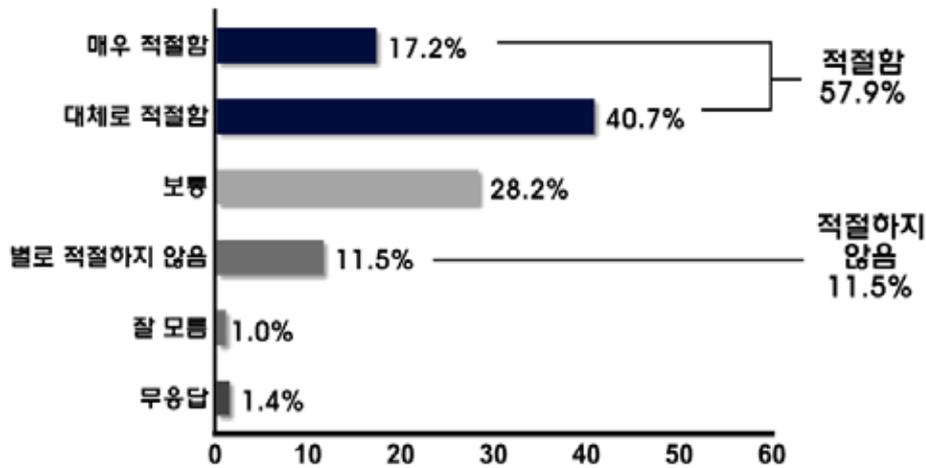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 체 ☐		(311)	67.2	32.8
구분	긴급 수급자	(311)	67.2	32.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44.0	56.0
	6대 광역시	(68)	77.9	22.1
	중소도시	(98)	78.6	21.4
	기타 농어촌	(95)	60.0	40.0
성별	남성	(160)	73.1	26.9
	여성	(151)	60.9	39.1
연령별	10대	(10)	80.0	20.0
	20대	(7)	42.9	57.1
	30대	(23)	52.2	47.8
	40대	(94)	68.1	31.9
	50대	(79)	68.4	31.6
	60대	(52)	71.2	28.8
	70대	(34)	64.7	35.3
	80대 이상	(11)	72.7	27.3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37.5	62.5
	임시고용	(13)	61.5	38.5
	일용직	(23)	47.8	52.2
	자영업	(8)	62.5	37.5
	자활근로	(5)	80.0	20.0
	실업	(24)	62.5	37.5
	비경제활동	(194)	73.2	26.8
	기타	(28)	64.3	35.7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70.8	29.2
	장애가 없다	(170)	64.1	35.9
	모름/무응답	(4)	75.0	25.0
혼인여부	기혼	(109)	65.1	34.9
	이혼 또는 별거	(92)	64.1	35.9
	사별 후 독신	(58)	70.7	29.3
	미혼(19세 이상)	(37)	75.7	24.3
	그 외 기타	(11)	81.8	18.2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39)	69.2	30.8
	중졸이하	(140)	72.9	27.1
	고졸이하	(92)	62.0	38.0
	대졸이하	(30)	63.3	36.7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42.9	57.1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70.9	29.1
	아파트	(60)	58.3	41.7
	다가구(연립)주택	(61)	72.1	27.9
	무허가주택	(10)	90.0	1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50.0	50.0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형태	자가	(80)	67.5	32.5
	전세(1억 미만)	(17)	70.6	29.4
	월세	(103)	66.0	34.0
	장기(영구)임대	(41)	63.4	36.6
	기타	(64)	71.9	28.1
	모름/무응답	(6)	50.0	50.0

15_1. 의료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209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매우 17.2% + 대체로 40.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1.5%(별로 11.5%)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1.0%, ‘무응답’은 1.4%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65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수급방법	57.9%	28.2%	11.5%	3.65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209명)

【표 15_1】 의료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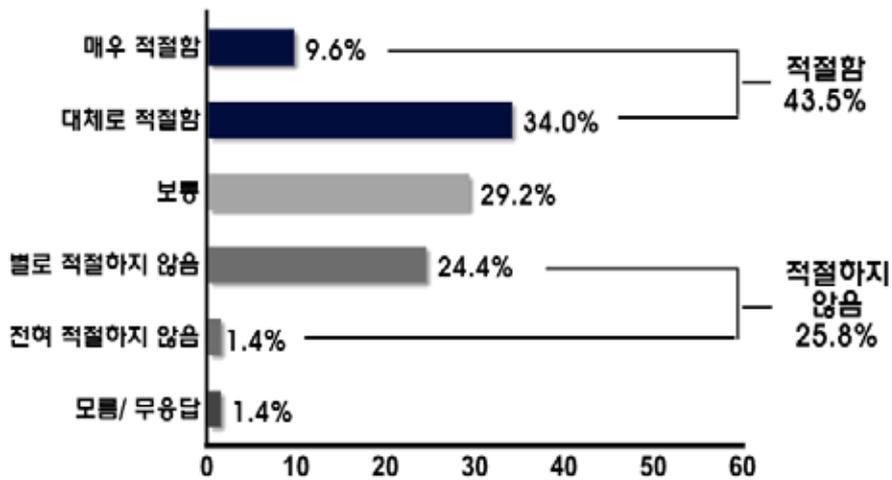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전체	(209)	17.2	40.7	28.2	11.5	1.0	57.9	28.2	11.5	1.4	3.65	
구분	긴급 수급자	(209)	17.2	40.7	28.2	11.5	1.0	57.9	28.2	11.5	1.4	3.6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2)	18.2	54.5	18.2	4.5	4.5	72.7	18.2	4.5		3.90
	6대 광역시	(53)	22.6	49.1	11.3	17.0		71.7	11.3	17.0		3.77
	중소도시	(77)	10.4	20.8	53.2	14.3	1.3	31.2	53.2	14.3		3.28
	기타 농어촌	(57)	21.1	54.4	14.0	5.3		75.4	14.0	5.3	5.3	3.96
성별	남성	(117)	14.5	41.9	31.6	11.1		56.4	31.6	11.1	0.9	3.60
	여성	(92)	20.7	39.1	23.9	12.0	2.2	59.8	23.9	12.0	2.2	3.72
연령별	10대	(8)	12.5	37.5	37.5	12.5		50.0	37.5	12.5		3.50
	20대	(3)		66.7			33.3	66.7				4.00
	30대	(12)	25.0	50.0	16.7	8.3		75.0	16.7	8.3		3.92
	40대	(64)	17.2	48.4	25.0	9.4		65.6	25.0	9.4		3.73
	50대	(54)	11.1	38.9	27.8	18.5		50.0	27.8	18.5	3.7	3.44
	60대	(37)	29.7	37.8	24.3	2.7	2.7	67.6	24.3	2.7	2.7	4.00
	70대	(22)	18.2	27.3	45.5	9.1		45.5	45.5	9.1		3.55
	80대 이상	(8)		25.0	37.5	37.5		25.0	37.5	37.5		2.8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6)		83.3		16.7		83.3		16.7		3.67
	임시고용	(8)		50.0	25.0	12.5		50.0	25.0	12.5	12.5	3.43
	일용직	(11)	9.1	63.6	9.1	9.1	9.1	72.7	9.1	9.1		3.80
	자영업	(5)	20.0	40.0	20.0	20.0		60.0	20.0	20.0		3.60
	자활근로	(4)		25.0	50.0	25.0		25.0	50.0	25.0		3.00
	실업	(15)	26.7	46.7	13.3	13.3		73.3	13.3	13.3		3.87
	비경제활동	(142)	17.6	36.6	33.1	10.6	0.7	54.2	33.1	10.6	1.4	3.63
기타	(18)	27.8	38.9	22.2	11.1		66.7	22.2	11.1		3.83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97)	16.5	41.2	25.8	13.4		57.7	25.8	13.4	3.1	3.63
	장애가 없다	(109)	18.3	39.4	30.3	10.1	1.8	57.8	30.3	10.1		3.67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67
혼인 여부	기혼	(71)	15.5	45.1	29.6	7.0		60.6	29.6	7.0	2.8	3.71
	이혼 또는 별거	(59)	15.3	35.6	23.7	23.7		50.8	23.7	23.7	1.7	3.43
	사별 후 독신	(41)	22.0	41.5	31.7	4.9		63.4	31.7	4.9		3.80
	미혼(19세 이상)	(28)	21.4	39.3	28.6	3.6	7.1	60.7	28.6	3.6		3.85
	그 외 기타	(9)	11.1	33.3	33.3	22.2		44.4	33.3	22.2		3.3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27)	22.2	40.7	22.2	11.1	3.7	63.0	22.2	11.1		3.77
	중졸이하	(102)	19.6	36.3	31.4	9.8		55.9	31.4	9.8	2.9	3.68
	고졸이하	(57)	14.0	40.4	28.1	17.5		54.4	28.1	17.5		3.51
	대졸이하	(19)	10.5	68.4	10.5	5.3	5.3	78.9	10.5	5.3		3.89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3)			100.0				100.0				3.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07)	17.8	42.1	25.2	14.0	0.9	59.8	25.2	14.0		3.64
	아파트	(35)	17.1	34.3	37.1	5.7		51.4	37.1	5.7	5.7	3.67
	다가구(연립)주택	(44)	18.2	47.7	27.3	4.5	2.3	65.9	27.3	4.5		3.81
	무허가주택	(9)	22.2	33.3	22.2	11.1		55.6	22.2	11.1	11.1	3.75
	구호시설	(1)		100.0				100.0				4.00
	기타	(12)	8.3	16.7	41.7	33.3		25.0	41.7	33.3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54)	22.2	44.4	24.1	7.4	1.9	66.7	24.1	7.4		3.83
	전세(1억 미만)	(12)	16.7	41.7	33.3	8.3		58.3	33.3	8.3		3.67
	월세	(68)	16.2	42.6	29.4	7.4	1.5	58.8	29.4	7.4	2.9	3.71
	장기(영구)임대	(26)	15.4	34.6	34.6	11.5		50.0	34.6	11.5	3.8	3.56
	기타	(46)	15.2	39.1	21.7	23.9		54.3	21.7	23.9		3.46
모름/무응답	(3)			100.0				100.0				3.00

15_2. 의료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209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3.5%(매우 9.6% + 대체로 34.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5.8%(별로 24.4% + 전혀 1.4%)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9.2%, ‘잘 모르겠다’는 1.0%, ‘무응답’은 0.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지원규모	43.5%	29.2%	25.8%	3.26점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209명)

【표 15_2】 의료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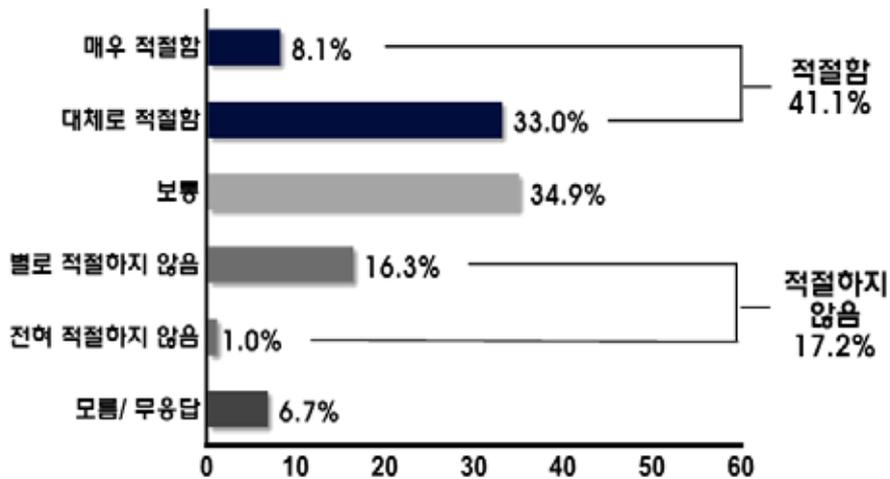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209)	9.6	34.0	29.2	24.4	1.4	1.0	43.5	29.2	25.8	0.5	3.26	
구분	긴급 수급자	(209)	9.6	34.0	29.2	24.4	1.4	1.0	43.5	29.2	25.8	0.5	3.2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2)	13.6	45.5	18.2	9.1	9.1	4.5	59.1	18.2	18.2		3.48
	6대 광역시	(53)	13.2	39.6	17.0	30.2			52.8	17.0	30.2		3.36
	중소도시	(77)	2.6	19.5	44.2	32.5		1.3	22.1	44.2	32.5		2.92
	기타 농어촌	(57)	14.0	43.9	24.6	14.0	1.8		57.9	24.6	15.8	1.8	3.55
성별	남성	(117)	6.8	35.9	31.6	23.1	2.6		42.7	31.6	25.6		3.21
	여성	(92)	13.0	31.5	26.1	26.1		2.2	44.6	26.1	26.1	1.1	3.33
연령별	10대	(8)	25.0	12.5	37.5	25.0			37.5	37.5	25.0		3.38
	20대	(3)		66.7				33.3	66.7				4.00
	30대	(12)	16.7	50.0	16.7	16.7			66.7	16.7	16.7		3.67
	40대	(64)	12.5	35.9	28.1	23.4			48.4	28.1	23.4		3.38
	50대	(54)	5.6	25.9	33.3	31.5	3.7		31.5	33.3	35.2		2.98
	60대	(37)	8.1	40.5	29.7	16.2		2.7	48.6	29.7	16.2	2.7	3.43
	70대	(22)	9.1	40.9	18.2	27.3	4.5		50.0	18.2	31.8		3.23
	80대 이상	(8)		12.5	50.0	37.5			12.5	50.0	37.5		2.7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6)		50.0	33.3	16.7			50.0	33.3	16.7		3.33
	임시고용	(8)		37.5	50.0	12.5			37.5	50.0	12.5		3.25
	일용직	(11)	9.1	45.5	18.2	18.2		9.1	54.5	18.2	18.2		3.50
	자영업	(5)	20.0	40.0	20.0	20.0			60.0	20.0	20.0		3.60
	자활근로	(4)		25.0	50.0	25.0			25.0	50.0	25.0		3.00
	실업	(15)	20.0	40.0	13.3	20.0	6.7		60.0	13.3	26.7		3.47
	비경제활동	(142)	7.0	33.1	31.0	26.1	1.4	0.7	40.1	31.0	27.5	0.7	3.19
	기타	(18)	27.8	22.2	22.2	27.8			50.0	22.2	27.8		3.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97)	10.3	30.9	28.9	25.8	3.1		41.2	28.9	28.9	1.0	3.20
	장애가 없다	(109)	9.2	35.8	29.4	23.9		1.8	45.0	29.4	23.9		3.31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67
혼인 여부	기혼	(71)	8.5	39.4	28.2	23.9			47.9	28.2	23.9		3.32
	이혼 또는 별거	(59)	8.5	27.1	27.1	33.9	3.4		35.6	27.1	37.3		3.03
	사별 후 독신	(41)	9.8	41.5	31.7	14.6			51.2	31.7	14.6	2.4	3.48
	미혼(19세 이상)	(28)	10.7	28.6	35.7	14.3	3.6	7.1	39.3	35.7	17.9		3.31
	그 외 기타	(9)	22.2	11.1	22.2	44.4			33.3	22.2	44.4		3.11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27)	11.1	29.6	33.3	22.2		3.7	40.7	33.3	22.2		3.31
	중졸이하	(102)	7.8	34.3	30.4	24.5	2.0		42.2	30.4	26.5	1.0	3.22
	고졸이하	(57)	12.3	29.8	28.1	28.1	1.8		42.1	28.1	29.8		3.23
	대졸이하	(19)	10.5	52.6	15.8	15.8		5.3	63.2	15.8	15.8		3.61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2.6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07)	11.2	31.8	27.1	28.0	0.9	0.9	43.0	27.1	29.0		3.25
	아파트	(35)	5.7	34.3	34.3	22.9			40.0	34.3	22.9	2.9	3.24
	다가구(연립)주택	(44)	11.4	36.4	31.8	18.2		2.3	47.7	31.8	18.2		3.42
	무허가주택	(9)		44.4	33.3	22.2			44.4	33.3	22.2		3.22
	구호시설	(1)					100.0				100.0		1.00
	기타	(12)	8.3	33.3	25.0	25.0	8.3		41.7	25.0	33.3		3.0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54)	14.8	48.1	18.5	14.8	1.9	1.9	63.0	18.5	16.7	
전세(1억 미만)		(12)	16.7	16.7	50.0	16.7			33.3	50.0	16.7		3.33
월세		(68)	8.8	35.3	36.8	16.2	1.5	1.5	44.1	36.8	17.6		3.34
장기(영구)임대		(26)		26.9	30.8	38.5			26.9	30.8	38.5	3.8	2.88
기타		(46)	8.7	26.1	19.6	43.5	2.2		34.8	19.6	45.7		2.96
모름/무응답		(3)			100.0					100.0			3.00

15_3. 의료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의료급여 수급자(N=209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41.1%(매우 8.1% + 대체로 33.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7.2%(별로 16.3% + 전혀 1.0%)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두 배 정도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4.9%, ‘잘 모르겠다’는 2.4%, ‘무응답’은 4.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의료급여 지원기간	41.1%	34.9%	17.2%	3.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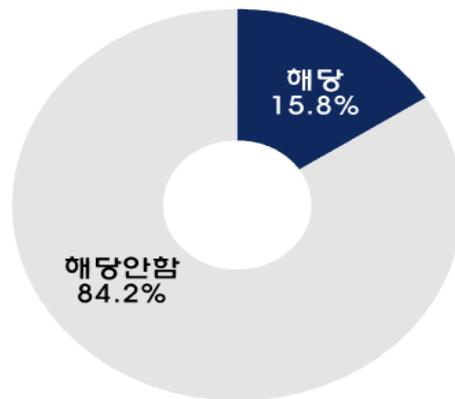
(Base: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209명)

【표 15_3】 의료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구분	긴급 수급자	(209)	8.1	33.0	34.9	16.3	1.0	2.4	41.1	34.9	17.2	4.3	3.3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22)	9.1	40.9	31.8			9.1	50.0	31.8		9.1	3.72	
	6대 광역시	(53)	17.0	49.1	17.0	17.0			66.0	17.0	17.0		3.66	
	중소도시	(77)		16.9	53.2	24.7		1.3	2.6	16.9	53.2	26.0	1.3	2.89
	기타 농어촌	(57)	10.5	36.8	28.1	10.5	1.8	1.8	47.4	28.1	12.3	10.5	3.50	
성별	남성	(117)	4.3	34.2	36.8	18.8	1.7	2.6	38.5	36.8	20.5	1.7	3.21	
	여성	(92)	13.0	31.5	32.6	13.0		2.2	44.6	32.6	13.0	7.6	3.49	
연령별	10대	(8)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29	
	20대	(3)		33.3	33.3			33.3	33.3	33.3			3.50	
	30대	(12)	16.7	50.0	16.7	16.7			66.7	16.7	16.7		3.67	
	40대	(64)	10.9	40.6	31.3	14.1		1.6	51.6	31.3	14.1	1.6	3.50	
	50대	(54)	3.7	29.6	35.2	18.5	1.9	3.7	33.3	35.2	20.4	7.4	3.17	
	60대	(37)	8.1	29.7	37.8	13.5		2.7	37.8	37.8	13.5	8.1	3.36	
	70대	(22)	13.6	22.7	40.9	18.2	4.5		36.4	40.9	22.7		3.23	
	80대 이상	(8)		12.5	50.0	37.5			12.5	50.0	37.5		2.7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6)		66.7	16.7	16.7			66.7	16.7	16.7		3.50	
	임시고용	(8)		37.5	37.5	12.5			37.5	37.5	12.5	12.5	3.29	
	일용직	(11)	9.1	45.5	18.2	18.2		9.1	54.5	18.2	18.2		3.50	
	자영업	(5)	20.0	20.0	60.0				40.0	60.0			3.60	
	자활근로	(4)		25.0	50.0	25.0			25.0	50.0	25.0		3.00	
	실업	(15)	13.3	40.0	20.0	13.3		13.3	53.3	20.0	13.3		3.62	
	비경제활동	(142)	7.7	29.6	38.7	16.9	1.4	1.4	37.3	38.7	18.3	4.2	3.27	
	기타	(18)	11.1	38.9	22.2	16.7			50.0	22.2	16.7	11.1	3.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97)	9.3	33.0	32.0	14.4	1.0	2.1	42.3	32.0	15.5	8.2	3.39	
	장애가 없다	(109)	7.3	32.1	37.6	18.3	0.9	2.8	39.4	37.6	19.3	0.9	3.28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3.3			3.67	
혼인 여부	기혼	(71)	7.0	33.8	35.2	15.5	1.4	1.4	40.8	35.2	16.9	5.6	3.32	
	이혼 또는 별거	(59)	6.8	30.5	32.2	25.4		1.7	37.3	32.2	25.4	3.4	3.20	
	사별 후 독신	(41)	14.6	36.6	34.1	9.8			51.2	34.1	9.8	4.9	3.59	
	미혼(19세 이상)	(28)	7.1	28.6	46.4	7.1	3.6	7.1	35.7	46.4	10.7		3.31	
	그 외 기타	(9)		33.3	22.2	22.2		11.1	33.3	22.2	22.2	11.1	3.1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27)	11.1	29.6	37.0	18.5		3.7	40.7	37.0	18.5		3.35	
	중졸이하	(102)	4.9	31.4	39.2	14.7	1.0	2.0	36.3	39.2	15.7	6.9	3.27	
	고졸이하	(57)	14.0	29.8	31.6	21.1	1.8		43.9	31.6	22.8	1.8	3.34	
	대졸이하	(19)	5.3	57.9	15.8	10.5		5.3	63.2	15.8	10.5	5.3	3.65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모름/무응답	(3)			66.7			33.3		66.7			3.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07)	9.3	32.7	33.6	19.6	0.9	2.8	42.1	33.6	20.6	0.9	3.31	
	아파트	(35)	2.9	28.6	37.1	11.4	2.9		31.4	37.1	14.3	17.1	3.21	
	다가구(연립)주택	(44)	13.6	40.9	34.1	9.1		2.3	54.5	34.1	9.1		3.60	
	무허가주택	(9)		33.3	33.3	22.2			33.3	33.3	22.2	11.1	3.13	
	구호시설	(1)			100.0					100.0			3.00	
	기타	(12)		16.7	41.7	25.0		8.3	16.7	41.7	25.0	8.3	2.9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54)	14.8	37.0	27.8	13.0	1.9	1.9	51.9	27.8	14.8	3.7	3.53	
	전세(1억 미만)	(12)	16.7	33.3	41.7	8.3			50.0	41.7	8.3		3.58	
	월세	(68)	7.4	33.8	39.7	10.3		4.4	41.2	39.7	10.3	4.4	3.42	
	장기(영구)임대	(26)		26.9	38.5	19.2	3.8		26.9	38.5	23.1	11.5	3.00	
	기타	(46)	4.3	32.6	28.3	30.4		2.2	37.0	28.3	30.4	2.2	3.11	
	모름/무응답	(3)			100.0					100.0			3.00	

16. 교육급여 수급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5.8%,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교육급여의 적절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69점) > 지원기간(3.45점) > 지원규모(3.11점) 순으로 높았다.

구 분	적 절	보 통	적절하지 않음	평 점
교육급여 수급방법	<u>65.3%</u>	22.4%	10.2%	3.69점
교육급여 지원규모	<u>38.8%</u>	24.5%	28.6%	3.11점
교육급여 지원기간	<u>53.1%</u>	28.6%	14.3%	3.45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49명)

【표 16】 교육급여 수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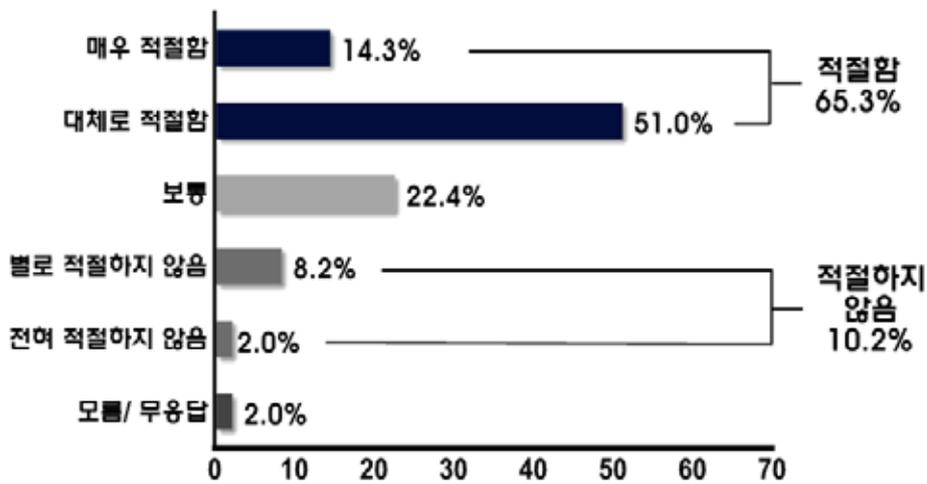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311)	15.8	84.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5.8	84.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12.0	88.0
	6대 광역시	(68)	19.1	80.9
	중소도시	(98)	16.3	83.7
	기타 농어촌	(95)	14.7	85.3
성별	남성	(160)	8.8	91.3
	여성	(151)	23.2	76.8
연령별	10대	(10)	40.0	60.0
	20대	(7)	14.3	85.7
	30대	(23)	21.7	78.3
	40대	(94)	24.5	75.5
	50대	(79)	16.5	83.5
	60대	(52)	1.9	98.1
	70대	(34)		100.0
	80대 이상	(11)	18.2	81.8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12.5	87.5
	임시고용	(13)	30.8	69.2
	일용직	(23)	21.7	78.3
	자영업	(8)	12.5	87.5
	자활근로	(5)	40.0	60.0
	실업	(24)	12.5	87.5
	비경제활동	(194)	12.9	87.1
	기타	(28)	25.0	7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10.2	89.8
	장애가 없다	(170)	20.6	79.4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09)	22.0	78.0
	이혼 또는 별거	(92)	8.7	91.3
	사별 후 독신	(58)	15.5	84.5
	미혼(19세 이상)	(37)	8.1	91.9
	그 외 기타	(11)	36.4	63.6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39)	10.3	89.7
	중졸이하	(140)	12.9	87.1
	고졸이하	(92)	16.3	83.7
	대졸이하	(30)	36.7	63.3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18.5	81.5
	아파트	(60)	11.7	88.3
	다가구(연립)주택	(61)	14.8	85.2
	무허가주택	(10)	10.0	9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12.5	87.5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 형태	자가	(80)	8.8	91.3
	전세(1억 미만)	(17)	23.5	76.5
	월세	(103)	16.5	83.5
	장기(영구)임대	(41)	17.1	82.9
	기타	(64)	20.3	79.7
	모름/무응답	(6)	16.7	83.3

16_1. 교육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49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5.3%(매우 14.3% + 대체로 51.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0.2%(별로 8.2% + 전혀 2.0%)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2.4%,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6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수급방법	65.3%	22.4%	10.2%	3.69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49명)

【표 16_1】 교육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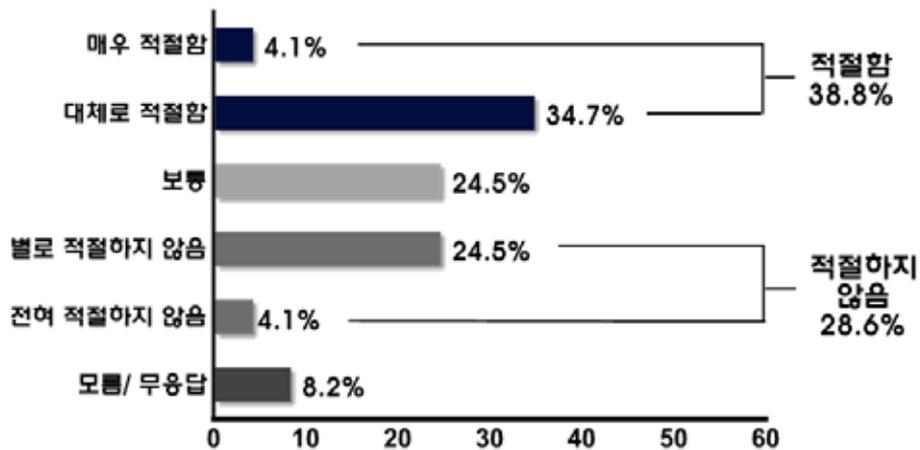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균	
전체	(49)	14.3	51.0	22.4	8.2	2.0	2.0	65.3	22.4	10.2	3.69	
구분	간접 수급자	(49)	14.3	51.0	22.4	8.2	2.0	65.3	22.4	10.2	3.6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	16.7	33.3	33.3			16.7	50.0	33.3	3.80	
	6대 광역시	(13)	23.1	53.8	23.1				76.9	23.1	4.00	
	중소도시	(16)		50.0	37.5	6.3	6.3		50.0	37.5	12.5	3.31
	기타 농어촌	(14)	21.4	57.1		21.4			78.6		21.4	3.79
성별	남성	(14)	14.3	50.0	28.6		7.1		64.3	28.6	7.1	3.64
	여성	(35)	14.3	51.4	20.0	11.4		2.9	65.7	20.0	11.4	3.71
연령별	10대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20대	(1)						100.0				.
	30대	(5)	40.0	20.0	20.0	20.0			60.0	20.0	20.0	3.80
	40대	(23)	4.3	65.2	21.7	4.3	4.3		69.6	21.7	8.7	3.61
	50대	(13)	15.4	53.8	30.8				69.2	30.8		3.85
	60대	(1)	100.0						100.0			5.00
	80대 이상	(2)		50.0		50.0			50.0		50.0	3.00
고용형태	상시고용	(2)		100.0					100.0			4.00
	일시고용	(4)		25.0	75.0				25.0	75.0		3.25
	일용직	(5)	20.0	20.0	20.0	20.0		20.0	40.0	20.0	20.0	3.50
	자영업	(1)		100.0					100.0			4.00
	자활근로	(2)			50.0	50.0				50.0	50.0	2.50
	실업	(3)	66.7	33.3					100.0			4.67
	비경제활동	(25)	12.0	60.0	20.0	4.0	4.0		72.0	20.0	8.0	3.72
기타	(7)	14.3	57.1	14.3	14.3			71.4	14.3	14.3	3.71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4)	14.3	64.3	7.1	7.1	7.1		78.6	7.1	14.3	3.71
	장애가 없다	(35)	14.3	45.7	28.6	8.6		2.9	60.0	28.6	8.6	3.68
혼인여부	기혼	(24)	16.7	54.2	25.0	4.2			70.8	25.0	4.2	3.83
	이혼 또는 별거	(8)	12.5	62.5	12.5		12.5		75.0	12.5	12.5	3.63
	사별 후 독신	(9)	11.1	44.4	22.2	22.2			55.6	22.2	22.2	3.44
	미혼(19세 이상)	(3)		33.3	33.3			33.3	33.3	33.3		3.50
	그 외 기타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4)		75.0		25.0			75.0		25.0	3.50
	중졸이하	(18)	22.2	55.6	22.2				77.8	22.2		4.00
	고졸이하	(15)	20.0	33.3	26.7	13.3	6.7		53.3	26.7	20.0	3.47
	대졸이하	(11)		54.5	27.3	9.1		9.1	54.5	27.3	9.1	3.5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주택종류	단독주택	(28)	17.9	42.9	28.6	7.1	3.6		60.7	28.6	10.7	3.64
	아파트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다가구(연립)주택	(9)	11.1	66.7	11.1			11.1	77.8	11.1		4.0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2.00
	기타	(3)	33.3	66.7					100.0			4.3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형태	자가	(7)	28.6	42.9	14.3	14.3			71.4	14.3	14.3	3.86
	전세(1억 미만)	(4)	25.0	75.0					100.0			4.25
	월세	(17)	17.6	41.2	35.3			5.9	58.8	35.3		3.81
	장기(영구)임대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기타	(13)	7.7	53.8	15.4	15.4	7.7		61.5	15.4	23.1	3.38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16_2. 교육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49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8.8%(매우 4.1% + 대체로 34.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8.6%(별로 24.5% + 전혀 4.1%)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4.5%, ‘잘 모르겠다’는 2.0%, ‘무응답’은 6.1%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1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지원규모	38.8%	24.5%	28.6%	3.11점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49명)

【표 16_2】 교육급여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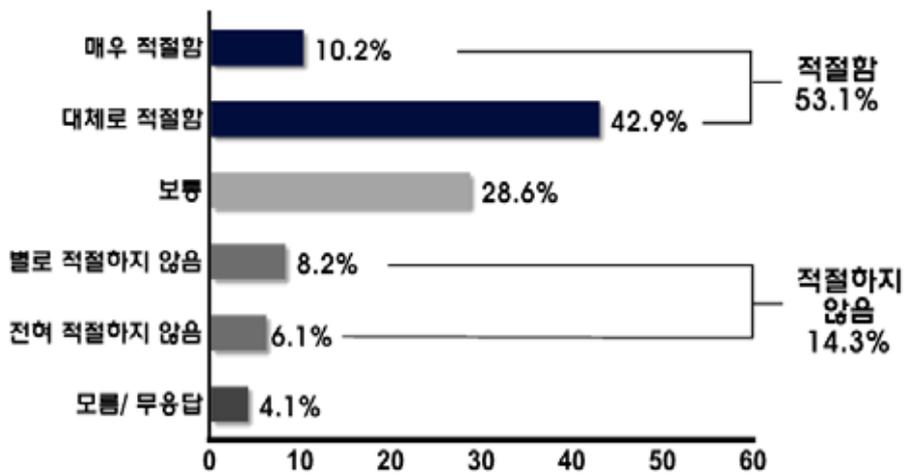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49)	4.1	34.7	24.5	24.5	4.1	2.0	38.8	24.5	28.6	6.1	3.11	
구분	간접 수급자	(49)	4.1	34.7	24.5	24.5	4.1	2.0	38.8	24.5	28.6	6.1	3.1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		16.7	16.7	16.7		16.7	16.7	16.7	16.7	33.3	3.00
	6대 광역시	(13)	7.7	38.5	23.1	30.8			46.2	23.1	30.8		3.23
	중소도시	(16)		25.0	37.5	25.0	12.5		25.0	37.5	37.5		2.75
	기타 농어촌	(14)	7.1	50.0	14.3	21.4			57.1	14.3	21.4	7.1	3.46
성별	남성	(14)	7.1	28.6	28.6	28.6	7.1		35.7	28.6	35.7		3.00
	여성	(35)	2.9	37.1	22.9	22.9	2.9	2.9	40.0	22.9	25.7	8.6	3.16
연령별	10대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20대	(1)					100.0						.
	30대	(5)	20.0	40.0		40.0			60.0		40.0		3.40
	40대	(23)	4.3	34.8	30.4	21.7	8.7		39.1	30.4	30.4		3.04
	50대	(13)		30.8	30.8	30.8			30.8	30.8	30.8	7.7	3.00
	60대	(1)		100.0					100.0				4.00
	80대 이상	(2)		50.0					50.0			50.0	4.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		50.0		50.0			50.0		50.0		3.00
	일시고용	(4)		25.0	50.0	25.0			25.0	50.0	25.0		3.00
	일용직	(5)			60.0	20.0		20.0		60.0	20.0		2.75
	자영업	(1)					100.0				100.0		1.00
	자활근로	(2)			50.0	50.0				50.0	50.0		2.50
	실업	(3)	66.7	33.3					100.0				4.67
	비경제활동	(25)		48.0	16.0	24.0	4.0		48.0	16.0	28.0	8.0	3.17
	기타	(7)		28.6	28.6	28.6			28.6	28.6	28.6	14.3	3.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4)		42.9	7.1	35.7	7.1		42.9	7.1	42.9	7.1	2.92
	장애가 없다	(35)	5.7	31.4	31.4	20.0	2.9	2.9	37.1	31.4	22.9	5.7	3.19
혼인 여부	기혼	(24)	4.2	29.2	29.2	29.2	4.2		33.3	29.2	33.3	4.2	3.00
	이혼 또는 별거	(8)	12.5	37.5	12.5	25.0	12.5		50.0	12.5	37.5		3.13
	사별 후 독신	(9)		44.4	22.2	22.2			44.4	22.2	22.2	11.1	3.25
	미혼(19세 이상)	(3)		33.3	33.3			33.3	33.3	33.3			3.50
	그 외 기타	(4)		25.0	25.0	25.0		33.3	33.3	33.3		25.0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4)		75.0					75.0			25.0	4.00
	중졸이하	(18)	5.6	38.9	33.3	22.2			44.4	33.3	22.2		3.28
	고졸이하	(15)	6.7	20.0	20.0	33.3	13.3		26.7	20.0	46.7	6.7	2.71
	대졸이하	(11)		27.3	27.3	27.3		9.1	27.3	27.3	27.3	9.1	3.0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8)	7.1	25.0	35.7	25.0	7.1		32.1	35.7	32.1		3.00
	아파트	(7)		42.9	14.3	28.6			42.9	14.3	28.6	14.3	3.17
	다가구(연립)주택	(9)		44.4	11.1	33.3		11.1	44.4	11.1	33.3		3.13
	무허가주택	(1)										100.0	.
	기타	(3)		66.7					66.7			33.3	4.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7)		57.1	28.6	14.3			57.1	28.6	14.3		3.43
	전세(1억 미만)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월세	(17)	5.9	29.4	35.3	23.5		5.9	35.3	35.3	23.5		3.19
	장기(영구)임대	(7)		42.9	14.3	28.6			42.9	14.3	28.6	14.3	3.17
	기타	(13)		23.1	15.4	30.8		15.4	23.1	15.4	46.2	15.4	2.55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16_3. 교육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교육급여 수급자(N=49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3.1%(매우 10.2% + 대체로 42.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4.3%(별로 8.2% + 전혀 6.1%)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8.6%, ‘잘 모르겠다’는 2.0%, ‘무응답’은 2.0%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45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교육급여 지원기간	53.1%	28.6%	14.3%	3.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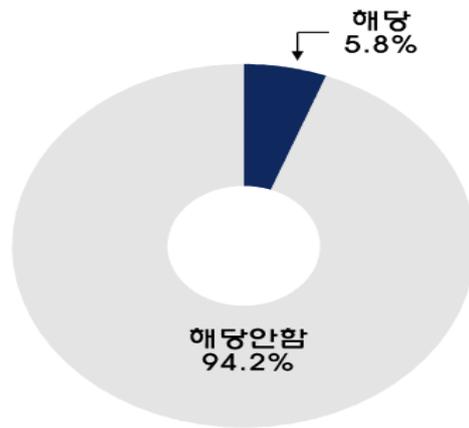
(Base: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 49명)

【표 16_3】 교육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49)	10.2	42.9	28.6	8.2	6.1	2.0	53.1	28.6	14.3	2.0	3.45	
구분	긴급 수급자	(49)	10.2	42.9	28.6	8.2	6.1	2.0	53.1	28.6	14.3	2.0	3.4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	16.7	33.3	33.3			16.7	50.0	33.3			3.80
	6대 광역시	(13)	15.4	61.5	23.1				76.9	23.1			3.92
	중소도시	(16)		31.3	37.5	12.5	18.8		31.3	37.5	31.3		2.81
	기타 농어촌	(14)	14.3	42.9	21.4	14.3			57.1	21.4	14.3	7.1	3.62
성별	남성	(14)	14.3	21.4	42.9	7.1	14.3		35.7	42.9	21.4		3.14
	여성	(35)	8.6	51.4	22.9	8.6	2.9	2.9	60.0	22.9	11.4	2.9	3.58
연령별	10대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20대	(1)						100.0					.
	30대	(5)	20.0	40.0	20.0	20.0			60.0	20.0	20.0		3.60
	40대	(23)	4.3	47.8	34.8	4.3	8.7		52.2	34.8	13.0		3.35
	50대	(13)	7.7	46.2	30.8	7.7	7.7		53.8	30.8	15.4		3.38
	60대	(1)	100.0						100.0				5.00
	80대 이상	(2)		50.0					50.0			50.0	4.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		50.0		50.0			50.0		50.0		3.00
	임시고용	(4)		25.0	75.0				25.0	75.0			3.25
	일용직	(5)			60.0	20.0		20.0		60.0	20.0		2.75
	자영업	(1)					100.0				100.0		1.00
	자활근로	(2)		50.0	50.0				50.0	50.0			3.50
	실업	(3)	66.7		33.3				66.7	33.3			4.33
	비경제활동	(25)	8.0	60.0	16.0	4.0	8.0		68.0	16.0	12.0	4.0	3.58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4)	14.3	57.1	7.1	14.3	7.1		71.4	7.1	21.4		3.57
	장애가 없다	(35)	8.6	37.1	37.1	5.7	5.7	2.9	45.7	37.1	11.4	2.9	3.39
혼인 여부	기혼	(24)	8.3	45.8	33.3	4.2	8.3		54.2	33.3	12.5		3.42
	이혼 또는 별거	(8)	12.5	50.0	12.5	12.5	12.5		62.5	12.5	25.0		3.38
	사별 후 독신	(9)	11.1	33.3	33.3	11.1			44.4	33.3	11.1	11.1	3.50
	미혼(19세 이상)	(3)		33.3	33.3			33.3	33.3	33.3			3.50
	그 외 기타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학력	무학	(4)		75.0					75.0		25.0		4.00
	중졸이하	(18)	11.1	38.9	38.9	5.6	5.6		50.0	38.9	11.1		3.44
	고졸이하	(15)	20.0	26.7	26.7	13.3	13.3		46.7	26.7	26.7		3.27
	대졸이하	(11)		54.5	27.3	9.1		9.1	54.5	27.3	9.1		3.5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4.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28)	10.7	32.1	39.3	10.7	7.1		42.9	39.3	17.9		3.29
	아파트	(7)		57.1	14.3	14.3			57.1	14.3	28.6		3.14
	다가구(연립)주택	(9)	11.1	55.6	22.2			11.1	66.7	22.2			3.88
	무허가주택	(1)									100.0		.
	기타	(3)	33.3	66.7					100.0				4.3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주거 형태	자가	(7)	14.3	57.1	28.6				71.4	28.6			3.86
	전세(1억 미만)	(4)	25.0	50.0	25.0				75.0	25.0			4.00
	월세	(17)	11.8	35.3	41.2	5.9		5.9	47.1	41.2	5.9		3.56
	장기(영구)임대	(7)		57.1	14.3	14.3	14.3		57.1	14.3	28.6		3.14
	기타	(13)	7.7	30.8	23.1	15.4	15.4		38.5	23.1	30.8	7.7	3.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17. 자활급여 수급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자활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5.8%,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2%로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자활급여의 적절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00점) > 지원기간(2.92점) > 지원규모(2.79점) 순으로 높았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수급방법	22.2%	27.8%	16.7%	3.00점
자활급여 지원규모	11.1%	44.4%	22.2%	2.79점
자활급여 지원기간	16.7%	33.3%	16.7%	2.92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8명)

【표 17_1】자활급여 수급여부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체 ■		(311)	5.8	94.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5.8	94.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8.0	92.0
	6대 광역시	(68)	8.8	91.2
	중소도시	(98)	3.1	96.9
	기타 농어촌	(95)	5.3	94.7
성별	남성	(160)	3.1	96.9
	여성	(151)	8.6	91.4
연령별	10대	(10)	20.0	80.0
	20대	(7)	14.3	85.7
	30대	(23)	4.3	95.7
	40대	(94)	4.3	95.7
	50대	(79)	7.6	92.4
	60대	(52)	7.7	92.3
	70대	(34)		100.0
	80대 이상	(1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6.3	93.8
	임시고용	(13)	15.4	84.6
	일용직	(23)	4.3	95.7
	자영업	(8)		100.0
	자활근로	(5)	60.0	40.0
	실업	(24)		100.0
	비경제활동	(194)	4.6	95.4
	기타	(28)	7.1	92.9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4.4	95.6
	장애가 없다	(170)	7.1	92.9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109)	4.6	95.4
	이혼 또는 별거	(92)	5.4	94.6
	사별 후 독신	(58)	5.2	94.8
	미혼(19세 이상)	(37)	10.8	89.2
	그 외 기타	(11)	9.1	90.9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39)		100.0
	중졸이하	(140)	5.7	94.3
	고졸이하	(92)	3.3	96.7
	대졸이하	(30)	20.0	80.0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4.0	96.0
	아파트	(60)	10.0	90.0
	다가구(연립)주택	(61)	6.6	93.4
	무허가주택	(10)	10.0	9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4.2	95.8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형태	자가	(80)	5.0	95.0
	전세(1억 미만)	(17)	5.9	94.1
	월세	(103)	5.8	94.2
	장기(영구)임대	(41)	9.8	90.2
	기타	(64)	3.1	96.9
	모름/무응답	(6)	16.7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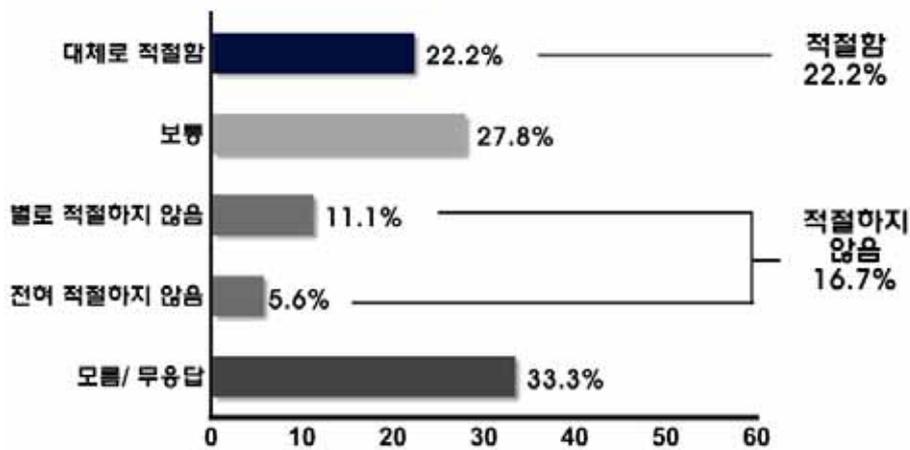
17_1. 자활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2.2%(대체로 22.2%),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6.7%(별로 11.1% + 전혀 5.6%)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27.8%, ‘잘 모르겠다’는 16.7%, ‘무응답’은 16.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수급방법	22.2%	27.8%	16.7%	3.00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8명)

【표 17_1】 자활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18)	22.2	27.8	11.1	5.6	16.7	22.2	27.8	16.7	16.7	3.00	
구분	긴급 수급자	(18)	22.2	27.8	11.1	5.6	16.7	22.2	27.8	16.7	3.0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	25.0	25.0		25.0	25.0	25.0	25.0		2.67	
	6대 광역시	(6)	33.3	33.3	33.3			33.3	33.3	33.3	3.00	
	중소도시	(3)		66.7			33.3		66.7		3.00	
	기타 농어촌	(5)	20.0				20.0	20.0		60.0	4.00	
성별	남성	(5)	40.0	40.0			40.0	40.0		20.0	3.50	
	여성	(13)	15.4	23.1	15.4	7.7	23.1	15.4	23.1	23.1	15.4	2.75
연령별	10대	(2)					50.0			50.0	.	
	20대	(1)					100.0				.	
	30대	(1)				100.0			100.0		1.00	
	40대	(4)		100.0					100.0		3.00	
	50대	(6)	33.3		33.3			33.3		33.3	3.00	
	60대	(4)	50.0	25.0			25.0	50.0	25.0		3.67	
고용형태	상시고용	(1)		100.0					100.0		3.00	
	임시고용	(2)		50.0		50.0			50.0	50.0	2.00	
	일용직	(1)					100.0				.	
	자활근로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비경제활동	(9)	33.3	22.2	11.1		11.1	33.3	22.2	11.1	22.2	3.33
	기타	(2)					50.0				50.0	.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6)	16.7	16.7		16.7	16.7	16.7	16.7	16.7	33.3	2.67
	장애가 없다	(12)	25.0	33.3	16.7		16.7	25.0	33.3	16.7	8.3	3.11
혼인여부	기혼	(5)	60.0	20.0	20.0			60.0	20.0	20.0		3.40
	이혼 또는 별거	(5)		40.0	20.0				40.0	20.0	40.0	2.67
	사별 후 독신	(3)	33.3	33.3			33.3	33.3	33.3			3.50
	미혼(19세 이상)	(4)		25.0		25.0	25.0		25.0	25.0	25.0	2.00
그 외 기타	(1)					100.0					.	
학력	중졸이하	(8)	37.5	25.0			25.0	37.5	25.0		12.5	3.60
	고졸이하	(3)		33.3					33.3		66.7	3.00
	대졸이하	(6)	16.7	33.3	33.3		16.7	16.7	33.3	33.3		2.8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주택종류	단독주택	(6)	33.3	16.7	16.7		16.7	33.3	16.7	16.7	16.7	3.25
	아파트	(6)	16.7	33.3		16.7		16.7	33.3	16.7	33.3	2.75
	다가구(연립)주택	(4)		25.0	25.0		50.0		25.0	25.0		2.5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4.00
	기타	(1)		100.0					100.0			3.00
주거형태	자가	(4)	50.0				25.0	50.0			25.0	4.00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6)		33.3	16.7		33.3		33.3	16.7	16.7	2.67
	장기(영구)임대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67
	기타	(2)		50.0	50.0				50.0	50.0		2.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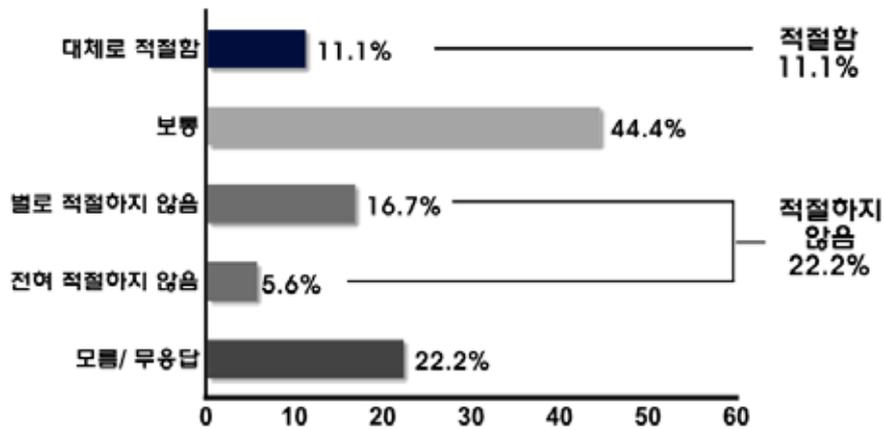
17_2. 자활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8명)에게 지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11.1%(대체로 11.1%),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2.2%(별로 16.7% + 전혀 5.6%)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4.4%, ‘잘 모르겠다’는 16.7%, ‘무응답’은 5.6%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79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지원규모	11.1%	44.4%	22.2%	2.79점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8명)

【표 17_2】 자활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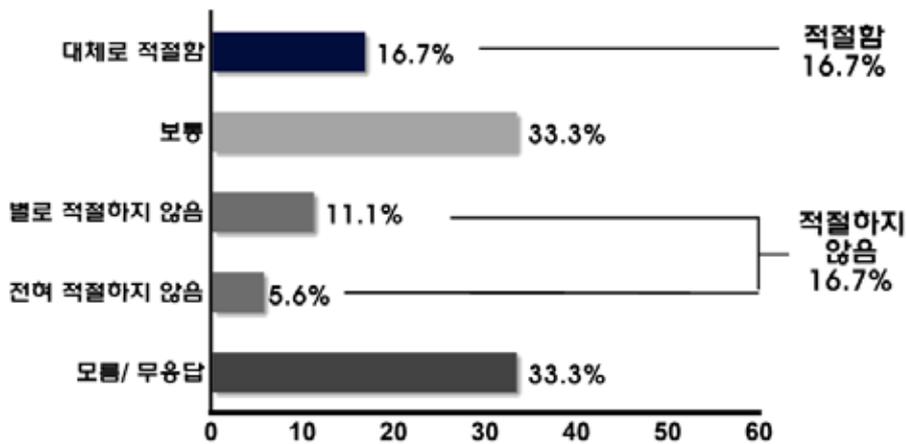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 전 체 ■	(18)	11.1	44.4	16.7	5.6	16.7	11.1	44.4	22.2	5.6	2.79	
구분	긴급 수급자	(18)	11.1	44.4	16.7	5.6	16.7	11.1	44.4	22.2	5.6	2.7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		25.0		25.0		25.0	25.0	25.0	2.00	
	6대 광역시	(6)	16.7	33.3	50.0		16.7	33.3	50.0		2.67	
	중소도시	(3)		66.7			33.3		66.7		3.00	
	기타 농어촌	(5)	20.0	60.0			20.0	20.0	60.0		3.25	
성별	남성	(5)	20.0	60.0	20.0		20.0	60.0	20.0		3.00	
	여성	(13)	7.7	38.5	15.4	7.7	23.1	7.7	38.5	23.1	7.7	2.67
연령별	10대	(2)		50.0			50.0		50.0		3.00	
	20대	(1)					100.0				.	
	30대	(1)				100.0			100.0		1.00	
	40대	(4)		100.0					100.0		3.00	
	50대	(6)		33.3	50.0				33.3	50.0	16.7	2.40
	60대	(4)	50.0	25.0			25.0	50.0	25.0		3.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1)		100.0					100.0		3.00	
	임시고용	(2)		50.0		50.0			50.0	50.0	2.00	
	일용직	(1)					100.0				.	
	자활근로	(3)		33.3	66.7				33.3	66.7	2.33	
	비경제활동	(9)	22.2	44.4	11.1		11.1	22.2	44.4	11.1	11.1	3.14
	기타	(2)		50.0			50.0		50.0			3.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6)		50.0		16.7	16.7		50.0	16.7	16.7	2.50
	장애가 없다	(12)	16.7	41.7	25.0		16.7	16.7	41.7	25.0		2.90
혼인 여부	기혼	(5)	40.0	20.0	20.0			40.0	20.0	20.0	20.0	3.25
	이혼 또는 별거	(5)		80.0	20.0				80.0	20.0		2.80
	사별 후 독신	(3)		33.3	33.3			33.3	33.3	33.3		2.50
	미혼(19세 이상)	(4)		50.0		25.0	25.0		50.0	25.0		2.33
	그 외 기타	(1)					100.0					.
학력	중졸이하	(8)	25.0	37.5	12.5		25.0	25.0	37.5	12.5		3.17
	고졸이하	(3)		100.0					100.0			3.00
	대졸이하	(6)		33.3	33.3		16.7		33.3	33.3	16.7	2.5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6)	33.3	33.3	16.7		16.7	33.3	33.3	16.7		3.20
	아파트	(6)		66.7		16.7			66.7	16.7	16.7	2.60
	다가구(연립)주택	(4)		25.0	25.0		50.0		25.0	25.0		2.5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2.00
	기타	(1)		100.0						100.0		3.00
주거 형태	자가	(4)	50.0	25.0			25.0	50.0	25.0			3.67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6)		50.0	16.7		33.3		50.0	16.7		2.75
	장기(영구)임대	(4)		50.0		25.0			50.0	25.0	25.0	2.33
	기타	(2)		50.0	50.0				50.0	50.0		2.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17_3. 자활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자활급여 수급자(N=18명)에게 지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16.7%(대체로 16.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6.7%(별로 11.1% + 전혀 5.6%)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33.3%, ‘잘 모르겠다’는 16.7%, ‘무응답’은 16.7%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92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자활급여 지원기간	16.7%	33.3%	16.7%	2.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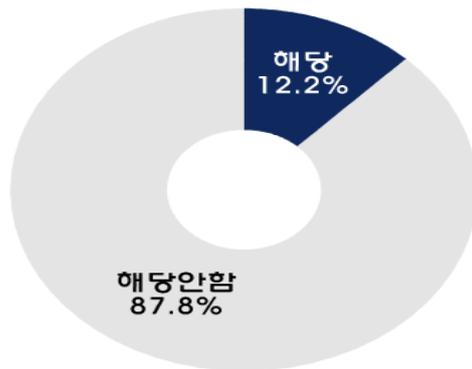
(Base: 현재 자활급여 수급자 18명)

【표 17_3】 자활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18)	16.7	33.3	11.1	5.6	16.7	16.7	33.3	16.7	16.7	2.92	
구분	긴급 수급자	(18)	16.7	33.3	11.1	5.6	16.7	16.7	33.3	16.7	2.9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4)	25.0	25.0		25.0	25.0	25.0	25.0		2.67	
	6대 광역시	(6)	33.3	33.3	33.3			33.3	33.3	33.3	3.00	
	중소도시	(3)		66.7			33.3		66.7		3.00	
	기타 농어촌	(5)		20.0			20.0		20.0	60.0	3.00	
성별	남성	(5)	20.0	60.0			20.0	60.0		20.0	3.25	
	여성	(13)	15.4	23.1	15.4	7.7	23.1	15.4	23.1	23.1	2.75	
연령별	10대	(2)					50.0			50.0	.	
	20대	(1)					100.0				.	
	30대	(1)				100.0			100.0		1.00	
	40대	(4)		100.0					100.0		3.00	
	50대	(6)	33.3		33.3			33.3	33.3	33.3	3.00	
	60대	(4)	25.0	50.0			25.0	25.0	50.0		3.33	
고용 형태	상시고용	(1)		100.0					100.0		3.00	
	입시고용	(2)		50.0		50.0			50.0	50.0	2.00	
	일용직	(1)					100.0				.	
	자활근로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비경제활동	(9)	22.2	33.3	11.1		11.1	22.2	33.3	11.1	22.2	3.17
	기타	(2)					50.0				50.0	.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6)	16.7	16.7		16.7	16.7	16.7	16.7	33.3	2.67	
	장애가 없다	(12)	16.7	41.7	16.7		16.7	16.7	41.7	16.7	8.3	3.00
혼인 여부	기혼	(5)	40.0	40.0	20.0			40.0	40.0	20.0	3.20	
	이혼 또는 별거	(5)		40.0	20.0				40.0	20.0	40.0	2.67
	사별 후 독신	(3)	33.3	33.3			33.3	33.3	33.3		3.50	
	미혼(19세 이상)	(4)		25.0		25.0	25.0		25.0	25.0	25.0	2.00
	그 외 기타	(1)					100.0				.	
학력	중졸이하	(8)	25.0	37.5			25.0	25.0	37.5		12.5	3.40
	고졸이하	(3)		33.3					33.3		66.7	3.00
	대졸이하	(6)	16.7	33.3	33.3		16.7	16.7	33.3	33.3		2.8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1.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6)	16.7	33.3	16.7		16.7	16.7	33.3	16.7	16.7	3.00
	아파트	(6)	16.7	33.3		16.7		16.7	33.3	16.7	33.3	2.75
	다가구(연립)주택	(4)		25.0	25.0		50.0		25.0	25.0		2.5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4.00
	기타	(1)		100.0					100.0			3.00
주거 형태	자가	(4)	25.0	25.0			25.0	25.0		25.0	3.50	
	전세(1억 미만)	(1)		100.0					100.0			3.00
	월세	(6)		33.3	16.7		33.3		33.3	16.7	16.7	2.67
	장기(영구)임대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67
	기타	(2)		50.0	50.0				50.0	50.0		2.5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4.00

18. 기타 급여 수급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기타급여 수급여부를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는 응답이 12.2%,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7.8%로 나타났다.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기타급여의 적절성을 세 가지 항목으로 평점(5점 만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수급방법(3.34점) > 지원기간(3.17점) > 지원규모(2.86점) 순으로 높았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기타급여 수급방법	34.2%	47.4%	10.5%	3.34점
기타급여 지원규모	18.4%	44.7%	28.9%	2.86점
기타급여 지원기간	26.3%	50.0%	15.8%	3.17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38명)

【표 18】 그 외 기타급여 수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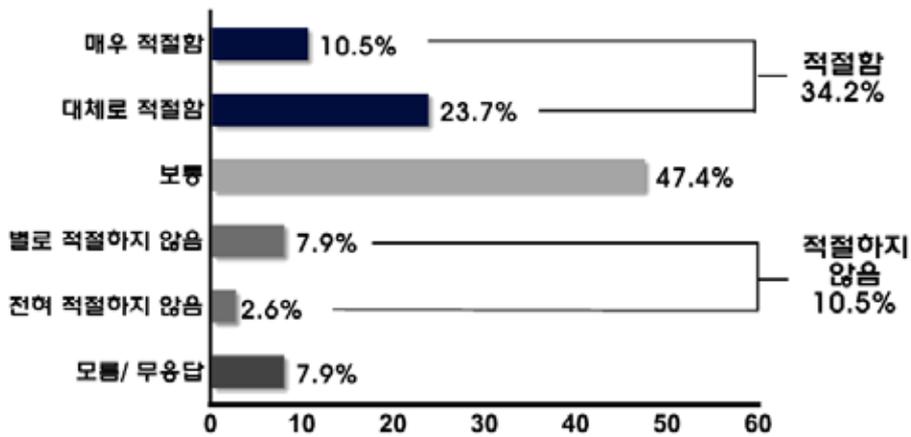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 ▣ 채		(311)	12.2	87.8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2.2	87.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10.0	90.0
	6대 광역시	(68)	4.4	95.6
	중소도시	(98)	21.4	78.6
	기타 농어촌	(95)	9.5	90.5
성별	남성	(160)	10.0	90.0
	여성	(151)	14.6	85.4
연령별	10대	(10)	30.0	70.0
	20대	(7)	14.3	85.7
	30대	(23)	8.7	91.3
	40대	(94)	8.5	91.5
	50대	(79)	12.7	87.3
	60대	(52)	9.6	90.4
	70대	(34)	8.8	91.2
	80대 이상	(11)	54.5	45.5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12.5	87.5
	임시고용	(13)	7.7	92.3
	일용직	(23)	17.4	82.6
	자영업	(8)	12.5	87.5
	자활근로	(5)		100.0
	실업	(24)	8.3	91.7
	비경제활동	(194)	12.4	87.6
	기타	(28)	14.3	85.7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16.8	83.2
	장애가 없다	(170)	8.8	91.2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109)	11.0	89.0
	이혼 또는 별거	(92)	14.1	85.9
	사별 후 독신	(58)	12.1	87.9
	미혼(19세 이상)	(37)	10.8	89.2
	그 외 기타	(11)	9.1	90.9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39)	15.4	84.6
	중졸이하	(140)	9.3	90.7
	고졸이하	(92)	17.4	82.6
	대졸이하	(30)	6.7	93.3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11.3	88.7
	아파트	(60)	18.3	81.7
	다가구(연립)주택	(61)	9.8	90.2
	무허가주택	(10)	10.0	9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12.5	87.5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형태	자가	(80)	16.3	83.8
	전세(1억 미만)	(17)	23.5	76.5
	월세	(103)	8.7	91.3
	장기(영구)임대	(41)	9.8	90.2
	기타	(64)	10.9	89.1
	모름/무응답	(6)	16.7	83.3

18_1. 기타급여의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3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4.2%(매우 10.5% + 대체로 2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0.5%(별로 7.9% + 전혀 2.6%)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7.4%, ‘잘 모르겠다’는 2.6%, ‘무응답’은 5.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34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기타급여 수급방법	34.2%	47.4%	10.5%	3.34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38명)

【표 18_1】 기타급여 수급방법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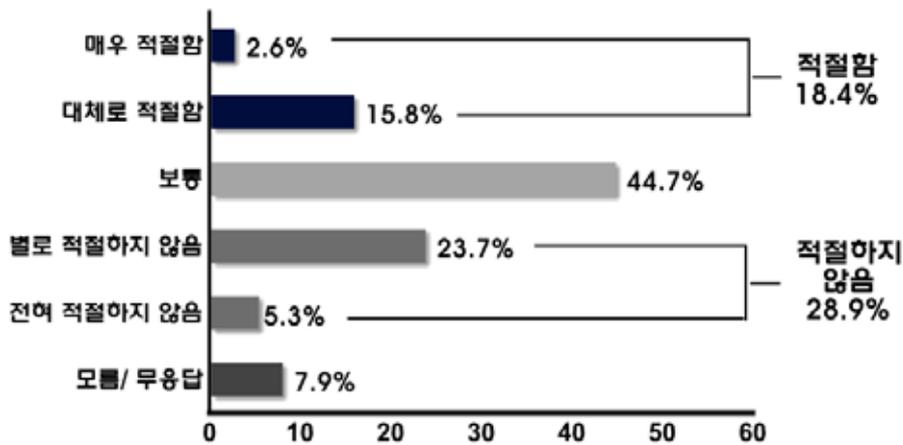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38)	10.5	23.7	47.4	7.9	2.6	2.6	34.2	47.4	10.5	5.3	3.34	
구분	긴급 수급자	(38)	10.5	23.7	47.4	7.9	2.6	2.6	34.2	47.4	10.5	5.3	3.3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	20.0	40.0		20.0		20.0	60.0		20.0		3.75
	6대 광역시	(3)		66.7	33.3				66.7	33.3			3.67
	중소도시	(21)		14.3	71.4	9.5	4.8		14.3	71.4	14.3		2.95
	기타 농어촌	(9)	33.3	22.2	22.2				55.6	22.2		22.2	4.14
성별	남성	(16)	6.3	37.5	43.8	6.3			43.8	43.8	6.3	6.3	3.47
	여성	(22)	13.6	13.6	50.0	9.1	4.5	4.5	27.3	50.0	13.6	4.5	3.25
연령별	10대	(3)	33.3	33.3					66.7			33.3	4.50
	20대	(1)						100.0					.
	30대	(2)	50.0			50.0			50.0		50.0		3.50
	40대	(8)	12.5	37.5	37.5		12.5		50.0	37.5	12.5		3.38
	50대	(10)	10.0	20.0	40.0	20.0			30.0	40.0	20.0	10.0	3.22
	60대	(5)		40.0	60.0				40.0	60.0			3.40
	70대	(3)			100.0					100.0			3.00
	80대 이상	(6)		16.7	83.3				16.7	83.3			3.17
고용 형태	상시고용	(2)		50.0	50.0				50.0	50.0			3.50
	임시고용	(1)				100.0					100.0		2.00
	일용직	(4)	50.0		25.0			25.0	50.0	25.0			4.33
	자영업	(1)					100.0				100.0		1.00
	실업	(2)			100.0					100.0			3.00
	비경제활동	(24)	4.2	29.2	58.3	4.2			33.3	58.3	4.2	4.2	3.35
	기타	(4)	25.0	25.0		25.0			50.0		25.0	25.0	3.6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23)	4.3	34.8	43.5	13.0			39.1	43.5	13.0	4.3	3.32
	장애가 없다	(15)	20.0	6.7	53.3		6.7	6.7	26.7	53.3	6.7	6.7	3.38
혼인 여부	기혼	(12)	8.3	16.7	66.7		8.3		25.0	66.7	8.3		3.17
	이혼 또는 별거	(13)	15.4	23.1	38.5	15.4			38.5	38.5	15.4	7.7	3.42
	사별 후 독신	(7)		42.9	57.1				42.9	57.1			3.43
	미혼(19세 이상)	(4)		25.0		25.0		25.0	25.0		25.0	25.0	3.00
	그 외 기타	(1)	100.0						100.0				5.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학력	무학	(6)		16.7	83.3				16.7	83.3			3.17
	중졸이하	(13)	7.7	23.1	61.5				30.8	61.5		7.7	3.42
	고졸이하	(16)	18.8	31.3	25.0	12.5	6.3		50.0	25.0	18.8	6.3	3.47
	대졸이하	(2)			50.0			50.0		50.0			3.0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7)	11.8	17.6	52.9	5.9	5.9		29.4	52.9	11.8	5.9	3.25
	아파트	(11)		27.3	54.5	9.1			27.3	54.5	9.1	9.1	3.20
	다가구(연립)주택	(6)	16.7	50.0	16.7			16.7	66.7	16.7			4.0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3.00
	기타	(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주거 형태	자가	(13)	15.4	7.7	61.5	7.7			23.1	61.5	7.7	7.7	3.33
	전세(1억 미만)	(4)		50.0	50.0				50.0	50.0			3.50
	월세	(9)	11.1	11.1	55.6			11.1	22.2	55.6		11.1	3.43
	장기(영구)임대	(4)		75.0		25.0			75.0		25.0		3.50
	기타	(7)	14.3	28.6	28.6	14.3	14.3		42.9	28.6	28.6		3.14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18_2. 기타급여의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3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18.4%(매우 2.6% + 대체로 15.8%),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28.9%(별로 23.7% + 전혀 5.3%)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44.7%, ‘잘 모르겠다’는 2.6%, ‘모름/무응답’은 5.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2.86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기타급여 지원규모	18.4%	44.7%	28.9%	2.86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38명)

【표 18_2】 기타급여 지원규모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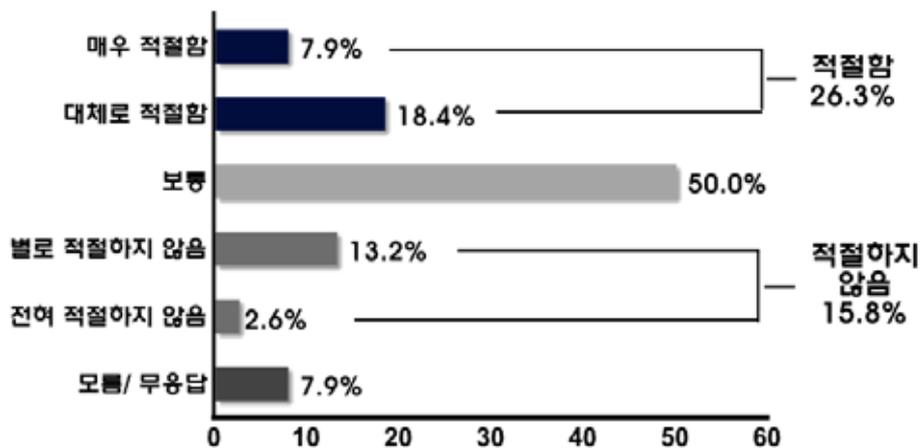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38)	2.6	15.8	44.7	23.7	5.3	2.6	18.4	44.7	28.9	5.3	2.86	
구분	긴급 수급자	(38)	2.6	15.8	44.7	23.7	5.3	2.6	18.4	44.7	28.9	5.3	2.8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	20.0	20.0		20.0	20.0	40.0		40.0		3.00	
	6대 광역시	(3)			33.3	33.3				33.3	33.3	2.50	
	중소도시	(21)		14.3	57.1	23.8	4.8		14.3	57.1	28.6	2.81	
	기타 농어촌	(9)		22.2	44.4	22.2			22.2	44.4	22.2	11.1	3.00
성별	남성	(16)		25.0	37.5	25.0	6.3		25.0	37.5	31.3	6.3	2.87
	여성	(22)	4.5	9.1	50.0	22.7	4.5	4.5	13.6	50.0	27.3	4.5	2.85
연령별	10대	(3)	33.3	33.3					66.7			33.3	4.50
	20대	(1)					100.0						.
	30대	(2)				100.0					100.0		2.00
	40대	(8)		25.0	50.0	12.5	12.5		25.0	50.0	25.0		2.88
	50대	(10)		10.0	30.0	40.0	10.0		10.0	30.0	50.0	10.0	2.44
	60대	(5)		20.0	60.0	20.0			20.0	60.0	20.0		3.00
	70대	(3)			100.0					100.0			3.00
	80대 이상	(6)		16.7	66.7	16.7			16.7	66.7	16.7		3.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			50.0		50.0			50.0	50.0		2.00
	임시고용	(1)				100.0					100.0		2.00
	일용직	(4)			50.0	25.0		25.0		50.0	25.0		2.67
	자영업	(1)					100.0				100.0		1.00
	실업	(2)			100.0					100.0			3.00
	비경제활동	(24)		20.8	50.0	25.0			20.8	50.0	25.0	4.2	2.96
	기타	(4)	25.0	25.0		25.0			50.0		25.0	25.0	3.67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23)		21.7	39.1	30.4	4.3		21.7	39.1	34.8	4.3	2.82
	장애가 없다	(15)	6.7	6.7	53.3	13.3	6.7	6.7	13.3	53.3	20.0	6.7	2.92
혼인 여부	기혼	(12)		16.7	58.3	8.3	16.7		16.7	58.3	25.0		2.75
	이혼 또는 별거	(13)		15.4	53.8	30.8			15.4	53.8	30.8		2.85
	사별 후 독신	(7)		28.6	28.6	28.6			28.6	28.6	28.6	14.3	3.00
	미혼(19세 이상)	(4)				50.0		25.0			50.0	25.0	2.00
	그 외 기타	(1)	100.0						100.0				5.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학력	무학	(6)		16.7	83.3				16.7	83.3			3.17
	중졸이하	(13)		23.1	46.2	23.1			23.1	46.2	23.1	7.7	3.00
	고졸이하	(16)	6.3	12.5	31.3	31.3	12.5		18.8	31.3	43.8	6.3	2.67
	대졸이하	(2)			50.0			50.0		50.0			3.0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7)		17.6	47.1	23.5	5.9		17.6	47.1	29.4	5.9	2.81
	아파트	(11)		27.3	45.5	27.3			27.3	45.5	27.3		3.00
	다가구(연립)주택	(6)			33.3	16.7	16.7	16.7		33.3	33.3	16.7	2.25
	무허가주택	(1)			100.0					100.0			3.00
	기타	(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주거 형태	자가	(13)		15.4	38.5	38.5			15.4	38.5	38.5	7.7	2.75
	전세(1억 미만)	(4)		25.0	50.0		25.0		25.0	50.0	25.0		2.75
	월세	(9)			66.7	11.1		11.1		66.7	11.1	11.1	2.86
	장기(영구)임대	(4)		50.0	25.0	25.0			50.0	25.0	25.0		3.25
	기타	(7)	14.3	14.3	28.6	28.6	14.3		28.6	28.6	42.9		2.86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18_3. 기타급여의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기타급여 수급자(N=38명)에게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26.3%(매우 7.9% + 대체로 18.4%),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5.8%(별로 13.2% + 전혀 2.6%)로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50.0%, ‘잘 모르겠다’는 2.6%, ‘무응답’은 5.3%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절	보통	적절하지 않음	평점
기타급여 지원기간	26.3%	50.0%	15.8%	3.17점



(Base: 현재 기타급여 수급자 38명)

【표 18_3】 기타급여 지원기간에 대한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적절	대체로 적절	보통	별로 적절하지 않음	전혀 적절하지 않음	잘 모름	『적절함』	『보통』	『적절하지 않음』	무응답	평점	
전체	(38)	7.9	18.4	50.0	13.2	2.6	2.6	26.3	50.0	15.8	5.3	3.17	
구분	긴급 수급자	(38)	7.9	18.4	50.0	13.2	2.6	26.3	50.0	15.8	5.3	3.1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	20.0	40.0		20.0		60.0		20.0		3.75	
	6대 광역시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중소도시	(21)		14.3	71.4	9.5	4.8		14.3	71.4	14.3	2.95	
	기타 농어촌	(9)	22.2	11.1	33.3	11.1			33.3	33.3	11.1	22.2	3.57
성별	남성	(16)	6.3	37.5	50.0	6.3			43.8	50.0	6.3	3.44	
	여성	(22)	9.1	4.5	50.0	18.2	4.5	4.5	13.6	50.0	22.7	9.1	2.95
연령별	10대	(3)	33.3	33.3	33.3				66.7	33.3		4.00	
	20대	(1)						100.0				.	
	30대	(2)				100.0				100.0		2.00	
	40대	(8)	12.5	37.5	37.5		12.5		50.0	37.5	12.5	3.38	
	50대	(10)		10.0	50.0	30.0			10.0	50.0	30.0	10.0	2.78
	60대	(5)		40.0	60.0				40.0	60.0		3.40	
	70대	(3)			100.0					100.0		3.00	
	80대 이상	(6)	16.7		66.7				16.7	66.7		16.7	3.4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		50.0	50.0				50.0	50.0		3.50	
	임시고용	(1)				100.0				100.0		2.00	
	일용직	(4)			50.0	25.0		25.0		50.0	25.0	2.67	
	자영업	(1)					100.0				100.0	1.00	
	실업	(2)				100.0				100.0		3.00	
	비경제활동	(24)	8.3	20.8	54.2	8.3			29.2	54.2	8.3	8.3	3.32
	기타	(4)	25.0	25.0	25.0	25.0			50.0	25.0	25.0		3.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23)	4.3	30.4	43.5	17.4			34.8	43.5	17.4	4.3	3.23
	장애가 없다	(15)	13.3		60.0	6.7	6.7	6.7	13.3	60.0	13.3	6.7	3.08
혼인 여부	기혼	(12)		16.7	75.0		8.3		16.7	75.0	8.3		3.00
	이혼 또는 별거	(13)	7.7	23.1	38.5	23.1			30.8	38.5	23.1	7.7	3.17
	사별 후 독신	(7)	14.3	14.3	42.9	14.3			28.6	42.9	14.3	14.3	3.33
	미혼(19세 이상)	(4)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그 외 기타	(1)	100.0						100.0				5.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학력	무학	(6)	16.7		83.3				16.7	83.3			3.33
	중졸이하	(13)		15.4	61.5	7.7			15.4	61.5	7.7	15.4	3.09
	고졸이하	(16)	12.5	31.3	31.3	18.8	6.3		43.8	31.3	25.0		3.25
	대졸이하	(2)			50.0			50.0		50.0			3.00
	대학원이상	(1)				100.0					100.0		2.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7)	5.9	11.8	58.8	11.8	5.9		17.6	58.8	17.6	5.9	3.00
	아파트	(11)		27.3	54.5	9.1			27.3	54.5	9.1	9.1	3.20
	다가구(연립)주택	(6)	16.7	33.3	16.7	16.7		16.7	50.0	16.7	16.7		3.60
	무허가주택	(1)			100.0					100.0			3.00
	기타	(3)	33.3		33.3	33.3			33.3	33.3	33.3		3.33
주거 형태	자가	(13)	7.7	7.7	69.2	7.7			15.4	69.2	7.7	7.7	3.17
	전세(1억 미만)	(4)		50.0	50.0				50.0	50.0			3.50
	월세	(9)			55.6	22.2		11.1		55.6	22.2	11.1	2.71
	장기(영구)임대	(4)		75.0		25.0			75.0		25.0		3.50
	기타	(7)	28.6	14.3	28.6	14.3	14.3		42.9	28.6	28.6		3.29
	모름/무응답	(1)			100.0					10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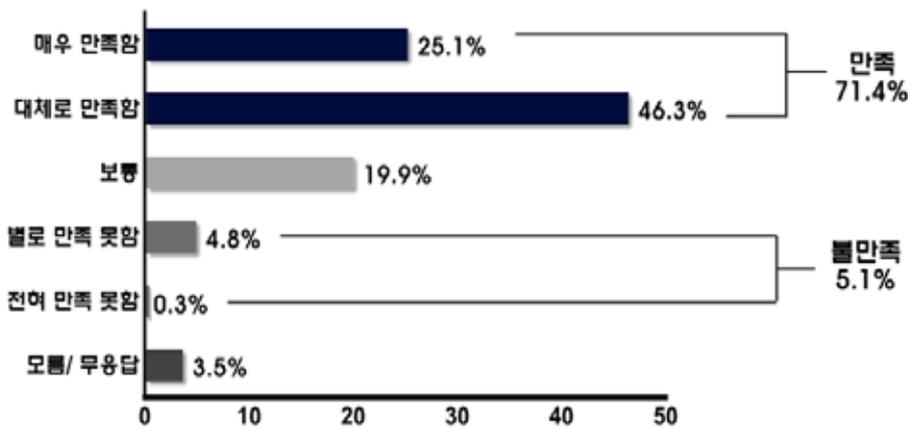
19.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만족’ 응답이 71.4%(매우 25.1% + 대체로 46.3%), ‘불만족’ 응답 5.1%(별로 4.8% + 전혀 0.3%)보다 월등히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보통이다’는 응답은 19.9%, ‘모름/무응답’은 3.5%였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점은 3.94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평점
전반적인 의견	71.4%	19.9%	5.1%	3.94점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표 19】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단위:%	사례수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별로 만족 못함	전혀 만족 못함	『만족』	『보통』	『불만족』	무응답	평점	
■ 전 체 ■	(311)	25.1	46.3	19.9	4.8	0.3	71.4	19.9	5.1	3.5	3.94	
구분	긴급 수급자	(311)	25.1	46.3	19.9	4.8	0.3	71.4	19.9	5.1	3.5	3.9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26.0	42.0	8.0	12.0		68.0	8.0	12.0	12.0	3.93
	6대 광역시	(68)	36.8	50.0	11.8			86.8	11.8		1.5	4.25
	중소도시	(98)	19.4	37.8	35.7	6.1	1.0	57.1	35.7	7.1		3.68
	기타 농어촌	(95)	22.1	54.7	15.8	3.2		76.8	15.8	3.2	4.2	4.00
성별	남성	(160)	26.9	41.3	21.3	5.6	0.6	68.1	21.3	6.3	4.4	3.92
	여성	(151)	23.2	51.7	18.5	4.0		74.8	18.5	4.0	2.6	3.97
연령별	10대	(10)	20.0	40.0	40.0			60.0	40.0			3.80
	20대	(7)	14.3	42.9	28.6			57.1	28.6		14.3	3.83
	30대	(23)	39.1	39.1	13.0	8.7		78.3	13.0	8.7		4.09
	40대	(94)	28.7	39.4	22.3	4.3		68.1	22.3	4.3	5.3	3.98
	50대	(79)	20.3	51.9	19.0	5.1	1.3	72.2	19.0	6.3	2.5	3.87
	60대	(52)	34.6	48.1	13.5	1.9		82.7	13.5	1.9	1.9	4.18
	70대	(34)	8.8	55.9	26.5	8.8		64.7	26.5	8.8		3.65
	80대 이상	(11)	18.2	54.5	9.1			72.7	9.1		18.2	4.11
	모름/무응답	(1)				100.0			100.0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50.0	43.8	6.3			93.8	6.3			4.44
	임시고용	(13)	23.1	30.8	7.7	30.8		53.8	7.7	30.8	7.7	3.50
	일용직	(23)	17.4	43.5	30.4			60.9	30.4		8.7	3.86
	자영업	(8)	12.5	50.0	25.0	12.5		62.5	25.0	12.5		3.63
	자활근로	(5)	20.0	80.0				100.0				4.20
	실업	(24)	41.7	29.2	16.7	4.2		70.8	16.7	4.2	8.3	4.18
	비경제활동	(194)	21.1	51.0	20.6	4.6	0.5	72.2	20.6	5.2	2.1	3.89
	기타	(28)	35.7	32.1	25.0			67.9	25.0		7.1	4.12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27.7	44.5	18.2	6.6		72.3	18.2	6.6	2.9	3.96
	장애가 없다	(170)	22.4	48.8	21.2	3.5	0.6	71.2	21.2	4.1	3.5	3.92
	모름/무응답	(4)	50.0		25.0			50.0	25.0		25.0	4.33
혼인 여부	기혼	(109)	30.3	42.2	16.5	4.6	0.9	72.5	16.5	5.5	5.5	4.02
	이혼 또는 별거	(92)	22.8	48.9	21.7	5.4		71.7	21.7	5.4	1.1	3.90
	사별 후 독신	(58)	19.0	58.6	17.2	3.4		77.6	17.2	3.4	1.7	3.95
	미혼(19세 이상)	(37)	32.4	32.4	24.3	8.1		64.9	24.3	8.1	2.7	3.92
	그 외 기타	(11)	9.1	45.5	36.4			54.5	36.4		9.1	3.70
	모름/무응답	(4)		50.0	25.0			50.0	25.0		25.0	3.67
학력	무학	(39)	12.8	66.7	15.4	2.6		79.5	15.4	2.6	2.6	3.92
	중졸이하	(140)	28.6	42.9	21.4	2.9	0.7	71.4	21.4	3.6	3.6	3.99
	고졸이하	(92)	22.8	45.7	21.7	8.7		68.5	21.7	8.7	1.1	3.84
	대졸이하	(30)	36.7	40.0	10.0	3.3		76.7	10.0	3.3	10.0	4.22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33.3	33.3	33.3		3.00
	모름/무응답	(7)	14.3	42.9	28.6			57.1	28.6		14.3	3.8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24.5	45.0	23.2	4.6		69.5	23.2	4.6	2.6	3.92
	아파트	(60)	28.3	46.7	13.3	5.0	1.7	75.0	13.3	6.7	5.0	4.00
	다가구(연립)주택	(61)	24.6	49.2	19.7	3.3		73.8	19.7	3.3	3.3	3.98
	무허가주택	(10)	30.0	50.0	10.0			80.0	10.0		10.0	4.22
	구호시설	(1)		100.0				100.0				4.00
	기타	(24)	20.8	50.0	16.7	12.5		70.8	16.7	12.5		3.79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50.0		25.0	3.67	
주거 형태	자가	(80)	21.3	53.8	20.0	2.5		75.0	20.0	2.5	2.5	3.96
	전세(1억 미만)	(17)	29.4	29.4	29.4			58.8	29.4		11.8	4.00
	월세	(103)	30.1	40.8	19.4	5.8		70.9	19.4	5.8	3.9	3.99
	장기(영구)임대	(41)	22.0	48.8	14.6	9.8	2.4	70.7	14.6	12.2	2.4	3.80
	기타	(64)	23.4	50.0	20.3	4.7		73.4	20.3	4.7	1.6	3.94
	모름/무응답	(6)	16.7	33.3	33.3			50.0	33.3		16.7	3.80

20.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이 41.5%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라는 응답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9%, ‘위기상황 극복 가능’ 2.3%, ‘기초 생존권 보장’ 0.6%, ‘가족 해체 방지’ 0.6% 순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0.6%, ‘없음/모름/무응답’은 31.5%였다.

No.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비율 (%)
1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41.5%
2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19.9%
3	심리적 위안 및 자활의 계기	2.9%
4	위기상황 극복 가능	2.3%
5	기초 생존권 보장	0.6%
6	가족 해체 방지	0.6%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표 20】 지원을 받은 후 나아진 점

단위:%	사례수	기초 생존권 보장	심리적 위안 자활의 계기	의료비 지원으로 부담 경감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	가족 해체 방지	기타	위기상황 극복 가능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311)	0.6	2.9	41.5	19.9	0.6	0.6	2.3	31.5	
구분	간접 수급자	(311)	0.6	2.9	41.5	19.9	0.6	0.6	2.3	31.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8.0	36.0	26.0	2.0		2.0	26.0
	6대 광역시	(68)	1.5	1.5	44.1	32.4			1.5	19.1
	중소도시	(98)	1.0	2.0	55.1	13.3		1.0	2.0	25.5
	기타 농어촌	(95)		2.1	28.4	14.7	1.1	1.1	3.2	49.5
성별	남성	(160)	0.6	3.8	43.8	18.8	0.6	0.6	1.9	30.0
	여성	(151)	0.7	2.0	39.1	21.2	0.7	0.7	2.6	33.1
연령별	10대	(10)			40.0	10.0			10.0	40.0
	20대	(7)			28.6			14.3	14.3	42.9
	30대	(23)			39.1	43.5	4.3			13.0
	40대	(94)	1.1	5.3	33.0	27.7			1.1	31.9
	50대	(79)		3.8	41.8	15.2			1.3	38.0
	60대	(52)	1.9	1.9	51.9	13.5			1.9	28.8
	70대	(34)			61.8	11.8		2.9	2.9	20.6
	80대 이상	(11)			18.2	18.2	9.1		9.1	45.5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6.3	31.3	25.0			6.3	31.3
	임시고용	(13)		7.7	38.5	7.7	7.7			38.5
	일용직	(23)		4.3	30.4	34.8		4.3		26.1
	자영업	(8)			25.0	25.0				50.0
	자활근로	(5)			40.0	40.0				20.0
	실업	(24)		4.2	29.2	29.2				37.5
	비경제활동	(194)	1.0	2.6	47.4	14.4	0.5	0.5	2.6	30.9
기타	(28)			32.1	35.7			3.6	28.6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0.7	1.5	44.5	21.9	0.7	1.5	2.9	26.3
	장애가 없다	(170)	0.6	4.1	38.8	18.8	0.6		1.8	35.3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여부	기혼	(109)		2.8	33.0	24.8	1.8	0.9	2.8	33.9
	이혼 또는 별거	(92)		3.3	50.0	20.7			2.2	23.9
	사별 후 독신	(58)		3.4	41.4	15.5			3.4	36.2
	미혼(19세 이상)	(37)	5.4	2.7	48.6	16.2		2.7		24.3
	그 외 기타	(11)			36.4	9.1				54.5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39)	2.6	2.6	43.6	15.4			2.6	33.3
	중졸이하	(140)		3.6	43.6	18.6	0.7	0.7	2.1	30.7
	고졸이하	(92)	1.1	2.2	43.5	22.8		1.1	2.2	27.2
	대졸이하	(30)		3.3	23.3	23.3			3.3	46.7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42.9		14.3			42.9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0.7	2.6	34.4	17.9			1.3	43.0
	아파트	(60)		3.3	45.0	20.0	3.3		3.3	25.0
	다가구(연립)주택	(61)	1.6	4.9	52.5	27.9		1.6	1.6	9.8
	무허가주택	(10)			40.0	10.0				5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54.2	16.7		4.2	8.3	16.7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형태	자가	(80)	1.3	3.8	37.5	18.8				38.8
	전세(1억 미만)	(17)			23.5	35.3		5.9	5.9	29.4
	월세	(103)		2.9	44.7	25.2			2.9	24.3
	장기(영구)임대	(41)			43.9	14.6	4.9		7.3	29.3
	기타	(64)	1.6	4.7	45.3	14.1		1.6		32.8
	모름/무응답	(6)			33.3					66.7

21.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가 22.2%로 가장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8.4%, ‘지원수준이 낮아서’ 8.0%,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6.4%,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6.1%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기타’ 응답은 0.6%, ‘없음/모름/무응답’은 48.2%였다.

No.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비율 (%)
1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22.2%
2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8.4%
3	지원수준이 낮아서	8.0%
4	대부분 의료지원이므로 생활개선효과 미미	6.4%
5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6.1%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표 21】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

단위:%	사례수	근본문제 개선할 수 없어 악순환 반복	질병 등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일시적 지원에 그치므로	지원수준이 낮아서	대부분 의료지원 이므로 생활개선 효과 미미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311)	6.1	22.2	8.4	8.0	6.4	0.6	48.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6.1	22.2	8.4	8.0	6.4	0.6	48.2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8.0	18.0	4.0	12.0	4.0	2.0	52.0
	6대 광역시	(68)	5.9	16.2	7.4	16.2	10.3		44.1
	중소도시	(98)	7.1	40.8	14.3	4.1	6.1	1.0	26.5
	기타 농어촌	(95)	4.2	9.5	5.3	4.2	5.3		71.6
성별	남성	(160)	6.3	21.3	7.5	8.8	5.6		50.6
	여성	(151)	6.0	23.2	9.3	7.3	7.3	1.3	45.7
연령별	10대	(10)		20.0	10.0		10.0		60.0
	20대	(7)		28.6					71.4
	30대	(23)	17.4	8.7	8.7	21.7	8.7		34.8
	40대	(94)	5.3	25.5	8.5	7.4	5.3		47.9
	50대	(79)	2.5	21.5	7.6	6.3	8.9	1.3	51.9
	60대	(52)	7.7	17.3	11.5	9.6	3.8		50.0
	70대	(34)	2.9	26.5	5.9	8.8	8.8	2.9	44.1
	80대 이상	(11)	27.3	27.3	9.1				36.4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18.8	12.5			6.3		62.5
	임시고용	(13)	15.4		23.1	15.4	7.7		38.5
	일용직	(23)	4.3	30.4	4.3	21.7	8.7		30.4
	자영업	(8)	12.5	12.5	12.5	12.5	12.5		37.5
	자활근로	(5)		20.0	20.0	20.0			40.0
	실업	(24)	8.3	8.3	8.3	4.2	8.3		62.5
	비경제활동	(194)	4.6	27.3	7.7	6.2	5.7	0.5	47.9
	기타	(28)	3.6	10.7	10.7	10.7	7.1	3.6	53.6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6.6	18.2	9.5	8.0	4.4	1.5	51.8
	장애가 없다	(170)	5.9	24.7	7.6	8.2	8.2		45.3
	모름/무응답	(4)		50.0					50.0
혼인 여부	기혼	(109)	9.2	21.1	11.0	10.1	4.6		44.0
	이혼 또는 별거	(92)	4.3	23.9	6.5	7.6	8.7	1.1	47.8
	사별 후 독신	(58)	5.2	20.7	6.9	5.2	6.9	1.7	53.4
	미혼(19세 이상)	(37)	5.4	27.0	8.1	10.8	8.1		40.5
	그 외 기타	(11)		18.2	9.1				72.7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39)	7.7	23.1	7.7	2.6	2.6		56.4
	중졸이하	(140)	5.0	24.3	9.3	7.1	6.4	0.7	47.1
	고졸이하	(92)	6.5	18.5	7.6	9.8	9.8		47.8
	대졸이하	(30)	3.3	26.7	6.7	13.3	3.3	3.3	43.3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모름/무응답	(7)	14.3	14.3		14.3			57.1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6.0	19.9	9.3	8.6	3.3	0.7	52.3
	아파트	(60)	5.0	25.0	10.0	5.0	6.7		48.3
	다가구(연립)주택	(61)	6.6	29.5	1.6	11.5	14.8	1.6	34.4
	무허가주택	(10)	10.0	10.0	10.0	10.0	10.0		5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4.2	20.8	12.5	4.2	4.2		54.2
	모름/무응답	(4)	25.0						75.0
주거 형태	자가	(80)	3.8	22.5	5.0	7.5	5.0		56.3
	전세(1억 미만)	(17)	23.5	17.6	11.8	5.9	17.6		23.5
	월세	(103)	7.8	25.2	5.8	13.6	6.8		40.8
	장기(영구)임대	(41)	7.3	17.1	14.6	2.4	7.3		51.2
	기타	(64)		23.4	12.5	3.1	3.1	3.1	54.7
	모름/무응답	(6)	16.7			16.7	16.7		50.0

22.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의견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현행 만족’ 6.1%,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1.9%, ‘현금으로 수급 요망’과 ‘홍보활동 및 수급대상 확대’가 각각 0.6%, ‘수급자라는 비밀보장’ 0.3%, ‘복지 서비스 제공’ 0.3%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응답은 1.0%, ‘없음/모름/무응답’은 89.1%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지원 금액 확대’ 19.9%, ‘현행 만족’ 3.5%,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3.2%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기타’ 응답은 0.6%, ‘없음/모름/무응답’은 72.7%였다.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10.9% > ‘위급 시 수시지원’ 6.1% > ‘현행 만족’ 3.5% > ‘퇴원 후 안정까지 지원’ 2.9% >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75.9%였다.

No.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		지원 규모에 대한 개선의견		지원 기간에 대한 개선의견	
1	현행 만족	6.1%	지원 금액 확대	19.9%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10.9%
2	신청/지급절차 간소화	1.9%	현행 만족	3.5%	위급 시 수시지원	6.1%
3	현금으로 수급 요망	0.6%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3.2%	현행 만족	3.5%
4	홍보활동 및 수급 대상 확대	0.6%			퇴원 후 안정까지 지원	2.9%
5	수급자라는 비밀보장	0.3%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0.6%
6	복지 서비스 제공	0.3%				
-	없음/모름/무응답	89.1%	없음/모름/무응답	72.7%	없음/모름/무응답	75.9%

(Base: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311명)

【표 22_1】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수급자 비밀보장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현금으로 수급 요망	홍보활동 및 수급 대상 확대	복지 서비스 제공(장애인, 보육 등)	현행 만족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 전	■ 체	(311)	0.3	1.9	0.6	0.6	0.3	6.1	1.0	89.1
구분	긴급 수급자	(311)	0.3	1.9	0.6	0.6	0.3	6.1	1.0	89.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6.0			2.0	20.0		72.0
	6대 광역시	(68)		1.5				4.4		94.1
	중소도시	(98)		1.0		2.0		3.1	3.1	90.8
	기타 농어촌	(95)	1.1	1.1	2.1			3.2		92.6
성별	남성	(160)	0.6	2.5	0.6	0.6		8.1	1.3	86.3
	여성	(151)		1.3	0.7	0.7	0.7	4.0	0.7	92.1
연령별	10대	(10)	10.0	10.0						80.0
	20대	(7)						14.3		85.7
	30대	(23)								100.0
	40대	(94)		2.1	1.1			7.4		89.4
	50대	(79)		2.5	1.3	1.3		8.9	3.8	82.3
	60대	(52)		1.9		1.9		1.9		94.2
	70대	(34)						5.9		94.1
	80대 이상	(11)					9.1	9.1		81.8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6.3				25.0		68.8
	임시고용	(13)		7.7				15.4		76.9
	일용직	(23)			8.7			8.7		82.6
	자영업	(8)								100.0
	자활근로	(5)								100.0
	실업	(24)		4.2		4.2			4.2	87.5
	비경제활동	(194)		1.0		0.5	0.5	4.1	0.5	93.3
기타	(28)	3.6	3.6				10.7	3.6	78.6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2.2	0.7	0.7	0.7	5.8	0.7	89.1
	장애가 없다	(170)	0.6	1.8	0.6	0.6		6.5	1.2	88.8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09)		1.8	0.9			5.5	0.9	90.8
	이혼 또는 별거	(92)		1.1	1.1	1.1		7.6	1.1	88.0
	사별 후 독신	(58)		1.7		1.7	1.7	6.9		87.9
	미혼(19세 이상)	(37)	2.7	2.7				5.4	2.7	86.5
	그 외 기타	(11)		9.1						90.9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39)						7.7		92.3
	중졸이하	(140)		2.1	0.7	0.7	0.7	3.6	0.7	91.4
	고졸이하	(92)	1.1	2.2	1.1	1.1		6.5	2.2	85.9
	대졸이하	(30)		3.3				13.3		83.3
	대학원이상	(3)						33.3		66.7
	모름/무응답	(7)								1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0.7	0.7	0.7	0.7		3.3	0.7	93.4
	아파트	(60)		1.7		1.7		8.3	1.7	86.7
	다가구(연립)주택	(61)		6.6	1.6			6.6		85.2
	무허가주택	(10)						10.0		9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4.2	12.5	4.2	79.2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 형태	자가	(80)	1.3		1.3			5.0		92.5
	전세(1억 미만)	(17)		5.9				11.8		82.4
	월세	(103)		4.9	1.0	1.0		6.8	1.0	85.4
	장기(영구)임대	(41)				2.4	2.4	4.9	2.4	87.8
	기타	(64)						6.3	1.6	92.2
	모름/무응답	(6)								100.0

【표 22_2】 지원규모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지원금액 확대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	현행 만족	기타	없음/모름/무응답
■ 전 체 ■		(311)	19.9	3.2	3.5	0.6	72.7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9.9	3.2	3.5	0.6	72.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50)	20.0	8.0	6.0	2.0	64.0
	6대 광역시	(68)	22.1	2.9	4.4		70.6
	중소도시	(98)	19.4	2.0	3.1	1.0	74.5
	기타 농어촌	(95)	18.9	2.1	2.1		76.8
성별	남성	(160)	19.4	5.6	3.8		71.3
	여성	(151)	20.5	0.7	3.3	1.3	74.2
연령별	10대	(10)	20.0				80.0
	20대	(7)	14.3		14.3		71.4
	30대	(23)	21.7		4.3		73.9
	40대	(94)	19.1	6.4	4.3		70.2
	50대	(79)	22.8	2.5	3.8	1.3	69.6
	60대	(52)	17.3	1.9			80.8
	70대	(34)	23.5	2.9	5.9		67.6
	80대 이상	(11)	9.1			9.1	81.8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16)	25.0	6.3	6.3		62.5
	임시고용	(13)	15.4		7.7		76.9
	일용직	(23)	30.4		8.7		60.9
	자영업	(8)	37.5				62.5
	자활근로	(5)	40.0				60.0
	실업	(24)	20.8	8.3		4.2	66.7
	비경제활동	(194)	17.5	3.6	2.1		76.8
	기타	(28)	17.9		10.7	3.6	67.9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37)	19.0	2.9	4.4	1.5	72.3
	장애가 없다	(170)	21.2	3.5	2.9		72.4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09)	20.2	4.6	0.9	0.9	73.4
	이혼 또는 별거	(92)	25.0	4.3	5.4		65.2
	사별 후 독신	(58)	13.8	1.7	5.2	1.7	77.6
	미혼(19세 이상)	(37)	18.9		5.4		75.7
	그 외 기타	(11)	9.1				90.9
	모름/무응답	(4)	25.0				75.0
학력	무학	(39)	10.3	2.6	2.6	2.6	82.1
	중졸이하	(140)	20.7	1.4	2.9		75.0
	고졸이하	(92)	20.7	5.4	5.4	1.1	67.4
	대졸이하	(30)	23.3	6.7	3.3		66.7
	대학원이상	(3)	66.7				33.3
	모름/무응답	(7)	14.3				85.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1)	19.9	3.3	2.0	0.7	74.2
	아파트	(60)	23.3	3.3	1.7		71.7
	다가구(연립)주택	(61)	18.0	3.3	4.9	1.6	72.1
	무허가주택	(10)	40.0				6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8.3	4.2	16.7		70.8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 형태	자가	(80)	15.0	3.8	2.5	1.3	77.5
	전세(1억 미만)	(17)	11.8	5.9	5.9		76.5
	월세	(103)	22.3	2.9	4.9	1.0	68.9
	장기(영구)임대	(41)	22.0	2.4	2.4		73.2
	기타	(64)	23.4	3.1	3.1		70.3
	모름/무응답	(6)	16.7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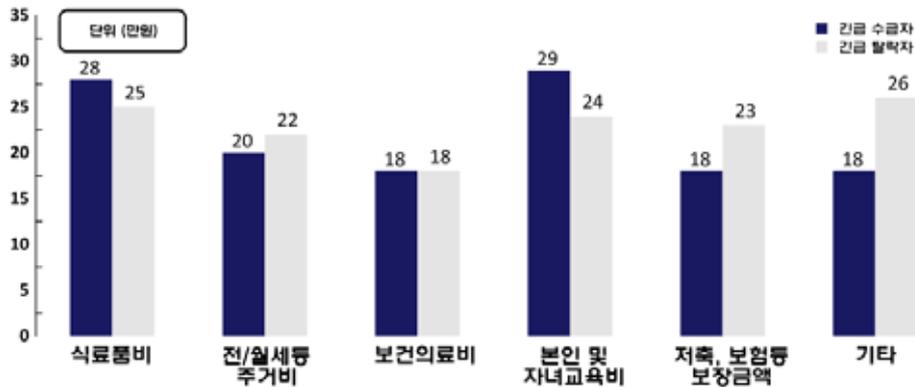
【표 22_3】 지원제도의 지원기간에 대한 개선의견

단위:%		사례수	근로능력 확보할 때까지 지원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현행 만족	위급 시 수시지원	퇴원후 안정까지 지원	없음/모름/ 무응답
■ 전 체 ■		(311)	0.6	10.9	3.5	6.1	2.9	75.9
구분	긴급 수급자	(311)	0.6	10.9	3.5	6.1	2.9	75.9
	서울 포함 수도권	(50)		10.0	10.0	6.0	6.0	68.0
권역	6대 광역시	(68)		11.8	1.5	2.9	2.9	80.9
	중소도시	(98)	2.0	10.2	3.1	12.2	1.0	71.4
	기타 농어촌	(95)		11.6	2.1	2.1	3.2	81.1
성별	남성	(160)	0.6	6.9	3.8	5.6	3.8	79.4
	여성	(151)	0.7	15.2	3.3	6.6	2.0	72.2
연령별	10대	(10)		10.0				90.0
	20대	(7)		14.3	14.3			71.4
	30대	(23)	4.3	13.0		13.0		69.6
	40대	(94)		14.9	5.3	7.4	1.1	71.3
	50대	(79)		11.4	2.5	5.1	6.3	74.7
	60대	(52)		5.8	1.9	7.7	5.8	78.8
	70대	(34)	2.9	5.9	5.9	2.9		82.4
	80대 이상	(11)		9.1				90.9
	모름/무응답	(1)						1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16)		6.3	18.8	6.3	6.3	62.5
	임시고용	(13)			7.7		7.7	84.6
	일용직	(23)		21.7		13.0	4.3	60.9
	자영업	(8)				12.5		87.5
	자활근로	(5)		20.0				80.0
	실업	(24)		16.7		8.3	4.2	70.8
	비경제활동	(194)	0.5	10.8	2.6	5.2	2.6	78.4
	기타	(28)	3.6	7.1	7.1	7.1	75.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37)		10.2	3.6	4.4	3.6	78.1
	장애가 없다	(170)	1.2	11.8	3.5	7.6	2.4	73.5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여부	기혼	(109)	0.9	11.9	2.8	6.4	3.7	74.3
	이혼 또는 별거	(92)	1.1	14.1	5.4	8.7	3.3	67.4
	사별 후 독신	(58)		5.2	5.2	5.2	1.7	82.8
	미혼(19세 이상)	(37)		10.8		2.7	2.7	83.8
	그 외 기타	(11)		9.1				90.9
		모름/무응답	(4)					100.0
학력	무학	(39)		7.7	2.6	5.1	5.1	79.5
	중졸이하	(140)	0.7	8.6	5.0	5.0	3.6	77.1
	고졸이하	(92)		13.0	2.2	6.5	2.2	76.1
	대졸이하	(30)	3.3	23.3	3.3	6.7		63.3
	대학원이상	(3)				66.7		33.3
		모름/무응답	(7)					1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51)	0.7	10.6	2.0	5.3	1.3	80.1
	아파트	(60)	1.7	8.3	3.3	11.7	5.0	70.0
	다가구(연립)주택	(61)		14.8	6.6	3.3		75.4
	무허가주택	(10)		10.0			20.0	7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24)		12.5	8.3	8.3	4.2
	모름/무응답	(4)					100.0	
주거형태	자가	(80)	1.3	8.8		2.5	1.3	86.3
	전세(1억 미만)	(17)		11.8	11.8	17.6	5.9	52.9
	월세	(103)	1.0	10.7	6.8	4.9	3.9	72.8
	장기(영구)임대	(41)		12.2	2.4	12.2	4.9	68.3
	기타	(64)		12.5	1.6	6.3	1.6	78.1
		모름/무응답	(6)		16.7			83.3

23. 월평균 생활비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의 월평균 생활비 규모는 ‘본인 및 자녀교육비’ 28만 7천원 > ‘식료품비’ 27만 6천원 > ‘전/월세 등 주거비’ 19만 6천원 > ‘저축/보험 등 보장금액’ 18만 4천원 > ‘보건의료비’ 18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 비용은 18만 1천원으로 응답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 탈락자(N=94명)의 경우, ‘식료품비’ 25만 1천원 > ‘본인 및 자녀교육비’ 23만 8천원 > ‘저축/보험 등 보장금액’ 22만 6천 원 > ‘전/월세 등 주거비’ 21만 9천원 > ‘보건의료비’ 17만 7천원 등의 순으로 높았고, 기타 비용은 25만 7천원으로 응답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23_1】 월평균생활비-식료품비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전체		(405)	18.5	24.7	17.5	9.4	6.7	4.7	18.5	27.04	
구분	간접 수급자	(311)	18.0	24.1	19.0	10.6	5.5	5.1	17.7	27.60	
	간접 탈락자	(94)	20.2	26.6	12.8	5.3	10.6	3.2	21.3	25.1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5.9	31.7	17.5	9.5	3.2	3.2	19.0	24.16	
	6대 광역시	(92)	20.7	25.0	20.7	10.9	10.9	5.4	6.5	27.69	
	중소도시	(127)	21.3	15.7	16.5	5.5	4.7	7.9	28.3	28.50	
	기타 농어촌	(123)	15.4	30.1	16.3	12.2	7.3	1.6	17.1	26.68	
성별	남성	(203)	17.7	26.1	17.7	8.4	5.9	4.9	19.2	27.36	
	여성	(202)	19.3	23.3	17.3	10.4	7.4	4.5	17.8	26.72	
연령별	10대	(12)	8.3	8.3	16.7		8.3	25.0	33.3	45.63	
	20대	(11)	9.1	9.1	36.4	9.1				36.4	27.14
	30대	(35)	11.4	20.0	14.3	11.4	5.7	5.7	31.4	29.17	
	40대	(117)	16.2	23.9	21.4	12.8	9.4	6.0	10.3	29.90	
	50대	(100)	24.0	28.0	14.0	7.0	7.0	4.0	16.0	25.32	
	60대	(65)	18.5	29.2	12.3	9.2	7.7	3.1	20.0	24.77	
	70대	(51)	23.5	19.6	21.6	7.8	2.0	2.0	23.5	22.51	
	80대 이상	(11)	18.2	36.4	9.1	9.1			27.3	20.63	
	모름/무응답	(3)		66.7	33.3						23.33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21.7	21.7	13.0	21.7	13.0		8.7	27.43
임시고용		(16)	12.5	43.8	25.0		6.3	12.5		29.69	
일용직		(29)	13.8	31.0	13.8	17.2		6.9	17.2	26.46	
자영업		(10)		20.0	40.0			20.0	20.0	50.63	
자활근로		(7)	28.6		28.6		14.3	14.3	14.3	28.83	
실업		(26)	23.1	26.9	26.9	7.7	3.8	3.8	7.7	24.08	
비경제활동		(251)	19.5	24.7	15.9	10.0	6.8	2.8	20.3	25.64	
기타		(41)	14.6	17.1	17.1	2.4	9.8	9.8	29.3	31.66	
모름/무응답		(2)	50.0	50.0						15.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20.3	27.5	16.5	7.1	7.1	3.3	18.1	24.60	
	장애가 없다	(219)	17.4	21.9	18.7	11.4	6.4	5.9	18.3	29.16	
	모름/무응답	(4)		50.0					50.0	20.00	
혼인여부	기혼	(146)	13.0	21.2	22.6	14.4	11.6	6.8	10.3	32.56	
	이혼 또는 별거	(112)	21.4	31.3	16.1	5.4	3.6	4.5	17.9	22.97	
	사별 후 독신	(79)	26.6	27.8	11.4	8.9	2.5	1.3	21.5	21.31	
	미혼 (19세 이상)	(48)	20.8	22.9	16.7	4.2	2.1		33.3	20.78	
	그 외 기타	(13)	7.7	7.7	15.4	7.7	7.7	15.4	38.5	43.13	
모름/무응답	(7)			14.3	14.3	28.6	14.3	28.6	46.00		
학력	무학	(51)	25.5	31.4	15.7	9.8			17.6	20.00	
	중졸이하	(175)	17.7	28.0	13.7	8.6	7.4	4.0	20.6	26.66	
	고졸이하	(126)	19.0	23.0	17.5	8.7	7.9	6.3	17.5	28.40	
	대졸이하	(37)	10.8	13.5	40.5	13.5	5.4	8.1	8.1	31.91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28.33	
모름/무응답	(13)	23.1		7.7	7.7	15.4	7.7	38.5	31.88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17.9	26.0	17.9	10.2	8.2	4.1	15.8	27.21	
	아파트	(74)	17.6	23.0	16.2	13.5	2.7	4.1	23.0	28.09	
	다가구(연립)주택	(85)	18.8	25.9	21.2	7.1	5.9	5.9	15.3	26.21	
	무허가주택	(11)	27.3	27.3	18.2	9.1	9.1		9.1	21.70	
	구호시설	(1)	100.0							10.00	
	기타	(30)	20.0	23.3	13.3	3.3		3.3	36.7	22.47	
모름/무응답	(8)	12.5				37.5	25.0	25.0	49.17		
주거형태	자가	(107)	15.0	29.9	12.1	11.2	11.2	1.9	18.7	27.92	
	전세(1억 미만)	(28)	17.9	17.9	28.6	17.9			17.9	24.87	
	월세	(129)	22.5	24.0	22.5	6.2	2.3	8.5	14.0	26.33	
	장기(영구)임대	(51)	17.6	31.4	17.6	9.8		3.9	19.6	25.26	
	기타	(81)	18.5	18.5	14.8	9.9	9.9	3.7	24.7	27.62	
모름/무응답	(9)	11.1	11.1			44.4	11.1	22.2	39.29		

【표 23_2】 월평균 생활비-전/월세등주거비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405)	20.7	20.0	10.4	3.2	1.0	2.0	42.7	20.1
구분	긴급 수급자	(311)	21.9	21.2	10.0	3.2	1.3	1.9	40.5	19.6
	긴급 탈락자	(94)	17.0	16.0	11.7	3.2		2.1	50.0	21.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27.0	19.0	3.2	4.8	6.3	31.7	27.5
	6대 광역시	(92)	23.9	26.1	12.0	4.3			33.7	16.5
	중소도시	(127)	23.6	22.0	10.2	4.7	0.8	1.6	37.0	19.9
	기타 농어촌	(123)	22.0	9.8	4.9	0.8		1.6	61.0	17.7
성별	남성	(203)	21.2	21.7	5.4	3.0	1.5	1.0	46.3	17.9
	여성	(202)	20.3	18.3	15.3	3.5	0.5	3.0	39.1	22.1
연령별	10대	(12)	16.7	25.0				8.3	50.0	22.0
	20대	(11)	18.2	18.2	9.1	9.1			45.5	22.6
	30대	(35)	8.6	25.7	17.1	11.4	2.9		34.3	24.0
	40대	(117)	20.5	17.9	17.9	4.3	1.7	4.3	33.3	23.6
	50대	(100)	20.0	21.0	11.0	2.0	1.0	2.0	43.0	19.8
	60대	(65)	26.2	16.9	4.6				52.3	13.6
	70대	(51)	23.5	21.6		2.0			52.9	13.3
	80대 이상	(11)	36.4	9.1					54.5	10.0
	모름/무응답	(3)		66.7					33.3	2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17.4	26.1	17.4			4.3	34.8	20.0
	일시고용	(16)	12.5	62.5	12.5	12.5				21.1
	일용직	(29)	20.7	17.2	10.3	17.2	3.4		31.0	25.1
	자영업	(10)	20.0			10.0		30.0	40.0	67.5
	자활근로	(7)	42.9	14.3					42.9	13.3
	실업	(26)	30.8	19.2	15.4		3.8	3.8	26.9	20.4
	비경제활동	(251)	19.9	17.9	10.4	1.6	0.4	1.2	48.6	18.0
	기타	(41)	22.0	22.0	4.9	2.4	2.4		46.3	18.2
	모름/무응답	(2)			50.0				50.0	3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9.2	19.8	10.4	2.2		1.6	46.7	18.3
	장애가 없다	(219)	22.4	20.1	10.5	4.1	1.8	2.3	38.8	21.4
	모름/무응답	(4)		25.0					75.0	11.0
혼인 여부	기혼	(146)	17.8	21.9	11.0	1.4	1.4	3.4	43.2	21.8
	이혼 또는 별거	(112)	18.8	21.4	16.1	8.0	1.8	0.9	33.0	21.8
	사별 후 독신	(79)	31.6	15.2	5.1	2.5		1.3	44.3	15.2
	미혼 (19세 이상)	(48)	18.8	22.9	4.2				54.2	15.4
	그 외 기타	(13)	23.1	15.4	7.7				53.8	15.3
모름/무응답	(7)			14.3			14.3	71.4	45.0	
학력	무학	(51)	27.5	15.7	5.9				51.0	12.7
	중졸이하	(175)	22.9	18.9	5.7	1.7	0.6	1.7	48.6	17.6
	고졸이하	(126)	17.5	19.8	18.3	6.3	2.4	1.6	34.1	23.6
	대졸이하	(37)	18.9	32.4	13.5	5.4		2.7	27.0	20.5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37.5
	모름/무응답	(13)	7.7	15.4	7.7			7.7	61.5	28.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23.5	14.8	8.7	2.0	0.5		50.5	16.7
	아파트	(74)	16.2	32.4	12.2	2.7	1.4	6.8	28.4	22.9
	다가구(연립)주택	(85)	24.7	24.7	9.4	7.1	2.4		31.8	18.8
	무허가주택	(11)	27.3	9.1					63.6	11.3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3.3	20.0	23.3	3.3		6.7	43.3	32.9
	모름/무응답	(8)	12.5		12.5			12.5	62.5	31.7
주거 형태	자가	(107)	21.5	7.5	1.9			1.9	67.3	15.9
	전세(1억 미만)	(28)	14.3	21.4	7.1				57.1	18.5
	월세	(129)	26.4	32.6	19.4	8.5	2.3	3.1	7.8	21.2
	장기(영구)임대	(51)	15.7	33.3	15.7	2.0		2.0	31.4	21.5
	기타	(81)	16.0	9.9	4.9	1.2	1.2		66.7	16.9
모름/무응답	(9)	22.2		11.1			11.1	55.6	27.5	

【표 23_3】 월평균 생활비-보건의료비(약값, 치료비 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405)	41.5	13.1	8.1	1.5	1.7	2.0	32.1	17.95	
구분	진급 수급자	(311)	44.4	10.6	7.7	1.3	1.6	2.3	32.2	18.04
	진급 탈락자	(94)	31.9	21.3	9.6	2.1	2.1	1.1	31.9	17.68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44.4	14.3	11.1			3.2	27.0	17.16
	6대 광역시	(92)	44.6	16.3	7.6		1.1	3.3	27.2	15.22
	중소도시	(127)	29.9	10.2	9.4	3.9	2.4	1.6	42.5	25.34
	기타 농어촌	(123)	49.6	13.0	5.7	0.8	2.4	0.8	27.6	14.90
성별	남성	(203)	34.0	14.8	8.4	1.0	2.5	2.5	36.9	22.38
	여성	(202)	49.0	11.4	7.9	2.0	1.0	1.5	27.2	14.09
연령별	10대	(12)	33.3	8.3	8.3	8.3			41.7	18.17
	20대	(11)	36.4		9.1	9.1			45.5	16.17
	30대	(35)	37.1	11.4	8.6			5.7	37.1	18.18
	40대	(117)	37.6	15.4	12.0	1.7	0.9	0.9	31.6	15.71
	50대	(100)	47.0	10.0	5.0	1.0	3.0	3.0	31.0	22.40
	60대	(65)	41.5	16.9	6.2	1.5	3.1	1.5	29.2	16.69
	70대	(51)	45.1	9.8	9.8		2.0	2.0	31.4	17.79
	80대 이상	(11)	36.4	27.3					36.4	12.57
	모름/무응답	(3)	66.7	33.3						11.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26.1	26.1	4.3			4.3	39.1	16.29
	일시고용	(16)	56.3	18.8			12.5	6.3	6.3	28.67
	일용직	(29)	34.5	3.4	13.8				48.3	15.62
	자영업	(10)	40.0	10.0	10.0		10.0	10.0	20.0	26.63
	자활근로	(7)	57.1	14.3					28.6	8.00
	실업	(26)	57.7	15.4	3.8			3.8	19.2	12.33
	비경제활동	(251)	41.0	13.1	8.4	1.6	1.2	1.2	33.5	17.73
	기타	(41)	36.6	9.8	12.2	4.9	2.4	2.4	31.7	19.93
	모름/무응답	(2)	100.0							5.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42.3	16.5	8.2	2.7	1.1	3.3	25.8	22.05
	장애가 없다	(219)	41.1	10.5	8.2	0.5	2.3	0.9	36.5	14.18
	모름/무응답	(4)	25.0						75.0	2.00
혼인 여부	기혼	(146)	41.1	17.8	8.9	1.4	4.1	2.1	24.7	18.69
	이혼 또는 별거	(112)	46.4	8.0	2.7	1.8	0.9	3.6	36.6	20.51
	사별 후 독신	(79)	46.8	11.4	8.9				32.9	12.33
	미혼 (19세 이상)	(48)	31.3	12.5	16.7	2.1			37.5	15.85
	그 외 기타	(13)	15.4	15.4	7.7	7.7			53.8	20.50
	모름/무응답	(7)	28.6	14.3	14.3			14.3	28.6	40.00
학력	무학	(51)	56.9	9.8	9.8				23.5	11.25
	중졸이하	(175)	43.4	12.0	5.7	1.1	2.9	1.1	33.7	16.59
	고졸이하	(126)	35.7	12.7	11.9	3.2	1.6	2.4	32.5	18.65
	대졸이하	(37)	43.2	24.3	5.4			2.7	24.3	13.59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201.50
	모름/무응답	(13)	7.7	15.4	7.7			7.7	61.5	42.5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41.3	16.3	6.6	2.0	2.6	1.0	30.1	15.48
	아파트	(74)	44.6	12.2	8.1	1.4	1.4		32.4	13.72
	다가구(연립)주택	(85)	41.2	11.8	14.1			2.4	30.6	15.52
	무허가주택	(11)	45.5	9.1	9.1			9.1	27.3	36.00
	구호시설	(1)	100.0							10.00
	기타	(30)	40.0	3.3		3.3	3.3	6.7	43.3	43.71
	모름/무응답	(8)	12.5		12.5			12.5	62.5	65.00
주거 형태	자가	(107)	36.4	17.8	10.3		3.7		31.8	15.98
	전세(1억 미만)	(28)	21.4	28.6	7.1			7.1	35.7	20.94
	월세	(129)	42.6	10.1	7.0	2.3		2.3	35.7	17.83
	장기(영구)임대	(51)	54.9	11.8	7.8	2.0	3.9		19.6	13.75
	기타	(81)	45.7	8.6	7.4	2.5	1.2	2.5	32.1	21.65
	모름/무응답	(9)	33.3		11.1			11.1	44.4	35.75

【표 23_4】 월평균생활비-본인 및 자녀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전체	(405)	16.5	7.9	4.2	1.7	1.5	1.7	66.4	27.7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6.7	8.7	4.2	1.3	1.3	2.3	65.6	28.67
	긴급 탈락자	(94)	16.0	5.3	4.3	3.2	2.1		69.1	23.8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5.9	9.5	4.8	1.6		1.6	66.7	20.00
	6대 광역시	(92)	12.0	5.4	7.6	3.3	2.2	3.3	66.3	29.83
	중소도시	(127)	22.0	6.3	3.1		2.4	0.8	65.4	21.66
	기타 농어촌	(123)	14.6	10.6	2.4	2.4	0.8	1.6	67.5	35.66
성별	남성	(203)	15.3	5.9	3.4	1.0	1.5	1.0	71.9	22.34
	여성	(202)	17.8	9.9	5.0	2.5	1.5	2.5	60.9	31.42
연령별	10대	(12)	16.7	16.7	8.3				58.3	19.00
	20대	(11)	18.2	9.1				9.1	63.6	33.67
	30대	(35)	25.7	14.3	8.6	8.6		2.9	40.0	23.72
	40대	(117)	24.8	12.0	5.1	1.7	4.3	1.7	50.4	28.30
	50대	(100)	13.0	6.0	5.0	2.0	1.0	2.0	71.0	28.50
	60대	(65)	12.3	4.6	1.5			1.5	80.0	34.57
	70대	(51)	5.9		2.0				92.2	30.00
	80대 이상	(11)	9.1						90.9	.
	모름/무응답	(3)		33.3					66.7	2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17.4	21.7	8.7		4.3		47.8	19.67
	임시고용	(16)	6.3	18.8	6.3	6.3	6.3	6.3	50.0	32.63
	일용직	(29)	17.2	13.8	10.3	10.3			48.3	22.50
	자영업	(10)	10.0	20.0					70.0	15.00
	자활근로	(7)	14.3		14.3		14.3	14.3	42.9	193.33
	실업	(26)	34.6	11.5		3.8		3.8	46.2	20.00
	비경제활동	(251)	13.9	4.0	2.8	0.8	1.2	0.8	76.5	20.58
	기타	(41)	26.8	12.2	7.3			4.9	48.8	33.15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8.7	2.2	3.8	0.5	1.6	1.1	72.0	23.19
	장애가 없다	(219)	15.1	12.8	4.6	2.7	1.4	2.3	61.2	29.63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46)	13.7	11.6	3.4	3.4	2.1	4.8	61.0	39.02
	이혼 또는 별거	(112)	27.7	8.0	1.8	1.8	1.8		58.9	16.17
	사별 후 독신	(79)	10.1	5.1	8.9		1.3		74.7	22.69
	미혼 (19세 이상)	(48)	12.5	2.1	2.1				83.3	17.00
	그 외 기타	(13)	7.7	7.7	7.7				76.9	18.67
	모름/무응답	(7)	14.3		14.3				71.4	30.00
학력	무학	(51)	13.7	2.0	3.9	2.0			78.4	21.00
	중졸이하	(175)	13.7	5.7	2.3	1.1		1.1	76.0	22.50
	고졸이하	(126)	18.3	11.9	4.8	3.2	4.8	0.8	56.3	23.51
	대졸이하	(37)	32.4	10.8	10.8			10.8	35.1	48.65
	대학원이상	(3)		33.3					66.7	20.00
	모름/무응답	(13)	7.7	7.7	7.7				76.9	25.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13.3	8.7	4.6	2.0	1.5	1.5	68.4	33.82
	아파트	(74)	23.0	8.1	5.4		2.7	1.4	59.5	21.90
	다가구(연립)주택	(85)	16.5	10.6	3.5	3.5		2.4	63.5	23.00
	무허가주택	(11)	9.1					9.1	81.8	43.5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23.3				3.3		73.3	15.17
	모름/무응답	(8)	25.0		12.5				62.5	16.50
주거 형태	자가	(107)	14.0	5.6	2.8		1.9	1.9	73.8	49.90
	전세(1억 미만)	(28)	10.7	10.7	7.1	3.6	3.6		64.3	25.75
	월세	(129)	20.9	11.6	2.3	3.1		3.1	58.9	22.45
	장기(영구)임대	(51)	21.6	7.8	3.9		3.9		62.7	20.43
	기타	(81)	12.3	4.9	7.4	2.5	1.2	1.2	70.4	23.09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30.00

【표 23_5】 월평균생활비-저축, 보험 등 보장금액(예금, 적금 포함)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405)	19.3	3.5	2.5	1.2	0.7	1.0	71.9	19.30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9.9	3.9	2.3	1.3		71.4	18.43	
	긴급 탈락자	(94)	17.0	2.1	3.2	1.1	3.2	73.4	22.63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22.2	6.3	6.3	1.6		63.5	16.28	
	6대 광역시	(92)	16.3	4.3	4.3		1.1	73.9	14.50	
	중소도시	(127)	21.3	3.1	0.8	0.8	1.6	72.4	21.92	
	기타 농어촌	(123)	17.9	1.6	0.8	2.4	0.8	74.0	24.54	
성별	남성	(203)	17.2	2.5	2.0	0.5	0.5	1.0	76.4	17.38
	여성	(202)	21.3	4.5	3.0	2.0	1.0	1.0	67.3	20.67
연령별	10대	(12)	8.3	8.3	8.3	8.3		66.7	30.00	
	20대	(11)	36.4					63.6	5.33	
	30대	(35)	22.9	5.7	2.9		2.9	65.7	20.75	
	40대	(117)	26.5	7.7	3.4	1.7	0.9	59.8	15.32	
	50대	(100)	14.0	1.0	2.0	1.0	1.0	80.0	23.73	
	60대	(65)	23.1				3.1	1.5	72.3	25.17
	70대	(51)	7.8		3.9	2.0			86.3	22.00
	80대 이상	(11)	9.1						90.9	.
	모름/무응답	(3)		33.3				66.7	20.00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26.1	13.0	8.7			4.3	47.8	20.80
	일시고용	(16)	18.8	6.3	6.3	6.3			62.5	17.67
	일용직	(29)	27.6	3.4					69.0	9.00
	자영업	(10)	20.0					10.0	70.0	40.00
	자활근로	(7)	28.6			14.3			57.1	23.00
	실업	(26)	26.9	3.8	3.8				65.4	10.14
	비경제활동	(251)	15.1	2.0	1.6	0.4	0.8	0.8	79.3	19.41
	기타	(41)	29.3	7.3	4.9	4.9	2.4		51.2	26.10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20.3	2.2	2.2	1.1	1.1		73.1	15.39
	장애가 없다	(219)	18.7	4.6	2.7	1.4	0.5	1.8	70.3	21.93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46)	19.9	4.8	2.7	1.4	1.4	2.1	67.8	19.73
	이혼 또는 별거	(112)	19.6	4.5	2.7				73.2	13.87
	사별 후 독신	(79)	21.5		2.5	2.5	1.3	1.3	70.9	23.94
	미혼 (19세 이상)	(48)	18.8	2.1					79.2	10.20
	그 외 기타	(13)		7.7	7.7	7.7			76.9	30.00
	모름/무응답	(7)	14.3						85.7	.
학력	무학	(51)	17.6			2.0	2.0		78.4	21.20
	중졸이하	(175)	19.4	0.6	1.7	0.6	0.6	1.1	76.0	18.90
	고졸이하	(126)	15.9	7.9	4.0	1.6	0.8	0.8	69.0	19.67
	대졸이하	(37)	35.1	8.1	2.7	2.7		2.7	48.6	18.64
	대학원이상	(3)	33.3		33.3				33.3	20.00
	모름/무응답	(13)	7.7						92.3	.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17.3	3.6	2.0	1.5	1.5	0.5	73.5	20.50
	아파트	(74)	27.0	4.1	2.7			2.7	63.5	19.39
	다가구(연립)주택	(85)	22.4	4.7	3.5				69.4	13.41
	무허가주택	(11)	9.1			9.1			81.8	20.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6.7		3.3	3.3		3.3	83.3	41.67
	모름/무응답	(8)	25.0						75.0	6.00
주거 형태	자가	(107)	19.6	0.9	1.9	1.9	2.8	1.9	71.0	23.50
	전세(1억 미만)	(28)	25.0	7.1	7.1				60.7	13.89
	월세	(129)	21.7	5.4	4.7	0.8		0.8	66.7	19.89
	장기(영구)임대	(51)	21.6	2.0				2.0	74.5	15.38
	기타	(81)	12.3	3.7		2.5			81.5	16.40
	모름/무응답	(9)	11.1					8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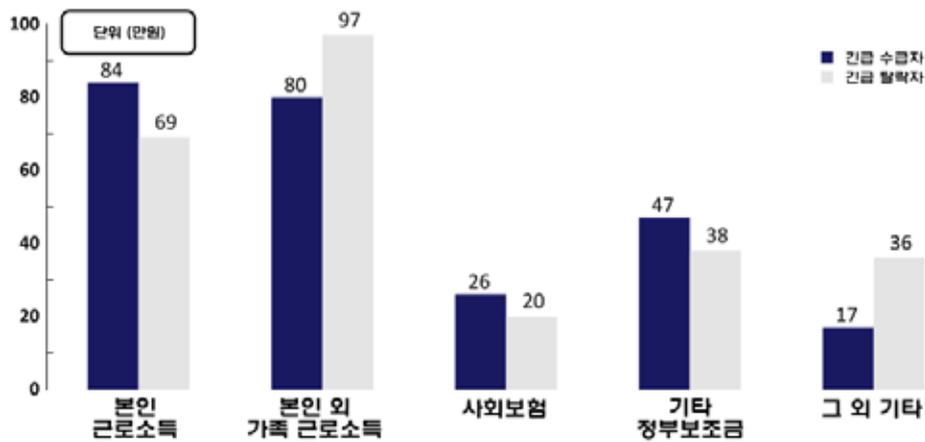
【표 23_6】 월평균생활비-기타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405)	18.5	11.1	5.9	0.7	1.2	1.2	61.2	19.6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8.0	12.9	6.1	0.6	1.3	0.6	60.5	18.06	
	긴급 탈락자	(94)	20.2	5.3	5.3	1.1	1.1	3.2	63.8	25.7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7.5	6.3	11.1		3.2	1.6	60.3	23.85	
	6대 광역시	(92)	12.0	6.5	4.3	1.1	1.1	1.1	73.9	21.00	
	중소도시	(127)	22.0	12.6	4.7			2.4	58.3	21.23	
	기타 농어촌	(123)	20.3	15.4	5.7	1.6	1.6		55.3	16.28	
성별	남성	(203)	20.7	14.3	3.9		1.5	0.5	59.1	17.17	
	여성	(202)	16.3	7.9	7.9	1.5	1.0	2.0	63.4	22.26	
연령별	10대	(12)	25.0	8.3	8.3				58.3	16.25	
	20대	(11)		18.2	9.1				72.7	23.33	
	30대	(35)	8.6	2.9	14.3	2.9		2.9	68.6	31.67	
	40대	(117)	21.4	9.4	8.5	1.7	0.9	2.6	55.6	21.44	
	50대	(100)	16.0	13.0	5.0		2.0		64.0	17.84	
	60대	(65)	13.8	15.4	3.1		1.5	1.5	64.6	22.25	
	70대	(51)	31.4	9.8			2.0		56.9	11.95	
	80대 이상	(11)	27.3	9.1					63.6	10.00	
고용 형태	모름/무응답	(3)		33.3					66.7	20.00	
	상시고용	(23)	13.0	8.7	21.7			4.3	52.2	23.00	
	일시고용	(16)	12.5	18.8	6.3		6.3		56.3	22.57	
	일용직	(29)	13.8	6.9	10.3		6.9	3.4	58.6	31.10	
	자영업	(10)		10.0	10.0				80.0	25.00	
	자활근로	(7)		14.3	28.6				57.1	25.00	
	실업	(26)	34.6	7.7					57.7	10.78	
	비경제활동	(251)	18.7	12.7	2.4	1.2	0.8		64.1	15.59	
장애 여부	기타	(41)	24.4	4.9	12.2			7.3	51.2	32.13	
	모름/무응답	(2)			50.0				50.0	30.00	
	장애가 있다	(182)	22.0	10.4	5.5	1.1	1.6	0.5	58.8	18.33	
	장애가 없다	(219)	16.0	11.9	6.4	0.5	0.9	1.8	62.6	20.75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46)	15.8	15.8	8.9	1.4	0.7	2.1	55.5	22.41
		이혼 또는 별거	(112)	21.4	7.1	4.5	0.9	1.8	1.8	62.5	19.68
		사별 후 독신	(79)	20.3	7.6	1.3		1.3		69.6	13.76
미혼 (19세 이상)		(48)	14.6	12.5	10.4		2.1		60.4	20.00	
그 외 기타		(13)	15.4	15.4					69.2	13.75	
모름/무응답		(7)	42.9						57.1	7.50	
학력	무학	(51)	31.4	5.9	3.9		2.0		56.9	13.21	
	중졸이하	(175)	17.7	12.6	3.4	0.6	0.6	0.6	64.6	16.98	
	고졸이하	(126)	14.3	10.3	7.1	1.6	2.4	2.4	61.9	24.88	
	대졸이하	(37)	18.9	16.2	18.9			2.7	43.2	22.78	
	대학원이상	(3)	33.3						66.7	10.00	
	모름/무응답	(13)	15.4	7.7					76.9	15.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21.4	14.3	6.6	1.0	0.5	2.0	54.1	19.46	
	아파트	(74)	14.9	9.5	6.8		1.4		67.6	19.89	
	다가구(연립)주택	(85)	18.8	3.5	7.1			1.2	69.4	17.20	
	무허가주택	(11)		36.4			9.1		54.5	26.00	
	구호시설	(1)		100.0						20.00	
	기타	(30)	13.3	6.7		3.3	6.7		70.0	23.88	
	모름/무응답	(8)	25.0						75.0	10.00	
주거 형태	자가	(107)	16.8	15.0	7.5		0.9	1.9	57.9	20.65	
	전세(1억 미만)	(28)	14.3	3.6	10.7				71.4	17.00	
	월세	(129)	17.8	8.5	4.7	0.8	2.3	2.3	63.6	23.78	
	장기(영구)임대	(51)	13.7	11.8	3.9				70.6	16.92	
	기타	(81)	25.9	12.3	6.2	2.5	1.2		51.9	15.97	
모름/무응답	(9)	22.2	11.1					66.7	15.00		

24. 월평균 소득수준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N=311명)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본인 근로소득’ 84만 5천원 > ‘본인 외 가족 근로소득’ 79만 6천원 > ‘기타 정부보조금’ 47만 1천원 > ‘사회보험’ 25만 7천원 등 의 순이며, 기타 소득은 16만 8천원으로 응답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 탈락자(N=94명)의 경우, ‘본인 외 가족 근로소득’ 97 만 1천원 > ‘본인 근로소득’ 68만 5천원 > ‘기타 정부보조금’ 37만 8천 원 > ‘사회보험’ 19만 9천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기타’ 소득은 35만 6천원으로 응답되었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24_1】 본인의 근로소득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10.9	2.5	5.2	5.2	5.2	3.2	0.5	0.5	66.9	80.82	
구분	긴급 수급자	(311)	9.0	1.9	6.1	5.1	5.1	3.2	0.3	0.6	68.5	84.49
	긴급 탈락자	(94)	17.0	4.3	2.1	5.3	5.3	3.2	1.1		61.7	68.50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6.3	3.2	4.8	3.2	9.5	6.3			66.7	80.29
	6대 광역시	(92)	3.3	1.1	4.3	9.8	7.6	3.3	1.1	1.1	68.5	116.46
	중소도시	(127)	19.7	0.8	4.7	3.1	3.9	2.4	0.8		64.6	69.13
	기타 농어촌	(123)	9.8	4.9	6.5	4.9	2.4	2.4		0.8	68.3	59.20
성별	남성	(203)	11.8	2.5	3.9	3.9	4.9	3.9	1.0	0.5	67.5	78.31
	여성	(202)	9.9	2.5	6.4	6.4	5.4	2.5		0.5	66.3	83.04
연령별	10대	(12)	8.3			8.3	8.3	8.3			66.7	93.33
	20대	(11)			9.1	9.1	9.1	9.1			63.6	92.50
	30대	(35)	14.3		11.4	11.4	11.4	2.9	2.9		45.7	71.00
	40대	(117)	6.0	1.7	3.4	7.7	10.3	5.1	0.9	0.9	64.1	110.83
	50대	(100)	11.0	6.0	8.0	4.0	1.0	4.0		1.0	65.0	67.88
	60대	(65)	13.8	3.1	6.2	1.5	3.1				72.3	38.83
	70대	(51)	15.7			2.0					82.4	23.33
	80대 이상	(11)	9.1								90.9	.
	모름/무응답	(3)	66.7								33.3	.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4.3	8.7	21.7	17.4	8.7	4.3	34.8
일시고용		(16)		6.3		18.8	25.0	25.0			25.0	90.17
일용직		(29)	10.3	3.4	24.1	17.2	17.2	6.9			20.7	64.57
자영업		(10)	10.0	10.0		20.0	20.0			10.0	30.0	95.00
자활근로		(7)			14.3	42.9					42.9	59.00
실업		(26)	11.5	3.8	11.5	3.8		3.8			65.4	62.50
비경제활동		(251)	10.4	2.0	3.2	1.2	0.8				82.5	38.65
기타		(41)	26.8	2.4	2.4	2.4	7.3	4.9			53.7	81.25
모름/무응답		(2)				50.0					50.0	70.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4.3	1.6	2.7	3.8	2.7	1.1		0.5	73.1	97.65
	장애가 없다	(219)	8.2	3.2	7.3	6.4	7.3	5.0	0.9	0.5	61.2	74.57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46)	11.6	2.7	6.8	6.2	4.8	6.2	1.4	1.4	58.9	99.98
	이혼 또는 별거	(112)	12.5	2.7	7.1	5.4	7.1	0.9			64.3	61.15
	사별 후 독신	(79)	8.9	2.5	1.3	2.5	1.3	2.5			81.0	58.20
	미혼 (19세 이상)	(48)	6.3	2.1	4.2	6.3	10.4				70.8	67.00
	그 외 기타	(13)	7.7			7.7		7.7			76.9	95.00
	모름/무응답	(7)	28.6								71.4	.
학력	무학	(51)	15.7	3.9	2.0						78.4	24.50
	중졸이하	(175)	11.4	2.9	4.6	3.4	2.9	1.7		0.6	72.6	62.71
	고졸이하	(126)	8.7	2.4	6.3	7.1	7.9	2.4		0.8	64.3	90.97
	대졸이하	(37)	10.8		10.8	16.2	13.5	13.5	2.7		32.4	89.14
	대학원이상	(3)					33.3				66.7	90.00
	모름/무응답	(13)	7.7					15.4	7.7		69.2	16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11.7	1.5	5.1	5.1	4.1	3.6	0.5	0.5	67.9	89.16
	아파트	(74)	16.2	2.7	9.5	5.4	8.1	1.4	1.4	1.4	54.1	71.61
	다가구(연립)주택	(85)	5.9	3.5	3.5	7.1	7.1	3.5			69.4	74.76
	무허가주택	(11)									100.0	.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10.0	6.7	3.3	3.3	3.3	3.3			70.0	63.33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150.00
주거 형태	자가	(107)	13.1	1.9	4.7	4.7	1.9		0.9	0.9	72.0	55.05
	전세(1억 미만)	(28)	7.1		3.6	3.6	10.7	7.1	3.6	3.6	60.7	210.56
	월세	(129)	10.1	3.9	7.0	7.0	7.8	5.4			58.9	72.55
	장기(영구)임대	(51)	15.7	3.9	9.8	5.9	3.9	3.9			56.9	64.57
	기타	(81)	7.4	1.2	1.2	3.7	4.9	2.5			79.0	77.00
	모름/무응답	(9)	11.1								88.9	.

【표 24_2】 본인 외 가족의 근로소득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9.4	2.7	1.7	3.2	3.2	2.7	1.5	0.5	75.1	86.76	
구분	긴급 수급자	(311)	9.0	2.6	1.9	1.6	1.9	2.9	1.0	79.1	79.59	
	긴급 탈락자	(94)	10.6	3.2	1.1	8.5	7.4	2.1	3.2	2.1	61.7	97.11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4.8	1.6	1.6	3.2	6.3		74.6	75.25	
	6대 광역시	(92)		1.1	1.1	2.2	5.4	3.3	2.2	1.1	83.7	114.33
	중소도시	(127)	18.9	1.6	0.8	4.7	3.1	0.8	1.6		68.5	86.06
	기타 농어촌	(123)	7.3	4.1	3.3	3.3	1.6	2.4	1.6	0.8	75.6	75.26
성별	남성	(203)	10.3	3.4	1.0	3.4	3.4	3.0	1.5		73.9	79.68
	여성	(202)	8.4	2.0	2.5	3.0	3.0	2.5	1.5	1.0	76.2	94.28
연령별	10대	(12)	8.3			8.3					83.3	65.00
	20대	(11)					9.1	9.1			81.8	165.00
	30대	(35)	14.3		5.7	2.9	5.7	2.9			68.6	84.50
	40대	(117)	6.8	1.7	2.6	4.3	5.1	4.3	0.9	0.9	73.5	93.09
	50대	(100)	8.0	3.0	2.0	4.0	4.0	1.0	2.0		76.0	74.53
	60대	(65)	12.3	3.1		1.5	1.5	1.5	3.1	1.5	75.4	106.22
	70대	(51)	9.8	7.8		2.0		3.9			76.5	57.50
	80대 이상	(11)	9.1								90.9	.
	모름/무응답	(3)	66.7								33.3	.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4.3			13.0	4.3	13.0			65.2	92.86
	일시고용	(16)		6.3	6.3	6.3			6.3		75.0	82.50
	일용직	(29)	13.8	3.4	3.4	3.4	3.4				72.4	55.50
	자영업	(10)	10.0			10.0	20.0				60.0	85.00
	자활근로	(7)									100.0	.
	실업	(26)	7.7		7.7				3.8		80.8	88.33
	비경제활동	(251)	8.0	3.6	1.2	2.0	2.8	2.4	1.2	0.4	78.5	80.97
	기타	(41)	24.4			4.9	4.9	4.9	2.4	2.4	56.1	126.00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10.4	3.3	0.5	2.7	3.8	2.7	1.6		74.7	84.41
	장애가 없다	(219)	8.7	2.3	2.7	3.7	2.7	2.7	1.4	0.9	74.9	88.59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여부	기혼	(146)	7.5	6.2	4.1	7.5	5.5	4.8	3.4	0.7	60.3	83.77
	이혼 또는 별거	(112)	12.5	1.8	0.9		2.7	0.9	0.9		80.4	78.67
	사별 후 독신	(79)	7.6			1.3		1.3		1.3	88.6	156.67
	미혼 (19세 이상)	(48)	8.3				2.1	2.1			87.5	75.67
	그 외 기타	(13)	7.7			7.7					84.6	65.00
	모름/무응답	(7)	28.6				14.3	14.3			42.9	117.50
학력	무학	(51)	11.8	5.9		2.0				2.0	78.4	75.00
	중졸이하	(175)	8.6	3.4	1.7	2.9	3.4	1.1	2.3		76.6	79.14
	고졸이하	(126)	8.7	1.6	1.6	3.2	2.4	4.8	0.8	0.8	76.2	94.40
	대졸이하	(37)	13.5		2.7	5.4	8.1	5.4	2.7		62.2	100.22
	대학원이상	(3)									100.0	.
	모름/무응답	(13)	7.7		7.7	7.7	7.7	7.7			61.5	86.25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9.2	3.1	1.5	5.1	2.6	1.0	1.5	1.0	75.0	81.61
	아파트	(74)	14.9	5.4	1.4	1.4	5.4	1.4	1.4		68.9	73.50
	다가구(연립)주택	(85)	7.1	1.2	2.4	1.2	3.5	4.7	1.2		78.8	92.77
	무허가주택	(11)						9.1	9.1		81.8	175.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6.7		3.3			6.7			83.3	100.00
	모름/무응답	(8)	12.5			12.5	12.5	12.5			50.0	98.33
주거형태	자가	(107)	7.5	4.7	1.9	2.8	4.7	1.9	1.9		72.9	90.32
	전세(1억 미만)	(28)	3.6		7.1			7.1	3.6		78.6	103.00
	월세	(129)	11.6	2.3	1.6	5.4	3.1	3.1	2.3		70.5	86.16
	장기(영구)임대	(51)	15.7	5.9	2.0		2.0	2.0			72.5	50.83
	기타	(81)	6.2			3.7	2.5	1.2			86.4	88.33
모름/무응답	(9)	11.1				11.1	11.1			66.7	117.50	

【표 24_3】사회보험(국민연금등)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405)	11.1	4.7	1.7	0.5	0.2	81.7	24.36
구분	긴급 수급자	(311)	9.3	5.1	1.9	0.3	0.3	83.0	25.70
	긴급 탈락자	(94)	17.0	3.2	1.1	1.1		77.7	19.89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2.7	6.3	3.2			77.8	20.30
	6대 광역시	(92)	1.1	4.3	1.1	1.1		92.4	28.00
	중소도시	(127)	21.3	0.8	0.8	0.8	0.8	75.6	40.50
	기타 농어촌	(123)	7.3	8.1	2.4			82.1	19.25
성별	남성	(203)	12.3	4.4	1.0			82.3	18.80
	여성	(202)	9.9	5.0	2.5	1.0	0.5	81.2	27.83
연령별	10대	(12)	8.3					91.7	.
	20대	(11)						100.0	.
	30대	(35)	14.3	2.9				82.9	23.00
	40대	(117)	9.4	2.6	2.6			85.5	23.67
	50대	(100)	11.0	2.0				87.0	13.67
	60대	(65)	9.2	10.8	3.1	3.1		73.8	26.23
	70대	(51)	13.7	11.8	3.9			70.6	23.40
	80대 이상	(11)	18.2				9.1	72.7	32.67
	모름/무응답	(3)	66.7					33.3	.
고용 형태	상시 고용	(23)	4.3	8.7				87.0	18.00
	임시 고용	(16)			6.3			93.8	50.00
	일용직	(29)	13.8	3.4				82.8	23.00
	자영업	(10)	10.0	20.0				70.0	11.50
	자활근로	(7)			14.3			85.7	40.00
	실업	(26)	7.7	7.7				84.6	16.50
	비경제활동	(251)	10.0	4.4	2.0	0.4	0.4	82.9	24.15
	기타	(41)	29.3	2.4		2.4		65.9	33.00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3.7	3.8	1.6	0.5		80.2	21.50
	장애가 없다	(219)	9.1	5.5	1.8	0.5	0.5	82.6	26.81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 여부	기혼	(146)	10.3	6.8	1.4	0.7	0.7	80.1	26.19
	이혼 또는 별거	(112)	11.6	2.7	0.9			84.8	20.67
	사별 후 독신	(79)	11.4	6.3	3.8	1.3		77.2	23.57
	미혼 (19세 이상)	(48)	10.4	2.1	2.1			85.4	25.67
	그 외 기타	(13)	7.7					92.3	.
	모름/무응답	(7)	28.6					71.4	.
학력	무학	(51)	13.7	9.8	3.9		2.0	70.6	27.80
	중졸이하	(175)	10.3	4.6	1.1	1.1		82.9	22.06
	고졸이하	(126)	9.5	3.2	0.8			86.5	21.71
	대졸이하	(37)	18.9	2.7	5.4			73.0	32.25
	대학원이상	(3)		33.3				66.7	16.00
	모름/무응답	(13)	7.7					92.3	.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10.7	6.1	2.0	0.5		80.6	21.73
	아파트	(74)	13.5	5.4	2.7	1.4		77.0	35.71
	다가구(연립)주택	(85)	9.4	1.2	1.2			88.2	18.25
	무허가주택	(11)	9.1				9.1	81.8	44.5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13.3	6.7				80.0	15.00
	모름/무응답	(8)	12.5					87.5	.
주거 형태	자가	(107)	9.3	10.3	1.9	0.9		77.6	22.12
	전세(1억 미만)	(28)	10.7		3.6			85.7	25.00
	월세	(129)	11.6	3.1	1.6			83.7	20.56
	장기(영구)임대	(51)	17.6	5.9	2.0	2.0		72.5	28.43
	기타	(81)	8.6	1.2	1.2			88.9	20.00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80.00

【표 24_4】기타 정부 보조금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11.6	13.6	15.3	6.2	3.2	2.0	0.2	47.9	45.09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0.9	13.2	16.4	6.4	3.2	2.3	0.3	47.3	47.08
	긴급 탈락자	(94)	13.8	14.9	11.7	5.3	3.2	1.1		50.0	37.85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4.8	9.5	7.9	3.2	1.6		65.1	47.58
	6대 광역시	(92)	8.7	12.0	17.4	5.4	2.2	2.2	1.1	51.1	55.98
	중소도시	(127)	18.9	14.2	16.5	9.4	2.4	2.4		36.2	43.80
	기타 농어촌	(123)	8.1	18.7	15.4	2.4	4.9	1.6		48.8	37.74
성별	남성	(203)	9.9	15.8	16.7	7.4	1.5	3.0		45.8	41.84
	여성	(202)	13.4	11.4	13.9	5.0	5.0	1.0	0.5	50.0	48.75
연령별	10대	(12)	8.3	16.7	8.3	16.7				50.0	35.17
	20대	(11)			9.1	9.1				81.8	52.50
	30대	(35)	17.1	8.6	2.9					71.4	25.00
	40대	(117)	8.5	7.7	12.8	8.5	6.0	4.3		52.1	54.39
	50대	(100)	9.0	13.0	18.0	7.0	3.0	3.0	1.0	46.0	59.19
	60대	(65)	16.9	20.0	15.4	3.1	1.5			43.1	30.36
	70대	(51)	17.6	23.5	21.6	5.9				31.4	29.03
	80대 이상	(11)	9.1	18.2	36.4		9.1			27.3	41.14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58.33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13.0	4.3						82.6	12.33
	일시고용	(16)	12.5	6.3					6.3	75.0	203.25
	일용직	(29)	20.7	3.4						75.9	15.67
	자영업	(10)	20.0	10.0						70.0	30.00
	자활근로	(7)			57.1	14.3				28.6	45.80
	실업	(26)	15.4	15.4	11.5	7.7	3.8	3.8		42.3	42.77
	비경제활동	(251)	8.4	16.3	20.3	8.4	4.0	2.8		39.8	42.72
	기타	(41)	26.8	9.8	4.9	2.4	4.9			51.2	41.36
	모름/무응답	(2)		50.0	50.0						32.5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1.0	15.9	15.4	7.1	4.4	2.2		44.0	43.62
	장애가 없다	(219)	11.9	11.4	15.5	5.5	2.3	1.8	0.5	51.1	47.02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19.50
혼인 여부	기혼	(146)	11.6	13.7	7.5	6.2	3.4	4.8		52.7	47.42
	이혼 또는 별거	(112)	12.5	10.7	19.6	8.0	2.7	0.9		45.5	40.67
	사별 후 독신	(79)	15.2	19.0	20.3	2.5	5.1		1.3	36.7	49.96
	미혼 (19세 이상)	(48)	6.3	10.4	20.8	6.3				56.3	39.61
	그 외 기타	(13)	7.7	23.1	15.4	7.7				46.2	33.00
모름/무응답	(7)			14.3	14.3	14.3			57.1	59.00	
학력	무학	(51)	19.6	23.5	19.6	3.9	5.9			27.5	34.88
	중졸이하	(175)	10.3	19.4	17.1	6.3	1.7	2.9	0.6	41.7	46.23
	고졸이하	(126)	7.9	4.8	14.3	7.1	4.8	2.4		58.7	51.50
	대졸이하	(37)	21.6	2.7	8.1	5.4	2.7			59.5	45.63
	대학원이상	(3)	33.3							66.7	10.00
	모름/무응답	(13)		15.4	7.7	7.7				69.2	36.75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13.3	20.4	14.3	5.6	4.1	1.5	0.5	40.3	44.32
	아파트	(74)	12.2	8.1	13.5	8.1	4.1	4.1		50.0	53.20
	다가구(연립)주택	(85)	11.8	5.9	15.3	7.1	1.2	2.4		56.5	44.65
	무허가주택	(11)	9.1	18.2	27.3	9.1	9.1			27.3	41.25
	구호시설	(1)			100.0						39.00
	기타	(30)		6.7	23.3					70.0	35.56
	모름/무응답	(8)	12.5			12.5				75.0	31.50
주거 형태	자가	(107)	14.0	17.8	13.1	3.7	2.8	1.9		46.7	35.82
	전세(1억 미만)	(28)	10.7	21.4	10.7		3.6			53.6	32.42
	월세	(129)	14.7	10.9	10.9	7.8	3.1	1.6	0.8	50.4	54.77
	장기(영구)임대	(51)	7.8	17.6	21.6	7.8	3.9	3.9		37.3	48.11
	기타	(81)	6.2	8.6	23.5	6.2	3.7	2.5		49.4	45.95
	모름/무응답	(9)	11.1		11.1	22.2				55.6	4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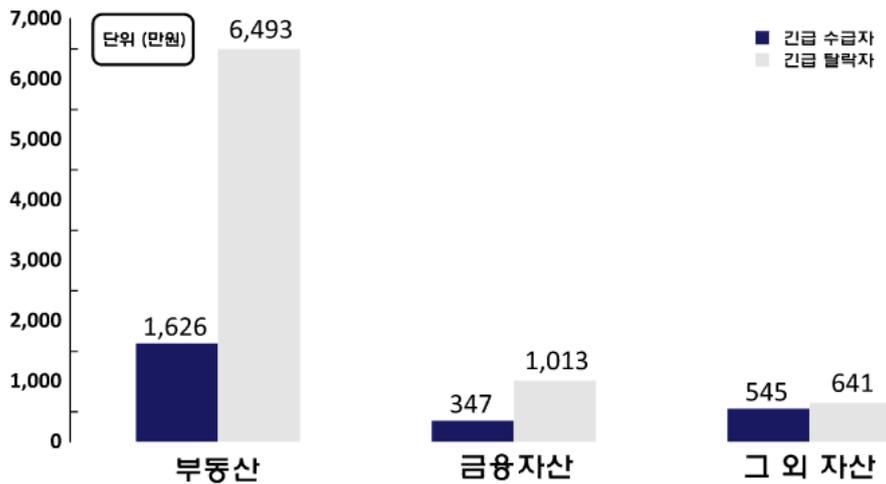
【표 24_5】그 외 기타

단위:%		사례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무응답/해당없음	(평균:만원)
■ 전 체 ■		(405)	12.1	4.2	0.7	0.5	0.2	82.2	20.44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1.9	4.2	0.6	0.3		83.0	16.79
	긴급 탈락자	(94)	12.8	4.3	1.1	1.1	1.1	79.8	35.57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3.2	1.6	1.6	1.6	84.1	38.67
	6대 광역시	(92)	2.2	1.1	1.1	1.1		94.6	25.80
	중소도시	(127)	26.0	4.7	0.8			68.5	14.57
	기타 농어촌	(123)	7.3	6.5				86.2	15.55
성별	남성	(203)	14.3	4.4	1.0	0.5		79.8	16.05
	여성	(202)	9.9	4.0	0.5	0.5	0.5	84.7	25.94
연령별	10대	(12)	16.7	8.3		8.3		66.7	35.33
	20대	(11)						100.0	.
	30대	(35)	14.3	5.7				80.0	20.00
	40대	(117)	9.4	4.3			0.9	85.5	22.25
	50대	(100)	13.0	1.0	1.0			85.0	14.20
	60대	(65)	13.8	4.6	1.5			80.0	15.57
	70대	(51)	11.8	9.8	2.0	2.0		74.5	23.56
	80대 이상	(11)	18.2					81.8	10.00
고용형태	모름/무응답	(3)	33.3					66.7	.
	상시고용	(23)	4.3					95.7	.
	임시고용	(16)						100.0	.
	일용직	(29)	13.8	10.3				75.9	20.00
	자영업	(10)	10.0				10.0	80.0	80.00
	자활근로	(7)						100.0	.
	실업	(26)	15.4	3.8				80.8	12.50
	비경제활동	(251)	10.4	5.2	1.2	0.4		82.9	17.96
	기타	(41)	31.7			2.4		65.9	28.67
장애여부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가 있다	(182)	14.3	5.5	0.5			79.7	15.67
	장애가 없다	(219)	10.5	3.2	0.9	0.9	0.5	84.0	25.22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여부	기혼	(146)	11.0	5.5	0.7	0.7		82.2	20.69
	이혼 또는 별거	(112)	15.2	5.4	0.9		0.9	77.7	19.83
	사별 후 독신	(79)	10.1	2.5	1.3			86.1	17.14
	미혼 (19세 이상)	(48)	10.4					89.6	3.00
	그 외 기타	(13)	15.4	7.7		7.7		69.2	35.33
	모름/무응답	(7)	14.3					85.7	.
학력	무학	(51)	15.7	7.8				76.5	15.57
	중졸이하	(175)	10.3	4.0	1.1			84.6	16.86
	고졸이하	(126)	11.9	4.8		1.6	0.8	81.0	25.43
	대졸이하	(37)	18.9		2.7			78.4	35.00
	대학원이상	(3)						100.0	.
모름/무응답	(13)	7.7					92.3	.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11.2	6.1		0.5		82.1	18.33
	아파트	(74)	17.6	2.7	1.4			78.4	15.83
	다가구(연립)주택	(85)	11.8	3.5	1.2			83.5	14.75
	무허가주택	(11)	9.1					90.9	10.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6.7		3.3	3.3	3.3	83.3	61.00
	모름/무응답	(8)	12.5					87.5	.
주거형태	자가	(107)	10.3	4.7	0.9			84.1	15.30
	전세(1억 미만)	(28)	10.7			3.6		85.7	35.00
	월세	(129)	14.0	4.7	0.8		0.8	79.8	20.17
	장기(영구)임대	(51)	17.6	5.9				76.5	15.60
	기타	(81)	8.6	3.7	1.2	1.2		85.2	27.57
모름/무응답	(9)	11.1					88.9	.	

25. 가족의 총재산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 및 탈락자에게 가족 총재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 수급자(평균값)는 ‘부동산’ 1,626만원 > ‘금융자산’ 346만 6천원 > ‘그 외 자산’ 544만 5천원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탈락자의 경우 ‘부동산’ 6,493만 3천원 > ‘금융자산’ 1,013만 3천원 > ‘그 외 자산’ 640만 8천원의 순으로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수급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25_1】 금융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등)

단위:%	사례수	100만 원이하	3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700만 원이하	1000만 원이하	1500만 원이하	2000만 원이하	2001만 원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15.6	4.7	4.0	0.7	1.2	0.5	1.0	1.2	71.1	529.11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5.8	5.1	3.5	0.6	0.3	0.6	0.6	73.0	346.56	
	긴급 탈락자	(94)	14.9	3.2	5.3	1.1	4.3	1.1	2.1	64.9	1,013.2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22.2	4.8	3.2				1.6	68.3	232.63	
	6대 광역시	(92)	4.3	5.4	2.2	1.1	1.1	1.1	1.1	82.6	587.67	
	중소도시	(127)	27.6	7.1	3.9	1.6	0.8	0.8	1.6	55.9	506.57	
	기타 농어촌	(123)	8.1	1.6	5.7		2.4		0.8	79.7	726.57	
성별	남성	(203)	16.3	4.9	4.9	0.5	1.0	0.5		70.9	473.57	
	여성	(202)	14.9	4.5	3.0	1.0	1.5	0.5	2.0	71.3	584.64	
연령별	10대	(12)	16.7	8.3						75.0	200.00	
	20대	(11)		18.2						81.8	250.00	
	30대	(35)	22.9	8.6		2.9				65.7	168.50	
	40대	(117)	16.2	0.9	2.6			0.9	1.7	75.2	844.83	
	50대	(100)	15.0	5.0	5.0		2.0		1.0	72.0	378.60	
	60대	(65)	16.9	4.6	4.6		4.6		3.1	66.2	509.59	
	70대	(51)	13.7	5.9	9.8				2.0	68.6	596.54	
	80대 이상	(11)	9.1	9.1		9.1				72.7	45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33.3	1,05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21.7	8.7	4.3					65.2	176.00	
	일시고용	(16)	12.5		6.3					81.3	193.33	
	일용직	(29)	10.3	10.3	3.4				3.4	72.4	853.33	
	자영업	(10)	30.0				10.0		10.0	50.0	1,033.33	
	자활근로	(7)				14.3			14.3	71.4	1,100.00	
	실업	(26)	23.1	3.8	3.8				3.8	65.4	396.17	
	비경제활동	(251)	12.7	4.4	4.8	0.8	1.2	0.4	0.4	1.2	74.1	496.44
	기타	(41)	29.3	4.9			2.4	2.4	2.4	58.5	648.75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15.4	2.2	4.9	1.1	1.1	0.5	1.1	1.1	72.5	679.48
	장애가 없다	(219)	16.0	6.8	2.7	0.5	1.4	0.5	0.9	1.4	69.9	432.44
	모름/무응답	(4)			25.0					75.0	400.00	
혼인여부	기혼	(146)	13.0	7.5	4.1	0.7	2.1	0.7	2.1	2.1	67.8	640.50
	이혼 또는 별거	(112)	20.5	1.8	2.7		0.9	0.9		0.9	72.3	508.19
	사별 후 독신	(79)	12.7	3.8	6.3	1.3	1.3		1.3	1.3	72.2	527.33
	미혼 (19세 이상)	(48)	14.6	4.2	4.2	2.1					75.0	228.67
	그 외 기타	(13)	15.4	7.7							76.9	200.00
	모름/무응답	(7)	28.6							71.4	25.00	
학력	무학	(51)	13.7	5.9	5.9	2.0	2.0			70.6	365.80	
	중졸이하	(175)	16.0	3.4	4.6	0.6	2.3	0.6	1.1	1.7	69.7	619.90
	고졸이하	(126)	10.3	5.6	3.2	0.8		0.8		1.6	77.8	548.05
	대졸이하	(37)	29.7	8.1	2.7				5.4		54.1	432.10
	대학원이상	(3)	33.3								66.7	14.00
	모름/무응답	(13)	23.1							76.9	37.50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12.2	3.6	4.6	0.5	1.5	1.0	1.0	2.0	73.5	738.54
	아파트	(74)	23.0	5.4	8.1		1.4		2.7	1.4	58.1	529.60
	다가구(연립)주택	(85)	15.3	8.2		1.2	1.2				74.1	213.65
	무허가주택	(11)	9.1		9.1						81.8	185.00
	구호시설	(1)	100.0								30.00	
	기타	(30)	16.7	3.3		3.3					76.7	248.25
	모름/무응답	(8)	25.0							75.0	25.00	
주거형태	자가	(107)	8.4	5.6	5.6	0.9	2.8		2.8	3.7	70.1	991.04
	전세(1억 미만)	(28)	3.6	14.3	10.7	3.6	3.6	3.6			60.7	491.82
	월세	(129)	20.2	4.7	2.3	0.8			0.8		71.3	229.87
	장기(영구)임대	(51)	25.5	2.0	3.9		2.0		2.0		64.7	397.09
	기타	(81)	14.8	2.5	2.5			1.2			79.0	236.09
모름/무응답	(9)	22.2							77.8	25.00		

【표 25_2】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상가 등)

단위:%	사례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9.4	4.7	2.2	1.2	2.2	1.5	1.7	8.6	68.4	2,980.81	
구분	긴급 수급자	(311)	8.7	5.8	2.3	0.6	2.3	1.3	1.9	6.8	1,626.01	
	긴급 탈락자	(94)	11.7	1.1	2.1	3.2	2.1	2.1	1.1	14.9	6,493.2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9.5	7.9	4.8	1.6	1.6		7.9	66.7	1,913.88	
	6대 광역시	(92)	5.4	2.2	1.1				9.8	81.5	4,214.36	
	중소도시	(127)	18.9	8.7	1.6	1.6	3.9	3.1	9.4	49.6	1,554.23	
	기타 농어촌	(123)	2.4	0.8	2.4	1.6	2.4	1.6	2.4	7.3	78.9	5,685.65
성별	남성	(203)	10.3	3.9	2.5	1.0	1.5	1.5	2.0	10.3	3,658.37	
	여성	(202)	8.4	5.4	2.0	1.5	3.0	1.5	6.9	69.8	2,229.61	
연령별	10대	(12)	8.3	8.3						83.3	200.00	
	20대	(11)							18.2	81.8	5,500.00	
	30대	(35)	8.6	2.9		5.7			2.9	80.0	1,609.25	
	40대	(117)	11.1	1.7	2.6		2.6	1.7	10.3	67.5	2,824.27	
	50대	(100)	11.0	6.0	1.0		1.0	1.0	3.0	4.0	73.0	1,490.45
	60대	(65)	9.2	6.2	1.5	3.1	7.7	1.5	3.1	9.2	58.5	2,120.82
	70대	(51)	7.8	5.9	7.8	2.0			17.6	58.8	6,481.72	
	80대 이상	(11)		18.2				9.1		72.7	644.33	
	모름/무응답	(3)							33.3	66.7	3,00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13.0						17.4	69.6	4,625.00
일시고용		(16)				6.3	12.5			81.3	866.67	
일용직		(29)	10.3	3.4	3.4		3.4			6.9	72.4	1,532.00
자영업		(10)	20.0				10.0			20.0	50.0	6,283.33
자활근로		(7)								14.3	85.7	2,300.00
실업		(26)	11.5	7.7						15.4	65.4	3,946.67
비경제활동		(251)	7.6	6.0	2.0	1.2	2.0	1.6	2.0	7.6	70.1	3,106.81
기타		(41)	19.5	2.4	4.9	2.4		2.4	4.9	7.3	56.1	1,929.73
모름/무응답	(2)			50.0			50.0				850.00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10.4	4.9	2.2	2.7	2.7	2.2	2.7	5.5	66.5	3,484.85
	장애가 없다	(219)	8.2	4.6	2.3		1.8	0.9	0.9	11.0	70.3	2,577.27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1,275.00
혼인여부	기혼	(146)	8.2	4.1	2.7	1.4	2.7	2.1	2.1	13.7	63.0	4,367.18
	이혼 또는 별거	(112)	14.3	3.6	0.9		0.9	0.9	1.8	2.7	75.0	1,481.50
	사별 후 독신	(79)	6.3	7.6	3.8	1.3	3.8	2.5	1.3	6.3	67.1	1,211.59
	미혼 (19세 이상)	(48)	6.3	4.2	2.1	4.2	2.1			8.3	72.9	1,898.82
	그 외 기타	(13)	7.7	7.7					7.7		76.9	766.67
	모름/무응답	(7)	14.3						42.9	42.9	8,800.00	
학력	무학	(51)	11.8	5.9	5.9		3.9	2.0	2.0	2.0	66.7	776.92
	중졸이하	(175)	8.6	5.7	1.7	1.7	2.3	1.1	2.3	8.0	68.6	3,903.28
	고졸이하	(126)	7.1	4.0	2.4		1.6	1.6	1.6	9.5	72.2	2,030.75
	대졸이하	(37)	18.9	2.7		2.7	2.7			16.2	54.1	3,033.70
	대학원이상	(3)				33.3					66.7	600.00
	모름/무응답	(13)	7.7						15.4	76.9	11,70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8.2	2.6	2.6	1.5	3.6	2.0	0.5	9.7	69.4	3,743.63
	아파트	(74)	14.9	12.2	1.4	2.7	1.4	1.4	5.4	10.8	50.0	1,775.19
	다가구(연립)주택	(85)	8.2	2.4	3.5			1.2	2.4	5.9	76.5	2,198.67
	무허가주택	(11)								9.1	90.9	3,500.00
	구호시설	(1)									100.0	
	기타	(30)	10.0	10.0			3.3				76.7	408.75
	모름/무응답	(8)	12.5						25.0	62.5	11,700.00	
주거형태	자가	(107)	2.8	3.7	3.7	3.7	2.8	2.8	4.7	23.4	52.3	4,208.45
	전세(1억 미만)	(28)	7.1							17.9	75.0	4,925.00
	월세	(129)	13.2	3.1	3.9		3.1	0.8		1.6	74.4	843.33
	장기(영구)임대	(51)	13.7	19.6		2.0	3.9	3.9			52.9	631.94
	기타	(81)	9.9	1.2						1.2	87.7	855.00
모름/무응답	(9)	11.1							22.2	66.7	11,700.00	

【표 25_3】 그 외 자산(자동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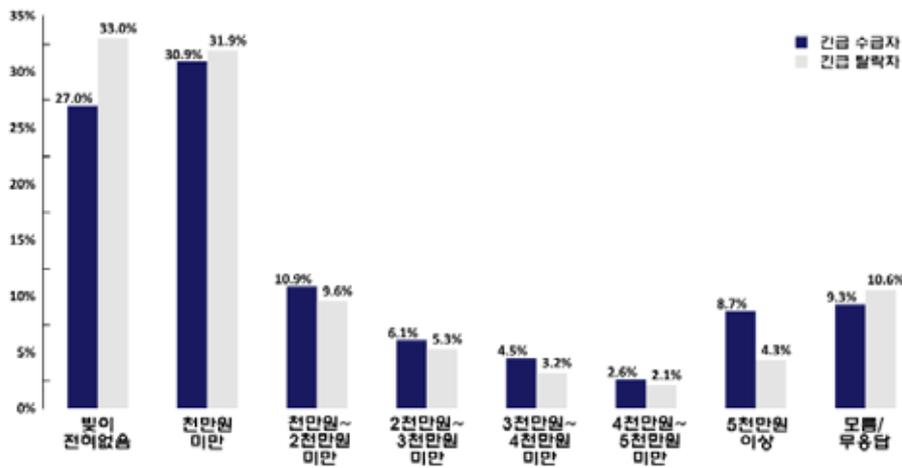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01만원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평균: 만원)	
■ 전 체 ■	(405)	11.9	4.2	1.7	0.7	1.0	0.2	0.5	1.0	78.8	575.40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0.6	3.5	1.0	1.0	1.3	0.3	0.6	3.2	81.4	544.53
	긴급 탈락자	(94)	16.0	6.4	4.3						70.2	640.76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7.9	4.8	3.2	1.6	3.2		1.6	1.6	76.2	987.45
	6대 광역시	(92)	6.5	5.4	3.3		1.1	1.1	1.1	2.2	79.3	738.19
	중소도시	(127)	21.3	3.1	0.8					0.8	74.0	390.60
	기타 농어촌	(123)	8.1	4.1	0.8	1.6	0.8				84.6	244.81
성별	남성	(203)	11.8	3.4	1.5	1.5	1.0			1.0	79.8	434.74
	여성	(202)	11.9	5.0	2.0		1.0	0.5	1.0	1.0	77.7	721.46
연령별	10대	(12)	8.3								91.7	.
	20대	(11)									100.0	.
	30대	(35)	20.0	5.7				2.9			71.4	381.67
	40대	(117)	12.0	4.3	4.3	0.9	0.9		0.9	1.7	75.2	729.79
	50대	(100)	12.0	6.0	2.0	1.0	3.0				76.0	360.50
	60대	(65)	12.3	4.6					1.5	1.5	80.0	705.00
	70대	(51)	9.8	2.0		2.0				2.0	84.3	727.40
	80대 이상	(11)	9.1								90.9	.
	모름/무응답	(3)									100.0	.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17.4	4.3	8.7	4.3			4.3	4.3	56.5	717.75
	일시고용	(16)	6.3	6.3		6.3					81.3	316.67
	일용직	(29)	10.3				3.4				86.2	1,000.00
	자영업	(10)	30.0	20.0			10.0				40.0	434.67
	자활근로	(7)					14.3				85.7	707.00
	실업	(26)	7.7	7.7	3.8			3.8		3.8	73.1	1,494.60
	비경제활동	(251)	10.4	4.0	0.8	0.4	0.4		0.4	0.4	83.3	360.85
	기타	(41)	22.0	2.4	4.9					2.4	68.3	715.40
모름/무응답	(2)									100.0	.	
장애여부	장애가 있다	(182)	13.7	3.3	1.1	1.1	0.5			0.5	79.7	405.44
	장애가 없다	(219)	10.5	5.0	2.3	0.5	1.4	0.5	0.9	1.4	77.6	662.80
	모름/무응답	(4)									100.0	.
혼인여부	기혼	(146)	13.0	3.4	2.7	1.4	0.7			2.7	76.0	702.12
	이혼 또는 별거	(112)	15.2	5.4	1.8	0.9	1.8	0.9			74.1	391.25
	사별 후 독신	(79)	6.3	6.3					2.5		84.8	688.57
	미혼 (19세 이상)	(48)	10.4	2.1			2.1				85.4	340.75
	그 외 기타	(13)	7.7								92.3	.
모름/무응답	(7)	14.3		14.3						71.4	500.00	
학력	무학	(51)	11.8	5.9					2.0		80.4	630.00
	중졸이하	(175)	10.3	4.6	1.1	0.6				0.6	82.9	350.47
	고졸이하	(126)	10.3	4.0	3.2	1.6	1.6	0.8		0.8	77.8	500.38
	대졸이하	(37)	21.6	2.7			5.4			5.4	64.9	1,301.43
	대학원이상	(3)							33.3		66.7	1,800.00
모름/무응답	(13)	23.1		7.7						69.2	200.00	
주택종류	단독주택	(196)	11.2	4.1	1.5		1.0	0.5	0.5	1.0	80.1	524.77
	아파트	(74)	17.6	6.8	2.7	1.4	1.4		1.4	2.7	66.2	903.36
	다가구(연립)주택	(85)	8.2	4.7	1.2		1.2				84.7	294.38
	무허가주택	(11)				9.1					90.9	600.00
	구호시설	(1)									100.0	.
	기타	(30)	13.3			3.3					83.3	350.00
모름/무응답	(8)	25.0		12.5						62.5	275.00	
주거형태	자가	(107)	10.3	5.6	0.9	0.9	0.9			0.9	80.4	350.00
	전세(1억 미만)	(28)	3.6		3.6			3.6	3.6	3.6	82.1	1,675.00
	월세	(129)	13.2	2.3	1.6	1.6	1.6		0.8	0.8	78.3	895.92
	장기(영구)임대	(51)	19.6	5.9	2.0					2.0	70.6	409.13
	기타	(81)	9.9	6.2	1.2		1.2				81.5	242.60
모름/무응답	(9)	11.1		11.1						77.8	500.00	

26. 가족의 총 부채

긴급복지지원법 수급자와 탈락자간의 가구부채 평균을 비교하면, ‘수급자’의 경우 1,347만 5천원, ‘탈락자’의 경우 982만 1천원으로 나타나 수급자 가구의 부채규모가 탈락자 가구에 비해 평균 365만원 정도 더 높았다.

수급자와 탈락자 모두 ‘빛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27.0%와 33.0%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천만원 미만’이 30.9%, 31.9%로 뒤를 이었다.

한편 빛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수급자에서 8.7%로 높게 나타났으며, 탈락자에서는 4.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26】부채(빚)

단위:%	사례수	빚이 전혀 없다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 전 체 ■	(405)	28.4	31.1	10.6	5.9	4.2	2.5	7.7	9.6	1,263.66	
구분	긴급 수급자	(311)	27.0	30.9	10.9	6.1	4.5	2.6	8.7	9.3	1,347.52
	긴급 탈락자	(94)	33.0	31.9	9.6	5.3	3.2	2.1	4.3	10.6	982.1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27.0	22.2	15.9	4.8	4.8	3.2	12.7	9.5	1,631.58
	6대 광역시	(92)	31.5	32.6	9.8	5.4	7.6	2.2	7.6	3.3	1,269.66
	중소도시	(127)	28.3	40.9	5.5	4.7	2.4	3.9	4.7	9.4	1,021.74
	기타 농어촌	(123)	26.8	24.4	13.8	8.1	3.3	0.8	8.1	14.6	1,323.81
성별	남성	(203)	26.6	38.9	8.4	4.4	3.0	2.5	7.9	8.4	1,177.42
	여성	(202)	30.2	23.3	12.9	7.4	5.4	2.5	7.4	10.9	1,352.78
연령별	10대	(12)	41.7	25.0						33.3	187.50
	20대	(11)	36.4	9.1	9.1				9.1	36.4	1,071.43
	30대	(35)	25.7	34.3	25.7	2.9	2.9		5.7	2.9	1,073.53
	40대	(117)	18.8	35.9	6.8	9.4	8.5	3.4	9.4	7.7	1,611.11
	50대	(100)	30.0	33.0	9.0	6.0	2.0	2.0	11.0	7.0	1,306.45
	60대	(65)	33.8	26.2	12.3	4.6	1.5	3.1	9.2	9.2	1,245.76
	70대	(51)	37.3	25.5	13.7	3.9	5.9	3.9		9.8	902.17
	80대 이상	(11)	36.4	27.3	9.1	9.1				18.2	611.11
		모름/무응답	(3)		66.7					33.3	500.00
고용형태	상시고용	(23)	8.7	21.7	21.7	26.1	8.7		8.7	4.3	1,954.55
	임시고용	(16)	18.8	31.3	25.0		6.3		12.5	6.3	1,533.33
	일용직	(29)	17.2	20.7	17.2	3.4	6.9	6.9	17.2	10.3	2,173.08
	자영업	(10)		20.0	10.0	10.0	10.0	10.0	40.0		3,500.00
	자활근로	(7)		57.1	14.3		14.3			14.3	1,166.67
	실업	(26)	30.8	26.9	7.7	3.8		3.8	19.2	7.7	1,708.33
	비경제활동	(251)	32.3	34.3	9.6	5.6	3.2	2.4	4.0	8.8	978.17
	기타	(41)	36.6	26.8	2.4	2.4	4.9		4.9	22.0	859.38
	모름/무응답	(2)	50.0					50.0		2,750.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34.1	30.2	8.2	3.8	3.8	0.5	10.4	8.8	1,210.84
	장애가 없다	(219)	24.2	31.1	12.8	7.8	4.6	4.1	5.5	10.0	1,319.80
	모름/무응답	(4)		75.0						25.0	500.00
혼인 여부	기혼	(146)	19.2	32.9	14.4	7.5	5.5	3.4	9.6	7.5	1,559.26
	이혼 또는 별거	(112)	29.5	33.9	9.8	7.1	5.4	0.9	8.0	5.4	1,231.13
	사별 후 독신	(79)	38.0	24.1	7.6	6.3	2.5	3.8	7.6	10.1	1,190.14
	미혼 (19세 이상)	(48)	39.6	31.3	6.3		2.1	2.1	2.1	16.7	637.50
	그 외 기타	(13)	23.1	46.2	7.7					23.1	450.00
	모름/무응답	(7)	28.6		14.3				14.3	42.9	1,750.00
학력	무학	(51)	43.1	23.5	13.7	9.8	2.0	2.0		5.9	770.83
	중졸이하	(175)	28.6	37.1	7.4	3.4	2.3	2.9	7.4	10.9	1,121.79
	고졸이하	(126)	27.0	28.6	12.7	7.1	5.6	3.2	7.9	7.9	1,396.55
	대졸이하	(37)	13.5	32.4	13.5	8.1	8.1		16.2	8.1	1,897.06
	대학원 이상	(3)	33.3		33.3					33.3	750.00
	모름/무응답	(13)	23.1	7.7	7.7	7.7	15.4		15.4	23.1	2,250.00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30.1	31.6	8.7	6.6	5.1	1.5	6.6	9.7	1,180.79
	아파트	(74)	23.0	28.4	16.2	6.8	2.7	6.8	6.8	9.5	1,462.69
	다가구(연립)주택	(85)	28.2	35.3	10.6	3.5	4.7	2.4	9.4	5.9	1,287.50
	무허가주택	(11)	36.4	45.5					18.2		1,227.27
	구호시설	(1)	100.0								0.00
	기타	(30)	26.7	26.7	16.7	6.7	3.3		6.7	13.3	1,192.31
	모름/무응답	(8)	25.0			12.5		12.5	50.0	2,000.00	
주거 형태	자가	(107)	33.6	22.4	11.2	8.4	5.6	3.7	4.7	10.3	1,239.58
	전세(1억 미만)	(28)	28.6	39.3	10.7	3.6	3.6		3.6	10.7	860.00
	월세	(129)	23.3	34.9	10.9	7.0	5.4	2.3	10.9	5.4	1,483.61
	장기(영구)임대	(51)	25.5	29.4	15.7	5.9	2.0	3.9	7.8	9.8	1,336.96
	기타	(81)	33.3	34.6	7.4	2.5	2.5	1.2	7.4	11.1	1,006.94
	모름/무응답	(9)	11.1	33.3					11.1	44.4	1,400.00

27.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살펴 본 결과,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11.1%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5.9% > ‘자격기준 완화’ 3.0% > ‘현행만족’ 2.7% > ‘가족 수/장애여부 등 특성 고려’ 2.0% > ‘유아/장애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0.5% > ‘일자리/자활교육 확대’ 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없음/모름/무응답’은 69.6%였다.

No.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비율 (%)
1	지원 금액 및 횟수 확대	11.1%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5.9%
3	자격기준(금융자산 등) 완화	3.0%
4	현행만족	2.7%
5	가족 수, 장애여부 등 특성 고려	2.0%
6	유아, 장애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0.5%
7	일자리/자활교육 확대	0.2%

(Base: 전체 응답자 405명)

【표 27】 지원제도에 대한 자유의견

단위:%	사례수	지원금액 및 확대	부양 자의 기준 개선	자격기준 (금융 자산 완화)	현행 만족	가족 장애훈 고려	수부 성	유아, 장애 인 서비스	장애훈 제공	일자 리, 자 활 대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405)	11.1	5.9	3.0	2.7	2.0	0.5	0.2	4.9	69.6		
구분	긴급 수급자	(311)	11.9	0.6	3.9	3.5	0.3		0.3	5.8	73.6	
	긴급 탈락자	(94)	8.5	23.4			7.4	2.1		2.1	56.4	
권역	서울 포함 수도권	(63)	11.1	4.8	11.1	6.3	6.3			1.6	12.7	46.0
	6대 광역시	(92)	17.4	10.9	3.3	1.1	1.1	1.1		5.4	59.8	
	중소도시	(127)	11.0	3.1	0.8	2.4	1.6	0.8		3.9	76.4	
	기타 농어촌	(123)	6.5	5.7	0.8	2.4	0.8			1.6	82.1	
성별	남성	(203)	10.3	5.9	2.5	3.9	1.0			0.5	5.9	70.0
	여성	(202)	11.9	5.9	3.5	1.5	3.0	1.0		4.0	69.3	
연령 별	10대	(12)	16.7								8.3	75.0
	20대	(11)	18.2	9.1						9.1	63.6	
	30대	(35)	8.6	5.7	5.7		2.9	2.9		8.6	65.7	
	40대	(117)	16.2	5.1	1.7	2.6	1.7			5.1	67.5	
	50대	(100)	7.0	4.0	3.0	7.0	3.0			5.0	71.0	
	60대	(65)	6.2	4.6	1.5	1.5	3.1			1.5	4.6	76.9
	70대	(51)	13.7	11.8	7.8			2.0				64.7
	80대 이상	(11)	9.1								9.1	81.8
		모름/무응답	(3)		66.7							
고용 형태	상시고용	(23)	4.3		4.3	13.0				17.4	60.9	
	임시고용	(16)		6.3	6.3		6.3			6.3	75.0	
	일용직	(29)	10.3	6.9			3.4			6.9	72.4	
	자영업	(10)	10.0	20.0	10.0	10.0					50.0	
	자활근로	(7)	28.6								71.4	
	실업	(26)	11.5	3.8	7.7	7.7				7.7	61.5	
	비경제활동	(251)	13.5	6.0	2.8	1.6	2.0	0.4	0.4	3.6	69.7	
	기타	(41)	2.4	7.3		2.4	2.4	2.4		4.9	78.0	
	모름/무응답	(2)										100.0
장애 여부	장애가 있다	(182)	12.6	5.5	4.9	3.8	1.1	0.5		4.9	66.5	
	장애가 없다	(219)	10.0	6.4	1.4	1.8	2.7	0.5	0.5	5.0	71.7	
	모름/무응답	(4)										100.0
혼인 여부	기혼	(146)	13.7	6.8	1.4	3.4	3.4	0.7	0.7	3.4	66.4	
	이혼 또는 별거	(112)	12.5	5.4	3.6	4.5	0.9			8.9	64.3	
	사별 후 독신	(79)	6.3	7.6	3.8	1.3	2.5	1.3		3.8	73.4	
	미혼 (19세 이상)	(48)	6.3	2.1	6.3					4.2	81.3	
	그 외 기타	(13)	7.7								92.3	
		모름/무응답	(7)	28.6	14.3							
학력	무학	(51)	11.8	5.9	2.0		3.9	2.0		2.0	72.5	
	중졸이하	(175)	8.6	6.3	2.3	4.0	1.1		0.6	4.6	72.6	
	고졸이하	(126)	14.3	7.1	3.2	3.2	2.4	0.8		4.0	65.1	
	대졸이하	(37)	10.8				2.7			16.2	70.3	
	대학원이상	(3)			66.7						33.3	
		모름/무응답	(13)	15.4	7.7	7.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96)	9.7	6.1	3.1	1.5	1.5	0.5		2.6	75.0	
	아파트	(74)	8.1	6.8	2.7	2.7	1.4		1.4	5.4	71.6	
	다가구(연립)주택	(85)	15.3	4.7	2.4	3.5	4.7	1.2		9.4	58.8	
	무허가주택	(11)	18.2				9.1			9.1	63.6	
	구호시설	(1)								100.0		
		기타	(30)	10.0	6.7	6.7	6.7				3.3	66.7
	모름/무응답	(8)	25.0	12.5								62.5
주거 형태	자가	(107)	4.7	6.5	0.9	2.8	1.9			0.9	0.9	81.3
	전세(1억 미만)	(28)	10.7	14.3	3.6	3.6				7.1	60.7	
	월세	(129)	10.9	3.9	4.7	4.7	3.1	0.8		7.8	64.3	
	장기(영구)임대	(51)	13.7	3.9	2.0		2.0			3.9	74.5	
	기타	(81)	16.0	6.2	3.7	1.2	1.2	1.2		6.2	64.2	
	모름/무응답	(9)	33.3	11.1								55.6